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541호

2019. 9. 19.(목)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7272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

[입법예고]

제2019-2475호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5
---	---

◆ 고 시

제2019-3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6
제2019-3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7
제2019-309호 이문·회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이문지구단위계획, 회경2)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8
제2019-310호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8
제2019-31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유수지, 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	37
제2019-31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	52
제2019-31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개포택지개발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2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 결정 변경]	257
제2019-315호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65

◆ 공 고

제2019-2437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72
제2019-2438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73

제2019-2446호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	279
제2019-2449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283
제2019-2462호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283
제2019-2463호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284
제2019-2464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12
제2019-2465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335
제2019-2471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납부통지서 공시송달(공고)	341
제2019-2480호 공인중개사법 위반 자격정지처분 공시송달 공고	342

◆ 구 고 시

제2019-8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343
제2019-13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서대문구)	344
제2019-136호 도시관리계획(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마포구)	346
제2019-137호 도시관리계획(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마포구)	348
제2019-114호 도시계획시설(개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2차) 고시(강서구)	350
제2019-16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구로구)	352
제2019-75호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362

◆ 구 공 고

제2019-91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노원구)	368
제2019-9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대문구)	370
제2019-9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대문구)	373
제2019-1402호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구로구)	376
제2019-14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간적범위)사업 공사완료 공고(영등포구)	380
제2019-1516호 양화폭포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영등포구)	381

제2019-120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관악구)	389
제2019-12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열람공고(관악구)	389

◆ 사업소고시

제2019-2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95
제2019-2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95
제2019-22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96
제2019-2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96

◆ 기 타

제2019-29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397
---	-----

자치법규**[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272호****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667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확대 및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나.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은 2019년 9월 21일까지이나,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추진과 변화하는 먹거리 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위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는 조문 신설(제35조)
-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 삭제(조례 제6667호 부칙 제2조)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75호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19.3.28.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면제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부품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별표)
- 라.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18, 팩스: 02-2133-07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67호(2019.6.7.) 및 78호(2019.6.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51호(2019.7.25.)로 열람공고한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계획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
- 2) 사업시행위치 : 중구 충정로1가 75-10 ~ 정동 27-3
- 3) 사업의 규모 : 보행로 신설 및 정비(폭원 2~3m, 길이 138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9.12.31.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중구 정동 27-44	학	64.1	64.1	서울특별시 (교육감)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02-2133-8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98호(1971.04.0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건설부고시 제232호(1979.06.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재결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916호(2019.08.22.)로 실시계획을 열람 공고 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도봉로(도봉동 364-3~368-5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도봉로(도봉동 364-3~368-5간)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봉구 도봉동 364-3~368-5간

다. 사업규모 및 내용

- 폭 40m, 연장 120m 보도확장(정비)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9.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별첨)

토 지 조 서

사 업 명 : 도봉로(도봉동 364-3~368-5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도봉동 378-1	도	3,772	1,331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2	도봉동 364-2	도	1,786	1,786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3	도봉동 368-2	도	1,221	1,221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4	도봉동 364-3	답	350	350	여*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57-3				
5	도봉동 368-5	답	234	234	여*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57-3				
합 계				4,92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09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이문지구단위계획, 휘경2)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2016.9.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2018-218호(2018.7.19.), 제2019-19호(2019.1.17.), 제2019-103호(2019.3.21.), 제2019-163호(2019.5.23.), 제2019-241호(2019.7.25.), 제2019-264호(2019.8.08.), 제2019-280호(2019.8.22.)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830,453.0	감) 29,210.7	801,242.3	

※ 변경사유

- 1) 휘경2구역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2)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와의 단절로 인한 연계성 상실에 따른 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촉진지구에서 제적 (촉진지구에서 제적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유지)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2년 (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

-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 2) 개발방향 : 변경 없음

3) 주요지표 설정 : 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인구 및 가구	인구	38,073 인	40,355인	-
	세대수	17,385 세대 (2.19인/세대)	17,505세대 (2.30인/세대)	• 세대수 현황 - 1인 세대 : 46.2% - 2인 세대 : 17.3%
	주택호수	7,885호	17,505호	-
기반시설	도로	15.8%	16.6%	•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공원녹지	0.3% (세대당 0.2㎡)	6.6% (세대당 3.11㎡)	• 어린이공원(5개소), 소공원(5개소),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 휘경2구역 녹지 84.9㎡ 증가, 공원 24.3㎡ 증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교육시설	초등학교	1개소	1개소	• 1개소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공공편익시설	공공청사	4개소	3개소	• 휘경1동 동사무소 존치 • 건강증진센터 및 이문1동 주민센터이전 설치 (이문3-1구역)
	복합커뮤니티센터	-	4개소	• 생활권단위별 노인복지, 유아보육, 주민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설치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830,453.0	감) 29,210.7	801,242.3	100.0	-
주거 용지	소 계	460,111.3	증) 220.7	460,332.0	57.5	-
	공동주택	441,452.8	증) 215.1	441,667.9	55.1	중앙·삼익·금호(사업완료) 포함
	주상복합	11,621.5	-	11,621.5	1.5	KCC 웰츠타워 등
	종교시설	7,037.0	증) 5.6	7,042.6	0.9	7개
근생 용지	소 계	108,340.0	감) 23,536.0	84,804.0	10.6	-
	상업업무	108,340.0	감) 23,536.0	84,804.0	10.6	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62,001.7	감) 5,895.4	256,106.3	32.0	-
	도 로	137,939.2	감) 4,576.8	133,362.4	16.6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철 도	44,322.5	-	44,322.5	5.5	-
	공 원	33,785.0	증) 24.3	33,809.3	4.2	-
	녹 지	20,534.0	증) 84.9	20,618.9	2.6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학 교	8,000.0	-	8,000.0	1.1	초등학교 1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7,780.0	-	7,780.0	0.9	4개소
	공공청사 등	6,267.0	감) 5.8	6,261.2	0.8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설비
	주 차 장	3,374.0	감) 1,422.0	1,952.0	0.2	지하주차장2개소(3,175㎡) 중 1개소 중복결정면적(2,000㎡) 제외

※ 변경사유

- 1) 휘경2구역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2) 종교시설 개수 오기 정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3) 이문·회기 재정비촉진지구와의 단절로 인한 연계성 상실에 따른 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촉진지구에서 제척 (촉진지구에서 제척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유지)

2) 인구·주택수용계획

■ 규모별 주택수용계획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촉진 구역	소 계	17,505	-	17,505	40,355	-	40,355	-
	60㎡ 이하	12,825	-	12,825	29,498	-	29,498	미취사가구 수용 - 20㎡(200호), 30㎡(100호)
	60㎡~85㎡	7,606	-	7,606	17,494	-	17,494	-
	85㎡ 초과	4,203	-	4,203	9,667	-	9,667	-
존치 구역	소 계	1,016	-	1,016	2,337	-	2,337	-
	단독주택	4,680	감) 300	4,380	10,857	감) 690	10,167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3,065	-	3,065	7,185	-	7,185	존치건축물 청년주택 신축
합 계		1,615	-	1,615	3,672	-	3,672	-

주) 세대당 인구 2.3인 적용(미취사가구 수용주택 별도 적용)

※ 변경사유 : 이문취경재정비촉진지구외의 단절로 인한 연계성 상실에 따른 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촉진지구에서 제척
(촉진지구에서 제척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유지)

3) 기반시설 설치계획(문화·복지시설 등) : (변경 없음, 생략)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6	-	16	54,397.0	증) 109.2	54,506.2	
공원 시설	소 계	10	-	10	33,785.0	증) 24.3	33,809.3	
	근린공원	-	-	-	-	-	-	
	어린이공원	5	-	5	14,853.0	증) 24.3	14,877.3	
	소공원	5	-	5	18,932.0	-	18,932.0	
녹지 시설	소 계	6	-	6	20,612.0	증) 84.9	20,696.9	
	연결녹지	3	-	3	9,108.0	증) 84.9	9,192.9	
	완충녹지	3	-	3	11,494.0	-	11,494.0	

※ 변경사유 : 환경2구역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5) 교통계획 : (변경 없음, 생략)

6) 경관계획 : (변경 없음, 생략)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없음, 생략)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촉진지구		830,453.00	감) 29,210.7	801,242.30	100.0	
촉진구역		571,708.00	증) 356.3	572,064.30	71.4	
이문1구역		144,964.00	-	144,964.00	18.1	
이문3구역		154,746.00	-	154,746.00	19.3	결합개발 구역
이문3-1구역		133,505.00	-	133,505.00	16.7	구역지정 요건완화, 역세권
이문3-2구역		21,241.00	-	21,241.00	2.7	구릉지
이문4구역		151,388.00	-	151,388.00	18.9	
휘경1구역		12,915.00	-	12,915.00	1.6	정비구역 기지정
휘경2구역		43,329.00	증) 356.3	43,685.30	5.5	
휘경3구역		64,366.00	-	64,366.00	8.0	
존치지역		258,745.00	감) 29,567.0	229,178.00	28.6	
지구단위 계획구역	소 계	185,567.00	감) 29,567.0	156,000.00	19.5	
	①	29,567.00	감) 29,567.0	-	-	-
	②	67,135.00	-	67,135.00	8.4	이문지구단위계획
	③	88,865.00	-	88,865.00	11.1	회기지구단위계획 (촉진지구 내)
존치시설 및 건축물	소 계	73,178.00	-	73,178.00	9.1	
	④	-	-	-	-	이문초등학교
	⑤	4,877.00	-	4,877.00	0.6	웰츠타워(주상복합) 등
	⑥	12,993.00	-	12,993.00	1.6	이문로
	⑦	11,776.00	-	11,776.00	1.5	중앙하이츠 아파트
	⑧	17,038.00	-	17,038.00	2.1	경원선
	⑨	8,446.00	-	8,446.00	1.1	삼익아파트
	⑩	1,319.00	-	1,319.00	0.2	빛물품프장(방수설비)
	⑪	7,249.00	-	7,249.00	0.9	중앙선
	⑫	6,284.00	-	6,284.00	0.8	기타 존치건축물
	⑬	3,196.00	-	3,196.00	0.4	이문동 교회

※ 변경사유

- 1) 휘경2구역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2)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와의 단절로 인한 연계성 상실에 따른 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촉진지구에서 제척 (촉진지구에서 제척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유지)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830,453.0	감) 29,210.7	801,242.3	100.0	
주거지역	소 계	819,594.0	감) 29,210.7	790,383.3	98.6	
	제1종 일반주거지역	21,241.0		21,241.0	2.7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125,996.0	감) 2,960.6	123,035.4	15.4	
	제2종 일반주거지역	388,866.0	증) 141.2	389,007.2	48.6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2,143.0	증) 215.1	152,358.1	19.0	
	준주거지역	131,348.0	감) 26,606.4	104,741.6	13.1	
상업지역	소 계	10,859.0		10,859.0	1.4	
	일반상업지역	10,859.0		10,859.0	1.4	

※ 변경사유

- 1) 휘경2구역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2)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와의 단절로 인한 연계성 상실에 따른 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촉진지구에서 제척 (촉진지구에서 제척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유지)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없음)

구역명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기준	상한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이문1재정비 촉진구역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47.64% 이하	30%이하	18.8이하/ 27이하	103이하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	-	-	-	-	-
이문3-1		공동주택 및 비주거	210%	477.80% 이하	45%이하	35이하/ 50이하	185이하
이문3-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70%	75% 이하	40%이하	-/4이하	20이하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이하	30%이하	19이하/ 30이하	112이하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0%	265% 이하	30%이하	19이하/ 20이하	78이하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 이하	30%이하	25이하/ 30이하	112이하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 이하	30%이하	26이하/ 35이하	118이하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없음, 생략)

12) 임대주택 건설 등의 주거대책 : (변경 없음)

구역명	전체 세대수	임대주택 (공공임대)					
		합계	40㎡ 이하	40~50㎡이하	50~60㎡이하	60~85㎡이하	85㎡ 초과
이문1	3,071	541	236	249	56	-	-
이문3	4,321	1,295(669)	504(182)	647(393)	144(94)	-	-
이문3-1	4,169	1,295(669)	504(182)	647(393)	89(94)	-	-
이문3-2	152	-	-	-	-	-	-
이문4	2,442	458	253	164	41	-	-
회경1	299	51	21	23	7	-	-
회경2	900	174(25)	70	61	34(16)	7(7)	2(2)
회경3	1,792	431(168)	285(168)	95	51	-	-
합계	12,825	2,950(862)	1,369(350)	1,239(393)	333(110)	7(7)	2(2)

주) ()는 공공임대주택

13)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생략)

14) 기타계획(에너지순환, 방재, 특성화계획) : (변경 없음, 생략)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 없음, 생략)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생략)

17) 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

가. 회경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회경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회경동 128-12번지 일대	43,329.0	증) 356.3	43,685.3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3,329.0	증) 356.3	43,685.3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751.0	증) 141.4	13,892.4	31.8	－
	도 로	6,921.0	증) 32.2	6,953.2	15.9	－
	공 원	3,402.0	증) 24.3	3,426.3	7.8	－
	녹 지	3,428.0	증) 84.9	3,512.9	8.0	－
택 지 (획지)	소 계	29,578.0	증) 214.9	29,792.9	68.2	－
	6-1	28,587.0	증) 215.1	28,802.1	65.9	공동주택
	6-2	178.0	증) 5.6	183.6	0.4	종교시설
	6-3	813.0	감) 5.8	807.2	1.8	공공청사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0	21.3	집산 도로	595 (157)	이문동 288-65번지	휘경동 147-6번지	일반 도로		내고 23 (1952.3.25)	
기정	중로	1	435	20	특수 도로	185	휘경동 147-6번지	휘경동 119-46번지	보행자 도로		내고 23 (1952.3.25)	
기정	중로	2	142	15~20	집산 도로	427 (178)	휘경2동 42-4번지	휘경동 139-27번지	일반 도로		건고 46 (1976.4.7)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축진지구 내 연장을 의미함

◦ 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㉔	녹지	연결녹지	휘경동 140-18일원	3,428.0	증) 84.9	3,512.9	서고2007-496 (’08.1.7)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㉔	아름공원	어린이공원	휘경동 118-10 일원	3,402.0	증) 24.3	3,426.3	서고2007-496 (’08.1.7)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㉔	공공청사	동사무소	휘경동 135-9번지	813.0	감) 5.8	807.2	동고 107 (1997.11.6)	휘경1동 동사무소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휘경2 재정비 축진구역	43,329.0	-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28-12번지 일대	319	-	-	319	-	-
변경	휘경2 재정비 축진구역	43,685.3	-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28-12번지 일대	319	-	-	319	-	-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휘경2 재정비 촉진구역	43,329.0	6-1	28,587.0	동대문구 휘경동 131-31번지 일대	85,6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300 이하	30층이하 (112m이하)
			6-2	178.0	동대문구 휘경동 131-75번지 일대	356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6-3	803.0	동대문구 휘경동 135-9번지 일대	1,606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
변경	휘경2 재정비 촉진구역	43,685.3	6-1	28,802.1	동대문구 휘경동 131-31번지 일대	85,6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300 이하	30층이하 (112m이하)
			6-2	183.6	동대문구 휘경동 131-75번지 일대	356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6-3	807.2	동대문구 휘경동 135-9번지 일대	1,606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900세대 [임대 149세대, 장기전세 25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489세대(54.3%) - 전용면적 60~85㎡이하 : 355세대(39.5%) - 전용면적 85㎡초과 : 56세대(6.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앙선 철로변 : 10m • 기타 도로변 : 6m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변경)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임대	장기전세		
기정	휘경2재정비 촉진구역 내	28,587.0	-	9,326.5	70(7.8%)	-	40㎡미만	-
					61(6.8%)	-	40 ~ 50㎡ 미만	
					18(2.0%)	16(1.8%)	50 ~ 60㎡ 미만	
					-	7(0.8%)	60 ~ 85㎡ 미만	
					-	2(0.2%)	85㎡ 초과	
					전체: 149세대(16.6%)	전체 : 25세대(2.8%)	-	
변경	휘경2재정비 촉진구역 내	28,802.1	-	9,326.5	70(7.8%)	-	40㎡미만	-
					61(6.8%)	-	40 ~ 50㎡ 미만	
					18(2.0%)	16(1.8%)	50 ~ 60㎡ 미만	
					-	7(0.8%)	60 ~ 85㎡ 미만	
					-	2(0.2%)	85㎡ 초과	
					전체: 149세대(16.6%)	전체 : 25세대(2.8%)	-	

※ 세대수 항목의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임대주택(149세대), 장기전세(25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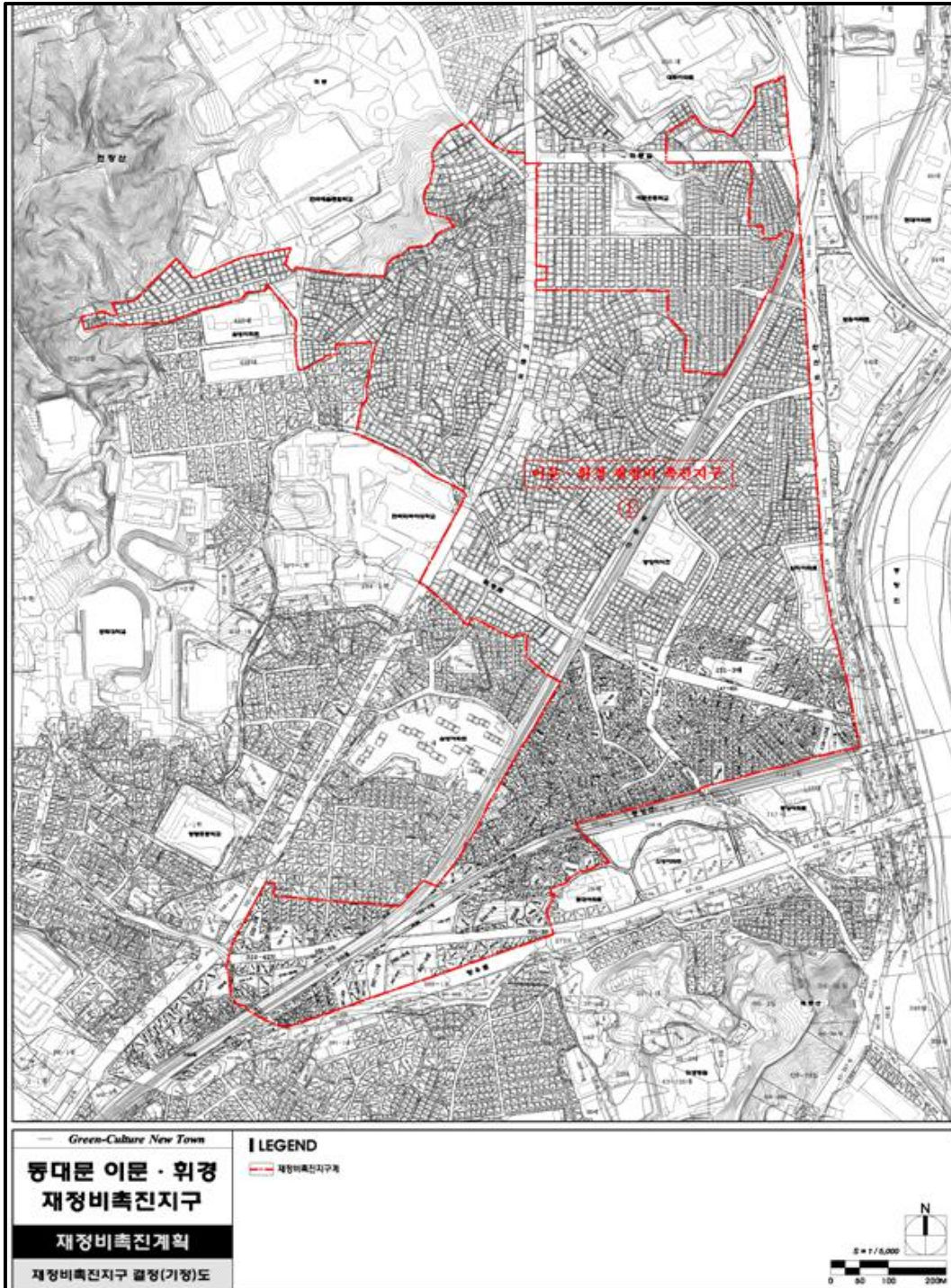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내용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에 명시
6.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 참조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9)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02-2127-4578)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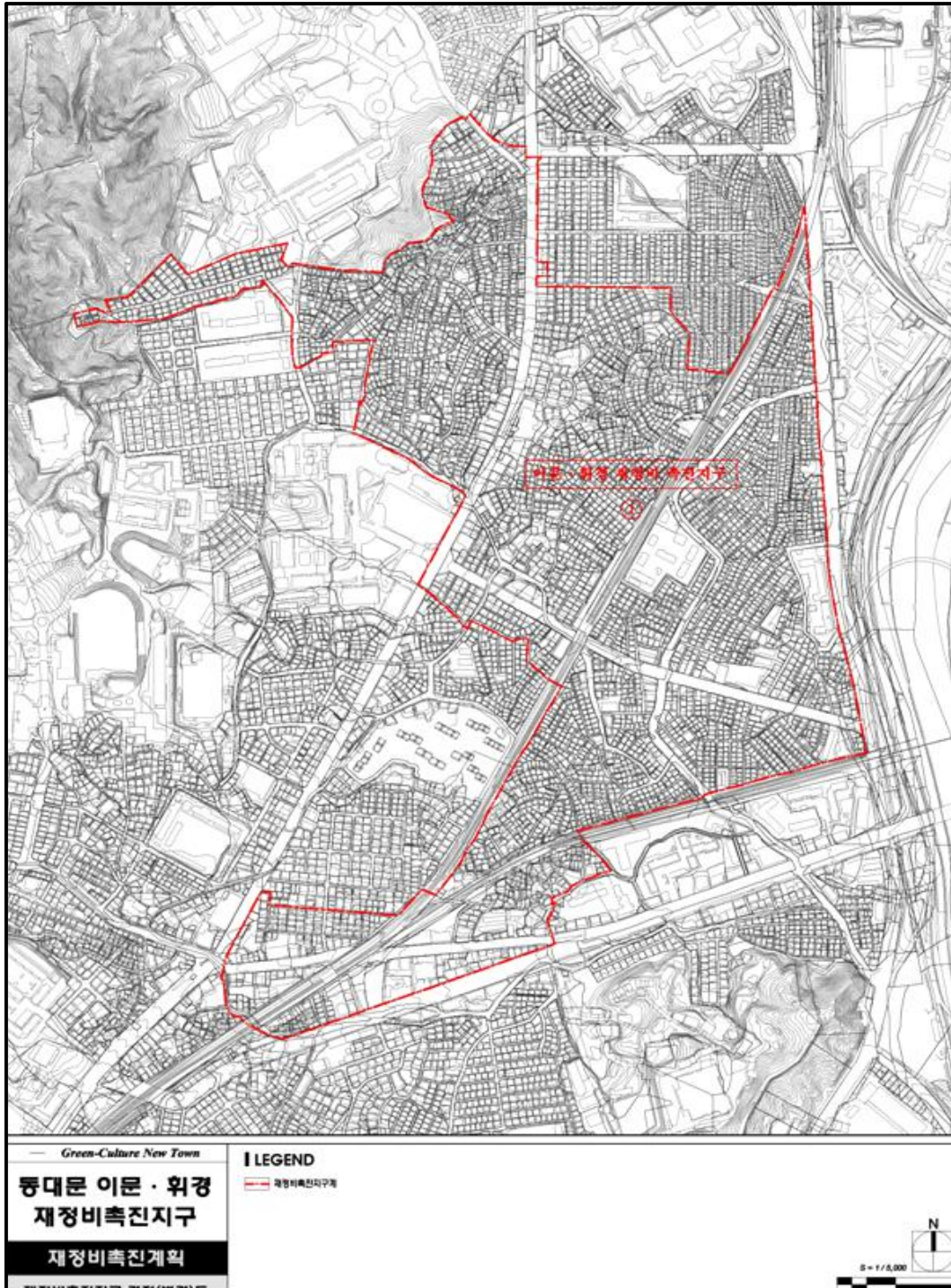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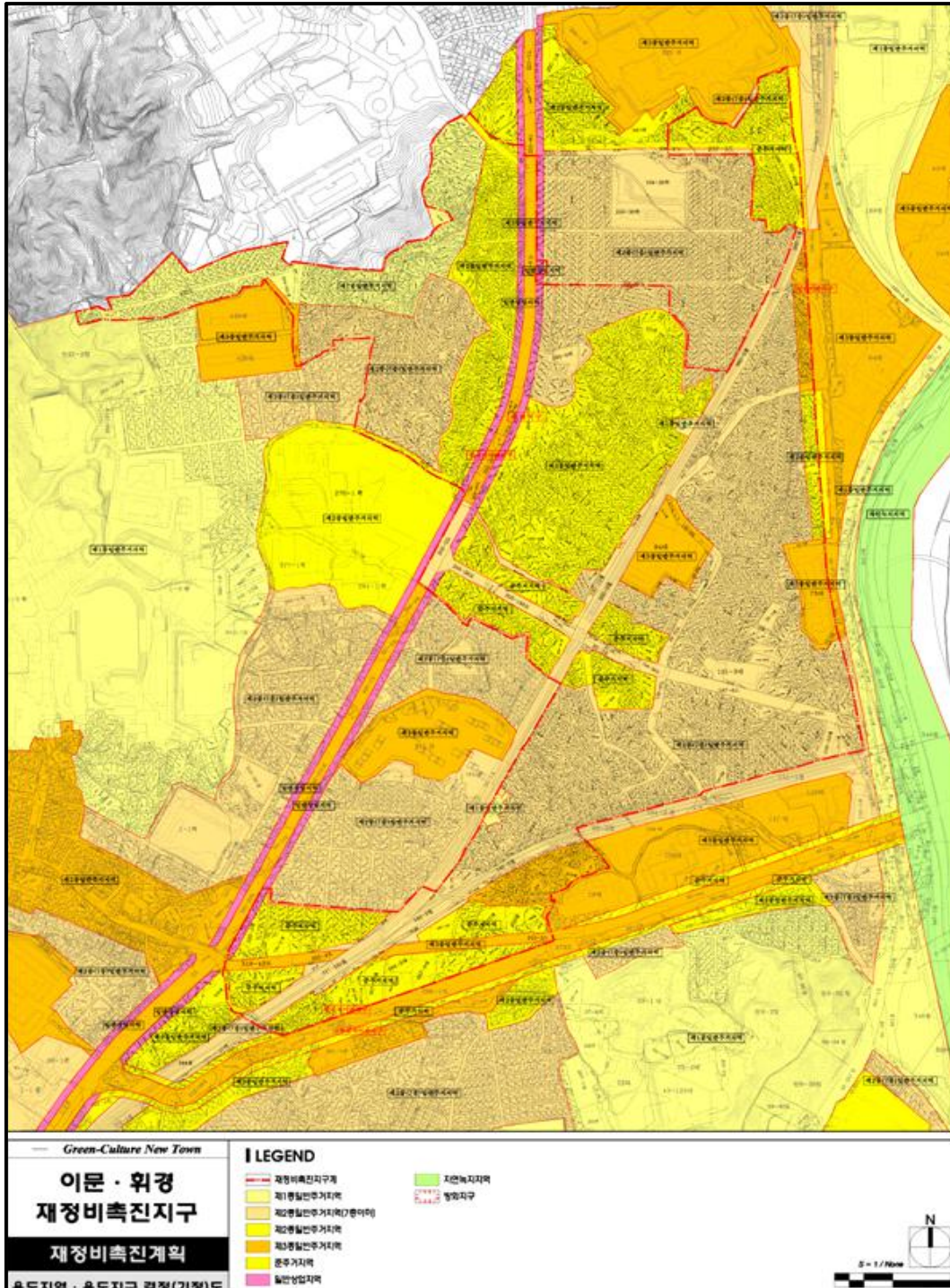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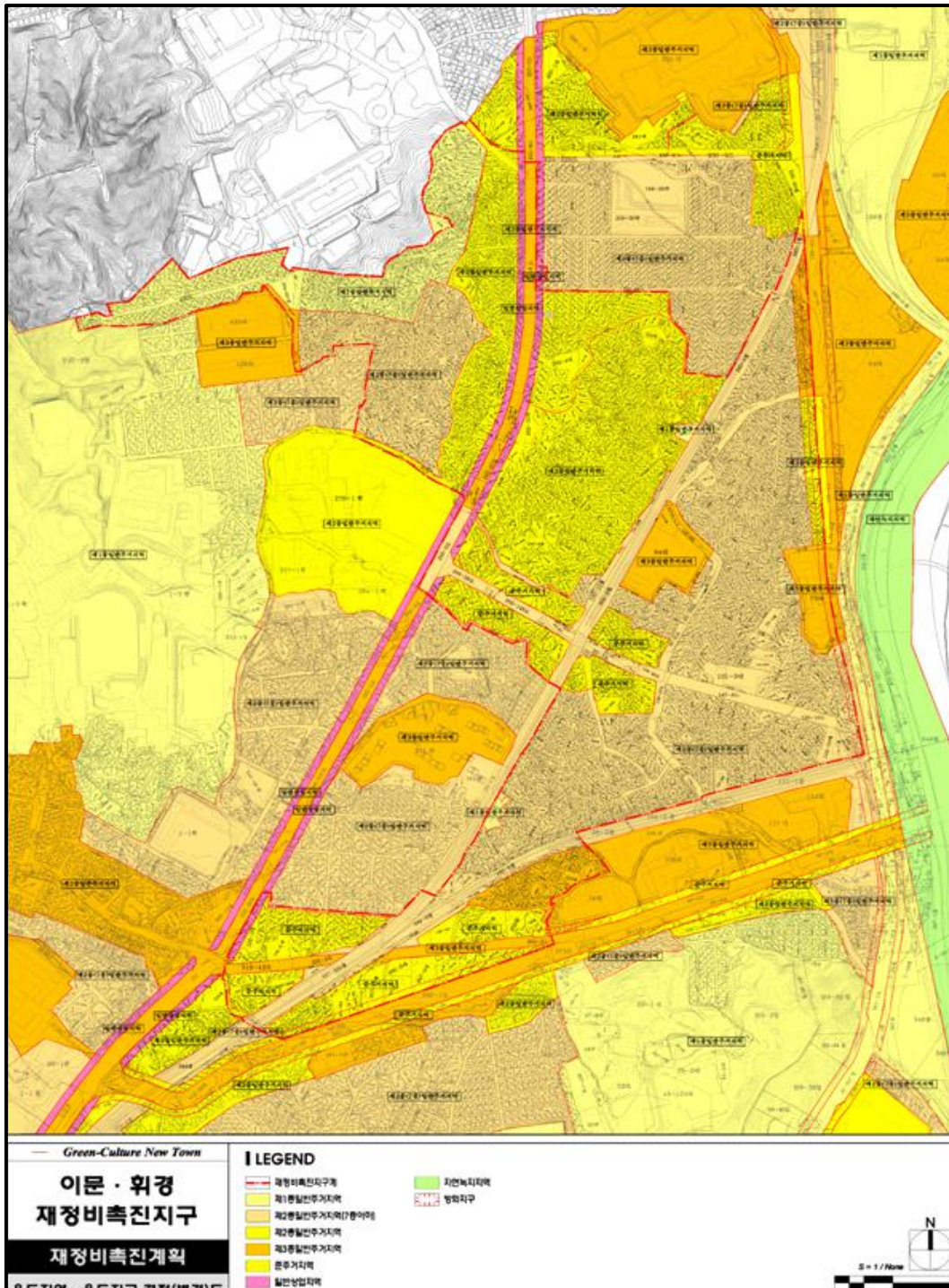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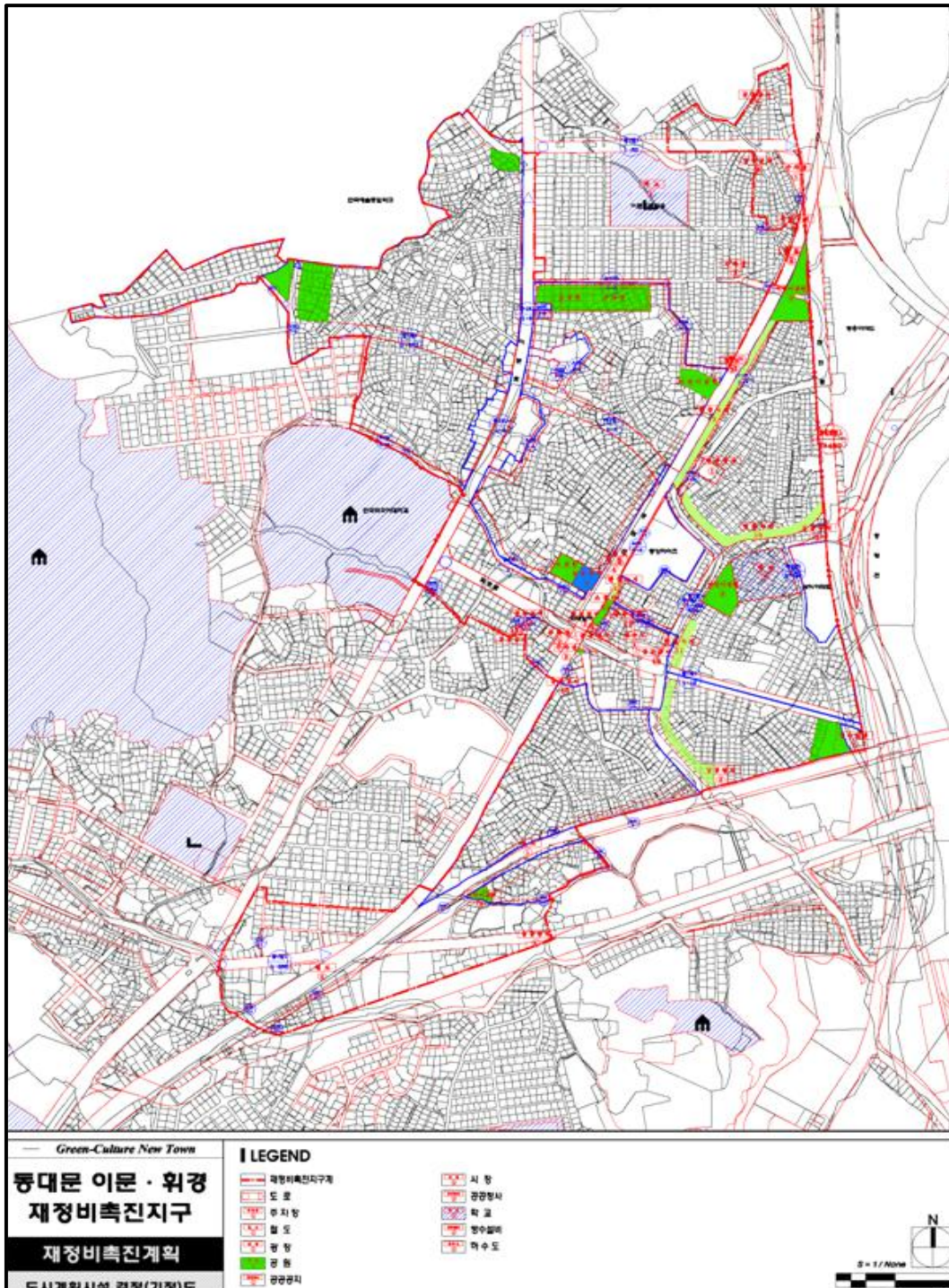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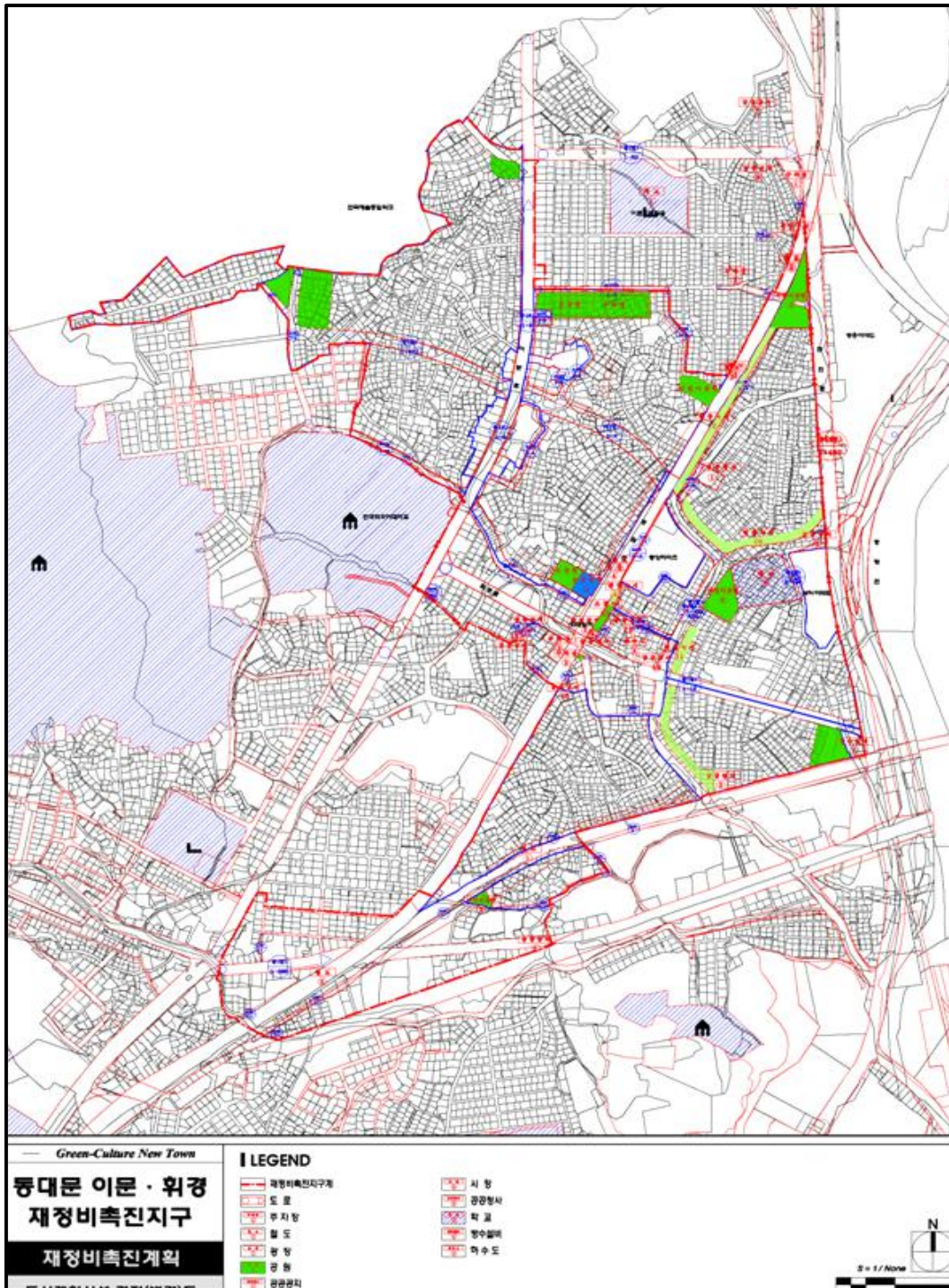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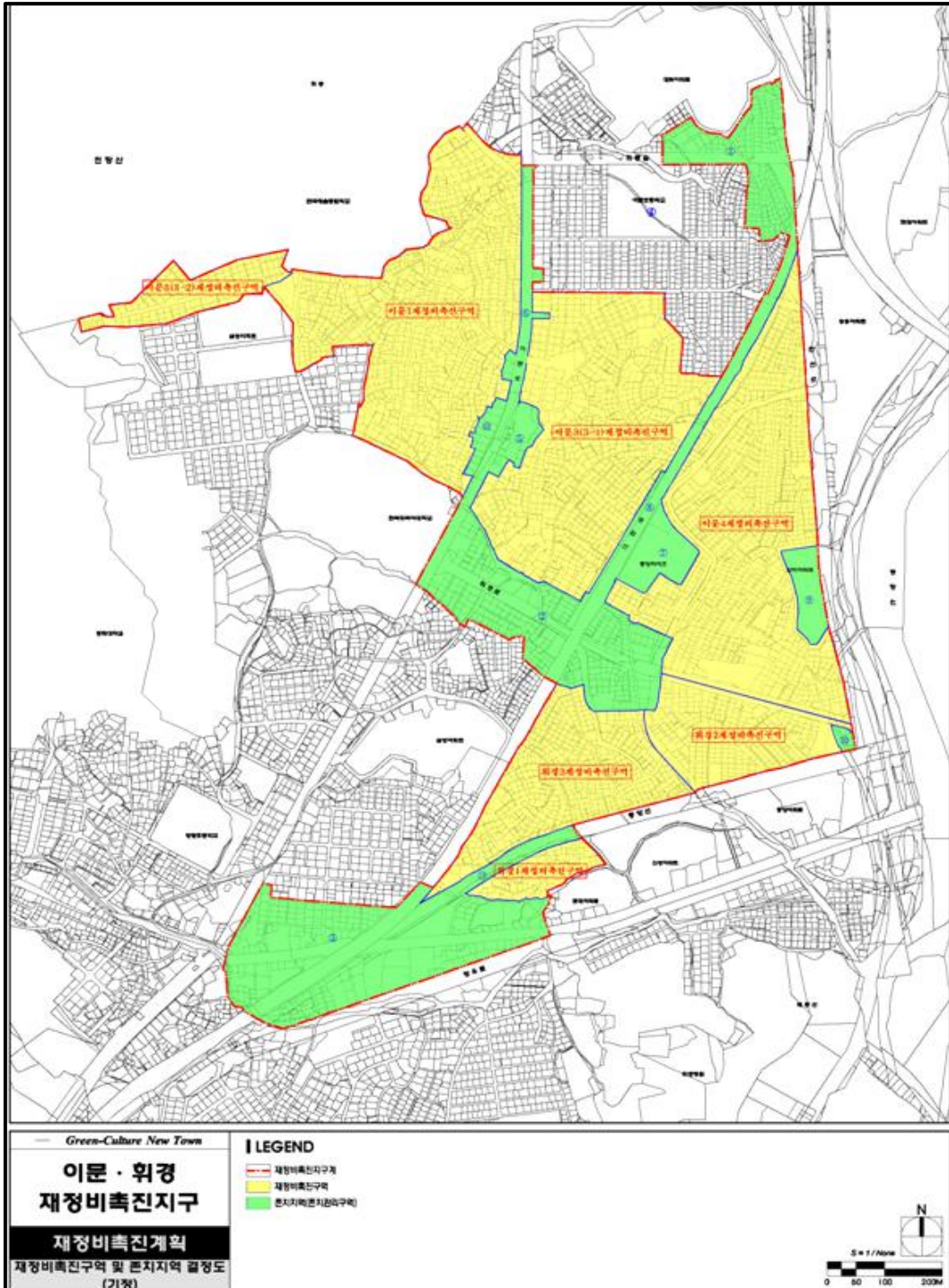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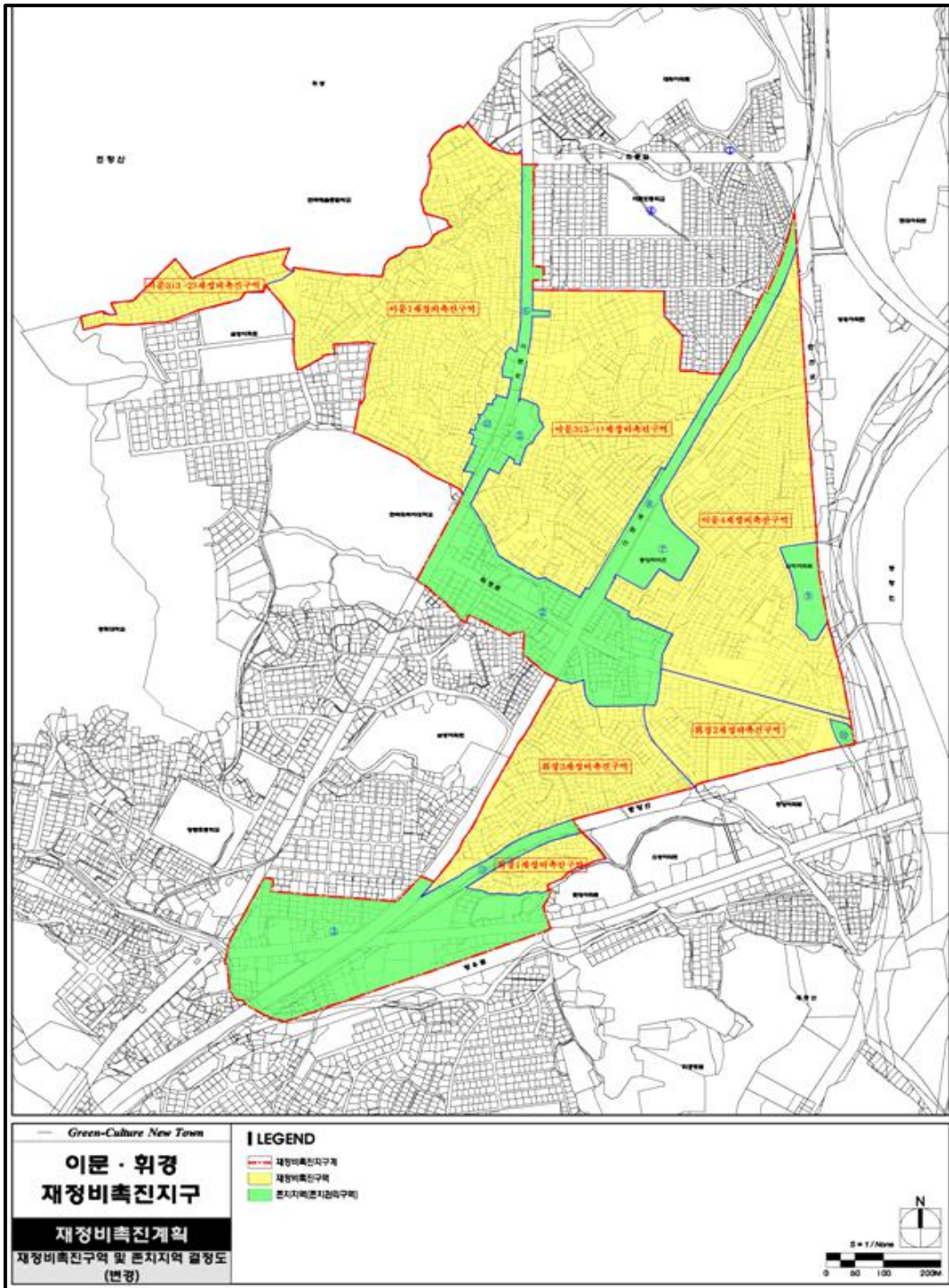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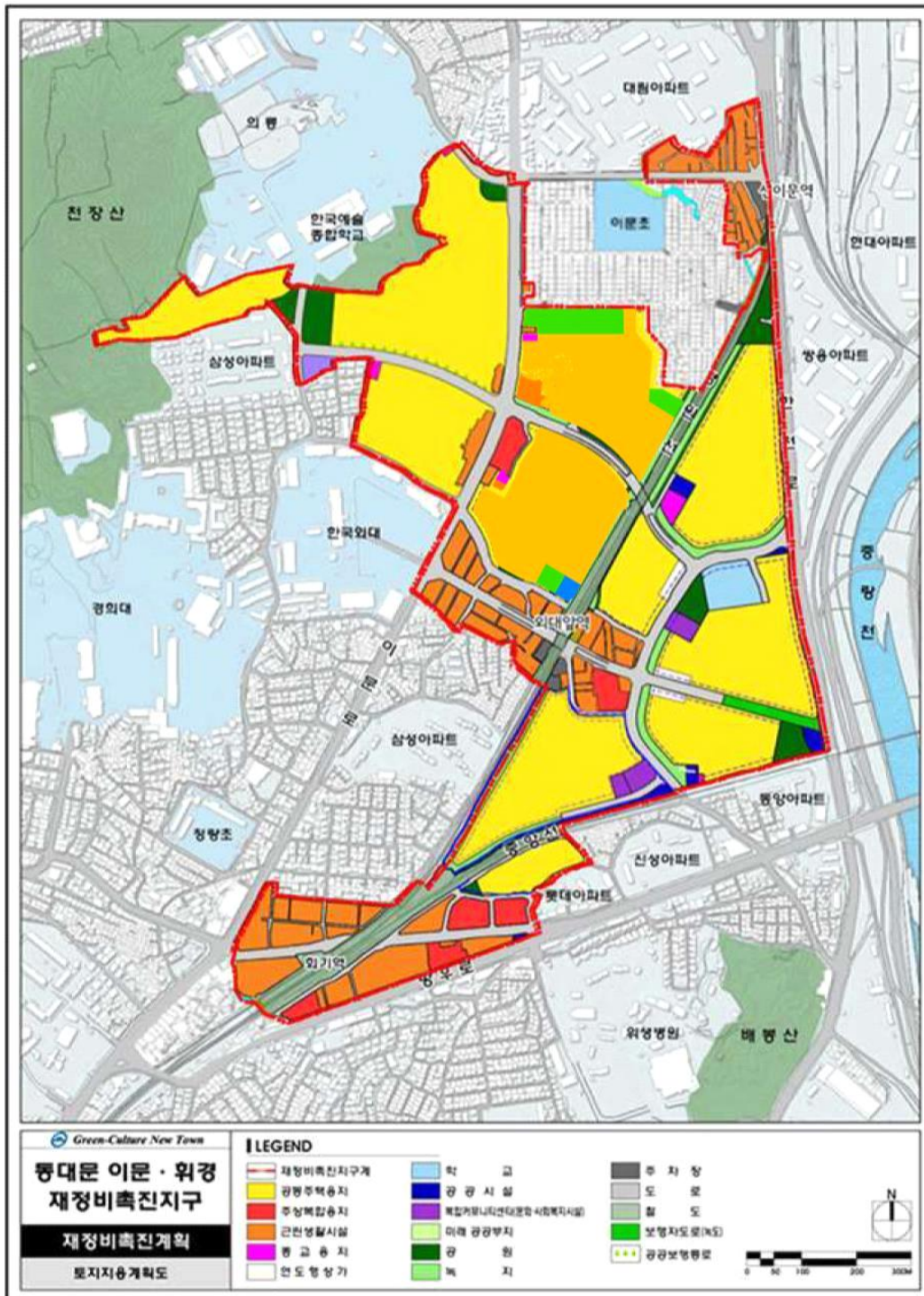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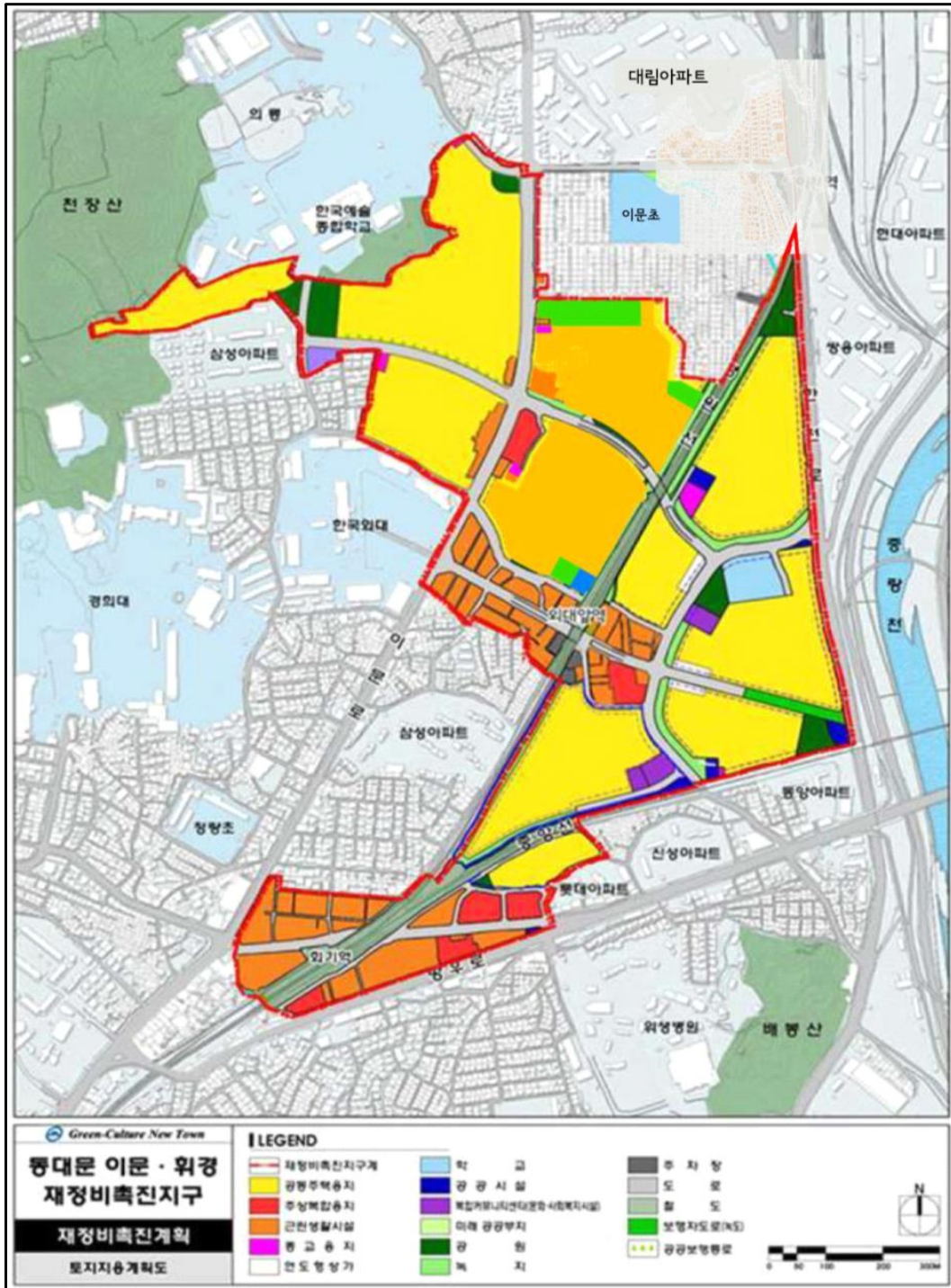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결정도(변경)]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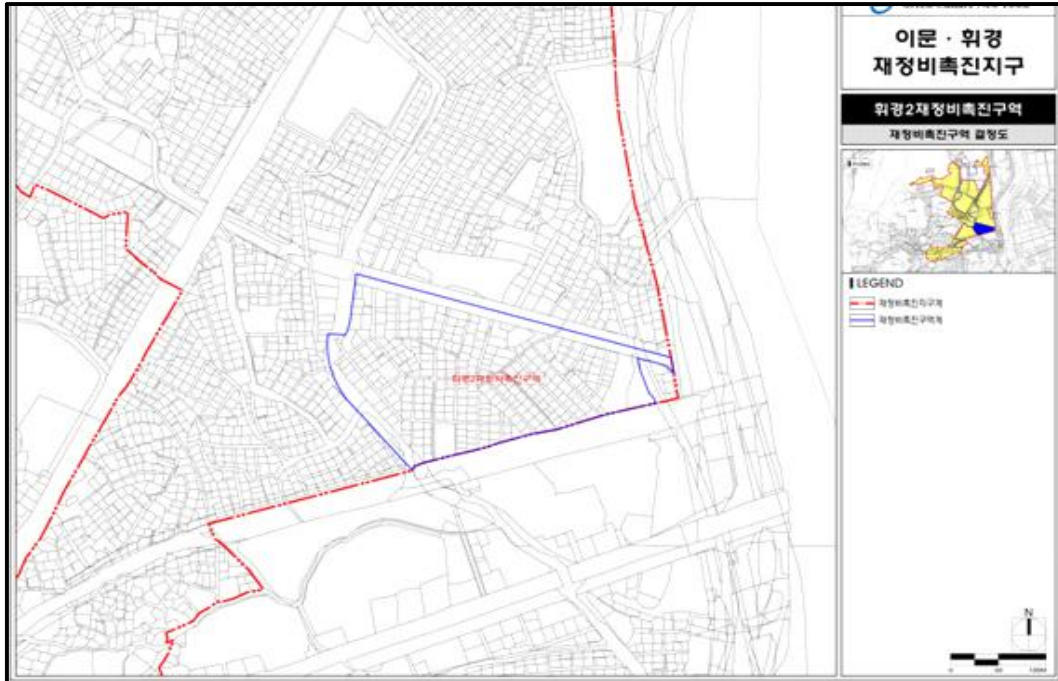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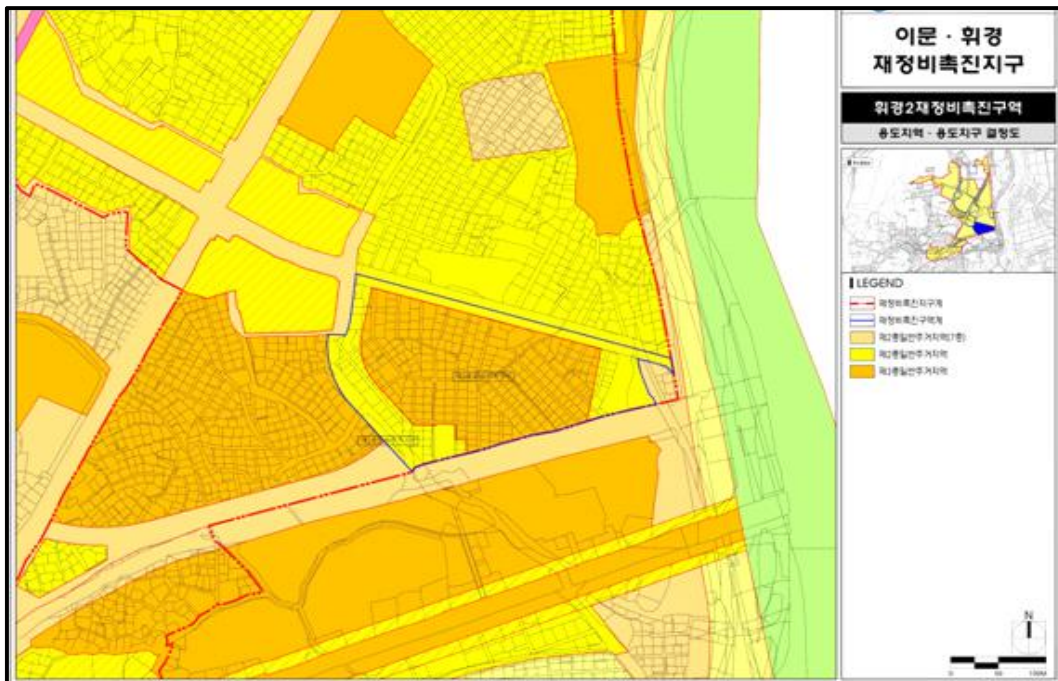


■ 관련도면(휘경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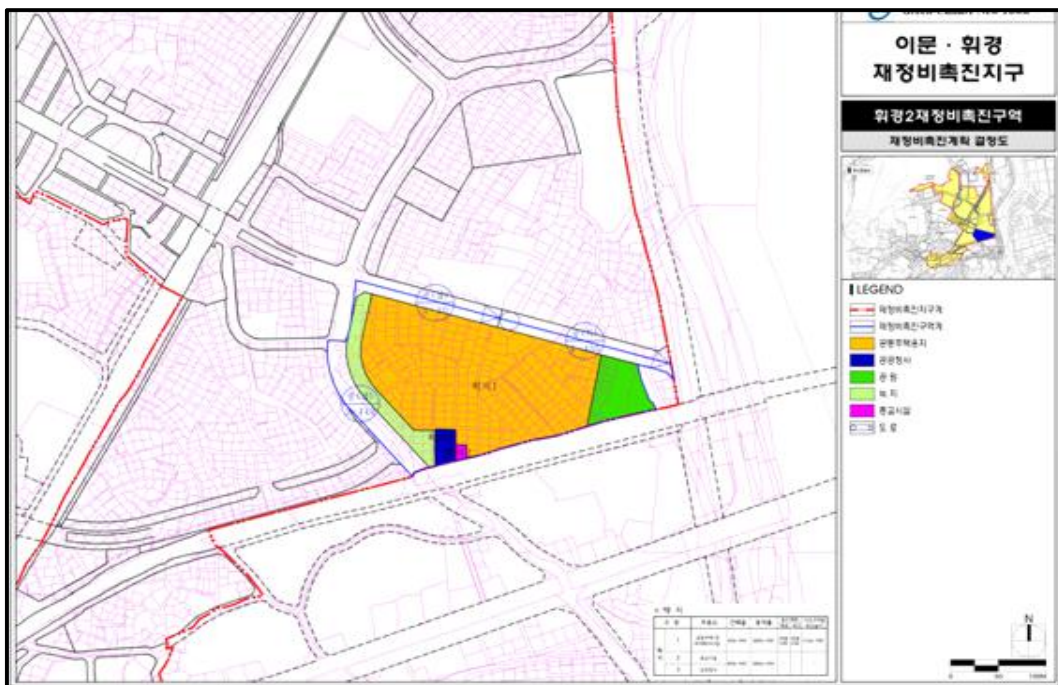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0호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11호(2018.12.20.)로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봉은역사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선불당 구들 복원'과 관련 선불당 굴뚝 설치 면적을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대**3. 면 적 : 75,405㎡**

- 선불당 : 272.01㎡ → 275.08㎡(3.07㎡)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6) 및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4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반 시설	계	75,405.00	33,613.54	26	7,383.00	27,212.03	130	75,405.00	33,616.61	26	7,383.00	27,212.03	131	
	소계	11,531.99	11,531.99	-	-	-	-	11,531.99	11,531.99	-	-	-	-	
	도로	5,754.50	5,754.50	-	-	-	-	5,754.50	5,754.50	-	-	-	-	
	광장	5,777.49	5,777.49	-	-	-	-	5,777.49	5,777.49	-	-	-	-	
	조경시설	1,943.19	1,943.19	-	-	-	-	1,943.19	1,943.19	-	-	-	-	
	휴양시설	-	-	-	-	-	100	-	-	-	-	-	100	
	운동시설	2,768.05	2,768.05	1	54.00	54.00	-	2,768.05	2,768.05	1	54.00	54.00	-	
	교양시설	3,714.25	3,714.25	1	3,477.75	18,730.87	-	3,714.25	3,714.25	1	3,477.75	18,730.87	-	
	편익시설	5,006.69	5,006.69	-	-	-	-	5,006.69	5,006.69	-	-	-	-	
	관리시설	-	-	-	-	-	30	-	-	-	-	-	30	
	그밖의 시설 (전통사찰)	8,649.37	8,649.37	24	3,851.25	8,427.16	-	8,652.44	8,652.44	24	3,851.25	8,427.16	1	증)3.07
	녹지 및 기타	41,791.46	-	-	-	-	-	41,788.39	-	-	-	-	-	감)3.07
	시설률	33,613.54 ÷ 75,405.00 × 100 =44.58% (법정 제한없음)						33,616.66 ÷ 75,405.00 × 100 =44.58% (법정 제한없음)						
	건폐율	7,383.00 ÷ 75,405.00 × 100 = 9.79%(법정 20%이하)						7,383.00 ÷ 75,405.00 × 100 = 9.79%(법정 20%이하)						

2. 시설조서

구 분	면 적						면 적						면 적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75,405.00	33,613.54	-	26	7,383.00	27,212.03	130			75,405.00	33,616.61	-	26	7,383.00	27,212.03	131	
기	소계		11,531.99	11,531.99	-	-	-	-	-			11,531.99	11,531.99	-	-	-	-	-	
	도로	전지역	5,754.50	5,754.50	-	-	-	-	-		전지역	5,754.50	5,754.50	-	-	-	-	-	
	광장 가	(6개소)	5,777.49	5,777.49	-	-	-	-	-	가	(6개소)	5,777.49	5,777.49	-	-	-	-	-	
	광장 1	가-1 삼성73	792.83	792.83	-	-	-	-	-	가-1	삼성73	792.83	792.83	-	-	-	-	-	
	광장 2	가-2 삼성73	806.88	806.88	-	-	-	-	-	가-2	삼성73	806.88	806.88	-	-	-	-	-	
	광장 3	가-3 삼성73	1,485.45	1,485.45	-	-	-	-	-	가-3	삼성73	1,485.45	1,485.45	-	-	-	-	-	
사	광장 4	가-4 삼성73	1,360.58	1,360.58	-	-	-	-	-	가-4	삼성73	1,360.58	1,360.58	-	-	-	-	-	
	광장 5	가-5 삼성73	1,000.53	1,000.53	-	-	-	-	-	가-5	삼성73	1,000.53	1,000.53	-	-	-	-	-	
	광장 6	가-6 삼성73	331.22	331.22	-	-	-	-	-	가-6	삼성73	331.22	331.22	-	-	-	-	-	
	소계		1,943.19	1,943.19	-	-	-	-	-			1,943.19	1,943.19	-	-	-	-	-	
	연못	나 삼성73	282.00	282.00	-	-	-	-	-	나	삼성73	282.00	282.00	-	-	-	-	-	
	휴게소 1	나-1 삼성75	639.07	639.07	-	-	-	-	-	나-1	삼성75	639.07	639.07	-	-	-	-	-	
조경	휴게소 2	나-2 삼성73	650.95	650.95	-	-	-	-	-	나-2	삼성73	650.95	650.95	-	-	-	-	-	
	실개천 1	삼성73	371.17	371.17	-	-	-	-	-	1	삼성73	371.17	371.17	-	-	-	-	-	
	소계		-	-	-	-	-	-	100		전지역	-	-	-	-	-	-	100	
	정원자	전지역	-	-	-	-	-	-	100		전지역	-	-	-	-	-	-	100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계			2,768.05	2,768.05	-	1	54.00	54.00	-		2,768.05	2,768.05	-	1	54.00	54.00	-		
	테니스장	다	삼성75	2,146.22	2,146.22	조적조	지상1	54.00 (탈의동)	54.00 (탈의동)	-	다	삼성75	2,146.22	2,146.22	조적조	지상1	54.00 (탈의동)	54.00 (탈의동)	-	
	베드민턴장	라	삼성75	621.83	621.83	-	-	-	-	-	라	삼성75	621.83	621.83	-	-	-	-	-	
교양시설	소계			3,714.25	3,714.25	-	1	3,477.75	18,730.87	-		3,714.25	3,714.25	-	1	3,477.75	18,730.87	-		
	문화회관	2	삼성73	3,714.25	3,714.25	R.C조	(지상3) (지하4)	3,477.75	18,730.87	-	2	삼성73	3,714.25	3,714.25	R.C조	(지상3) (지하4)	3,477.75	18,730.87	-	
편의시설	소계			5,006.69	5,006.69	-	-	-	-	-		5,006.69	5,006.69	-	-	-	-	-	-	
	주차장	마	(2개소)	5,006.69	5,006.69	-	-	-	-	-	마	(2개소)	5,006.69	5,006.69	-	-	-	-	-	
	주차장-1	마-1	삼성73	3,634.00	3,634.00	-	-	-	-	-	마-1	삼성73	3,634.00	3,634.00	-	-	-	-	-	
관리시설	주차장-2	마-2	삼성75	1,372.69	1,372.69	-	-	-	-	-	마-2	삼성75	1,372.69	1,372.69	-	-	-	-	-	
	소계			-	-	-	-	-	-	30		-	-	-	-	-	-	30		
	안내관		삼성73	-	-	-	-	-	-	1		삼성73	-	-	-	-	-	1		
외등시설	표지판		전지역	-	-	-	-	-	-	1		전지역	-	-	-	-	-	1		
	휴지통		전지역	-	-	-	-	-	-	15		전지역	-	-	-	-	-	15		
	외등시설		전지역	-	-	-	-	-	-	13		전지역	-	-	-	-	-	13		
하수도		전지역	-	-	-	1,600 (1식)	-	-	-	-		전지역	-	-	1,600 (1식)	-	-	-		

구 분	변 경 전 (역사공원)				변 경 후 (역사공원)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그밖에 시정 (전통 사찰)	소계	-	8,649.37	8,649.37	-	24	3,851.25	8,427.16	1
	미륵불 봉안지	바-1	삼성73	1,890.53	-	-	-	-	-
	진여문	바-2	삼성73	114.22	한식 목구조	지상1	114.22	114.22	-
	매 계	바-3	-	-	-	-	-	-	-
	응향각	-	삼성73	302.40	한식 목구조	(지상1) (지하1)	201.60 (455.12)	656.72 (201.60) (455.12)	-
	지장전	바-4	삼성73	299.55	한식 목구조	지상1	134.02	134.02	-
	선불당	바-5	삼성73	272.01	한식 목구조	지상1	195.00	195.00	증)3.07
	선불당 굴뚝	-	-	-	-	①	-	-	1
	삼검당	바-6	삼성73	137.10	한식 목구조	지상1	85.40	85.40	-
	미륵전	바-7	삼성73	180.29	한식 목구조	지상1	91.12	91.12	-
	관 전	바-8	삼성73	190.55	한식 목구조	지상1	117.60	117.60	-
	영산전	바-9	삼성73	50.10	한식 목구조	지상1	29.20	29.20	-
	북극보전	바-10	삼성73	34.89	한식 목구조	지상1	18.56	18.56	-
	은허당	바-11	삼성73	44.31	한식 목구조	지상1	30.10	30.10	-
	범종각	바-12	삼성73	15.21	한식 목구조	지상1	7.84	7.84	-
대응전	대래헌	바-13	삼성73	251.19	한식 목구조	지상1	150.66	150.66	-
	대응전	바-14	삼성73	472.20	한식 목구조	지상1	243.00	243.00	-

구 분	변 경 전 (근 린 공 원)						변 경 후 (역 사 공 원)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그밖예 시설 (전통 사찰)	법왕루	바-15	삼성73	831.02	831.02	한식 목구조	지상1	476.28	927.54	-	바-15	삼성73	831.02	831.02	한식 목구조	지상1	476.28	927.54	-	
	보우당	바-16	삼성73	1,722.79	1,722.79	한식 목구조	지상2	805.02	2,068.15	-	바-16	삼성73	1,722.79	1,722.79	한식 목구조	지상2	805.02	2,068.15	-	
	화장실	바-17	삼성73	-	-	R.O조	지하1	-	315.49	-	바-17	삼성73	-	-	R.O조	지하1	-	315.49	-	
	영 각	바-18	삼성73	78.50	78.50	한식 목구조	지상1	45.10	45.10	-	바-18	삼성73	78.50	78.50	한식 목구조	지상1	45.10	45.10	-	
	차문화 체험관	바-19	삼성73	213.45	213.45	한식 목구조	지상1	128.86	208.05 (113.01) (95.04)	-	바-19	삼성73	213.45	213.45	한식 목구조	지상1	128.86	208.05 (113.01) (95.04)	-	
	전통문화 체험관1 (봉향당)	바-20	삼성73	442.80	442.80	한식 목구조	(지상1) (지상2) (지하1) (지하2)	274.50 (126.00) (492.16) (448.20)	1,340.86 (274.50) (126.00) (492.16) (448.20)	-					한식 목구조	(지상1) (지상2) (지하1) (지하2)	274.50 (126.00) (492.16) (448.20)	1,340.86 (274.50) (126.00) (492.16) (448.20)	-	
	전통문화 체험관2 (목화원)	바-21	삼성73	395.55	395.55	한식 목구조	(지상1) (지상2) (지하1) (지하2)	243.00 (117.00) (351.00) (351.00)	1,062.00 (243.00) (117.00) (351.00) (351.00)	-	바-21	삼성73	395.55	395.55	한식 목구조	(지상1) (지상2) (지하1) (지하2)	243.00 (117.00) (351.00) (351.00)	1,062.00 (243.00) (117.00) (351.00) (351.00)	-	
	전통문화 체험관3 (비향원)	바-22	삼성73	298.62	298.62	한식 목구조	(지상1) (지하1)	214.92 (126.36)	341.28 (214.92) (126.36)	-	바-22	삼성73	298.62	298.62	한식 목구조	(지상1) (지하1)	214.92 (126.36)	341.28 (214.92) (126.36)	-	
	신종루	바-23	삼성73	62.26	62.26	한식 목구조	지상1	54.00	54.00	-	바-23	삼성73	62.26	62.26	한식 목구조	지상1	54.00	54.00	-	
	운하당 요사채	바-24	삼성73	186.12	186.12	한식 목구조	지상1	109.44	109.44	-	바-24	삼성73	186.12	186.12	한식 목구조	지상1	109.44	109.44	-	
회랑	바-25	삼성73	-	-	-	-	-	-	-	바-25	삼성73	-	-	-	-	-	-	-	-	
	메화당	바-25	삼성73	163.71	163.71	한식 목구조	지상1	81.81	81.81	-	바-25	삼성73	163.71	163.71	한식 목구조	지상1	81.81	81.81	-	
녹지 및 기타			41,791.46										41,788.39			지상1	81.81	81.81	-	합)3.07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1,583.50	5,754.50				
기정	중로	소 계				94.00	1,335.00			
기정	중로	2	1	15.0	69.00	1,035.00	보조진입로	후문	광장 가-3	
기정	중로	2	2	12.0	25.00	300.00	보조진입로	남측 구역계	주차장 마-1	
기정	소로	소 계				1,489.50	4,419.50			
기정	소로	2	2	8.0	81.00	648.00	진입로	진여문	법왕루	
기정		3	1	4.0	17.00	68.00	산책로	광장 가-4	광장 가-5	
기정		3	2	3.0	79.00	237.00	산책로	영각	지장전	
기정		3	3	3.5	61.00	213.50	산책로	소 3-2	소3-20	
기정		3	4	2.5	64.00	160.00	산책로	소 3-8	소 3-3	
기정		3	5	3.0	45.00	135.00	산책로	광장 가-5	문화회관	
기정		3	6	3.0	36.00	108.00	산책로	소 3-5	전통문화체험관3	
기정		3	7	2.0	140.00	280.00	산책로	소 3-8	소 3-6	
기정		3	8	4.0	19.00	76.00	산책로	광장 가-5	소 3-7	
기정		3	9	4.0	129.00	516.00	산책로	소 2-2	광장 가-4	
기정		3	10	4.0	25.00	100.00	소방도로	소 2-2	광장 가-6	
기정		3	11	6.0	67.00	402.00	산책로	소 3-9	소 3-9	
기정		3	12	5.5	36.00	198.00	진입로	중 2-1	주차장 마-1	
기정		3	13	4.5	53.00	238.50	산책로	광장 가-6	지장전 바-4	
		3	14							
기정		3	15	1.5	332.00	498.00	산책로	소 3-24	광장 가-6	
기정		3	16	3.0	23.00	69.00	산책로	소 3-13	광장 가-2	
기정		3	17	2.5	8.00	20.00	산책로	소 3-13	전통문화체험관2	
기정		3	18	2.0	11.50	23.00	산책로	지장전 바-4	전통문화체험관1	
기정		3	19	1.5	10.00	15.00	산책로	소 3-7	전통문화체험관3	
기정		3	20	2.0	70.00	140.00	산책로	소 3-3	소 3-15	
기정		3	21	1.5	14.00	21.00	산책로	소 3-24	소 3-15	
기정		3	22	1.5	31.00	46.50	산책로	소 3-4	소 3-24	
기정		3	23	1.5	5.00	7.50	산책로	소 3-3	소 3-22	
기정		3	24	1.5	133.00	199.50	산책로	소 3-17	소 3-20	

조성계획도 [변경 전]

복인역사공원



조성계회노회[민경회]하

하
다
사
공
이
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우수지, 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65호(2016.3.10.)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우수지, 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6호(2016.9.29.)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6호(2019.8.29.)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공사』에 대하여,
2. 측량 오차에 의한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우수지, 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경미한변경)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및 관악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우수지, 자동차정류장)
- 명 칭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공사

다. 사업규모 : 면적 (당초 : 14,458㎡, 변경 : 14,349㎡), 박차면수 101대, 저류조 35,000㎡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관리과(☎02-2133-2375) 및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3708-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도로, 자동차정류장, 유수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1	신림동산7-11	임야	289	289			서울특별시				
2	신림동산7-12	임야	14	14			서울특별시				
3	신림동산7-13	임야	7	7			서울특별시				
4	신림동산7-14	임야	8	8			서울특별시				
5	신림동산8-1	임야	7	7			서울특별시				
6	신림동산9-11	임야	515	515			서울특별시				
7	신림동산9-12	임야	37	37			서울특별시				
8	신림동산9-13	임야	293	293			서울특별시				
9	신림동산9-14	임야	157	157			서울특별시				
10	신림동산9-15	임야	389	389			서울특별시				
11	신림동산9-16	임야	313	313			서울특별시				
12	신림동136-16	전	17	17			서울특별시				
13	신림동136-17	전	117	117			관악구				
14	신림동136-18	전	80	80			국(기획재정부)				
15	신림동136-19	대	452	452			서울특별시				
16	신림동136-20	전	4	4			서울특별시				
17	신림동137-4	대	286	286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18	신림동138-1	대	43	43	7 분의 3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 759동2702호 (중산동, 하늘도시우미린2단지)	김춘희				
					7 분의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15, 208동1302호 (연남동, 하마비마을동일하이 빌2차(아))	김정희				
					7 분의 2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 759동2702호 (중산동, 하늘도시우미린2단지)	김태완				
19	신림동138-64	대	7	7	7 분의 3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 759동2702호 (중산동, 하늘도시우미린2단지)	김춘희				
					7 분의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15, 208동1302호 (연남동, 하마비마을동일하이 빌2차(아파트))	김정희				
					7 분의 2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 759동2702호 (중산동, 하늘도시우미린2단지)	김태완				
20	신림동138-65	전	6	6			서울특별시				
21	신림동138-67	잡종지	64	64			국(기획재정부)				
22	신림동138-68	전	104	104			국(기획재정부)				
23	신림동138-69	잡종지	26	26			서울특별시				
24	신림동138-22	대	133	133			서울특별시				
25	신림동138-23	잡종지	76	76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역	
26	신림동138-24	전	150	150			서울특별시				
27	신림동138-29	잡종지	170	170			서울특별시				
28	신림동138-30	잡종지	228	228			서울특별시				
29	신림동138-35	잡종지	37	37			서울특별시				
30	신림동138-47	잡종지	125	125			서울특별시				
31	신림동138-48	잡종지	21	21			서울특별시				
32	신림동138-76	잡종지	37	37			서울특별시				
33	신림동138-77	잡종지	39	39			서울특별시				
34	신림동138-78	잡종지	106	106			서울특별시				
35	신림동138-79	잡종지	62	62			서울특별시				
36	신림동 140-18	대	176	176			서울특별시				
37	신림동 140-19	대	25	25			서울특별시				
38	신림동 140-2	답	2,253	2,253			서울특별시				
39	신림동 140-20	도로	2	2			서울특별시				
40	신림동140-3	답	3,196	3,196			서울특별시				
41	신림동140-37	잡종지	124	124			서울특별시				
42	신림동 140-27	답	10	10			서울특별시				
43	신림동144-7	답	110	110			서울특별시				
44	신림동808-709	하천	64	64			국(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 용	
45	신림동808-710	하천	8	8			국(기획재정부)				
46	신림동808-711	하천	4	4			국(기획재정부)				
47	신림동809-3	도로	11	11			국(국토교통부)				
48	신림동136-5	전	6	6	11 분의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도동 363-118	변옥순				
					11 분의 10		서울특별시				
49	신림동136-10	대	53	53			서울특별시				
50	신림동136-15	전	3	3			서울특별시				
51	신림동138-4	대	13	13			서울특별시				
52	신림동138-21	잡종지	175	175			서울특별시				
53	신림동138-25	잡종지	159	159			서울특별시				
54	신림동138-26	잡종지	179	179	15 분의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18길 19, 403호(상봉동)	최치아				
					15 분의 5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162,1309동1001호 (옥정동, 율정마을1단지아파트)	최정아				
					15 분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23길 57-23,301호 (상계동, 미소힐타운)	장동이				
					15 분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23길 57-23,301호 (상계동, 미소힐타운)	최다니엘				
55	신림동138-27	잡종지	225	225			서울특별시				
56	신림동138-28	잡종지	152	15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가 281-36	김명란				
57	신림동138-45	잡종지	198	198			서울특별시				
58	신림동138-46	잡종지	119	119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용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역	
59	신림동140-5	대	185	185			서울특별시				
60	신림동140-24	담	102	102			서울특별시				
61	신림동140-25	담	66	66			서울특별시				
62	신림동140-26	담	46	46			서울특별시				
63	신림동140-34	담	49	49			서울특별시				
64	신림동141	전	188	188			서울특별시				
65	신림동산9-4	임야	5596	17	12397 분의 991.5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50, 806호 (아이리스오피스텔)	박재우		서울특별시 (강남순화도 고속도로)	구분지상 관설정 (1045㎡)	산9-4
					12397 분의 19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486 한양아파트 41-305	김경자		서울특별시 (신림-봉천 터널)	구분지상 관설정 (588㎡)	산9-4
					136367 분의 119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07 대원아파트 102-801	이경자				
					136367 분의 1192.5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82-22 신건영빌라 10-202	이경주				
					136367 분의 1192.5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39가길 8 (우이동)	이경미				
					136367 분의 1192.5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39가길 8 (우이동)	이준웅				
					12 분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1 주공아파트 515-201	유형석				
					12 분의 1	07024 뉴저지 포트리 해밋에버뉴 2467	미합중국 유명자				
					12 분의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0-18 삼호가든맨션 마-503	유명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역	
65	신림동산9-4	임야	5596	17	12397분의 496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922-2 현대아파트 101-1001	이돈구				
					12397분의 1322.5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200, 디동 2306호 (반송동, 메타폴리스)	임종욱				
					12397분의 33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33동 1602호 (잠실동, 트리지움)	최은중				
					12397분의 330.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4길 6, 501호 (석촌동)	최덕균				
					12397분의 78.5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70길 12, 2동 1101호 (창동, 동아아파트)	성종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한마음금융 주식회사	지분양류	
					12397분의 78.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81	성문욱				
					12397분의 78.5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107, 22동 1002호 (방학동, 신동아아파트)	성호열				
					12397분의 78.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13-1 1층	성문선		국 도봉세무서	지분양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66	신림동산9-8	임야	6412	68							
67	신림동141-1	전	129	38							
68	신림동140-29	답	364	148							
69	신림동140-35	답	15	15							
70	신림동144-12	답	10	2							
71	신림동136-14	전	1	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72	신림동136-2	전	68	68	11 분의 2	서울 강남구 반포동 235 신반포2지구아파트 111동 105호	이영협				
					11 분의 2	서울 강남구 반포동 235 신반포2지구아파트 111동 105호	이영수				
					11 분의 1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5	이승은				
					88 분의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569 진흥아파트 8동 1403호	이종호				
					88 분의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569 진흥아파트 8동 1403호	이진아				
					88 분의 6	서울 서초구 서초동 569 진흥아파트 8동 1403호	이희용				
					385 분의 7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 아름마을 406-602	이영근				
					385 분의 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23-401	이종호				
					385 분의 2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23-401	이희용				
					385 분의 2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23-401	이진아				
					385 분의 7	미합중국 90703 켈리포니아주 세리토스시 캐리트 에베뉴 17222	이영협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역	
72	신림동136-2	전	68	68	385 분의 7	캐나다 브이3이 3씨3 브리티쉬 칼럼비아주 코퀴틀람시 할렘코트 3167	이영수				
					385 분의 7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21-1206	이승은				
					3080 분의 2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5, 406동 602호(이매동,아름마을)	이승자				
					3080 분의 17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길 22, 101동 903호(역삼동,금호어울림아파트)	이진경				
					3080분의 1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6, 910동 1102호(삼평동,롯데마을)	이관준				
73	신림동136-1	전	355	355	11 분의 2	서울 강남구 반포동 235 신반포2지구 아파트 111동 105호	이영협				
					11 분의 2	서울 강남구 반포동 235 신반포2지구 아파트 111동 105호	이영수				
					11 분의 1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5	이승은				
					88 분의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569 진흥아파트 8동 1403호	이종효				
					88 분의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569 진흥아파트 8동 1403호	이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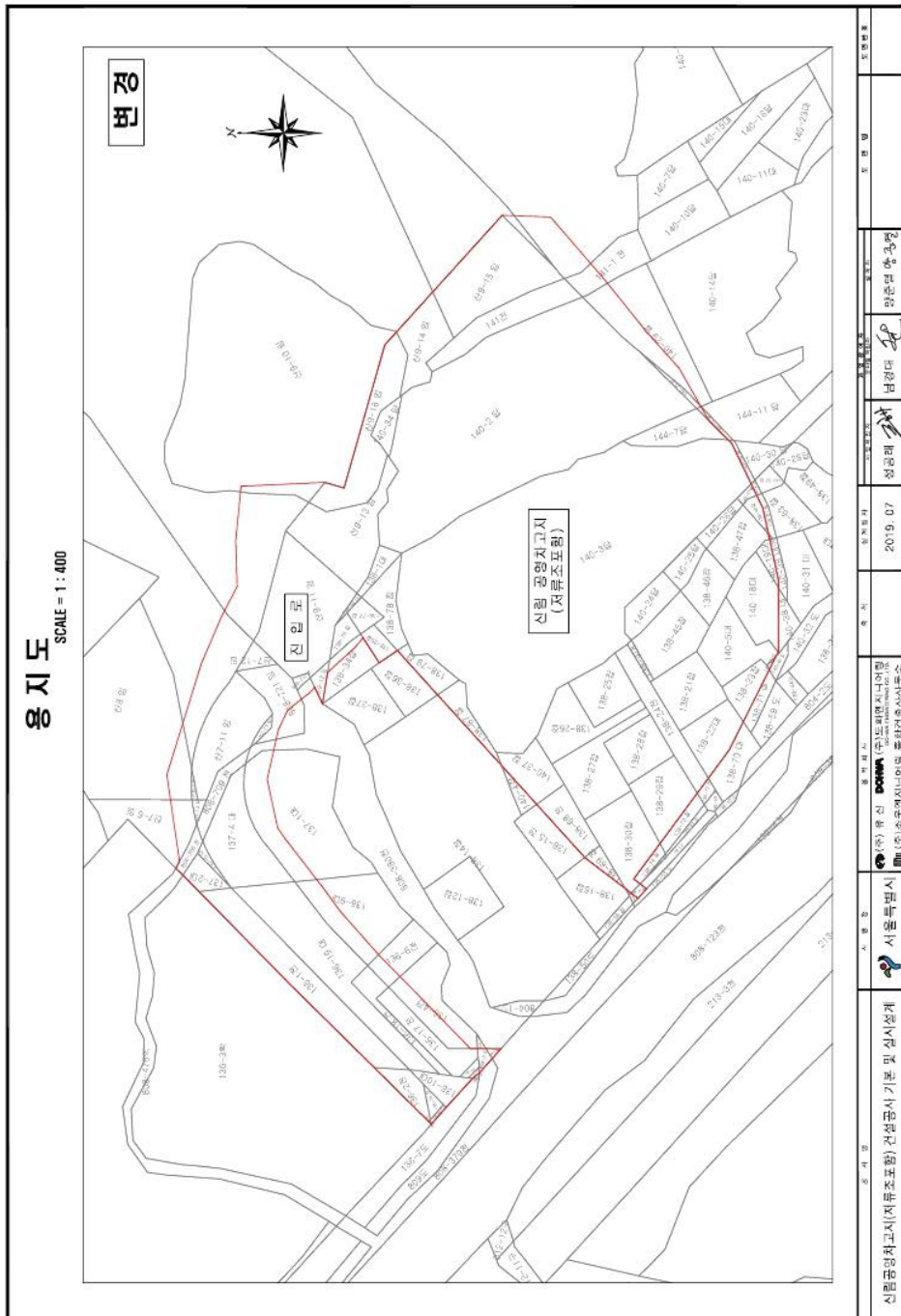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역	
73	신림동136-1	전	355	355	88 분의 6	서울 서초구 서초동 569 진흥아파트 8동 1403호	이희용				
					385 분의 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23-401	이종호				
					385 분의 2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23-401	이희용				
					385 분의 2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23-401	이진아				
					385 분의 7	미합중국 90703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시 캐리트 에베뉴 17222	이영협				
					385 분의 7	캐나다 브이301 3세 3브리티쉬 컬럼비아주 코퀴틀램시 할렘코트 3167	이영수				
					385 분의 7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21-1206	이승은				
					3080 분의 2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5, 406동 602호(이매동,아름마을)	이승자				
					3080 분의 17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길 22, 101동 903호(역삼동,금호어울림아 파트)	이진경				
					3080 분의 1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6, 910동 1102호(삼평동,롯데마을)	이관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권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역	
74	신림동136-4	전	214	78			관악구				
75	신림동136-6	전	115	26			국(기획재정부)				
76	신림동136-9	대	319	101			서울특별시				
77	신림동137-2	대	42	42	11 분의 2	서울 강남구 반포동 235 신반포2지구 아파트 111동 105호	이영협				
					11 분의 2	서울 강남구 반포동 235 신반포2지구 아파트 111동 105호	이영수				
					11 분의 1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5	이승은				
					88 분의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569 진흥아파트 8동 1403호	이종호				
					88 분의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569 진흥아파트 8동 1403호	이진아				
					88 분의 6	서울 서초구 서초동 569 진흥아파트 8동 1403호	이희웅				
					385 분의 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23-401	이종호				
					385 분의 2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23-401	이희웅				
					385 분의 2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23-401	이진아				
					385 분의 7	미합중국 90703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시 케리트 에베뉴 17222	이영협				
				385 분의 7	캐나다 브이301 3세3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코퀴틀람시 할렘고트3167	이영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역	
77	신림동137-2	대	42	42	385 분의 7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21-1206	이승은				
					3080 분의 2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5, 406동 602호(이매동,아름마을)	이승자				
					3080 분의 17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길 22, 101동 903호(역삼동,금호어울림아파트)	이진경				
					3080 분의 1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6, 910동 1102호(삼평동,롯데마을)	이관준				
78	신림동137-5	대	13	13			서울특별시				
79	신림동137-1	대	632	175			서울특별시				
80	신림동808-708	하천	28	28			국(기획재정부)				
81	신림동 산7-6	임	213	48	2 분의 1	서울 관악구 봉천동 468-4	안성우				
					2 분의 1	서울 관악구 봉천동 468-4	안성균				
82	신림동 산7-1	임	32,516	193	6188분의 5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8길 62, 301호 (연희동, 청학빌라)	김준기				
					6188 분의 7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85-13	김해선				
					6188 분의 4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702호 (내수동, 경희궁의아침3단지아파트)	김준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역	
82	신림동 산7-1	임	32,516	193	6188 분의 188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8길 7-8, 201호 (불광동, 청나맨션)	김정선				
					6188 분의 94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1동 4203호 (송도동, 송도 더샵퍼스트월드)	임지현				
					6188 분의 94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1동 4203호 (송도동, 송도 더샵퍼스트월드)	엄태익				
					6188 분의 7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동 504호 (정자동, 한솔마을)	김정현				
					6188분의 296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318-407	김정철				
					6188 분의 445.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유촌길 84-0 (우면동)	김정일				
					6188 분의 296.8	미합중국 뉴욕 11361, 베이사이드 46애비뉴 202-40	김정호				
					6188 분의 1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세동 1003호 (서초동, 현대슈퍼빌)	김형숙				
					129948 분의 3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48,209동 1706호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박순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82	신림동 산7-1	임	32,516		129948 분의 1344	126 씨브 할로우 로드, 로슬린 뉴욕 11576, 미국	미국인 윤신강				
					129948 분의 896	10455 93로드 예비뉴, 리치몬드힐, 뉴욕 11418, 미국	미국인 애니헤리아리아스				
					129948 분의 896	1619 더블유, 르모인 스트리트 아파트 3, 시카고 아이엘 60622, 미국	박혜원				
					129948 분의 3136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 1동 702호(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박상현				
83	신림동 산8	임	1,183	79		서울 강서구 방학동 831 방화아파트 410동 602호	이숙자				
84	신림동 산9-1	임	88,030	324	92331 분의 69715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재단법인서울대 학교발전기금		서울특별시 (강남순화도 고속도로)	지상권설정 (12269㎡)	산9-1
					92331 분의 2261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국립대학법인서 울대학교		서울특별시 (신림-봉선 터널)	구분지상권 설정	산9-1
85	신림동 산9-10	임	2,225	64			서울특별시				
86	신림동808-721	임	139	101			국(기획재정부)				
87	신림동808-380	천	801	26			국(기획재정부)				
88	신림동138-34	잡	102	19	2 분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7-231	조용식				
					2 분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98-7 4층	김학성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

1.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9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9.8.14.)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적률 등 완화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기 위해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의 용적률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구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을 따름

자치구	구역명
강남구	양재지구(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926정거장 주변, 테헤란로제2지구, 수서택지개발지구, 개포택지개발지구
강동구	천호지구, 고덕택지
강북구	수유·번동
강서구	강서구 까치산역지구중심, 공항지구중심, 강서구 화곡역지구중심, 발산택지개발지구, 가양택지개발지구, 공항로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대림지역중심(관악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봉천지역중심
광진구	군자역지구, 건대입구역지구, 화양1지구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금천구	가산, 독산, 금천구심
노원구	공릉, 중계, 중계2택지,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서울 상계2 택지개발예정지구
도봉구	방학역세권, 쌍문지구중심
동대문구	장한평지구(동대문구/성동구), 전농지구중심, 경희대앞지구, 신설
동작구	대림지구(동작구), 동작구 신대방지구, 노량진지구, 상도지구, 사당·이수(사당/동작/관악)

자치구	구역명
마포구	신촌지구일대(신촌지구, 마포지구, 신촌지역중심 포함), 합정지구,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아현2지구, 마포지구
서대문구	천연, 충정
서초구	양재지구중심, 서초로, 양재택지
성동구	왕십리 광역중심
성북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동선지구중심, 석관지구중심
송파구	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제2지구)
양천구	신정네거리,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목동중심지구
영등포구	대림지구(영등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영등포1, 당산지구중심, 신길지구중심
용산구	한남, 서계동, 용산
은평구	응암지구중심, 연신내, 불광, 응암로, 수색
종로구	송인, 성균관대주변, 송인2(구 동대문)지구, 을곡로, 종로2·3가, 종로4·5가, 돈화문로, 북촌, 경복궁서측, 운현궁 주변, 인사동, 세종로, 대학로, 동대문, 이화동 일대, 익선, 조계사 주변, 혜화 · 명륜동
중구	주교, 수표, 회현, 퇴계로변, 북창, 남대문시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명동관광특구
종량구	목동지구중심, 면목지구중심

②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변경 지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와 용도 비율은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20%이상으로 적용한다.(단, 비주거용도 비율에 대해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내용을 준수한다.)
-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다음의 산식 이하로 적용한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주거부분 용적률(400%) / 상업지역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하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항7호부터 9호까지의 용적률

용도지역	조례상용적률	주거부분용적률
일반상업지역	800%	400%
일반상업지역 (역시도상내) 근린상업지역	600%	400%
주거부분용적률 (조례용적률 대비)		
= 400% ÷ 800% = 50%		= 400% ÷ 600% = 66.7%
		

<구역별 주거부분 용적률 비율 산정예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600%	800%	법적2배이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400% / 800%) × 800% = 400%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부분용적률 = 400% 이하

〈구역별 주거부문 용적률 비율 산정예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400%	660%	800%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400\% / 800\%) \times 660\% = 330\%$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부문용적률 = 330% 이하

〈구역별 주거부문 용적률 비율 산정예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역사도심내) 근린상업지역	300%	600%	법적 2배이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400\% / 600\%) \times 600\% = 400\%$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부문용적률 = 400% 이하

-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다음의 산식 이하로 적용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증가되는 면적 중 임대주택 확보 면적’을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주거부문 용적률(500-600%) * / 상업지역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및 역사도심을 제외한 일반상업지역은 600퍼센트 이하, 역사도심 내의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500퍼센트 이하

**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항7호부터 9호까지의 용적률

용도지역	조례상용적률	한시완화 주거부문용적률
일반상업지역	800%	600%
일반상업지역 (역사도심내) 근린상업지역	600%	500%
주거부문용적률 (조례용적률 대비)		
$= 600\% \div 800\% = 75\%$ $= 500\% \div 600\% = 83.3\%$		

〈구역별 주거부문 용적률 비율 산정예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600%	800%	법적2배이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600\% / 800\%) \times 800\% = 600\%$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부문용적률 = 600% 이하

〈구역별 주거부문 용적률 비율 산정예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400%	660%	800%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600\% / 800\%) \times 660\% = 495\%$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부문용적률 = 495% 이하

〈구역별 주거부문 용적률 비율 산정예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역사도심내) 근린상업지역	300%	600%	법적 2배이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500\% / 600\%) \times 600\% = 500\%$ 이하
 * 비주거의무비율은 전체 연면적의 20%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부문용적률 = 500% 이하

〈임대주택 확보시 구역별 권장용도 면적 산정예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권장용도 확보비율	허용 용적률	주거 용적률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주거용적률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주거부분 증가용적률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비주거용적률
일반상업지역	30%	800%	400%	600%	200%	200%



○권장용도 도입 가능한 비주거 용적률 = $800\% \times 30\% = 240\%$
 ○권장용도 부족분 = $240\% - 200\% = 40\%$
 → 임대추가 추가 확보에 따른 증가되는 면적 중 임대주택 확보 면적을 권장용도 부족분 40%에 해당하는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상기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 3](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 기준”을 적용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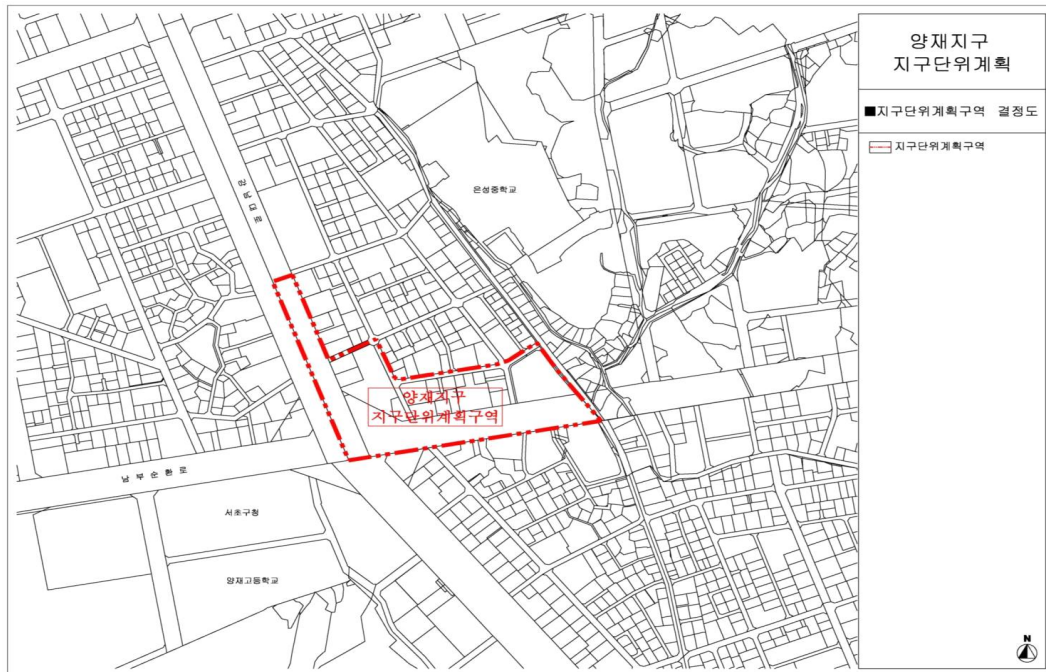
III. 관계도면 : 붙임참조(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IV.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시청 도시관리과(☎02-2133-8380) 및 자치구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1.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도서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상세 계획 (2)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나) 건축물의 용 적 륜 계획	2) 계획기준			2) 계획기준				
	구 분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	구 분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간선도로변	400	700	850	일반상업지역	300	63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이면도로변	400	500	600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 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 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illegibl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3. 926정거장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도서				결정도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적률	2) 계획기준				2) 계획기준			
	구분	용도지역	계획내용	비고	구분	용도지역	계획내용	비고
	간선변	일반상업지역	- 기준 : 600% 이하 - 허용 : 800% 이하		간선변	일반상업지역	- 기준 : 600% 이하 - 허용 : 8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350% 이하 - 상한 : 400% 이하	특별계획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350% 이하 - 상한 : 400% 이하	특별계획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 : 230% 이하 - 허용 :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 : 230% 이하 - 허용 : 250% 이하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 : 230% 이하 - 허용 : 250% 이하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 : 230% 이하 - 허용 : 250% 이하	
		일반상업지역	- 기준 : 600% 이하 - 허용 : 800% 이하			일반상업지역	- 기준 : 600% 이하 - 허용 : 800% 이하	
	공동개발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350% 이하 - 상한 : 400% 이하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공동개발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350% 이하 - 상한 : 400% 이하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일반상업지역	- 기준 : 600% 이하 - 허용 : 800% 이하			일반상업지역	- 기준 : 600% 이하 - 허용 : 800% 이하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가능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가능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전제조건 : 지하철출입구 및 환기구 이전시)이후 세부개발 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상향 검토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전제조건 : 지하철출입구 및 환기구 이전시)이후 세부개발 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상향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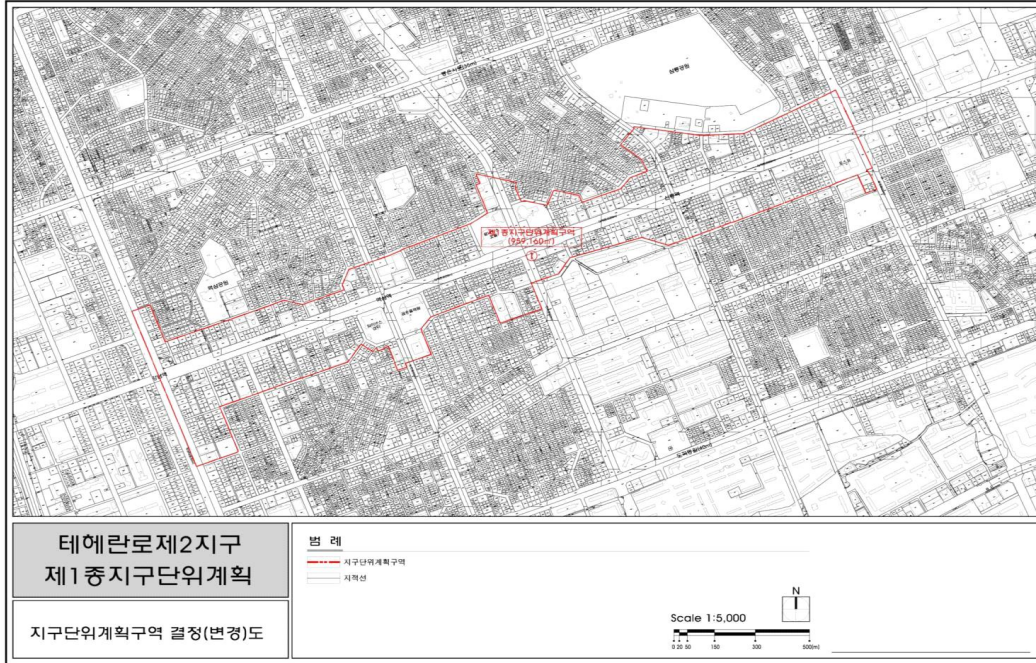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4.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결정조서						
	나) 용적률 계획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도면 표시	기 정1)	계 획 내 용			구 분	도면 표시	기 정1)	계 획 내 용			
			기 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 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사항	주거 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	250% 이하	220% 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주거 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	250% 이하	220% 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	-	800% 이하	600% 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a)이내 ※가중치 및 a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	-	800% 이하	600% 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a)이내 ※가중치 및 a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주) 1. 기정의 용적률은 관련 법령·지침 및 조례 개정 이후 현행 용적률임 2.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따른다. 3. 용적률 계획기준 변경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함						주) 1. 기정의 용적률은 관련 법령·지침 및 조례 개정 이후 현행 용적률임 2.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따른다. 3. 용적률 계획기준 변경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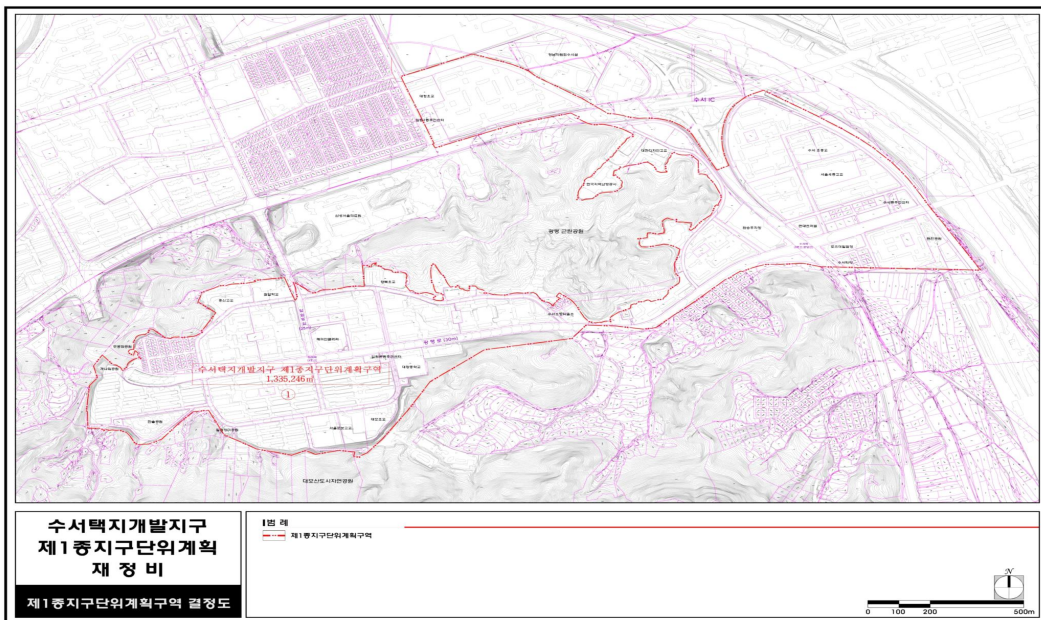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5. 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결정조서																																																																																																																																																						
(3)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입지시 기준·허용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를 적용받는 필지	(3)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입지시 기준·허용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를 적용받는 필지	(3)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입지시 기준·허용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를 적용받는 필지																																																																																																																																																						
□ 획지(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의 개발밀도나 용적률 계획	<table> <tr> <th>위치</th><th>기정</th><th>기정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r> <tr> <td>BL17,21,27(수서동747), 41(수서동712)</td><td>250%이하</td><td>-</td><td>250%이하</td><td>250%이하</td></tr> <tr> <td>BL40 (수서동708)</td><td>230%이하</td><td>-</td><td>230%이하</td><td>230%이하</td></tr> <tr> <td>BL39(말원동711), 40(수서동707)</td><td>215%이하</td><td>-</td><td>215%이하</td><td>215%이하</td></tr> <tr> <td>BL27(수서동746)</td><td>210%이하</td><td>-</td><td>210%이하</td><td>210%이하</td></tr> <tr> <td>BL32(수서동738)</td><td>200%이하</td><td>-</td><td>200%이하</td><td>200%이하</td></tr> <tr> <td>BL34</td><td>205%이하</td><td>-</td><td>205%이하</td><td>205%이하</td></tr> <tr> <td>BL51</td><td>195%이하</td><td>-</td><td>195%이하</td><td>195%이하</td></tr> <tr> <td>공통주택 (중층)</td><td>BL14, 18, 23(말원동735)</td><td>110%이하</td><td>-</td><td>110%이하</td></tr> <tr> <td>공통주택 (저층)</td><td>BL19</td><td>90%이하</td><td>-</td><td>90%이하</td></tr> <tr> <td>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td><td>BL1-3, BL5-12</td><td>180%이하</td><td>200%이하</td><td>200%이하</td></tr> <tr> <td>상업지역</td><td>BL22,42-46,48-50</td><td>600%이하</td><td>800%이하</td><td>800%이하</td></tr> <tr> <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BL4,15,30, 29(수서동744,743,743-1),32 (수서동739-1),37</td><td>130%이하</td><td>150%이하</td><td>150%이하</td></tr> <tr> <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BL28(수서동750-1), 32(수서동739), 32(수서동738-1), 39(말원동711-1)</td><td>180%이하</td><td>200%이하</td><td>200%이하</td></tr> <tr> <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BL13,20</td><td>220%이하</td><td>250%이하</td><td>250%이하</td></tr> </table>	위치	기정	기정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BL17,21,27(수서동747), 41(수서동712)	250%이하	-	250%이하	250%이하	BL40 (수서동708)	230%이하	-	230%이하	230%이하	BL39(말원동711), 40(수서동707)	215%이하	-	215%이하	215%이하	BL27(수서동746)	210%이하	-	210%이하	210%이하	BL32(수서동738)	200%이하	-	200%이하	200%이하	BL34	205%이하	-	205%이하	205%이하	BL51	195%이하	-	195%이하	195%이하	공통주택 (중층)	BL14, 18, 23(말원동735)	110%이하	-	110%이하	공통주택 (저층)	BL19	90%이하	-	90%이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BL1-3, BL5-12	180%이하	200%이하	200%이하	상업지역	BL22,42-46,48-50	600%이하	800%이하	80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BL4,15,30, 29(수서동744,743,743-1),32 (수서동739-1),37	130%이하	150%이하	1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BL28(수서동750-1), 32(수서동739), 32(수서동738-1), 39(말원동711-1)	180%이하	200%이하	2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BL13,20	220%이하	250%이하	250%이하	<table> <tr> <th>위치</th><th>기정</th><th>기정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r> <tr> <td>BL17,21,27(수서동747), 41(수서동712)</td><td>250%이하</td><td>-</td><td>250%이하</td><td>250%이하</td></tr> <tr> <td>BL40 (수서동708)</td><td>230%이하</td><td>-</td><td>230%이하</td><td>230%이하</td></tr> <tr> <td>BL39(말원동711), 40(수서동707)</td><td>215%이하</td><td>-</td><td>215%이하</td><td>215%이하</td></tr> <tr> <td>BL27(수서동746)</td><td>210%이하</td><td>-</td><td>210%이하</td><td>210%이하</td></tr> <tr> <td>BL32(수서동738)</td><td>200%이하</td><td>-</td><td>200%이하</td><td>200%이하</td></tr> <tr> <td>BL34</td><td>205%이하</td><td>-</td><td>205%이하</td><td>205%이하</td></tr> <tr> <td>BL51</td><td>195%이하</td><td>-</td><td>195%이하</td><td>195%이하</td></tr> <tr> <td>공통주택 (중층)</td><td>BL14, 18, 23(말원동735)</td><td>110%이하</td><td>-</td><td>110%이하</td></tr> <tr> <td>공통주택 (저층)</td><td>BL19</td><td>90%이하</td><td>-</td><td>90%이하</td></tr> <tr> <td>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td><td>BL1-3, BL5-12</td><td>180%이하</td><td>200%이하</td><td>200%이하</td></tr> <tr> <td>상업지역</td><td>BL22,42-46,48-50</td><td>600%이하</td><td>800%이하</td><td>800%이하</td></tr> <tr> <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BL4,15,30, 29(수서동744,743,743-1),32 (수서동739-1),37</td><td>130%이하</td><td>150%이하</td><td>150%이하</td></tr> <tr> <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BL28(수서동750-1), 32(수서동739), 32(수서동738-1), 39(말원동711-1)</td><td>180%이하</td><td>200%이하</td><td>200%이하</td></tr> <tr> <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BL13,20</td><td>220%이하</td><td>250%이하</td><td>250%이하</td></tr> </table>	위치	기정	기정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BL17,21,27(수서동747), 41(수서동712)	250%이하	-	250%이하	250%이하	BL40 (수서동708)	230%이하	-	230%이하	230%이하	BL39(말원동711), 40(수서동707)	215%이하	-	215%이하	215%이하	BL27(수서동746)	210%이하	-	210%이하	210%이하	BL32(수서동738)	200%이하	-	200%이하	200%이하	BL34	205%이하	-	205%이하	205%이하	BL51	195%이하	-	195%이하	195%이하	공통주택 (중층)	BL14, 18, 23(말원동735)	110%이하	-	110%이하	공통주택 (저층)	BL19	90%이하	-	90%이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BL1-3, BL5-12	180%이하	200%이하	200%이하	상업지역	BL22,42-46,48-50	600%이하	800%이하	80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BL4,15,30, 29(수서동744,743,743-1),32 (수서동739-1),37	130%이하	150%이하	1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BL28(수서동750-1), 32(수서동739), 32(수서동738-1), 39(말원동711-1)	180%이하	200%이하	2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BL13,20	220%이하	250%이하	250%이하
위치	기정	기정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BL17,21,27(수서동747), 41(수서동712)	250%이하	-	250%이하	250%이하																																																																																																																																																				
BL40 (수서동708)	230%이하	-	230%이하	230%이하																																																																																																																																																				
BL39(말원동711), 40(수서동707)	215%이하	-	215%이하	215%이하																																																																																																																																																				
BL27(수서동746)	210%이하	-	210%이하	210%이하																																																																																																																																																				
BL32(수서동738)	200%이하	-	200%이하	200%이하																																																																																																																																																				
BL34	205%이하	-	205%이하	205%이하																																																																																																																																																				
BL51	195%이하	-	195%이하	195%이하																																																																																																																																																				
공통주택 (중층)	BL14, 18, 23(말원동735)	110%이하	-	110%이하																																																																																																																																																				
공통주택 (저층)	BL19	90%이하	-	90%이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BL1-3, BL5-12	180%이하	200%이하	200%이하																																																																																																																																																				
상업지역	BL22,42-46,48-50	600%이하	800%이하	80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BL4,15,30, 29(수서동744,743,743-1),32 (수서동739-1),37	130%이하	150%이하	1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BL28(수서동750-1), 32(수서동739), 32(수서동738-1), 39(말원동711-1)	180%이하	200%이하	2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BL13,20	220%이하	250%이하	250%이하																																																																																																																																																				
위치	기정	기정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BL17,21,27(수서동747), 41(수서동712)	250%이하	-	250%이하	250%이하																																																																																																																																																				
BL40 (수서동708)	230%이하	-	230%이하	230%이하																																																																																																																																																				
BL39(말원동711), 40(수서동707)	215%이하	-	215%이하	215%이하																																																																																																																																																				
BL27(수서동746)	210%이하	-	210%이하	210%이하																																																																																																																																																				
BL32(수서동738)	200%이하	-	200%이하	200%이하																																																																																																																																																				
BL34	205%이하	-	205%이하	205%이하																																																																																																																																																				
BL51	195%이하	-	195%이하	195%이하																																																																																																																																																				
공통주택 (중층)	BL14, 18, 23(말원동735)	110%이하	-	110%이하																																																																																																																																																				
공통주택 (저층)	BL19	90%이하	-	90%이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BL1-3, BL5-12	180%이하	200%이하	200%이하																																																																																																																																																				
상업지역	BL22,42-46,48-50	600%이하	800%이하	80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BL4,15,30, 29(수서동744,743,743-1),32 (수서동739-1),37	130%이하	150%이하	1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BL28(수서동750-1), 32(수서동739), 32(수서동738-1), 39(말원동711-1)	180%이하	200%이하	2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BL13,20	220%이하	250%이하	250%이하																																																																																																																																																				
	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거 전용 면적의 10분의 3이내에서, 건축법 제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속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의 조정, 건축선의 지정,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단, 용적률의 경우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향후 관련 법 개정 등 기존 변경시 변경된 기준을 준수	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거 전용 면적의 10분의 3이내에서, 건축법 제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속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의 조정, 건축선의 지정,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단, 용적률의 경우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향후 관련 법 개정 등 기존 변경시 변경된 기준을 준수																																																																																																																																																						
	주) 상업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에 따른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7항('09.09.29,신설)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서울시도시 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주) 상업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에 따른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7항('09.09.29,신설)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서울시도시 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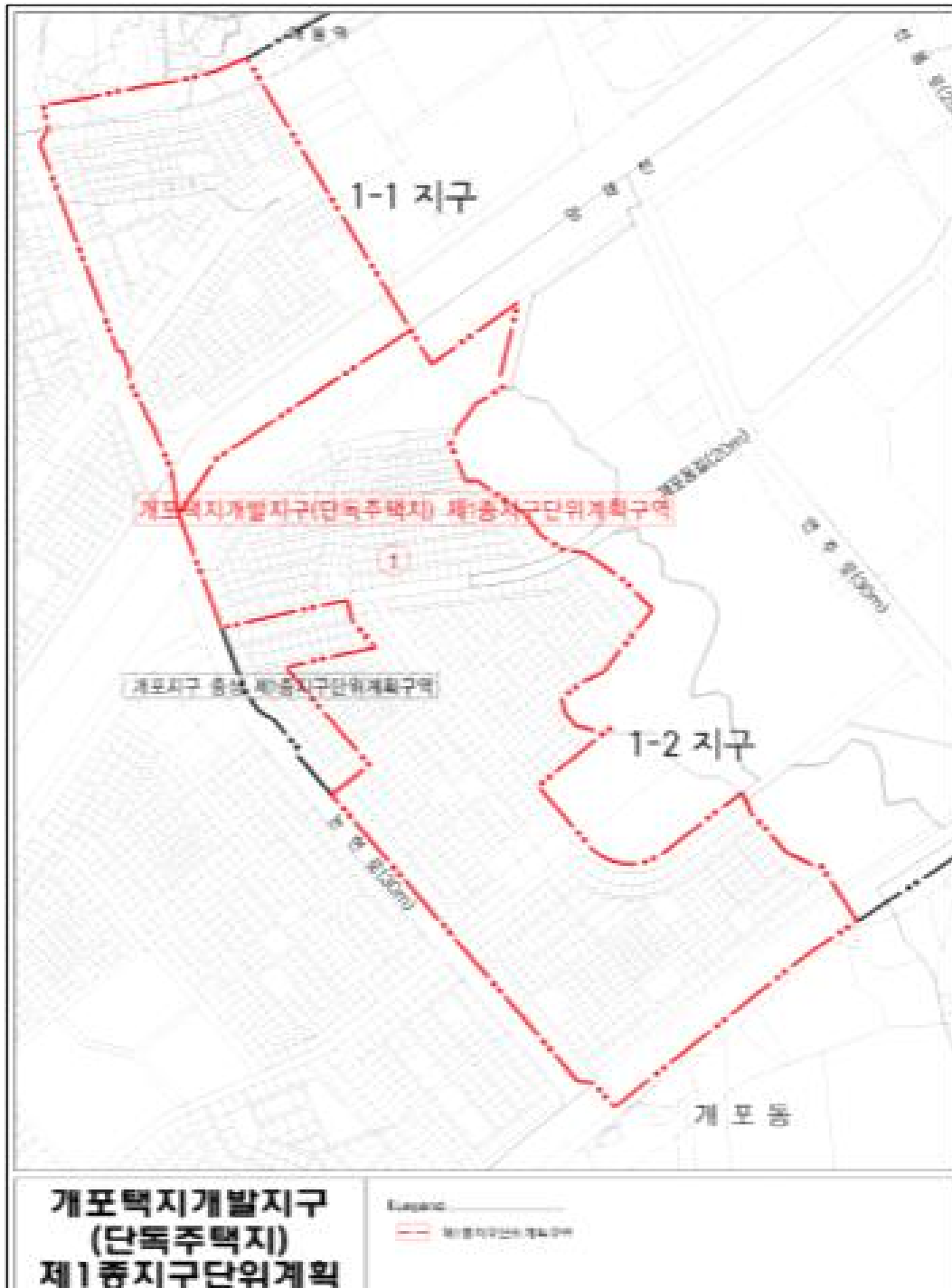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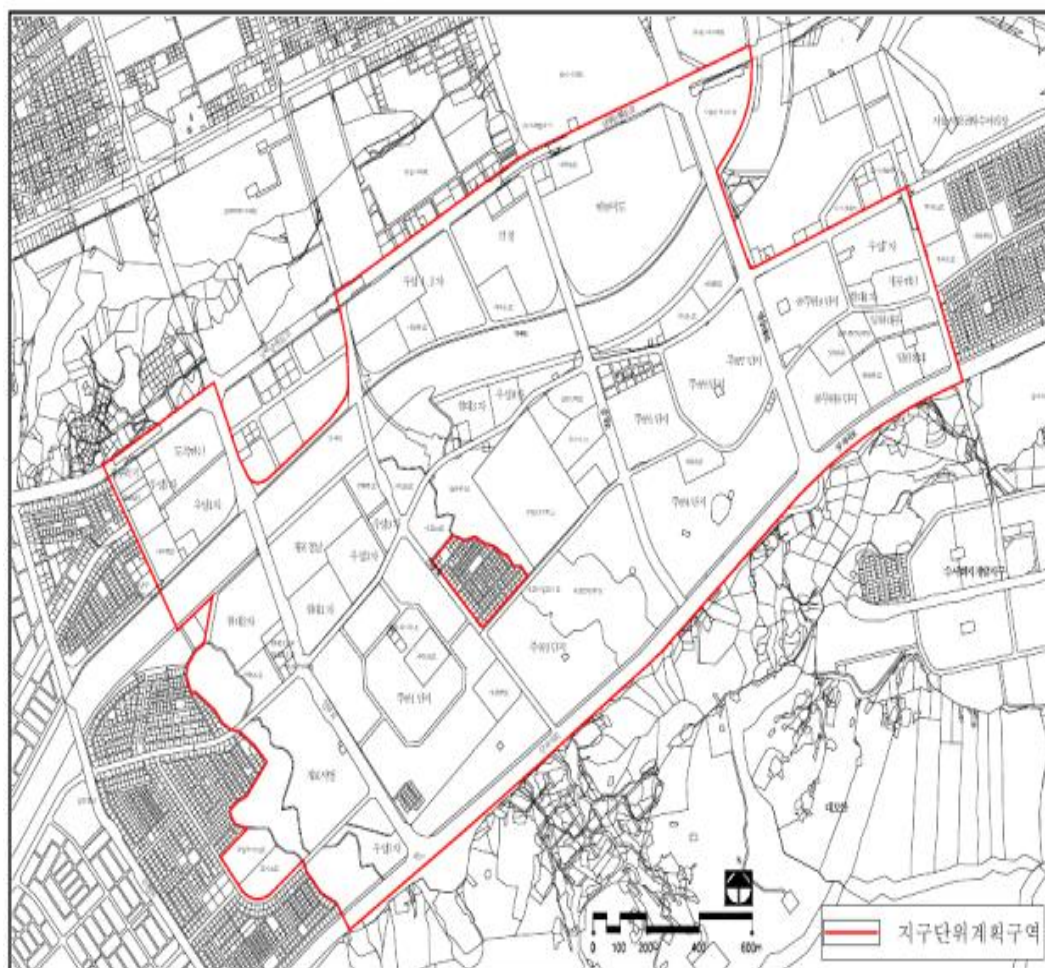
6.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결정조서		결정조서																																																																																				
[단독주택]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용적률 계획	(1) 용적률 적용		(1) 용적률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도면 표시</th><th rowspan="2">위치</th><th colspan="2">계획내용</th><th rowspan="2">비고</th></tr> <tr> <th>기존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r> </thead> <tbody> <tr> <td>R1</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130% 이하</td><td>150% 이하</td><td></td></tr> <tr> <td>R2</td><td>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td><td>180% 이하</td><td>200% 이하</td><td></td></tr> <tr> <td>R2-a</td><td>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용도지역 상향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td><td>150% 이하</td><td>180% 이하</td><td></td></tr> <tr> <td>R3</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180% 이하</td><td>200% 이하</td><td></td></tr> <tr> <td>R4</td><td>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부)</td><td>220% 이하</td><td>250% 이하</td><td></td></tr> <tr> <td>R5</td><td>제3종일반주거지역(간선부)</td><td>220% 이하</td><td>250% 이하</td><td></td></tr> <tr> <td>C</td><td>일반상업지역</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d></td></tr> </tbody> </table> 주)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도면 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R1	제1종일반주거지역	130% 이하	150% 이하		R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0% 이하	200% 이하		R2-a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용도지역 상향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0% 이하	180% 이하		R3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 이하	200% 이하		R4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부)	220% 이하	250% 이하		R5	제3종일반주거지역(간선부)	220% 이하	250% 이하		C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도면 표시</th><th rowspan="2">위치</th><th colspan="2">계획내용</th><th rowspan="2">비고</th></tr> <tr> <th>기존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r> </thead> <tbody> <tr> <td>R1</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130% 이하</td><td>150% 이하</td><td></td></tr> <tr> <td>R2</td><td>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td><td>180% 이하</td><td>200% 이하</td><td></td></tr> <tr> <td>R2-a</td><td>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용도지역 상향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td><td>150% 이하</td><td>180% 이하</td><td></td></tr> <tr> <td>R3</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180% 이하</td><td>200% 이하</td><td></td></tr> <tr> <td>R4</td><td>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부)</td><td>220% 이하</td><td>250% 이하</td><td></td></tr> <tr> <td>R5</td><td>제3종일반주거지역(간선부)</td><td>220% 이하</td><td>250% 이하</td><td></td></tr> <tr> <td>C</td><td>일반상업지역</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d></td></tr> </tbody> </table> 주)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도면 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R1	제1종일반주거지역	130% 이하	150% 이하		R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0% 이하	200% 이하		R2-a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용도지역 상향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0% 이하	180% 이하		R3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 이하	200% 이하		R4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부)	220% 이하	250% 이하		R5	제3종일반주거지역(간선부)	220% 이하	250% 이하		C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도면 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R1	제1종일반주거지역	130% 이하	150% 이하																																																																																				
R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0% 이하	200% 이하																																																																																				
R2-a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용도지역 상향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0% 이하	180% 이하																																																																																				
R3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 이하	200% 이하																																																																																				
R4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부)	220% 이하	250% 이하																																																																																				
R5	제3종일반주거지역(간선부)	220% 이하	250% 이하																																																																																				
C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도면 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R1	제1종일반주거지역	130% 이하	150% 이하																																																																																				
R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0% 이하	200% 이하																																																																																				
R2-a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용도지역 상향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0% 이하	180% 이하																																																																																				
R3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 이하	200% 이하																																																																																				
R4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부)	220% 이하	250% 이하																																																																																				
R5	제3종일반주거지역(간선부)	220% 이하	250% 이하																																																																																				
C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공동주택] IV.부분별 지구단위계획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계획	■ 용적률계획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특정계획 구역</td><td>제2종일반주거지역 190%이하</td><td>200%이하</td><td>230%이하</td><td></td></tr> <tr> <td></td><td>제3종일반주거지역 210%이하</td><td>230%이하</td><td>250%이하</td><td></td></tr> <tr> <td>기타 지역</td><td>제2종일반주거지역 180%이하</td><td>200%이하</td><td>-</td><td></td></tr> <tr> <td></td><td>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td><td>250%이하</td><td>-</td><td></td></tr> <tr> <td>상업 지역</td><td>상선로·개포동길변 600%이하</td><td>800%이하</td><td>-</td><td></td></tr> <tr> <td></td><td>이면부 400%이하</td><td>500%이하</td><td>-</td><td></td></tr> </tbody> </table> ※ 특정계획구역의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가중치)이내]를 적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구분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특정계획 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이하	200%이하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이하	230%이하	250%이하		기타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이하	20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		상업 지역	상선로·개포동길변 600%이하	800%이하	-			이면부 400%이하	500%이하	-		■ 용적률계획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특정계획 구역</td><td>제2종일반주거지역 190%이하</td><td>200%이하</td><td>230%이하</td><td></td></tr> <tr> <td></td><td>제3종일반주거지역 210%이하</td><td>230%이하</td><td>250%이하</td><td></td></tr> <tr> <td>기타 지역</td><td>제2종일반주거지역 180%이하</td><td>200%이하</td><td>-</td><td></td></tr> <tr> <td></td><td>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td><td>250%이하</td><td>-</td><td></td></tr> <tr> <td>상업 지역</td><td>상선로·개포동길변 600%이하</td><td>800%이하</td><td>-</td><td></td></tr> <tr> <td></td><td>이면부 400%이하</td><td>500%이하</td><td>-</td><td></td></tr> </tbody> </table> ※ 특정계획구역의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가중치)이내]를 적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상업지역 중 이면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분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특정계획 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이하	200%이하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이하	230%이하	250%이하		기타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이하	20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		상업 지역	상선로·개포동길변 600%이하	800%이하	-			이면부 400%이하	500%이하	-														
구분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특정계획 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이하	200%이하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이하	230%이하	250%이하																																																																																				
기타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이하	20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																																																																																				
상업 지역	상선로·개포동길변 600%이하	800%이하	-																																																																																				
	이면부 400%이하	500%이하	-																																																																																				
구분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특정계획 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이하	200%이하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이하	230%이하	250%이하																																																																																				
기타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이하	20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																																																																																				
상업 지역	상선로·개포동길변 600%이하	800%이하	-																																																																																				
	이면부 400%이하	500%이하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단독주택)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공동주택)



7.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결정조서

변경

2) 건축물의 용적률

위치	용적률		
	접도조건(m)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상업지역	50 이상	550 이하	800 이하
	25 이상	400 이하	650 이하
	20~10 미상	400 이하	60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 미만	350 이하	500 이하
근린상업지역	-	300 이하	500 이하
	-	350 이하	500 이하
준주거지역	-	250 이하	360 이하
	-	300 이하	4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250 이하

주1)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은 별도로 정함

주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계획운영 제2항에 의거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1+1.3×가중치×(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후대지면적)]이하 단, 가중치는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 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2개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비율

주3)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의 용적률계획에 따름

2) 건축물의 용적률

위치	용적률		
	접도조건(m)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상업지역	50 이상	550 이하	800 이하
	25 이상	400 이하	650 이하
	20~10 미상	400 이하	60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 미만	350 이하	500 이하
근린상업지역	-	300 이하	500 이하
	-	350 이하	500 이하
준주거지역	-	250 이하	360 이하
	-	300 이하	4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250 이하

주1)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은 별도로 정함

주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계획운영 제2항에 의거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1+1.3×가중치×(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후대지면적)]이하 단, 가중치는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 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2개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비율

주3)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의 용적률계획에 따름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25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2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8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20~10m 이상도로에 접하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2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8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20~10m 이상도로에 접하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10m 미만 도로에 접하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다. 건축물의 건물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분

기정

변경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0조 (용적률)

①, ③ ~ ⑥ : 변경없음

②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주거복합: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허용용적률 적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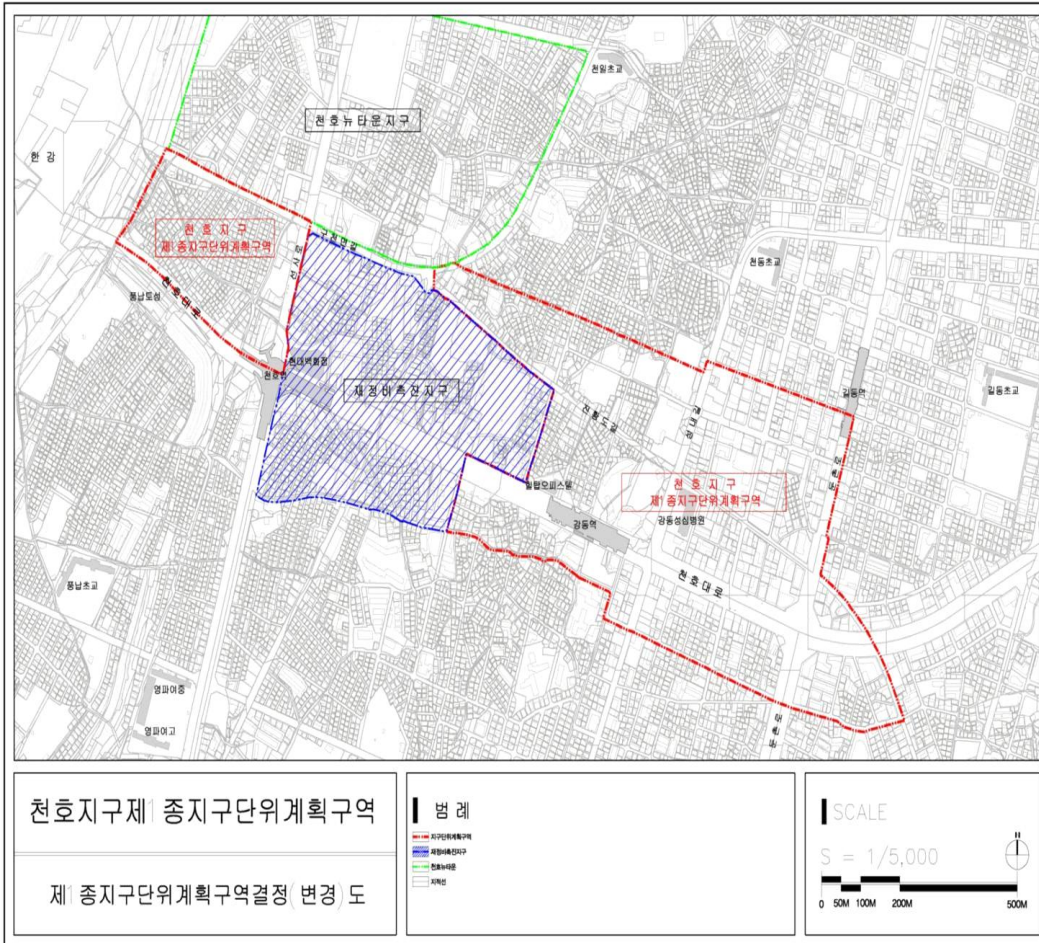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따른 적용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관련)

주택연면적 비율(%)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비고
60이상~70미만	600% 이하	480% 이하	-
50이상~60미만	650% 이하	510% 이하	-
40이상~50미만	700% 이하	540% 이하	-
30이상~40미만	750% 이하	570% 이하	-
20이상~30미만	800% 이하	600% 이하	-
20미만	800% 이하	600% 이하	-

①, ③ ~ ⑥ : 변경없음

②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8.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2) 용적률 결정조서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적용 지역</th><th colspan="3">계획내용</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주)</th></tr><tr><td>용적률</td><td>전구역</td><td>700% 이하</td><td>800% 이하</td><td>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7조 변경 (※표시부분)</td><td>세부 적용기준 (※표시부분)</td></tr></table>	구분	적용 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주)	용적률	전구역	700% 이하	8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7조 변경 (※표시부분)	세부 적용기준 (※표시부분)	2)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적용 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주)																			
	용적률	전구역	700% 이하	8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7조 변경 (※표시부분)	세부 적용기준 (※표시부분)																		
	주)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공공시설 제공 면적/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이하(단, 가중치는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주)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공공시설 제공 면적/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이하(단, 가중치는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 (예시)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table><tr><th>주택면적</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60이상 ~ 70미만</td><td>450%</td><td>600%</td><td rowspan="5">범용용적률의 2배이하</td></tr><tr><td>50이상 ~ 60미만</td><td>490%</td><td>650%</td></tr><tr><td>40이상 ~ 50미만</td><td>530%</td><td>700%</td></tr><tr><td>30이상 ~ 40미만</td><td>560%</td><td>750%</td></tr><tr><td>30미만</td><td>600%</td><td>800%</td></tr></table>		주택면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	600%	범용용적률의 2배이하	50이상 ~ 60미만	490%	650%	40이상 ~ 50미만	530%	700%	30이상 ~ 40미만	560%	750%	30미만	600%	800%	※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	
	주택면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	600%	범용용적률의 2배이하																				
	50이상 ~ 60미만	490%	650%																					
40이상 ~ 50미만	530%	700%																						
30이상 ~ 40미만	560%	750%																						
30미만	600%	800%																						
		●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 용적률 10%이상 설치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적용기준」과는 별도로 비주거 용도비율을 만족하여야 함																						
		※ 공공건축물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 항목 없이 허용용적률 달성가능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 용적률 · 높이·배치· 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2) 건축물의 기법및도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①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장 상업용지 제 3절 개발규모 (용적률, 건폐율, 높이)에 관한 사항 50조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	■ 용적률 계획	■ 용적률 계획																								
	<table><tr><th rowspan="2">도면표시</th><th rowspan="2">위치</th><th colspan="2">계획내용</th><th rowspan="2">비 고</th></tr><tr><th>기준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r><tr><td>CO1</td><td>일반상업지역</td><td>700% 이하</td><td>800% 이하</td><td>· 적용구역 : 상업용지</td></tr></table>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CO1	일반상업지역	700% 이하	800% 이하	· 적용구역 : 상업용지	<table><tr><th rowspan="2">도면표시</th><th rowspan="2">위치</th><th colspan="2">계획내용</th><th rowspan="2">비 고</th></tr><tr><th>기준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r><tr><td>CO1</td><td>일반상업지역</td><td>700% 이하</td><td>800% 이하</td><td>· 적용구역 : 상업용지</td></tr></table>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CO1	일반상업지역	700% 이하	800% 이하	· 적용구역 : 상업용지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CO1	일반상업지역	700% 이하	800% 이하	· 적용구역 : 상업용지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CO1	일반상업지역	700% 이하	800% 이하	· 적용구역 : 상업용지																					
	주) 1. 상업지역내 기존공동주택 재건축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9. 수유·번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결정조서

변 경

2)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 한 용적률	비 고
변 경	일반상업지역 (도봉로변, 화계사길변)	550% 이하	7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수정 가결) 08.12.17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630% 이하	
	준주거지역	250%이하	3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80%이하	2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이하	250%이하	

주) 접도조건

1. 접도조건 양호 : 상업지역 12m이상, 준주거지역 8m이상 대지에 접한 경우

2. 접도조건 불량 : 상업지역 12m미만, 준주거지역 8m미만 대지에 접한 경우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

가.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조서)

2)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 한 용적률	비 고
변 경	일반상업지역 (도봉로변, 화계사길변)	550% 이하	7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수정 가결) 08.12.17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630% 이하	
	준주거지역	250%이하	3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80%이하	2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이하	250%이하	

주) 접도조건

1. 접도조건 양호 : 상업지역 12m이상, 준주거지역 8m이상 대지에 접한 경우

2. 접도조건 불량 : 상업지역 12m미만, 준주거지역 8m미만 대지에 접한 경우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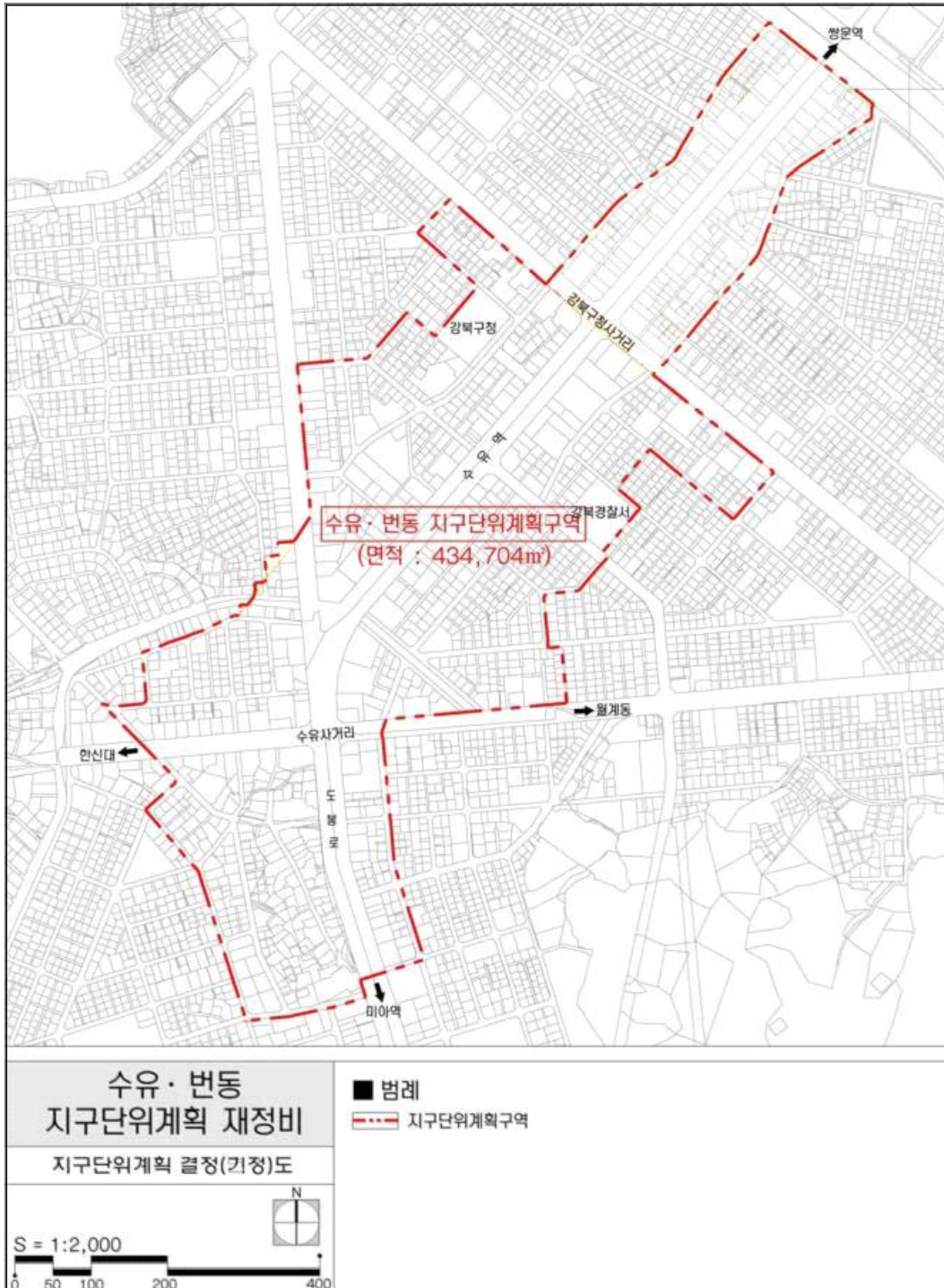
- 접도조건이 양호한 일반상업지역(도봉로변, 화계사길변)의 경우 [별표3] 제2호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50%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5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접도조건이 양호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접도조건이 불량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10. 까치산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결정조서		변 경																																							
		(1) 용적률 기준		(1) 용적률 기준		(1) 용적률 기준																																							
		<table><tr><th rowspan="2">위치</th><th colspan="2">용적률계획</th><th rowspan="2">비 고</th></tr><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r><tr><td>강서로변</td><td>550% (300%)</td><td>700% (630%)</td><td rowspan="5">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는 혼합형 적용</td></tr><tr><td>북개도로변</td><td>500%</td><td>650%</td></tr><tr><td>곰달래길변</td><td>450% (300%)</td><td>600% (600%)</td></tr><tr><td>12m도로변</td><td>400%</td><td>550%</td></tr><tr><td>이면부</td><td>300% (250%)</td><td>450% (450%)</td></tr></table>	위치	용적률계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강서로변	550% (300%)	700% (63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는 혼합형 적용	북개도로변	500%	650%	곰달래길변	450% (300%)	600% (600%)	12m도로변	400%	550%	이면부	300% (250%)	450% (450%)	<table><tr><th rowspan="2">위치</th><th colspan="2">용적률계획</th><th rowspan="2">비 고</th></tr><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r><tr><td>강서로변</td><td>550% (300%)</td><td>700% (630%)</td><td rowspan="5">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는 혼합형 적용</td></tr><tr><td>북개도로변</td><td>500%</td><td>650%</td></tr><tr><td>곰달래길변</td><td>450% (300%)</td><td>600% (600%)</td></tr><tr><td>12m도로변</td><td>400%</td><td>550%</td></tr><tr><td>이면부</td><td>300% (250%)</td><td>450% (450%)</td></tr></table>	위치	용적률계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강서로변	550% (300%)	700% (63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는 혼합형 적용	북개도로변	500%	650%	곰달래길변	450% (300%)	600% (600%)	12m도로변	400%	550%	이면부
위치	용적률계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강서로변	550% (300%)	700% (63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는 혼합형 적용																																										
북개도로변	500%	650%																																											
곰달래길변	450% (300%)	600% (600%)																																											
12m도로변	400%	550%																																											
이면부	300% (250%)	450% (450%)																																											
위치	용적률계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강서로변	550% (300%)	700% (63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는 혼합형 적용																																										
북개도로변	500%	650%																																											
곰달래길변	450% (300%)	600% (600%)																																											
12m도로변	400%	550%																																											
이면부	300% (250%)	450% (450%)																																											
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의 밀도 나. 용적률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강서로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50%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5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북개도로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25%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8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곰달래길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12m 도로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7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이면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25%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2조 (용적률)		① 대지별로 규정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②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오피스텔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③ 동일한 용도지역으로서 서로 다른 기준/허용 용적률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적대비 평균값을 당해 대지의 기준/허용 용적률로 산정한다. ④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적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에 의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물의 용적률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⑤ 자발적인 획지 및 대지간 공동개발시에는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⑥ 도면표시		① 대지별로 규정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②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오피스텔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③ 동일한 용도지역으로서 서로 다른 기준/허용 용적률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적대비 평균값을 당해 대지의 기준/허용 용적률로 산정한다. ④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⑤ 자발적인 획지 및 대지간 공동개발시에는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⑥ 도면표시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300/500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300/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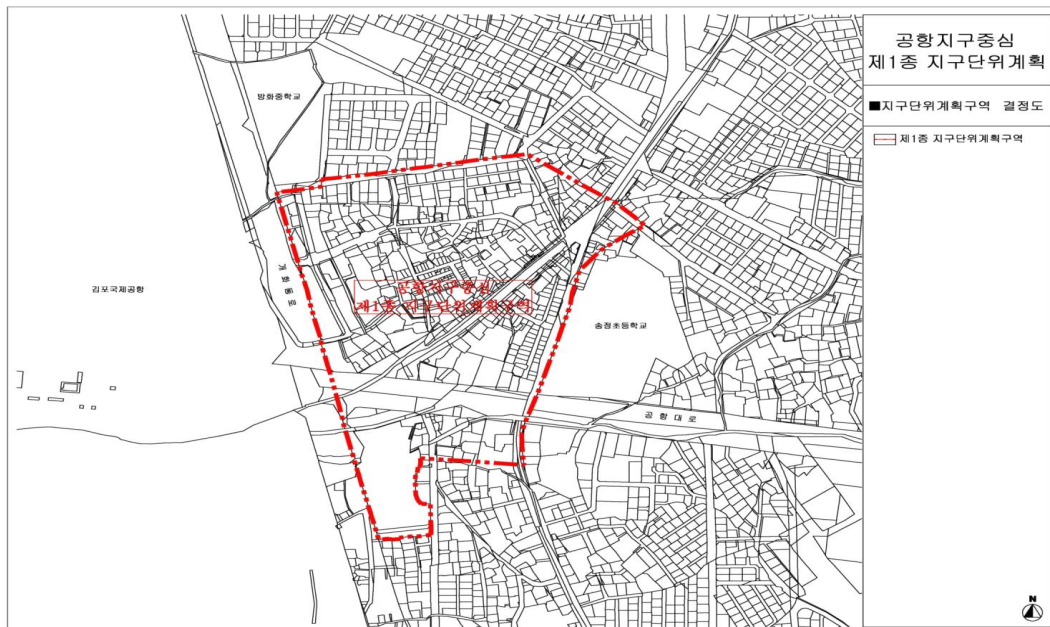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11.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나. 상세계획 결정 조서	(12) 건축물의 밀도계획 ○ 구분 : 기준용적률(%) ○ 근린상업지역 : - 공항로변 : 550% - 개화로변 : 550% - 내부필지 : 400% ○ 구분 : 허용용적률(%) ○ 근린상업지역 : - 공항로변 : 700% - 개화로변 : 700% - 내부필지 : 500%	(12) 건축물의 밀도계획 ○ 구분 : 기준용적률(%) ○ 근린상업지역 : - 공항로변 : 550% - 개화로변 : 550% - 내부필지 : 400% ○ 구분 : 허용용적률(%) ○ 근린상업지역 : - 공항로변 : 700% - 개화로변 : 700% - 내부필지 : 500%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공항로변, 개화로변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66.9%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583.1%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내부필지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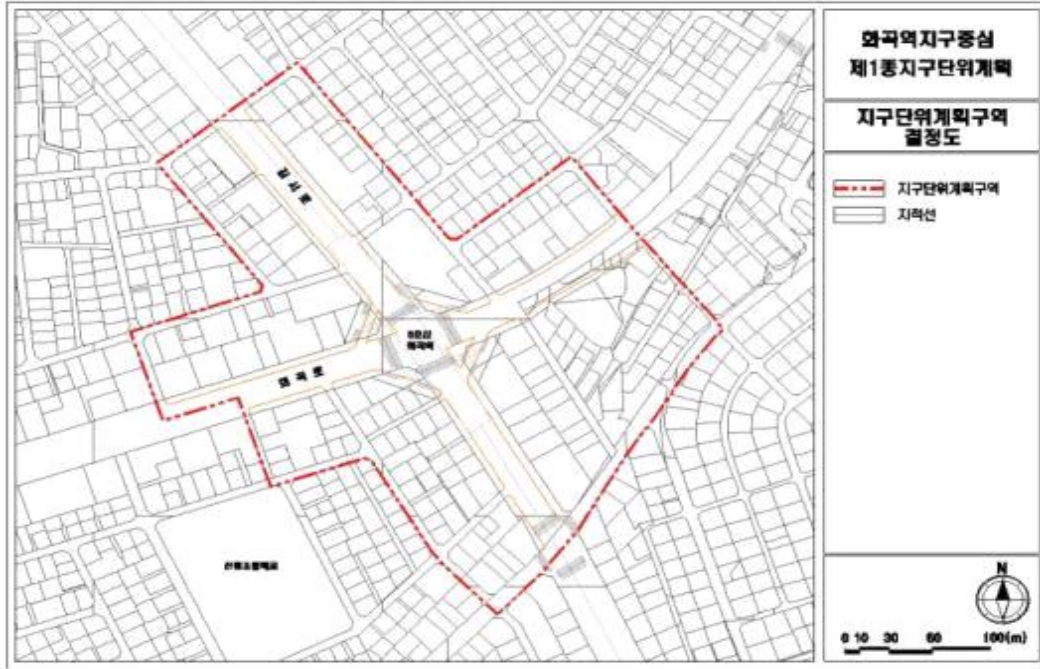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12. 화곡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의 밀도 나) 용적률	(1) 용적률 기준					(1) 용적률 기준																																																																						
	<table><tr><th colspan="3" rowspan="2">위치</th><th colspan="2">기정</th><th rowspan="2">비 고</th></tr><tr><th>기준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r><tr><td rowspan="2">화곡로변</td><td>간선변</td><td>서측 동측</td><td>400%</td><td>600%</td><td rowspan="7">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td></tr><tr><td>이면부</td><td>250%</td><td>450%</td></tr><tr><td rowspan="4">강서로변</td><td>간선변</td><td>북측 남측</td><td>400%</td><td>600%</td></tr><tr><td rowspan="2">이면부</td><td>북측 남측</td><td>300%</td><td>500%</td></tr><tr><td>250%</td><td>450%</td></tr><tr><td colspan="2">까치산길변</td><td>전이부</td><td></td><td></td></tr></table>					위치			기정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화곡로변	간선변	서측 동측	400%	60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이면부	250%	450%	강서로변	간선변	북측 남측	400%	600%	이면부	북측 남측	300%	500%	250%	450%	까치산길변		전이부			<table><tr><th colspan="3" rowspan="2">위치</th><th colspan="2">변경</th><th rowspan="2">비 고</th></tr><tr><th>기준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r><tr><td rowspan="2">화곡로변</td><td>간선변</td><td>서측 동측</td><td>400%</td><td>600%</td><td rowspan="7">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td></tr><tr><td>이면부</td><td>250%</td><td>450%</td></tr><tr><td rowspan="4">강서로변</td><td>간선변</td><td>북측 남측</td><td>400%</td><td>600%</td></tr><tr><td rowspan="2"> 이면부</td><td>북측 남측</td><td>300%</td><td>500%</td></tr><tr><td>250%</td><td>450%</td></tr><tr><td colspan="2">까치산길변</td><td>전이부</td><td></td><td></td></tr></table>					위치			변경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화곡로변	간선변	서측 동측	400%	60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이면부	250%	450%	강서로변	간선변	북측 남측	400%	600%	이면부	북측 남측	300%	500%	250%	450%	까치산길변		전이부		
	위치			기정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화곡로변	간선변	서측 동측	400%	60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이면부	250%	450%																																																																								
	강서로변	간선변	북측 남측	400%	600%																																																																							
		이면부	북측 남측	300%	500%																																																																							
			250%	450%																																																																								
		까치산길변		전이부																																																																								
위치			변경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화곡로변	간선변	서측 동측	400%	60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이면부	250%	450%																																																																									
강서로변	간선변	북측 남측	400%	600%																																																																								
	이면부	북측 남측	300%	500%																																																																								
		250%	450%																																																																									
	까치산길변		전이부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화곡로변 간선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화곡로변 간선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강서로변 간선변 북측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강서로변 간선변 북측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강서로변 간선변 남측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강서로변 간선변 남측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화곡로변 이면부, 강서로변 이면부, 까치산길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2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화곡로변 이면부, 강서로변 이면부, 까치산길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2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2조 (용적률)		① 대지별로 규정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① 대지별로 규정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②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오피스텔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②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오피스텔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③ 동일한 용도지역으로서 서로 다른 기준/허용 용적률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적대비 평균값을 당해 대지의 기준/허용 용적률로 산정한다.				③ 동일한 용도지역으로서 서로 다른 기준/허용 용적률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적대비 평균값을 당해 대지의 기준/허용 용적률로 산정한다.																																																																						
		④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적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에 의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물의 용적률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④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⑤ 자발적인 획지 및 대지간 공동개발시에는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자발적인 획지 및 대지간 공동개발시에는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⑥ 도면표시				⑥ 도면표시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300/500				300/50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13.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상업용지				■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상	상1 - 상3	용적률	600% 이하	상	상1 - 상3	용적률	600% 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14.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나. 건축물의 밀도

(2) 용적률

용도지역		기정	변경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140%이하	150%이하	
제2종 일반주거 지역	근린생활시설	200% 이하	180%이하	200%이하	A-②, ④
	종교시설		190%이하	2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30%이하	250%이하	
일반상업 지역	간선도로변	800% 이하	600%이하	800%이하	
	이면도로변		500%이하	800%이하	
준공업지역		400% 이하	300%이하	400%이하	

주1) 기정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름

주2) 변경 용적률 중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함

주3) 변경 용적률 중 준공업지역에서 인접한 1458번지 일원의 필지와 공동건축할 경우에는 1458번지 일원 필지의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함

용도지역		기정	변경		비 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140%이하	150%이하	
제2종 일반주거 지역	근린생활시설	200% 이하	180%이하	200%이하	A-②, ④
	종교시설		190%이하	2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30%이하	250%이하	
일반상업 지역	간선도로변	800% 이하	600%이하	800%이하	
	이면도로변		500%이하	800%이하	
준공업지역		400% 이하	300%이하	40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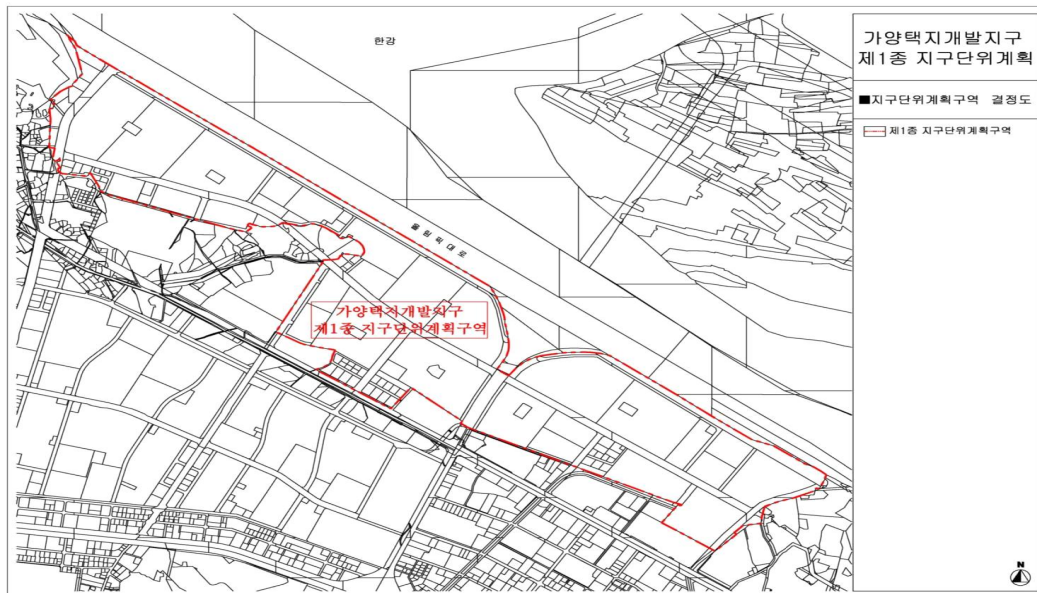
주1) 기정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름

주2) 변경 용적률 중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함

주3) 변경 용적률 중 준공업지역에서 인접한 1458번지 일원의 필지와 공동건축할 경우에는 1458번지 일원 필지의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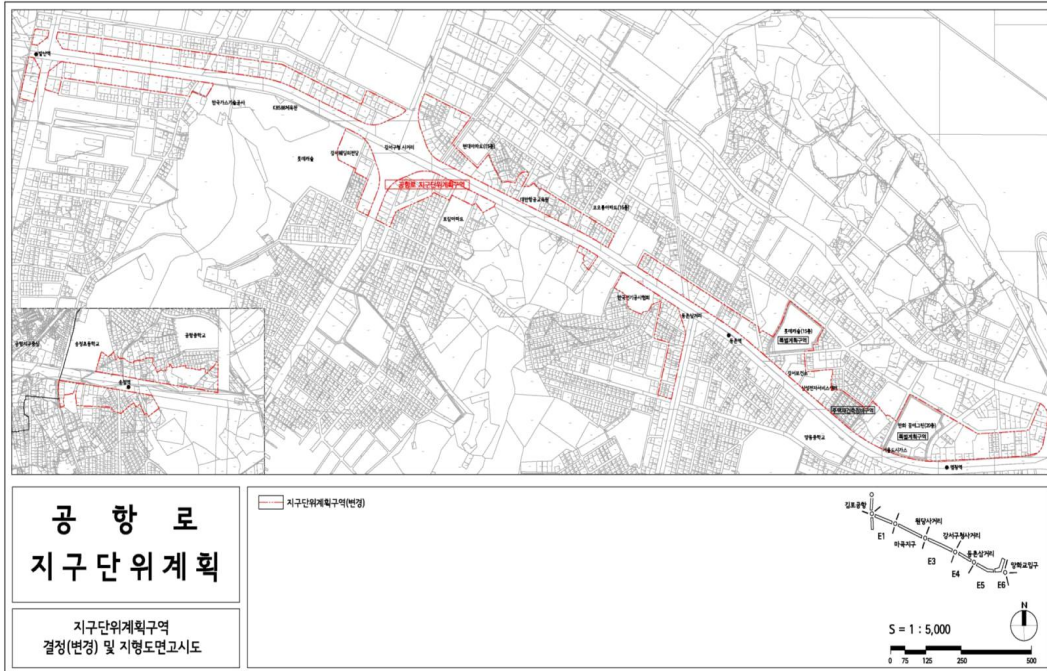


15.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결정조서		변 경	
	(2) 용적률		(2) 용적률		(2) 용적률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나. 건축물의 밀도	종전	변경	종전	변경	종전	변경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360% 이하	360% 이하	360% 이하	360% 이하	360% 이하	36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20% 이하	220% 이하	220% 이하	220% 이하	220% 이하	22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주1) 특별계획구역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각각의 세부 개발계획의 지침을 따름 주2)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1991.05.11.이후)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아래의 '주거복합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 시 허용용적률'을 적용하고,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아파트)부분의 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할 것 주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상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을 준용할 것 주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할 것	[주거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 시 허용용적률]		[주거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 시 허용용적률]		[주거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 시 허용용적률]	
	주택연면적(㎡)	시·도지(제55조 제3항)	주택연면적(㎡)	시·도지(제55조 제3항)	주택연면적(㎡)	시·도지(제55조 제3항)
	800㎡ 이하	250% 이하	800㎡ 이하	250% 이하	800㎡ 이하	25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320% 이하	600㎡ 이하	320% 이하	600㎡ 이하	320% 이하
	500㎡ 이하	330% 이하	500㎡ 이하	330% 이하	5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340% 이하	400㎡ 이하	340% 이하	400㎡ 이하	340% 이하
	300㎡ 이하	350% 이하	300㎡ 이하	350% 이하	300㎡ 이하	350% 이하
	200㎡ 이하	360% 이하	200㎡ 이하	360% 이하	200㎡ 이하	360% 이하
	200㎡ 이하	360% 이하	200㎡ 이하	360% 이하	200㎡ 이하	360% 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중 점도조건이 양호한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중 점도조건이 불량한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주거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 시 허용용적률]		[주거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 시 허용용적률]		[주거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 시 허용용적률]	
	주택연면적(㎡)	시·도지(제55조 제3항)	주택연면적(㎡)	시·도지(제55조 제3항)	주택연면적(㎡)	시·도지(제55조 제3항)
	800㎡ 이하	250% 이하	800㎡ 이하	250% 이하	800㎡ 이하	25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320% 이하	600㎡ 이하	320% 이하	600㎡ 이하	320% 이하
	500㎡ 이하	330% 이하	500㎡ 이하	330% 이하	5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340% 이하	400㎡ 이하	340% 이하	400㎡ 이하	340% 이하
	300㎡ 이하	350% 이하	300㎡ 이하	350% 이하	300㎡ 이하	350% 이하
	200㎡ 이하	360% 이하	200㎡ 이하	360% 이하	200㎡ 이하	360% 이하
	200㎡ 이하	360% 이하	200㎡ 이하	360% 이하	200㎡ 이하	360% 이하

구분	기정				변경																																																																																										
	민간부분				시행지침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단위대지별로 규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용적률 규제를 받는 필지 및 획지들이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 기존 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이 같고, 서로 다른 폭원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필지 및 획지들은 각각의 기존 및 허용 용적률의 면적대비 가장 평균수치를 당해 대지의 기존 및 허용 용적률로 적용한다. - 용도지역이 다른 필지 및 획지들이 공동개발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20)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및 건축법 시행령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따른다.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단위대지별로 규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용적률 규제를 받는 필지 및 획지들이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 기존 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이 같고, 서로 다른 폭원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필지 및 획지들은 각각의 기존 및 허용 용적률의 면적대비 가장 평균수치를 당해 대지의 기존 및 허용 용적률로 적용한다. - 용도지역이 다른 필지 및 획지들이 공동개발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20)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및 건축법 시행령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따른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용도지역</th><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일반상업지역</td><td>500%이하</td><td>800%이하</td><td>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1996.07.05)</td></tr> <tr> <td>일반주거지역</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서울시고시 제1996-46호 (1996.03.06)</td></tr> <tr> <td>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서울시고시 제1996-231호 (1996.08.14)</td></tr> <tr> <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220%이하</td><td>250%이하</td><td>상한용적률 : 250%이하</td></tr> <tr> <td>제2종 일반주거지역</td><td>200%이하</td><td>230%이하</td><td>상한용적률 : 250%이하</td></tr> <tr> <td>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td><td>170%이하</td><td>200%이하</td><td></td></tr> <tr> <td>제2종일반주거지역(17층)</td><td>150%이하</td><td>200%이하</td><td></td></tr> <tr> <td>자연녹지지역</td><td>-</td><td>50%이하</td><td></td></tr> </tbody> </table>				용도지역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고	일반상업지역	500%이하	80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1996.07.05)	일반주거지역	300%이하	63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1996.03.06)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231호 (1996.08.14)	제1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상한용적률 : 2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30%이하	상한용적률 :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70%이하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7층)	150%이하	200%이하		자연녹지지역	-	50%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용도지역</th><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일반상업지역</td><td>500%이하</td><td>800%이하</td><td>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1996.07.05)</td></tr> <tr> <td>일반주거지역</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서울시고시 제1996-46호 (1996.03.06)</td></tr> <tr> <td>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서울시고시 제1996-231호 (1996.08.14)</td></tr> <tr> <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220%이하</td><td>250%이하</td><td>상한용적률 : 250%이하</td></tr> <tr> <td>제2종 일반주거지역</td><td>200%이하</td><td>230%이하</td><td>상한용적률 : 250%이하</td></tr> <tr> <td>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td><td>170%이하</td><td>200%이하</td><td></td></tr> <tr> <td>제2종일반주거지역(17층)</td><td>150%이하</td><td>200%이하</td><td></td></tr> <tr> <td>자연녹지지역</td><td>-</td><td>50%이하</td><td></td></tr> </tbody> </table>				용도지역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고	일반상업지역	500%이하	80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1996.07.05)	일반주거지역	300%이하	63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1996.03.06)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231호 (1996.08.14)	제1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상한용적률 : 2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30%이하	상한용적률 :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70%이하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7층)	150%이하	200%이하		자연녹지지역	-	50%이하																
용도지역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고																																																																																												
일반상업지역	500%이하	80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1996.07.05)																																																																																												
일반주거지역	300%이하	63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1996.03.06)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231호 (1996.08.14)																																																																																												
제1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상한용적률 : 2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30%이하	상한용적률 :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70%이하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7층)	150%이하	200%이하																																																																																													
자연녹지지역	-	50%이하																																																																																													
용도지역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고																																																																																												
일반상업지역	500%이하	80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1996.07.05)																																																																																												
일반주거지역	300%이하	63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1996.03.06)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231호 (1996.08.14)																																																																																												
제1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상한용적률 : 2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30%이하	상한용적률 :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70%이하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7층)	150%이하	200%이하																																																																																													
자연녹지지역	-	50%이하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4조 (용적률)	주1) 특별계획구역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세부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지침에 따른다. 주2)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1991.05.11이후)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아래의 '주거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시 허용용적률'을 적용하고,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아파트)부분의 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함. 주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상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을 준용할 것 주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할 것				주1) 특별계획구역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각각의 세부 개발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주2)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1991.05.11이후)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아래의 '주거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시 허용용적률'을 적용하고,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아파트)부분의 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함. 주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상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을 준용할 것 주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할 것																																																																																										
	[주거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 시 허용용적률]				[주거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 시 허용용적률]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주택연면적 비율 (%)</th><th rowspan="2">도시계획조례(제55조 제3항)</th><th colspan="2">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서울시고시 제1996-195호</th><th colspan="2">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231호</th></tr> <tr> <th>점도조건 양호 (12m이상)</th><th>점도조건 불량 (12m미만)</th><th>점도조건 양호 (8m이상)</th><th>점도조건 불량 (8m미만)</th></tr> </thead> <tbody> <tr> <td>90이상</td><td>-</td><td>-</td><td>-</td><td>250%이하</td><td>250%이하</td></tr> <tr> <td>70이상~90미만</td><td>-</td><td>-</td><td>-</td><td>300%이하</td><td>250%이하</td></tr> <tr> <td>60이상~70미만</td><td>600%이하</td><td>500%이하</td><td>400%이하</td><td>320%이하</td><td>260%이하</td></tr> <tr> <td>50이상~60미만</td><td>650%이하</td><td>530%이하</td><td>425%이하</td><td>330%이하</td><td>270%이하</td></tr> <tr> <td>40이상~50미만</td><td>700%이하</td><td>560%이하</td><td>450%이하</td><td>340%이하</td><td>280%이하</td></tr> <tr> <td>30이상~40미만</td><td>750%이하</td><td>590%이하</td><td>475%이하</td><td>350%이하</td><td>290%이하</td></tr> <tr> <td>20이상~30미만</td><td>800%이하</td><td>630%이하</td><td>500%이하</td><td>360%이하</td><td>300%이하</td></tr> <tr> <td>20미만</td><td>800%이하</td><td>630%이하</td><td>500%이하</td><td>360%이하</td><td>300%이하</td></tr> </tbody> </table>					주택연면적 비율 (%)	도시계획조례(제55조 제3항)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231호		점도조건 양호 (12m이상)	점도조건 불량 (12m미만)	점도조건 양호 (8m이상)	점도조건 불량 (8m미만)	90이상	-	-	-	250%이하	250%이하	70이상~90미만	-	-	-	300%이하	250%이하	60이상~70미만	600%이하	500%이하	400%이하	320%이하	260%이하	50이상~60미만	650%이하	530%이하	425%이하	330%이하	270%이하	40이상~50미만	700%이하	560%이하	450%이하	340%이하	280%이하	30이상~40미만	750%이하	590%이하	475%이하	350%이하	290%이하	20이상~30미만	800%이하	630%이하	500%이하	360%이하	300%이하	20미만	800%이하	630%이하	500%이하	360%이하	300%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주택연면적 비율 (%)</th><th colspan="2">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231호</th></tr> <tr> <th>점도조건 양호 (8m이상)</th><th>점도조건 불량 (8m미만)</th></tr> </thead> <tbody> <tr> <td>90이상</td><td>250%이하</td><td>250%이하</td></tr> <tr> <td>70이상~90미만</td><td>300%이하</td><td>250%이하</td></tr> <tr> <td>60이상~70미만</td><td>320%이하</td><td>260%이하</td></tr> <tr> <td>50이상~60미만</td><td>330%이하</td><td>270%이하</td></tr> <tr> <td>40이상~50미만</td><td>340%이하</td><td>280%이하</td></tr> <tr> <td>30이상~40미만</td><td>350%이하</td><td>290%이하</td></tr> <tr> <td>20이상~30미만</td><td>360%이하</td><td>300%이하</td></tr> <tr> <td>20미만</td><td>360%이하</td><td>300%이하</td></tr> </tbody> </table>				주택연면적 비율 (%)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231호		점도조건 양호 (8m이상)	점도조건 불량 (8m미만)	90이상	250%이하	250%이하	70이상~90미만	300%이하	250%이하	60이상~70미만	320%이하	260%이하	50이상~60미만	330%이하	270%이하	40이상~50미만	340%이하	280%이하	30이상~40미만	350%이하	290%이하	20이상~30미만	360%이하	300%이하	20미만	360%이하	300%이하
주택연면적 비율 (%)	도시계획조례(제55조 제3항)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231호																																																																																											
		점도조건 양호 (12m이상)	점도조건 불량 (12m미만)	점도조건 양호 (8m이상)	점도조건 불량 (8m미만)																																																																																										
90이상	-	-	-	250%이하	250%이하																																																																																										
70이상~90미만	-	-	-	300%이하	250%이하																																																																																										
60이상~70미만	600%이하	500%이하	400%이하	320%이하	260%이하																																																																																										
50이상~60미만	650%이하	530%이하	425%이하	330%이하	270%이하																																																																																										
40이상~50미만	700%이하	560%이하	450%이하	340%이하	280%이하																																																																																										
30이상~40미만	750%이하	590%이하	475%이하	350%이하	290%이하																																																																																										
20이상~30미만	800%이하	630%이하	500%이하	360%이하	300%이하																																																																																										
20미만	800%이하	630%이하	500%이하	360%이하	300%이하																																																																																										
주택연면적 비율 (%)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231호																																																																																														
	점도조건 양호 (8m이상)	점도조건 불량 (8m미만)																																																																																													
90이상	250%이하	250%이하																																																																																													
70이상~90미만	300%이하	250%이하																																																																																													
60이상~70미만	320%이하	260%이하																																																																																													
50이상~60미만	330%이하	270%이하																																																																																													
40이상~50미만	340%이하	280%이하																																																																																													
30이상~40미만	350%이하	290%이하																																																																																													
20이상~30미만	360%이하	300%이하																																																																																													
20미만	360%이하	300%이하																																																																																													
③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공동개발, 권장용도, 건축한계선 등을 통해 용적률 완화를 받을 경우 기존 용적률에 용적률 완화부분을 합한 용적률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별로 지정된 허용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도면표시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중 점도조건이 양호한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중 점도조건이 불량한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공동개발, 권장용도, 건축한계선 등을 통해 용적률 완화를 받을 경우 기존 용적률에 용적률 완화부분을 합한 용적률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별로 지정된 허용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도면표시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th></tr> </thead> <tbody> <tr> <td></td></tr> </tbody> </table>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 / 허용</th></tr> </thead> <tbody> <tr> <td></td></tr> </tbody> </table>				기준 / 허용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기준 / 허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th></tr> </thead> <tbody> <tr> <td></td></tr> </tbody> </table>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 / 허용</th></tr> </thead> <tbody> <tr> <td></td></tr> </tbody> </table>				기준 / 허용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기준 /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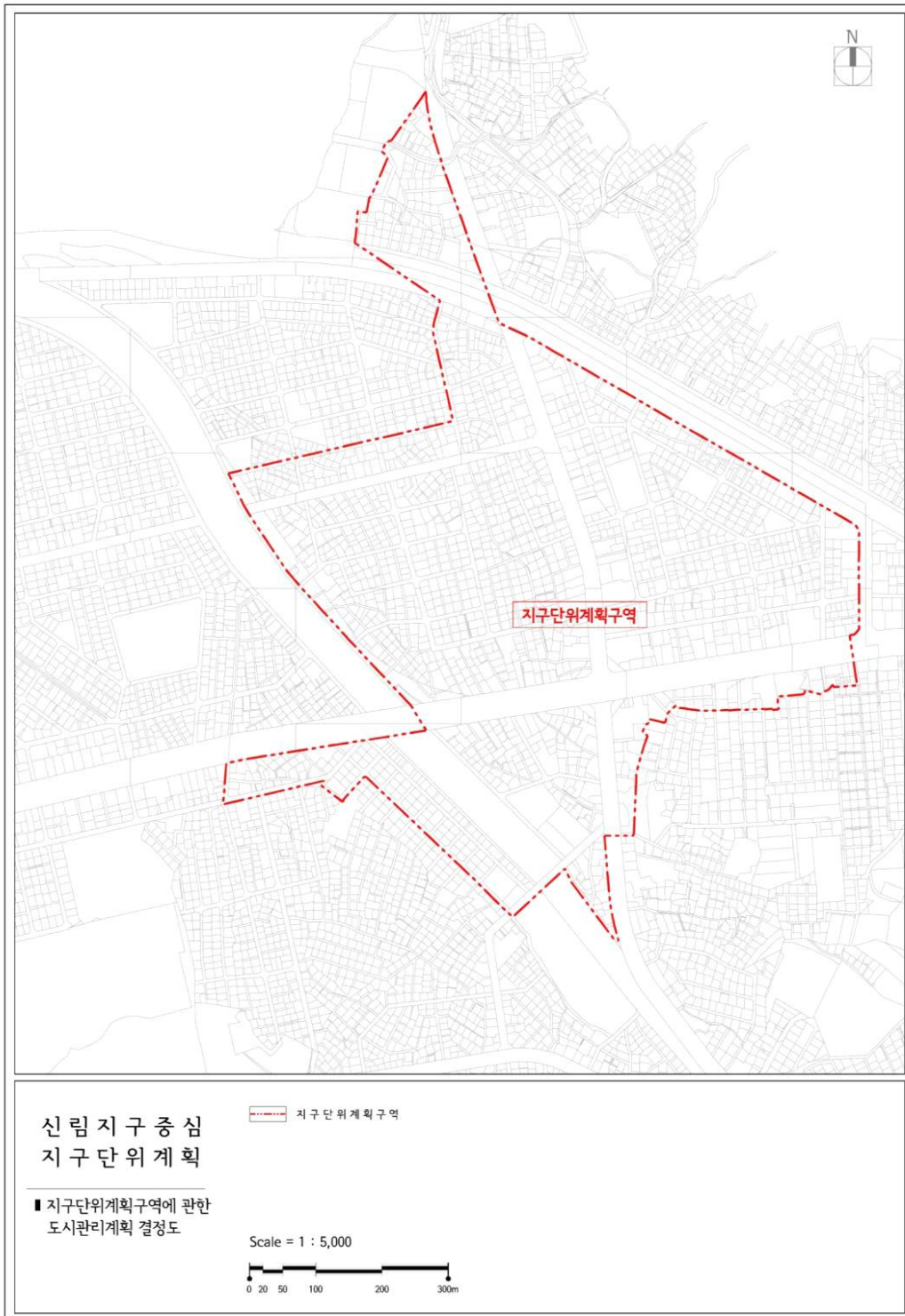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16.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결정조서	변 경																																			
	결정조서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2)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나) 건축물의 용적률	(3)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입지 시 기준·허용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를 적용받는 필지	(3)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입지 시 기준·허용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를 적용받는 필지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② 기준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660%를 적용받는 필지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table><tr><th>주택면적</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60이상 ~ 70미만</td><td>450%</td><td>600%</td><td rowspan="5">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tr><td>50이상 ~ 60미만</td><td>490%</td><td>650%</td></tr><tr><td>40이상 ~ 50미만</td><td>530%</td><td>700%</td></tr><tr><td>30이상 ~ 40미만</td><td>560%</td><td>750%</td></tr><tr><td>30미만</td><td>600%</td><td>800%</td></tr></table> ② 기준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660%를 적용받는 필지 <table><tr><th>주택면적</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60이상 ~ 70미만</td><td rowspan="5">450% 이하</td><td>500%</td><td rowspan="5">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tr><td>50이상 ~ 60미만</td><td>540%</td></tr><tr><td>40이상 ~ 50미만</td><td>580%</td></tr><tr><td>30이상 ~ 40미만</td><td>620%</td></tr><tr><td>30미만</td><td>660%</td></tr></table>	주택면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	60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50이상 ~ 60미만	490%	650%	40이상 ~ 50미만	530%	700%	30이상 ~ 40미만	560%	750%	30미만	600%	800%	주택면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 이하	50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50이상 ~ 60미만	540%	40이상 ~ 50미만	580%	30이상 ~ 40미만	620%	30미만	660%
주택면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	60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50이상 ~ 60미만	490%	650%																																				
40이상 ~ 50미만	530%	700%																																				
30이상 ~ 40미만	560%	750%																																				
30미만	600%	800%																																				
주택면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 이하	50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50이상 ~ 60미만		540%																																				
40이상 ~ 50미만		580%																																				
30이상 ~ 40미만		620%																																				
30미만		660%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3) 용적률 완화 항목 및 내용	(1)인센티브 적용기준 ①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2(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 용적률 ② 공동개발 또는 맞벽건축은 중복하여 적용받지 않음 ③ 미관지구 내 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포함)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 시 제외 ④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대지 내 공지 및 대지 내 통로 등의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예,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후퇴부분에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등) ⑤ 전층 권장용도는 주택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주거지역 20% 이상, 일반상업지역 30%이상 설치시 수용된 것으로 봄 ⑥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⑦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단,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 적용 가능	(1)인센티브 적용기준 ①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2(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 용적률 ② 공동개발 또는 맞벽건축은 중복하여 적용받지 않음 ③ 미관지구 내 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포함)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 시 제외 ④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대지 내 공지 및 대지 내 통로 등의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예,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후퇴부분에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등) ⑤ 전층 권장용도는 주택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주거지역 20% 이상, 일반상업지역 30%이상 설치시 수용된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⑥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⑦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단,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 적용 가능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① 민간부문 시행지침 15조 (주거 복합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	②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1991.5.11. 이전 변경)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1.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를 적용받는 필지	②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1991.5.11. 이전 변경)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①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를 적용받는 필지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상한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② 기준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660%를 적용받는 필지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table><tr><th>주택면적</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60이상 ~ 70미만</td><td>450%</td><td>600%</td><td rowspan="5">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tr><td>50이상 ~ 60미만</td><td>490%</td><td>650%</td></tr><tr><td>40이상 ~ 50미만</td><td>530%</td><td>700%</td></tr><tr><td>30이상 ~ 40미만</td><td>560%</td><td>750%</td></tr><tr><td>30미만</td><td>600%</td><td>800%</td></tr></table> 2. 기준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660%를 적용받는 필지 <table><tr><th>주택면적</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60이상 ~ 70미만</td><td rowspan="5">450% 이하</td><td>500%</td><td rowspan="5">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tr><td>50이상 ~ 60미만</td><td>540%</td></tr><tr><td>40이상 ~ 50미만</td><td>580%</td></tr><tr><td>30이상 ~ 40미만</td><td>620%</td></tr><tr><td>30미만</td><td>660%</td></tr></table>	주택면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	60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50이상 ~ 60미만	490%	650%	40이상 ~ 50미만	530%	700%	30이상 ~ 40미만	560%	750%	30미만	600%	800%	주택면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 이하	50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50이상 ~ 60미만	540%	40이상 ~ 50미만	580%	30이상 ~ 40미만	620%	30미만	660%
주택면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	60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50이상 ~ 60미만	490%	650%																																				
40이상 ~ 50미만	530%	700%																																				
30이상 ~ 40미만	560%	750%																																				
30미만	600%	800%																																				
주택면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 이하	50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50이상 ~ 60미만		540%																																				
40이상 ~ 50미만		580%																																				
30이상 ~ 40미만		620%																																				
30미만		66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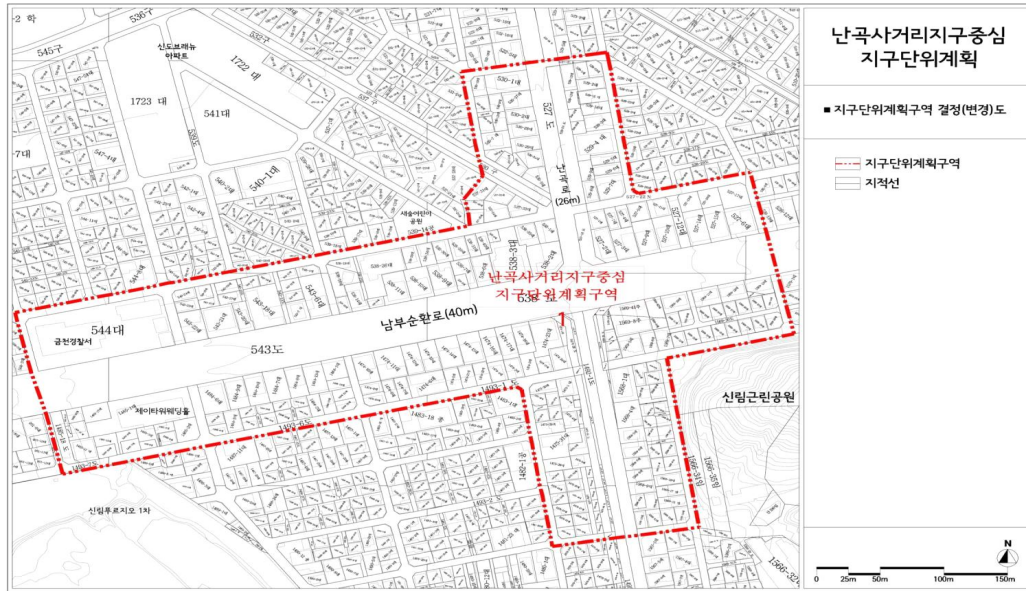
17. 대림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나. 건축물 밀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접도조건	계획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기정	일반상업 지역	12m이상 (간선변)	300% 이하	630% 이하
			12m미만 (공동개발 해제 시 이면부)	250% 이하	500% 이하
주1) 기정 용적률은 현행법상 용적률 내에서 별도로 적용함 주2) 공동개발 해제 시 이면부 필지는 접도조건에 따른 기준/허용용적률 250%/500% 적용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접도조건	계획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기정	일반상업 지역	12m이상 (간선변)	300% 이하	630% 이하	
		12m미만 (공동개발 해제 시 이면부)	250% 이하	500% 이하	
주1) 기정 용적률은 현행법상 용적률 내에서 별도로 적용함 주2) 공동개발 해제 시 이면부 필지는 접도조건에 따른 기준/허용용적률 250%/500% 적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12m 이상 도로에 접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 (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12m 미만 도로에 접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 (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19.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결정조서

변 경

■용적률 결정조서

용도·지역	용적률	
	기준	허용
일반상업지역	간선변	600%이하
	이면부	450%이하
준주거지역	간선변	300%이하
	이면부	300%이하
준주거지역 (기존용도 상환지)	간선변	300%이하 (400%이하(주1))
	이면부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0%

주1) 간선도로(남부순환도로, 봉천로, 관악로)에 접하는 필지 중 지역중심 활성화 기능 <R&D(연구소), 문화(공연장, 전시장), 교육(학원, 도서관), (준)공공임대주택, 병원>을 연면적의 50%이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용적률 400%로 적용

주2)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계획에 따름

■비주거용도 계획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

주택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이하	6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50이상 ~ 60미만	480%이하	650%이하	
40이상 ~ 50미만	530%이하	700%이하	
30이상 ~ 40미만	560%이하	750%이하	
30미만	600%이하	800%이하	

• 기준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660%

주택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이하	5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50이상 ~ 60미만		540%이하	
40이상 ~ 50미만		580%이하	
30이상 ~ 40미만		620%이하	
30미만		660%이하	

■용적률 결정조서

용도·지역	용적률	
	기준	허용
일반상업지역	간선변	600%이하
	이면부	450%이하
준주거지역	간선변	300%이하
	이면부	300%이하
준주거지역 (기존용도 상환지)	간선변	300%이하 (400%이하(주1))
	이면부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0%

주1) 간선도로(남부순환도로, 봉천로, 관악로)에 접하는 필지 중 지역중심 활성화 기능 <R&D(연구소), 문화(공연장, 전시장), 교육(학원, 도서관), (준)공공임대주택, 병원>을 연면적의 50%이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용적률 400%로 적용

주2)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계획에 따름

■비주거용도 계획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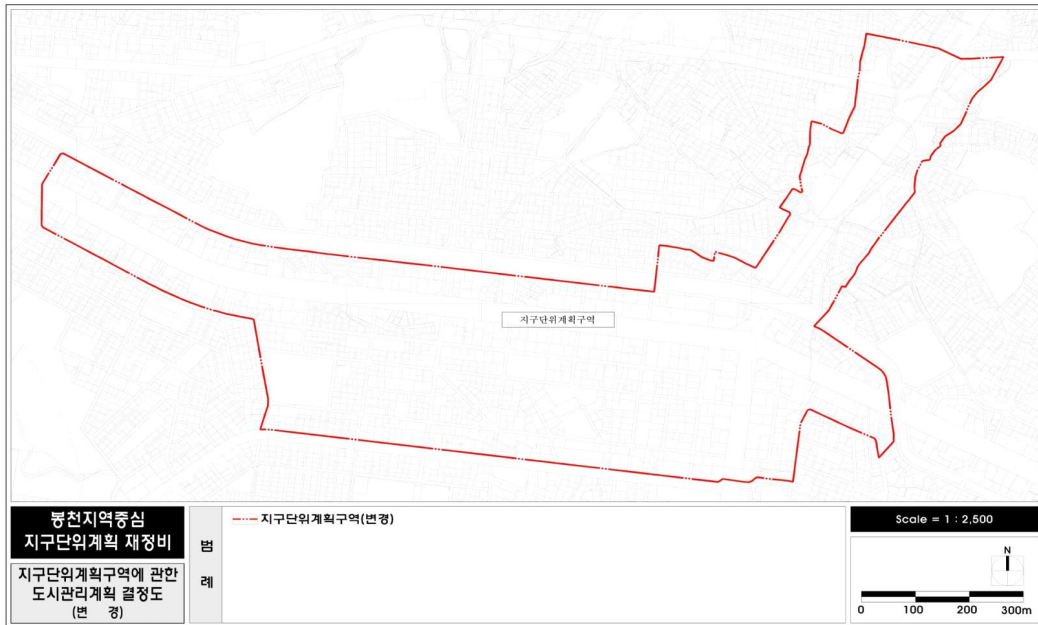
• 기준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660%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2호각목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1조 [용적률]	④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	④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																				
	<table><tr><th>주택면적 비율(%)</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6001상 ~ 70미만</td><td>450%이하</td><td>600%이하</td><td rowspan="5">법적용적률의 2배이하</td></tr><tr><td>5001상 ~ 60미만</td><td>490%이하</td><td>650%이하</td></tr><tr><td>4001상 ~ 50미만</td><td>530%이하</td><td>700%이하</td></tr><tr><td>3001상 ~ 40미만</td><td>560%이하</td><td>750%이하</td></tr><tr><td>30미만</td><td>600%이하</td><td>800%이하</td></tr></table>	주택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01상 ~ 70미만	450%이하	6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5001상 ~ 60미만	490%이하	650%이하	4001상 ~ 50미만	530%이하	700%이하	3001상 ~ 40미만	560%이하	750%이하	30미만	600%이하	800%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주택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01상 ~ 70미만	450%이하	6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5001상 ~ 60미만	490%이하	650%이하																				
4001상 ~ 50미만	530%이하	700%이하																				
3001상 ~ 40미만	560%이하	750%이하																				
30미만	600%이하	800%이하																				
2. 기준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660%	<table><tr><th>주택면적 비율(%)</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6001상 ~ 70미만</td><td rowspan="5">450%이하</td><td>500%이하</td><td rowspan="5">법적용적률의 2배이하</td></tr><tr><td>5001상 ~ 60미만</td><td>540%이하</td></tr><tr><td>4001상 ~ 50미만</td><td>580%이하</td></tr><tr><td>3001상 ~ 40미만</td><td>620%이하</td></tr><tr><td>30미만</td><td>660%이하</td></tr></table>	주택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01상 ~ 70미만	450%이하	5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5001상 ~ 60미만	540%이하	4001상 ~ 50미만	580%이하	3001상 ~ 40미만	620%이하	30미만	660%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주택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01상 ~ 70미만	450%이하	5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5001상 ~ 60미만		540%이하																				
4001상 ~ 50미만		580%이하																				
3001상 ~ 40미만		620%이하																				
30미만		660%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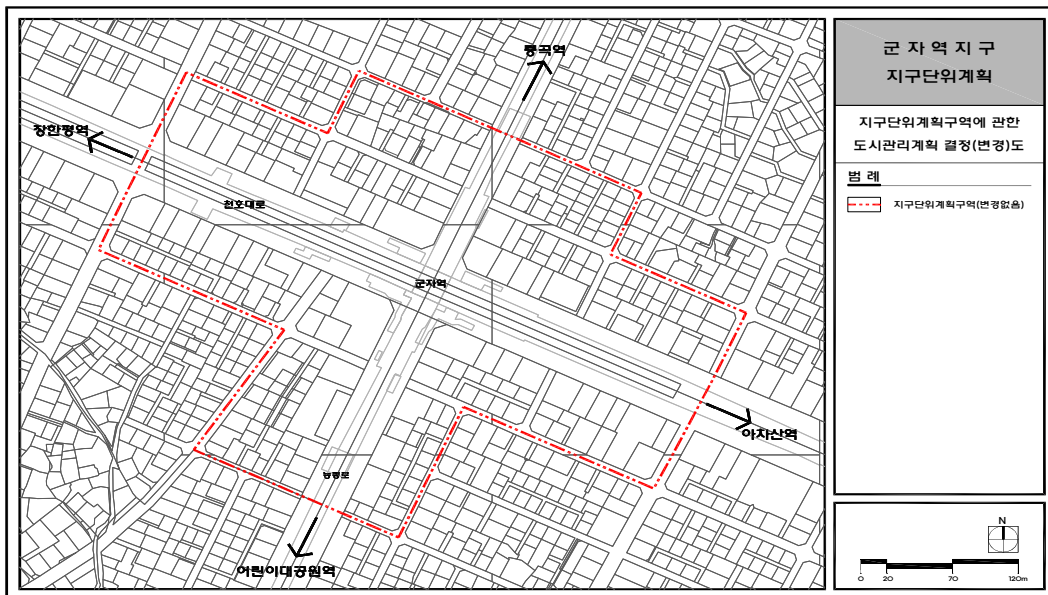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20.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결정조서				
■ 용적률 계획 결정조서					■ 용적률 계획 결정조서				
구 분	기존 용적률	변경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구 분	기존 용적률	변경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준주거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 적용	준주거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 적용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 일반상업)	300% 이하	630% 이하	800% 이하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 일반상업)	300% 이하	630% 이하	800% 이하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 × α) α: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후 대지면적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 × α) α: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후 대지면적			
③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장기전세주택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장기전세주택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 준주거지역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4-4-2)				※ 준주거지역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4-4-2)				
라. 용적률 계획 결정(변경) 조서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 → 일반상업)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 (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21. 건대입구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결정조서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라. 건폐율·용적률 계획(변경)조서

■ 건폐율·용적률 계획			
구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본주거지역 (일반주거-준주거)	60% 이하	300% 이하	360% 이하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일반상업)	60% 이하	300% 이하	630% 이하
제3종일반 주거지역	50% 이하	250% 이하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 $\times (1+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 (a: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부 대지면적)		

※ 장기전세주택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 건폐율·용적률 계획			
구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본주거지역 (일반주거-준주거)	60% 이하	300% 이하	360% 이하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일반상업)	60% 이하	300% 이하	630% 이하
제3종일반 주거지역	50% 이하	250% 이하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 $\times (1+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 (a: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부 대지면적)		

※ 장기전세주택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 → 일반상업)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 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제 부칙 (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용적률 인센티브(변경)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 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순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100분의 30까지 인정되며, 지구단위계획도상과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인센티브 계획기준 적용이 어려운 구역으로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이 없는 필지에서는 규제형 인센티브 총량의 1/3이 인정 된다.
- 6) 전층공간 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면적(주차장 제외)의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면적"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층 공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면적(주차장 제외)의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면적"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7) 공동개발(지점/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 개발시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8)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이후부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후퇴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건축한계선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거처야 한다.
- 9) 조정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항목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 용적률 인센티브(변경)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 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순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100분의 30까지 인정되며, 지구단위계획도상과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인센티브 계획기준 적용이 어려운 구역으로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이 없는 필지에서는 규제형 인센티브 총량의 1/3이 인정 된다.
- 6) 전층공간 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면적(주차장 제외)의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면적"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층 공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면적(주차장 제외)의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면적"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제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7) 공동개발(지점/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 개발시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8)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이후부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후퇴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건축한계선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거처야 한다.
- 9) 건설부의 미관지구내에 포함되는 건축선 후퇴부분은 관련규정상 의무하는 사항이므로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9) 조정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항목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4. 인센티브 운영계획 결정(변경)조서

항목	내용	원칙기준	비고	
인센티브	대지내 공지	특정지역개발 기준용적률 $\times a$	(일반상업지역) 2필지 : 0.05 3필지 : 0.1 4필지이상 : 0.15	
	대지내 통로	건축한계선/벽면면적에서 $\times (\text{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a)$ 공공교통통로 $\times (\text{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a)$	(일반상업지역) 피로티구조 : a=1.25 개방형구조 : a=2.5	
유도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동동로변 일반상업지역) 피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3 (구의로변 일반상업지역) 개방형구조 : a=3.5 (이현로 일반상업지역) 피로티구조 : a=2 개방형구조 : a=4 (본주거지역) 피로티구조 : a=0.4 개방형구조 : a=0.8	
	대지내 공지	점지형, 점상형 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	(일반상업지역) 피로티구조 : a=1.75 개방형구조 : a=3.5 (이현로 일반상업지역) 피로티구조 : a=2 개방형구조 : a=4 (본주거지역) 피로티구조 : a=0.4 개방형구조 : a=0.8
인센티브	건축물 용도	관망	기준용적률 $\times$ (관망용도면적/주차장용도면적) $\times a$ 특정용 (특대기능)개발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 a=0.4 이면부 : a=0.5 일반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도시관계	지하철 및 지하철 시설 건축물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3$	지하철통행량, 연결통로, 환기구시설을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인센티브	건축물 등 형태	기준용적률 $\times 0.05 \sim 0.15$	(중전부 부지율 70% 이상 및 1층부 아래에 조성 계획시 (두가지 요소중 한가지만 계획시 1/3 적용)	
	주거개발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 $\times 0.2$	
인센티브	건물공공 시설제공	건물내 공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3$	건물내 공공시설을 공공에 사용(공부사용)으로 제공한 경우

항목	내용	원칙기준	비고	
인센티브	대지내 공지	특정지역개발 기준용적률 $\times a$	(일반상업지역) 2필지 : 0.05 3필지 : 0.1 4필지이상 : 0.15	
	대지내 통로	건축한계선/벽면면적에서 $\times (\text{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a)$ 공공교통통로 $\times (\text{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a)$	(일반상업지역) 피로티구조 : a=1.25 개방형구조 : a=2.5	
유도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동동로변 일반상업지역) 피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3 (구의로변 일반상업지역) 개방형구조 : a=3.5 (이현로 일반상업지역) 피로티구조 : a=2 개방형구조 : a=4 (본주거지역) 피로티구조 : a=0.4 개방형구조 : a=0.8	
	대지내 공지	점지형, 점상형 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	(일반상업지역) 피로티구조 : a=1.75 개방형구조 : a=3.5 (이현로 일반상업지역) 피로티구조 : a=2 개방형구조 : a=4 (본주거지역) 피로티구조 : a=0.4 개방형구조 : a=0.8
인센티브	건축물 용도	관망	기준용적률 $\times$ (관망용도면적/주차장용도면적) $\times a$ 특정용 (특대기능)개발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 a=0.4 이면부 : a=0.5 일반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도시관계	지하철 및 지하철 시설 건축물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3$	지하철통행량, 연결통로, 환기구시설을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인센티브	건축물 등 형태	기준용적률 $\times 0.05 \sim 0.15$	(중전부 부지율 70% 이상 및 1층부 아래에 조성 계획시 (두가지 요소중 한가지만 계획시 1/3 적용)	
	주거개발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 $\times 0.2$	
인센티브	건물공공 시설제공	건물내 공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3$	건물내 공공시설을 공공에 사용(공부사용)으로 제공한 경우

내역		한화기준	비고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자산	기준금액 < (자산지반손/매지연적) × 100		
	지반손	기준금액 < 0		
	충당	기준금액 < 0	누적비율에 대한지반손의 20%까지 허용	
	누적	매연기준자산비율 < 0.1	합계 > 20%는 산업별 규제	
	주차량	기준금액 < 0.05		
	투입성 로컬	기준금액 < 0.04	총자산형률 10%이상 처리시점 철저시 적용	
	증후도 실시	기준금액 < 0.04	관련성상 의무지시점 종료 제외	
	지질	기준금액 < 0.04		
	이동	기준금액 < 0.04	이동채무비율 < 0.5(ton)이 2년이상 < 0.5 또는 < 2년이상 < 0.2 이상성세	
	성지	기준금액 < 0.05	건축공시자료의 1%이상 또는 예외자산 사용형률의 1% 이상 보유	
예외지 사용	기준금액 < 0.05			
예외지 결의 계척 계획	구분	예외지 결의 요율	예외지 결의 요율 인센 티브	
	1	33.5% 이상	85% 이상	기준금액 × 0.080이하
	2	23.5 - 33.5% 미만	74 - 85%	기준금액 × 0.050
	3	14 - 23.5% 미만	65 - 74%	기준금액 × 0.050
	4	7 - 14% 미만	55 - 65%	기준금액 × 0.050

1.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하며, 기준용적률과 완화용적률의 합은 각각의 대지에 지정된 허용용적률의 이하가 되도록 함

■ 건대입구 역세권 일반상업지역

조년 번호	위치	계획 내용	항목	평가기준	비고
A-⑩ B-③	회랑동 7-3 6-1 6-1	중국의 기강 정신을 위한 공간 용도 조영	관공릉	기존용역률 × (관공릉용역률 : 주차장용 제외한 건축면적) × 0.4	주차장을 제외한 총면적면적 40%이상 준수
			경계 공간 및 경치경관	기존용역률 × (삼지연면적 - 의무면적) (대내면적) × 3	위수준은 국유지 및 대지면적의 8%이상 조성 반영
			건축물 형태	기존용역률 × 0.2	1층 부속 20% 이상 및 지붕면적 70%이상
			지하철 및 도로와 시설 연계	기존용역률 × 0.3	지하철 시설용도, 연결통로, 환기시설용도 건물부속 또는 대내에 설치시
O (3-1)	자영동 1-1	지하 및 형태 공간 및 휴게 공간 조성	지하철 환승	기존용역률 × (재개발용 /대지면적) × 2.5	미개발부지 건축계획서 제출
			지하면적은 중수부, 빗물 및 우수시설, 녹색주차장, 옥상녹화 등		

■ 동로변 일반상업지역

조별 번호	위치	개별 비고	항목	완화기준	비고
3-2	자랑동 2-1 일대	보통 지대 (중부 1종주 거주지역) 전면 부지 면적 70%이 상 개발 가능 지대	중요의 기능 유도지역	기존용역률 × (간장용역률: 주상전 용역률, 건축용역률) × 0.4	주상층용역률 완화 30%이내 인정
			개장근로지 업종지정지역	기존용역률 (설치용역률-아파트 대체용역률) × 3	다목적용역률 80% 이상 조정시 인정
			건축용역 제한지역	기존용역률 × 0.3	전면부지 개편 70%이상 인정
			건축 제한지	기존용역률 (재개발 지역지정) × 2.5	건축제한지 재개발에서 제외
			자연환경보존 지역	중수로, 빙하와 녹색주상지, 옥상녹화 등	

■ 동로변 일반상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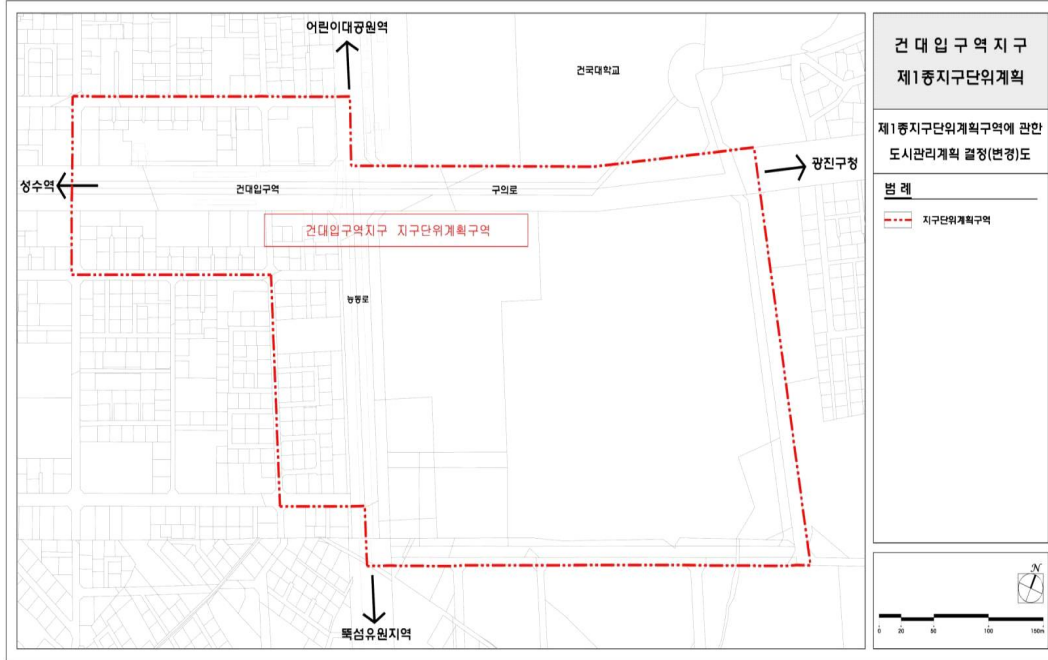
[illegible]

■ 구의로변 일반상업지역

도면 번호	위치	계획 용도	항목		완화기준	비고
	화양동	적정 개발	유 도	권장 용도	기존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주차장을 제외한 총면적의 30%

- 89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22. 화양1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라. 용적률 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조서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용적률 계획</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r><tr><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100% 이하</td><td>100% 이하</td><td>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td><td></td></tr><tr><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200% 이하</td><td>200% 이하</td><td></td><td></td></tr><tr><td>제1종준용주거지역 → 준주거지역</td><td>100% 이하</td><td>250% 이하</td><td>400% 이하</td><td></td></tr><tr><td>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00% 이하</td><td>250% 이하</td><td>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td><td></td></tr><tr><td>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td><td></td><td></td><td></td><td></td></tr><tr><td>화양시정/송정연립주변</td><td>300% 이하</td><td>360% 이하</td><td>400% 이하</td><td></td></tr><tr><td>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td><td>300% 이하</td><td>630% 이하</td><td>800% 이하</td><td></td></tr><tr><td>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td><td>400% 이하</td><td>660% 이하</td><td>800% 이하</td><td></td></tr><tr><td>기존 준주거지역</td><td>300% 이하</td><td>400% 이하</td><td>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td><td></td></tr><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3">*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 (a: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부 대지면적)</td><td></td></tr></table> ※ 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50%이하 적용 ※ 장기전세주택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 허용용적률은 본 지침에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 2002년 이후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은 관련법령 내에서 기정지침을 따른다.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시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또한 일반 상업지역의 건축물 용도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총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이하로 적용한다.	구 분	용적률 계획			비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 이하	100% 이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제1종준용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0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50% 이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화양시정/송정연립주변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630% 이하	800% 이하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400% 이하	660% 이하	800% 이하		기존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 (a: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부 대지면적)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용적률 계획</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r><tr><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100% 이하</td><td>100% 이하</td><td>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td><td></td></tr><tr><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200% 이하</td><td>200% 이하</td><td></td><td></td></tr><tr><td>제1종준용주거지역 → 준주거지역</td><td>100% 이하</td><td>250% 이하</td><td>400% 이하</td><td></td></tr><tr><td>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00% 이하</td><td>250% 이하</td><td>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td><td></td></tr><tr><td>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td><td></td><td></td><td></td><td></td></tr><tr><td>화양시정/송정연립주변</td><td>300% 이하</td><td>360% 이하</td><td>400% 이하</td><td></td></tr><tr><td>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td><td>300% 이하</td><td>630% 이하</td><td>800% 이하</td><td></td></tr><tr><td>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td><td>400% 이하</td><td>660% 이하</td><td>800% 이하</td><td></td></tr><tr><td>기존 준주거지역</td><td>300% 이하</td><td>400% 이하</td><td>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td><td></td></tr><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3">*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 (a: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부 대지면적)</td><td></td></tr></table> ※ 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50%이하 적용 ※ 장기전세주택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 허용용적률은 본 지침에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 2002년 이후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은 관련 법령 내에서 기정지침을 따른다.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 → 일반상업)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준주거 → 일반상업)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용적률 계획			비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 이하	100% 이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제1종준용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0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50% 이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화양시정/송정연립주변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630% 이하	800% 이하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400% 이하	660% 이하	800% 이하		기존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 (a: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부 대지면적)		
구 분	용적률 계획			비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 이하	100% 이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제1종준용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0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50% 이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화양시정/송정연립주변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630% 이하	800% 이하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400% 이하	660% 이하	800% 이하																																																																																																																		
기존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 (a: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부 대지면적)																																																																																																																				
구 분	용적률 계획			비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 이하	100% 이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제1종준용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0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50% 이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화양시정/송정연립주변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630% 이하	800% 이하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400% 이하	660% 이하	800% 이하																																																																																																																		
기존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 (a: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부 대지면적)																																																																																																																				
4. 인센티브 운영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100분의 30까지만 인정되며,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100분의 30까지만 인정되며,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전충권장 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면적(전용면적)”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특정층 권장의 경우는 해당층 바닥면적(공용면적 제외)의 50%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6)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대 개발규모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필지 수를 변경하여 공동 개발시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7) 미관지구내에서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미관지구 이후부터 후퇴한 건축한계선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8) 조정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 9)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시설을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공개공지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단,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공개공지 면적에서는 제외)

항목	내역	완화기준	비 고
규제형 인센티브	특정계 획	특정계 획에 따른 적용기준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특정계 획	기존용역률 × a	2필지 : 0.05 3필지 : 0.06 4필지 이상 : 0.15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백면한계선	기존용역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대지내 통로	(보차용통로/공공보행통로)	기존용역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유도형 인센티브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기존용역률 × 2a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기존용역률 × a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백면한계선	기존용역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대지내 통로	(보차용통로/공공보행통로)	기존용역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건물용도 인센티브	건물용도	건물용도	기존용역률 × a
	건물용도	건물용도	기존용역률 × a
	건물용도	건물용도	기존용역률 × a
	건물용도	건물용도	기존용역률 × a

- 5) 전충권장 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면적(전용면적)”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특정층 권장의 경우는 해당층 바닥면적(공용면적 제외)의 50%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역을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 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 제79조제3항,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 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6)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대 개발규모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필지 수를 변경하여 공동 개발시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7) 미관지구내에서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미관지구 이후부터 후퇴한 건축한계선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8) 조정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 9)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시설을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공개공지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단,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공개공지 면적에서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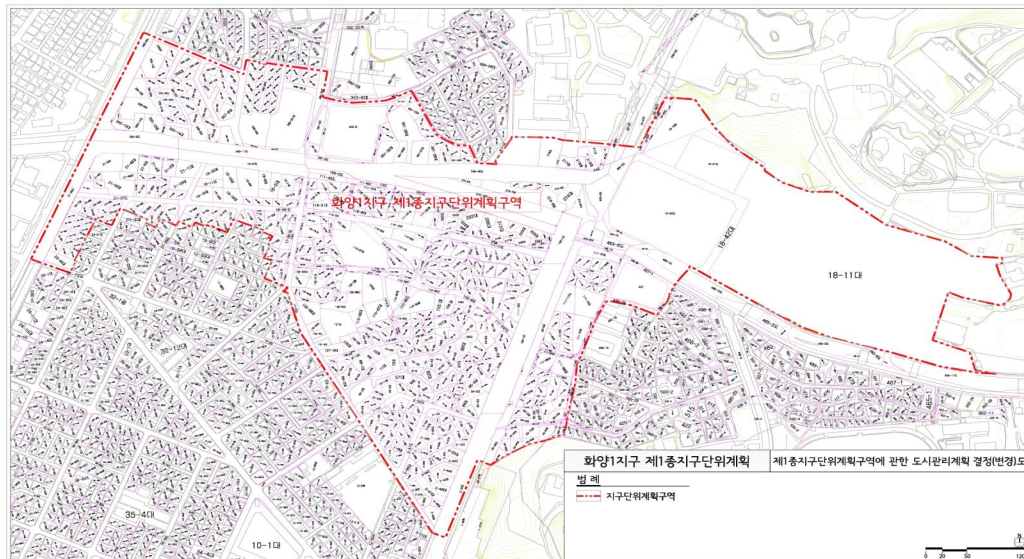
항목	내역	완화기준	비 고
규제형 인센티브	특정계 획	특정계 획에 따른 적용기준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특정계 획	기존용역률 × a	2필지 : 0.05 3필지 : 0.06 4필지 이상 : 0.15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백면한계선	기존용역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대지내 통로	(보차용통로/공공보행통로)	기존용역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유도형 인센티브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기존용역률 × 2a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기존용역률 × a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백면한계선	기존용역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대지내 통로	(보차용통로/공공보행통로)	기존용역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건물용도 인센티브	건물용도	건물용도	기존용역률 × a
	건물용도	건물용도	기존용역률 × a
	건물용도	건물용도	기존용역률 × a
	건물용도	건물용도	기존용역률 × a

구분		기정		변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1조(용적률: 규제)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용적률 범위 이하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용적률 범위 이하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②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적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3항에 의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 용도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총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이하로 적용한다.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적용)	②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 → 일반상업)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준주거 → 일반상업)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내용		환기기준		비고																
항목																				
의무환기 단위별 환기기준	자연지반보존	기존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대지면적) × 0.2)																		
	옥상녹화	기존용적률 × (재공면적(대지면적) ×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적 조경으로 산림법 면적 제외																
	녹색주지방 (투수성 포장)	기존용적률 × 0.05																		
	중수도 설치	기존용적률 × 0.04		중수이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안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존용적률 × 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 0.5 또는 대지면적 × 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존용적률 × 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table><tr><th>구분</th><th>에너지 절약계획 도입</th><th>에너지절약지표 기준</th><th>에너지절약지표 기준</th><th>에너지절약지표 기준</th></tr><tr><td>1등급</td><td>33.5% 이상</td><td>81점 이상</td><td>85점 이상</td><td>기존용적률 × 0.08이내</td></tr><tr><td>2등급</td><td>23.5~33.5%미만</td><td>74~81점 미만</td><td>75~85점 미만</td><td>기존용적률 × 0.05이내</td></tr></table>		구분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에너지절약지표 기준	에너지절약지표 기준	에너지절약지표 기준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존용적률 × 0.08이내	2등급	23.5~33.5%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존용적률 × 0.05이내		
구분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에너지절약지표 기준	에너지절약지표 기준	에너지절약지표 기준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존용적률 × 0.08이내																
2등급	23.5~33.5%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존용적률 × 0.05이내																

내용		환기기준		비고																
항목																				
의무환기 단위별 환기기준	자연지반보존	기존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대지면적) × 0.2)																		
	옥상녹화	기존용적률 × (재공면적(대지면적) ×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적 조경으로 산림법 면적 제외																
	녹색주지방 (투수성 포장)	기존용적률 × 0.05																		
	중수도 설치	기존용적률 × 0.04		중수이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안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존용적률 × 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 0.5 또는 대지면적 × 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존용적률 × 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table><tr><th>구분</th><th>에너지 절약계획 도입</th><th>에너지절약지표 기준</th><th>에너지절약지표 기준</th><th>에너지절약지표 기준</th></tr><tr><td>1등급</td><td>33.5% 이상</td><td>81점 이상</td><td>85점 이상</td><td>기존용적률 × 0.08이내</td></tr><tr><td>2등급</td><td>23.5~33.5%미만</td><td>74~81점 미만</td><td>75~85점 미만</td><td>기존용적률 × 0.05이내</td></tr></table>		구분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에너지절약지표 기준	에너지절약지표 기준	에너지절약지표 기준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존용적률 × 0.08이내	2등급	23.5~33.5%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존용적률 × 0.05이내		
구분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에너지절약지표 기준	에너지절약지표 기준	에너지절약지표 기준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존용적률 × 0.08이내																
2등급	23.5~33.5%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존용적률 × 0.05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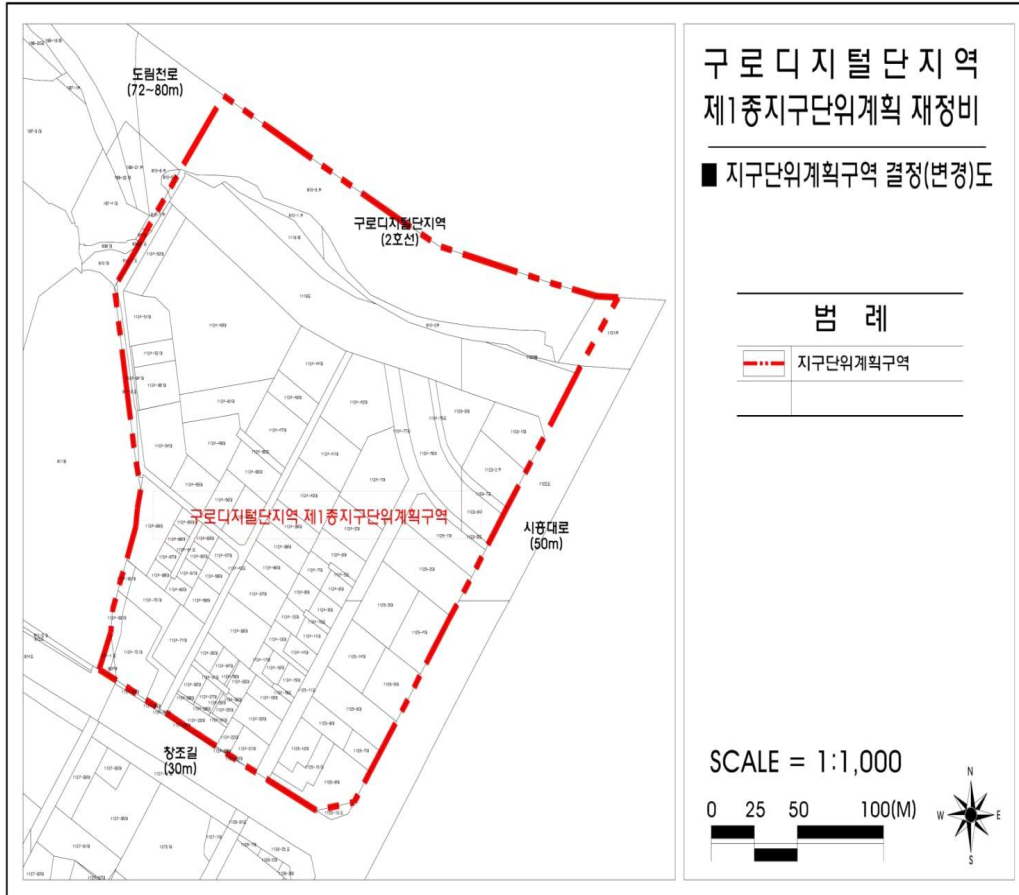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23.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나. 용적률 결정조서	나. 용적률 결정조서																																																											
	<table><tr><th>구 분</th><th>접도조건</th><th>기준 용적률 (%)</th><th>허용 용적률 (%)</th><th>비 고</th></tr><tr><td rowspan="5">변 경 지 역</td><td>일반상업지역</td><td>폭 20m이상 도로변</td><td>400</td><td>660</td><td></td></tr><tr><td rowspan="3">주거지역</td><td>폭 20m미만 도로변</td><td>320</td><td>500</td><td></td></tr><tr><td>특별계획구역</td><td>폭 20m이상 도로변</td><td>350</td><td>400</td><td></td></tr><tr><td>폭 20m미만 도로변</td><td>300</td><td>400</td><td></td></tr><tr><td>기타</td><td>폭 20m미만 도로변</td><td>250</td><td>350</td><td>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내 단독 개발시나, 만다른 도로변 단독 개발시 기준용적률 200%, 허 용용적률 300% 적용</td></tr></table> ※ 단, 상한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에 한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용적률 범위내로 적용 -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1+1.3α) 이내 (α = 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구 분	접도조건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비 고	변 경 지 역	일반상업지역	폭 20m이상 도로변	400	660		주거지역	폭 20m미만 도로변	320	500		특별계획구역	폭 20m이상 도로변	350	400		폭 20m미만 도로변	300	400		기타	폭 20m미만 도로변	250	350	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내 단독 개발시나, 만다른 도로변 단독 개발시 기준용적률 200%, 허 용용적률 300% 적용	<table><tr><th>구 분</th><th>접도조건</th><th>기준 용적률 (%)</th><th>허용 용적률 (%)</th><th>비 고</th></tr><tr><td rowspan="5">변 경 지 역</td><td>일반상업지역</td><td>폭 20m이상 도로변</td><td>400</td><td>660</td><td></td></tr><tr><td rowspan="3">주거지역</td><td>폭 20m미만 도로변</td><td>320</td><td>500</td><td></td></tr><tr><td>특별계획구역</td><td>폭 20m이상 도로변</td><td>350</td><td>400</td><td></td></tr><tr><td>폭 20m미만 도로변</td><td>300</td><td>400</td><td></td></tr><tr><td>기타</td><td>폭 20m미만 도로변</td><td>250</td><td>350</td><td>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내 단독 개발시나, 만다른 도로변 단독 개발시 기준용적률 200%, 허 용용적률 300% 적용</td></tr></table> ※ 단, 상한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에 한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용적률 범위내로 적용 -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1+1.3α) 이내 (α = 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 중 폭 20m 이상 도로변의 경우 [별표 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 중 폭 20m 미만 도로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접도조건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비 고	변 경 지 역	일반상업지역	폭 20m이상 도로변	400	660		주거지역	폭 20m미만 도로변	320	500		특별계획구역	폭 20m이상 도로변	350	400		폭 20m미만 도로변	300	400		기타	폭 20m미만 도로변	250	350
구 분	접도조건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비 고																																																									
변 경 지 역	일반상업지역	폭 20m이상 도로변	400	660																																																									
	주거지역	폭 20m미만 도로변	320	500																																																									
		특별계획구역	폭 20m이상 도로변	350	400																																																								
		폭 20m미만 도로변	300	400																																																									
	기타	폭 20m미만 도로변	250	350	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내 단독 개발시나, 만다른 도로변 단독 개발시 기준용적률 200%, 허 용용적률 300% 적용																																																								
구 분	접도조건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비 고																																																									
변 경 지 역	일반상업지역	폭 20m이상 도로변	400	660																																																									
	주거지역	폭 20m미만 도로변	320	500																																																									
		특별계획구역	폭 20m이상 도로변	350	400																																																								
		폭 20m미만 도로변	300	400																																																									
	기타	폭 20m미만 도로변	250	350	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내 단독 개발시나, 만다른 도로변 단독 개발시 기준용적률 200%, 허 용용적률 300% 적용																																																								
③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3)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절 적용기준 제17조 (용적률)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 단위대지별로 규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②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허용용적률 적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용도용적제 등)을 준수한다. 이 경우 상한 용적률 부분의 주거부분은 허용용적률 산정시 적용한 주택연면적비율과 동일하게 비례배분한 비율로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④ 대지가 20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를 적용하여 용적률을 산정한다. ⑤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도면표시 <table><tr><td>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td><td>250% / 350%</td><td></td><td></td></tr></table> ⑥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신규계획 수립기준, 2009.4」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250% / 350%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 단위대지별로 규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②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이 경우 상한 용적률 부분의 주거부분은 허용용적률 산정시 적용한 주택연면적비율과 동일하게 비례배분한 비율로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④ 대지가 20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를 적용하여 용적률을 산정한다. ⑤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도면표시 <table><tr><td>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td><td>250% / 350%</td><td></td><td></td></tr></table> ⑥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신규계획 수립기준, 2009.4」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250% / 350%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250% / 350%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250% /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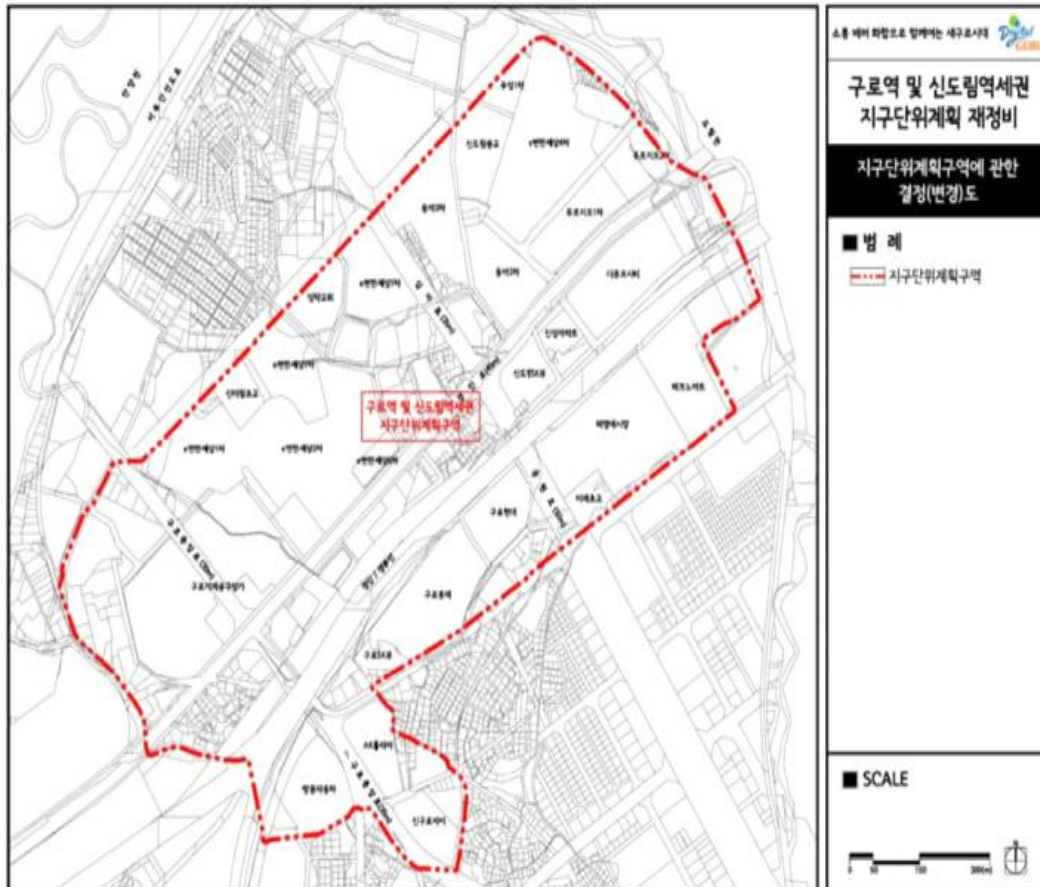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24.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3)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 조서	나. 용적률 결정조서						나. 용적률 결정조서											
	종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접도조건 및 기타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종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접도조건 및 기타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준공업		일반상업		-	400% 이하	660% 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1+1.3×α) 이내 ※ α = (공공시설제공 면적)/(공공시 설 제공후 대지면적)		준공업		일반상업		-	400% 이하	660% 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1+1.3×α) 이내 ※ α = (공공시설제공 면적)/(공공시 설 제공후 대지면적)	
	준공업	준주거	8m 이상	300% 이하	400% 이하	준공업	준주거			8m 이상	300% 이하	400% 이하						
			8m 미만	250% 이하	400% 이하					8m 미만	250% 이하	400% 이하						
	준공업	준공업	12m 이상	300% 이하	400% 이하	준공업	준공업			12m 이상	300% 이하	400% 이하						
			12m 미만	250% 이하	375% 이하					12m 미만	250% 이하	375% 이하						
	준공업	일반주거지역	제 3 종	-	200% 이하	250% 이하	준공업	일반주거지역	제 3 종	-	200% 이하	250% 이하						
			제 2 종	-	150% 이하	200% 이하			제 2 종	-	150% 이하	200% 이하						
	※ 공동주택 건립시는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행정2부시장 방침 제143호, 2007.4.25.)」에 따름																	
※ 공동주택 건립시는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행정2부시장 방침 제143호, 2007.4.25.)」에 따름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준공업→일반상업)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절 적용기준 제12조 (용적률)	① ~ ③, ⑤ ~ ⑧ : 변경없음.																	
	④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허용용적률 적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을 준수한다. 이 경우 상한용적률의 주거부분은 허용용적률 산정시 적용한 주택연면적 비율과 동일하게 비례배분한 비율로 한다.																	
	① ~ ③, ⑤ ~ ⑧ : 변경없음.																	
	④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이 경우 상한 용적률 부분의 주거부분은 허용용적률 산정시 적용한 주택연면적비율과 동일하게 비례배분한 비율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25. 가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2.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계획 2) 용적률 계획 : 변경	가) 용적률 결정조서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종전 용도지역</th><th>변경 용도지역</th><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head><tbody><tr><td rowspan="3">변경</td><td>준공업</td><td>일반상업</td><td>400% 이하</td><td>660% 이하</td><td>800% 이하</td></tr><tr><td>준공업</td><td>준주거</td><td>250% 이하</td><td>40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이하</td></tr><tr><td>일반주거</td><td>준주거</td><td>300% 이하</td><td>36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이하</td></tr></tbody></table>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4.03.14.) 적용 ※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도입시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적용 ※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에 따른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별 운영기준, 2014.02.03.」을 준용한다.	구분	종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변경	준공업	일반상업	400% 이하	660% 이하	800% 이하	준공업	준주거	250% 이하	4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	준주거	300% 이하	36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가) 용적률 결정조서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종전 용도지역</th><th>변경 용도지역</th><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head><tbody><tr><td rowspan="3">변경</td><td>준공업</td><td>일반상업</td><td>400% 이하</td><td>660% 이하</td><td>800% 이하</td></tr><tr><td>준공업</td><td>준주거</td><td>250% 이하</td><td>40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이하</td></tr><tr><td>일반주거</td><td>준주거</td><td>300% 이하</td><td>360% 이하</td><td>법적용적률의 2배이하</td></tr></tbody></table>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4.03.14.) 적용 ※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도입시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적용 ※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에 따른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별 운영기준, 2014.02.03.」을 준용한다.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준공업→일반상업)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분	종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변경	준공업	일반상업	400% 이하	660% 이하	800% 이하	준공업	준주거	250% 이하	4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	준주거	300% 이하	36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구분	종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변경	준공업	일반상업	400% 이하	660% 이하	800% 이하																																									
	준공업	준주거	250% 이하	4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	준주거	300% 이하	36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구분	종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변경	준공업	일반상업	400% 이하	660% 이하	800% 이하																																									
	준공업	준주거	250% 이하	4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	준주거	300% 이하	36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나) 용적률 적용기준 1)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적 용 기 준</th><th>비 고</th></tr></thead><tbody><tr><td>준공업지역 →상업지역</td><td>•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 이하 적용</td><td></td></tr></tbody></table>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4.03.14.)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 이하 적용		나) 용적률 적용기준 1)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 이하 적용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2조 (용적률)	① ~ ②, ④, ⑤, ⑦ : 변경없음. ③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입지시 허용용적률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별표3])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하고,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면 가능하다. ⑥ 용적률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 ②, ④, ⑤, ⑦ : 변경없음. ③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준공업→일반상업)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중점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존 용역별	허용 용역별	상한용역별	
준공업	일반상업	400% 이하	660% 이하	800% 이하	* 허용용역별 $\times (1+1.3 \times \Delta)$ 이내 ※ $\Delta =$ (공공시설제고 면적)/(공공시설 면적) ※ 제2종 대지면적
준공업	준주거	250% 이하	400% 이하	번적용역의 2배이하	
일반주거	준주거	300% 이하	360% 이하	번적용역의 2배이하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4.03.14.)
적용

※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도입시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적용

※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에 따른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허용
용적률은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2014.02.03.」을 준용한다.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⑥ 용적률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점 응도지역	변경 응도지역	기존 응점별	허용 응점별	상한응점별
중농업	일반산업	400 이하	660 이하	800 이하
중농업	중주거	250% 이하	400 이하	면적응점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	중주거	300 이하	360 이하	면적응점률의 2배이하

* 허용응점률
 $\times (1 + 1.3 \times \Delta)$
 이내
 ※ $\Delta =$
 (문경시실제문경시
 공공시설(중점지
 선 개발면적
 대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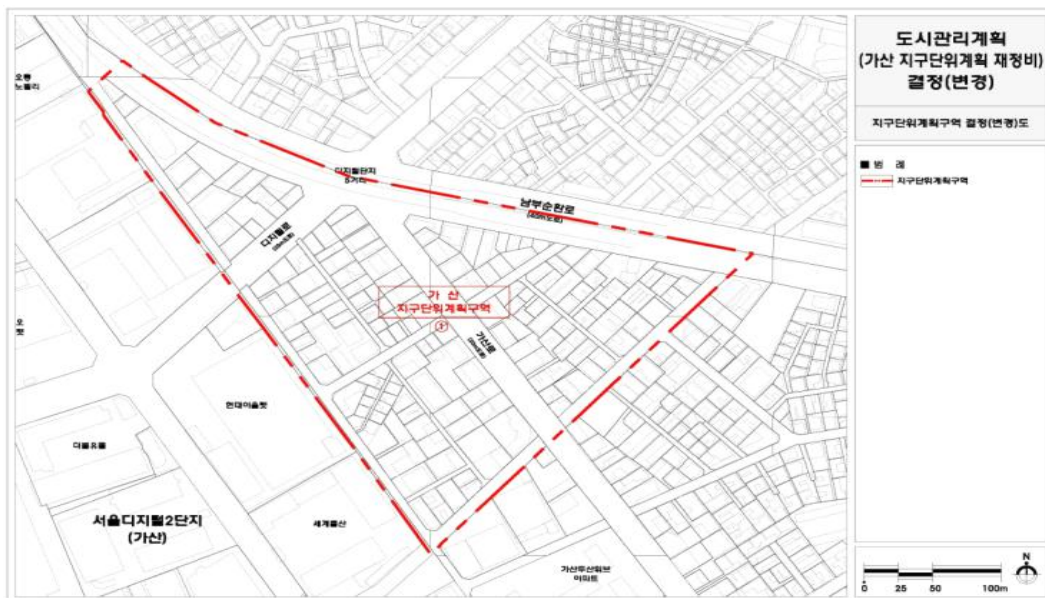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4.03.14.)
적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에 따른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허용
용적률은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2014.02.03.」을 준용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4조 (용적률)	①, ③ ~ ⑤ : 변경없음. ②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 할 경우 주 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 지역의 주거부분 용적률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른다.	①, ③ ~ ⑤ : 변경없음. ②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된 지역의 주거부분 용적률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27.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결정조서																																																																		
나)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변경		■변경																																																																
	<table><thead><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용도지역 기준</th><th rowspan="2">협조조건 및 기타</th><th colspan="3">지구단위계획 내용</th></tr><tr><th>중전 용도지역</th><th>변경 용도지역</th><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r></thead><tbody><tr><td rowspan="12">일반 상업</td><td rowspan="6">일반 상업</td><td rowspan="6">일반 상업</td><td>12m이상</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d rowspan="12">대지의 일부를 공익시설용지 또는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 = (기존용적률 × 1.3 × α) 이내 α = (공공시설면적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100 (공공시설면적은 대지면적)</td></tr><tr><td>12m미만</td><td>400% 이하</td><td>660% 이하</td></tr><tr><td>12m미만</td><td>250% 이하</td><td>450% 이하</td></tr><tr><td>12m미만</td><td>300% 이하</td><td>630% 이하</td></tr><tr><td>12m미만</td><td>250% 이하</td><td>450% 이하</td></tr><tr><td>12m미만</td><td>250% 이하</td><td>400% 이하</td></tr><tr><td rowspan="6">준공업</td><td rowspan="6">준공업 (주4, 주5)</td><td>8m이상</td><td>250% 이하 (300%이하 주1)</td><td>400% 이하</td></tr><tr><td>8m미만</td><td>250% 이하</td><td>350% 이하</td></tr><tr><td>준부대부지</td><td>250% 이하</td><td>250% 이하</td><td>500% 이하</td></tr><tr><td>아파트단지(예: 르브, 부지개, 건영A)</td><td>230% 이하</td><td>-</td><td>250% 이하</td></tr><tr><td>준부대부지</td><td>250% 이하</td><td>300% 이하(주2)</td><td>-</td></tr><tr><td>아파트단지(북영A)</td><td>200% 이하</td><td>-</td><td>250% 이하</td></tr><tr><td rowspan="2">준공업</td><td rowspan="2">준공업</td><td>-</td><td>200% 이하</td><td>230% 이하</td><td>-</td></tr></tbody></table>		구분	용도지역 기준		협조조건 및 기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일반 상업	일반 상업	일반 상업	12m이상	600% 이하	800% 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익시설용지 또는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 = (기존용적률 × 1.3 × α) 이내 α = (공공시설면적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100 (공공시설면적은 대지면적)	12m미만	400% 이하	660% 이하	12m미만	250% 이하	450% 이하	12m미만	300% 이하	630% 이하	12m미만	250% 이하	450% 이하	12m미만	250% 이하	400% 이하	준공업	준공업 (주4, 주5)	8m이상	250% 이하 (300%이하 주1)	400% 이하	8m미만	250% 이하	350% 이하	준부대부지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아파트단지(예: 르브, 부지개, 건영A)	230% 이하	-	250% 이하	준부대부지	250% 이하	300% 이하(주2)	-	아파트단지(북영A)	200% 이하	-	250% 이하	준공업	준공업	-	200% 이하	230% 이하	-	
구분	용도지역 기준			협조조건 및 기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일반 상업	일반 상업	일반 상업	12m이상	600% 이하	800% 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익시설용지 또는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 = (기존용적률 × 1.3 × α) 이내 α = (공공시설면적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100 (공공시설면적은 대지면적)																																																													
			12m미만	400% 이하	660% 이하																																																														
			12m미만	250% 이하	450% 이하																																																														
			12m미만	300% 이하	630% 이하																																																														
			12m미만	250% 이하	450% 이하																																																														
			12m미만	250% 이하	400% 이하																																																														
	준공업	준공업 (주4, 주5)	8m이상	250% 이하 (300%이하 주1)	400% 이하																																																														
			8m미만	250% 이하	350% 이하																																																														
			준부대부지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아파트단지(예: 르브, 부지개, 건영A)	230% 이하	-		250% 이하																																																												
			준부대부지	250% 이하	300% 이하(주2)		-																																																												
			아파트단지(북영A)	200% 이하	-		250% 이하																																																												
준공업	준공업	-	200% 이하	230% 이하	-																																																														
		주) 1. ()는 15m 이상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한하여 적용 2. 군부대부지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체계를 적용하여 기존/허용용적률 산정 3. 구역계 면적 증가에 따라 증가된 부지의 용적률은 기정 용적률 체계를 따름 4. 베르빌아파트 북측 113번지 일대 15개필지(준공업지역)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건립시 250%/230%/250%(기존/허용/상한)의 용적률 체계를 따름(※상한=허용+(기존×1.3α×가중치)) 그 외 공동주택건립시, 250%/-/(기존/허용), 단 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을 수용하여야 함 5. 준공업지역내 특별계획구역 중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유형을 적용하는 지역은 본 지침에서 마련하는 별도의 용적률 체계 적용																																																																	
<table><thead><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용도지역 기준</th><th rowspan="2">협조조건 및 기타</th><th colspan="3">지구단위계획 내용</th></tr><tr><th>중전 용도지역</th><th>변경 용도지역</th><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r></thead><tbody><tr><td rowspan="12">일반 상업</td><td rowspan="6">일반 상업</td><td rowspan="6">일반 상업</td><td>12m이상</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d rowspan="12">대지의 일부를 공익시설용지 또는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 = (기존용적률 × 1.3 × α) 이내 α = (공공시설면적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100 (공공시설면적은 대지면적)</td></tr><tr><td>12m미만</td><td>400% 이하</td><td>660% 이하</td></tr><tr><td>12m미만</td><td>250% 이하</td><td>450% 이하</td></tr><tr><td>12m미만</td><td>300% 이하</td><td>630% 이하</td></tr><tr><td>12m미만</td><td>250% 이하</td><td>450% 이하</td></tr><tr><td>12m미만</td><td>250% 이하</td><td>400% 이하</td></tr><tr><td rowspan="6">준공업</td><td rowspan="6">준공업 (주4, 주5)</td><td>8m이상</td><td>250% 이하 (300%이하 주1)</td><td>400% 이하</td></tr><tr><td>8m미만</td><td>250% 이하</td><td>350% 이하</td></tr><tr><td>준부대부지</td><td>250% 이하</td><td>250% 이하</td><td>500% 이하</td></tr><tr><td>아파트단지(예: 르브, 부지개, 건영A)</td><td>230% 이하</td><td>-</td><td>250% 이하</td></tr><tr><td>준부대부지</td><td>250% 이하</td><td>300% 이하(주2)</td><td>-</td></tr><tr><td>아파트단지(북영A)</td><td>200% 이하</td><td>-</td><td>250% 이하</td></tr><tr><td rowspan="2">준공업</td><td rowspan="2">준공업</td><td>-</td><td>200% 이하</td><td>230% 이하</td><td>-</td></tr></tbody></table>		구분	용도지역 기준		협조조건 및 기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일반 상업	일반 상업	일반 상업	12m이상	600% 이하	800% 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익시설용지 또는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 = (기존용적률 × 1.3 × α) 이내 α = (공공시설면적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100 (공공시설면적은 대지면적)	12m미만	400% 이하	660% 이하	12m미만	250% 이하	450% 이하	12m미만	300% 이하	630% 이하	12m미만	250% 이하	450% 이하	12m미만	250% 이하	400% 이하	준공업	준공업 (주4, 주5)	8m이상	250% 이하 (300%이하 주1)	400% 이하	8m미만	250% 이하	350% 이하	준부대부지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아파트단지(예: 르브, 부지개, 건영A)	230% 이하	-	250% 이하	준부대부지	250% 이하	300% 이하(주2)	-	아파트단지(북영A)	200% 이하	-	250% 이하	준공업	준공업	-	200% 이하	230% 이하	-		
구분	용도지역 기준		협조조건 및 기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일반 상업	일반 상업	일반 상업	12m이상	600% 이하	800% 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익시설용지 또는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 = (기존용적률 × 1.3 × α) 이내 α = (공공시설면적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100 (공공시설면적은 대지면적)																																																													
			12m미만	400% 이하	660% 이하																																																														
			12m미만	250% 이하	450% 이하																																																														
			12m미만	300% 이하	630% 이하																																																														
			12m미만	250% 이하	450% 이하																																																														
			12m미만	250% 이하	400% 이하																																																														
	준공업	준공업 (주4, 주5)	8m이상	250% 이하 (300%이하 주1)	400% 이하																																																														
			8m미만	250% 이하	350% 이하																																																														
			준부대부지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아파트단지(예: 르브, 부지개, 건영A)	230% 이하	-		250% 이하																																																												
			준부대부지	250% 이하	300% 이하(주2)		-																																																												
			아파트단지(북영A)	200% 이하	-		250% 이하																																																												
준공업	준공업	-	200% 이하	230% 이하	-																																																														
		주) 1. ()는 15m 이상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한하여 적용 2. 군부대부지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체계를 적용하여 기존/허용용적률 산정 3. 구역계 면적 증가에 따라 증가된 부지의 용적률은 기정 용적률 체계를 따름 4. 베르빌아파트 북측 113번지 일대 15개필지(준공업지역)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건립시 250%/230%/250%(기존/허용/상한)의 용적률 체계를 따름(※상한=허용+(기존×1.3α×가중치)) 그 외 공동주택건립시, 250%/-/(기존/허용), 단 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을 수용하여야 함 5. 준공업지역내 특별계획구역 중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유형을 적용하는 지역은 본 지침에서 마련하는 별도의 용적률 체계 적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를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중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중 12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2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중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중 12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25% 이하(허용용적률의 50%)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주) 1.()는 15m 이상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한하여 적용
- 군부대부지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체계를 적용하여 기존/허용용적률 산정
 - 구역계 면적 증가에 따라 증가된 부지의 용적률은 지정 용적률 체계를 따름
 - 베르빌아파트 북측 113번지 일대 15개필지(준공업지역)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건립시 250%/230%/250%(기존/허용/상한)의 용적률 체계를 따름(※상한=허용+(기준×1.3α×가중치)) 그 외 공동주택건립시, 250%/-(기준/허용), 단 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을 수용하여야 함
 - 준공업지역내 특별계획구역 중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유형을 적용하는 지역은 본 지침에서 마련하는 별도의 용적률 체계 적용

- 주) 1.()는 15m 이상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한하여 적용
- 군부대부지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체계를 적용하여 기존/허용용적률 산정
 - 구역계 면적 증가에 따라 증가된 부지의 용적률은 지정 용적률 체계를 따름
 - 베르빌아파트 북측 113번지 일대 15개필지(준공업지역)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건립시 250%/230%/250%(기존/허용/상한)의 용적률 체계를 따름(※상한=허용+(기준×1.3α×가중치)) 그 외 공동주택건립시, 250%/-(기준/허용), 단 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을 수용하여야 함
 - 준공업지역내 특별계획구역 중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유형을 적용하는 지역은 본 지침에서 마련하는 별도의 용적률 체계 적용
-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중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중 12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2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중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중 12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2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다) 용적을 적용기준 ■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적용기준</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td><td>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 (시종동 992-19, 992-20, 992-46번지 제외)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하 적용 </td><td></td></tr> <tr> <td>상업지역</td><td>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시종동 992-19, 992-20, 992-46번지 제외)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하 적용 - 단,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80% 미만 적용 </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적용기준	비고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 (시종동 992-19, 992-20, 992-46번지 제외)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하 적용		상업지역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시종동 992-19, 992-20, 992-46번지 제외)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하 적용 - 단,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80% 미만 적용		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적률은 3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다) 용적을 적용기준 ■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구 분	적용기준	비고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 (시종동 992-19, 992-20, 992-46번지 제외)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하 적용										
상업지역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시종동 992-19, 992-20, 992-46번지 제외)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하 적용 - 단,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80% 미만 적용										
구 분	기 정	변 경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5조 (용적률)	① ~ ④, ⑥, ⑧, ⑨ : 변경없음. ⑤ 상업지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용도용적제 등)을 준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의 주거부분 용적률은 25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상한용적률 부분의 주거부분은 허용용적률 산정시 적용한 주택연면적비율과 동일하게 비례배분한 비율로 한다. ※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과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⑦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 이하로 적용한다.(용도지역 변경시점 : 1991.5.11.이후)	① ~ ④, ⑥, ⑧, ⑨ : 변경없음. 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의 주거부분 용적률은 25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상한용적률 부분의 주거부분은 허용용적률 산정시 적용한 주택연면적비율과 동일하게 비례배분한 비율로 한다. ※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과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28. 공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2) 용적률 결정조서	<table><tr><th rowspan="2">도면 번호</th><th rowspan="2">위 치</th><th>계획내용</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허용)</th></tr><tr><td rowspan="2">-</td><td>A블록8m 도로변</td><td>250% / 550%이하</td><td>12m 미만도로변</td></tr><tr><td>그 외</td><td>300% / 630%이하</td><td></td></tr></table>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기준/허용)	-	A블록8m 도로변	250% / 550%이하	12m 미만도로변	그 외	300% / 630%이하		2) 용적률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기준/허용)														
-	A블록8m 도로변	250% / 550%이하	12m 미만도로변											
	그 외	300% / 630%이하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용적률·높 이·배치·형 태·색채·건 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일반상업지역 중 A블록, 8m 도로변에 접한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7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다.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 조서		- 그 외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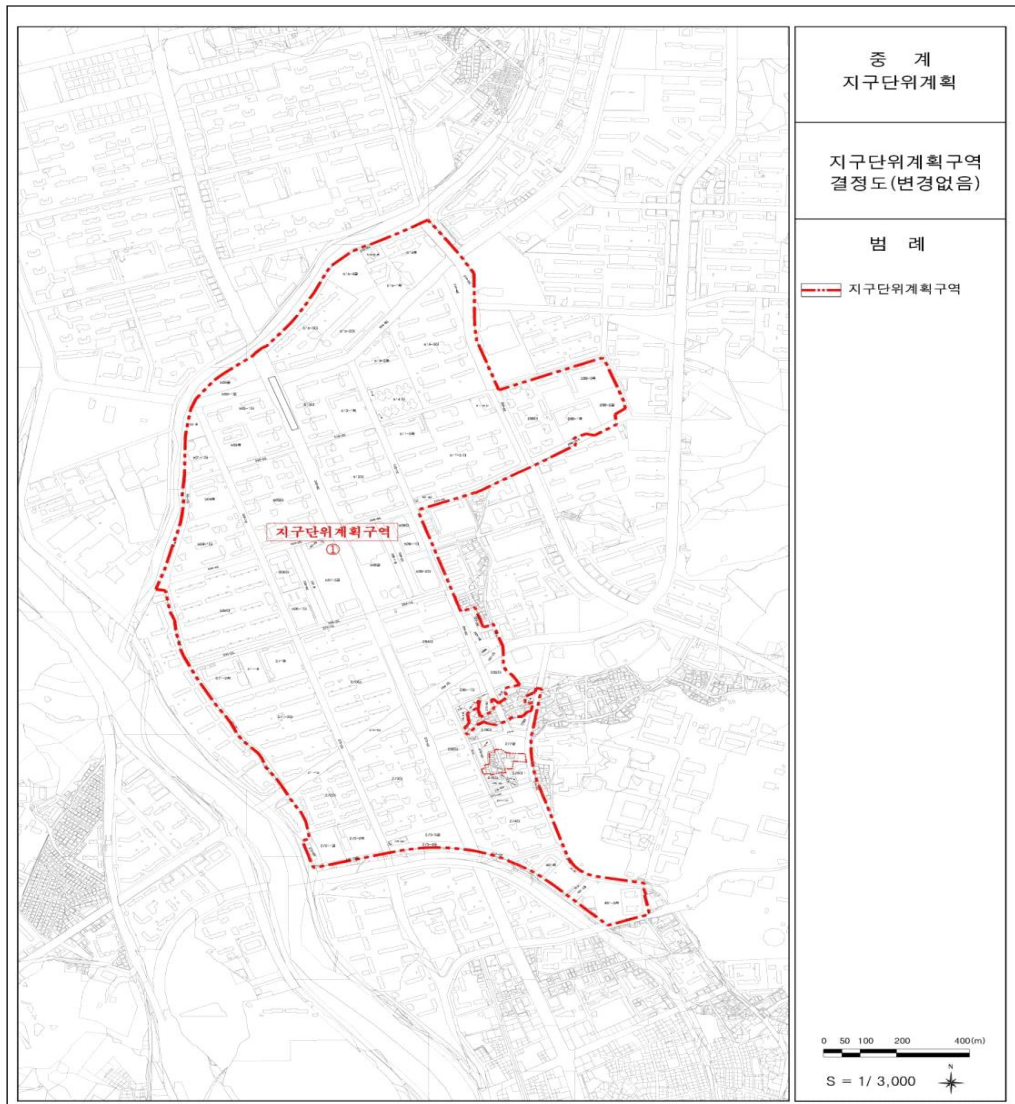


29. 중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결정조서								
④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5. 상업용지									5. 상업용지								
	구 분	획 지	위 치	면적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구 분	획 지	위 치	면적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	중계동 506-1, 509-1, 509-2	33,461.6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음식점, 공연장 및 전시장, 업무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관련법 및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40m이내		기정	-	중계동 506-1, 509-1, 509-2	33,461.6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음식점, 공연장 및 전시장, 업무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관련법 및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40m이내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30.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용적률, 높이) 결정조서

2) 용적률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업시설용지	600%이하	800%이하	—	일반상업지역
	300%이하	400%이하	—	준주거지역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130%이하	150%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18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고시설용지	130%이하	150%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이하	20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0%이하	25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	180%이하	20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공동주택용지(하계동252-6)	170%이하	190%이하	2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공공시설용지(하계동170-8)	20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공동주택용지(하계동251-9)	170%이하	19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

라. 인센티브 조서

1) 인센티브 항목 및 내용

② 상업시설용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항 목	세 분	환 화 기 준	비고
유도형	공동개발	기존용적률 x 0.4a	2필지 a=0.1 3~4필지 a=0.15
	건축물 용도	기존용적률 x (권장용도 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x 0.5	권장용도는 면적의 30%이상시 인정
규제형	대지내 공시 건축지정선	기존용적률 x (제공면적 / 대지면적) x a	필로티 a=0.5 개방형 a=1.0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산·재생에너지 시설도입	기존용적률 x 0.04	—
의무형	환경친화	기존용적률 x (녹지면적 / 대지면적) x 0.05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적용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 시설	기존용적률 x 0.03	—
의무형	환경친화	기존용적률 x 0.03	—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산·재생에너지 시설도입	기존용적률 x 0.04	—
	에너지 절약계획도입	구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성능 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랭
		1 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 x 0.05
		2 등급 23.5~33.5% 이상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 x 0.03
		3 등급 13.5~23.5% 이상	61점 미만 65점 미만 기준용적률 x 0.01

주) 1. 허용용적률≥기존용적률+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 (둘 이상의 중복사항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시 선택적 인센티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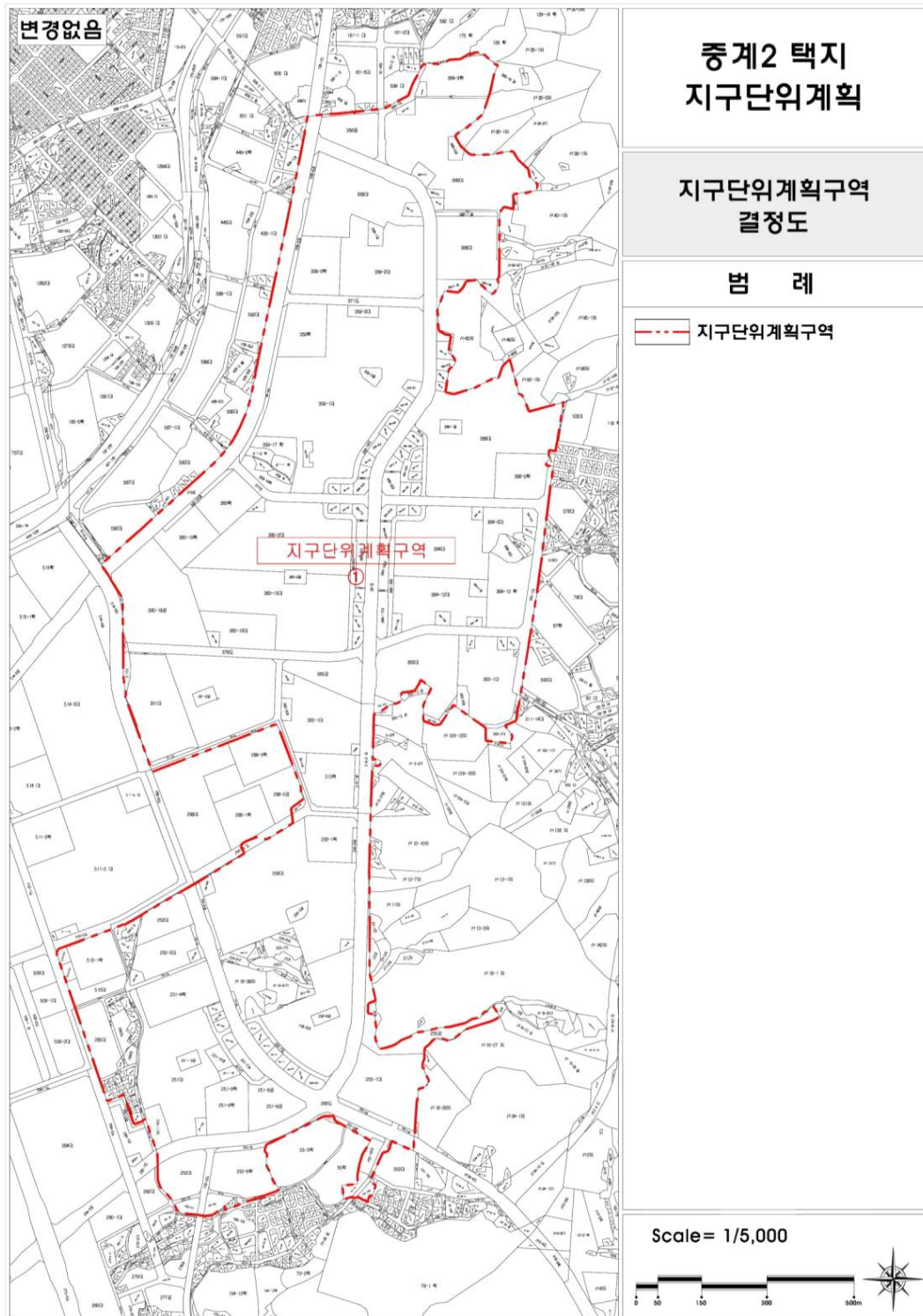
2. 공동개발으로 계획되지 않은 필지간 공동개발시에는 공동개발에 의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3.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친환경 계획요소 준수시에만 제공된다.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 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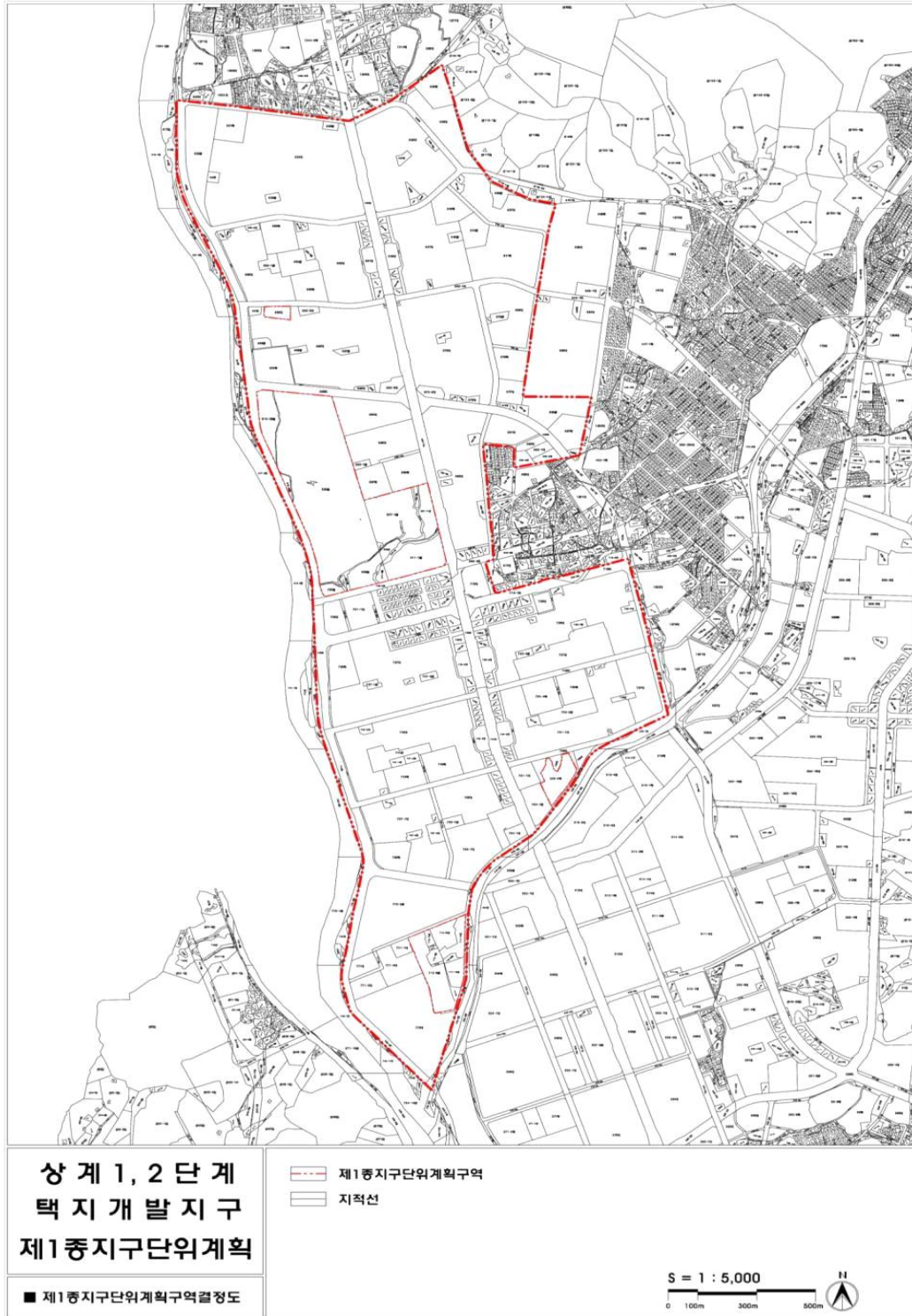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31. 상계 1,2단계 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th></tr><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r><tr><td rowspan="4">일반 상업지역</td><td>간선가로변, 접도폭 20m 이상 대지</td><td>600%이하</td></tr><tr><td>15m 도로변 대지</td><td>450%이하</td></tr><tr><td>10m 도로변 대지</td><td>350%이하</td></tr><tr><td>이면부</td><td>300%이하</td></tr><tr><td colspan="2">준주거지역</td><td>300%이하</td></tr></table> 주1) 상한용적률 산정식 =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 × α) 이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적용)	구 분	계 획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간선가로변, 접도폭 20m 이상 대지	600%이하	15m 도로변 대지	450%이하	10m 도로변 대지	350%이하	이면부	300%이하	준주거지역		300%이하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th></tr><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r><tr><td rowspan="4">일반 상업지역</td><td>간선가로변, 접도폭 20m 이상 대지</td><td>600%이하</td></tr><tr><td>15m 도로변 대지</td><td>450%이하</td></tr><tr><td>10m 도로변 대지</td><td>350%이하</td></tr><tr><td>이면부</td><td>300%이하</td></tr><tr><td colspan="2">준주거지역</td><td>300%이하</td></tr></table> 주1) 상한용적률 산정식 =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 × α) 이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적용) 주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접도폭 15m 이상인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접도폭 10m 이상인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이면부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0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계 획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간선가로변, 접도폭 20m 이상 대지	600%이하	15m 도로변 대지	450%이하	10m 도로변 대지	350%이하	이면부	300%이하	준주거지역	
구 분	계 획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간선가로변, 접도폭 20m 이상 대지	600%이하																																	
	15m 도로변 대지	450%이하																																	
	10m 도로변 대지	350%이하																																	
	이면부	300%이하																																	
준주거지역		300%이하																																	
구 분	계 획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간선가로변, 접도폭 20m 이상 대지	600%이하																																	
	15m 도로변 대지	450%이하																																	
	10m 도로변 대지	350%이하																																	
	이면부	300%이하																																	
준주거지역		300%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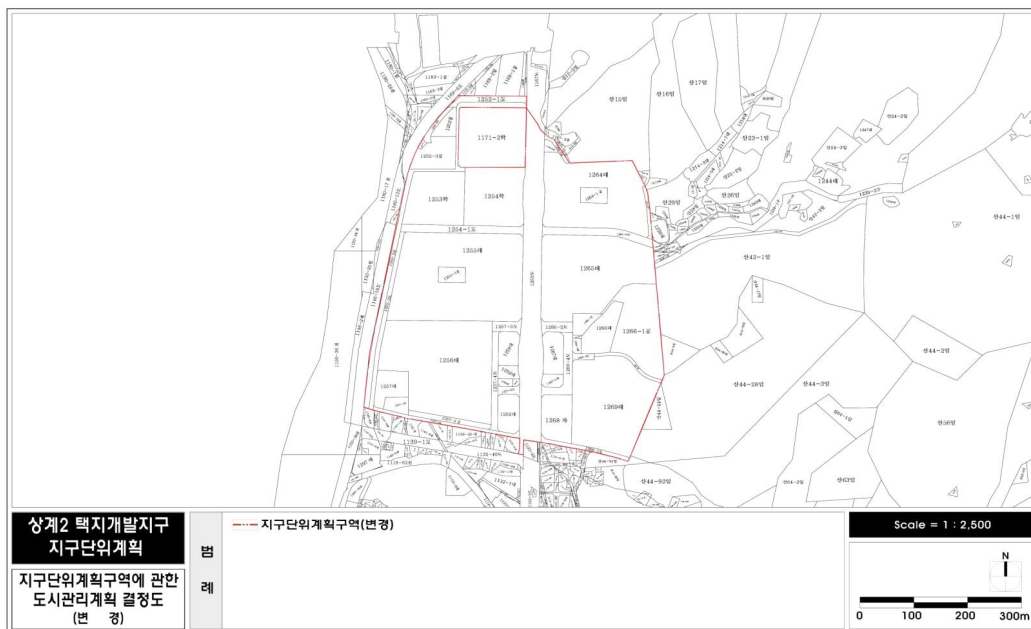


32. 서울 상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별항2>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라. 가구·획지별 규모와 건축계획							라. 가구·획지별 규모와 건축계획													
	가구·획지 중전지번(가치 번)		규모		건축물의 용도(공동주택의 호당전용면적 및 건설호수)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M)	비 고	가구·획지 중전지번(가치 번)		규모		건축물의 용도(공동주택의 호당전용면적 및 건설호수)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M)	비 고	
			계	8,545.6									계	8,545.6							
	노원구 상계동 1134와 2필지 (1258, 1262, 1 267번지)		상업시설용 지1	2,485.6	상업용지 (판매, 업무, 의료시 설) - 불허용도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높이		노원구 상계동 1134와 2필지 (1258, 1262, 1 267번지)		상업시설용 지1	2,485.6	상업용지 (판매, 업무, 의료시 설) - 불허용도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높이		
			상업시설용 지2	2969.4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상업시설용 지2	2969.4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상업시설용 지3	3,090.6									상업시설용 지3	3,090.6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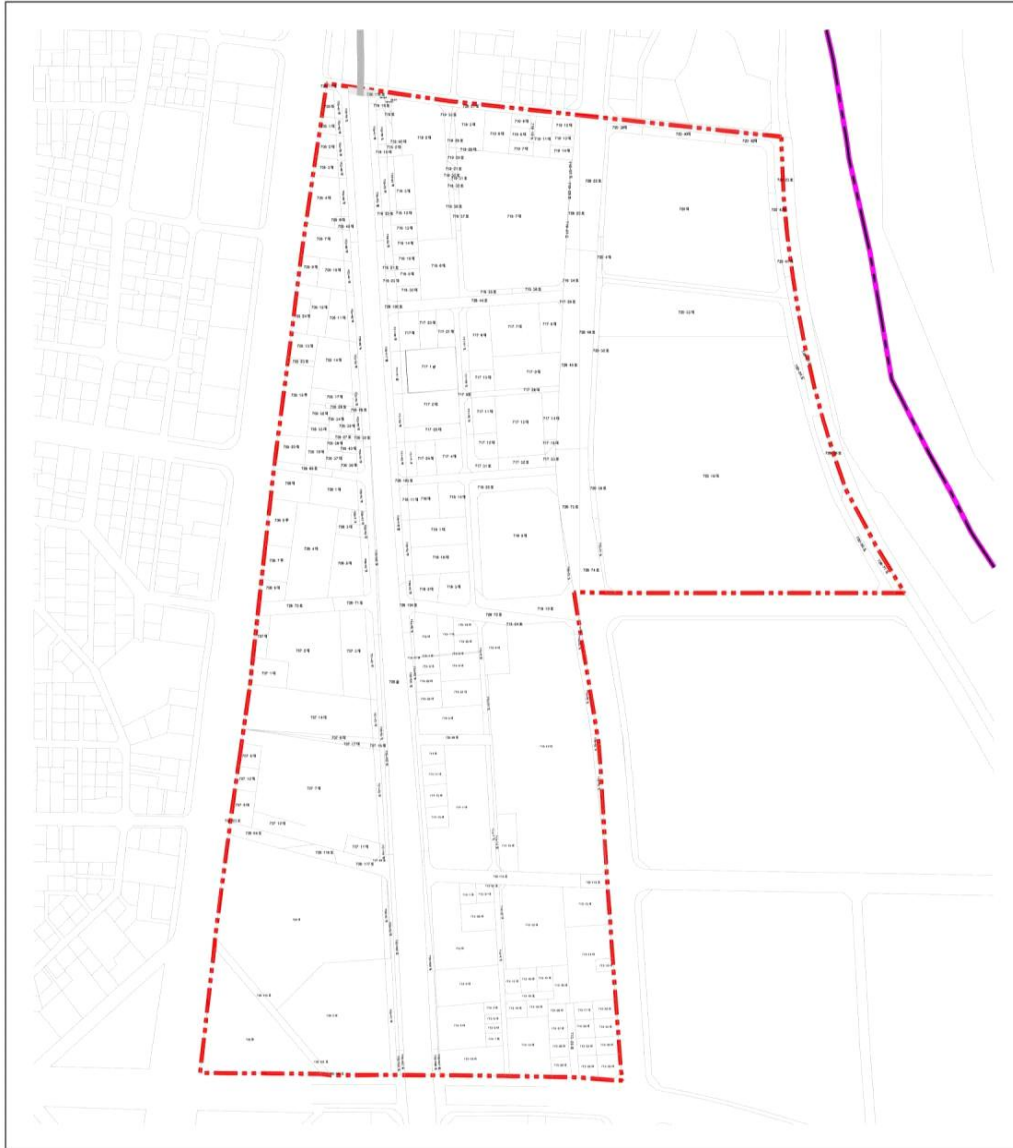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33. 방학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I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높이·배치·형 태·색채·건축 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1) 용적률				1) 용적률																																																																							
	<table><tr><th>구분</th><th></th><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비고</th></tr><tr><td rowspan="2">일반주거지역</td><td>→준주거지역</td><td>300%</td><td>360%</td><td></td></tr><tr><td>→근린상업</td><td>300%</td><td>500%</td><td></td></tr><tr><td rowspan="5">준공업 지역</td><td>→ 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00%</td><td>250%</td><td></td></tr><tr><td>→ 준주거지역</td><td>300%</td><td>400%</td><td></td></tr><tr><td rowspan="2">→ 준공업지역</td><td>300% (200%)</td><td>400% (250%)</td><td>①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축시</td></tr><tr><td>200%</td><td>250%</td><td>기존특별계획구역 3지구내</td></tr><tr><td>→ 근린상업지역</td><td>400%</td><td>530%</td><td></td></tr></table>				구분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360%		→근린상업	300%	500%		준공업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 준주거지역	300%	400%		→ 준공업지역	300% (200%)	400% (250%)	①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축시	200%	250%	기존특별계획구역 3지구내	→ 근린상업지역	400%	530%		<table><tr><th>구분</th><th></th><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비고</th></tr><tr><td rowspan="2">일반주거지역</td><td>→준주거지역</td><td>300%</td><td>360%</td><td></td></tr><tr><td>→근린상업</td><td>300%</td><td>500%</td><td></td></tr><tr><td rowspan="6">준공업 지역</td><td>→ 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00%</td><td>250%</td><td></td></tr><tr><td>→ 준주거지역</td><td>300%</td><td>400%</td><td></td></tr><tr><td rowspan="3">→ 준공업지역</td><td>300% (200%)</td><td>400% (250%)</td><td>①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축시</td></tr><tr><td>200%</td><td>250%</td><td>기존특별계획구역 3지구내</td></tr><tr><td>→ 근린상업지역</td><td>400%</td><td>530%</td><td></td></tr></table>				구분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360%		→근린상업	300%	500%		준공업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 준주거지역	300%	400%		→ 준공업지역	300% (200%)	400% (250%)	①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축시	200%	250%	기존특별계획구역 3지구내	→ 근린상업지역	400%	530%	
	구분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360%																																																																								
		→근린상업	300%	500%																																																																								
	준공업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 준주거지역	300%	400%																																																																								
		→ 준공업지역	300% (200%)	400% (250%)	①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축시																																																																							
			200%	250%	기존특별계획구역 3지구내																																																																							
		→ 근린상업지역	400%	530%																																																																								
구분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360%																																																																									
	→근린상업	300%	500%																																																																									
준공업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 준주거지역	300%	400%																																																																									
	→ 준공업지역	300% (200%)	400% (250%)	①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축시																																																																								
		200%	250%	기존특별계획구역 3지구내																																																																								
		→ 근린상업지역	400%	530%																																																																								
	※ 주거용도의 용적률 제한 적용 :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상복합)의 주거용도는 250%이하로 제한하며 나머지 용적률은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주거용도의 용적률 제한 적용 :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상복합)의 주거용도는 250%이하로 제한하며 나머지 용적률은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근린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5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41.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5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41.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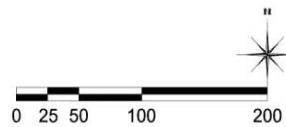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방 학
역세권
지구단위
계 획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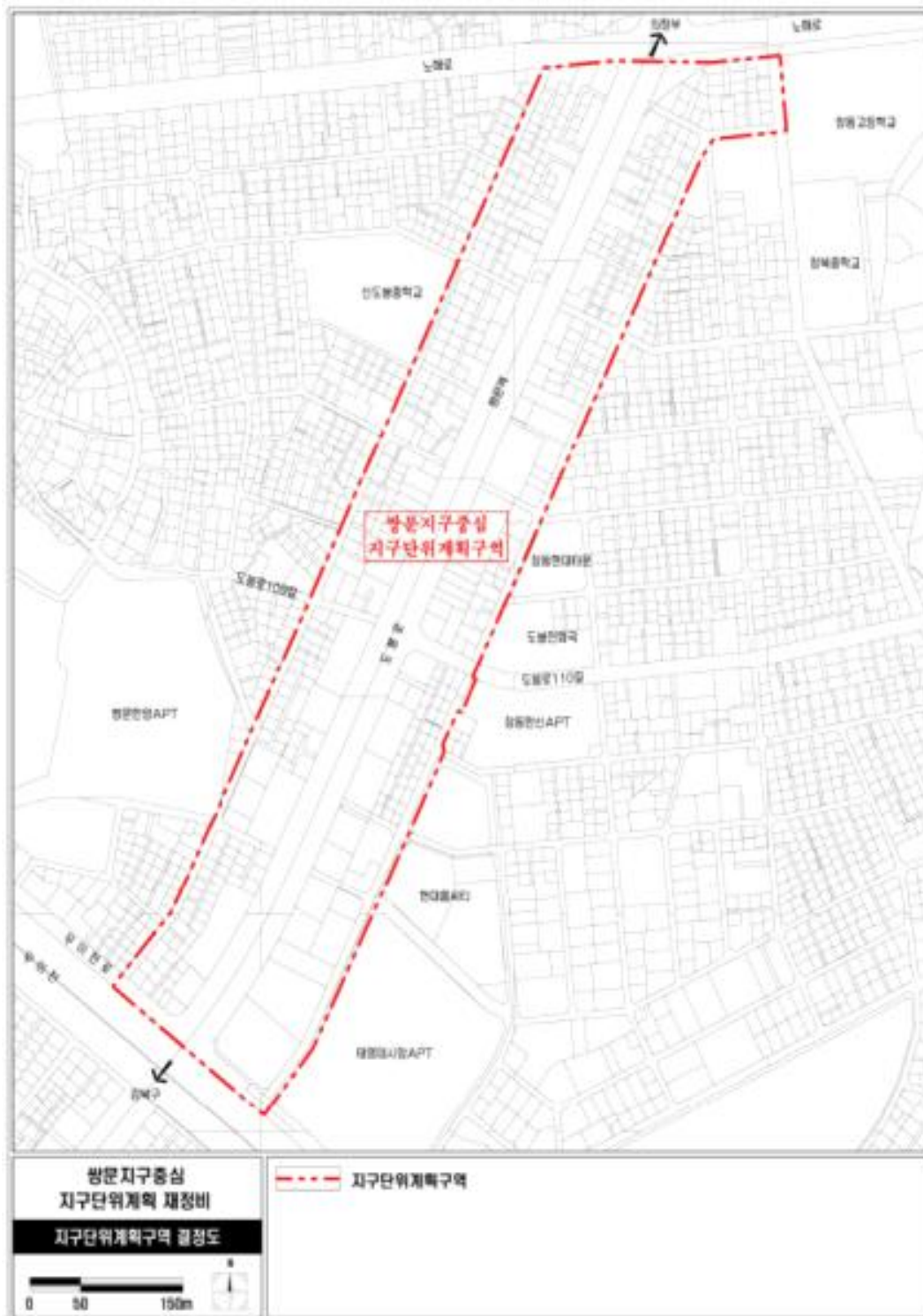


34.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I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변경)	2) 건축물의 용적률 <table><tr><th colspan="2" rowspan="2">적용지역</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존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 rowspan="2">일반 상업지역</td><td>도봉로변</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 rowspan="5">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td><td rowspan="5"></td></tr><tr><td>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500이하</td></tr><tr><td rowspan="4">준주거지역</td><td rowspan="2">도봉로변</td><td>300이하</td><td>360이하</td></tr><tr><td>250이하</td><td>350이하</td></tr><tr><td rowspan="2">노해로변</td><td>300이하</td><td>360이하</td></tr><tr><td>250이하</td><td>360이하</td></tr><tr><td>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350이하</td></tr><tr><td colspan="2">준공업지역</td><td>300이하</td><td>400이하</td><td></td><td></td></tr></table>	적용지역		용적률(%)			비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63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면도로변	250이하	500이하	준주거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360이하	250이하	350이하	노해로변	300이하	360이하	250이하	360이하	이면도로변	25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300이하	400이하			2) 건축물의 용적률 <table><tr><th colspan="2" rowspan="2">적용지역</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존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 rowspan="2">일반 상업지역</td><td>도봉로변</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 rowspan="5">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td><td rowspan="5"></td></tr><tr><td>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500이하</td></tr><tr><td rowspan="4">준주거지역</td><td rowspan="2">도봉로변</td><td>300이하</td><td>360이하</td></tr><tr><td>250이하</td><td>350이하</td></tr><tr><td rowspan="2">노해로변</td><td>300이하</td><td>360이하</td></tr><tr><td>250이하</td><td>360이하</td></tr><tr><td>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350이하</td></tr><tr><td colspan="2">준공업지역</td><td>300이하</td><td>400이하</td><td></td><td></td></tr></table>	적용지역		용적률(%)			비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63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면도로변	250이하	500이하	준주거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360이하	250이하	350이하	노해로변	300이하	360이하	250이하	360이하	이면도로변	25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300이하	400이하		
	적용지역			용적률(%)				비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63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면도로변	250이하	500이하																																																																											
준주거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360이하																																																																											
		250이하	350이하																																																																											
	노해로변	300이하	360이하																																																																											
		250이하	360이하																																																																											
이면도로변	25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300이하	400이하																																																																											
적용지역		용적률(%)			비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63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면도로변	250이하	500이하																																																																											
준주거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360이하																																																																											
		250이하	350이하																																																																											
	노해로변	300이하	360이하																																																																											
		250이하	360이하																																																																											
이면도로변	25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300이하	400이하																																																																											
	주) 1. 용도지역이 상향된(1991.5.11.이후)지역에 용도제한 적용기준 적용 2.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및 준주택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계획(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4-4-4)하여 저층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 입지시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 규정 적용 4.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용적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적용 5. 동일한 용도지역내에서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은 대지 가중평균값 적용 6.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7. 관광숙박시설 입지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서울시 2012.10.)을 적용」	주) 1. 용도지역이 상향된(1991.5.11.이후)지역에 용도제한 적용기준 적용 2.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및 준주택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계획(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4-4-4)하여 저층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 입지시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 규정 적용 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 중 도봉로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 중 이면도로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5. 동일한 용도지역내에서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은 대지 가중평균값 적용 6.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7. 관광숙박시설 입지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서울시 2012.10.)을 적용」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4조(용적률)	①, ②, ④ ⑥ ~ ⑨, ⑪ : 변경없음 ③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오피스텔(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한다. ⑤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입지시 허용용적률 적용은 상기 적용기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별표3])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한다. ⑩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 colspan="2" rowspan="2">적용지역</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 rowspan="2">일반 상업지역</td><td>도봉로변</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 rowspan="2">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td><td></td></tr><tr><td>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500이하</td><td></td></tr><tr><td rowspan="4">준주거지역</td><td>도봉로변</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 rowspan="4">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td><td></td></tr><tr><td>노해로변</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td></tr><tr><td>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360이하</td><td></td></tr><tr><td>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350이하</td><td></td></tr><tr><td>준공업지역</td><td>300이하</td><td>400이하</td><td></td><td></td><td></td></tr></table> 주) 1.용도지역이 상향된(1991.5.11.이후)지역에 용도제한 적용기준 적용 2.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및 준주택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계획(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4-4-4)하여 저층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 입지시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 규정 적용 4.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적용 5. 동일한 용도지역내에서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은 대지 가중평균값 적용 6.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7. 관광숙박시설 입지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서울시 2012.10.)」을 적용	적용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63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면도로변	250이하	500이하		준주거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360이하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노해로변	300이하	360이하		이면도로변	250이하	360이하		이면도로변	25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300이하	400이하				①, ②, ④ ⑥ ~ ⑨, ⑪ : 변경없음 ③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한다. 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⑩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 colspan="2" rowspan="2">적용지역</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 rowspan="2">일반 상업지역</td><td>도봉로변</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 rowspan="2">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td><td></td></tr><tr><td>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500이하</td><td></td></tr><tr><td rowspan="4">준주거지역</td><td>도봉로변</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 rowspan="4">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td><td></td></tr><tr><td>노해로변</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td></tr><tr><td>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360이하</td><td></td></tr><tr><td>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350이하</td><td></td></tr><tr><td>준공업지역</td><td>300이하</td><td>400이하</td><td></td><td></td><td></td></tr></table> 주) 1.용도지역이 상향된(1991.5.11.이후)지역에 용도제한 적용기준 적용 2.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및 준주택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계획(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4-4-4)하여 저층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 입지시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 규정 적용 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 중 도봉로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 중 이면도로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5. 동일한 용도지역내에서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은 대지 가중평균값 적용 6.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7. 관광숙박시설 입지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서울시 2012.10.)」을 적용	적용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63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면도로변	250이하	500이하		준주거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360이하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노해로변	300이하	360이하		이면도로변	250이하	360이하		이면도로변	25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300이하	400이하			
	적용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63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면도로변	250이하	500이하																																																																																					
준주거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360이하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노해로변	300이하	360이하																																																																																					
	이면도로변	250이하	360이하																																																																																					
	이면도로변	25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300이하	400이하																																																																																						
적용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63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면도로변	250이하	500이하																																																																																					
준주거지역	도봉로변	300이하	360이하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노해로변	300이하	360이하																																																																																					
	이면도로변	250이하	360이하																																																																																					
	이면도로변	25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300이하	400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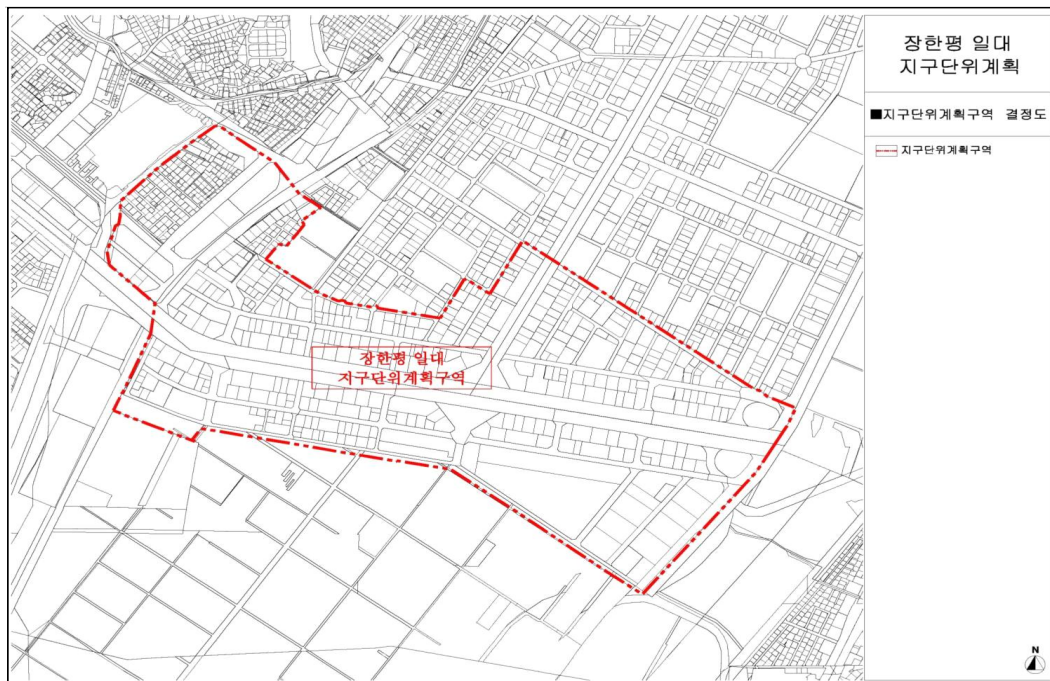


35. 장한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2)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치</th><th colspan="3">계획내용</th><th rowspan="2">비 고</th></tr> <tr> <th>기존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일반 상업지역</td><td>천호대로</td><td>400%</td><td>660%</td><td rowspan="9">성동구 천호대로변 (제3종일반주거 → 준주거)</td></tr> <tr> <td>장한로</td><td>300%</td><td>500%</td></tr> <tr> <td>한천로</td><td>600%</td><td>800%</td></tr> <tr> <td>유흥상업지역</td><td></td><td>400%</td><td>600%</td></tr> <tr> <td rowspan="3">준주거 지역</td><td>천호대로</td><td>300%</td><td>400%</td></tr> <tr> <td>이면부</td><td>300%</td><td>360%</td></tr> <tr> <td>노선</td><td>250%</td><td>350%</td></tr> <tr> <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td><td>250%</td><td>250%</td></tr> <tr> <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td><td>200%</td><td>200%</td></tr> </tbody> </table> ※ 성동구 천호대로변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산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쳐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따라 기준, 허용용적률은 가중평균을 적용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이내 ■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91.5.11이후 변경)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 만큼 허용		위치	계획내용			비 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천호대로	400%	660%	성동구 천호대로변 (제3종일반주거 → 준주거)	장한로	300%	500%	한천로	600%	800%	유흥상업지역		400%	600%	준주거 지역	천호대로	300%	400%	이면부	300%	360%	노선	250%	3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00%	
위치	계획내용			비 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천호대로	400%	660%	성동구 천호대로변 (제3종일반주거 → 준주거)																																								
	장한로	300%	500%																																									
	한천로	600%	800%																																									
유흥상업지역		400%	600%																																									
준주거 지역	천호대로	300%	400%																																									
	이면부	300%	360%																																									
	노선	250%	3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00%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td><td>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td><td rowspan="3">혼재된 경우 가중평균</td></tr> <tr> <td>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td><td>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00% 이하 적용</td></tr> <tr> <td>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td><td>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150% 이하 적용</td></tr> </tbody> </table> ※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을 말함 ②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 주거부분의 용도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면적은 전체 면적의 80%이하 적용</td><td></td></tr> </tbody> </table> ③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 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용적률 배분</th></tr> <tr> <th colspan="2">구 분</th><th>주거건립가능</th><th>비주거 건립</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β(β-α)/β</td></tr> <tr> <td>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td><td></td><td></td></tr> <tr> <td rowspan="2">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10</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2/10</td><td>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td></tr> <tr> <td>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td><td></td><td></td></tr> </tbody> </table>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을 계획시 용적률체계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구 분	내 용	비 고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00% 이하 적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150% 이하 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면적은 전체 면적의 80%이하 적용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 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β(β-α)/β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2/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00% 이하 적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150% 이하 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면적은 전체 면적의 80%이하 적용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 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β(β-α)/β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2/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																																											
		2)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치</th><th colspan="3">계획내용</th><th rowspan="2">비 고</th></tr> <tr> <th>기존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일반 상업지역</td><td>천호대로</td><td>400%</td><td>660%</td><td rowspan="9">변적용적률의 2배이하</td></tr> <tr> <td>장한로</td><td>300%</td><td>500%</td></tr> <tr> <td>한천로</td><td>600%</td><td>800%</td></tr> <tr> <td>유흥상업지역</td><td></td><td>400%</td><td>600%</td></tr> <tr> <td rowspan="3">준주거 지역</td><td>천호대로</td><td>300%</td><td>400%</td></tr> <tr> <td>이면부</td><td>300%</td><td>360%</td></tr> <tr> <td>노선</td><td>250%</td><td>350%</td></tr> <tr> <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td><td>250%</td><td>250%</td></tr> <tr> <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td><td>200%</td><td>200%</td></tr> </tbody> </table> ※ 성동구 천호대로변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산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쳐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따라 기준, 허용용적률은 가중평균을 적용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이내 ■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91.5.11이후 변경)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 만큼 허용	위치	계획내용			비 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천호대로	400%	660%	변적용적률의 2배이하	장한로	300%	500%	한천로	600%	800%	유흥상업지역		400%	600%	준주거 지역	천호대로	300%	400%	이면부	300%	360%	노선	250%	3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00%	
위치	계획내용			비 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 상업지역	천호대로	400%	660%	변적용적률의 2배이하																																								
	장한로	300%	500%																																									
	한천로	600%	800%																																									
유흥상업지역		400%	600%																																									
준주거 지역	천호대로	300%	400%																																									
	이면부	300%	360%																																									
	노선	250%	3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td><td>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td><td rowspan="3">혼재된 경우 가중평균</td></tr> <tr> <td>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td><td>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00% 이하 적용</td></tr> <tr> <td>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td><td>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150% 이하 적용</td></tr> </tbody> </table> ※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을 말함 ③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 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용적률 배분</th></tr> <tr> <th colspan="2">구 분</th><th>주거건립가능</th><th>비주거 건립</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β(β-α)/β</td></tr> <tr> <td>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td><td></td><td></td></tr> <tr> <td rowspan="2">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10</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2/10</td><td>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td></tr> <tr> <td>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td><td></td><td></td></tr> </tbody> </table>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용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천호대로)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장한로)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00% 이하 적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150% 이하 적용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 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β(β-α)/β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2/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00% 이하 적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150% 이하 적용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 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β(β-α)/β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2/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																																											

	제3항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및 동조례 [별표3]에 따른다. ■ 상업지역내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 기준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계획 - 기존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 모두에 적용한다.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포함)에서 인정한 경우 제외 - 용적률의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함	75%)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상업지역내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 기준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계획 - 기존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 모두에 적용한다.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포함)에서 인정한 경우 제외 - 용적률의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함
--	--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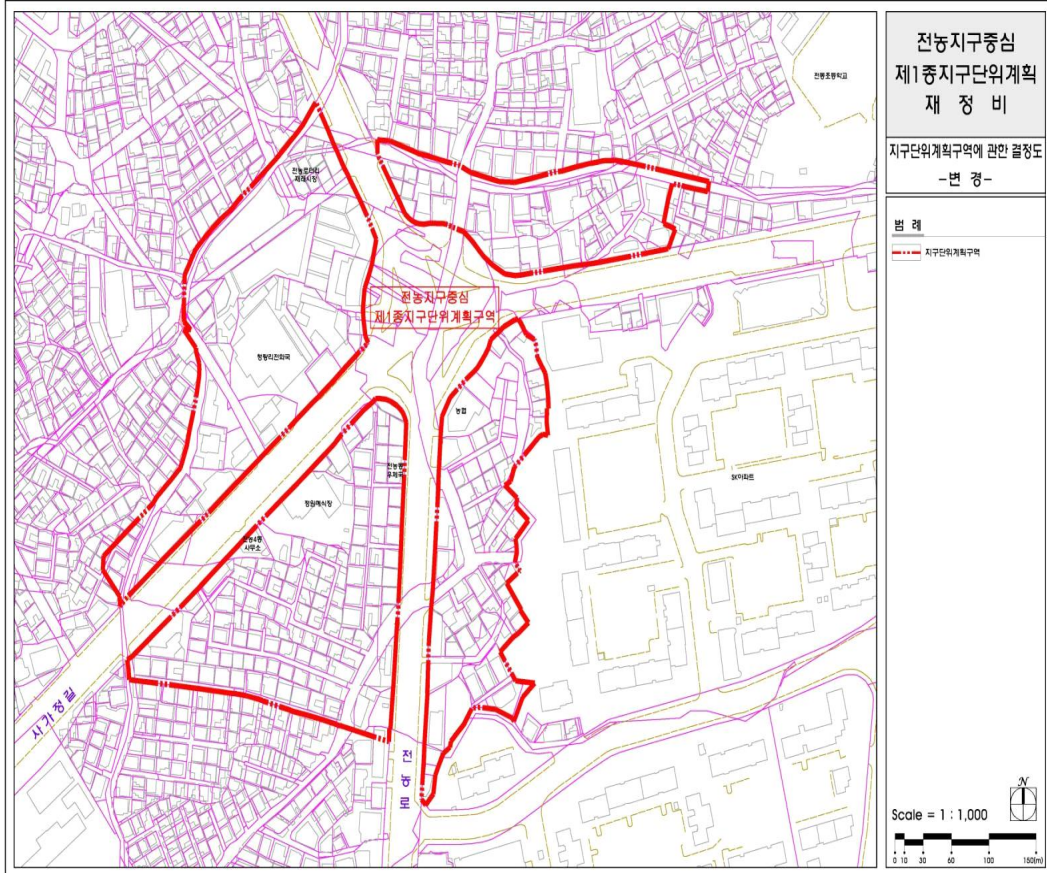


36. 전농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 높이·배치 · 형태·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2) 용적률계획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치</th><th colspan="3">변 경</th><th rowspan="2">비 고</th></tr> <tr> <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r> </thead> <tbody> <tr> <td>교차각각부</td><td>300%</td><td>500%</td><td>600%</td><td>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td></tr> <tr> <td rowspan="3">간선도로변 (전농로, 사가정길)</td><td>300%</td><td>450%</td><td>600%</td><td>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td></tr> <tr> <td>400%</td><td>530%</td><td>600%</td><td>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td></tr> <tr> <td>200%</td><td>460%</td><td>600%</td><td>제2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td></tr> <tr> <td>이면도로변</td><td>300%</td><td>400%</td><td>600%</td><td>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td></tr> <tr> <td rowspan="2">특별계획구역3</td><td>준주거지역</td><td>300%</td><td>400%</td><td>—</td></tr> <tr> <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00%</td><td>230%</td><td>250%</td></tr> </tbody> </table> 주) 하나의 대지에 2개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에 의거한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 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주택연면적 비율(%)</th><th>본 지침에 의한 적용기준</th><th>(참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th></tr> </thead> <tbody> <tr> <td>60이상 ~ 70미만</td><td>허용용적률 × (480/600)이하</td><td>480% 이하</td></tr> <tr> <td>50이상 ~ 60미만</td><td>허용용적률 × (510/600)이하</td><td>510% 이하</td></tr> <tr> <td>40이상 ~ 50미만</td><td>허용용적률 × (540/600)이하</td><td>540% 이하</td></tr> <tr> <td>30이상 ~ 40미만</td><td>허용용적률 × (570/600)이하</td><td>570% 이하</td></tr> <tr> <td>30미만</td><td>허용용적률 이하</td><td>600% 이하</td></tr> </tbody> </table> 주) 1. 본 산정식에서 허용용적률이라 함은 기준용적률에 실질적으로 완화를 받은 용적률을 합한 용적률을 말하며,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받을 경우에도 상기적용기준과 동일한 산정식에 의해 적용함 2.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70% 이하가 되어야 함 3. 특별계획구역의 경우도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위치	변 경			비 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교차각각부	300%	500%	6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	간선도로변 (전농로, 사가정길)	300%	450%	6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	400%	530%	600%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200%	460%	6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이면도로변	300%	400%	6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	특별계획구역3	준주거지역	300%	4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30%	250%	주택연면적 비율(%)	본 지침에 의한 적용기준	(참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60이상 ~ 70미만	허용용적률 × (480/600)이하	480% 이하	50이상 ~ 60미만	허용용적률 × (510/600)이하	510% 이하	40이상 ~ 50미만	허용용적률 × (540/600)이하	540% 이하	30이상 ~ 40미만	허용용적률 × (570/600)이하	570% 이하	30미만	허용용적률 이하	600% 이하	2) 용적률계획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치</th><th colspan="3">변 경</th><th rowspan="2">비 고</th></tr> <tr> <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r> </thead> <tbody> <tr> <td>교차각각부</td><td>300%</td><td>500%</td><td>600%</td><td>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td></tr> <tr> <td rowspan="3">간선도로변 (전농로, 사가정길)</td><td>300%</td><td>450%</td><td>600%</td><td>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td></tr> <tr> <td>400%</td><td>530%</td><td>600%</td><td>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td></tr> <tr> <td>200%</td><td>460%</td><td>600%</td><td>제2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td></tr> <tr> <td>이면도로변</td><td>300%</td><td>400%</td><td>600%</td><td>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td></tr> <tr> <td rowspan="2">특별계획구역3</td><td>준주거지역</td><td>300%</td><td>400%</td><td>—</td></tr> <tr> <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00%</td><td>230%</td><td>250%</td></tr> </tbody> </table> 주) 1. 하나의 대지에 2개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에 의거한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 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근린상업지역 중 교차각각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41.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 450%인 구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2%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4.9%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 530%인 구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5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41.5%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 460%인 구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6.8%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83.2%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 중 이면도로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66.8%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3.2%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위치	변 경			비 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교차각각부	300%	500%	6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	간선도로변 (전농로, 사가정길)	300%	450%	6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	400%	530%	600%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200%	460%	6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이면도로변	300%	400%	6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	특별계획구역3	준주거지역	300%	4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30%	250%
위치	변 경			비 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교차각각부	300%	500%	6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																																																																																																
간선도로변 (전농로, 사가정길)	300%	450%	6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																																																																																																
	400%	530%	600%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200%	460%	6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이면도로변	300%	400%	6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																																																																																																
특별계획구역3	준주거지역	300%	4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30%	250%																																																																																																
주택연면적 비율(%)	본 지침에 의한 적용기준	(참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60이상 ~ 70미만	허용용적률 × (480/600)이하	480% 이하																																																																																																		
50이상 ~ 60미만	허용용적률 × (510/600)이하	510% 이하																																																																																																		
40이상 ~ 50미만	허용용적률 × (540/600)이하	540% 이하																																																																																																		
30이상 ~ 40미만	허용용적률 × (570/600)이하	570% 이하																																																																																																		
30미만	허용용적률 이하	600% 이하																																																																																																		
위치	변 경			비 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교차각각부	300%	500%	6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																																																																																																
간선도로변 (전농로, 사가정길)	300%	450%	6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																																																																																																
	400%	530%	600%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200%	460%	6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이면도로변	300%	400%	6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1996.6.3.)																																																																																																
특별계획구역3	준주거지역	300%	4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30%	25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상기 사항을 반영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0조(용적률) : 규제사항	①, ②, ④, ⑤ : 변경없음 ③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3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 용적률을 받을 경우 상한용적률 부분의 주택연면적 비율은 허용용적률 산정시의 주택연면적 비율과 동일하게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주택연면적 비율(%)</th><th>본 지침에 의한 적용기준</th><th>(참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th></tr> </thead> <tbody> <tr> <td>60이상 ~ 70미만</td><td>허용용적률 × (480/600)이하</td><td>480% 이하</td></tr> <tr> <td>50이상 ~ 60미만</td><td>허용용적률 × (510/600)이하</td><td>510% 이하</td></tr> <tr> <td>40이상 ~ 50미만</td><td>허용용적률 × (540/600)이하</td><td>540% 이하</td></tr> <tr> <td>30이상 ~ 40미만</td><td>허용용적률 × (570/600)이하</td><td>570% 이하</td></tr> <tr> <td>30미만</td><td>허용용적률 이하</td><td>600% 이하</td></tr> </tbody> </table> 주) 1. 본 산정식에서 허용용적률이라 함은 기준용적률에 실질적으로 완화를 받은 용적률을 합한 용적률을 말하며,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받을 경우에도 상기적용기준과 동일한 산정식에 의해 적용함 2.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70% 이하가 되어야 함	주택연면적 비율(%)	본 지침에 의한 적용기준	(참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60이상 ~ 70미만	허용용적률 × (480/600)이하	480% 이하	50이상 ~ 60미만	허용용적률 × (510/600)이하	510% 이하	40이상 ~ 50미만	허용용적률 × (540/600)이하	540% 이하	30이상 ~ 40미만	허용용적률 × (570/600)이하	570% 이하	30미만	허용용적률 이하	600% 이하	①, ②, ④, ⑤ : 변경없음 ③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 용적률을 받을 경우 상한용적률 부분의 주거 대비 주거 용적률 배분방법은 아래와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상한용적률 배분</th></tr> <tr> <th>주거건립가능</th><th>비주거건립</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상업지역으로 상행된 경우></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frac{a}{\beta}$</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frac{(\beta - a)}{\beta}$</td></tr> <tr> <td colspan="2">a: 주거용 용적률, β: 허용용적률</td></tr> <tr> <td colspan="2">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사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td></tr> </tbody> </table>	구분	상한용적률 배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상업지역으로 상행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frac{a}{\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frac{(\beta - a)}{\beta}$	a : 주거용 용적률, β : 허용용적률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사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	
주택연면적 비율(%)	본 지침에 의한 적용기준	(참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60이상 ~ 70미만	허용용적률 × (480/600)이하	480% 이하																														
50이상 ~ 60미만	허용용적률 × (510/600)이하	510% 이하																														
40이상 ~ 50미만	허용용적률 × (540/600)이하	540% 이하																														
30이상 ~ 40미만	허용용적률 × (570/600)이하	570% 이하																														
30미만	허용용적률 이하	600% 이하																														
구분	상한용적률 배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상업지역으로 상행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frac{a}{\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frac{(\beta - a)}{\beta}$																														
	a : 주거용 용적률, β : 허용용적률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사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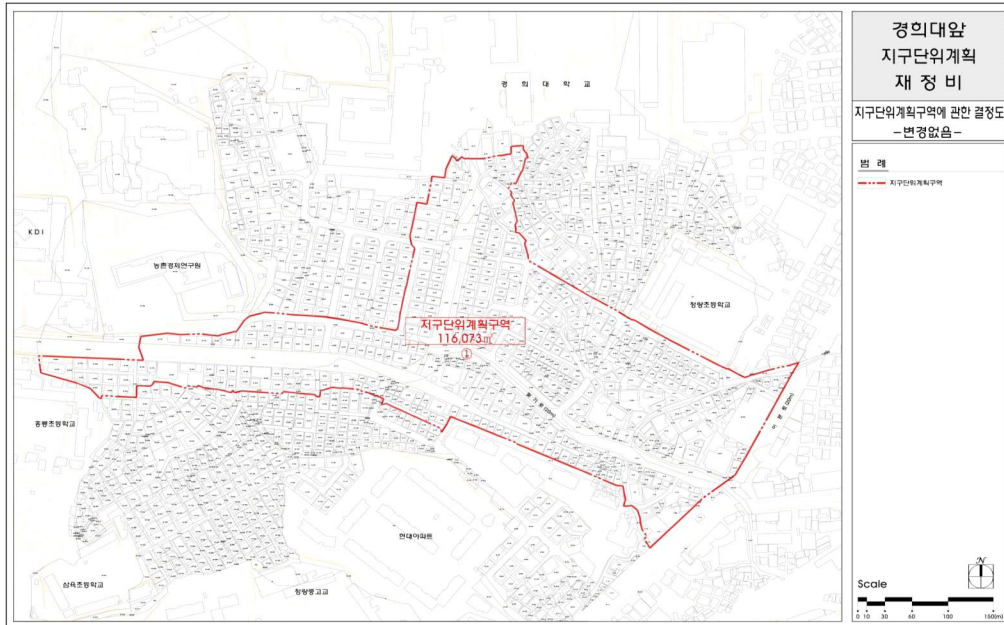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37.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다.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계획	(2) 용적률				(2) 용적률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3">변경</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tr><td rowspan="2">일반주거지역</td><td>간선부</td><td>230%</td><td>250%</td><td>법적용적률 의 2배</td><td rowspan="2">이문로변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제3종일반주거지 역에 해당될 경우 간선변에 적용되는 용적률 적용 • 적용예외 ‘-’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시 (관련법령에 따름)」</td></tr><tr><td>이면부 (청량초교변)</td><td>200%</td><td>230%</td><td>250%</td></tr><tr><td>일반상업지역</td><td>이문로변</td><td>600%</td><td>800%</td><td>-</td><td></td></tr></table>				구분		변경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주거지역	간선부	230%	250%	법적용적률 의 2배	이문로변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제3종일반주거지 역에 해당될 경우 간선변에 적용되는 용적률 적용 • 적용예외 ‘-’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시 (관련법령에 따름)」	이면부 (청량초교변)	200%	230%	250%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	800%	-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3">변경</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tr><td rowspan="2">일반주거지역</td><td>간선부</td><td>230%</td><td>250%</td><td>법적용적률 의 2배</td><td rowspan="2">이문로변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제3종일반주거지 역에 해당될 경우 간선변에 적용되는 용적률 적용 • 적용예외 ‘-’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시 (관련법령에 따름)」</td></tr><tr><td>이면부 (청량초교변)</td><td>200%</td><td>230%</td><td>250%</td></tr><tr><td>일반상업지역</td><td>이문로변</td><td>600%</td><td>800%</td><td>-</td><td></td></tr></table>				구분		변경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주거지역	간선부	230%	250%	법적용적률 의 2배	이문로변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제3종일반주거지 역에 해당될 경우 간선변에 적용되는 용적률 적용 • 적용예외 ‘-’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시 (관련법령에 따름)」	이면부 (청량초교변)	200%	230%	250%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	800%	-
구분		변경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주거지역	간선부	230%	250%	법적용적률 의 2배	이문로변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제3종일반주거지 역에 해당될 경우 간선변에 적용되는 용적률 적용 • 적용예외 ‘-’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시 (관련법령에 따름)」																																																				
	이면부 (청량초교변)	200%	230%	250%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	800%	-																																																					
구분		변경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주거지역	간선부	230%	250%	법적용적률 의 2배	이문로변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제3종일반주거지 역에 해당될 경우 간선변에 적용되는 용적률 적용 • 적용예외 ‘-’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시 (관련법령에 따름)」																																																				
	이면부 (청량초교변)	200%	230%	250%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	800%	-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2조(용적률) : 규제사항	①, ②, ④, ⑤ : 변경없음 ③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의 용도용적률을 적용한다.				①, ②, ④, ⑤ : 변경없음 ③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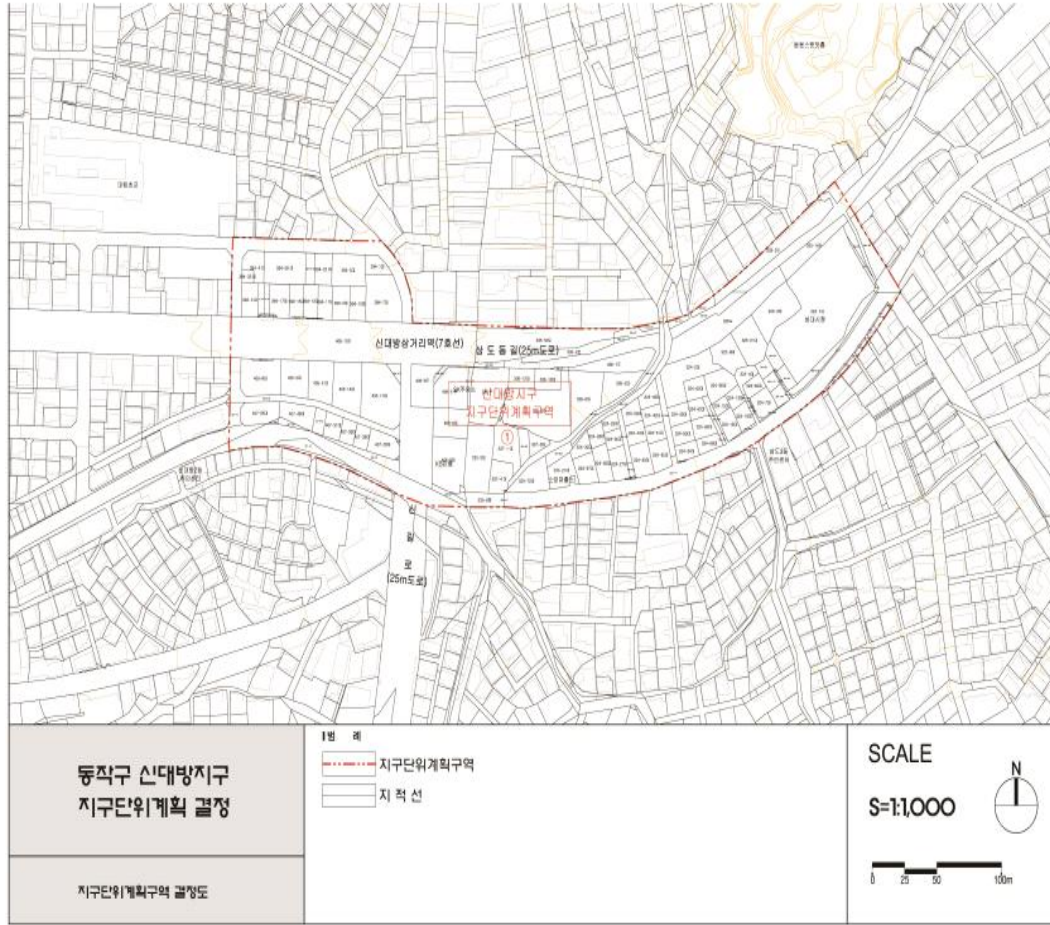
38.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나. 건축물 개발밀도 (건폐율,용적률) 결정조서	2) 용적률 계획		2) 용적률 계획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변경</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tr><td colspan="2">왕산로변</td><td>600%</td><td>80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1973.10.8.)</td></tr><tr><td rowspan="3">난계로변</td><td rowspan="2">간선변</td><td>600%</td><td>80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일반상업지역 (1969.12.1.)</td></tr><tr><td>300%</td><td>36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 rowspan="2">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td></tr><tr><td>이면부</td><td>300%</td><td>36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r><tr><td colspan="2">하정로변</td><td>300%</td><td>36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td></tr><tr><td rowspan="2">청계천변</td><td>간선변</td><td>600%</td><td>80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일반상업지역 (1974.11.27.)</td></tr><tr><td>이면부</td><td>250%</td><td>350%</td><td>400%</td><td>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td></tr><tr><td colspan="2">특별계획구역 1)</td><td>300%</td><td>36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td></tr><tr><td colspan="2">그 외 이면부</td><td>200%</td><td>230%</td><td>250%</td><td>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학교이격지</td></tr><tr><td colspan="2">교육연구원분원</td><td>150%</td><td>-</td><td>-</td><td>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학교이격지</td></tr></table>		구분	변경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왕산로변		600%	8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1973.10.8.)	난계로변	간선변	600%	8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1969.12.1.)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	이면부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하정로변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청계천변	간선변	600%	8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1974.11.27.)	이면부	250%	350%	4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	특별계획구역 1)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	그 외 이면부		200%	230%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학교이격지	교육연구원분원		15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학교이격지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변경</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tr><td colspan="2">왕산로변</td><td>600%</td><td>80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1973.10.8.)</td></tr><tr><td rowspan="3">난계로변</td><td rowspan="2">간선변</td><td>600%</td><td>80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일반상업지역 (1969.12.1.)</td></tr><tr><td>300%</td><td>36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 rowspan="2">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td></tr><tr><td>이면부</td><td>300%</td><td>36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r><tr><td colspan="2">하정로변</td><td>300%</td><td>36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td></tr><tr><td rowspan="2">청계천변</td><td>간선변</td><td>600%</td><td>80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일반상업지역 (1974.11.27.)</td></tr><tr><td>이면부</td><td>250%</td><td>350%</td><td>400%</td><td>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td></tr><tr><td colspan="2">특별계획구역 1)</td><td>300%</td><td>36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td></tr><tr><td colspan="2">그 외 이면부</td><td>200%</td><td>230%</td><td>250%</td><td>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학교이격지</td></tr><tr><td colspan="2">교육연구원분원</td><td>150%</td><td>-</td><td>-</td><td>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학교이격지</td></tr></table>		구분	변경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왕산로변		600%	8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1973.10.8.)	난계로변	간선변	600%	8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1969.12.1.)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	이면부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하정로변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청계천변	간선변	600%	8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1974.11.27.)	이면부	250%	350%	4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	특별계획구역 1)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	그 외 이면부		200%	230%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학교이격지	교육연구원분원		150%	-	-
구분	변경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왕산로변		600%	8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1973.10.8.)																																																																																																																												
난계로변	간선변	600%	8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1969.12.1.)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																																																																																																																												
	이면부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하정로변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청계천변	간선변	600%	8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1974.11.27.)																																																																																																																												
	이면부	250%	350%	4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																																																																																																																												
특별계획구역 1)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																																																																																																																												
그 외 이면부		200%	230%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학교이격지																																																																																																																												
교육연구원분원		15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학교이격지																																																																																																																												
구분	변경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왕산로변		600%	8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1973.10.8.)																																																																																																																												
난계로변	간선변	600%	8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1969.12.1.)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																																																																																																																												
	이면부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하정로변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청계천변	간선변	600%	8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1974.11.27.)																																																																																																																												
	이면부	250%	350%	4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																																																																																																																												
특별계획구역 1)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999.8.25.)																																																																																																																												
그 외 이면부		200%	230%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학교이격지																																																																																																																												
교육연구원분원		15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학교이격지																																																																																																																												
주 1) 특별계획구역1의 용적률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81호(2002.7.5.)에 의해 결정고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에 의거한 용적률 적용		주 1) 특별계획구역1의 용적률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81호(2002.7.5.)에 의해 결정고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에 의거한 용적률 적용																																																																																																																															
2) 하나의 대지에 2개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거한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2) 하나의 대지에 2개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거한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3)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이 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수 및 노후도 산정기준을 만족해야 함		3)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이 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수 및 노후도 산정기준을 만족해야 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기준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기준																																																																																																																															
<table><tr><th rowspan="2">주택연면적 비율(%)</th><th colspan="3">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허용용적률</th></tr><tr><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tr><td>60이상 ~ 70미만</td><td>450% 이하</td><td>600% 이하</td><td rowspan="4">법적용적률의 2배이하</td></tr><tr><td>50이상 ~ 60미만</td><td>490% 이하</td><td>650% 이하</td></tr><tr><td>40이상 ~ 50미만</td><td>530% 이하</td><td>700% 이하</td></tr><tr><td>30이상 ~ 40미만</td><td>560% 이하</td><td>750% 이하</td></tr><tr><td>30미만</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d></td></tr></table>		주택연면적 비율(%)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허용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60이상 ~ 70미만	450% 이하	6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50이상 ~ 60미만	490% 이하	650% 이하	40이상 ~ 50미만	530% 이하	700% 이하	30이상 ~ 40미만	560% 이하	750% 이하	30미만	600% 이하	800% 이하		<table><tr><th rowspan="2">주택연면적 비율(%)</th><th colspan="3">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허용용적률</th></tr><tr><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tr><td>60이상 ~ 70미만</td><td>450% 이하</td><td>600% 이하</td><td rowspan="4">법적용적률의 2배이하</td></tr><tr><td>50이상 ~ 60미만</td><td>490% 이하</td><td>650% 이하</td></tr><tr><td>40이상 ~ 50미만</td><td>530% 이하</td><td>700% 이하</td></tr><tr><td>30이상 ~ 40미만</td><td>560% 이하</td><td>750% 이하</td></tr><tr><td>30미만</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d></td></tr></table>		주택연면적 비율(%)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허용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60이상 ~ 70미만	450% 이하	6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50이상 ~ 60미만	490% 이하	650% 이하	40이상 ~ 50미만	530% 이하	700% 이하	30이상 ~ 40미만	560% 이하	750% 이하	30미만	600% 이하	800% 이하																																																																															
주택연면적 비율(%)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허용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60이상 ~ 70미만	450% 이하	6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50이상 ~ 60미만	490% 이하	650% 이하																																																																																																																															
40이상 ~ 50미만	530% 이하	700% 이하																																																																																																																															
30이상 ~ 40미만	560% 이하	750% 이하																																																																																																																															
30미만	600% 이하	800% 이하																																																																																																																															
주택연면적 비율(%)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허용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60이상 ~ 70미만	450% 이하	6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50이상 ~ 60미만	490% 이하	650% 이하																																																																																																																															
40이상 ~ 50미만	530% 이하	700% 이하																																																																																																																															
30이상 ~ 40미만	560% 이하	750% 이하																																																																																																																															
30미만	600% 이하	800% 이하																																																																																																																															
주) 주택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하로 적용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2조(용적률) : 규제사항	①, ②, ④, ⑤ : 변경없음 ③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받을 경우 상한용적률 부분의 주택연면적 비율은 허용용적률 산정시의		①, ②, ④, ⑤ : 변경없음 ③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받을 경우 상한용적률 부분의 주거 대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은 아래와 같다.																																																																																																																														

39. 대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계획 (다)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	(2) 계획내용 <table><tr><th>구 분</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비고</th></tr><tr><td>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td><td>300%</td><td>630%</td><td>시흥대로변 30m 이내</td></tr><tr><td>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td><td>300%</td><td>360%</td><td>구역내부</td></tr><tr><td>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30%</td><td>250%</td><td>구역내부</td></tr></table>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00%	630%	시흥대로변 30m 이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360%	구역내부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250%	구역내부	(2) 계획내용 <table><tr><th>구 분</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비고</th></tr><tr><td>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td><td>300%</td><td>630%</td><td>시흥대로변 30m 이내</td></tr><tr><td>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td><td>300%</td><td>360%</td><td>구역내부</td></tr><tr><td>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30%</td><td>250%</td><td>구역내부</td></tr></table>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00%	630%	시흥대로변 30m 이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360%	구역내부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250%	구역내부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00%	630%	시흥대로변 30m 이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360%	구역내부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250%	구역내부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00%	630%	시흥대로변 30m 이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360%	구역내부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250%	구역내부																															
주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기준용적률과 계획 이행에 따른 허용용적률의 기준이 적용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3항에 의한 용적률의 적용(용도용적제)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여진 허용용적률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주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 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2조(용적률) : 규제사항	① ~ ③, ⑤, ⑥ : 변경없음 ④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적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에 의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물의 용적률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① ~ ③, ⑤, ⑥ : 변경없음 ④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적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 3]에 의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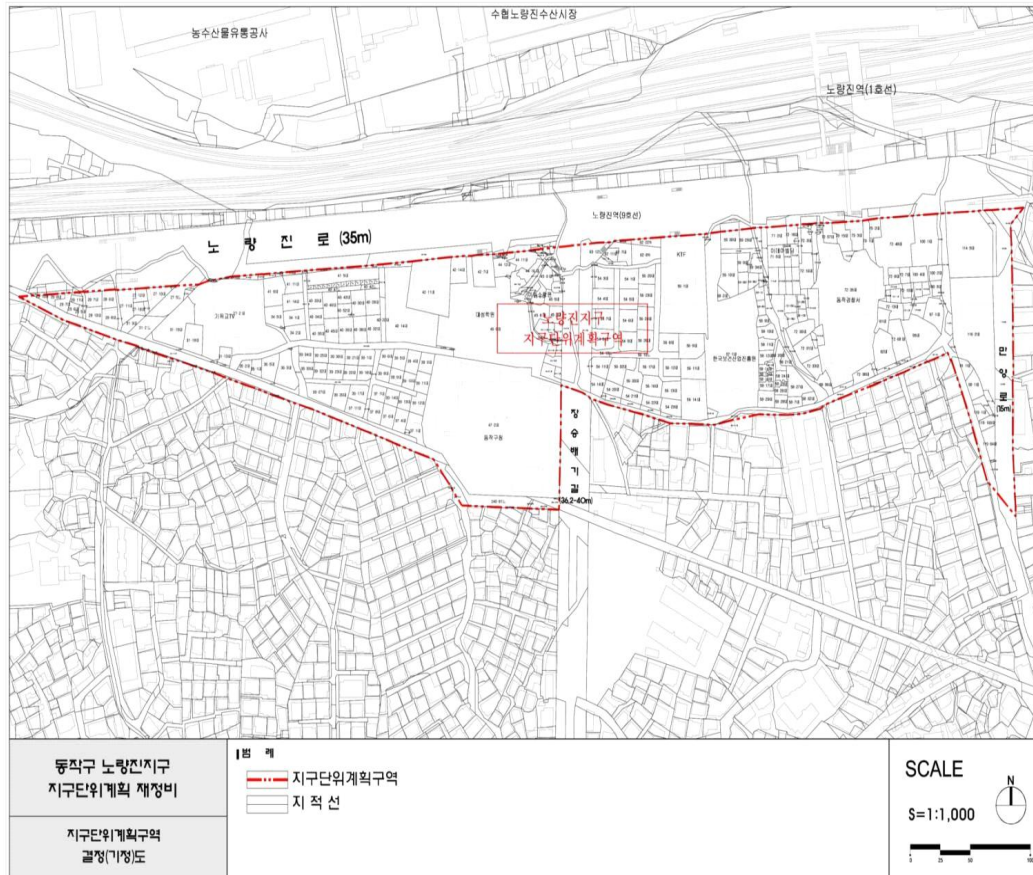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41.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3)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 조서	나) 용적률 결정 조서		나) 용적률 결정 조서																								
	<table><tr><th>구분</th><th>기존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 rowspan="2">가점</td><td>간선도로변 (노선도로 및 경삼배기길 등)</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 rowspan="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을 따름</td></tr><tr><td>이면도로변 (15m이하 도로)</td><td>250%이하</td><td>500%이하</td></tr></table>	구분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가점	간선도로변 (노선도로 및 경삼배기길 등)	300%이하	63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을 따름	이면도로변 (15m이하 도로)	250%이하	500%이하	<table><tr><th>구분</th><th>기존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 rowspan="2">가점</td><td>간선도로변 (노선도로 및 경삼배기길 등)</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 rowspan="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을 따름</td></tr><tr><td>이면도로변 (15m이하 도로)</td><td>250%이하</td><td>500%이하</td></tr></table>			구분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가점	간선도로변 (노선도로 및 경삼배기길 등)	300%이하	63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을 따름	이면도로변 (15m이하 도로)	250%이하
구분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가점	간선도로변 (노선도로 및 경삼배기길 등)	300%이하	63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을 따름																							
	이면도로변 (15m이하 도로)	250%이하	500%이하																								
구분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가점	간선도로변 (노선도로 및 경삼배기길 등)	300%이하	63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을 따름																							
	이면도로변 (15m이하 도로)	250%이하	500%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간선도로변에 접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 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이면도로변에 접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 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2조(용적률) : 규제사항	① ~ ③, ⑦, ⑧ : 변경없음		① ~ ③, ⑦, ⑧ : 변경없음																								
	④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허용용적률 적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용도용적제 등)을 준수하며, 상한용적률의 경우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0/100, 30/100을 적용하여 배분한다.		④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⑤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경우 주택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도용적률의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하도록 한다.		－ 간선도로변에 접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 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이면도로변에 접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 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이 경우 상한용적률 부분의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은 아래와 같다.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상한용적률 배분</th></tr><tr><th>주거건립가능</th><th>비주거건립</th></tr><tr><td rowspan="2"><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frac{\alpha}{\beta}$</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frac{(\beta - \alpha)}{\beta}$</td></tr><tr><td colspan="2">α: 주거용 용적률, β: 허용용적률</td></tr><tr><td></td><td colspan="2">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td></tr></table>		구분	상한용적률 배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frac{\alpha}{\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frac{(\beta - \alpha)}{\beta}$	α : 주거용 용적률, β : 허용용적률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												
구분	상한용적률 배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frac{\alpha}{\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frac{(\beta - \alpha)}{\beta}$																									
	α : 주거용 용적률, β : 허용용적률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																										
⑥ 그 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에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개정(2008.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을 적용한다.		⑥ 그 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에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개정(2008.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을 적용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91.5.11이후 변경)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중 주거부분주1)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존재된 경우 가중평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면적의 70% 이하 적용	

주1)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을 말함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 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beta - \alpha/\beta$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alpha/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alpha/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용도지역 혼재시 가중평균)〉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지 또는 준주거지역→근린상 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주거연면적 비율(%)									
60이상 ~ 70미만	280%	470%	800%	280%	400%	600%	250%	380%	600%
50이상 ~ 60미만	300%	510%	800%	300%	420%	600%	250%	400%	600%
40이상 ~ 50미만	300%	550%	800%	300%	450%	600%	250%	430%	600%
30이상 ~ 40미만	300%	590%	800%	300%	470%	600%	250%	450%	600%
30 미만	300%	630%	800%	300%	500%	600%	250%	480%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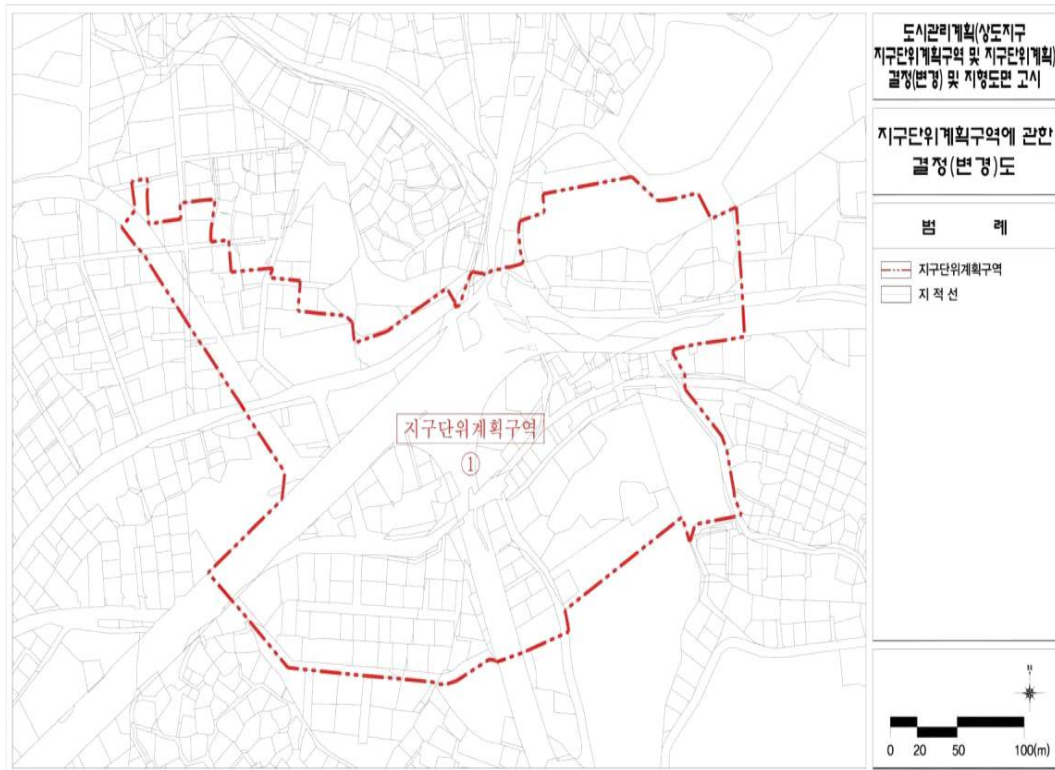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91.5.11이후 변경)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중 주거부분주1)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존재된 경우 가중평균

주1)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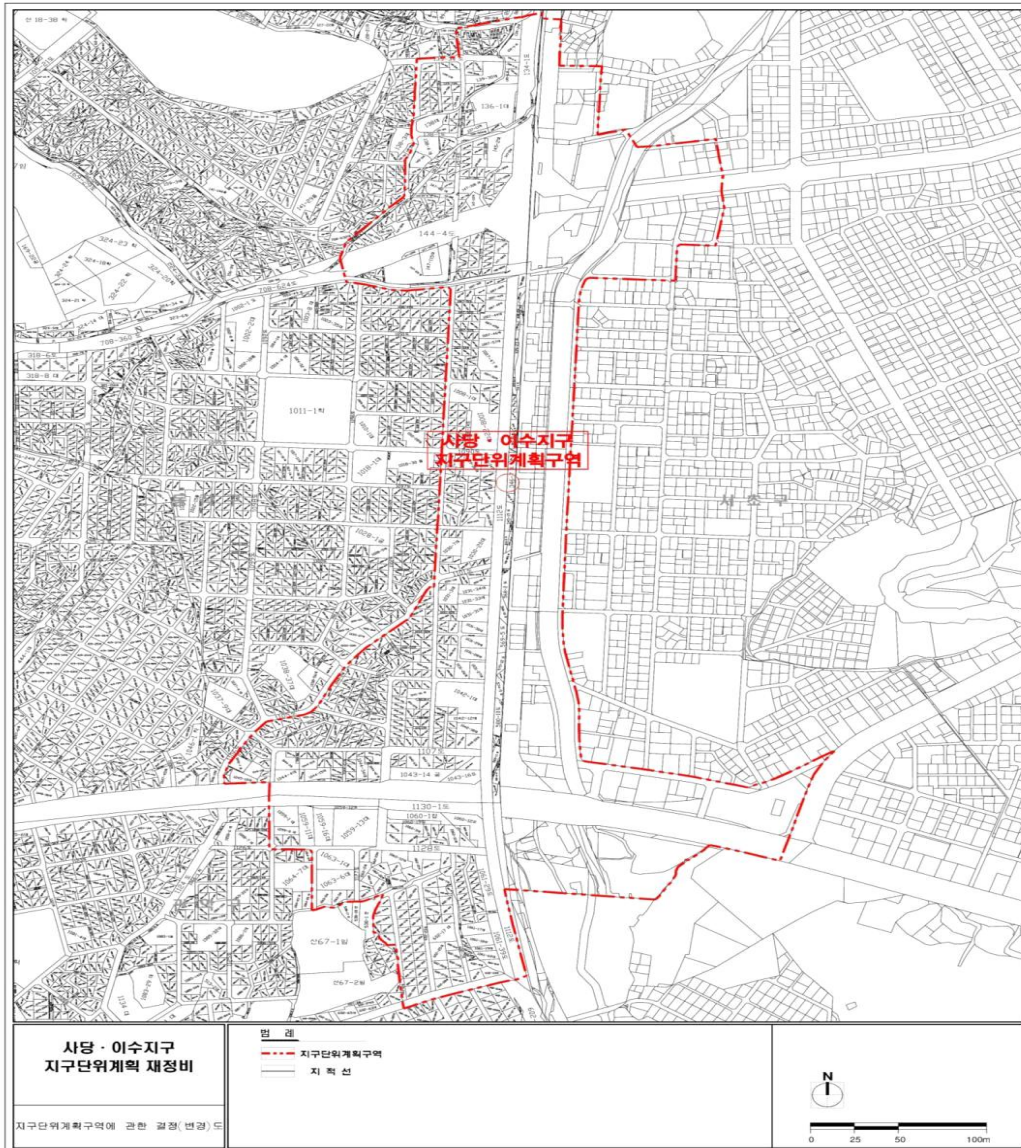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 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beta - \alpha/\beta$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alpha \times (\beta - \alpha)/\beta$
	α : 주거용 용적률, β : 허용용적률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44.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I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구분	용도 지역	입지 특성	위 치	용적률		비 고	구분	용도 지역	입지 특성	위 치	용적률		비 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유형 1-1	상업 지역	간 선 부	· 양화로, 신촌로변	300% 이하	630% 이하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유형 1-1	상업 지역	간 선 부	· 양화로, 신촌로변	300% 이하	630% 이하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유형 1-2				400% 이하	660% 이하		유형 1-2				400% 이하	660% 이하	
	유형 1-3				600% 이하	800% 이하		유형 1-3				600% 이하	800% 이하	
	유형 2-1	상업 지역	이 면 부	· 이대 앞 찾고 싶은 거리 일대 · 신촌로 이면부 대 전로화 일대	400% 이하	600% 이하		유형 2-1	상업 지역	이 면 부	· 이대 앞 찾고 싶은 거리 일대 · 신촌로 이면부 대 전로화 일대	400% 이하	600% 이하	
	유형 3-1	준주거지 역	간 선 부	· 양화로, 신촌로변	250% 이하	350% 이하		유형 3-1	준주거지 역	간 선 부	· 양화로, 신촌로변	250% 이하	350% 이하	
	유형 3-2				300% 이하	360% 이하	유형 3-2	300% 이하				360% 이하		
	유형 3-3				300% 이하	400% 이하	유형 3-3	300% 이하				400% 이하		
	유형 4-1	준주거지 역	이 면 부	· 이대 앞 찾고 싶은 거리 일대	250% 이하	350% 이하		유형 4-1	준주거지 역	이 면 부	· 이대 앞 찾고 싶은 거리 일대	250% 이하	350% 이하	
유형 4-2	300% 이하				360% 이하	유형 4-2	300% 이하	360% 이하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 상한용적률 산정방식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내용을 따른						※ 상한용적률 산정방식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내용을 따른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유형1-1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유형1-1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유형1-2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유형1-2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유형2-1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유형2-1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①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1991.5.11. 이후)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변경없음)						①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1991.5.11. 이후)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변경없음)							

제18조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

-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

구 분	적용기준	비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이하 적용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cdot a/\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beta - a)/\beta$	
	a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cdot 7/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3/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률 적용		

② 상업지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

-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91.5.11 이후 변경)

- 허용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별표 3」의 기준과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2010. 6)」 1부 4-4-1(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기준)에서 용적률 적용기준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며, 기준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2010. 6)」 1부 4-4-1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기준의 기준/허용용적률) $\times$ 「도시계획조례 별표 3」에 따른 용적률로 정함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24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60 미만	250% 이하	610% 이하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91.5.11 이전 변경)

- 허용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별표 3」을 따르며, 기준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2010. 6)」 1부 4-4-1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기준의 기준/허용용적률) $\times$ 「도시계획조례 별표 3」에 따른 용적률로 정할 수 있음
- ※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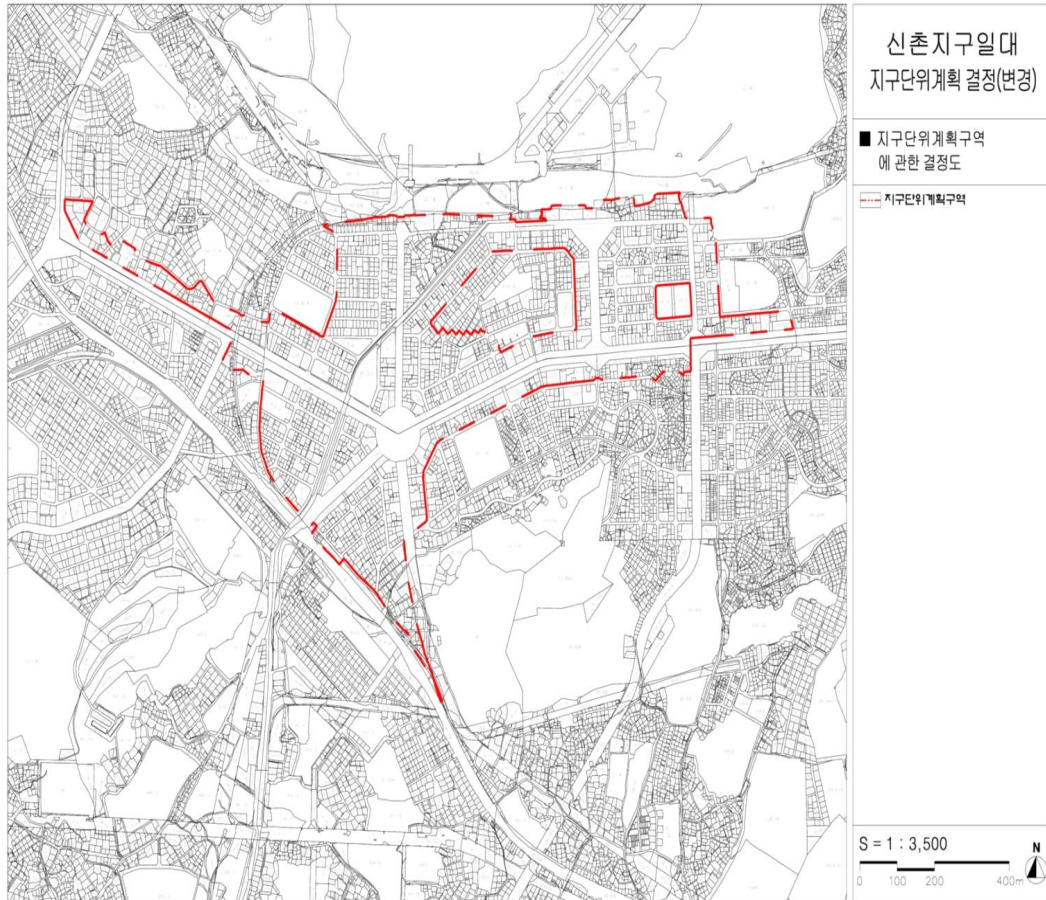
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450% 이하	6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50 이상 ~ 60 미만	490% 이하	65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530% 이하	70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560% 이하	750% 이하	
30 미만	600% 이하	800% 이하	

- 상기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과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cdot a/\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beta - a)/\beta$	
	a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cdot a/\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beta - a)/\beta$	
	a : 주거용 용적률, β : 허용용적률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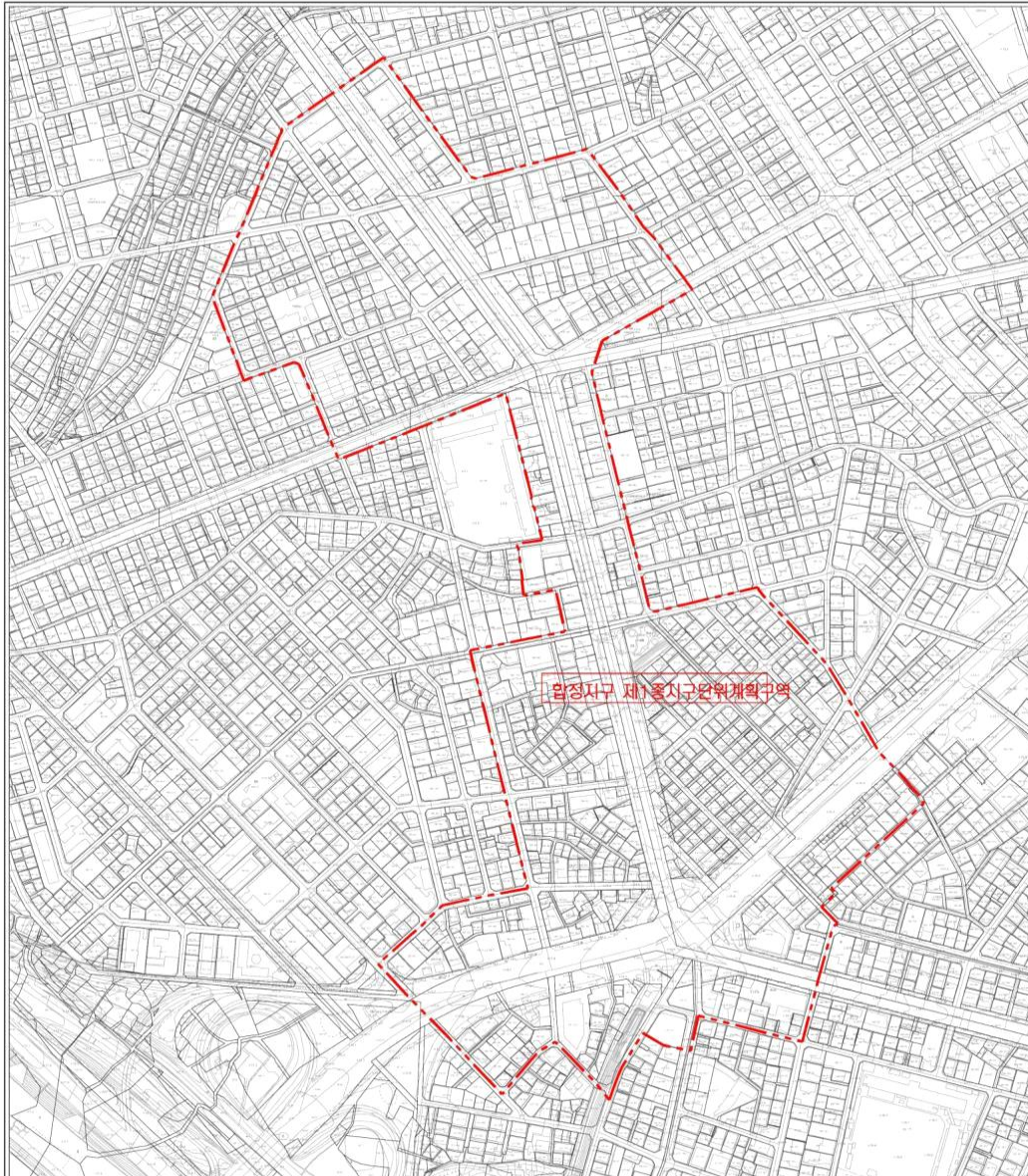


45. 합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I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 개발밀도 계획	■ 건축물 용적률 결정조서				■ 건축물 용적률 결정조서																																																						
	<table><tr><th>구 분</th><th>기 준 용 적 륜</th><th>허 용 용 적 륜</th><th>상 한 용 적 륜</th><th>비 고</th></tr><tr><td rowspan="4">일반 상업지역</td><td>간선도로변 (양화로)</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 rowspan="4">*산정식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 × α × 가중치)이 내 - 가중치: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 α: 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부지면적</td></tr><tr><td>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450%이하</td></tr><tr><td>제3종 일반주거지역</td><td>간선도로변</td><td>230%이하</td><td>250%이하</td></tr><tr><td>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td><td>방원역 주변 이면도로변</td><td>200%이하</td><td>200%이하</td></tr><tr><td>특별계획 5~9구역</td><td>간선도로변 (양화로)</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td></tr></table> 주1) 특별계획구역 1~4구역은 기 결정된 정비계획 내용에 따른(특별계획 2~3구역의 용도지역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용적률(기준/허용)을 결정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개별 사업 진행시 결정토록 함)				구 분	기 준 용 적 륜	허 용 용 적 륜	상 한 용 적 륜	비 고	일반 상업지역	간선도로변 (양화로)	300%이하	630%이하	*산정식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 × α × 가중치)이 내 - 가중치: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 α: 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부지면적	이면도로변	250%이하	45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변	230%이하	250%이하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방원역 주변 이면도로변	200%이하	200%이하	특별계획 5~9구역	간선도로변 (양화로)	300%이하	630%이하		<table><tr><th>구 분</th><th>기 준 용 적 륜</th><th>허 용 용 적 륜</th><th>상 한 용 적 륜</th><th>비 고</th></tr><tr><td rowspan="4">일반 상업지역</td><td>간선도로변 (양화로)</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 rowspan="4">*산정식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 × α × 가중치)이 내 - 가중치: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 α: 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부지면적</td></tr><tr><td>이면도로변</td><td>250%이하</td><td>450%이하</td></tr><tr><td>제3종 일반주거지역</td><td>간선도로변</td><td>230%이하</td><td>250%이하</td></tr><tr><td>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td><td>방원역 주변 이면도로변</td><td>200%이하</td><td>200%이하</td></tr><tr><td>특별계획 5~9구역</td><td>간선도로변 (양화로)</td><td>300%이하</td><td>630%이하</td><td></td></tr></table> 주1) 특별계획구역 1~4구역은 기 결정된 정비계획 내용에 따른(특별계획 2~3구역의 용도지역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용적률(기준/허용)을 결정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개별 사업 진행시 결정토록 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간선도로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이면도로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2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기 준 용 적 륜	허 용 용 적 륜	상 한 용 적 륜	비 고	일반 상업지역	간선도로변 (양화로)	300%이하	630%이하	*산정식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 × α × 가중치)이 내 - 가중치: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 α: 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부지면적	이면도로변	250%이하	45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변	230%이하	250%이하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방원역 주변 이면도로변	200%이하	200%이하	특별계획 5~9구역	간선도로변 (양화로)	300%이하	630%이하
구 분	기 준 용 적 륜	허 용 용 적 륜	상 한 용 적 륜	비 고																																																							
일반 상업지역	간선도로변 (양화로)	300%이하	630%이하	*산정식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 × α × 가중치)이 내 - 가중치: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 α: 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부지면적																																																							
	이면도로변	250%이하	45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변	230%이하		250%이하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방원역 주변 이면도로변	200%이하		200%이하																																																						
특별계획 5~9구역	간선도로변 (양화로)	300%이하	630%이하																																																								
구 분	기 준 용 적 륜	허 용 용 적 륜	상 한 용 적 륜	비 고																																																							
일반 상업지역	간선도로변 (양화로)	300%이하	630%이하	*산정식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 × α × 가중치)이 내 - 가중치: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 α: 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부지면적																																																							
	이면도로변	250%이하	45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변	230%이하		250%이하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방원역 주변 이면도로변	200%이하		200%이하																																																						
특별계획 5~9구역	간선도로변 (양화로)	300%이하	630%이하																																																								
구 분	기 정				변 경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5조(용적률)	민간부문 시행지침																																																										
	1.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대지별로 규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2.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의 적용은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1.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대지별로 규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간선도로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4. 대지가 2개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용적률을 산정한다. 5. 획지선 변경 또는 공동개발 변경 등에 의해 서로 다른 기준/허용 용적률이 적용될 경우에는 면적대비 평균값을 당해 대지의 기준/허용 용적률로 적용한다.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이면도로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2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의 적용은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4. 대지가 2개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용적률을 산정한다. 5. 획지선 변경 또는 공동개발 변경 등에 의해 서로 다른 기준/허용 용적률이 적용될 경우에는 면적대비 평균값을 당해 대지의 기준/허용 용적률로 적용한다.
--	--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범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합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S = 1:5,000

0 25 50 100 250m



47.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 용적률

구 분	접도 조건	계 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변 경	근린상업지역	간선변 이면부	400% 이하 300% 이하	530% 이하 500% 이하
	준주거지역 (A)	-	300% 이하	360% 이하
변 경	준주거지역 (B)	-	200% 이하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200% 이하

■ 용적률

구 분	접도 조건	계 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변 경	근린상업지역	간선변 이면부	400% 이하 300% 이하	530% 이하 500% 이하
	준주거지역 (A)	-	300% 이하	360% 이하
변 경	준주거지역 (B)	-	200% 이하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200% 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간선변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5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41.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이면부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6조(용적률) : 규제사항

① ~ ③, ⑤ : 변경없음

④ 용도지역 상한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15.8.) “4-4-2 용도지역 상한된 경우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 4-4-3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 “4-4-4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을 반영 한다.

① ~ ③, ⑤ : 변경없음

④ “용도지역 상한된 경우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으로 상한된 경우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반영

- 상한용적률 부분의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 방법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상업지역으로 상한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frac{a}{\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frac{\beta - a}{\beta}$	
	a : 주거용 용적률, β : 허용용적률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48.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 용적률 계획

구분	용도지역		점도조건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고
	중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정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12m이상	300%	500%이하	기정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	200%이하	
서교동 354-5와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변경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200%이하	
서교동 354-5와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 용적률 계획

구분	용도지역		점도조건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고
	중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정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12m이상	300%	500%이하	기정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	200%이하	
서교동 354-5와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변경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200%이하	
서교동 354-5와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 밀도 결정(변경)조서

2) 용적률

주) 1.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허용용적률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 적용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적용

3. 서교동 354-5와 3필지는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별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서교 제2013-137호)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용적률 - 허용용적률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이후 다 용도로 건축물 용도 변경 불가

주) 1.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허용용적률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 적용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적용

3. 서교동 354-5와 3필지는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별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서교 제2013-137호)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용적률 - 허용용적률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이후 다 용도로 건축물 용도 변경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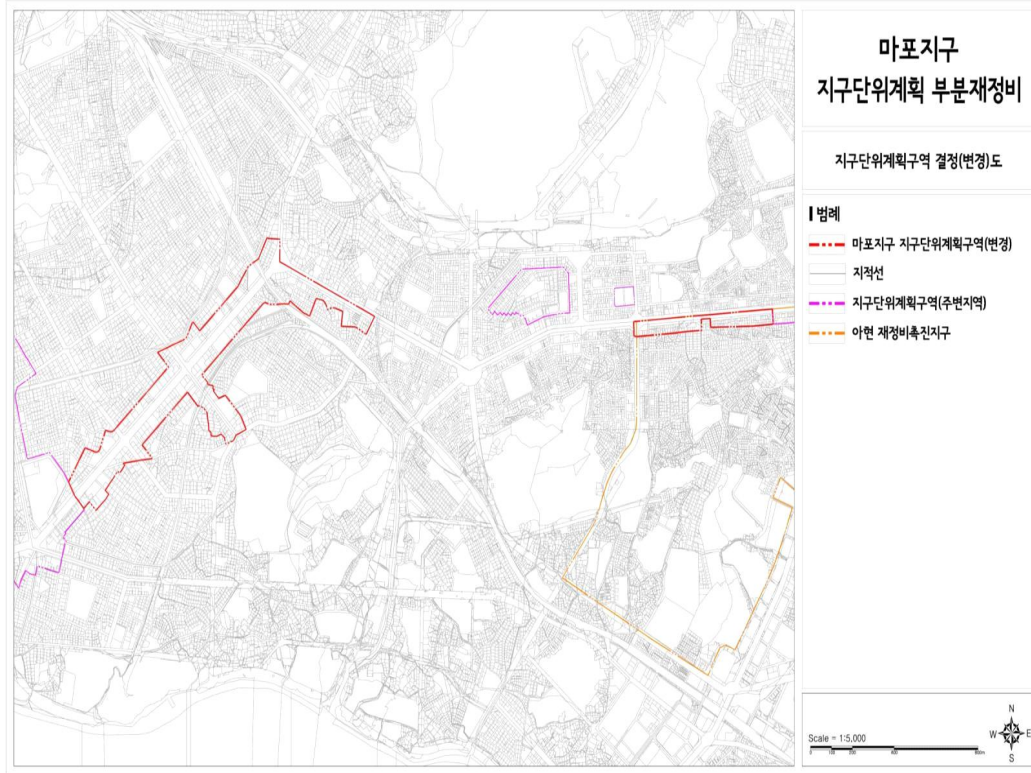
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12m이상 도로에 접한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12m미만 도로에 접한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2%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4.9%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에 부칙(7093호, 2019.3.26.)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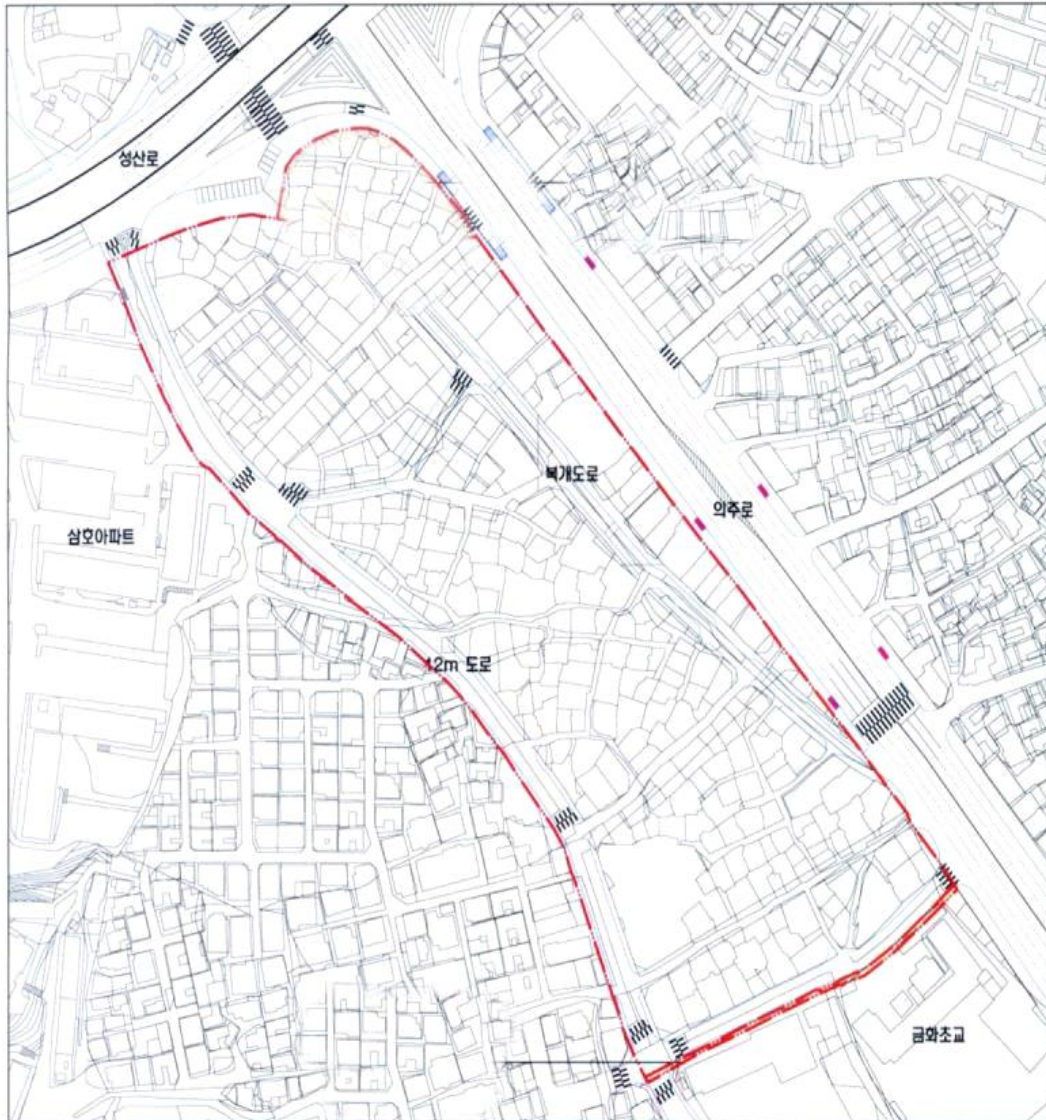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49. 천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3) 건축물 용적률계획	■ 용적률 적용		■ 용적률 적용																																								
	<table> <tr> <th data-bbox="443 499 504 553">구 분</th><th data-bbox="504 499 654 553">기존용적률</th><th data-bbox="654 499 858 553">허용용적률</th></tr> <tr> <td data-bbox="443 553 504 748" rowspan="2">일반상업지역</td><td data-bbox="504 553 654 622">의주로변 (중전 일반상업지역)</td><td data-bbox="654 553 858 622">500%</td><td data-bbox="858 553 890 622">600% 이하</td></tr> <tr> <td data-bbox="504 622 654 748">이면도로변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지역)</td><td data-bbox="654 622 858 748">300%</td><td data-bbox="858 622 890 748">500% 이하</td></tr> <tr> <td data-bbox="443 748 504 866" rowspan="2">준주거지역</td><td data-bbox="504 748 654 828">영천동 특별계획구역</td><td data-bbox="654 748 858 828">300%</td><td data-bbox="858 748 890 828">360% 이하</td></tr> <tr> <td data-bbox="504 828 654 866">북계도로변</td><td data-bbox="654 828 858 866">300%</td><td data-bbox="858 828 890 866">360% 이하</td></tr> <tr> <td data-bbox="443 866 504 967">제3종일반주거지역</td><td data-bbox="504 866 654 967">12m 이면도로변</td><td data-bbox="654 866 858 967">200%</td><td data-bbox="858 866 890 967">250% 이하</td></tr> </table>	구 분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상업지역	의주로변 (중전 일반상업지역)	500%	600% 이하	이면도로변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지역)	300%	500% 이하	준주거지역	영천동 특별계획구역	300%	360% 이하	북계도로변	300%	3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12m 이면도로변	200%	250% 이하	<table> <tr> <th data-bbox="904 499 965 553">구 분</th><th data-bbox="965 499 1115 553">기존용적률</th><th data-bbox="1115 499 1318 553">허용용적률</th></tr> <tr> <td data-bbox="904 553 965 748" rowspan="2">일반상업지역</td><td data-bbox="965 553 1115 622">의주로변 (중전 일반상업지역)</td><td data-bbox="1115 553 1318 622">500%</td><td data-bbox="1318 553 1326 622">600% 이하</td></tr> <tr> <td data-bbox="965 622 1115 748">이면도로변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지역)</td><td data-bbox="1115 622 1318 748">300%</td><td data-bbox="1318 622 1326 748">500% 이하</td></tr> <tr> <td data-bbox="904 748 965 866" rowspan="2">준주거지역</td><td data-bbox="965 748 1115 828">영천동 특별계획구역</td><td data-bbox="1115 748 1318 828">300%</td><td data-bbox="1318 748 1326 828">360% 이하</td></tr> <tr> <td data-bbox="965 828 1115 866">북계도로변</td><td data-bbox="1115 828 1318 866">300%</td><td data-bbox="1318 828 1326 866">360% 이하</td></tr> <tr> <td data-bbox="904 866 965 967">제3종일반주거지역</td><td data-bbox="965 866 1115 967">12m 이면도로변</td><td data-bbox="1115 866 1318 967">200%</td><td data-bbox="1318 866 1326 967">250% 이하</td></tr> </table>	구 분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상업지역	의주로변 (중전 일반상업지역)	500%	600% 이하	이면도로변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지역)	300%	500% 이하	준주거지역	영천동 특별계획구역	300%	360% 이하	북계도로변	300%	3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12m 이면도로변	200%
구 분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상업지역	의주로변 (중전 일반상업지역)	500%	600% 이하																																								
	이면도로변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지역)	300%	500% 이하																																								
준주거지역	영천동 특별계획구역	300%	360% 이하																																								
	북계도로변	300%	3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12m 이면도로변	200%	250% 이하																																								
구 분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상업지역	의주로변 (중전 일반상업지역)	500%	600% 이하																																								
	이면도로변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지역)	300%	500% 이하																																								
준주거지역	영천동 특별계획구역	300%	360% 이하																																								
	북계도로변	300%	3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12m 이면도로변	200%	250% 이하																																								
	주) 1.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의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 중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6월 30일까지는 400% 이하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허용용적률은 433% 범위 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일반상업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대지가 중전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필지별 용적률은 과반이 넘는 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며, 공동건축시 용적률은 아래 산정식을 적용한다 $\frac{(\text{중전일반상업지역용적률} \times \text{중전일반상업지역면적}) + (\text{변경일반상업지역용적률} \times \text{변경일반상업지역면적})}{\text{전체지면적}}$		주) 1.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의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 중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6월 30일까지는 400% 이하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허용용적률은 433% 범위 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일반상업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대지가 중전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필지별 용적률은 과반이 넘는 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며, 공동건축시 용적률은 아래 산정식을 적용한다 $\frac{(\text{중전일반상업지역용적률} \times \text{중전일반상업지역면적}) + (\text{변경일반상업지역용적률} \times \text{변경일반상업지역면적})}{\text{전체지면적}}$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이면도로변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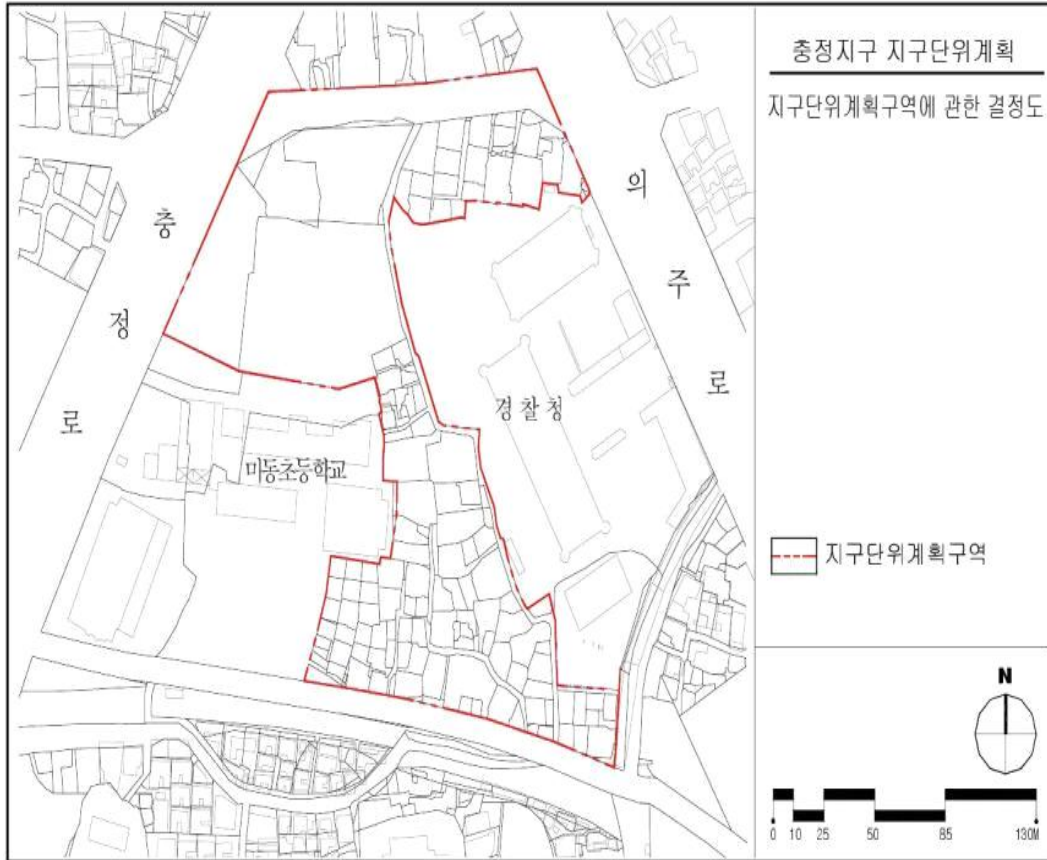


천 연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도 S = 1 : 1,000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	------------------------------------

50. 중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I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2) 계획기준	■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table><tr><th>구 분</th><th>기준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건폐율</th><th>비고</th></tr><tr><td>일반상업지역</td><td>500%</td><td>600%</td><td>60%이하</td><td>4대문안</td></tr><tr><td>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정 준주거지역 포함)</td><td>300%</td><td>360%</td><td>60%이하</td><td>특별계획구역 ①, ②</td></tr><tr><td>일반주거지역 → 3층일반주거지역</td><td>220%</td><td>250%</td><td>50%이하</td><td>특별계획구역 ③</td></tr></table> 주) · 준주거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6.30.까지는 400%이하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허용용적률은 433% 범위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함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동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한다.	구 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건폐율	비고	일반상업지역	500%	600%	60%이하	4대문안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정 준주거지역 포함)	300%	360%	60%이하	특별계획구역 ①, ②	일반주거지역 → 3층일반주거지역	220%	250%	50%이하	특별계획구역 ③	■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table><tr><th>구 분</th><th>기준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건폐율</th><th>비고</th></tr><tr><td>일반상업지역</td><td>500%</td><td>600%</td><td>60%이하</td><td>4대문안</td></tr><tr><td>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정 준주거지역 포함)</td><td>300%</td><td>360%</td><td>60%이하</td><td>특별계획구역 ①, ②</td></tr><tr><td>일반주거지역 → 3층일반주거지역</td><td>220%</td><td>250%</td><td>50%이하</td><td>특별계획구역 ③</td></tr></table> 주) · 준주거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6.30.까지는 400%이하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허용용적률은 433% 범위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함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동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한다.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	구 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건폐율	비고	일반상업지역	500%	600%	60%이하	4대문안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정 준주거지역 포함)	300%	360%	60%이하	특별계획구역 ①, ②	일반주거지역 → 3층일반주거지역	220%	250%	50%이하	특별계획구역 ③																																										
구 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건폐율	비고																																																																																
일반상업지역	500%	600%	60%이하	4대문안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정 준주거지역 포함)	300%	360%	60%이하	특별계획구역 ①, ②																																																																																
일반주거지역 → 3층일반주거지역	220%	250%	50%이하	특별계획구역 ③																																																																																
구 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건폐율	비고																																																																																
일반상업지역	500%	600%	60%이하	4대문안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정 준주거지역 포함)	300%	360%	60%이하	특별계획구역 ①, ②																																																																																
일반주거지역 → 3층일반주거지역	220%	250%	50%이하	특별계획구역 ③																																																																																
3) 계획내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table><tr><th>항목</th><th>내용</th><th>완화조건</th><th>완화내용</th></tr><tr><td rowspan="2">A. 대지에 관한사항</td><td>①공동건축(규제)</td><td>지침에 의거 준수시</td><td>기준용적률x 0.05</td></tr><tr><td>②공동건축(권장)</td><td>지침에 의거 준수시</td><td>기준용적률x 0.08</td></tr><tr><td>B. 용도에 관한사항</td><td>-용도권장 (전층 및 1층권장용도)</td><td>지침에 의거 권장용도 준수시</td><td>30</td></tr><tr><td rowspan="4">C. 대지내 공지에 관한사항</td><td rowspan="2">①벽면한계선, 건축한계선</td><td>지침에 의거 대지내에서 보행공간 제공(공공보행로로)</td><td>(제공면적/대지면적)x 기준용적률</td></tr><tr><td>지침에 의거 도로와 인접하여 보행공간 제공</td><td>(제공면적/대지면적)x 기준용적률</td></tr><tr><td>②쌔지형공지</td><td>지침에 의거 준수시</td><td>대지면적)x 기준용적률</td></tr><tr><td>③대상형 공지</td><td>지침에 의거 준수시</td><td>대지면적)x 기준용적률</td></tr><tr><td rowspan="3">D. 건축형태 및 외관에 관한사항</td><td>①단상형 건축물</td><td>준수시(건폐율40%이하)</td><td>30</td></tr><tr><td>②1층 접지부 건폐율</td><td>건폐율 40%이하 (대지500미만) 건폐율 50%이하 (대지500미만)</td><td>30</td></tr><tr><td>③외부 형태(지붕)</td><td>경사지붕 -5층이하 건축물만 적용</td><td>10</td></tr><tr><td>E. 차량 통선에 관한사항</td><td>①공동주차도로</td><td>조성시</td><td>기준용적률x 0.05</td></tr></table> ※ 주) 1.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해당 인센티브의 합계 - 둘이상의 동일사항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시 선택적 인센티브 적용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 2.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임 3. 제공면적 및 조성면적은 지침 제49조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임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상의 설치의무 면적 이상을 확보할 경우 적용 -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후퇴부분 및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 등은 완화적용 제외 - 대상형공지, 쌔지형공지 등은 지침에 의한 조성기준을 만족하여야함 5. 권장용도 및 연면적에 대한 면적 산정기준은 순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를 제외한 권장용도를 건축연면적의 30%이상 수용시 인센티브 부여	항목	내용	완화조건	완화내용	A. 대지에 관한사항	①공동건축(규제)	지침에 의거 준수시	기준용적률x 0.05	②공동건축(권장)	지침에 의거 준수시	기준용적률x 0.08	B. 용도에 관한사항	-용도권장 (전층 및 1층권장용도)	지침에 의거 권장용도 준수시	30	C. 대지내 공지에 관한사항	①벽면한계선, 건축한계선	지침에 의거 대지내에서 보행공간 제공(공공보행로로)	(제공면적/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지침에 의거 도로와 인접하여 보행공간 제공	(제공면적/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②쌔지형공지	지침에 의거 준수시	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③대상형 공지	지침에 의거 준수시	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D. 건축형태 및 외관에 관한사항	①단상형 건축물	준수시(건폐율40%이하)	30	②1층 접지부 건폐율	건폐율 40%이하 (대지500미만) 건폐율 50%이하 (대지500미만)	30	③외부 형태(지붕)	경사지붕 -5층이하 건축물만 적용	10	E. 차량 통선에 관한사항	①공동주차도로	조성시	기준용적률x 0.05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table><tr><th>항목</th><th>내용</th><th>완화조건</th><th>완화내용</th></tr><tr><td rowspan="2">A. 대지에 관한사항</td><td>①공동건축(규제)</td><td>지침에 의거 준수시</td><td>기준용적률x 0.05</td></tr><tr><td>②공동건축(권장)</td><td>지침에 의거 준수시</td><td>기준용적률x 0.08</td></tr><tr><td>B. 용도에 관한사항</td><td>-용도권장 (전층 및 1층권장용도)</td><td>지침에 의거 권장용도 준수시</td><td>30</td></tr><tr><td rowspan="4">C. 대지내 공지에 관한사항</td><td rowspan="2">①벽면한계선, 건축한계선</td><td>지침에 의거 대지내에서 보행공간 제공(공공보행로로)</td><td>(제공면적/대지면적)x 기준용적률</td></tr><tr><td>지침에 의거 도로와 인접하여 보행공간 제공</td><td>(제공면적/대지면적)x 기준용적률</td></tr><tr><td>②쌔지형공지</td><td>지침에 의거 준수시</td><td>대지면적)x 기준용적률</td></tr><tr><td>③대상형 공지</td><td>지침에 의거 준수시</td><td>대지면적)x 기준용적률</td></tr><tr><td rowspan="3">D. 건축형태 및 외관에 관한사항</td><td>①단상형 건축물</td><td>준수시(건폐율40%이하)</td><td>30</td></tr><tr><td>②1층 접지부 건폐율</td><td>건폐율 40%이하 (대지500미만) 건폐율 50%이하 (대지500미만)</td><td>30</td></tr><tr><td>③외부 형태(지붕)</td><td>경사지붕 -5층이하 건축물만 적용</td><td>10</td></tr><tr><td>E. 차량 통선에 관한사항</td><td>①공동주차도로</td><td>조성시</td><td>기준용적률x 0.05</td></tr></table> ※ 주) 1.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해당 인센티브의 합계 - 둘이상의 동일사항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시 선택적 인센티브 적용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 2.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임 3. 제공면적 및 조성면적은 지침 제49조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임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상의 설치의무 면적 이상을 확보할 경우 적용 -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후퇴부분 및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 등은 완화적용 제외 - 대상형공지, 쌔지형공지 등은 지침에 의한 조성기준을 만족하여야함 5. 권장용도 및 연면적에 대한 면적 산정기준은 순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를 제외한 권장용도를 건축연면적의 30%이상 수용시 인센티브 부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항목	내용	완화조건	완화내용	A. 대지에 관한사항	①공동건축(규제)	지침에 의거 준수시	기준용적률x 0.05	②공동건축(권장)	지침에 의거 준수시	기준용적률x 0.08	B. 용도에 관한사항	-용도권장 (전층 및 1층권장용도)	지침에 의거 권장용도 준수시	30	C. 대지내 공지에 관한사항	①벽면한계선, 건축한계선	지침에 의거 대지내에서 보행공간 제공(공공보행로로)	(제공면적/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지침에 의거 도로와 인접하여 보행공간 제공	(제공면적/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②쌔지형공지	지침에 의거 준수시	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③대상형 공지	지침에 의거 준수시	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D. 건축형태 및 외관에 관한사항	①단상형 건축물	준수시(건폐율40%이하)	30	②1층 접지부 건폐율	건폐율 40%이하 (대지500미만) 건폐율 50%이하 (대지500미만)	30	③외부 형태(지붕)	경사지붕 -5층이하 건축물만 적용	10	E. 차량 통선에 관한사항	①공동주차도로	조성시	기준용적률x 0.05
항목	내용	완화조건	완화내용																																																																																	
A. 대지에 관한사항	①공동건축(규제)	지침에 의거 준수시	기준용적률x 0.05																																																																																	
	②공동건축(권장)	지침에 의거 준수시	기준용적률x 0.08																																																																																	
B. 용도에 관한사항	-용도권장 (전층 및 1층권장용도)	지침에 의거 권장용도 준수시	30																																																																																	
C. 대지내 공지에 관한사항	①벽면한계선, 건축한계선	지침에 의거 대지내에서 보행공간 제공(공공보행로로)	(제공면적/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지침에 의거 도로와 인접하여 보행공간 제공	(제공면적/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②쌔지형공지	지침에 의거 준수시	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③대상형 공지	지침에 의거 준수시	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D. 건축형태 및 외관에 관한사항	①단상형 건축물	준수시(건폐율40%이하)	30																																																																																	
	②1층 접지부 건폐율	건폐율 40%이하 (대지500미만) 건폐율 50%이하 (대지500미만)	30																																																																																	
	③외부 형태(지붕)	경사지붕 -5층이하 건축물만 적용	10																																																																																	
E. 차량 통선에 관한사항	①공동주차도로	조성시	기준용적률x 0.05																																																																																	
항목	내용	완화조건	완화내용																																																																																	
A. 대지에 관한사항	①공동건축(규제)	지침에 의거 준수시	기준용적률x 0.05																																																																																	
	②공동건축(권장)	지침에 의거 준수시	기준용적률x 0.08																																																																																	
B. 용도에 관한사항	-용도권장 (전층 및 1층권장용도)	지침에 의거 권장용도 준수시	30																																																																																	
C. 대지내 공지에 관한사항	①벽면한계선, 건축한계선	지침에 의거 대지내에서 보행공간 제공(공공보행로로)	(제공면적/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지침에 의거 도로와 인접하여 보행공간 제공	(제공면적/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②쌔지형공지	지침에 의거 준수시	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③대상형 공지	지침에 의거 준수시	대지면적)x 기준용적률																																																																																	
D. 건축형태 및 외관에 관한사항	①단상형 건축물	준수시(건폐율40%이하)	30																																																																																	
	②1층 접지부 건폐율	건폐율 40%이하 (대지500미만) 건폐율 50%이하 (대지500미만)	30																																																																																	
	③외부 형태(지붕)	경사지붕 -5층이하 건축물만 적용	10																																																																																	
E. 차량 통선에 관한사항	①공동주차도로	조성시	기준용적률x 0.05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52. 서초로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table><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2">계 획</th></tr><tr><th rowspan="6">기정</th><th rowspan="4">일반상업지역</th><th>간선부</th><td>600%</td><td>800%</td></tr><tr><th>12m 도로변 이상</th><td>500%</td><td>700%</td></tr><tr><th>이면부</th><td>450%</td><td>600%</td></tr><tr><th>상향지역('99)</th><td>간선부<td>300%</td><td>630%</td></td></tr><tr><th></th><th>이면부</th><td>250%</td><td>500%</td></tr><tr><th>일반주거</th><th>제2종일반주거지역</th><th>최고고도지구(서초동 법원단지 주변)</th><td>180%</td><td>200%</td></tr></table> 주1)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이내(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적용) 주2) 간선가로변 밀지 중 공동개발 해체시 해당 대지의 접도조건에 해당되는 기존/허용용적률 적용 주3) 가설건축물의 경우, 기존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기정 일반상업지역의 획지 중 전면도로가 10m 이상, 획지규모가 1,500㎡이상의 경우에는 '12m 도로변 이상'에 해당하는 기존용적률 500%, 허용용적률 700% 적용 주5) 상향지역('99) 획지 중 전면도로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간선부'에 해당하는 기존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630% 적용	구 분			계 획		기정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	800%	12m 도로변 이상	500%	700%	이면부	450%	600%	상향지역('99)	간선부 <td>300%</td> <td>630%</td>	300%	630%		이면부	250%	500%	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180%	200%	<table><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2">계 획</th></tr><tr><th rowspan="6">기정</th><th rowspan="4">일반상업지역</th><th>간선부</th><td>600%</td><td>800%</td></tr><tr><th>12m 도로변 이상</th><td>500%</td><td>700%</td></tr><tr><th>이면부</th><td>450%</td><td>600%</td></tr><tr><th>상향지역('99)</th><td>간선부<td>300%</td><td>630%</td></td></tr><tr><th></th><th>이면부</th><td>250%</td><td>500%</td></tr><tr><th>일반주거</th><th>제2종일반주거지역</th><th>최고고도지구(서초동 법원단지 주변)</th><td>180%</td><td>200%</td></tr></table> 주1)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이내(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적용) 주2) 간선가로변 밀지 중 공동개발 해체시 해당 대지의 접도조건에 해당되는 기존/허용용적률 적용 주3) 가설건축물의 경우, 기존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기정 일반상업지역의 획지 중 전면도로가 10m 이상, 획지규모가 1,500㎡이상의 경우에는 '12m 도로변 이상'에 해당하는 기존용적률 500%, 허용용적률 700% 적용 주5) 상향지역('99) 획지 중 전면도로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간선부'에 해당하는 기존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630% 적용 주6)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00000- 기정 상업지역 중 12m 도로변 이상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5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0000- 기정 상업지역 중 이면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00000- 상향지역 간선부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00000- 상향지역 이면부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0000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 제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계 획		기정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	800%	12m 도로변 이상	500%	700%	이면부	450%	600%	상향지역('99)	간선부 <td>300%</td> <td>630%</td>	300%	630%		이면부	250%	500%	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180%
구 분			계 획																																																								
기정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	800%																																																							
		12m 도로변 이상	500%	700%																																																							
		이면부	450%	600%																																																							
		상향지역('99)	간선부 <td>300%</td> <td>630%</td>	300%	630%																																																						
		이면부	250%	500%																																																							
	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180%	200%																																																						
구 분			계 획																																																								
기정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	800%																																																							
		12m 도로변 이상	500%	700%																																																							
		이면부	450%	600%																																																							
		상향지역('99)	간선부 <td>300%</td> <td>630%</td>	300%	630%																																																						
		이면부	250%	500%																																																							
	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180%	200%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용도에 관한사항	① 대상구역내 상업지역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도심가로에 활력을 부여하고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비주거용도에 대한 비율을 제한한다.	① 대상구역내 상업지역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도심가로에 활력을 부여하고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비주거용도에 대한 비율을 제한한다.																																																									
제2절 규제사항	② 계획용적률의 10%이상은 지상부 연면적의 10%이상을 의미하며, 기존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 상향된 지역 모두에 적용된다.	② 계획용적률의 10%이상은 지상부 연면적의 10%이상을 의미하며, 기존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 상향된 지역 모두에 적용된다.																																																									
제11조 (비주거용도 비율제한)	■ 건축물 비주거용도 비율 제한	■ 건축물 비주거용도 비율 제한																																																									
	<table><tr><th>가구</th><th>용도지역</th><th>비주거용도 비율</th><th>비고</th></tr><tr><td rowspan="2">GC29-38</td><td>기정 일반상업지역</td><td>- 계획용적률의 10%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td><td>-</td></tr><tr><td>GCI-28</td><td>상향지역('99)</td><td>- 계획용적률의 10%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을 전세연면적의 70%이하로 적용</td><td>-</td></tr></table> 주1) 단,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를 감안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주거 용도를 허용용적률의 10%이상 적용 가능 주2) 용적률 10%이상 실시는 지상부 실시를 의미함	가구	용도지역	비주거용도 비율	비고	GC29-38	기정 일반상업지역	- 계획용적률의 10%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GCI-28	상향지역('99)	- 계획용적률의 10%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을 전세연면적의 70%이하로 적용	-	<table><tr><th>가구</th><th>용도지역</th><th>비주거용도 비율</th><th>비고</th></tr><tr><td rowspan="2">GC29-38</td><td>기정 일반상업지역</td><td>- 계획용적률의 10%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td><td>-</td></tr><tr><td>GCI-28</td><td>상향지역('99)</td><td>- 계획용적률의 10%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td><td>-</td></tr></table> 주1) 단,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를 감안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주거 용도를 허용용적률의 10%이상 적용 가능 주2) 용적률 10%이상 실시는 지상부 실시를 의미함	가구	용도지역	비주거용도 비율	비고	GC29-38	기정 일반상업지역	- 계획용적률의 10%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GCI-28	상향지역('99)	- 계획용적률의 10%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가구	용도지역	비주거용도 비율	비고																																																								
GC29-38	기정 일반상업지역	- 계획용적률의 10%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GCI-28	상향지역('99)	- 계획용적률의 10%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을 전세연면적의 70%이하로 적용	-																																																							
가구	용도지역	비주거용도 비율	비고																																																								
GC29-38	기정 일반상업지역	- 계획용적률의 10%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GCI-28	상향지역('99)	- 계획용적률의 10%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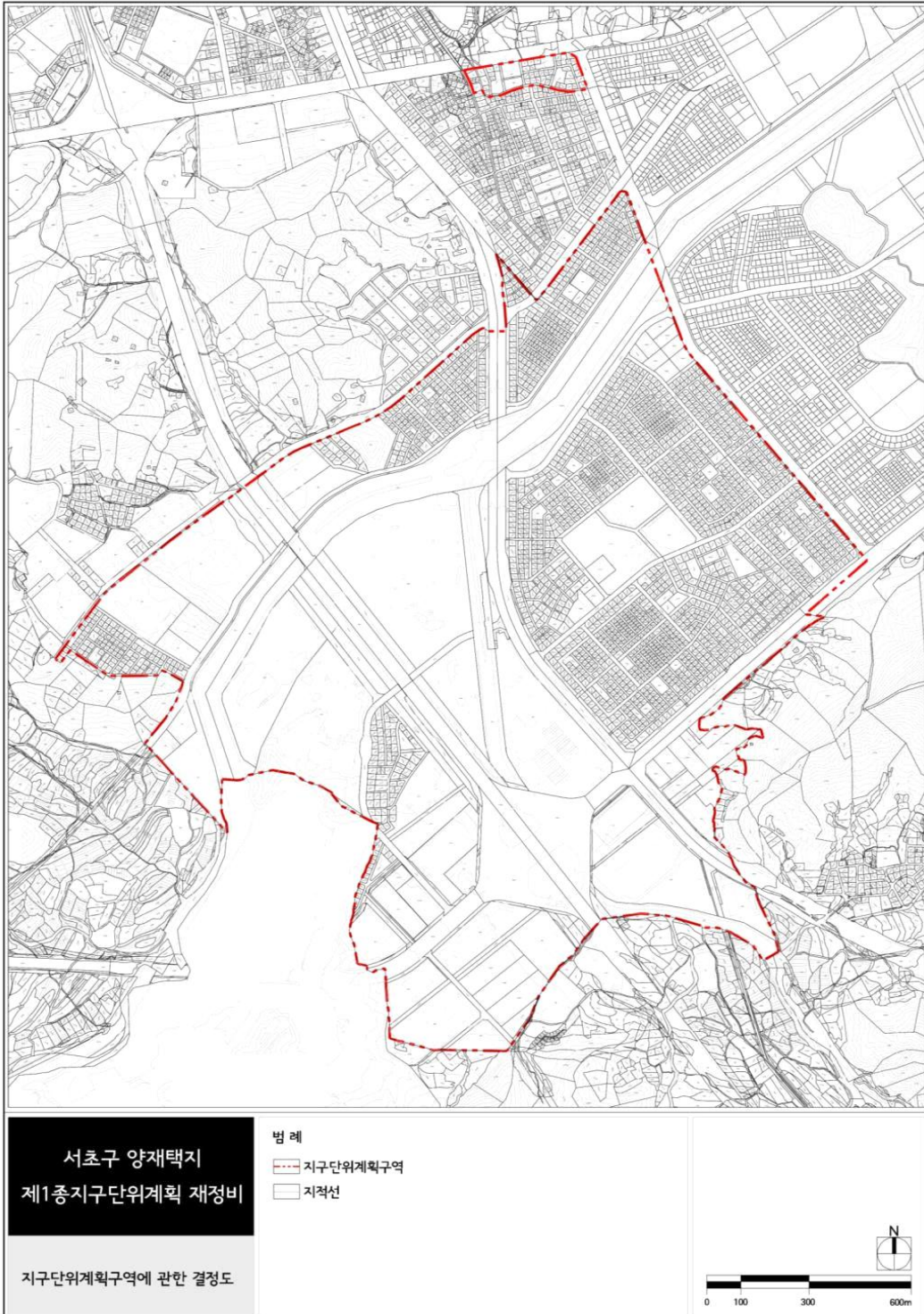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53. 양재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 개발밀도 에 관한 계획 2) 계획기준	■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table><tr><th colspan="2">용도지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비 고</th></tr><tr><td colspan="2">자연 녹지지역</td><td>40%이하</td><td>50%이하</td><td></td></tr><tr><td rowspan="3">일반 주거 지역</td><td>제1종</td><td>130%이하</td><td>150%이하</td><td></td></tr><tr><td>제2종</td><td>180%이하</td><td>200%이하</td><td></td></tr><tr><td>제3종</td><td>220%이하</td><td>250%이하</td><td></td></tr><tr><td colspan="2">준주거지역</td><td>-</td><td>320%이하</td><td>유통업무설비 시설</td></tr><tr><td rowspan="2">일반상업지역</td><td>-</td><td>400%이하</td><td>유통업무설비 시설</td><td></td></tr><tr><td>600%이하</td><td>800%이하</td><td>개포지구중심</td><td></td></tr></table>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 고	자연 녹지지역		40%이하	50%이하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130%이하	150%이하		제2종	180%이하	200%이하		제3종	22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	320%이하	유통업무설비 시설	일반상업지역	-	400%이하	유통업무설비 시설		600%이하	800%이하	개포지구중심		<table><tr><th colspan="2">용도지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비 고</th></tr><tr><td colspan="2">자연 녹지지역</td><td>40%이하</td><td>50%이하</td><td></td></tr><tr><td rowspan="3">일반 주거 지역</td><td>제1종</td><td>130%이하</td><td>150%이하</td><td></td></tr><tr><td>제2종</td><td>180%이하</td><td>200%이하</td><td></td></tr><tr><td>제3종</td><td>220%이하</td><td>250%이하</td><td></td></tr><tr><td colspan="2">준주거지역</td><td>-</td><td>320%이하</td><td>유통업무설비 시설</td></tr><tr><td rowspan="2">일반상업지역</td><td>-</td><td>400%이하</td><td>유통업무설 비시설</td><td></td></tr><tr><td>600%이하</td><td>800%이하</td><td>개포지구중심</td><td></td></tr></table>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 고	자연 녹지지역		40%이하	50%이하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130%이하	150%이하		제2종	180%이하	200%이하		제3종	22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	320%이하	유통업무설비 시설	일반상업지역	-	400%이하	유통업무설 비시설		600%이하	800%이하	개포지구중심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 고																																																																													
	자연 녹지지역		40%이하	50%이하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130%이하	150%이하																																																																														
		제2종	180%이하	200%이하																																																																														
		제3종	22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	320%이하	유통업무설비 시설																																																																													
	일반상업지역	-	400%이하	유통업무설비 시설																																																																														
		600%이하	800%이하	개포지구중심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 고																																																																														
자연 녹지지역		40%이하	50%이하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130%이하	150%이하																																																																															
	제2종	180%이하	200%이하																																																																															
	제3종	22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	320%이하	유통업무설비 시설																																																																														
일반상업지역	-	400%이하	유통업무설 비시설																																																																															
	600%이하	800%이하	개포지구중심																																																																															
●일반주거지역내 블록단위 공동건축시 기준/상한용 적율은 180%이하/230%이하임(공공용지부담율 10%이상)				●일반주거지역내 블록단위 공동건축시 기준/상한용 적율은 180%이하/230%이하임(공공용지부담율 10%이상)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 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 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54.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2) 용적률 결정조서(변경)	<table><tr><th>구 분</th><th>기존 용적률 (%)</th><th>허용 용적률 (%)</th><th>상한 용적률 (%)</th></tr><tr><td>제3종 일반주거지역</td><td>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 역</td><td>200%이하</td><td>250%이하</td><td>법적 용적률 2배이하</td></tr><tr><td rowspan="3">준주거지역</td><td>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td><td>250%이하</td><td>350%이하</td><td>400%이하</td></tr><tr><td>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400%이하</td></tr><tr><td>준주거지역</td><td>350%이하</td><td>400%이하</td><td>법적 용적률 2배이하</td></tr><tr><td rowspan="3">일반상업지역</td><td>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td><td>300%이하</td><td>600%이하</td><td>800%이하</td></tr><tr><td>일반상업지역 (간선부)</td><td>600%이하</td><td>800%이하</td><td>법적 용적률 2배이하</td></tr><tr><td>일반상업지역 (이면부)</td><td>400%이하</td><td>800%이하</td><td>법적 용적률 2배이하</td></tr></table>		구 분	기존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 역	200%이하	25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400%이하	준주거지역	350%이하	40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00%이하	600%이하	800%이하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이하	80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400%이하	80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2) 용적률 결정조서(변경)	
	구 분	기존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 역	200%이하	25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400%이하																																			
	준주거지역	350%이하	40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00%이하	600%이하	800%이하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이하	80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400%이하	80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table><tr><th>구 분</th><th>기존 용적률 (%)</th><th>허용 용적률 (%)</th><th>상한 용적률 (%)</th></tr><tr><td>제3종 일반주거지역</td><td>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 역</td><td>200%이하</td><td>250%이하</td><td>법적 용적률 2배이하</td></tr><tr><td rowspan="3">준주거지역</td><td>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td><td>250%이하</td><td>350%이하</td><td>400%이하</td></tr><tr><td>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400%이하</td></tr><tr><td>준주거지역</td><td>350%이하</td><td>400%이하</td><td>법적 용적률 2배이하</td></tr><tr><td rowspan="3">일반상업지역</td><td>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td><td>300%이하</td><td>600%이하</td><td>800%이하</td></tr><tr><td>일반상업지역 (간선부)</td><td>600%이하</td><td>800%이하</td><td>법적 용적률 2배이하</td></tr><tr><td>일반상업지역 (이면부)</td><td>400%이하</td><td>800%이하</td><td>법적 용적률 2배이하</td></tr></table>		구 분	기존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 역	200%이하	25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400%이하	준주거지역	350%이하	40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00%이하	600%이하	800%이하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이하	80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400%이하	80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구 분	기존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 역	200%이하	25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400%이하																																			
	준주거지역	350%이하	40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00%이하	600%이하	800%이하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이하	80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400%이하	800%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	주1) 왕십리역세권3,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이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용적률 산정		주1) 왕십리역세권3,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이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용적률 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주2)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름		주2)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름																																				
2) 용적률 결정조서(변 경)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 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 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 함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 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 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 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 (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 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호 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②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		③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table><tr><th>구 분</th><th>내용</th><th>비고</th></tr><tr><td>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 된 경우</td><td>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적용</td><td>혼재된 경우 가중 평균</td></tr></table>		구 분	내용	비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 된 경우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 평균	<table><tr><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 colspan="2">상한용적률 배분</th></tr><tr><th colspan="2">구 분</th><th>주거건립가능</th><th>비주거건립</th></tr><tr><td rowspan="3"><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td><td colspan="2">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td></tr><tr><td>$x \times \alpha / \beta$</td><td colspan="2">$x \times (\beta - \alpha) / \beta$</td></tr><tr><td>$\alpha$:주거용 용적률, β:허용용적률</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와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td><td colspan="2"></td></tr></table>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times \alpha / \beta$	$x \times (\beta - \alpha) / \beta$		α :주거용 용적률, β :허용용적률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와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										
구 분	내용	비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 된 경우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 평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times \alpha / \beta$	$x \times (\beta - \alpha) / \beta$																																					
	α :주거용 용적률, β :허용용적률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와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																																							
	③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상업지역으로 상행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x7/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x3/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제 적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특별계획구역 포함)

- ①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허용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및
등 조례 [별표3]에 따른
- ②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기준용적률
: 주택 연면적 비율 별 허용용적률 X (용적률
결정조서의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상업지역 중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인
경우>

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 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이하	600%이하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50이상 ~ 60미만	480%이하	650%이하	
40이상 ~ 50미만	520%이하	700%이하	
30이상 ~ 40미만	560%이하	750%이하	
30미만	600%이하	800%이하	

<상업지역 중 기준용적률 400%, 허용용적률 800%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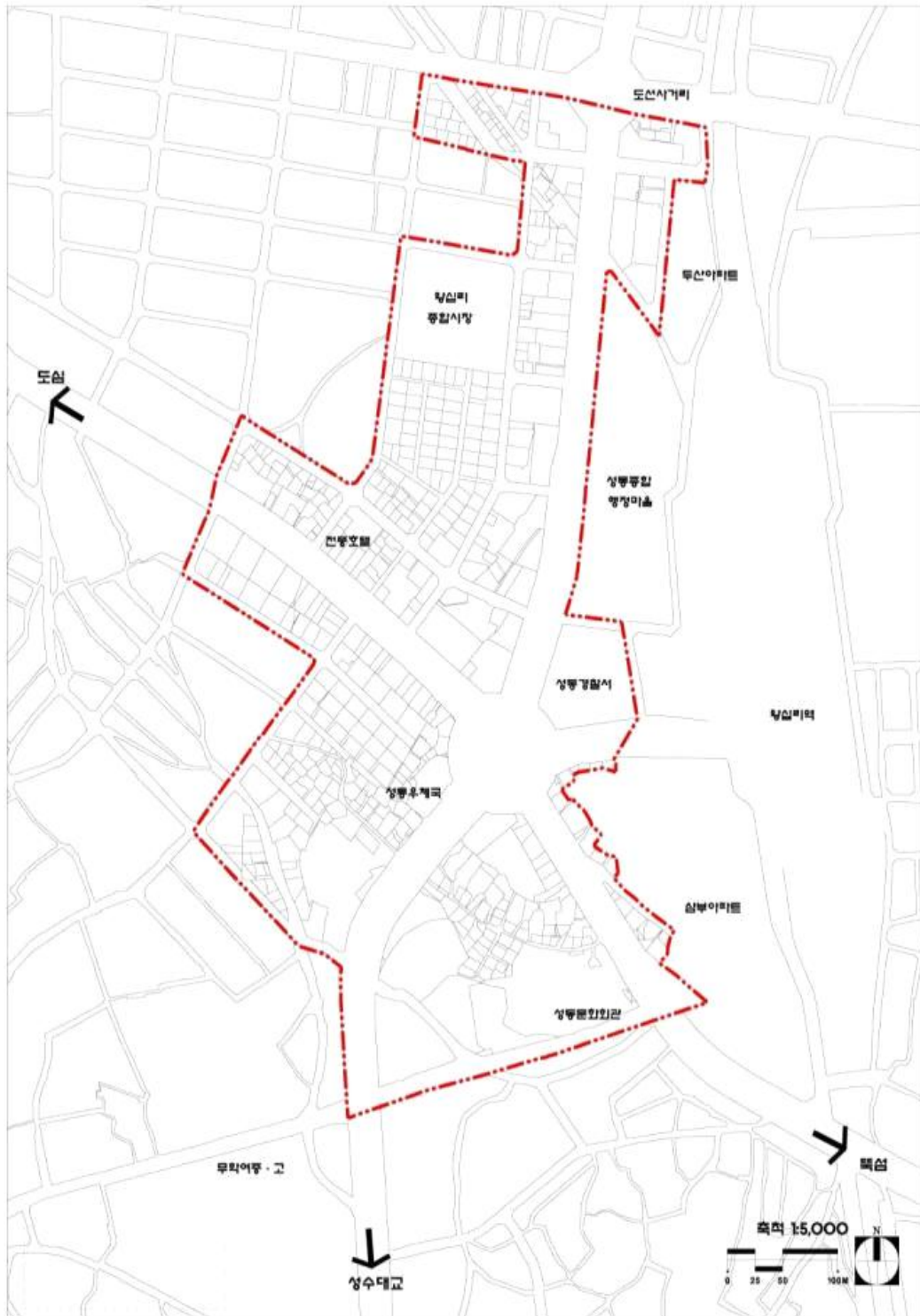
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 용적률
60이상 ~ 70미만	300%이하	600%이하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50이상 ~ 60미만	325%이하	650%이하	
40이상 ~ 50미만	350%이하	700%이하	
30이상 ~ 40미만	375%이하	750%이하	
30미만	400%이하	800%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
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
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
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
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
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
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
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
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
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
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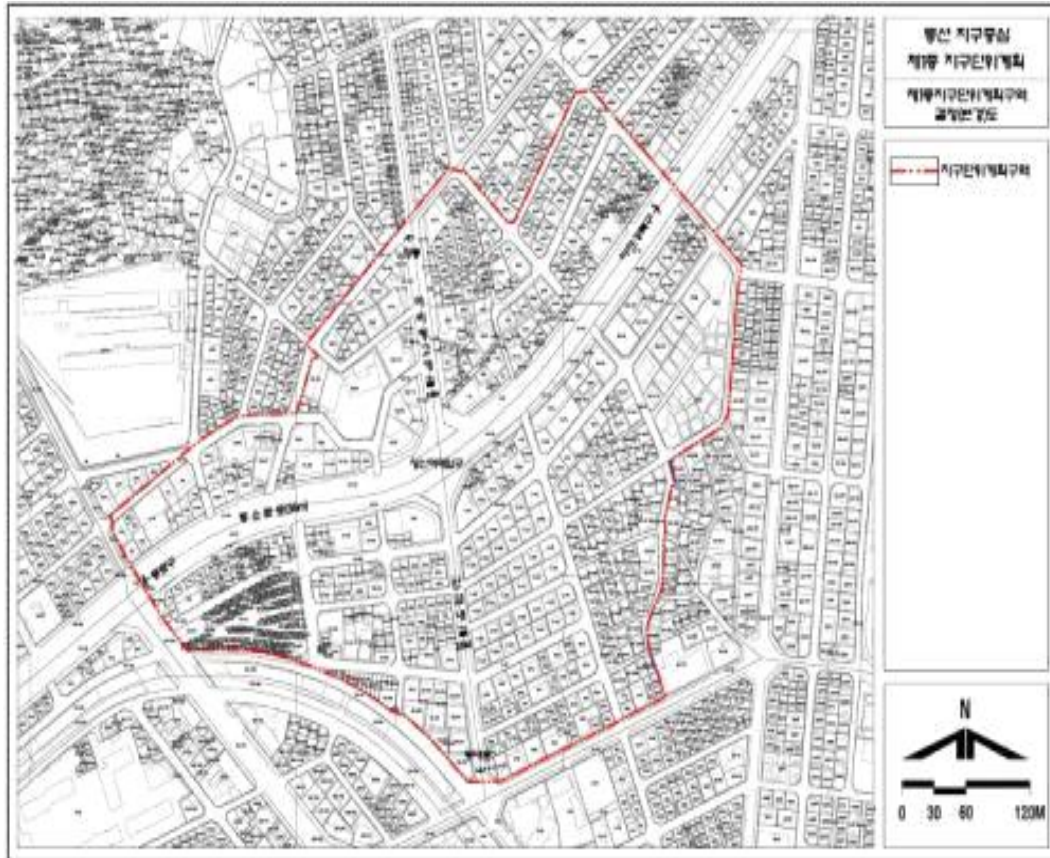
55.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 밀도 및 높이 결정(조서) 2) 용적률 결정조서	☐ 용적률 계획 • 각 필지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용적률 계획 • 각 필지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table border="1"> <thead> <tr> <th>적용구역</th><th>용적률</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제1종전용주거지역</td><td>100% 이하</td><td></td></tr> <tr> <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150% 이하</td><td></td></tr> <tr> <td>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td><td>200% 이하</td><td></td></tr> <tr> <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50% 이하</td><td></td></tr> <tr> <td>일반상업지역</td><td>800% 이하</td><td></td></tr> </tbody> </table>	적용구역	용적률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적용구역</th><th>용적률</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제1종전용주거지역</td><td>100% 이하</td><td></td></tr> <tr> <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150% 이하</td><td></td></tr> <tr> <td>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td><td>200% 이하</td><td></td></tr> <tr> <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50% 이하</td><td></td></tr> <tr> <td>일반상업지역</td><td>800% 이하</td><td></td></tr> </tbody> </table>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적용구역	용적률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적용구역	용적률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적용구역	용적률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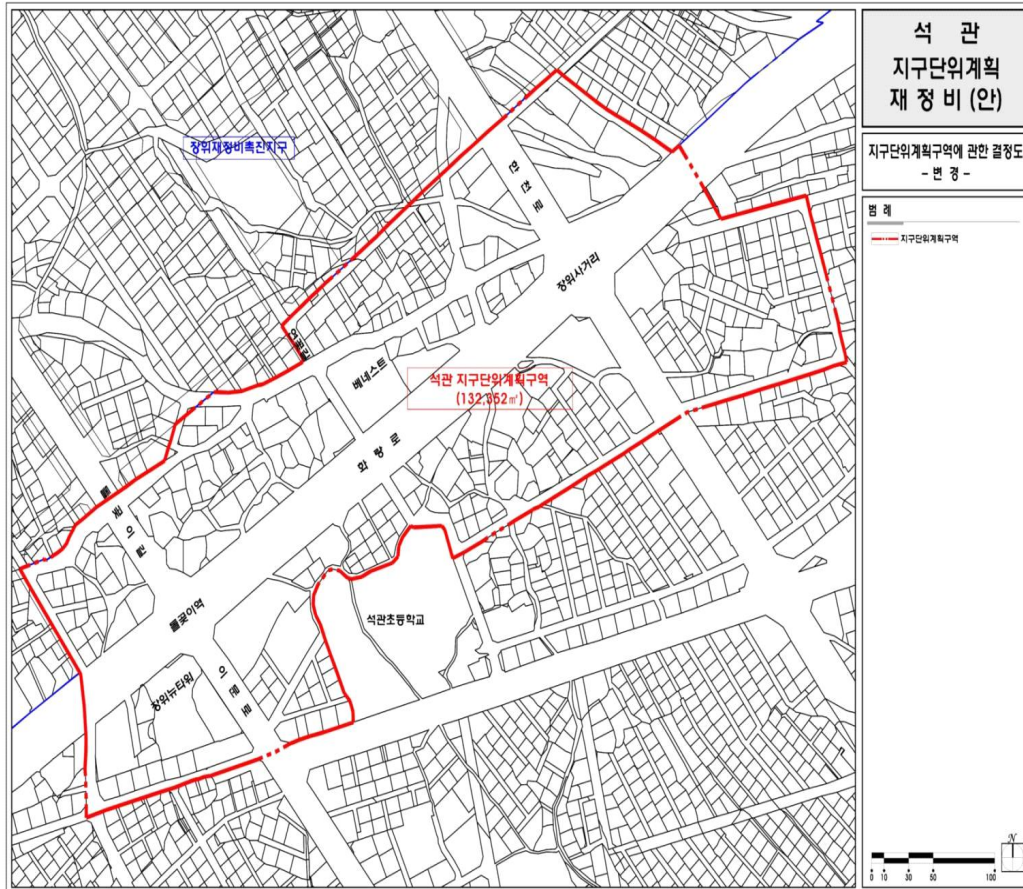
57.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제13조 용적률	②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다음의 용적률기준을 적용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다음의 용적률기준을 적용한다.																																									
	<table><tr><th>구 분</th><th colspan="3">내 용</th><th>비고</th></tr><tr><td>준주거지역</td><td colspan="3">·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td><td>혼재된 경우 가중평균</td></tr><tr><td rowspan="5">근린 상업 지역</td><td colspan="3">·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 면적의 70%이하 적용</td><td rowspan="5">연면적 산정시 주차장 제외</td></tr><tr><td colspan="3">· 주택 + 오피스텔 합산면적 = A</td></tr><tr><th>구 분</th><th>기준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r><tr><td>A:10%이상 ~ 30%미만</td><td>300%</td><td>500%</td><td rowspan="3">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r><tr><td>A:30%이상 ~ 50%미만</td><td>280%</td><td>480%</td></tr><tr><td>A:50%이상 ~ 70%미만</td><td>260%</td><td>460%</td></tr></table>	구 분	내 용			비고	준주거지역	·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근린 상업 지역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 면적의 70%이하 적용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 제외	· 주택 + 오피스텔 합산면적 = A			구 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A:10%이상 ~ 30%미만	300%	5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A:30%이상 ~ 50%미만	280%	480%	A:50%이상 ~ 70%미만	260%	460%	<table><tr><th>구 분</th><th colspan="3">내 용</th><th>비고</th></tr><tr><td>준주거지역</td><td colspan="3">·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td><td>혼재된 경우 가중평균</td></tr></table>	구 분	내 용			비고	준주거지역	·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		
구 분	내 용			비고																																							
준주거지역	·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근린 상업 지역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 면적의 70%이하 적용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 제외																																							
	· 주택 + 오피스텔 합산면적 = A																																										
	구 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A:10%이상 ~ 30%미만	300%	5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A:30%이상 ~ 50%미만	280%	480%																																								
A:50%이상 ~ 70%미만	260%	460%																																									
구 분	내 용			비고																																							
준주거지역	·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조서	2) 용적률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적용구역</th><th colspan="3">변 경</th><th rowspan="2">비고</th></tr> <tr> <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 </thead> <tbody> <tr> <td>준주거지역</td><td>300%이하</td><td>360%이하</td><td>법적용적률 2배이하</td><td></td></tr> <tr> <td>근린상업지역</td><td>300%이하</td><td>500%이하</td><td>법적용적률 2배이하</td><td></td></tr> </tbody> </table> 주1)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 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의 20%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적용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 colspan="3">내 용</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준주거지역</td><td colspan="3">·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td><td>혼재된 경우 가중평균</td></tr> <tr> <td rowspan="4">근린 상업 지역</td><td colspan="3">·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이하 적용</td><td rowspan="6">연면적 산정시 주차장 제외</td></tr> <tr> <td colspan="4">· 주택 + 오피스텔 합산면적 = A</td></tr> <tr> <td>구 분</td><td>기준 용적률</td><td>허용 용적률</td></tr> <tr> <td>A:10%이상 ~ 30%미만</td><td>300%</td><td>500%</td></tr> <tr> <td rowspan="2"></td><td>A:30%이상 ~ 50%미만</td><td>280%</td><td>480%</td></tr> <tr> <td>A:50%이상 ~ 70%미만</td><td>260%</td><td>460%</td></tr> </tbody> </table>	적용구역	변 경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준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근린상업지역	300%이하	50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구 분	내 용			비고	준주거지역	·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근린 상업 지역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이하 적용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 제외	· 주택 + 오피스텔 합산면적 = A				구 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A:10%이상 ~ 30%미만	300%	500%		A:30%이상 ~ 50%미만	280%	480%	A:50%이상 ~ 70%미만	260%	460%
적용구역	변 경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준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근린상업지역	300%이하	50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구 분	내 용			비고																																															
준주거지역	·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근린 상업 지역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이하 적용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 제외																																															
	· 주택 + 오피스텔 합산면적 = A																																																		
	구 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A:10%이상 ~ 30%미만	300%	500%																																																
	A:30%이상 ~ 50%미만	280%	480%																																																
	A:50%이상 ~ 70%미만	260%	460%																																																

 2) 용적률 | 적용구역 | 변 경 | | | 비고 | |--------|--------|--------|------------|----|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 준주거지역 | 300%이하 | 360%이하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 | 근린상업지역 | 300%이하 | 500%이하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 주1)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 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의 20%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적용 기준 | 구 분 | 내 용 | | | 비고 | |-------|--------------------------------|--|--|-------------| | 준주거지역 | ·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 | | |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58(2). 올림픽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2) 용적률계획

구 분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준주거지역	250% 이하	35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제2종(7층,12층)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²⁾	25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²⁾	250% 이하	350% 이하	400% 이하

주1)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또는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 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주2) 용도지역 상향가능지의 용도지역 변경시 적용

■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기준

주택연면적비율(%)	허용용적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60이상 ~ 70미만	600% 이하
50이상 ~ 60미만	650% 이하
40이상 ~ 50미만	700% 이하
30이상 ~ 40미만	750% 이하
20이상 ~ 30미만	800% 이하
20미만	800% 이하

*관련 법령 및 조례 변경시 변경내용에 따름

2) 용적률계획

구 분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준주거지역	250% 이하	35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제2종(7층,12층)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²⁾	25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²⁾	250% 이하	350% 이하	400% 이하

주1)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또는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 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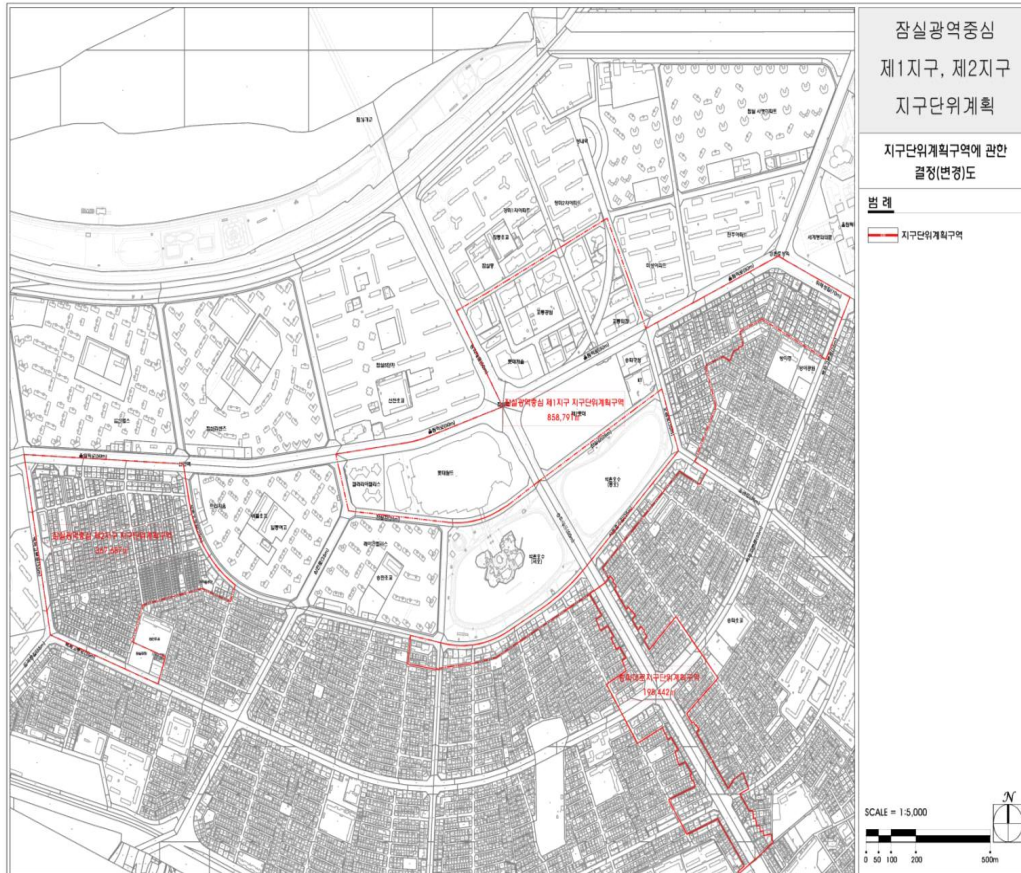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주2) 용도지역 상향가능지의 용도지역 변경시 적용

■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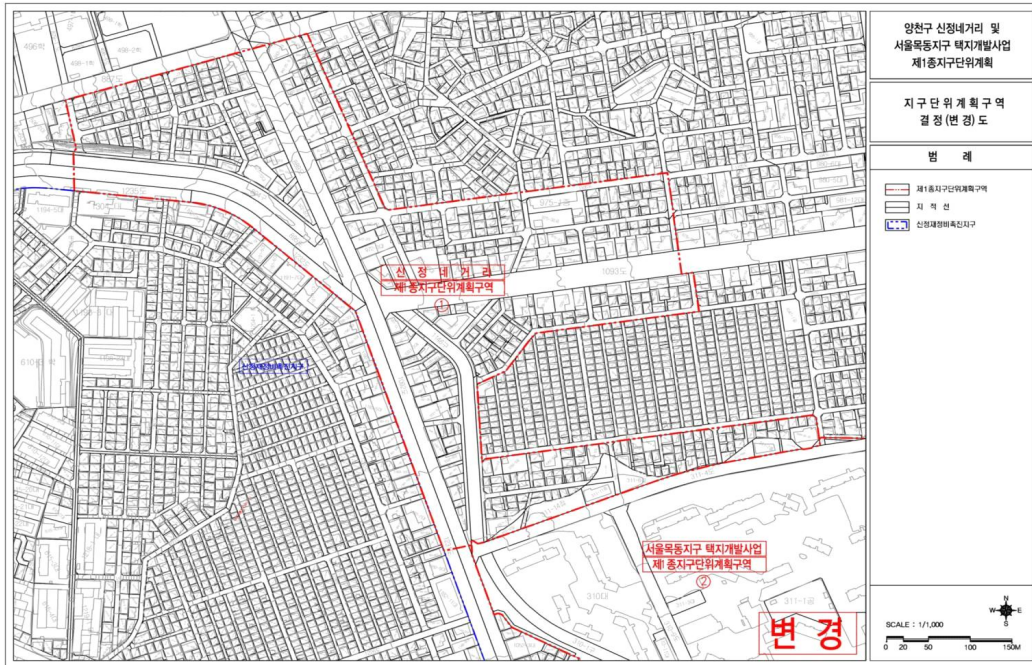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총량 배분비율(20%)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유도형 및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준수를 통해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 대체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 규제형 용적률 인센티브의 합이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용적률 인센티브가 산출된 경우에도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건축물의 용도 중 전층권장의 경우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 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일정비율(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비율)이상일 경우에 부여(※전층권장용도 산정 방식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제2절 제9호 2항 참조) - 근린상업지역 : 30% 이상 - 준주거 및 일반주거지역 : 20% 이상 • 공동개발(지정 또는 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며, 최대개발 규모내에서 토지소유자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시(이면부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 제외)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추가로 부여하지 아니함 • 본 지침 제14조에 의거 전면공지가 발생한 필지는 본 지침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됨(단, 미관지구 내 전면공지 및 건축법 등 타법령에 의한 대지내 공지는 제외함) •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특정위치에 둘 이상의 완화요소가 해당(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 하나의 용적률 완화만 적용 •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근린상업지역 내 우수디자인은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적용토록 함	일반계획요소)의 합은 80%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총량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계획요소 내 세부항목간 복수 적용은 가능하며, 당해 인센티브 총량 배분비율(20%)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유도형 및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준수를 통해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 대체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 규제형 용적률 인센티브의 합이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용적률 인센티브가 산출된 경우에도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건축물의 용도 중 전층권장의 경우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 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일정비율(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비율)이상일 경우에 부여(※전층권장용도 산정 방식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제2절 제9호 2항 참조) - 근린상업지역 : 30% 이상 - 준주거 및 일반주거지역 : 20%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공동개발(지정 또는 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며, 최대개발 규모내에서 토지소유자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시(이면부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 제외)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추가로 부여하지 아니함 • 본 지침 제14조에 의거 전면공지가 발생한 필지는 본 지침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됨(단, 미관지구 내 전면공지 및 건축법 등 타법령에 의한 대지내 공지는 제외함) •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특정위치에 둘 이상의 완화요소가 해당(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 하나의 용적률 완화만 적용 •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근린상업지역 내 우수디자인은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적용토록 함
--	--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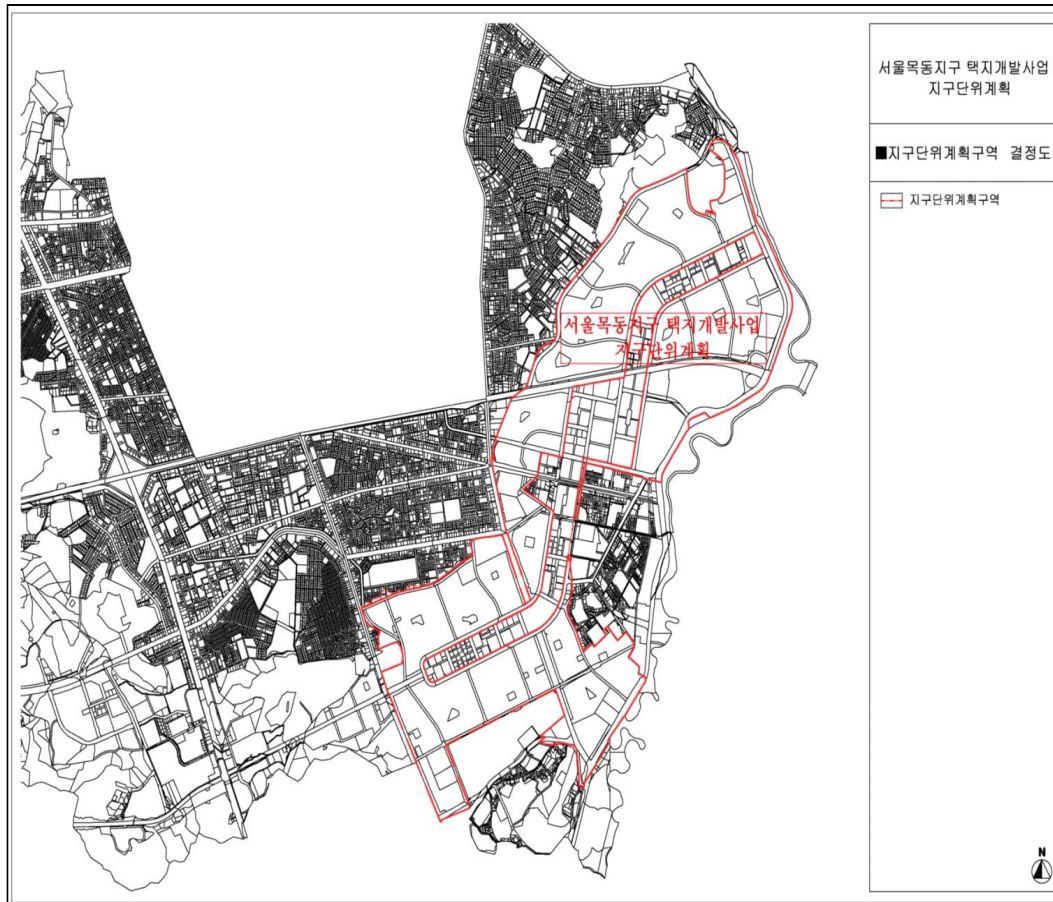


60.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5. 상세계획 결정(변경) 조서 마. 시설계획 1) 상업용지에 관한 계획	1) 상업용지에 관한 계획			1) 상업용지에 관한 계획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면 적 (㎡)</th><th>비 고</th></tr><tr><td rowspan="2">상업 용지</td><td>기정</td><td>255,220.5㎡</td><td rowspan="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주3)</td></tr><tr><td>변경</td><td>253,327.5㎡</td></tr></table>		구 분		면 적 (㎡)	비 고	상업 용지	기정	255,220.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주3)	변경	253,327.5㎡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면 적 (㎡)</th><th>비 고</th></tr><tr><td rowspan="2">상업 용지</td><td>기정</td><td>255,220.5㎡</td><td rowspan="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주3)</td></tr><tr><td>변경</td><td>253,327.5㎡</td></tr></table>		구 분		면 적 (㎡)	비 고	상업 용지	기정	255,220.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주3)	변경	253,327.5㎡
	구 분		면 적 (㎡)	비 고																				
상업 용지	기정	255,220.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주3)																					
	변경	253,327.5㎡																						
구 분		면 적 (㎡)	비 고																					
상업 용지	기정	255,220.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주3)																					
	변경	253,327.5㎡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를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61.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변경사항 없음)																																																																																																						
	결정조서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3) 건축물의 밀도	나) 용적률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면 적 (㎡)</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기정</td><td>500%이하</td><td>800%이하</td><td>-</td><td></td></tr><tr><td>변경</td><td>500%이하</td><td>800%이하</td><td>허용용적률×(1+1.3×가중치×α)</td><td></td></tr></table> ※ 1) 특별계획구역(BL13) - 기결정 :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633% 2)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 공부지 용적률 비율,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용적률 결정조서(변경) • 용적률 결정조서의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피 스텔과 그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때에 는 다음의 용적률을 적용함 <table><tr><th rowspan="2">위 치</th><th colspan="10">계획내용</th><th rowspan="2">비고</th></tr><tr><th>오피스텔 연면적 비율(%) 주 1)</th><th>80 이상</th><th>70 이상</th><th>60 이상</th><th>50 이상</th><th>40 이상</th><th>30 이상</th><th>20 이상</th><th>20 미만</th><th>20 미만</th></tr><tr><td>목동 중심 지구 지구 단위 계획</td><td>용적률 (%)</td><td>500 이하</td><td>550 이하</td><td>600 이하</td><td>650 이하</td><td>700 이하</td><td>750 이하</td><td>800 이하</td><td>800 이하</td><td>서고사 제2003- 25호</td></tr></table> ※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 본 지구단위계획의 밀 도계획(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용적제)에 적합하 여야 함 ※ 용도변경 등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에 의한 용적률 운용 방식을 준용함 주1) 공동주택 용도를 도입할 경우 “오피스텔 비율 (%)”을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합계 연면적 비 율”로 봄	구 분	면 적 (㎡)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500%이하	800%이하	-		변경	500%이하	800%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 주 1)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20 미만	목동 중심 지구 지구 단위 계획	용적률 (%)	500 이하	550 이하	600 이하	650 이하	700 이하	75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서고사 제2003- 25호	나) 용적률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면 적 (㎡)</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기정</td><td>500%이하</td><td>800%이하</td><td>-</td><td></td></tr><tr><td>변경</td><td>500%이하</td><td>800%이하</td><td>허용용적률×(1+1.3 ×가중치×α)</td><td></td></tr></table> ※ 1) 특별계획구역(BL13) - 기결정 :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633% 2)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 공부지 용적률 비율,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용적률 결정조서(변경) • 용적률 결정조서의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피 스텔과 그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때에 는 다음의 용적률을 적용함 <table><tr><th rowspan="2">위 치</th><th colspan="10">계획내용</th><th rowspan="2">비고</th></tr><tr><th>오피스텔 연면적 비율(%) 주 1)</th><th>80 이상</th><th>70 이상</th><th>60 이상</th><th>50 이상</th><th>40 이상</th><th>30 이상</th><th>20 이상</th><th>20 미만</th><th>20 미만</th></tr><tr><td>목동 중심 지구 지구 단위 계획</td><td>용적률 (%)</td><td>500 이하</td><td>550 이하</td><td>600 이하</td><td>650 이하</td><td>700 이하</td><td>750 이하</td><td>800 이하</td><td>800 이하</td><td>서고사 제2003- 25호</td></tr></table> ※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 본 지구단위계획의 밀 도계획(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용적제)에 적합하 여야 함 ※ 용도변경 등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에 의한 용적률 운용 방식을 준용함 주1) 공동주택 용도를 도입할 경우 “오피스텔 비율 (%)”을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합계 연면적 비 율”로 봄	구 분	면 적 (㎡)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500%이하	800%이하	-		변경	500%이하	800%이하	허용용적률×(1+1.3 ×가중치×α)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 주 1)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20 미만	목동 중심 지구 지구 단위 계획	용적률 (%)	500 이하	550 이하	600 이하	650 이하	700 이하	75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서고사 제2003- 25호
	구 분		면 적 (㎡)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500%이하	800%이하	-																																																																																																					
변경	500%이하	800%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 주 1)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20 미만																																																																																														
목동 중심 지구 지구 단위 계획	용적률 (%)	500 이하	550 이하	600 이하	650 이하	700 이하	75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서고사 제2003- 25호																																																																																														
구 분	면 적 (㎡)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500%이하	800%이하	-																																																																																																					
변경	500%이하	800%이하	허용용적률×(1+1.3 ×가중치×α)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 주 1)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20 미만																																																																																														
목동 중심 지구 지구 단위 계획	용적률 (%)	500 이하	550 이하	600 이하	650 이하	700 이하	75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서고사 제2003- 25호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4) 용적률 인센티브	■ 용적률 인센티브 결정조서 •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센티브가 전체 인센티브의 100분의 30 이상, 계 획유도 인센티브가 전체 인센티브의 70% 이내이어 야 함 □친환경 인센티브 - 전 구역 공통	■ 용적률 인센티브 결정조서 •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센티브가 전체 인센티브의 100분의 30 이상, 계 획유도 인센티브가 전체 인센티브의 70% 이내이어 야 함 □친환경 인센티브 - 전 구역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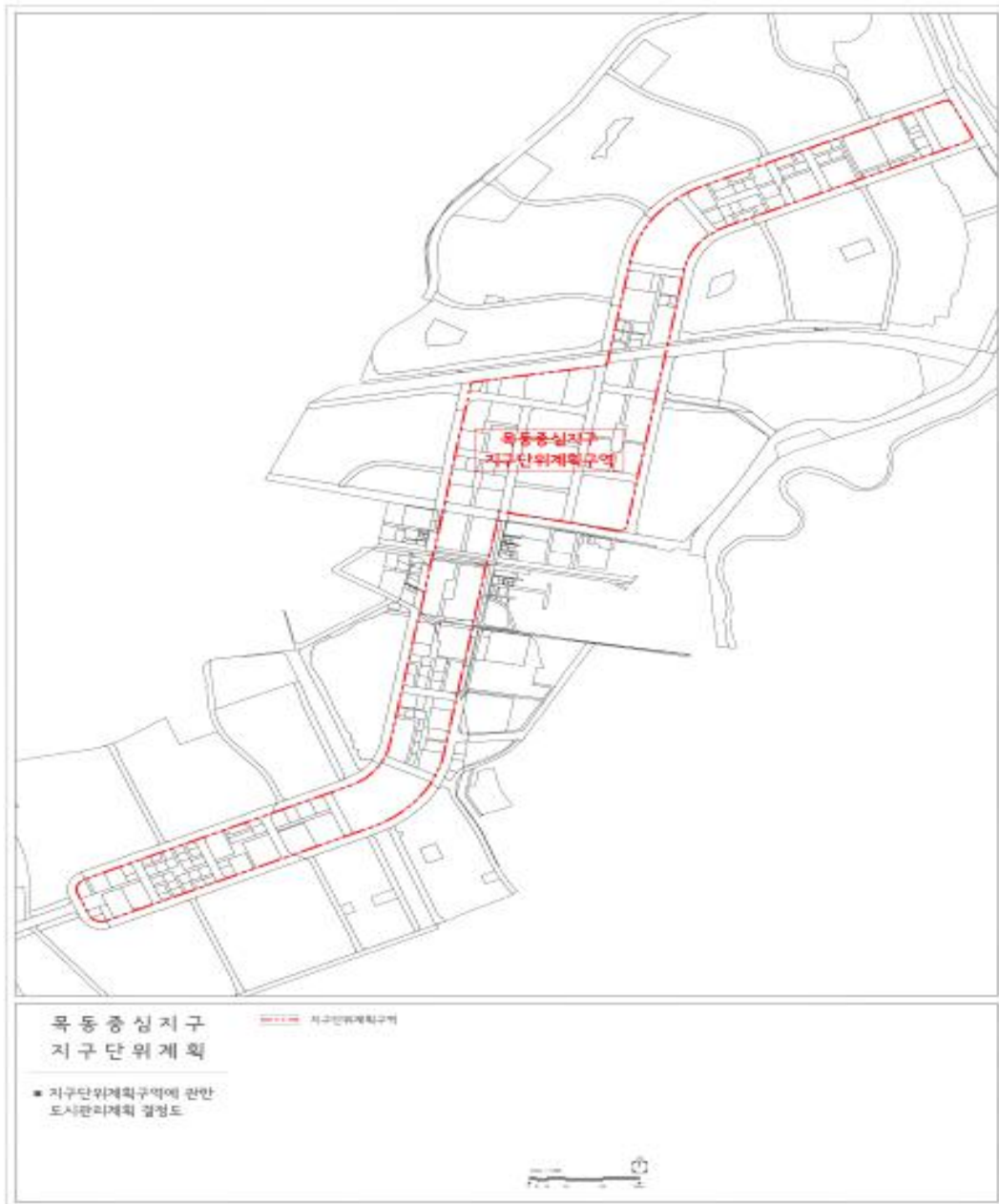
- 172 -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 준수 ※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계획유도 인센티브 - B구역(상업·주거지원구역, 행정·업무구역)																																									
	<table><tr><th>구분</th><th>항목 및 내용</th><th>변화기준</th><th>계수설정</th></tr><tr><td rowspan="3">대지내 공지</td><td>공개공지</td><td>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td><td>필로티구조 : α=1.5 개방형구조 : α=2.0</td></tr><tr><td>전면공지 (건축선)</td><td>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1</td><td>-</td></tr><tr><td>공공보행통로</td><td>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td><td>필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td></tr><tr><td rowspan="3">건축물 용도</td><td>지정용도</td><td>(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기준용적률 × α</td><td>-</td></tr><tr><td>관장용도</td><td>(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기준용적률 × α</td><td>-</td></tr><tr><td>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td><td>기준용적률 × 주1) 특정층(특대기둥) 개방</td><td>1층부 전면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td></tr><tr><td rowspan="5">도시경관개선</td><td>건축물 형태</td><td>두시형 벽면 : 기준용적률 × 0.03 두시형 서터 : 기준용적률 × 0.02 아케이드 : 기준용적률 × 0.05</td><td>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 두시형 벽면 처리시 1층부 두시형 서터 사용시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시 (주2, 주3) 시공전</td></tr><tr><td>아간경관조형</td><td>기준용적률 × 0.05</td><td>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td></tr><tr><td>보행개선</td><td>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연결시 설치시</td><td>기준용적률 × 0.1 준수 시</td></tr><tr><td>주차계획</td><td>기준용적률 × 0.05</td><td>준수 시</td></tr><tr><td>건축물 개방</td><td>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td><td>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면적) × 0.5 준수 시</td></tr></table> 주1) 가로활성화용도 :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분	항목 및 내용	변화기준	계수설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필로티구조 : α=1.5 개방형구조 : α=2.0	전면공지 (건축선)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1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필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기준용적률 × α	-	관장용도	(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기준용적률 × α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기준용적률 × 주1) 특정층(특대기둥) 개방	1층부 전면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	도시경관개선	건축물 형태	두시형 벽면 : 기준용적률 × 0.03 두시형 서터 : 기준용적률 × 0.02 아케이드 : 기준용적률 × 0.05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 두시형 벽면 처리시 1층부 두시형 서터 사용시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시 (주2, 주3) 시공전	아간경관조형	기준용적률 × 0.05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행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연결시 설치시	기준용적률 × 0.1 준수 시	주차계획	기준용적률 × 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면적) × 0.5 준수 시	
구분	항목 및 내용	변화기준	계수설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필로티구조 : α=1.5 개방형구조 : α=2.0																																							
	전면공지 (건축선)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1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필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기준용적률 × α	-																																							
	관장용도	(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기준용적률 × α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기준용적률 × 주1) 특정층(특대기둥) 개방	1층부 전면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																																							
도시경관개선	건축물 형태	두시형 벽면 : 기준용적률 × 0.03 두시형 서터 : 기준용적률 × 0.02 아케이드 : 기준용적률 × 0.05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 두시형 벽면 처리시 1층부 두시형 서터 사용시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시 (주2, 주3) 시공전																																							
	아간경관조형	기준용적률 × 0.05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행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연결시 설치시	기준용적률 × 0.1 준수 시																																							
	주차계획	기준용적률 × 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면적) × 0.5 준수 시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 준수 ※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계획유도 인센티브 - B구역(상업·주거지원구역, 행정·업무구역)																																									
	<table><tr><th>구분</th><th>항목 및 내용</th><th>변화기준</th><th>계수설정</th></tr><tr><td rowspan="3">대지내 공지</td><td>공개공지</td><td>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td><td>필로티구조 : α=1.5 개방형구조 : α=2.0</td></tr><tr><td>전면공지 (건축선)</td><td>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1</td><td>-</td></tr><tr><td>공공보행통로</td><td>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td><td>필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td></tr><tr><td rowspan="3">건축물 용도</td><td>지정용도</td><td>(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기준용적률 × α</td><td>-</td></tr><tr><td>관장용도</td><td>(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기준용적률 × α</td><td>-</td></tr><tr><td>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td><td>기준용적률 × 주1) 특정층(특대기둥) 개방</td><td>1층부 전면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td></tr><tr><td rowspan="5">도시경관개선</td><td>건축물 형태</td><td>두시형 벽면 : 기준용적률 × 0.03 두시형 서터 : 기준용적률 × 0.02 아케이드 : 기준용적률 × 0.05</td><td>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 두시형 벽면 처리시 1층부 두시형 서터 사용시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시 (주2, 주3) 시공전</td></tr><tr><td>아간경관조형</td><td>기준용적률 × 0.05</td><td>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td></tr><tr><td>보행개선</td><td>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연결시 설치시</td><td>기준용적률 × 0.1 준수 시</td></tr><tr><td>주차계획</td><td>기준용적률 × 0.05</td><td>준수 시</td></tr><tr><td>건축물 개방</td><td>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td><td>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면적) × 0.5 준수 시</td></tr></table> 주1) 가로활성화용도 :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분	항목 및 내용	변화기준	계수설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필로티구조 : α=1.5 개방형구조 : α=2.0	전면공지 (건축선)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1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필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기준용적률 × α	-	관장용도	(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기준용적률 × α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기준용적률 × 주1) 특정층(특대기둥) 개방	1층부 전면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	도시경관개선	건축물 형태	두시형 벽면 : 기준용적률 × 0.03 두시형 서터 : 기준용적률 × 0.02 아케이드 : 기준용적률 × 0.05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 두시형 벽면 처리시 1층부 두시형 서터 사용시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시 (주2, 주3) 시공전	아간경관조형	기준용적률 × 0.05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행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연결시 설치시	기준용적률 × 0.1 준수 시	주차계획	기준용적률 × 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면적) × 0.5 준수 시	
구분	항목 및 내용	변화기준	계수설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필로티구조 : α=1.5 개방형구조 : α=2.0																																							
	전면공지 (건축선)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1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필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기준용적률 × α	-																																							
	관장용도	(조성면적-기준면적)/면적 × 기준용적률 × α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기준용적률 × 주1) 특정층(특대기둥) 개방	1층부 전면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																																							
도시경관개선	건축물 형태	두시형 벽면 : 기준용적률 × 0.03 두시형 서터 : 기준용적률 × 0.02 아케이드 : 기준용적률 × 0.05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 두시형 벽면 처리시 1층부 두시형 서터 사용시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시 (주2, 주3) 시공전																																							
	아간경관조형	기준용적률 × 0.05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행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연결시 설치시	기준용적률 × 0.1 준수 시																																							
	주차계획	기준용적률 × 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면적) × 0.5 준수 시																																							

	1층 혹은 지상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본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상업시설 집적화를 위하여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 준수 ※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1층 혹은 지상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본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상업시설 집적화를 위하여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 준수 ※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계획유도 인센티브 - C구역(중심상업구역) <table><tr><th>구분</th><th>항목 및 내용</th><th>원형기준</th><th>계수설정</th></tr><tr><td rowspan="11">변경</td><td rowspan="3">대지내 공지</td><td>공개공지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td><td>$\times 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td></tr><tr><td>전면공지 (건축선)</td><td>$\times 2$ -</td></tr><tr><td>공공보행통로</td><td>$\times 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td></tr><tr><td rowspan="4">건축물 용도</td><td>지정용도</td><td>$\times 0.5$ -</td></tr><tr><td>권장용도</td><td>$\times 0.5$ -</td></tr><tr><td>자충부 가로활성화용도 주1)</td><td>$\times 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td></tr><tr><td>특정층(특대기층) 개방</td><td>$\times 0.5$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td></tr><tr><td rowspan="4">도시경관개선</td><td>건축물 벽면</td><td>$\times 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시</td></tr><tr><td>투시형 세트</td><td>$\times 0.02$ 1층부 투시형 세트 사용시</td></tr><tr><td>아케이드</td><td>$\times 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시 (주2), 주3)</td></tr><tr><td>아간경관조명</td><td>$\times 0.05$ 시공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td></tr><tr><td rowspan="4">보통개선</td><td>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설치시</td><td>기존용적률</td><td>$\times 0.1$ 준수 시</td></tr><tr><td>주차계획</td><td>공동주차 출입구</td><td>$\times 0.05$ 준수 시</td></tr><tr><td rowspan="2">건축물 개방</td><td>전통 내 경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구문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td><td>$\times 0.5$ 기존용적률 $\times$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면적)</td><td>준수 시</td></tr></table>	구분	항목 및 내용	원형기준	계수설정	변경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	전면공지 (건축선)	$\times 2$ -	공공보행통로	$\times 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times 0.5$ -	권장용도	$\times 0.5$ -	자충부 가로활성화용도 주1)	$\times 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특정층(특대기층) 개방	$\times 0.5$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	도시경관개선	건축물 벽면	$\times 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시	투시형 세트	$\times 0.02$ 1층부 투시형 세트 사용시	아케이드	$\times 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시 (주2), 주3)	아간경관조명	$\times 0.05$ 시공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통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설치시	기존용적률	$\times 0.1$ 준수 시	주차계획	공동주차 출입구	$\times 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전통 내 경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구문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times 0.5$ 기존용적률 $\times$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면적)	준수 시	□계획유도 인센티브 - C구역(중심상업구역) <table><tr><th>구분</th><th>항목 및 내용</th><th>원형기준</th><th>계수설정</th></tr><tr><td rowspan="11">변경</td><td rowspan="3">대지내 공지</td><td>공개공지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td><td>$\times 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td></tr><tr><td>전면공지 (건축선)</td><td>$\times 2$ -</td></tr><tr><td>공공보행통로</td><td>$\times 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td></tr><tr><td rowspan="4">건축물 용도</td><td>지정용도</td><td>$\times 0.5$ -</td></tr><tr><td>권장용도</td><td>$\times 0.5$ -</td></tr><tr><td>자충부 가로활성화용도 주1)</td><td>$\times 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td></tr><tr><td>특정층(특대기층) 개방</td><td>$\times 0.5$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td></tr><tr><td rowspan="4">도시경관개선</td><td>건축물 벽면</td><td>$\times 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시</td></tr><tr><td>투시형 세트</td><td>$\times 0.02$ 1층부 투시형 세트 사용시</td></tr><tr><td>아케이드</td><td>$\times 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시 (주2), 주3)</td></tr><tr><td>아간경관조명</td><td>$\times 0.05$ 시공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td></tr><tr><td rowspan="4">보통개선</td><td>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설치시</td><td>기존용적률</td><td>$\times 0.1$ 준수 시</td></tr><tr><td>주차계획</td><td>공동주차 출입구</td><td>$\times 0.05$ 준수 시</td></tr><tr><td rowspan="2">건축물 개방</td><td>전통 내 경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구문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td><td>$\times 0.5$ 기존용적률 $\times$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면적)</td><td>준수 시</td></tr></table>	구분	항목 및 내용	원형기준	계수설정	변경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	전면공지 (건축선)	$\times 2$ -	공공보행통로	$\times 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times 0.5$ -	권장용도	$\times 0.5$ -	자충부 가로활성화용도 주1)	$\times 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특정층(특대기층) 개방	$\times 0.5$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	도시경관개선	건축물 벽면	$\times 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시	투시형 세트	$\times 0.02$ 1층부 투시형 세트 사용시	아케이드	$\times 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시 (주2), 주3)	아간경관조명	$\times 0.05$ 시공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통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설치시	기존용적률	$\times 0.1$ 준수 시	주차계획	공동주차 출입구	$\times 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전통 내 경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구문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times 0.5$ 기존용적률 $\times$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면적)	준수 시
구분	항목 및 내용	원형기준	계수설정																																																																																	
변경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																																																																																	
		전면공지 (건축선)	$\times 2$ -																																																																																	
		공공보행통로	$\times 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times 0.5$ -																																																																																	
		권장용도	$\times 0.5$ -																																																																																	
		자충부 가로활성화용도 주1)	$\times 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특정층(특대기층) 개방	$\times 0.5$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																																																																																	
	도시경관개선	건축물 벽면	$\times 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시																																																																																	
		투시형 세트	$\times 0.02$ 1층부 투시형 세트 사용시																																																																																	
		아케이드	$\times 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시 (주2), 주3)																																																																																	
		아간경관조명	$\times 0.05$ 시공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통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설치시	기존용적률	$\times 0.1$ 준수 시																																																																																	
	주차계획	공동주차 출입구	$\times 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전통 내 경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구문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times 0.5$ 기존용적률 $\times$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면적)	준수 시																																																																																
		구분	항목 및 내용	원형기준	계수설정																																																																															
변경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																																																																																	
		전면공지 (건축선)	$\times 2$ -																																																																																	
		공공보행통로	$\times 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times 0.5$ -																																																																																	
		권장용도	$\times 0.5$ -																																																																																	
		자충부 가로활성화용도 주1)	$\times 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특정층(특대기층) 개방	$\times 0.5$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																																																																																	
	도시경관개선	건축물 벽면	$\times 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시																																																																																	
		투시형 세트	$\times 0.02$ 1층부 투시형 세트 사용시																																																																																	
		아케이드	$\times 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시 (주2), 주3)																																																																																	
		아간경관조명	$\times 0.05$ 시공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통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설치시	기존용적률	$\times 0.1$ 준수 시																																																																																	
	주차계획	공동주차 출입구	$\times 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전통 내 경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구문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times 0.5$ 기존용적률 $\times$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면적)	준수 시																																																																																
			주1) 가로활성화용도 :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층 혹은 지상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주1) 가로활성화용도 :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층 혹은 지상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본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상업시설 집적화를 위하여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 준수 ※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것으로, 본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상업시설 집적화를 위하여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 준수 ※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62. 대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 용적률 계획

용도 지역	대지 규모	1,000㎡ 이하		1,000㎡ 이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상업	300%	550%	300%
준 주 거	250%	360%	300%	360%	

※ 단,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은 2003년 6월 30일까지는 500%범위 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 용적률 계획

용도 지역	대지 규모	1,000㎡ 이하		1,000㎡ 이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상업	300%	550%	300%
준 주 거	250%	360%	300%	360%	

※ 단,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은 2003년 6월 30일까지는 500%범위 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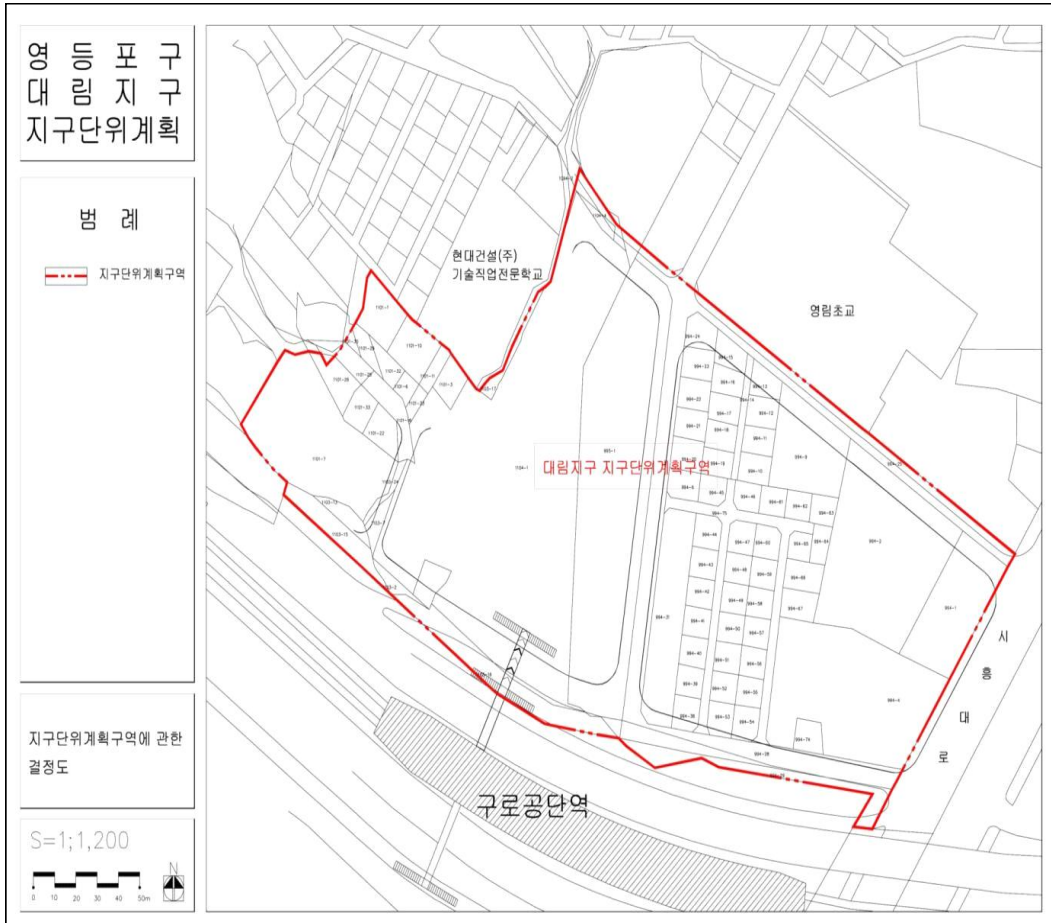
- 일반상업지역 중 1,000㎡이하 대지의 경우 [별표 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7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 중 1,000㎡이상 대지의 경우 [별표 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장.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④ 건축물에 관한
계획
2. 밀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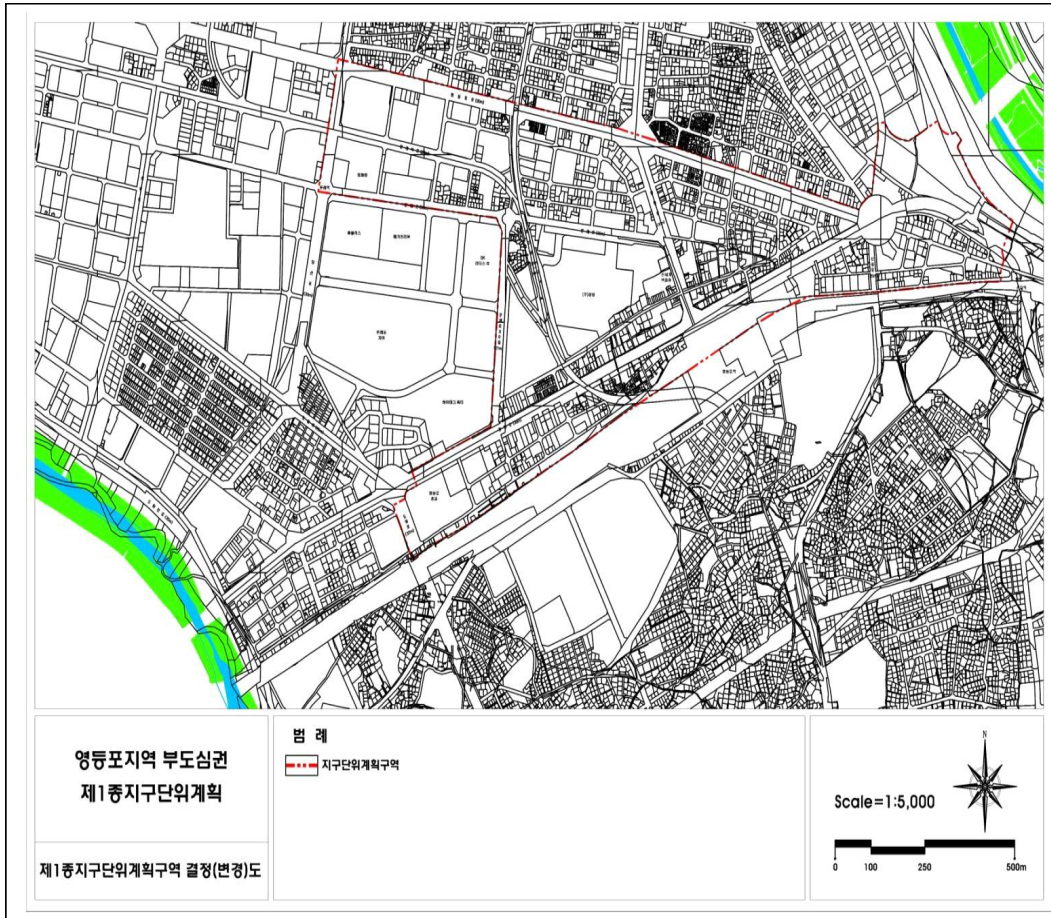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63.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다.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2) 용적을 결정(변경)조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지구단위계획 내용</th></tr> <tr> <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적용대상</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준주거 지역</td><td>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td><td>300% 이하</td><td>360% 이하</td><td>신길역 주변</td></tr> <tr> <td>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td><td>250% 이하</td><td>400% 이하</td><td>영등포동4가, 문래동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III 구역)</td></tr> <tr> <td rowspan="4">일반 상업 지역</td><td>종전 일반상업지역</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d>간선가로변</td></tr> <tr> <td>종전 일반상업지역</td><td>400% 이하</td><td>600% 이하</td><td>영등포동1가, 3가 이면부</td></tr> <tr> <td rowspan="3">준주거,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td><td>300% 이하</td><td>400% 이하</td><td>특별계획구역(I -1, IV-2, V, VII 구역)</td></tr> <tr> <td>400% 이하</td><td>660% 이하</td><td>특별계획구역(I -2구역)</td></tr> <tr> <td colspan="2">준공업지역</td><td>300% 이하</td><td>400% 이하</td><td>당산로1가, 문래동1,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I -1, II, IV)</td></tr> </tbody> </table> 주)1.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등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기준을 적용. 주)2. 종전 일반상업지역이 포함되는 획지 등 동일 용도지역 내의 획지가 기존 허용용적률 적용이 2개 이상일 경우 용적률 산정은 면적별 가중평균함 주)3. 일반상업지역에 주거를 도입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내용에 따라 용도용적제를 적용 주)4. 도시계획조례 제55조 4항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고시원(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임대산업시설(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00퍼센트로 한다.			구 분	지구단위계획 내용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적용대상	준주거 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신길역 주변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250% 이하	400% 이하	영등포동4가, 문래동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III 구역)	일반 상업 지역	종전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간선가로변	종전 일반상업지역	400% 이하	600% 이하	영등포동1가, 3가 이면부	준주거,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400% 이하	특별계획구역(I -1, IV-2, V, VII 구역)	400% 이하	660% 이하	특별계획구역(I -2구역)	준공업지역		300% 이하	400% 이하	당산로1가, 문래동1,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I -1, II, IV)	2) 용적을 결정(변경)조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지구단위계획 내용</th></tr> <tr> <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적용대상</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준주거 지역</td><td>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td><td>300% 이하</td><td>360% 이하</td><td>신길역 주변</td></tr> <tr> <td>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td><td>250% 이하</td><td>400% 이하</td><td>영등포동4가, 문래동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III 구역)</td></tr> <tr> <td rowspan="4">일반 상업 지역</td><td>종전 일반상업지역</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d>간선가로변</td></tr> <tr> <td>종전 일반상업지역</td><td>400% 이하</td><td>600% 이하</td><td>영등포동1가, 3가 이면부</td></tr> <tr> <td rowspan="3">준주거,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td><td>300% 이하</td><td>400% 이하</td><td>특별계획구역(I -1, IV-2, V, VII 구역)</td></tr> <tr> <td>400% 이하</td><td>660% 이하</td><td>특별계획구역(I -2구역)</td></tr> <tr> <td colspan="2">준공업지역</td><td>300% 이하</td><td>400% 이하</td><td>당산로1가, 문래동1,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I -1, II, IV)</td></tr> </tbody> </table> 주)1.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등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기준을 적용. 주)2. 종전 일반상업지역이 포함되는 획지 등 동일 용도지역 내의 획지가 기존 허용용적률 적용이 2개 이상일 경우 용적률 산정은 면적별 가중평균함 주)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 중 영등포동1가, 3가 이면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주)4. 도시계획조례 제55조 4항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고시원(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임대산업시설(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00퍼센트로 한다.			구 분	지구단위계획 내용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적용대상	준주거 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신길역 주변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250% 이하	400% 이하	영등포동4가, 문래동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III 구역)	일반 상업 지역	종전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간선가로변	종전 일반상업지역	400% 이하	600% 이하	영등포동1가, 3가 이면부	준주거,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400% 이하	특별계획구역(I -1, IV-2, V, VII 구역)	400% 이하	660% 이하	특별계획구역(I -2구역)	준공업지역		300% 이하	400% 이하	당산로1가, 문래동1,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I -1, II, IV)
구 분	지구단위계획 내용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적용대상																																																																													
준주거 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신길역 주변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250% 이하	400% 이하	영등포동4가, 문래동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III 구역)																																																																												
일반 상업 지역	종전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간선가로변																																																																												
	종전 일반상업지역	400% 이하	600% 이하	영등포동1가, 3가 이면부																																																																												
	준주거,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400% 이하	특별계획구역(I -1, IV-2, V, VII 구역)																																																																												
		400% 이하	660% 이하	특별계획구역(I -2구역)																																																																												
준공업지역		300% 이하	400% 이하	당산로1가, 문래동1,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I -1, II, IV)																																																																												
구 분	지구단위계획 내용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적용대상																																																																													
준주거 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신길역 주변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250% 이하	400% 이하	영등포동4가, 문래동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III 구역)																																																																												
일반 상업 지역	종전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간선가로변																																																																												
	종전 일반상업지역	400% 이하	600% 이하	영등포동1가, 3가 이면부																																																																												
	준주거,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400% 이하	특별계획구역(I -1, IV-2, V, VII 구역)																																																																												
		400% 이하	660% 이하	특별계획구역(I -2구역)																																																																												
준공업지역		300% 이하	400% 이하	당산로1가, 문래동1,3가 일대 특별계획구역(I -1, II, IV)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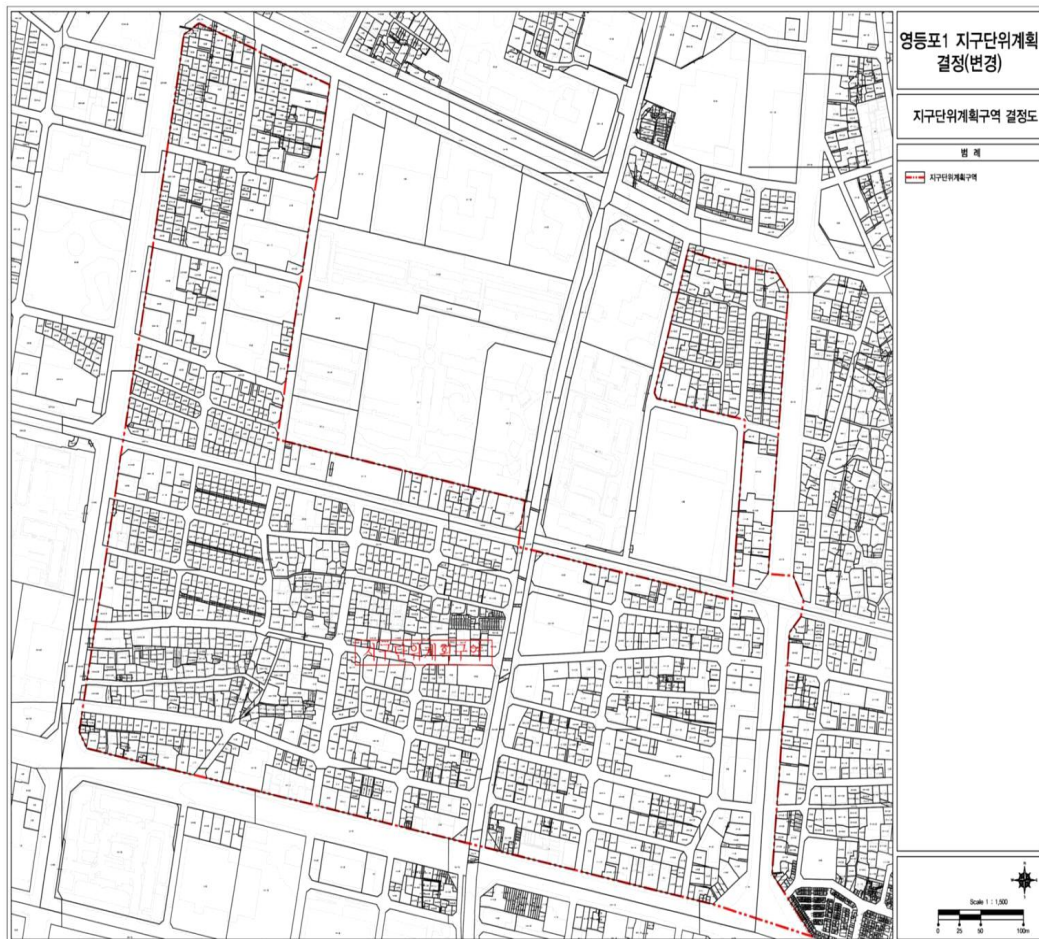


64.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용적률 결정조서				2) 용적률 결정조서																																														
	<table><tr><th>구 분</th><th>기 준 용적률</th><th>허 용 용적률</th><th>상 한 용적률</th></tr><tr><td>일반상업지 역</td><td>영등포면</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d rowspan="5">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 × ∞) 이내</td></tr><tr><td rowspan="4">준 공 업 지</td><td>이면부</td><td>200% 이하</td><td>350% 이하</td></tr><tr><td>영등포로, 국회대로, 당산로, 양산로, 영등로 이면부</td><td>300% 이하</td><td>400% 이하</td></tr><tr><td>영신로(특별계획구역 해제 지역)</td><td>250% 이하</td><td>400% 이하</td></tr><tr><td></td><td></td><td></td></tr></table>				구 분	기 준 용적률	허 용 용적률	상 한 용적률	일반상업지 역	영등포면	600% 이하	800% 이하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 × ∞) 이내	준 공 업 지	이면부	200% 이하	350% 이하	영등포로, 국회대로, 당산로, 양산로, 영등로 이면부	300% 이하	400% 이하	영신로(특별계획구역 해제 지역)	250% 이하	400% 이하				<table><tr><th>구 분</th><th>기 준 용적률</th><th>허 용 용적률</th><th>상 한 용적률</th></tr><tr><td>일반상업지 역</td><td>영등포면</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d rowspan="5">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 × ∞) 이내</td></tr><tr><td rowspan="4">준 공 업 지</td><td>이면부</td><td>200% 이하</td><td>350% 이하</td></tr><tr><td>영등포로, 국회대로, 당산로, 양산로, 영등로 이면부</td><td>300% 이하</td><td>400% 이하</td></tr><tr><td>영신로(특별계획구역 해제 지역)</td><td>250% 이하</td><td>400% 이하</td></tr><tr><td></td><td></td><td></td></tr></table>				구 분	기 준 용적률	허 용 용적률	상 한 용적률	일반상업지 역	영등포면	600% 이하	800% 이하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 × ∞) 이내	준 공 업 지	이면부	200% 이하	350% 이하	영등포로, 국회대로, 당산로, 양산로, 영등로 이면부	300% 이하	400% 이하	영신로(특별계획구역 해제 지역)	250% 이하	400% 이하		
구 분	기 준 용적률	허 용 용적률	상 한 용적률																																																
일반상업지 역	영등포면	600% 이하	800% 이하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 × ∞) 이내																																															
준 공 업 지	이면부	200% 이하	350% 이하																																																
	영등포로, 국회대로, 당산로, 양산로, 영등로 이면부	300% 이하	400% 이하																																																
	영신로(특별계획구역 해제 지역)	250% 이하	400% 이하																																																
구 분	기 준 용적률	허 용 용적률	상 한 용적률																																																
일반상업지 역	영등포면	600% 이하	800% 이하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 × ∞) 이내																																															
준 공 업 지	이면부	200% 이하	350% 이하																																																
	영등포로, 국회대로, 당산로, 양산로, 영등로 이면부	300% 이하	400% 이하																																																
	영신로(특별계획구역 해제 지역)	250% 이하	400% 이하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주) 1.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노인복지시설·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 입지 시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 및 제14항 규정 적용				주) 1.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노인복지시설·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 입지 시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 및 제14항 규정 적용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2.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입지 시 허용용적률 적용은 상기 적용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별표3)에 의한 용적률 적용				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3.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 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은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며, 이면부로 위치가 변경되는 대지는 인접한 이면부 용적률 적용				3.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 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은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며, 이면부로 위치가 변경되는 대지는 인접한 이면부 용적률 적용																																														
	4.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4.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5. 인센티브 운영계획	(2)용적률 인센티브(변경)				(2)용적률 인센티브(변경)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친환경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3. 친환경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4. 전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제외, 영신로변 1층 바닥면적 제외)				4. 전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제외, 영신로변 1층 바닥면적 제외)																																														
	5. 공동개발(지정, 권장)계획 되어 있지 않은 대지임에도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시 공동개발(지정, 권장)계획 되어 있는 대지와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5. 공동개발(지정, 권장)계획 되어 있지 않은 대지임에도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시 공동개발(지정, 권장)계획 되어 있는 대지와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6.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 시 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예: 공개공지와 전면공지 등)				6.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 시 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예: 공개공지와 전면공지 등)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 제2항 제7호(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 제2항 제7호(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5. 공동개발(지정, 권장)계획 되어 있지 않은 대지임에도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시 공동개발(지정, 권장)계획 되어 있는 대지와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5. 공동개발(지정, 권장)계획 되어 있지 않은 대지임에도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시 공동개발(지정, 권장)계획 되어 있는 대지와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6.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 시 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예: 공개공지와 전면공지 등)				6.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 시 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예: 공개공지와 전면공지 등)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5조 (용적률)	③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입지 시 허용용적률 적용은 상기 적용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별표3])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한다.	③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66. 신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다.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적률(변경)

구 분	적용대상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비고
간선 도로변	NC1-a, NC2, NC3, NC5, NC6, NC7, NC8-a, NC9-a, NC10-a, NC11-a, NC12, NC13, NC14, NC15, NC16, NC17-a, NC18-a, NC19	300% 이하	5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이면부	NC1-b, NC4, NC8-b, NC9-b, NC10-b, NC11-b, NC17-b, NC18-b	250% 이하	450% 이하	

■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

주거용도 면면적 비율(%)	허용용적률	비고
60이상~70미만	420% 이하	-
50이상~60미만	450% 이하	
30이상~50미만	480% 이하	
30미만	500% 이하	

주:1. 주거용도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말한다.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및 서울시 오피스텔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적용함

3.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은 건축물 용적률의 허용용적률 범위내에서 적용함.

다.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적률(변경)

구 분	적용대상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비고
간선 도로변	NC1-a, NC2, NC3, NC5, NC6, NC7, NC8-a, NC9-a, NC10-a, NC11-a, NC12, NC13, NC14, NC15, NC16, NC17-a, NC18-a, NC19	300% 이하	5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이면부	NC1-b, NC4, NC8-b, NC9-b, NC10-b, NC11-b, NC17-b, NC18-b	250% 이하	450% 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간선도로변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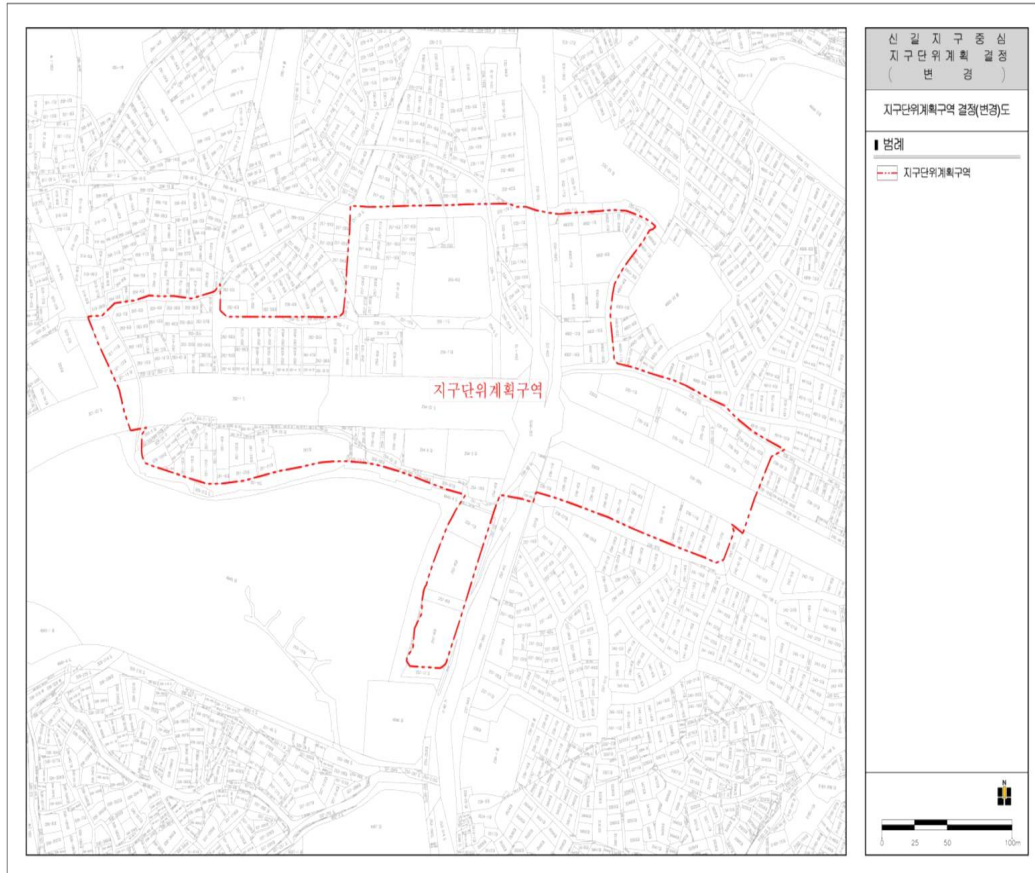
- 이면부의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2%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4.9%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I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유도형	건축물 용도	전용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면적) × 0.5	면면적의 30% 이상 수용시 적용 (주차장면적 제외)
		특정종 권장 (1층)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 / 해당종 면적) × 0.5	1층 바닥면적의 30% 이상 수용시 적용(복도, 계단 등 공유면적을 제외하며 권장용도가 사용되는 면적으로 적용)
유도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추가 설치면적에 한하여 적용 • 피로티구조 : α = 1.5 • 침상형구조 : α = 2 • 개방형구조 : α = 3
		섬지형, 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추가 설치면적에 한하여 적용 • 피로티구조 : α = 1.5 • 침상형구조 : α = 2 • 개방형구조 : α = 3
유도형	건축물 형태	건배율 강화	기준용적률 × 0.1	• 50% 이하 계획시 • 고층부 45% 이하 계획시 • 주거복합은 40% 이하 계획시
		탑상형	기준용적률 × 0.1	• 50% 이하 계획시 • 고층부 45% 이하 계획시 • 주거복합은 40% 이하 계획시
유도형	건축물내 공공 시설 제공시	구분지상권	기준용적률 × (제공 면적/주차장을 제외한 면적) × α	• 건물내 일정공간을 구분지상권(사용권)으로 제공할 경우
		자연 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2	• 녹지면적은 대지면적 20%까지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림면적 제외
유도형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옥상 녹화	기준용적률 × (녹지면적/대지면적) × 0.2	• 옥상용량의 10% 이상 설치시 적용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 설치
유도형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빗물 이용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1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 설치
		녹색 주차장, 투수성 포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0.2	• 에너지절감율(33.5%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81점 이상), 친환경건축물 인증(85점 이상)
유도형	에너지 절약	1층	기준용적률 × 0.08	• 에너지절감율(23.5~33.5% 미만), 에너지 성능지표(74~81점 미만), 친환경 건축물 인증(75~85점 미만)
		2층	기준용적률 × 0.05	• 에너지절감율(23.5~33.5% 미만), 에너지 성능지표(74~81점 미만), 친환경 건축물 인증(75~85점 미만)
유도형	신재생 에너지 도입	신재생 에너지 도입	기준용적률 × 0.05	• 건축공사비의 1% 이상 시설투자시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사용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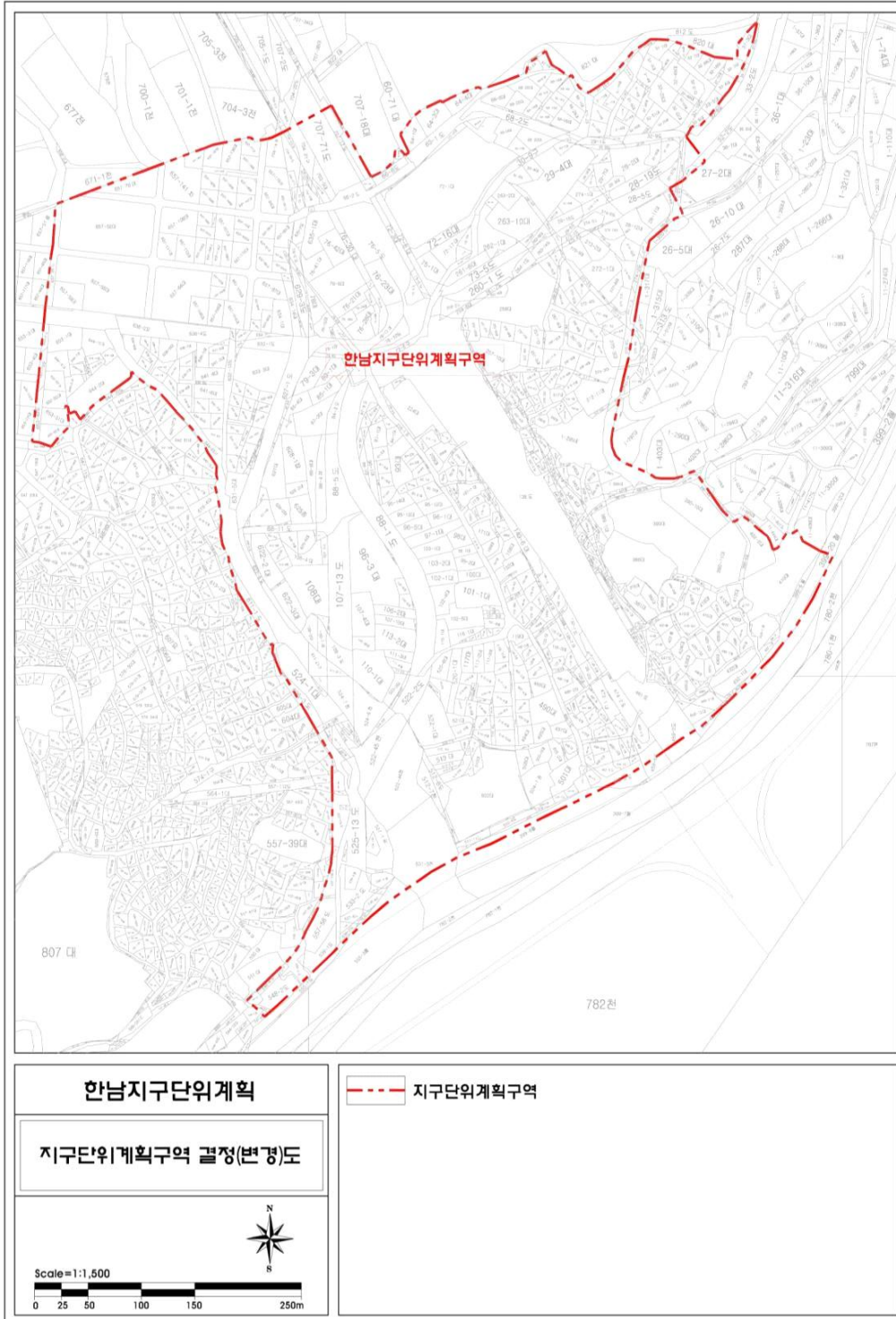
- 주) 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중 공개공지는 건축법상의 설치의무면적 이상을 확보할 경우에 적용
 3. 대지내 공지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중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후퇴부분(폭 3m)은 완화적용 제외
 4. 대지내 공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5. 의무형 인센티브 항목은 전체 허용용적률 완화량의 2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미확보시 전체 허용용적률의 20%는 완화 제외
 6. 규제형 인센티브와 유도형 인센티브는 각각 전체 허용용적률의 50%이내에서 완화 가능

- 주) 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중 공개공지는 건축법상의 설치의무면적 이상을 확보할 경우에 적용
 3. 대지내 공지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중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후퇴부분(폭 3m)은 완화적용 제외
 4. 대지내 공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5. 의무형 인센티브 항목은 전체 허용용적률 완화량의 2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미확보시 전체 허용용적률의 20%는 완화 제외
 6. 규제형 인센티브와 유도형 인센티브는 각각 전체 허용용적률의 50%이내에서 완화 가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 밀도에 관한 사항 제14조 (용적률)	⑥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을 건축할 경우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⑥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을 건축할 경우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⑦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 중 용도지역 변경이 없던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 중 종전 준주거지역이었던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68.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나. 건축물 밀도계획	2) 용적률 계획				2) 용적률 계획					
	구분	용 적 률			비고	구분	용 적 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기준	허용	상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0%이하	150%이하	법정 용적률의 2배이하 적용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0%이하	150%이하	법정 용적률의 2배이하 적용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0%이하	20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0%이하	20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800%이하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800%이하		
	※ 상한용적률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로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이내 적용					※ 상한용적률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로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이내 적용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69.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4) 용적을 결정조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기존	계획 내용	상한	비고	
1 구역	우암동 주거지구	우암동 내부 저층 주거지역	2층	170%	200%	250%	
	서울역 선형밀지 지구	한강로변 선형밀지	일반상업	300%	400%	800%	
		정파로변 선형밀지	2층	170%	200%	250%	
	남영동 상업업무지구	한강로-원호로 교차부분	일반상업	400/600%	600/800%	1,000%	도로쪽에 따라 차등적용
	문배동 업무지구	문배동 일대	일반상업	400/600%	600/800%	1,000%	도로쪽에 따라 차등적용
2 구역	한강로 지구	한강로변	일반상업	600%	800%	1,000%	
			2층	170%	200%	250%	
			3층	210%	250%	300%	
	이연부	일반상업	400/600%	600/800%	1,000%	도로쪽에 따라 차등적용	
			일반상업	600%	800%	1,000%	
	문배지구	백범로변	일반상업	600%	800%	1,000%	
			이연부	3층	210%	250%	300%
	원호로변	일반상업	600%	800%	1,000%		
			이연부	2층	170%	200%	250%
	신계지구	이연부	일반상업	400/600%	600/800%	1,000%	
			일반상업	400/600%	600/800%	1,000%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	400/600%	600/800%	1,000%		
			일반상업	3층	210%	250%	300%
점마창 전면지구	우림동유 부지	3층	210%	250%	300%		
아세아 아파트 주변지구	한강로변	일반상업	600%	800%	1,000%		
		2층	170%	200%	250%		
		이연부	3층	210%	250%	300%	

※ 하나의 대지에 2개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용도지역 규정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 참조

－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시 용적을 계획는 용도지역에 따라 가중평균한 바 기반시설 위치 및 규모 등의 변경시 용적을 재산정하여 적용

※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을 적용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재정비에서 명시한 계획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 포함)

※ 상업지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용적을 계획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용적제에 따른 본 재정비에서 명시한 계획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 포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률 및 해당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6)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1991.5.11. 이후) 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을 적용기준

•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 다음과 같이 적용

구 분	내 용	비고
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향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적용	

(7) 상업지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을 적용기준

•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91.5.11 이후 변경)

－ 허용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별표 3」의 기준과 1부 4-4-1에서 용적을 적용기준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며, 기준용적률은 (1부 4-4-1 용도지역별 기준/허용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별표 3」에 따른 용적률로 정함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예시)

(4) 용적을 결정조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기존	계획 내용	상한	비고	
1 구역	우암동 주거지구	우암동 내부 저층 주거지역	2층	170%	200%	250%	
	서울역 선형밀지 지구	한강로변 선형밀지	일반상업	300%	400%	800%	
		정파로변 선형밀지	2층	170%	200%	250%	
	남영동 상업업무지구	한강로-원호로 교차부분	일반상업	400/600%	600/800%	1,000%	도로쪽에 따라 차등적용
	문배동 업무지구	문배동 일대	일반상업	400/600%	600/800%	1,000%	도로쪽에 따라 차등적용
2 구역	한강로 지구	한강로변	일반상업	600%	800%	1,000%	
			2층	170%	200%	250%	
			3층	210%	250%	300%	
	이연부	일반상업	400/600%	600/800%	1,000%	도로쪽에 따라 차등적용	
			일반상업	600%	800%	1,000%	
	문배지구	백범로변	일반상업	600%	800%	1,000%	
			이연부	3층	210%	250%	300%
	원호로변	일반상업	600%	800%	1,000%		
			이연부	2층	170%	200%	250%
	신계지구	이연부	일반상업	400/600%	600/800%	1,000%	
			일반상업	400/600%	600/800%	1,000%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	400/600%	600/800%	1,000%		
			일반상업	3층	210%	250%	300%
점마창 전면지구	우림동유 부지	3층	210%	250%	300%		
아세아 아파트 주변지구	한강로변	일반상업	600%	800%	1,000%		
		2층	170%	200%	250%		
		이연부	3층	210%	250%	300%	

※ 하나의 대지에 2개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용도지역 규정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 참조

－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시 용적을 계획는 용도지역에 따라 가중평균한 바 기반시설 위치 및 규모 등의 변경시 용적을 재산정하여 적용

※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을 적용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재정비에서 명시한 계획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 포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별표3]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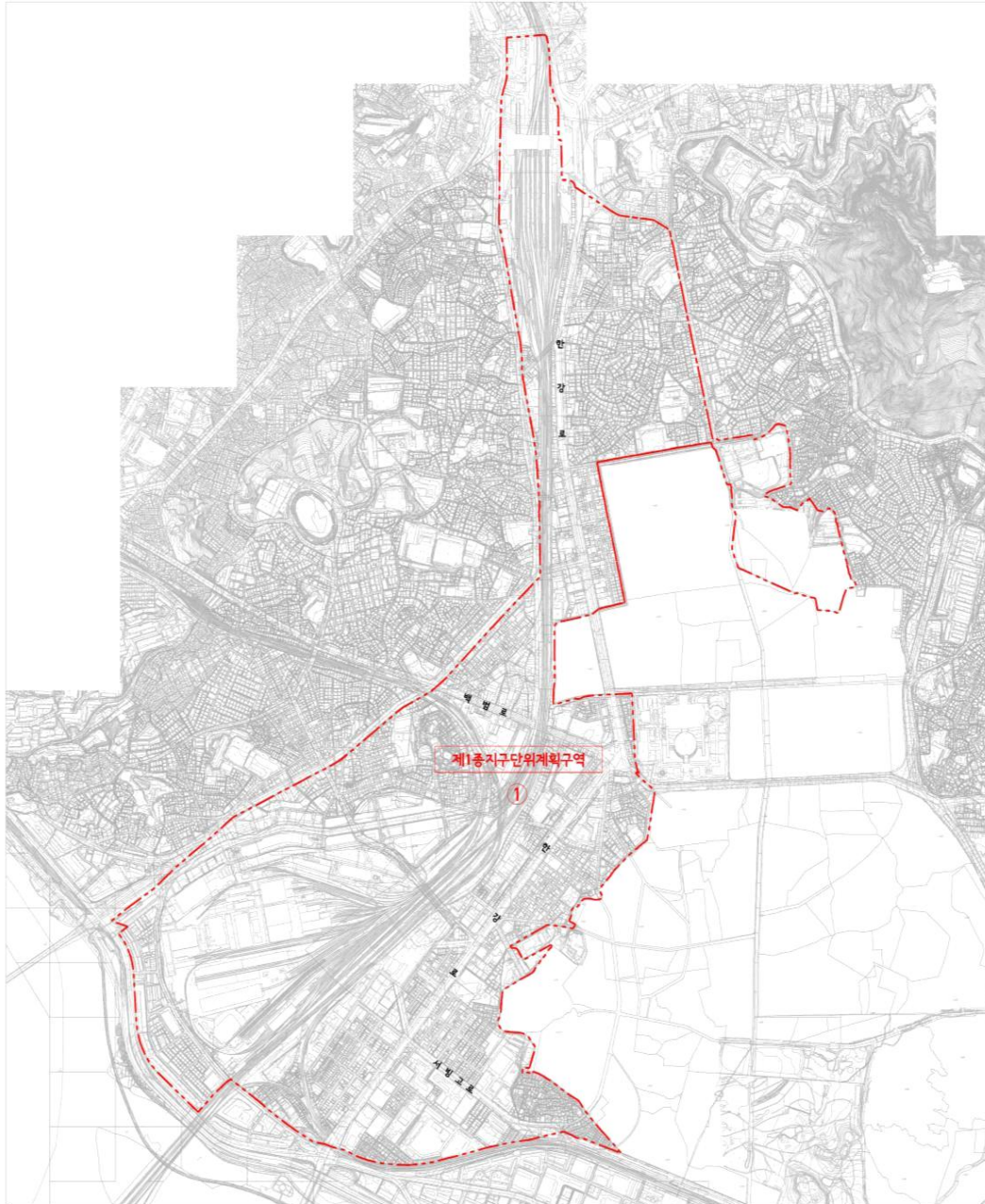
－ 일반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이 600%인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이 400%인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0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을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table><tr><td>주택 연면적 비율(%)</td><td>기준용적률</td><td>허용용적률</td><td>상한용적률</td></tr><tr><td>60 이상 ~ 70 미만</td><td>240% 이하</td><td>600% 이하</td><td rowspan="2">800% 이하</td></tr><tr><td>60 미만</td><td>250% 이하</td><td>610% 이하</td></tr></table>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91.5.11 이전 변경) － 허용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별표 3」을 따르며, 기준용적률은 (1부 4-4-1 용도지역별 기준/허용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별표 3」에 따른 용적률로 정할 수 있음 ※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예시) <table><tr><td>주택 연면적 비율(%)</td><td>기준용적률</td><td>허용용적률</td><td>상한용적률</td></tr><tr><td>60 이상 ~ 70 미만</td><td>450% 이하</td><td>600% 이하</td><td rowspan="5">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tr><td>50 이상 ~ 60 미만</td><td>490% 이하</td><td>650% 이하</td></tr><tr><td>40 이상 ~ 50 미만</td><td>530% 이하</td><td>700% 이하</td></tr><tr><td>30 이상 ~ 40 미만</td><td>560% 이하</td><td>750% 이하</td></tr><tr><td>30 미만</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r></table> • 상기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 55조제3항(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 률)과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동시에 충 족하여야 함.	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24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60 미만	250% 이하	610% 이하	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450% 이하	6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50 이상 ~ 60 미만	490% 이하	65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530% 이하	70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560% 이하	750% 이하	30 미만	600% 이하	800% 이하	
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24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60 미만	250% 이하	610% 이하																															
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450% 이하	6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50 이상 ~ 60 미만	490% 이하	65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530% 이하	70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560% 이하	750% 이하																															
30 미만	600% 이하	800% 이하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장 밑도에 관한 사항 제15조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의 용적률)	①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 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받을 경우 상한용적률 부분의 주택연면적비율은 허용용적률 산정시의 주택연면적비율과 동일하게 한다.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 물 용적률 기준 > <table><tr><td>주택연면적비율(%)</td><td>기준용적률</td><td>허용용적률</td><td>상한용적률</td></tr><tr><td>60이상 ~ 70미만</td><td>450%이하</td><td>600%이하</td><td rowspan="5">1,000%이하</td></tr><tr><td>50이상 ~ 60미만</td><td>490%이하</td><td>650%이하</td></tr><tr><td>40이상 ~ 50미만</td><td>530%이하</td><td>700%이하</td></tr><tr><td>30이상 ~ 40미만</td><td>560%이하</td><td>750%이하</td></tr><tr><td>30미만</td><td>600%이하</td><td>800%이하</td></tr></table> ③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에 주거복합 건물 건립시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 55조3항의 「별표3」”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 도 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며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별 기준/허용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별 표 3」에 따른 용적률로 정한다.	주택연면적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이하	600%이하	1,000%이하	50이상 ~ 60미만	490%이하	650%이하	40이상 ~ 50미만	530%이하	700%이하	30이상 ~ 40미만	560%이하	750%이하	30미만	600%이하	800%이하	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 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이 600%인 상업지 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 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 (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이 400%인 상업지 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00% 이하(허용용 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00%이하 (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 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 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 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주택연면적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이하	600%이하	1,000%이하																														
50이상 ~ 60미만	490%이하	650%이하																															
40이상 ~ 50미만	530%이하	700%이하																															
30이상 ~ 40미만	560%이하	750%이하																															
30미만	600%이하	800%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S=1:5,000

0 100 200 400 800m



70. 응암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4)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상업·업무복합	300% 이하	500% 이하	
근린생활시설	300% 이하	500% 이하	
	300% 이하	45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주 거	220% 이하	400% 이하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오피스텔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오피스텔 건축시 용적률 적용기준

구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	비고
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연면적 비율 70% 이하 • 상가와 용도 : 연면적 비율 30% 이하	오피스텔 용도용적률 적용

※ 공공시설 제공(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의 경우도 상기 비율로 배분 적용함

(4)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상업·업무복합	300% 이하	500% 이하	
근린생활시설	300% 이하	500% 이하	
	300% 이하	45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주 거	220% 이하	400% 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근린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이 500%인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이 450%인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2%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4.9%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이 400%인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66.8%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3.2%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공공시설 제공(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의 경우도 상기 비율로 배분 적용함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2조 (용적률:규제)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 필지별로 적용한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②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3항 관련 별표2의 용적률 범위내에서 용적률 분류표에 열거된 허용용적률을 적용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오피스텔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오피스텔 건축시 용적률 적용기준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th><th>비고</th></tr></thead><tbody><tr><td>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td><td>•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연면적 비율 70% 이하 • 상가 외 용도 : 연면적 비율 30% 이하</td><td>오피스텔 용도용적률 적용</td></tr></tbody></table> ※ 공공시설 제공(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의 경우도 상기 비율로 배분 적용함	구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	비고	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연면적 비율 70% 이하 • 상가 외 용도 : 연면적 비율 30% 이하	오피스텔 용도용적률 적용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 필지별로 적용한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②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근린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이 500%인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이 450%인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2%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4.9%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이 400%인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66.8%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3.2%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공공시설 제공(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의 경우도 상기 비율로 배분 적용함
	구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	비고					
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연면적 비율 70% 이하 • 상가 외 용도 : 연면적 비율 30% 이하	오피스텔 용도용적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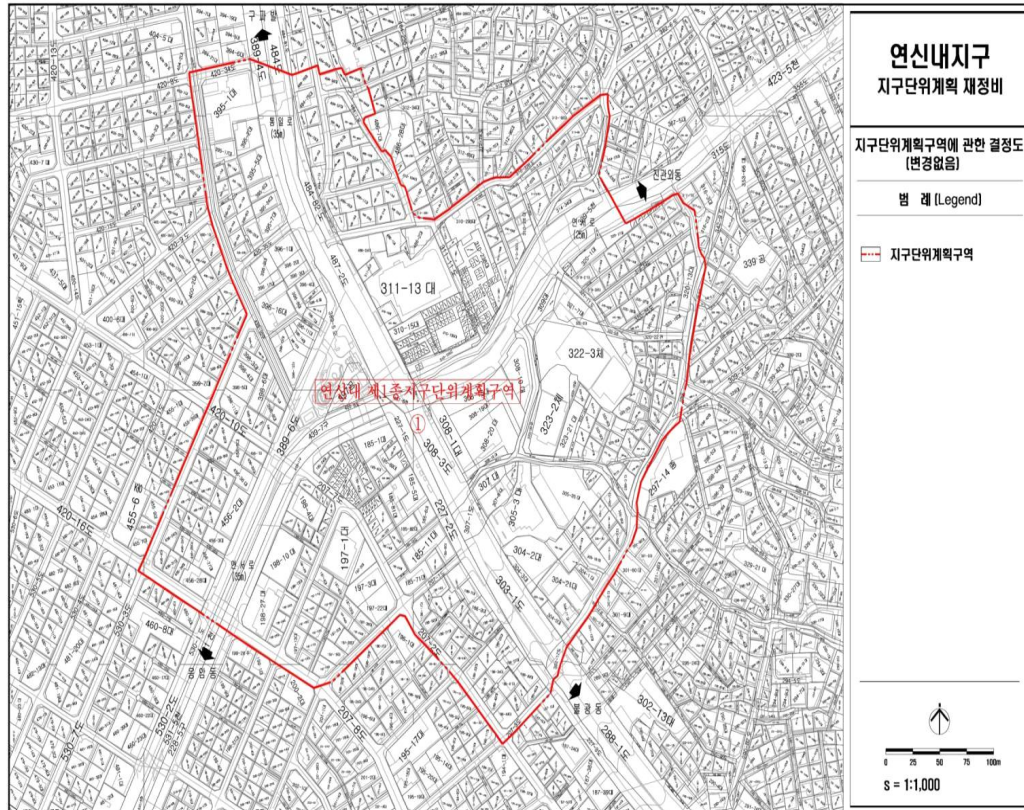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71. 연신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2) 용적률계획				2) 용적률계획							
	구분		계획내용			구분		계획내용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	8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	8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이면부	300%	5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300%	630%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300%	63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300%	5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360%			4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0%	2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0%	2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주) 1.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주) 1.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2. 도시환경정비사업시 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르도록 함.				2. 도시환경정비사업시 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르도록 함.							
3.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의거 용적률 완화가능				3.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의거 용적률 완화가								
				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중 이면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중 간선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중 이면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72. 불광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 높이· 배치 · 형태·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 서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 폐율, 용적률, 높이)	2) 용적률계획					2) 용적률계획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th><th colspan="3">계획내용</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r><tr><td rowspan="3">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td><td>간선부</td><td>300%</td><td>63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td></tr><tr><td>이면부</td><td>300%</td><td>50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td></tr><tr><td>2001 아울렛 특별계획구 역</td><td>286%</td><td>571%</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td></tr><tr><td rowspan="2">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td><td>간선부</td><td>300%</td><td>36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td></tr><tr><td>이면부</td><td>250%</td><td>36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td></tr></table>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300%	63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이면부	300%	5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2001 아울렛 특별계획구 역	286%	571%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간선부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이면부	25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th><th colspan="3">계획내용</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존 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r><tr><td rowspan="3">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td><td>간선부</td><td>300%</td><td>63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td></tr><tr><td>이면부</td><td>300%</td><td>50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td></tr><tr><td>2001 아울렛 특별계획구 역</td><td>286%</td><td>571%</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td></tr><tr><td rowspan="2">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td><td>간선부</td><td>300%</td><td>36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td></tr><tr><td>이면부</td><td>250%</td><td>360%</td><td>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td><td></td></tr></table>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300%	63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이면부	300%	5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2001 아울렛 특별계획구 역	286%	571%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간선부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이면부	25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300%	63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이면부	300%	5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2001 아울렛 특별계획구 역	286%	571%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간선부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이면부	25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300%	63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이면부	300%	50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2001 아울렛 특별계획구 역	286%	571%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간선부	30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이면부	250%	360%	법적 용적률의 2배이하																																																																													
주) 1.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2.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의거 용적률 완화가능						주) 1.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2.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의거 용적률 완화가능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중 간선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중 이면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4. 인센티브 운영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기준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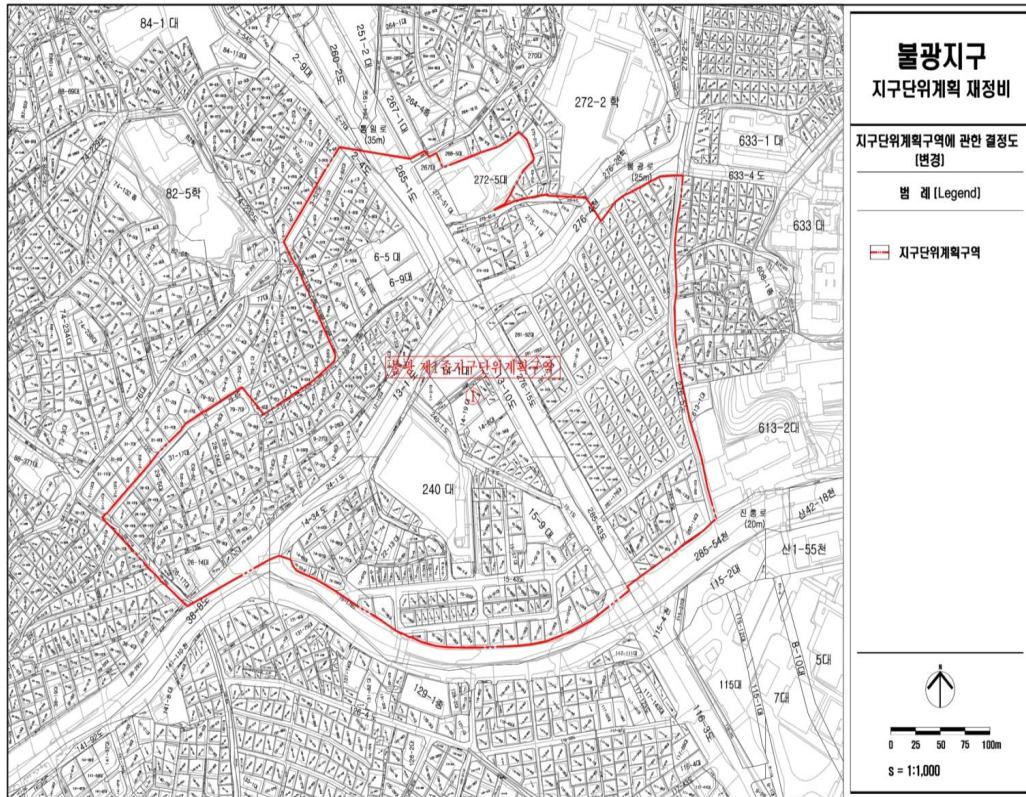
5. 권장용도의 면적은
- 전층 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 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3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특정층(1층 등) 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층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6.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대개발규모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7.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후퇴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건축한계선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한다.
8. 조정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9. 의무형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환경친화적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대지면적) x 0.2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대지면적) x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 으로서 기준용적률 x 0.05	
	중수도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4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에너지절약계획도입	빛물관리시설설치(저류·침투·이용)	기준용적률 x 0.04	•빛물 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빛물침투시설 설계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되도록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 x 0.05	•건축공시량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구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절감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면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 x 0.05
	2등급	23.5~33.5% 이상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 x 0.03

5. 권장용도의 면적은
- 전층 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 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3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특정층(1층 등) 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층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6.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대개발규모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7.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후퇴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건축한계선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한다.
8. 조정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9. 의무형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환경친화적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대지면적) x 0.2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대지면적) x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 으로서 기준용적률 x 0.05	
	중수도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4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에너지절약계획도입	빛물관리시설설치(저류·침투·이용)	기준용적률 x 0.04	•빛물 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빛물침투시설 설계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되도록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 x 0.05	•건축공시량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구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절감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면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 x 0.05
	2등급	23.5~33.5% 이상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 x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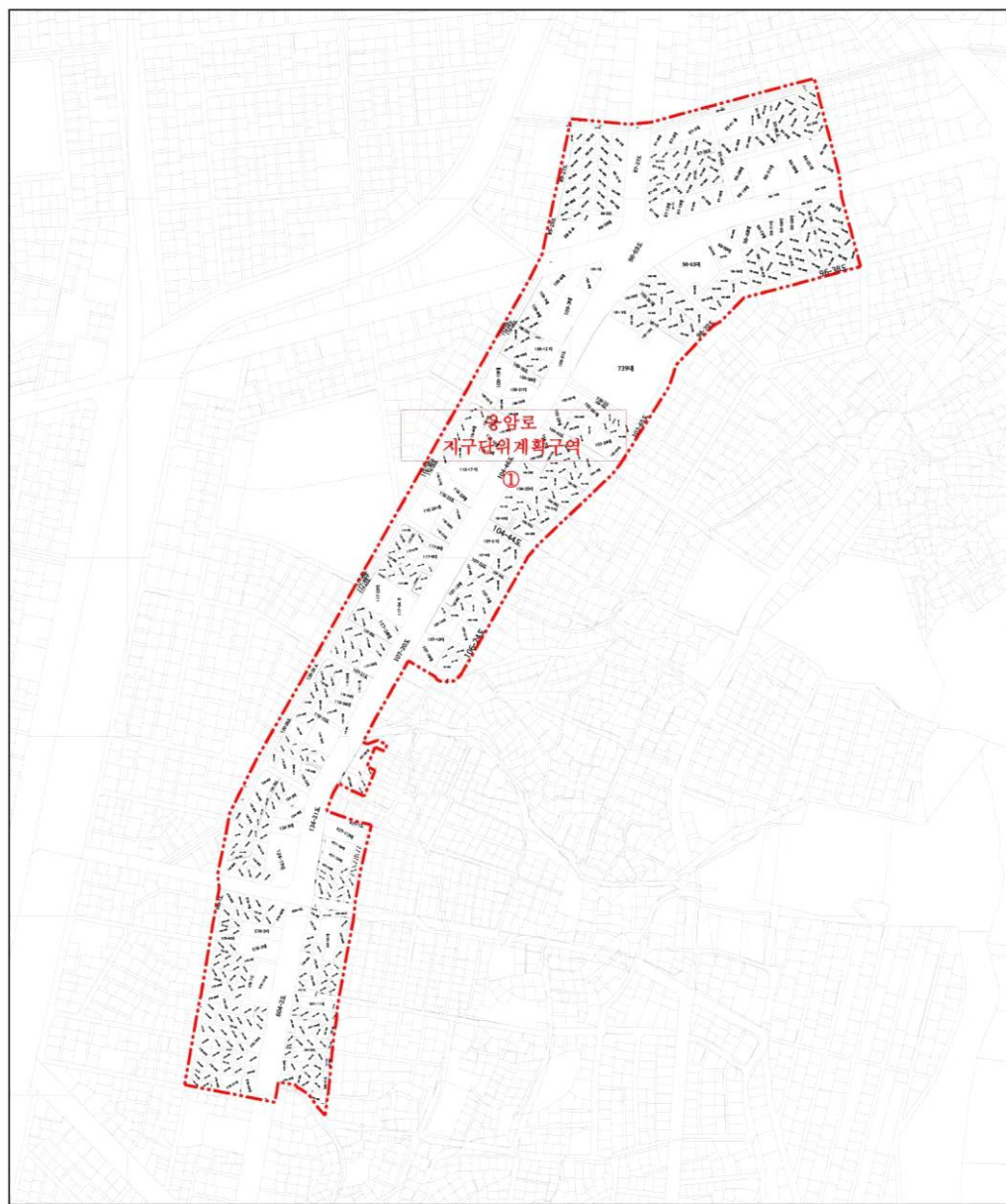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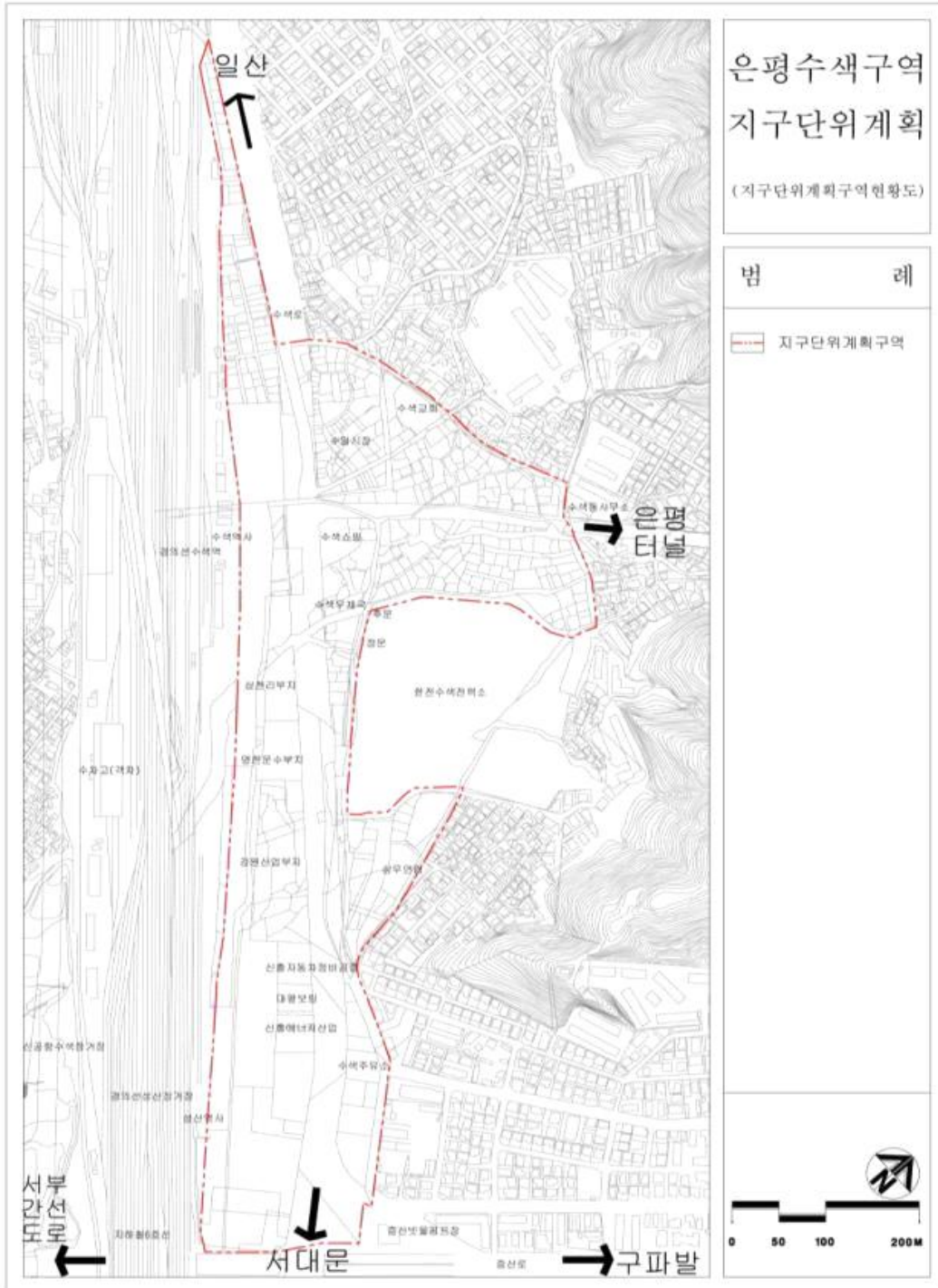
73. 응암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I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4) 용적률 계획			(4) 용적률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계획						
	구분		계획내용		구분		계획내용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비고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5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주) 1. 특별계획구역가능지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2.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규정에 의한 [별표3]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주) 1. 특별계획구역가능지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3조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구분		계획내용		구분		계획내용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비고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5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주) 1. 특별계획구역가능지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2.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규정에 의한 [별표3]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주) 1. 특별계획구역가능지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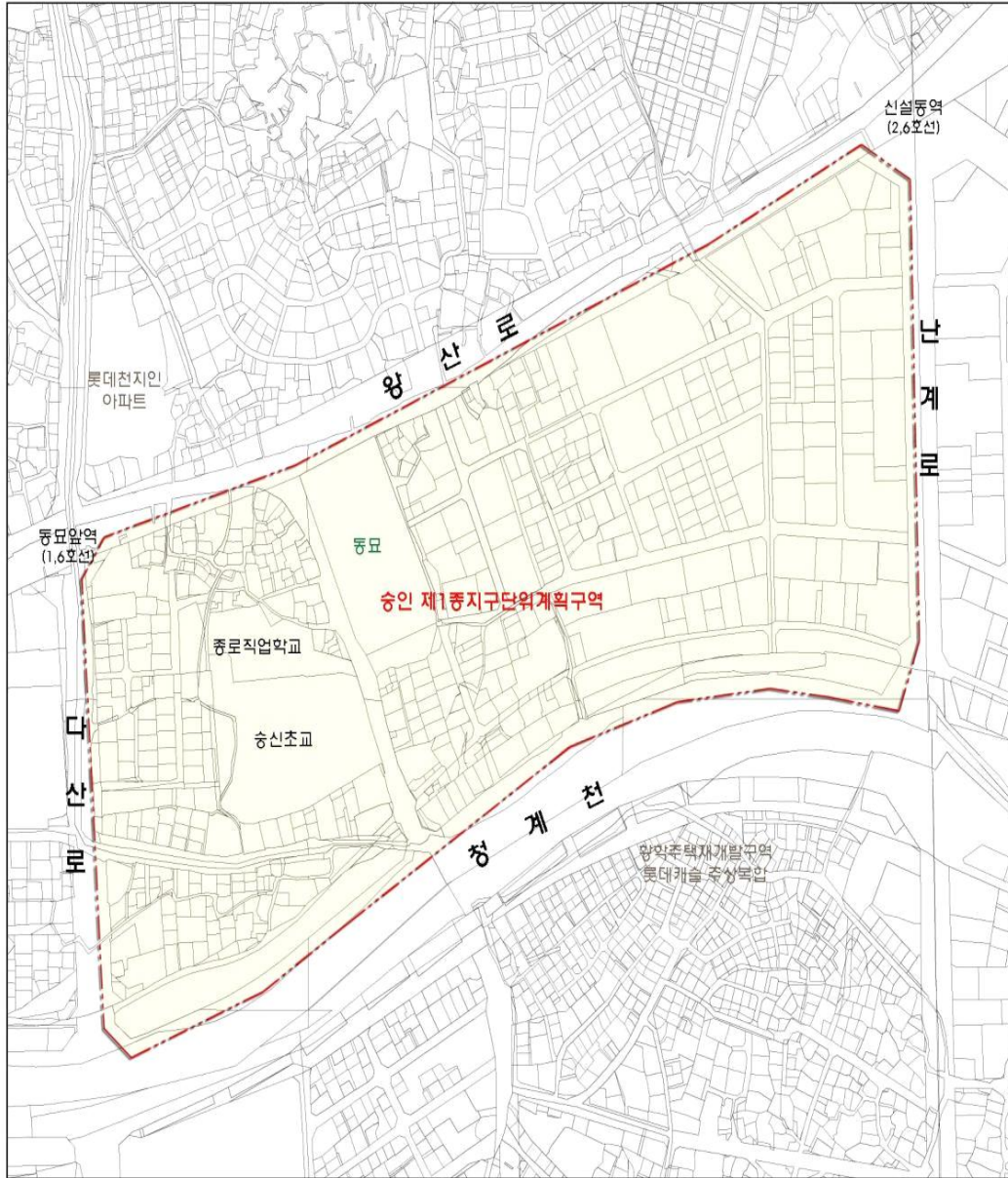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결정조서	(2) 용적률 결정조서		(2) 용적률 결정조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용도지역</th><th colspan="2">지구단위계획 내용</th><th>비고</th></tr> <tr> <th>기존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 </thead> <tbody> <tr> <td>일반상업지역</td><td>500% 이하</td><td>800% 이하</td><td>1000% 이하</td></tr> </tbody> </table>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비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용도지역</th><th colspan="3">지구단위계획 내용</th><th rowspan="2">비고</th></tr> <tr> <th>기존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 </thead> <tbody> <tr> <td>일반상업지역</td><td>500% 이하</td><td>800% 이하</td><td>1000% 이하</td><td></td></tr> </tbody> </table>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비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비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비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의한 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이 된다. 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를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항 목</th><th colspan="2">내 용</th><th rowspan="2">비 고</th></tr> <tr> <th>기 준</th><th>원 회 기 준</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획 지</td><td>공동개발</td><td>공동개발 지장·권장동수</td><td>기존용적률 × 0.2</td></tr> <tr> <td>획지단위개발</td><td>획지단위</td><td>기존용적률 × 0.1</td></tr> <tr> <td rowspan="2">건 축 용 도</td><td>밀지 분할</td><td>밀지분할가능선 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0.05</td></tr> <tr> <td>권장/ 지장용도</td><td>지장동수</td><td>기존용적률 × (지장/권장용도면적 ÷ 주차장동수)를 제외한 건축면적 × a</td></tr> <tr> <td rowspan="2">대 지 내 공 지</td><td>공개공지</td><td>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a</td></tr> <tr> <td>쌍지형, 침상형 공지</td><td>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a</td></tr> <tr> <td rowspan="2">대 지 내 통 로</td><td>건축한계선/ 배면 한계선</td><td>전면공지</td><td>기존용적률 × (배면면적/ 대지면적) × a</td></tr> <tr> <td>공공보통로</td><td>지상형, 입체형 (지하)</td><td>기존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 a</td></tr> <tr> <td rowspan="2">광 고 물</td><td>복외광고물 및 통합간판용 설치</td><td>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0.03</td></tr> <tr> <td>자연 지반 보존</td><td>보존시</td><td>기존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 0.2</td></tr> <tr> <td rowspan="2">한 경</td><td>육상 녹화</td><td>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육상면적/ 대지면적) × 0.3</td></tr> <tr> <td>생태 면적율</td><td>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생태면적/ 대지면적) × 0.2</td></tr> <tr> <td rowspan="2">한 경</td><td>중수도 또는 빗물 이용 시설</td><td>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0.05</td></tr> <tr> <td>수질 수자장</td><td>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0.05</td></tr> <tr> <td rowspan="2">한 경</td><td>환경친화적 건축물</td><td>고층부 후퇴</td><td>기존용적률 × 0.05</td></tr> <tr> <td>상가 주민 대책</td><td>삼림 아파트 상가 점포</td><td>동역시</td></tr> <tr> <td rowspan="2">한 경</td><td>대지의밀부율</td><td>공공시설 부지</td><td>기부 채납시</td></tr> <tr> <td>공공시설 부지</td><td>기부 채납시</td><td>기부 채납시</td></tr> </tbody> </table>		항 목	내 용		비 고	기 준	원 회 기 준	획 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장·권장동수	기존용적률 × 0.2	획지단위개발	획지단위	기존용적률 × 0.1	건 축 용 도	밀지 분할	밀지분할가능선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5	권장/ 지장용도	지장동수	기존용적률 × (지장/권장용도면적 ÷ 주차장동수)를 제외한 건축면적 × a	대 지 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존용적률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a	쌍지형, 침상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존용적률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a	대 지 내 통 로	건축한계선/ 배면 한계선	전면공지	기존용적률 × (배면면적/ 대지면적) × a	공공보통로	지상형, 입체형 (지하)	기존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 a	광 고 물	복외광고물 및 통합간판용 설치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3	자연 지반 보존	보존시	기존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 0.2	한 경	육상 녹화	준수시	기존용적률 × (육상면적/ 대지면적) × 0.3	생태 면적율	준수시	기존용적률 × (생태면적/ 대지면적) × 0.2	한 경	중수도 또는 빗물 이용 시설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5	수질 수자장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5	한 경	환경친화적 건축물	고층부 후퇴	기존용적률 × 0.05	상가 주민 대책	삼림 아파트 상가 점포	동역시	한 경	대지의밀부율	공공시설 부지	기부 채납시	공공시설 부지	기부 채납시	기부 채납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항 목</th><th colspan="2">내 용</th><th rowspan="2">비 고</th></tr> <tr> <th>기 준</th><th>원 회 기 준</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획 지</td><td>공동개발</td><td>공동개발 지장·권장동수</td><td>기존용적률 × 0.2</td></tr> <tr> <td>획지단위개발</td><td>획지단위</td><td>기존용적률 × 0.1</td></tr> <tr> <td rowspan="2">건 축 용 도</td><td>밀지 분할</td><td>밀지분할가능선 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0.05</td></tr> <tr> <td>권장/ 지장용도</td><td>지장동수</td><td>기존용적률 × (지장/권장용도면적 ÷ 주차장동수)를 제외한 건축면적 × a</td></tr> <tr> <td rowspan="2">대 지 내 공 지</td><td>공개공지</td><td>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a</td></tr> <tr> <td>쌍지형, 침상형 공지</td><td>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a</td></tr> <tr> <td rowspan="2">대 지 내 통 로</td><td>건축한계선/ 배면 한계선</td><td>전면공지</td><td>기존용적률 × (배면면적/ 대지면적) × a</td></tr> <tr> <td>공공보통로</td><td>지상형, 입체형 (지하)</td><td>기존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 a</td></tr> <tr> <td rowspan="2">광 고 물</td><td>복외광고물 및 통합간판용 설치</td><td>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0.03</td></tr> <tr> <td>자연 지반 보존</td><td>보존시</td><td>기존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 0.2</td></tr> <tr> <td rowspan="2">한 경</td><td>육상 녹화</td><td>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육상면적/ 대지면적) × 0.3</td></tr> <tr> <td>생태 면적율</td><td>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생태면적/ 대지면적) × 0.2</td></tr> <tr> <td rowspan="2">한 경</td><td>중수도 또는 빗물 이용 시설</td><td>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0.05</td></tr> <tr> <td>수질 수자장</td><td>준수시</td><td>기존용적률 × 0.05</td></tr> <tr> <td rowspan="2">한 경</td><td>환경친화적 건축물</td><td>고층부 후퇴</td><td>기존용적률 × 0.05</td></tr> <tr> <td>상가 주민 대책</td><td>삼림 아파트 상가 점포</td><td>동역시</td></tr> <tr> <td rowspan="5">한 경</td><td>대지의밀부율</td><td>공공시설 부지</td><td>기부 채납시</td></tr> <tr> <td>공공시설 부지</td><td>기부 채납시</td><td>기부 채납시</td></tr> </tbody> </table>		항 목	내 용		비 고	기 준	원 회 기 준	획 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장·권장동수	기존용적률 × 0.2	획지단위개발	획지단위	기존용적률 × 0.1	건 축 용 도	밀지 분할	밀지분할가능선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5	권장/ 지장용도	지장동수	기존용적률 × (지장/권장용도면적 ÷ 주차장동수)를 제외한 건축면적 × a	대 지 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존용적률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a	쌍지형, 침상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존용적률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a	대 지 내 통 로	건축한계선/ 배면 한계선	전면공지	기존용적률 × (배면면적/ 대지면적) × a	공공보통로	지상형, 입체형 (지하)	기존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 a	광 고 물	복외광고물 및 통합간판용 설치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3	자연 지반 보존	보존시	기존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 0.2	한 경	육상 녹화	준수시	기존용적률 × (육상면적/ 대지면적) × 0.3	생태 면적율	준수시	기존용적률 × (생태면적/ 대지면적) × 0.2	한 경	중수도 또는 빗물 이용 시설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5	수질 수자장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5	한 경	환경친화적 건축물	고층부 후퇴	기존용적률 × 0.05	상가 주민 대책	삼림 아파트 상가 점포	동역시	한 경	대지의밀부율	공공시설 부지	기부 채납시	공공시설 부지	기부 채납시	기부 채납시
항 목	내 용		비 고																																																																																																																																										
	기 준	원 회 기 준																																																																																																																																											
획 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장·권장동수	기존용적률 × 0.2																																																																																																																																										
	획지단위개발	획지단위	기존용적률 × 0.1																																																																																																																																										
건 축 용 도	밀지 분할	밀지분할가능선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5																																																																																																																																										
	권장/ 지장용도	지장동수	기존용적률 × (지장/권장용도면적 ÷ 주차장동수)를 제외한 건축면적 × a																																																																																																																																										
대 지 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존용적률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a																																																																																																																																										
	쌍지형, 침상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존용적률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a																																																																																																																																										
대 지 내 통 로	건축한계선/ 배면 한계선	전면공지	기존용적률 × (배면면적/ 대지면적) × a																																																																																																																																										
	공공보통로	지상형, 입체형 (지하)	기존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 a																																																																																																																																										
광 고 물	복외광고물 및 통합간판용 설치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3																																																																																																																																										
	자연 지반 보존	보존시	기존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 0.2																																																																																																																																										
한 경	육상 녹화	준수시	기존용적률 × (육상면적/ 대지면적) × 0.3																																																																																																																																										
	생태 면적율	준수시	기존용적률 × (생태면적/ 대지면적) × 0.2																																																																																																																																										
한 경	중수도 또는 빗물 이용 시설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5																																																																																																																																										
	수질 수자장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5																																																																																																																																										
한 경	환경친화적 건축물	고층부 후퇴	기존용적률 × 0.05																																																																																																																																										
	상가 주민 대책	삼림 아파트 상가 점포	동역시																																																																																																																																										
한 경	대지의밀부율	공공시설 부지	기부 채납시																																																																																																																																										
	공공시설 부지	기부 채납시	기부 채납시																																																																																																																																										
항 목	내 용		비 고																																																																																																																																										
	기 준	원 회 기 준																																																																																																																																											
획 지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장·권장동수	기존용적률 × 0.2																																																																																																																																										
	획지단위개발	획지단위	기존용적률 × 0.1																																																																																																																																										
건 축 용 도	밀지 분할	밀지분할가능선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5																																																																																																																																										
	권장/ 지장용도	지장동수	기존용적률 × (지장/권장용도면적 ÷ 주차장동수)를 제외한 건축면적 × a																																																																																																																																										
대 지 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존용적률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a																																																																																																																																										
	쌍지형, 침상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존용적률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상지면적 - 외무면적)] × a																																																																																																																																										
대 지 내 통 로	건축한계선/ 배면 한계선	전면공지	기존용적률 × (배면면적/ 대지면적) × a																																																																																																																																										
	공공보통로	지상형, 입체형 (지하)	기존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 a																																																																																																																																										
광 고 물	복외광고물 및 통합간판용 설치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3																																																																																																																																										
	자연 지반 보존	보존시	기존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 0.2																																																																																																																																										
한 경	육상 녹화	준수시	기존용적률 × (육상면적/ 대지면적) × 0.3																																																																																																																																										
	생태 면적율	준수시	기존용적률 × (생태면적/ 대지면적) × 0.2																																																																																																																																										
한 경	중수도 또는 빗물 이용 시설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5																																																																																																																																										
	수질 수자장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5																																																																																																																																										
한 경	환경친화적 건축물	고층부 후퇴	기존용적률 × 0.05																																																																																																																																										
	상가 주민 대책	삼림 아파트 상가 점포	동역시																																																																																																																																										
한 경	대지의밀부율	공공시설 부지	기부 채납시																																																																																																																																										
	공공시설 부지	기부 채납시	기부 채납시																																																																																																																																										
	※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의한 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이 된다. 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를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의한 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이 된다. 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를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획지계획 : 획지(공동개발 지정/권장)선을 준수하여 획지(공동개발)단위로 개발하거나, 최대개발 규모 이내에서 획지(공동개발 지정/권장)간 통합 개발 등을 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3. 권장지정용도의 인센티브 가능 면적 관련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적용함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5.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 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6. (지하적용)건축한계선에 관한 인센티브는 시행지침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용한다. 7.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8. 삼일아파트상가부지 정비를 위한 공공기여에 따른 상가수 산정시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Ⅰ 전면 상가수와 특별계획구역Ⅲ 전면 상가수를 나누어 산정한다. 높이완화 인센티브 적용시도 같다. 동의율의 산정 및 완화된 높이 및 용적률의 적용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40조(삼일아파트상가부지 정비를 위한 공공기여)에 따른다. 9.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사항은 관련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10. 녹색주차장 인센티브는 옥외주차장 주차면수의 50%이상을 녹색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부여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획지계획 : 획지(공동개발 지정/권장)선을 준수하여 획지(공동개발)단위로 개발하거나, 최대개발 규모 이내에서 획지(공동개발 지정/권장)간 통합 개발 등을 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3. 권장지정용도의 인센티브 가능 면적 관련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적용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5.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 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6. (지하적용)건축한계선에 관한 인센티브는 시행지침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용한다. 7.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8. 삼일아파트상가부지 정비를 위한 공공기여에 따른 상가수 산정시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Ⅰ 전면상가수와 특별계획구역Ⅲ 전면 상가수를 나누어 산정한다. 높이완화 인센티브 적용시도 같다. 동의율의 산정 및 완화된 높이 및 용적률의 적용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40조(삼일아파트상가부지 정비를 위한 공공기여)에 따른다. 9.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사항은 관련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10. 녹색주차장 인센티브는 옥외주차장 주차면수의 50%이상을 녹색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부여
--	--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송인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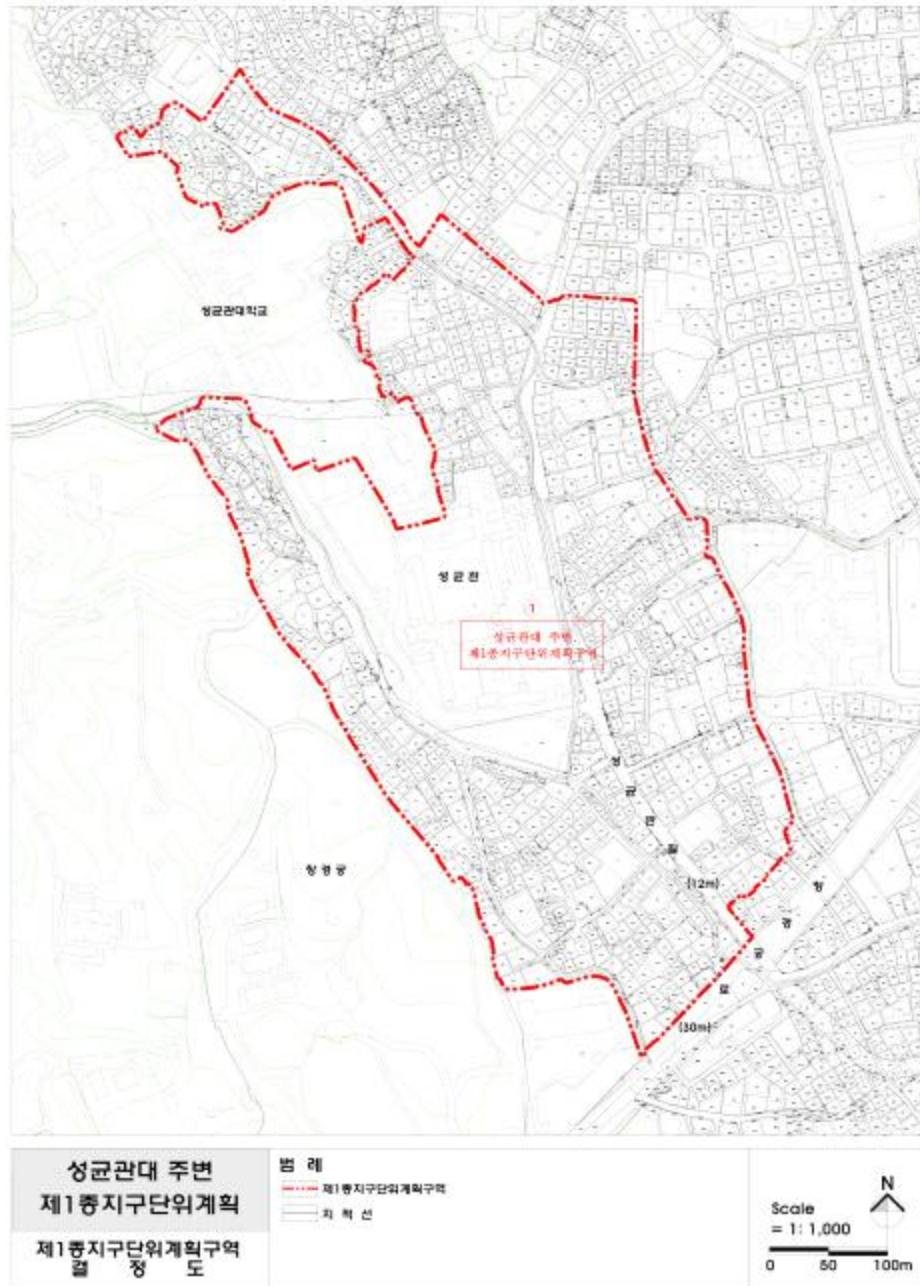


0 25 50 100 150m

76. 성균관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다)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용적률 계획				○용적률 계획																																												
	<table><tr><th rowspan="2">용도지역</th><th colspan="3">지구단위계획 내용</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제1종일반주거 지역</td><td>130% 이하</td><td>150% 이하</td><td rowspan="3">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에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td><td rowspan="4"></td></tr><tr><td>제2종일반주거 지역 (7층이하)</td><td>180% 이하</td><td>200% 이하</td></tr><tr><td>제2종일반주거 지역</td><td>180% 이하</td><td>200% 이하</td></tr><tr><td>일반상업지역</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r></table>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1종일반주거 지역	130% 이하	150% 이하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에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종일반주거 지역 (7층이하)	180% 이하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 지역	180% 이하	20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table><tr><th rowspan="2">용도지역</th><th colspan="3">지구단위계획 내용</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제1종일반주거 지역</td><td>130% 이하</td><td>150% 이하</td><td rowspan="3">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에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td><td rowspan="4"></td></tr><tr><td>제2종일반주거 지역 (7층이하)</td><td>180% 이하</td><td>200% 이하</td></tr><tr><td>제2종일반주거 지역</td><td>180% 이하</td><td>200% 이하</td></tr><tr><td>일반상업지역</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r></table>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1종일반주거 지역	130% 이하	150% 이하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에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종일반주거 지역 (7층이하)	180% 이하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 지역	180% 이하	20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1종일반주거 지역	130% 이하	150% 이하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에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종일반주거 지역 (7층이하)	180% 이하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 지역	180% 이하	20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1종일반주거 지역	130% 이하	150% 이하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에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종일반주거 지역 (7층이하)	180% 이하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 지역	180% 이하	20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주) 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이내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평균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α : 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3.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2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를 적용하도록 함																																																	
주) 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이내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평균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α : 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3.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2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를 적용하도록 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77. 송인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2) 용적률 결정조서

용도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	하용	상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300% 이하	360% 이하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송인 II -7 특별계획구역	220% 이하	-	-	
공인마을 특별계획 구역	300% 이하	630% 이하	700% 이하	

※ 신성동교차로변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적률은 해당 계획지침 내용을 준수

2) 용적률 결정조서

용도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	하용	상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300% 이하	360% 이하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송인 II -7 특별계획구역	220% 이하	-	-	
공인마을 특별계획 구역	300% 이하	630% 이하	700% 이하	

※ 신성동교차로변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적률은 해당 계획지침 내용을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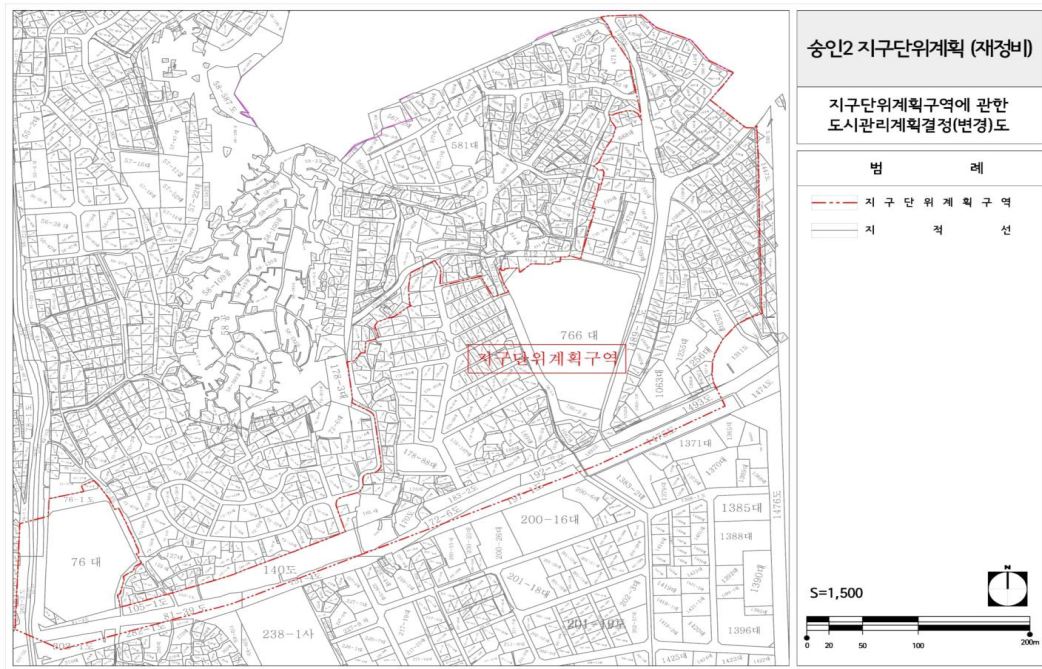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I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5.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 밀도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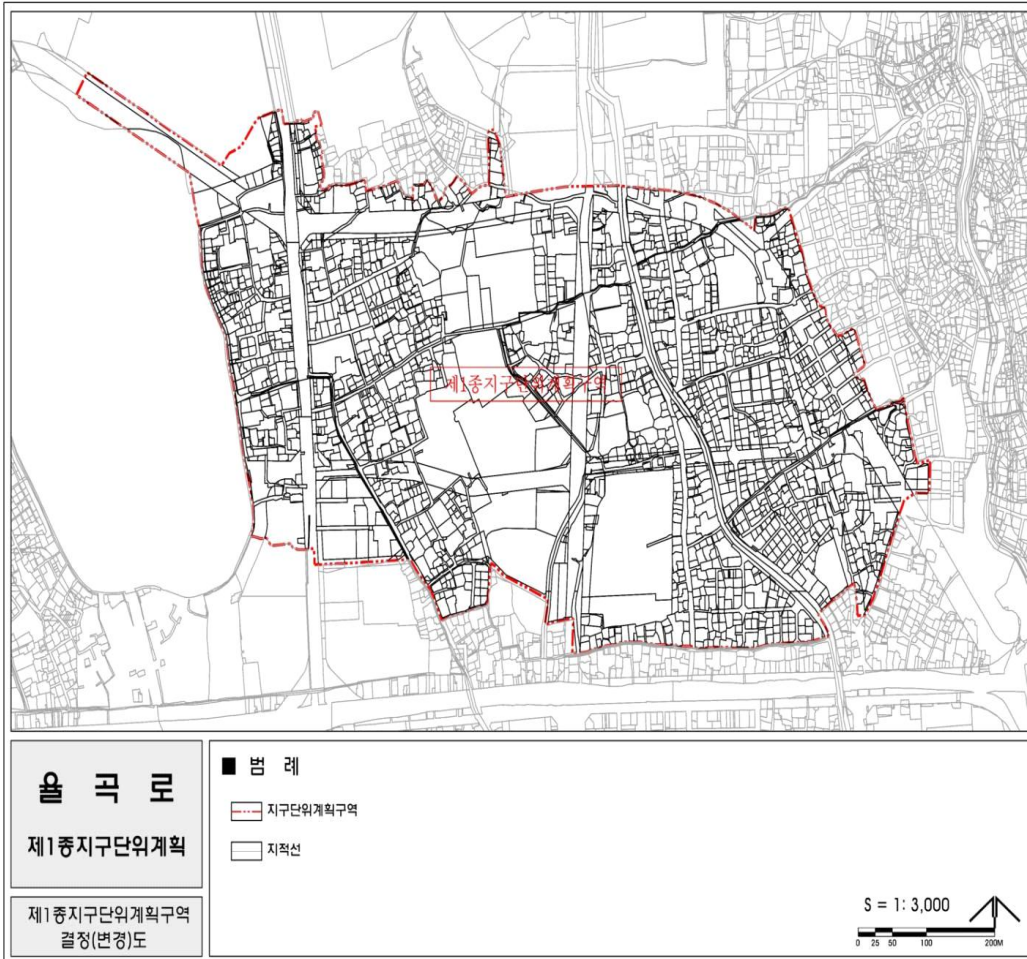
78. 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3) 용적률 결정조서 ○ 용도지역 현황 및 지역여건변화에 따른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개발밀도 설정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에 의해 달성 가능한 허용용적률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의 용적률 기준으로 적용		3) 용적률 결정조서 ○ 용도지역 현황 및 지역여건변화에 따른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개발밀도 설정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에 의해 달성 가능한 허용용적률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의 용적률 기준으로 적용																																											
	<table><tr><th>용도지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r><tr><td>간선부</td><td>400</td><td>600</td></tr><tr><td>이면부</td><td>400</td><td>500</td></tr><tr><td>중요인근 블록</td><td>300</td><td>400</td></tr><tr><td>율곡로 블록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00</td><td>250</td></tr></table> ※ 공동주택(주거복합)을 건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의해 산출된 용적률을 적용함 ※ 20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간선부	400	600	이면부	400	500	중요인근 블록	300	400	율곡로 블록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table><tr><th>용도지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r><tr><td>간선부</td><td>400</td><td>600</td></tr><tr><td>이면부</td><td>400</td><td>500</td></tr><tr><td>중요인근 블록</td><td>300</td><td>400</td></tr><tr><td>율곡로 블록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00</td><td>250</td></tr></table>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이면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중요인근 블록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66.8%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3.2%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20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간선부	400	600	이면부	400	500	중요인근 블록	300	400	율곡로 블록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간선부	400	600																																												
이면부	400	500																																												
중요인근 블록	300	400																																												
율곡로 블록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간선부	400	600																																												
이면부	400	500																																												
중요인근 블록	300	400																																												
율곡로 블록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3)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table><tr><th colspan="2">항목</th><th>내용</th><th>원화기준</th><th>비고</th></tr><tr><td rowspan="4">공 동 계 방 (지 정 / 권 장)</td><td rowspan="2">간선부</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5α</td><td>• 2필지 : α = 0.1 • 3,4필지 : α = 0.15 • 5필지 이상 : α = 0.2</td></tr><tr><td>이면부</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5α</td><td>• 2필지 : α = 0.2 • 3,4필지 : α = 0.3 • 5필지 이상 : α = 0.4</td></tr><tr><td rowspan="2">건축물 용도</td><td>전층 권장</td><td>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x0.1</td><td>전층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에 50%이상시 인정</td></tr><tr><td>1층 권장</td><td>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해당층바닥면적) x0.1</td><td>1층권장용도는 1층바닥면적의 70%이상시 인정</td></tr></table>		항목		내용	원화기준	비고	공 동 계 방 (지 정 / 권 장)	간선부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α	• 2필지 : α = 0.1 • 3,4필지 : α = 0.15 • 5필지 이상 : α = 0.2	이면부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α	• 2필지 : α = 0.2 • 3,4필지 : α = 0.3 • 5필지 이상 : α = 0.4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x0.1	전층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에 50%이상시 인정	1층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해당층바닥면적) x0.1	1층권장용도는 1층바닥면적의 70%이상시 인정	<table><tr><th colspan="2">항목</th><th>내용</th><th>원화기준</th><th>비고</th></tr><tr><td rowspan="4">공 동 계 방 (지 정 / 권 장)</td><td rowspan="2">간선부</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5α</td><td>• 2필지 : α = 0.1 • 3,4필지 : α = 0.15 • 5필지 이상 : α = 0.2</td></tr><tr><td>이면부</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5α</td><td>• 2필지 : α = 0.2 • 3,4필지 : α = 0.3 • 5필지 이상 : α = 0.4</td></tr><tr><td rowspan="2">건축물 용도</td><td>전층 권장</td><td>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x0.1</td><td>전층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에 50%이상시 인정</td></tr><tr><td>1층 권장</td><td>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해당층바닥면적) x0.1</td><td>1층권장용도는 1층바닥면적의 70%이상시 인정</td></tr></table>		항목		내용	원화기준	비고	공 동 계 방 (지 정 / 권 장)	간선부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α	• 2필지 : α = 0.1 • 3,4필지 : α = 0.15 • 5필지 이상 : α = 0.2	이면부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α	• 2필지 : α = 0.2 • 3,4필지 : α = 0.3 • 5필지 이상 : α = 0.4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x0.1	전층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에 50%이상시 인정	1층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해당층바닥면적) x0.1	1층권장용도는 1층바닥면적의 70%이상시 인정
	항목		내용	원화기준	비고																																									
공 동 계 방 (지 정 / 권 장)	간선부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α	• 2필지 : α = 0.1 • 3,4필지 : α = 0.15 • 5필지 이상 : α = 0.2																																										
		이면부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α	• 2필지 : α = 0.2 • 3,4필지 : α = 0.3 • 5필지 이상 : α = 0.4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x0.1	전층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에 50%이상시 인정																																										
		1층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해당층바닥면적) x0.1	1층권장용도는 1층바닥면적의 70%이상시 인정																																										
항목		내용	원화기준	비고																																										
공 동 계 방 (지 정 / 권 장)	간선부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α	• 2필지 : α = 0.1 • 3,4필지 : α = 0.15 • 5필지 이상 : α = 0.2																																										
		이면부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α	• 2필지 : α = 0.2 • 3,4필지 : α = 0.3 • 5필지 이상 : α = 0.4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x0.1	전층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에 50%이상시 인정																																										
		1층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해당층바닥면적) x0.1	1층권장용도는 1층바닥면적의 70%이상시 인정																																										

	대지내 공지	위치 문수	기존용적률 × 0.1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조성 형태 및 규모 문수시	기존용적률 × [(설치면적 - 의 무 면 적)/대지면 적] x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합지형, 합상형 공지	조성 형태 및 규모 문수시	기존용적률 × (제 공 면 적 / 대 지면적) xa	• 피로티구조 : a=0.5 • 합상형공지 : a=0.8 • 개방형구조 : a=1.0
	건축 한계선	전면 공지	기존용적률 × (제 공 면 적 / 대 지면적) x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대지내 통로	보행 통로	공공 보행 통로	기존용적률 × (조 성 면 적 / 대 지면적) x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자연 지반 보존	보존시	기존용적률 × (보 존 면 적 / 대 지면적) x0.2	
	육상 녹화	준수시	기존용적률 × (녹 화 면 적 / 대 지면적) x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하고 법정 조경면적 제외
환경 친화적 건축물	중 수 도 시설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 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에는 제외
	빛물 이용 시설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4	빛물저류탱크용량 (ton)이 건축면적x0.05 또는 대지면적x0.02 이상 설치
	녹 색 주 차장/ 투 수 성 포장	준수시	기존용적률 × (설 치 면 적 / 대 지면적) x0.05	기존용적률 × 0.05이내
	신 재 생 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중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 너 지 절약 계획	준수시	기존용적률 × a	• 1등급 : a=0.08 • 2등급 : a=0.05 * 서울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너지저장용,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건물내 밀정공간을 공공에 사용 권(구분지상 권)으로 제공 할 경우	제공시	기존용적률 × 0.2	구분지상권 제공시 공공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 우
	대지내 공지	위치 문수	기존용적률 × 0.1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조성 형태 및 규모 문수시	기존용적률 × [(설치면적 - 의 무 면 적)/대지면 적] x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합지형, 합상형 공지	조성 형태 및 규모 문수시	기존용적률 × (제 공 면 적 / 대 지 면 적) xa	• 피로티구조 : a=0.5 • 합상형공지 : a=0.8 • 개방형구조 : a=1.0
	건축 한계선	전면 공지	기존용적률 × (제 공 면 적 / 대 지 면 적) x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대지내 통로	보행 통로	공공 보행 통로	기존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x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자연 지반 보존	보존시	기존용적률 × (보존면적/ 대지면적) x0.2	
	육상 녹화	준수시	기존용적률 × (녹화면적/ 대지면적) x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하고 법정 조경면적 제외
환경 친화적 건축물	중 수 도 시설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 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에는 제외
	빛물 이용 시설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4	빛물저류탱크용량 (ton)이 건축면적x0.05 또는 대지면적x0.02 이상 설치
	녹 색 주 차장/ 투 수 성 포장	준수시	기존용적률 × (설치면적/ 대지면적) x0.05	기존용적률 × 0.05이내
	신 재 생 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존용적률 × 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 는 중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 너 지 절약 계획	준수시	기존용적률 × a	• 1등급 : a=0.08 • 2등급 : a=0.05 * 서울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너지저장용,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건물내 밀정공간을 공공에 사용 권(구분지상 권)으로 제공 할 경우	제공시	기존용적률 × 0.2	구분지상권 제공시 공공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 우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건축법 제 46조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4. 동일사유로 인하여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높이 완화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5. 용적률 완화 범위의 최소 20%는 환경친화적 건축물 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된다. 6. 에너지 절약계획 등급은 다음표와 같다. <table><tr><th>구분</th><th>에너지 절감율</th><th>에너지성능지표</th><th>친환경건축물인증</th></tr><tr><td>1등급</td><td>33.5% 이상</td><td>81점 이상</td><td>85점 이상</td></tr><tr><td>2등급</td><td>23.5~33.5% 미만</td><td>74~81점 미만</td><td>75~85점 미만</td></tr></table>	구분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건축법 제 46조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4. 동일사유로 인하여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높이 완화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5. 용적률 완화 범위의 최소 20%는 환경친화적 건축물 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된다. 6. 에너지 절약계획 등급은 다음표와 같다. <table><tr><th>구분</th><th>에너지 절감율</th><th>에너지성능지표</th><th>친환경건축물인증</th></tr><tr><td>1등급</td><td>33.5% 이상</td><td>81점 이상</td><td>85점 이상</td></tr><tr><td>2등급</td><td>23.5~33.5% 미만</td><td>74~81점 미만</td><td>75~85점 미만</td></tr></table>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분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구분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구분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밀도에 관한 사항	■용적률 기준표		■용적률 기준표																													
제13조 (기준 · 허용 · 상한용적률)	<table><tr><th>용도지역</th><th>기준용적률 (%)</th><th>허용용적률 (%)</th></tr><tr><td>간선부</td><td>400</td><td>600</td></tr><tr><td>이면부</td><td>400</td><td>500</td></tr><tr><td>종요인근 블록</td><td>300</td><td>400</td></tr><tr><td>율곡로 블록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00</td><td>250</td></tr></table> ※ 공동주택(주거복합)을 건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의해 산출된 용적률을 적용함 ※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간선부	400	600	이면부	400	500	종요인근 블록	300	400	율곡로 블록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table><tr><th>용도지역</th><th>기준용적률 (%)</th><th>허용용적률 (%)</th></tr><tr><td>간선부</td><td>400</td><td>600</td></tr><tr><td>이면부</td><td>400</td><td>500</td></tr><tr><td>종요인근 블록</td><td>300</td><td>400</td></tr><tr><td>율곡로 블록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00</td><td>250</td></tr></table>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이면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종요인근 블록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66.8%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3.2%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간선부	400	600	이면부	400	500	종요인근 블록	300	400	율곡로 블록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간선부	400	600																														
이면부	400	500																														
종요인근 블록	300	400																														
율곡로 블록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간선부	400	600																														
이면부	400	500																														
종요인근 블록	300	400																														
율곡로 블록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79. 종로2·3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7.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가. 용적률									
	<table border="1"> <thead> <tr> <th>적용 대상</th><th>기준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지구단위계획 구역 내</td><td>· 기준용적률 450% - 획지 및 공동개발 지침 준수 : 480% - 획지 및 공동개발(지정) 지침 미준수 : 420%</td><td>최대 600%</td><td>최대 800%</td><td></td></tr> </tbody> </table>	적용 대상	기준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 기준용적률 450% - 획지 및 공동개발 지침 준수 : 480% - 획지 및 공동개발(지정) 지침 미준수 : 420%	최대 600%	최대 800%
적용 대상	기준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 기준용적률 450% - 획지 및 공동개발 지침 준수 : 480% - 획지 및 공동개발(지정) 지침 미준수 : 420%	최대 600%	최대 800%							
<table border="1"> <thead> <tr> <th>적용 대상</th><th>기준용적률</th><th>허용 용적률</th><th>상한 용적률</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지구단위계획 구역 내</td><td>· 기준용적률 450% - 획지 및 공동개발 지침 준수 : 480% - 획지 및 공동개발(지정) 지침 미준수 : 420%</td><td>최대 600%</td><td>최대 800%</td><td></td></tr> </tbody> </table>	적용 대상	기준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 기준용적률 450% - 획지 및 공동개발 지침 준수 : 480% - 획지 및 공동개발(지정) 지침 미준수 : 420%	최대 600%	최대 800%	
적용 대상	기준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 기준용적률 450% - 획지 및 공동개발 지침 준수 : 480% - 획지 및 공동개발(지정) 지침 미준수 : 420%	최대 600%	최대 800%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구분	계획요소	변화 조건	원화기준	비고
용적률	용도	관장/지정 용도	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 × ax(관장/지정면적/주차장 등 면적 제외 면적) a=0.1 지정용도 100% 수용시 권장용도 입지율은 70%이상
				공개공지 · 공개공지 설치 의무 부과시 · 함지형, 침상형 공지 조성 형태 및 규모 준수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 × ax(공개공지 설치 의무 부과 면적/대지면적) a=0.1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조성면적 전체 적용 · 함상률로 조성시 a=1.2 적용
				· 피로티구조 : a=0.5 · 함상률구조 : a=0.8 · 개방형구조 : a=1.0
	공공보행도로	지침 준수시	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 × ax(조성면적/대지면적) · 개방형 : a=1 · 피로티 : a=0.5
				· 기준미판지구 후퇴(3m)부분 및 법정도로폭 확보를 위한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미적용
	전면공지	지침 준수시	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 × 1.0x(조성면적/대지면적)
				· 시행지침 제 36조 참조
	보행통선 및 횡단	지침 준수시	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함상률구조 : a=1.0
10.패널티 및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나. 인센티브 적용기준	형태 건축	지침 준수시	지침 준수시	· 옥상녹화면적은 옥상면적의 50% 이상(조성시) · 옥상녹화 면적/대지면적 조성률 면적에 대한 면적 제외 · 200㎡ 이상대지 : 대지내 조성 면적 제외 · 200㎡ 이하대지 : 전체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성
				· 기준용적률 × 0.15x(자연지반면적/대지면적)
	자연지반보존	지침 준수시	지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15x(자연지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0.05
	중수도 도입	지침 준수시	지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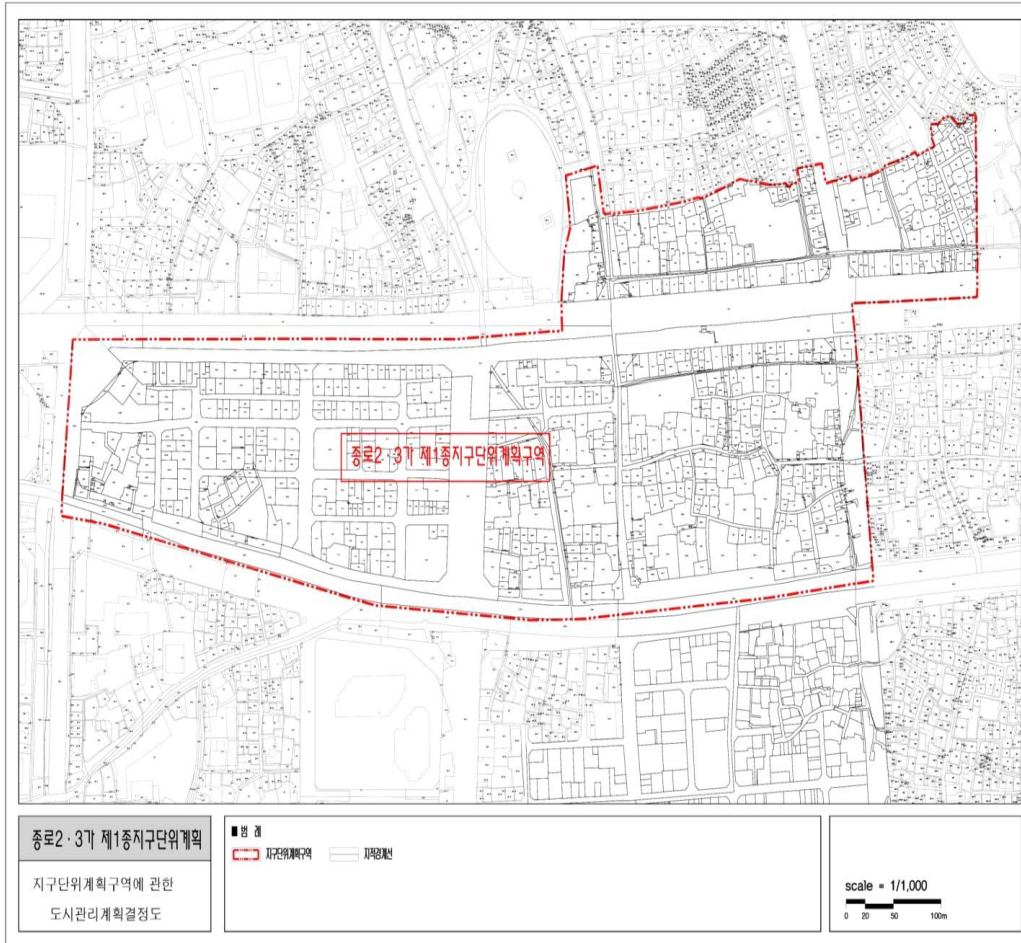
구분	계획요소	변화 조건	원화기준	비고
용적률	용도	관장/지정 용도	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 × ax(관장/지정면적/주차장 등 면적 제외 면적) a=0.1 지정용도 100% 수용시 권장용도 입지율은 70%이상
				공개공지 · 공개공지 설치 의무 부과시 · 함지형, 침상형 공지 조성 형태 및 규모 준수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 × ax(공개공지 설치 의무 부과 면적/대지면적) a=0.1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조성면적 전체 적용 · 함상률로 조성시 a=1.2 적용
				· 피로티구조 : a=0.5 · 함상률구조 : a=0.8 · 개방형구조 : a=1.0
	공공보행도로	지침 준수시	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 × ax(조성면적/대지면적) · 개방형 : a=1 · 피로티 : a=0.5
				· 기준미판지구 후퇴(3m)부분 및 법정도로폭 확보를 위한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미적용
	전면공지	지침 준수시	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 × 1.0x(조성면적/대지면적)
				· 시행지침 제 36조 참조
	보행통선 및 횡단	지침 준수시	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함상률구조 : a=1.0
형태 건축	옥상 녹화	서울시 옥상녹화 조성기준 준수시	지침 준수시	· 옥상녹화면적은 옥상면적의 50% 이상(조성시) · 옥상녹화 면적/대지면적 조성률 면적에 대한 면적 제외 · 200㎡ 이상대지 : 대지내 조성 면적 제외 · 200㎡ 이하대지 : 전체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성
				· 기준용적률 × 0.15x(자연지반면적/대지면적)
	자연지반보존	지침 준수시	지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15x(자연지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0.05
	중수도 도입	지침 준수시	지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지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흥기간(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 제 부칙(제 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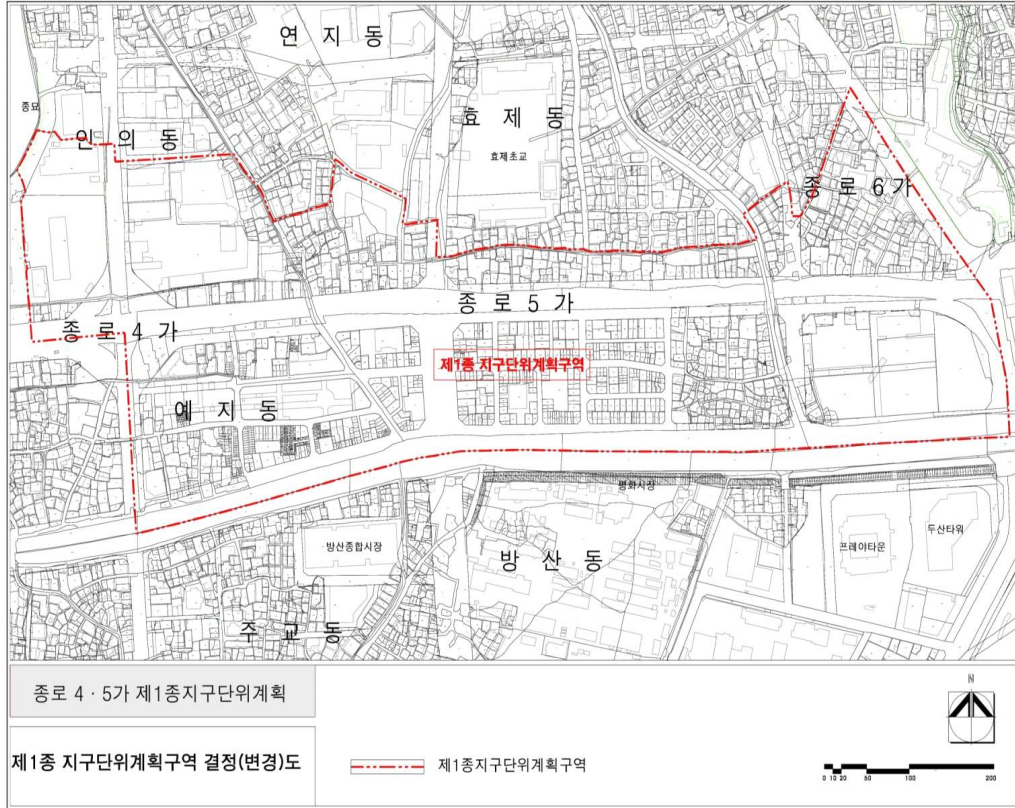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80. 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4.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라. 용적률 및 건폐율 연동계획		라. 용적률 및 건폐율 연동계획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지침내용</th></tr> <tr> <th>위치</th><th>적용 지역</th><th>건폐율</th><th>기존</th><th>용적률 상한</th></tr> <tr> <td rowspan="4">용적률/건폐율 계획</td><td>C-1</td><td>정계천변 및 간선가로변</td><td>60%이하</td><td rowspan="5">400%</td><td>600%이하</td></tr> <tr> <td>C-2</td><td>도시기반시설 확보지역(정계천 및 간선가로변)</td><td>70%이하</td><td>800% 이하</td></tr> <tr> <td>C-3</td><td>이면부 일대</td><td>70%이하</td><td>500%이하</td></tr> <tr> <td>C-4</td><td>이면부 일대 (광장시장 블록 제외)</td><td>80%이하</td><td>400%이하</td></tr> </table>		구분	지침내용					위치	적용 지역	건폐율	기존	용적률 상한	용적률/건폐율 계획	C-1	정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60%이하	400%	600%이하	C-2	도시기반시설 확보지역(정계천 및 간선가로변)	70%이하	800% 이하	C-3	이면부 일대	70%이하	500%이하	C-4	이면부 일대 (광장시장 블록 제외)	80%이하	400%이하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지침내용</th></tr> <tr> <th>위치</th><th>적용 지역</th><th>건폐율</th><th>기존</th><th>용적률 하용</th><th>상한</th></tr> <tr> <td rowspan="4">용적률/건폐율 계획</td><td>C-1</td><td>정계천변 및 간선가로변</td><td>60%이하</td><td rowspan="5">400%</td><td>600%이하</td><td rowspan="4">800% 이하</td></tr> <tr> <td>C-2</td><td>도시기반시설 확보지역(정계천 및 간선가로변)</td><td>70%이하</td><td>600%이하</td></tr> <tr> <td>C-3</td><td>이면부 일대</td><td>70%이하</td><td>500%이하</td></tr> <tr> <td>C-4</td><td>이면부 일대 (광장시장 블록 제외)</td><td>80%이하</td><td>400%이하</td></tr> </table>		구분	지침내용					위치	적용 지역	건폐율	기존	용적률 하용	상한	용적률/건폐율 계획	C-1	정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60%이하	400%	600%이하	800% 이하	C-2	도시기반시설 확보지역(정계천 및 간선가로변)	70%이하	600%이하	C-3	이면부 일대	70%이하	500%이하	C-4	이면부 일대 (광장시장 블록 제외)	80%이하	400%이하																																																																
구분	지침내용																																																																																																																															
	위치	적용 지역	건폐율	기존	용적률 상한																																																																																																																											
용적률/건폐율 계획	C-1	정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60%이하	400%	600%이하																																																																																																																											
	C-2	도시기반시설 확보지역(정계천 및 간선가로변)	70%이하		800% 이하																																																																																																																											
	C-3	이면부 일대	70%이하		500%이하																																																																																																																											
	C-4	이면부 일대 (광장시장 블록 제외)	80%이하		400%이하																																																																																																																											
구분	지침내용																																																																																																																															
	위치	적용 지역	건폐율	기존	용적률 하용	상한																																																																																																																										
용적률/건폐율 계획	C-1	정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60%이하	400%	600%이하	800% 이하																																																																																																																										
	C-2	도시기반시설 확보지역(정계천 및 간선가로변)	70%이하		600%이하																																																																																																																											
	C-3	이면부 일대	70%이하		500%이하																																																																																																																											
	C-4	이면부 일대 (광장시장 블록 제외)	80%이하		400%이하																																																																																																																											
5. 기타에 관한 사항 마.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인센티브 적용기준표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계획요소</th><th>연화 조건</th><th>연화내용</th><th>비고</th></tr> <tr> <td rowspan="4">용적률</td><td>획지 계획</td><td>획지 단위 개발</td><td>기존용적률 x0.2</td><td></td></tr> <tr> <td>건축물용도</td><td>관장 용도</td><td>전용관장</td><td></td></tr> <tr> <td rowspan="2">대지내 공지</td><td>공개 공지</td><td>위치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td><td>개방형 a=1.0</td></tr> <tr> <td>잠시형, 침상형 공지</td><td>위치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td><td>개방형 a=0.5</td></tr> <tr> <td rowspan="12">용적률</td><td rowspan="2">대지내 종로</td><td>보행 종로</td><td>경정보행 종로/보차존용 종로</td><td></td></tr> <tr> <td>정계천변 1층부 가로변</td><td>정계천변 1층부 가로변</td><td></td></tr> <tr> <td rowspan="4">건축물형태 및 외관</td><td>정계천변 고층부</td><td>정계천변 고층부</td><td></td></tr> <tr> <td>정계천변 개방형</td><td>정계천변 개방형</td><td></td></tr> <tr> <td>정계천변 개방형</td><td>정계천변 개방형</td><td></td></tr> <tr> <td>정계천변 개방형</td><td>정계천변 개방형</td><td></td></tr> <tr> <td rowspan="4">환경 친화적 건축물</td><td>자연지반보존</td><td>자연지반보존</td><td></td></tr> <tr> <td>옥상녹화</td><td>옥상녹화</td><td></td></tr> <tr> <td>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td><td>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td><td></td></tr> <tr> <td>주상차량</td><td>주상차량</td><td></td></tr> <tr> <td rowspan="2">주차 및 차량 동선</td><td>중형주차장</td><td>중형주차장</td><td></td></tr> <tr> <td>주상차량</td><td>주상차량</td><td></td></tr> </table>		구분		계획요소	연화 조건	연화내용	비고	용적률	획지 계획	획지 단위 개발	기존용적률 x0.2		건축물용도	관장 용도	전용관장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위치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	개방형 a=1.0	잠시형, 침상형 공지	위치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	개방형 a=0.5	용적률	대지내 종로	보행 종로	경정보행 종로/보차존용 종로		정계천변 1층부 가로변	정계천변 1층부 가로변		건축물형태 및 외관	정계천변 고층부	정계천변 고층부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옥상녹화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주상차량	주상차량		주차 및 차량 동선	중형주차장	중형주차장		주상차량	주상차량		■인센티브 적용기준표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계획요소</th><th>연화 조건</th><th>연화내용</th><th>비고</th></tr> <tr> <td rowspan="4">용적률</td><td>획지 계획</td><td>획지 단위 개발</td><td>기존용적률 x0.2</td><td></td></tr> <tr> <td>건축물용도</td><td>관장 용도</td><td>전용관장</td><td></td></tr> <tr> <td rowspan="2">대지내 공지</td><td>공개 공지</td><td>위치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td><td>개방형 a=1.0</td></tr> <tr> <td>잠시형, 침상형 공지</td><td>위치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td><td>개방형 a=0.5</td></tr> <tr> <td rowspan="12">용적률</td><td rowspan="2">대지내 종로</td><td>보행 종로</td><td>경정보행 종로/보차존용 종로</td><td></td></tr> <tr> <td>정계천변 1층부 가로변</td><td>정계천변 1층부 가로변</td><td></td></tr> <tr> <td rowspan="4">건축물형태 및 외관</td><td>정계천변 고층부</td><td>정계천변 고층부</td><td></td></tr> <tr> <td>정계천변 개방형</td><td>정계천변 개방형</td><td></td></tr> <tr> <td>정계천변 개방형</td><td>정계천변 개방형</td><td></td></tr> <tr> <td>정계천변 개방형</td><td>정계천변 개방형</td><td></td></tr> <tr> <td rowspan="4">환경 친화적 건축물</td><td>자연지반보존</td><td>자연지반보존</td><td></td></tr> <tr> <td>옥상녹화</td><td>옥상녹화</td><td></td></tr> <tr> <td>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td><td>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td><td></td></tr> <tr> <td>주상차량</td><td>주상차량</td><td></td></tr> <tr> <td rowspan="4">주차 및 차량 동선</td><td>중형주차장</td><td>중형주차장</td><td></td></tr> <tr> <td>주상차량</td><td>주상차량</td><td></td></tr> </table>		구분	계획요소	연화 조건	연화내용	비고	용적률	획지 계획	획지 단위 개발	기존용적률 x0.2		건축물용도	관장 용도	전용관장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위치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	개방형 a=1.0	잠시형, 침상형 공지	위치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	개방형 a=0.5	용적률	대지내 종로	보행 종로	경정보행 종로/보차존용 종로		정계천변 1층부 가로변	정계천변 1층부 가로변		건축물형태 및 외관	정계천변 고층부	정계천변 고층부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옥상녹화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주상차량	주상차량		주차 및 차량 동선	중형주차장	중형주차장		주상차량	주상차량
구분	계획요소	연화 조건	연화내용	비고																																																																																																																												
용적률	획지 계획	획지 단위 개발	기존용적률 x0.2																																																																																																																													
	건축물용도	관장 용도	전용관장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위치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	개방형 a=1.0																																																																																																																												
		잠시형, 침상형 공지	위치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	개방형 a=0.5																																																																																																																												
용적률	대지내 종로	보행 종로	경정보행 종로/보차존용 종로																																																																																																																													
		정계천변 1층부 가로변	정계천변 1층부 가로변																																																																																																																													
	건축물형태 및 외관	정계천변 고층부	정계천변 고층부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옥상녹화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주상차량	주상차량																																																																																																																													
	주차 및 차량 동선	중형주차장	중형주차장																																																																																																																													
		주상차량	주상차량																																																																																																																													
구분	계획요소	연화 조건	연화내용	비고																																																																																																																												
용적률	획지 계획	획지 단위 개발	기존용적률 x0.2																																																																																																																													
	건축물용도	관장 용도	전용관장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위치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	개방형 a=1.0																																																																																																																												
		잠시형, 침상형 공지	위치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	개방형 a=0.5																																																																																																																												
용적률	대지내 종로	보행 종로	경정보행 종로/보차존용 종로																																																																																																																													
		정계천변 1층부 가로변	정계천변 1층부 가로변																																																																																																																													
	건축물형태 및 외관	정계천변 고층부	정계천변 고층부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정계천변 개방형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옥상녹화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주상차량	주상차량																																																																																																																													
	주차 및 차량 동선	중형주차장	중형주차장																																																																																																																													
		주상차량	주상차량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C-3(이면부 일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적률은 416.5%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C-4(이면부 일대, 광장시장 블록 제외)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66.8%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적률은 333.2%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면적을 선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81. 둔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나.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결정조서	(2) 용적률 • 각 대지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 용적률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용적률 • 각 대지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 용적률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table><tr><th>용도지역</th><th>용적률</th></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td><td>600% 이하</td></tr></table>	용도지역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 이하	<table><tr><th>용도지역</th><th>용적률</th></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td><td>600% 이하</td></tr></table>	용도지역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 이하
	용도지역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 이하								
용도지역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 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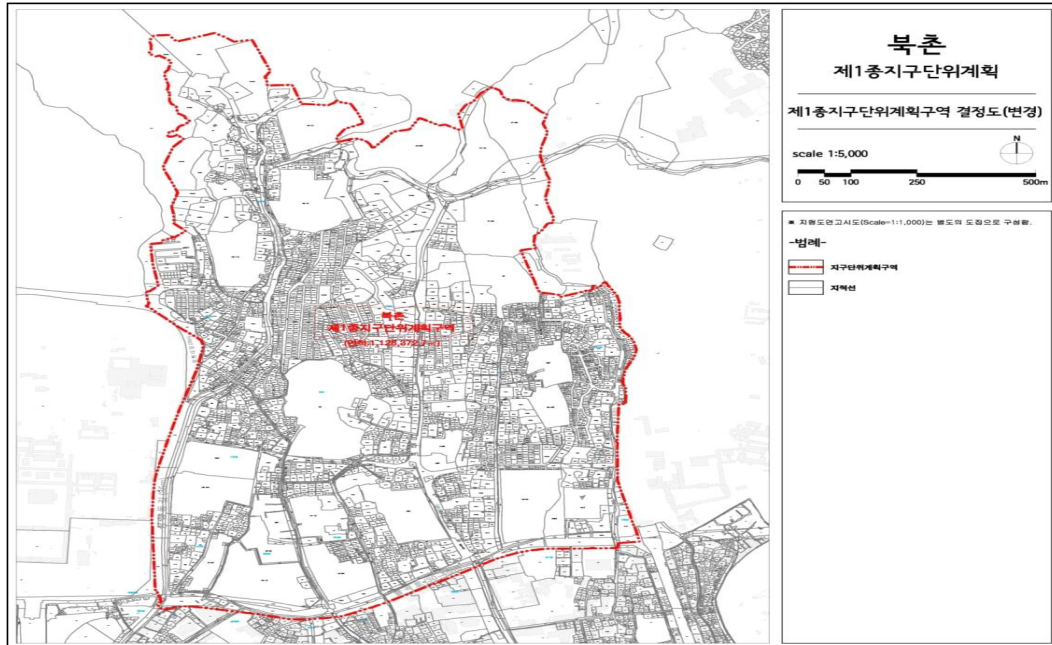


82.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3)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결정조서 나. 용적률 결정조서	☐ 용적률 계획 • 각 필지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table><tr><th>용도지역</th><th>용적률</th><th>비 고</th></tr><tr><td>일반상업지역</td><td>600% 이하</td><td rowspan="5">-</td></tr><tr><td>준주거지역</td><td>400% 이하</td></tr><tr><td>제2종 일반주거지역</td><td>200% 이하</td></tr><tr><td>제1종 일반주거지역</td><td>150% 이하</td></tr><tr><td>자연녹지지역</td><td>50% 이하</td></tr></table>	용도지역	용적률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	준주거지역	4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하	☐ 용적률 계획 • 각 필지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table><tr><th>용도지역</th><th>용적률</th><th>비 고</th></tr><tr><td>일반상업지역</td><td>600% 이하</td><td rowspan="5">-</td></tr><tr><td>준주거지역</td><td>400% 이하</td></tr><tr><td>제2종 일반주거지역</td><td>200% 이하</td></tr><tr><td>제1종 일반주거지역</td><td>150% 이하</td></tr><tr><td>자연녹지지역</td><td>50% 이하</td></tr></table>	용도지역	용적률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	준주거지역	4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하
	용도지역	용적률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																												
준주거지역	4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하																													
용도지역	용적률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																												
준주거지역	4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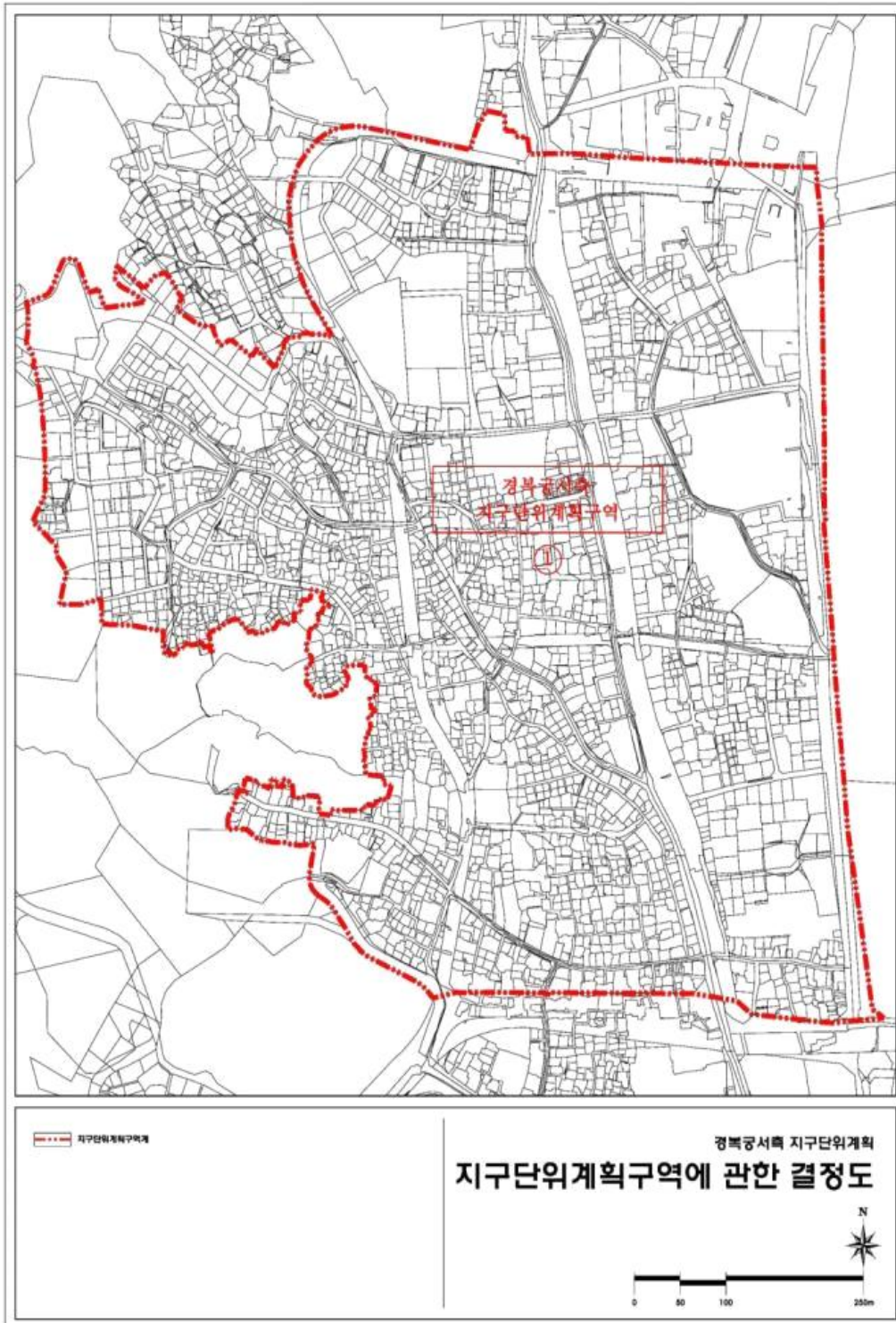
83.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 밀도 및 높이 결정조서	(2) 용적률 계획 • 각 구역에 속한 필지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관계법령에 완화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2) 용적률 계획 • 각 구역에 속한 필지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관계법령에 완화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table><tr><th>구 분</th><th>용 적 률</th><th>비 고</th></tr><tr><td rowspan="2">한옥지정구역</td><td>150% 이하</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r><tr><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한옥관장구역</td><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 rowspan="2">자하문로구역</td><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250% 이하</td><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r><tr><td rowspan="2">효자로구역</td><td>150% 이하</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r><tr><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 rowspan="2">팔운대길구역</td><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250% 이하</td><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r><tr><td rowspan="3">사직로구역</td><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250% 이하</td><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r><tr><td>600% 이하</td><td>일반상업지역</td></tr><tr><td rowspan="2">물길영향구역</td><td>150% 이하</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r><tr><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일반관리구역-1</td><td>150% 이하</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r><tr><td>일반관리구역-2</td><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일반관리구역-3</td><td>250% 이하</td><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r><tr><td>일반관리구역-4</td><td>150% 이하</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r></table>	구 분	용 적 률	비 고	한옥지정구역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한옥관장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하문로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효자로구역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팔운대길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직로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600% 이하	일반상업지역	물길영향구역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1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2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3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4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table><tr><th>구 분</th><th>용 적 률</th><th>비 고</th></tr><tr><td rowspan="2">한옥지정구역</td><td>150% 이하</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r><tr><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한옥관장구역</td><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 rowspan="2">자하문로구역</td><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250% 이하</td><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r><tr><td rowspan="2">효자로구역</td><td>150% 이하</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r><tr><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 rowspan="2">팔운대길구역</td><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250% 이하</td><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r><tr><td rowspan="3">사직로구역</td><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250% 이하</td><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r><tr><td>600% 이하</td><td>일반상업지역</td></tr><tr><td rowspan="2">물길영향구역</td><td>150% 이하</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r><tr><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일반관리구역-1</td><td>150% 이하</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r><tr><td>일반관리구역-2</td><td>200% 이하</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r><tr><td>일반관리구역-3</td><td>250% 이하</td><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r><tr><td>일반관리구역-4</td><td>150% 이하</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r></table>	구 분	용 적 률	비 고	한옥지정구역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한옥관장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하문로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효자로구역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팔운대길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직로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600% 이하	일반상업지역	물길영향구역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1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2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3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4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용 적 률	비 고																																																																																																			
	한옥지정구역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한옥관장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하문로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효자로구역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팔운대길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직로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600% 이하	일반상업지역																																																																																																			
	물길영향구역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1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2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3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4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용 적 률	비 고																																																																																																				
한옥지정구역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한옥관장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하문로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효자로구역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팔운대길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직로구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600% 이하	일반상업지역																																																																																																				
물길영향구역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1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2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3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4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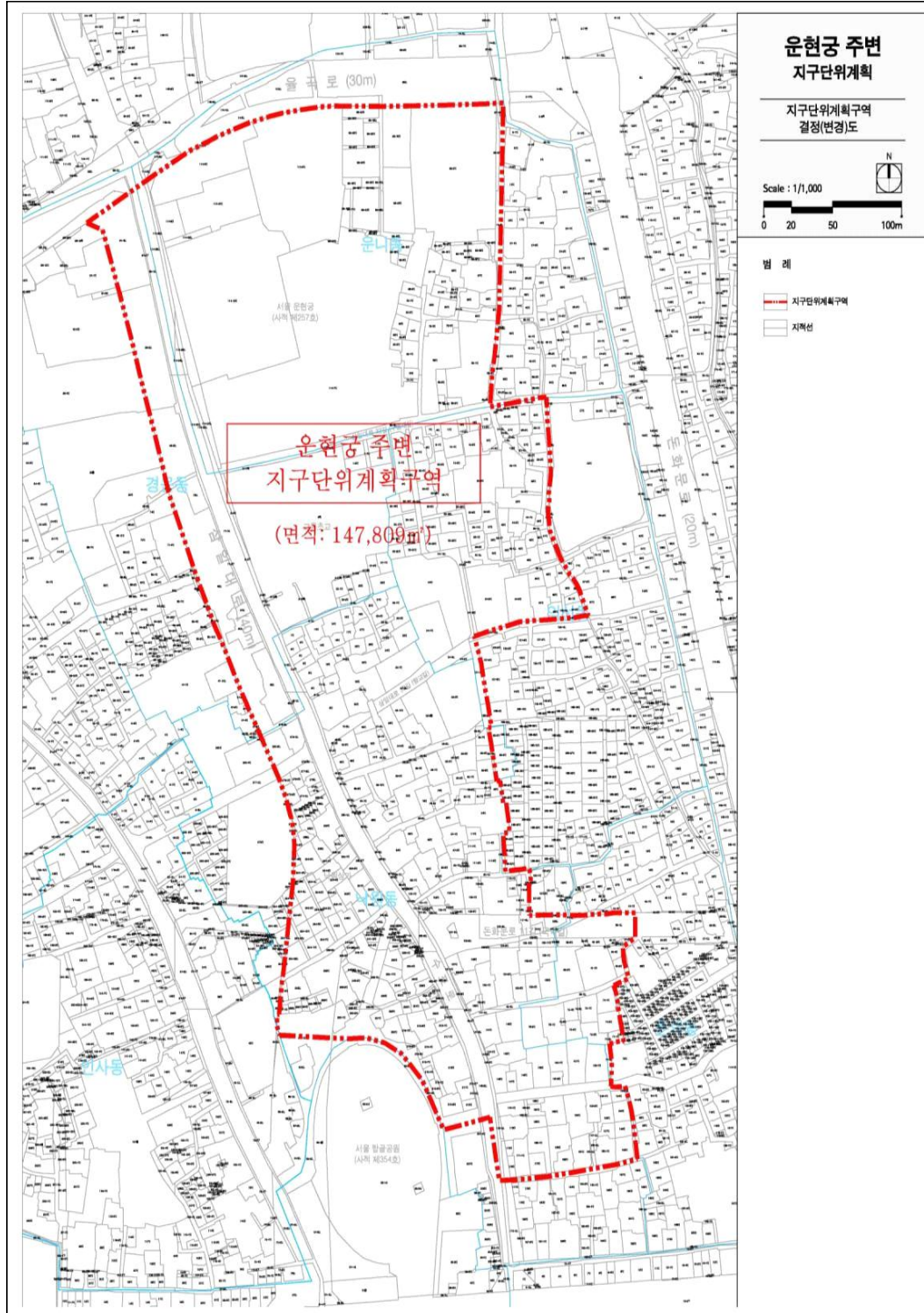


84.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나.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결정조서 (2) 용적률	□용적률계획 결정조서			□용적률계획 결정조서														
	<table><tr><th>적용구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td><td>450% 이하</td><td>600% 이하</td></tr></table>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50% 이하	600% 이하	<table><tr><th>적용구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td><td>450% 이하</td><td>600% 이하</td></tr></table>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50% 이하	600% 이하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50% 이하	600% 이하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50% 이하	600% 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4조 (용적률)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기준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600% 범위 이하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기준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600% 범위 이하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table><tr><th>적용구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비고</th></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td><td>450% 이하</td><td>600% 이하</td><td>용적률 완화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td></tr></table>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50% 이하	600% 이하	용적률 완화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table><tr><th>적용구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비고</th></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td><td>450% 이하</td><td>600% 이하</td><td>용적률 완화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td></tr></table>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50% 이하	600% 이하	용적률 완화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50% 이하	600% 이하	용적률 완화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50% 이하	600% 이하	용적률 완화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②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건축 시 허용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 3을 따른다.	②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③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지상부 설치를 의미)이상 계획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지상부 설치를 의미)이상 계획하여야 한다.																	
④ 도면표시	④ 도면표시																	
	<table><tr><td>허용/기준</td><td></td></tr><tr><td>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td><td></td></tr></table>	허용/기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table><tr><td>허용/기준</td><td></td></tr><tr><td>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td><td></td></tr></table>	허용/기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허용/기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허용/기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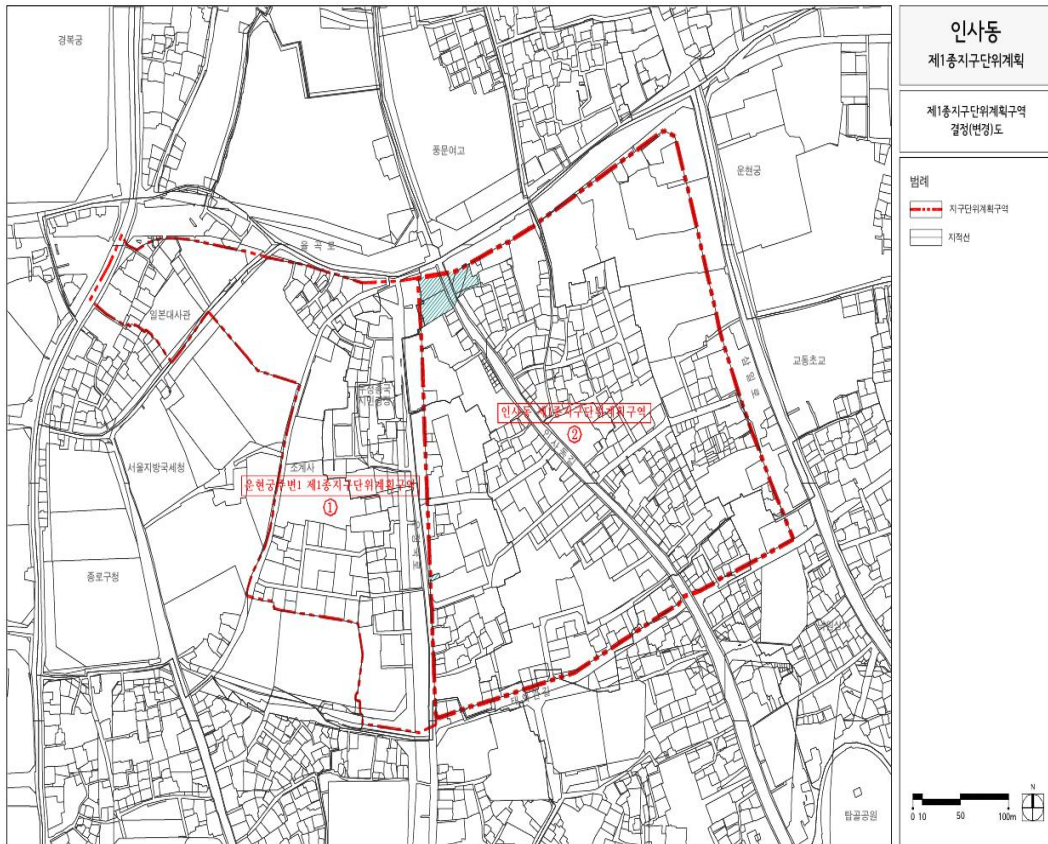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85. 인사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 서 나.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결정조서 (2) 용적률	□용적률계획 결정조서		□용적률계획 결정조서	
	적용구역	용적률	적용구역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 이하 (시·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 이하 (시·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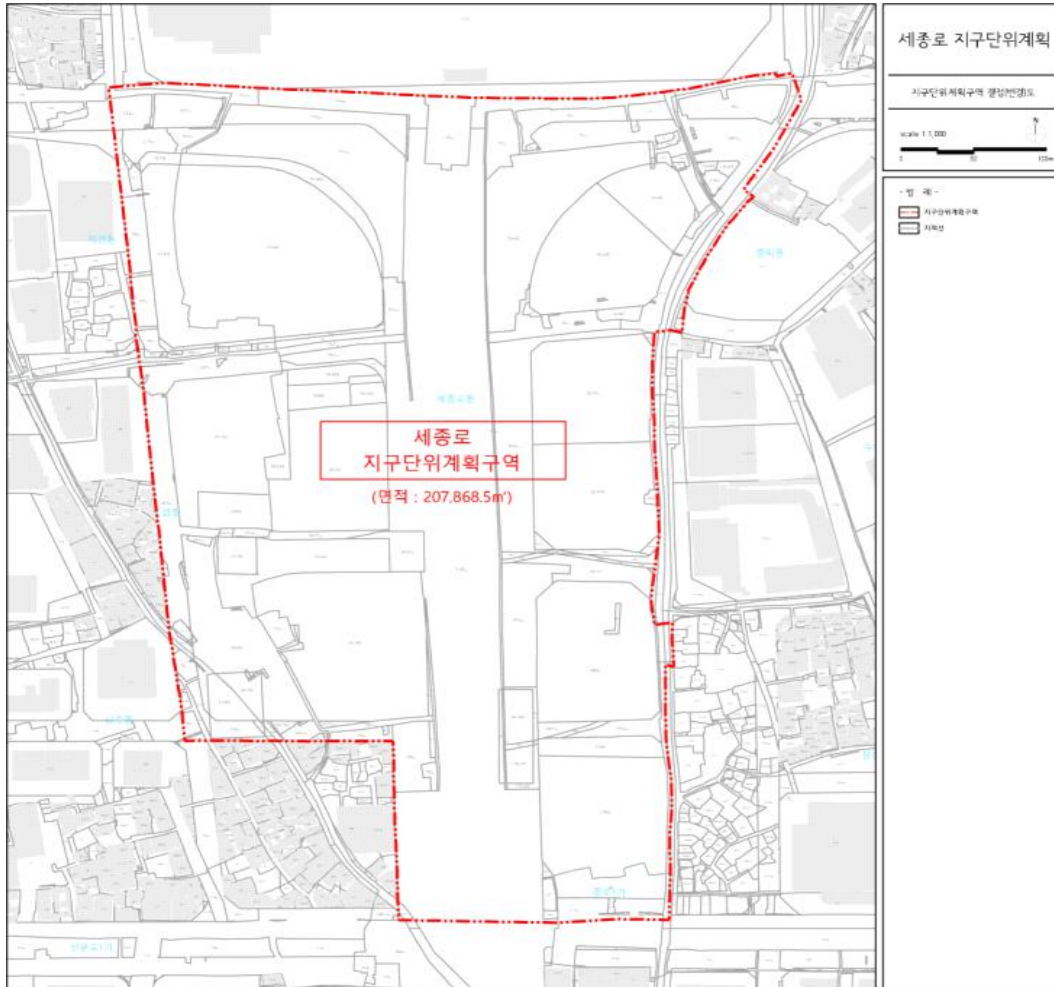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86.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용적률계획 결정조서		□용적률계획 결정조서																	
③ 확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 서 나.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결정조서 (2) 용적률	<table><tr><th colspan="2">변경</th><th rowspan="2">비고</th></tr><tr><th>적용구역</th><th>용적률</th></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td><td>600%이하</td><td>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td></tr></table>		변경		비고	적용구역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table><tr><th colspan="2">변경</th><th rowspan="2">비고</th></tr><tr><th>적용구역</th><th>용적률</th></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td><td>600%이하</td><td>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td></tr></table>		변경		비고	적용구역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변경		비고																	
	적용구역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변경		비고																		
적용구역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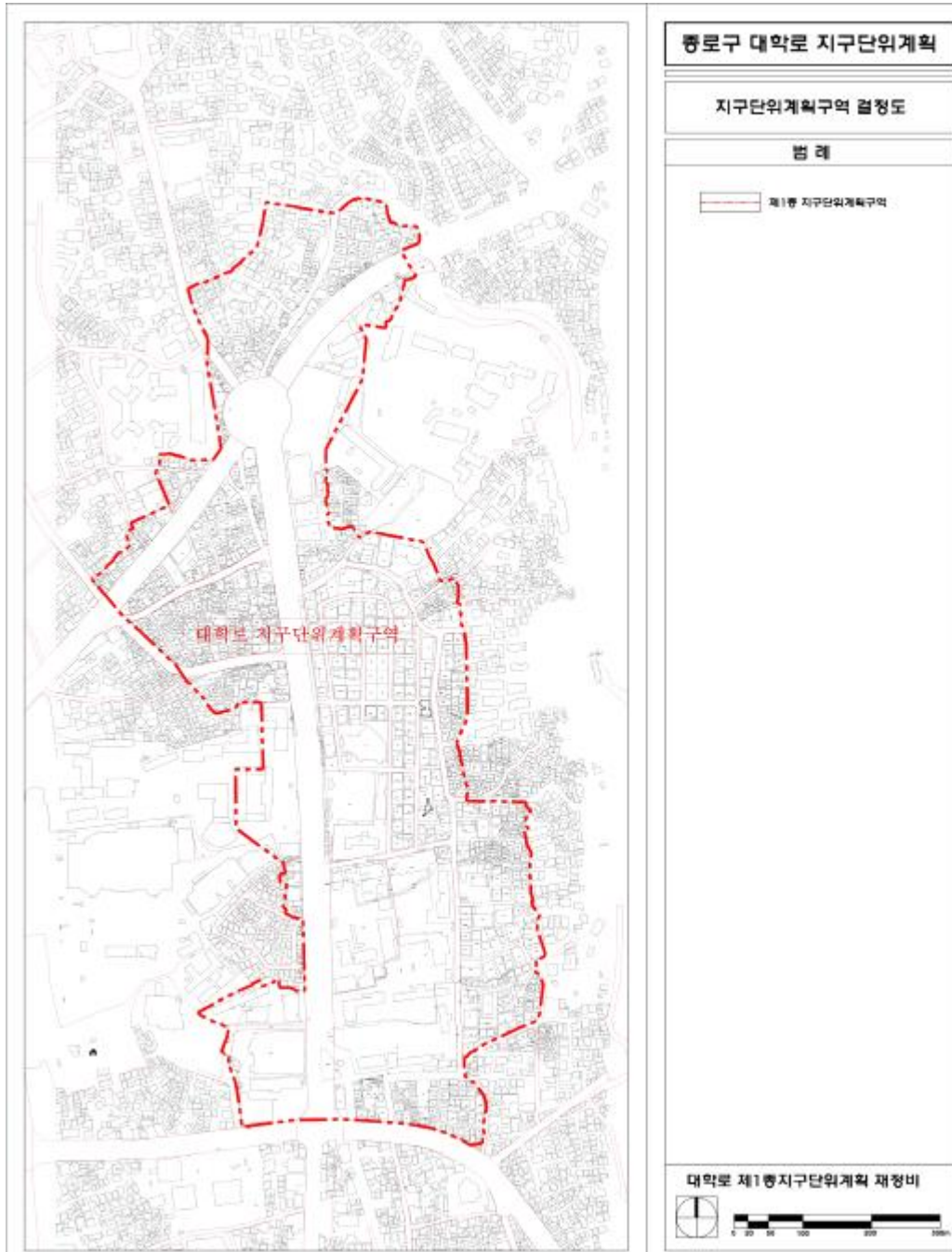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87. 대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III 학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 서 다. 건축물의 개발밀도 및 높이	2) 용적률		2) 용적률			
	구분	용적률	비 고	구분	용적률	비 고
	일반상업지역(비도심)	8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일반상업지역(비도심)	8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일반상업지역(도심)	600% 이하		일반상업지역(도심)	600% 이하	
	준주거지역	400% 이하		준주거지역	4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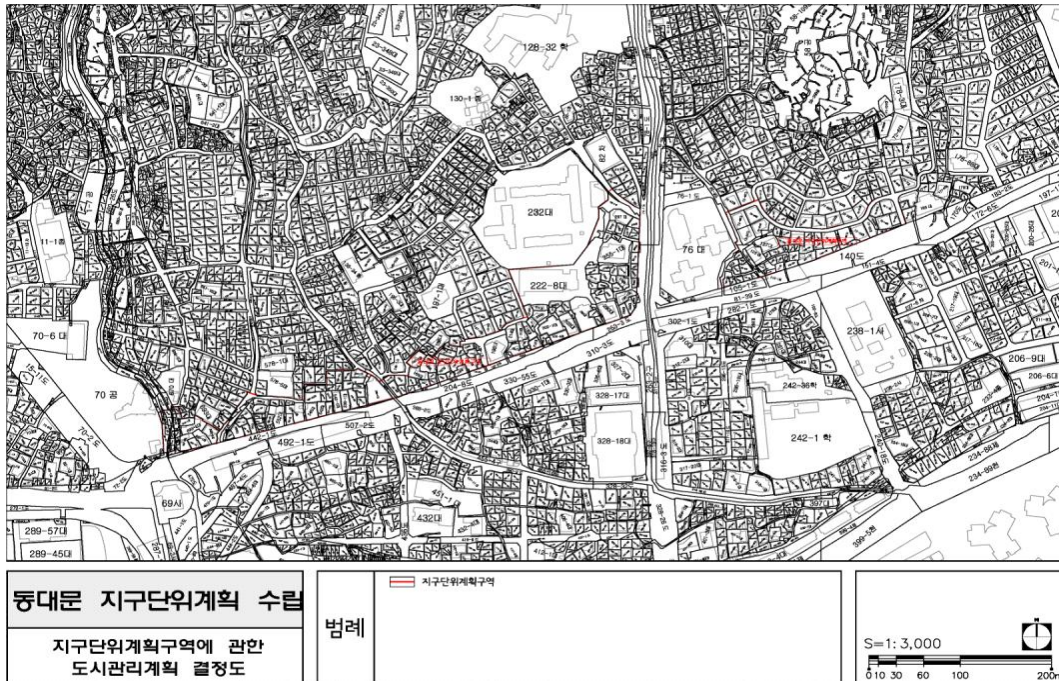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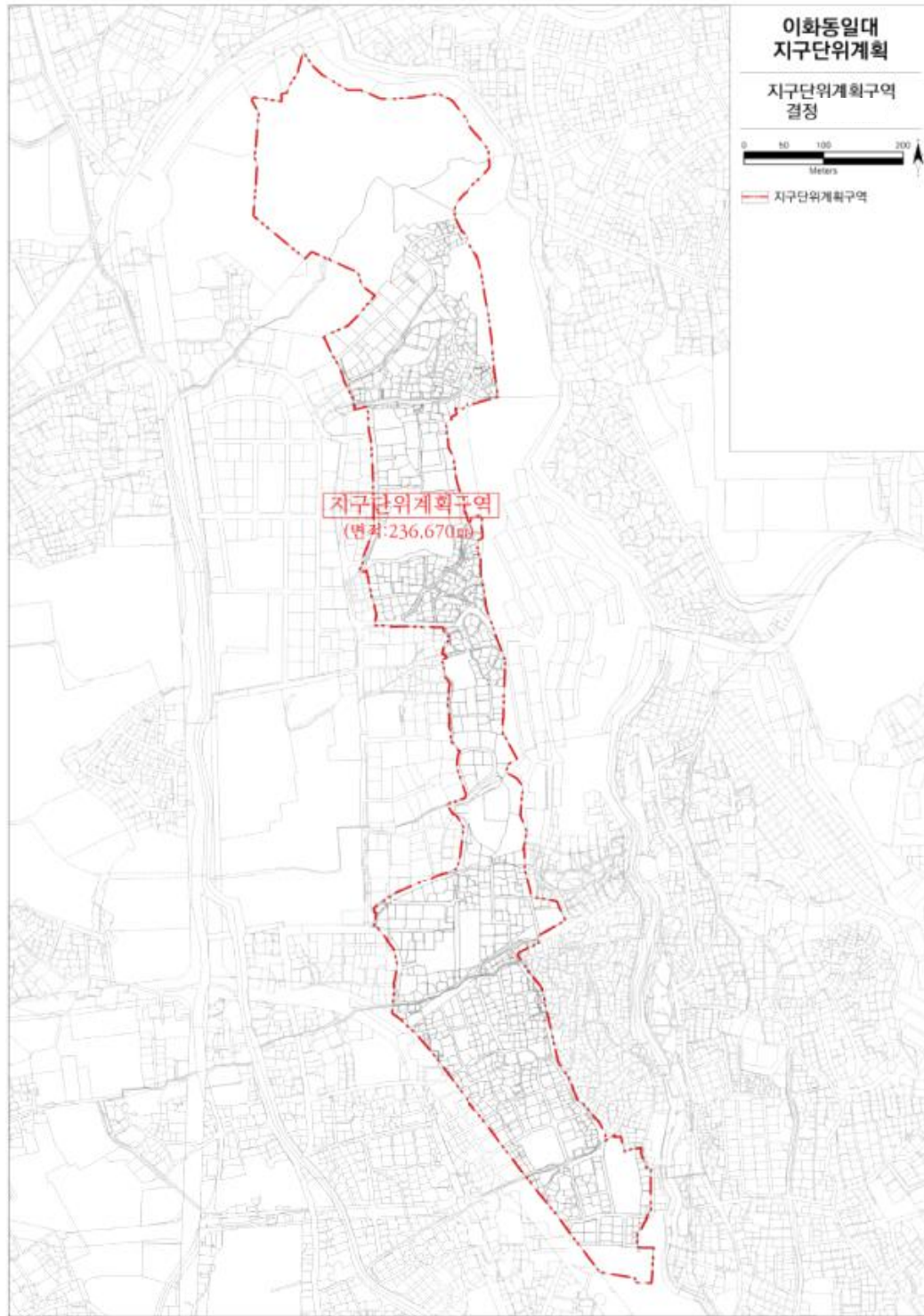
88.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의 용적률																																															
	<table><tr><th rowspan="2">적용구역</th><th colspan="2">용적률</th></tr><tr><th>기준</th><th>허용</th></tr><tr><td>일반상업지역(창신동)</td><td>400% 이하</td><td>600% 이하</td></tr><tr><td>일반상업지역(송인동)</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r><tr><td>준주거지역</td><td>300% 이하</td><td>360% 이하</td></tr><tr><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150% 이하</td><td>150% 이하</td></tr><tr><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200% 이하</td><td>200% 이하</td></tr><tr><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50% 이하</td><td>250% 이하</td></tr></table>	적용구역	용적률		기준	허용	일반상업지역(창신동)	400% 이하	600% 이하	일반상업지역(송인동)	600% 이하	800% 이하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1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table><tr><th rowspan="2">적용구역</th><th colspan="2">용적률</th></tr><tr><th>기준</th><th>허용</th></tr><tr><td>일반상업지역(창신동)</td><td>400% 이하</td><td>600% 이하</td></tr><tr><td>일반상업지역(송인동)</td><td>600% 이하</td><td>800% 이하</td></tr><tr><td>준주거지역</td><td>300% 이하</td><td>360% 이하</td></tr><tr><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150% 이하</td><td>150% 이하</td></tr><tr><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200% 이하</td><td>200% 이하</td></tr><tr><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50% 이하</td><td>250% 이하</td></tr></table>	적용구역	용적률		기준	허용	일반상업지역(창신동)	400% 이하	600% 이하	일반상업지역(송인동)	600% 이하	800% 이하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1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적용구역		용적률																																													
		기준	허용																																													
	일반상업지역(창신동)	400% 이하	600% 이하																																													
	일반상업지역(송인동)	600% 이하	800% 이하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1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적용구역	용적률																																															
	기준	허용																																														
일반상업지역(창신동)	400% 이하	600% 이하																																														
일반상업지역(송인동)	600% 이하	800% 이하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1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90. 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용적률 결정조서 <table><tr><th>구분</th><th>용적률</th><th>비고</th></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td><td>600% 이하</td><td>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td></tr></table>	구분	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 용적률 결정조서 <table><tr><th>구분</th><th>용적률</th><th>비고</th></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td><td>600% 이하</td><td>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td></tr></table>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구분	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구분	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구분	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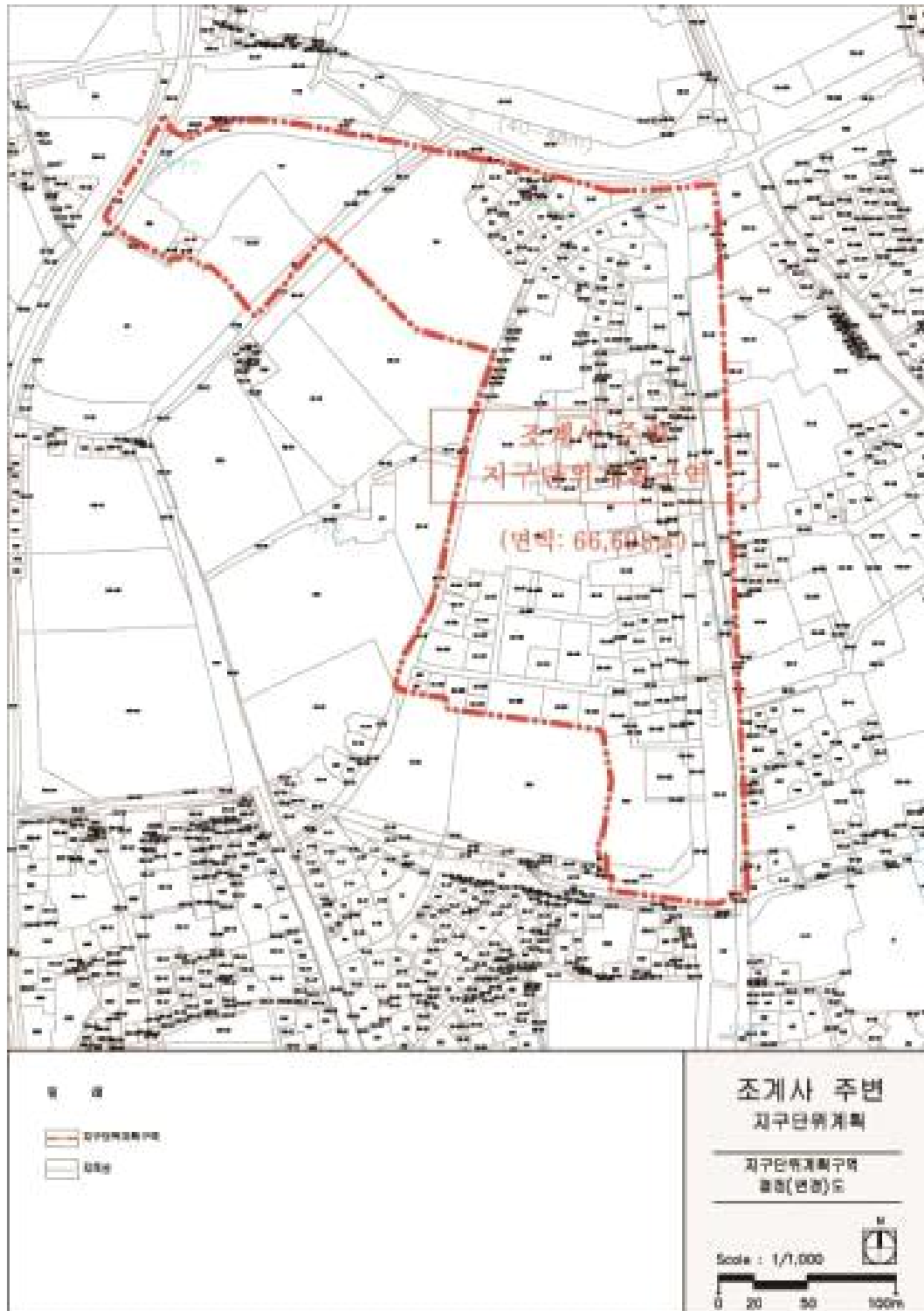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91.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결정조서	☐ 용적률계획 결정(변경)조서 <table><tr><th>적용구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비고</th></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td><td>450% 이하</td><td>600% 이하</td><td>-</td></tr></table>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50% 이하	600% 이하	-	☐ 용적률계획 결정(변경)조서 <table><tr><th>적용구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비고</th></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td><td>450% 이하</td><td>600% 이하</td><td>-</td></tr></table>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50% 이하	600% 이하	-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50% 이하	600% 이하	-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50% 이하	600% 이하	-																							
구 분	기 정	변 경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4조 (용적률)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기준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600% 범위 이하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table><tr><th>적용구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비고</th></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td><td>450%이하</td><td>600%이하</td><td>용적률 완화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td></tr></table> ②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건축 시 허용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 3을 따른다. ③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지상부 설치를 의미)이상 계획하여야 한다. ④ 도면표시 <table><tr><td>허용/기준</td><td></td></tr><tr><td>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td><td></td></tr></table>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	450%이하	600%이하	용적률 완화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허용/기준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기준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600% 범위 이하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table><tr><th>적용구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비고</th></tr><tr><td>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td><td>450%이하</td><td>600%이하</td><td>용적률 완화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td></tr></table> ②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③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지상부 설치를 의미)이상 계획하여야 한다. ④ 도면표시 <table><tr><td>허용/기준</td><td></td></tr><tr><td>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td><td></td></tr></table>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	450%이하	600%이하	용적률 완화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허용/기준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	450%이하	600%이하	용적률 완화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허용/기준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	450%이하	600%이하	용적률 완화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허용/기준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92. 혜화 · 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용적률 결정조서	☐ 용적률 계획 <table><tr><th>적용구역</th><th>계획내용</th><th>비고</th></tr><tr><td>자연녹지지역</td><td>50% 이하</td><td>-</td></tr><tr><td>제1종 일반주거지역</td><td>150% 이하</td><td>-</td></tr><tr><td>제2종 일반주거지역</td><td>200% 이하</td><td>-</td></tr><tr><td>제3종 일반주거지역</td><td>250% 이하</td><td>-</td></tr><tr><td>일반상업지역</td><td>600% 이하</td><td>-</td></tr></table>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자연녹지지역	50%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	☐ 용적률 계획 <table><tr><th>적용구역</th><th>계획내용</th><th>비고</th></tr><tr><td>자연녹지지역</td><td>50% 이하</td><td>-</td></tr><tr><td>제1종 일반주거지역</td><td>150% 이하</td><td>-</td></tr><tr><td>제2종 일반주거지역</td><td>200% 이하</td><td>-</td></tr><tr><td>제3종 일반주거지역</td><td>250% 이하</td><td>-</td></tr><tr><td>일반상업지역</td><td>600% 이하</td><td>-</td></tr></table>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자연녹지지역	50%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자연녹지지역	50%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자연녹지지역	50%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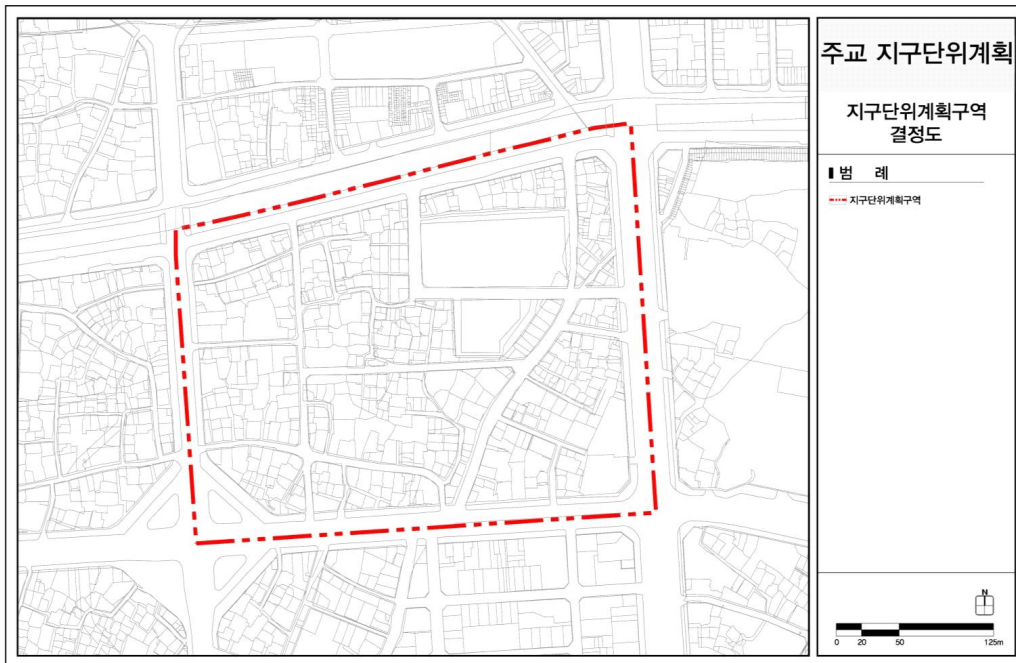
93. 주교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④ 지구단위계획 4.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라. 용적률 및 건폐율 연동계획		라. 용적률 및 건폐율 연동계획																														
	구분	지침내용																															
	용적률/건폐율 계획	<table> <tr> <th>위치</th><th>적용 지역</th><th>건폐율</th><th colspan="2">용적률</th></tr> <tr> <th></th><th></th><th></th><th>기준</th><th>허용 상한</th></tr> <tr> <td>C-1</td><td>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td><td>60% 이하</td><td rowspan="6">400%</td><td>600%이하</td></tr> <tr> <td>C-2</td><td>도시기반시설 확보지역 (청계천변)</td><td>70% 이하</td><td>600%이하</td></tr> <tr> <td>C-3</td><td>이면부일대</td><td>70% 이하</td><td>500%이하</td></tr> <tr> <td>C-4</td><td>이면부 일대</td><td>80% 이하</td><td>400%이하</td></tr> <tr> <td>C-5</td><td>분화재앙각지역 (성재묘)</td><td>80% 이하</td><td>600%이하</td></tr> </table>	위치	적용 지역	건폐율	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C-1	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60% 이하	400%	600%이하	C-2	도시기반시설 확보지역 (청계천변)	70% 이하	600%이하	C-3	이면부일대	70% 이하	500%이하	C-4	이면부 일대	80% 이하	400%이하	C-5	분화재앙각지역 (성재묘)	80% 이하	600%이하
위치	적용 지역	건폐율	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C-1	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60% 이하	400%	600%이하																													
C-2	도시기반시설 확보지역 (청계천변)	70% 이하		600%이하																													
C-3	이면부일대	70% 이하		500%이하																													
C-4	이면부 일대	80% 이하		400%이하																													
C-5	분화재앙각지역 (성재묘)	80% 이하		600%이하																													
	구분	지침내용																															
	용적률/건폐율 계획	<table> <tr> <th>위치</th><th>적용 지역</th><th>건폐율</th><th colspan="2">용적률</th></tr> <tr> <th></th><th></th><th></th><th>기준</th><th>허용 상한</th></tr> <tr> <td>C-1</td><td>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td><td>60% 이하</td><td rowspan="6">400%</td><td>600%이하</td></tr> <tr> <td>C-2</td><td>도시기반시설 확보지역 (청계천변)</td><td>70% 이하</td><td>600%이하</td></tr> <tr> <td>C-3</td><td>이면부일대</td><td>70% 이하</td><td>500%이하</td></tr> <tr> <td>C-4</td><td>이면부 일대</td><td>80% 이하</td><td>400%이하</td></tr> <tr> <td>C-5</td><td>분화재앙각지역 (성재묘)</td><td>80% 이하</td><td>600%이하</td></tr> </table>	위치	적용 지역	건폐율	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C-1	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60% 이하	400%	600%이하	C-2	도시기반시설 확보지역 (청계천변)	70% 이하	600%이하	C-3	이면부일대	70% 이하	500%이하	C-4	이면부 일대	80% 이하	400%이하	C-5	분화재앙각지역 (성재묘)	80% 이하	600%이하
위치	적용 지역	건폐율	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C-1	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60% 이하	400%	600%이하																													
C-2	도시기반시설 확보지역 (청계천변)	70% 이하		600%이하																													
C-3	이면부일대	70% 이하		500%이하																													
C-4	이면부 일대	80% 이하		400%이하																													
C-5	분화재앙각지역 (성재묘)	80% 이하		600%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적합건축물의 용도변화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C-3)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일대주거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C-4)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66.8%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일대주거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3.2%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및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일대주거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C-3)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비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 이하(비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C-4)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66.8% 이하(비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3.2% 이하(비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 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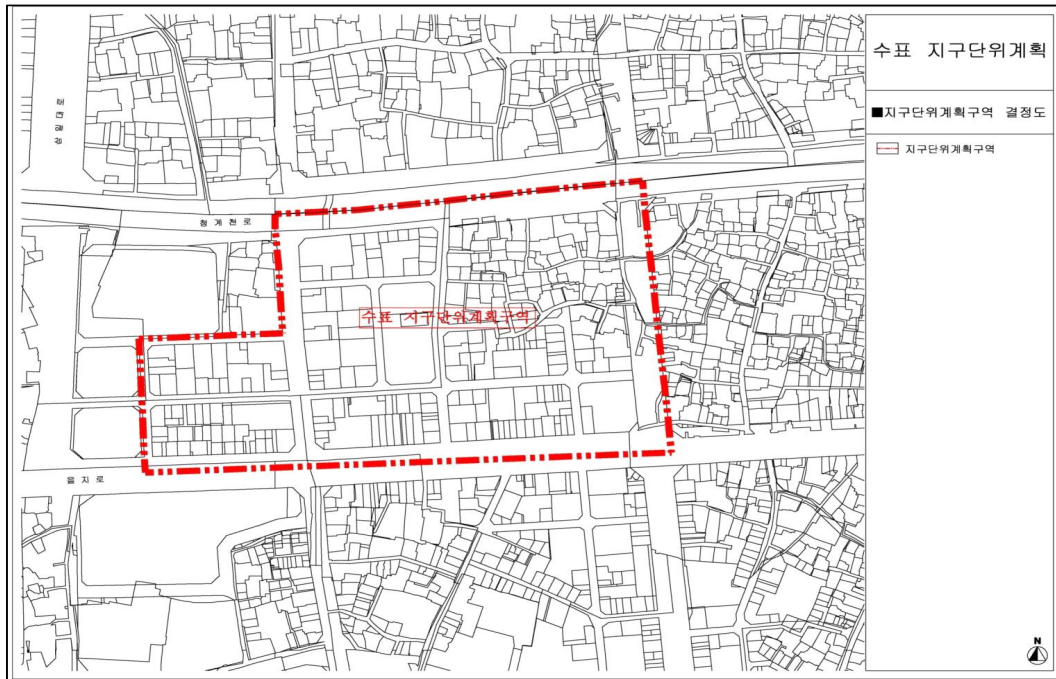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94. 수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계획	다. 용적률 : 변경 (1) 용적률 적용 : 변경	다. 용적률 : 변경 (1) 용적률 적용 : 변경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변 경</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지구단위계획 구역내</td><td>450%</td><td>600%</td><td>800%</td><td>변경사항 없음</td></tr><tr><td>을지로2가 101-1번지 외 1필지</td><td>450%</td><td>720%</td><td>800%</td><td>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td></tr></table>	구분	변 경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450%	600%	800%	변경사항 없음	을지로2가 101-1번지 외 1필지	450%	720%	800%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변 경</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tr><td>지구단위계획 구역내</td><td>450%</td><td>600%</td><td>800%</td><td>변경사항 없음</td></tr><tr><td>을지로2가 101-1번지 외 1필지</td><td>450%</td><td>720%</td><td>800%</td><td>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td></tr></table>	구분	변 경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450%	600%	800%	변경사항 없음	을지로2가 101-1번지 외 1필지	450%	720%	800%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
	구분		변 경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450%	600%	800%	변경사항 없음																																		
을지로2가 101-1번지 외 1필지	450%	720%	800%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																																		
구분	변 경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450%	600%	800%	변경사항 없음																																		
을지로2가 101-1번지 외 1필지	450%	720%	800%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호텔법,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이하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호텔법,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이하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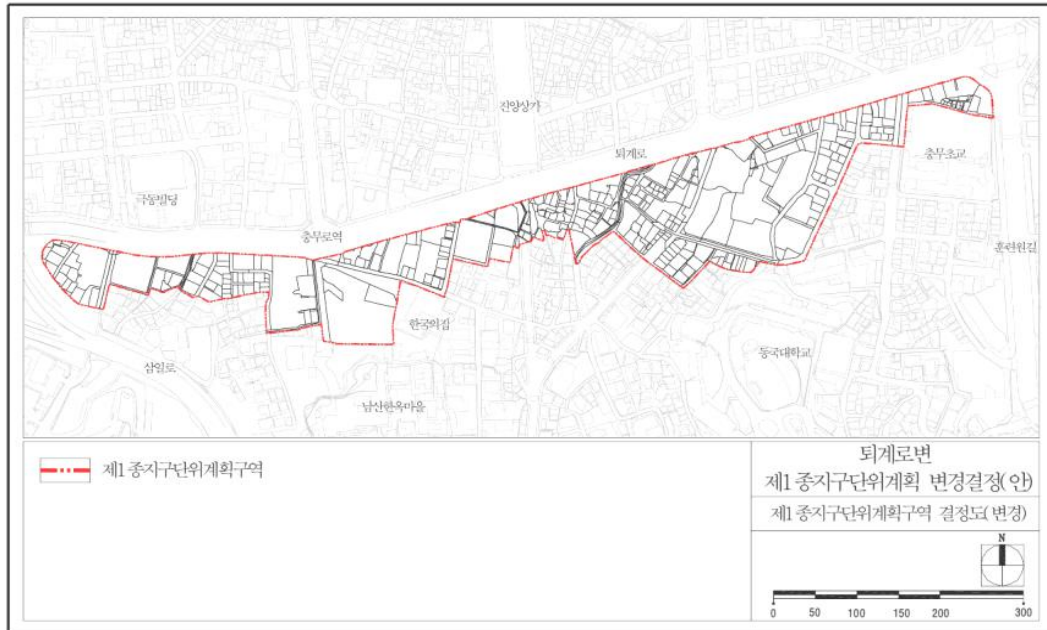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95. 회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 계획기준	■ 계획기준																																								
	<table><tr><th rowspan="2">도면 표시 번호</th><th rowspan="2">적용구역</th><th colspan="2">계획내용</th><th rowspan="2">비 고</th></tr><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r><tr><td>C1</td><td>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td><td>450%이하</td><td>600%이하</td><td rowspan="3">준주거지역내 건축된 건축물이 최고고도지구에 저속되지 않는 경우 RC2의 용적률을 적용</td></tr><tr><td>RC1~3, RC5</td><td>퇴계로변 일부 및 퇴계로 이면부 준주거역 및 일반상업지역</td><td>300%이하</td><td>360%이하</td></tr><tr><td>RC4, RC6~7</td><td>퇴계로 이면부 준주거지역</td><td>250%이하</td><td>300%이하</td></tr></table>	도면 표시 번호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C1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450%이하	600%이하	준주거지역내 건축된 건축물이 최고고도지구에 저속되지 않는 경우 RC2의 용적률을 적용	RC1~3, RC5	퇴계로변 일부 및 퇴계로 이면부 준주거역 및 일반상업지역	300%이하	360%이하	RC4, RC6~7	퇴계로 이면부 준주거지역	250%이하	300%이하	<table><tr><th rowspan="2">도면 표시 번호</th><th rowspan="2">적용구역</th><th colspan="2">계획내용</th><th rowspan="2">비 고</th></tr><tr><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r><tr><td>C1</td><td>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td><td>450%이하</td><td>600%이하</td><td rowspan="4">준주거지역내 건축된 건축물이 최고고도지구에 저속되지 않는 경우 RC2의 용적률을 적용</td></tr><tr><td>RC1~3, RC5</td><td>퇴계로변 일부 및 퇴계로 이면부 준주거역 및 일반상업지역</td><td>300%이하</td><td>360%이하</td></tr><tr><td>RC4, RC6~7</td><td>퇴계로 이면부 준주거지역</td><td>250%이하</td><td>300%이하</td></tr></table>	도면 표시 번호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C1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450%이하	600%이하	준주거지역내 건축된 건축물이 최고고도지구에 저속되지 않는 경우 RC2의 용적률을 적용	RC1~3, RC5	퇴계로변 일부 및 퇴계로 이면부 준주거역 및 일반상업지역	300%이하	360%이하	RC4, RC6~7	퇴계로 이면부 준주거지역	250%이하	300%이하
도면 표시 번호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C1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450%이하	600%이하	준주거지역내 건축된 건축물이 최고고도지구에 저속되지 않는 경우 RC2의 용적률을 적용																																						
RC1~3, RC5	퇴계로변 일부 및 퇴계로 이면부 준주거역 및 일반상업지역	300%이하	360%이하																																							
RC4, RC6~7	퇴계로 이면부 준주거지역	250%이하	300%이하																																							
도면 표시 번호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C1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450%이하	600%이하	준주거지역내 건축된 건축물이 최고고도지구에 저속되지 않는 경우 RC2의 용적률을 적용																																						
RC1~3, RC5	퇴계로변 일부 및 퇴계로 이면부 준주거역 및 일반상업지역	300%이하	360%이하																																							
RC4, RC6~7	퇴계로 이면부 준주거지역	250%이하	300%이하																																							
	주1)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별도의 용적률 적용(시행지침 참조) 주2)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단위대지가 선택적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의 미이행, 공동개발 지정의 해제, 필지의 분할 등에 따라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단위대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재산정해야 함(시행지침 참조)	주1)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별도의 용적률 적용(시행지침 참조) 주2)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단위대지가 선택적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의 미이행, 공동개발 지정의 해제, 필지의 분할 등에 따라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단위대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재산정해야 함(시행지침 참조)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RC-1~3,5)의 경우 [별표3] 제2호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40.1%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299.9%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제15조 (용적률)																																									
	① ~ ④ 변경없음 ⑤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기준용적률과 계획이행에 따른 허용용적률의 기준이 적용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에 의한 용적률의 적용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여진 허용용적률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별표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① ~ ④ 변경없음 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 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RC-1~3,5)의 경우 [별표3] 제2호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40.1%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299.9%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table><tr><th>주택연면적비율(%)</th><th>일반상업지역(4대문내)</th><th>비 고</th></tr><tr><td>80이상 ~ 90미만</td><td>480%이하</td><td></td></tr><tr><td>70이상 ~ 80미만</td><td>510%이하</td><td></td></tr><tr><td>60이상 ~ 70미만</td><td>540%이하</td><td></td></tr><tr><td>50이상 ~ 60미만</td><td>570%이하</td><td></td></tr><tr><td>40이상 ~ 50미만</td><td>600%이하</td><td></td></tr><tr><td>30이상 ~ 40미만</td><td>600%이하</td><td></td></tr><tr><td>20이상 ~ 30미만</td><td>600%이하</td><td></td></tr><tr><td>20미만</td><td>600%이하</td><td></td></tr></table>	주택연면적비율(%)	일반상업지역(4대문내)	비 고	80이상 ~ 90미만	480%이하		70이상 ~ 80미만	510%이하		60이상 ~ 70미만	540%이하		50이상 ~ 60미만	570%이하		40이상 ~ 50미만	600%이하		30이상 ~ 40미만	600%이하		20이상 ~ 30미만	600%이하		20미만	600%이하		⑥ 변경없음													
주택연면적비율(%)	일반상업지역(4대문내)	비 고																																								
80이상 ~ 90미만	480%이하																																									
70이상 ~ 80미만	510%이하																																									
60이상 ~ 70미만	540%이하																																									
50이상 ~ 60미만	570%이하																																									
40이상 ~ 50미만	600%이하																																									
30이상 ~ 40미만	600%이하																																									
20이상 ~ 30미만	600%이하																																									
20미만	600%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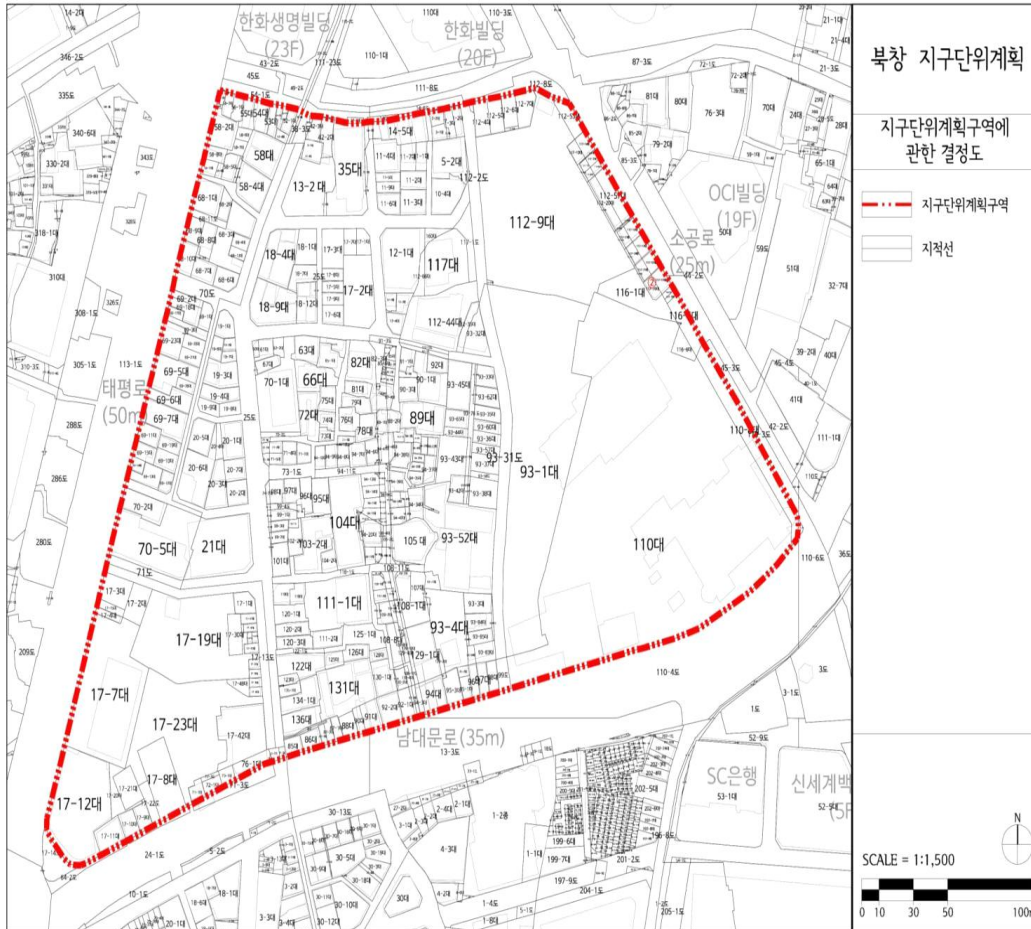
97.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5.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다. 용적률계획	(1) 용적률			(1) 용적률					
	구분	용적률 (%)			비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간선부	5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이하					
	이면부	4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이하					
	획지 24	500 이하	720 이하	법적 2배이하	관광 숙박 시설에 한하여 적용				
	획지 61	500 이하	720 이하	법적 2배이하					
	획지 87	400 이하	720 이하	법적 2배이하					
	획지 87	400 이하	720 이하	법적 2배이하					
	* 금회 지구단위계획 제정비 이전 변경결정된 사항 중 관련규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규정과 격합하지 않은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舊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내용 적용여부 결정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다)허용용적률(변경) : 간선부 (라)허용용적률(변경) : 이면부	(다)허용용적률(변경) : 간선부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다)허용용적률(변경) : 간선부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부	연계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획지 계획	획지계획, 공동개발 (지정)	준수시	•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 n=2일 때, a=0.08 : n=3일 때, a=0.10 •기존용적률x a					
		공동개발 (관장), 자율적 공동개발 (관장)	준수시	•자율적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 n=2일 때, a=0.04 : n=3일 때, a=0.05 •관구별 한도 •기존용적률x0.02					
	맞벌건축	맞벌건축	준수시	•기존용적률x (조성면적/대지면적) x a - 피로타구조 : a=0.2 - 침상형구조 : a=0.4 - 개방형구조 : a=0.6 •기존용적률 x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a - 간선부 : a=0.4 -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선으로 발생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기존용적률x0.06					
	대지 내 공지	완치형 공지	설치시	•기존용적률 x (완치형용도 면적 / 주차장제외건축면적) x 0.04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함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30% 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기존용적률 x 0.06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1층 면적의 함이 1층 바닥면적의 30% 이상이고 가로변 외벽길이의 1/20이상 접하여 함(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 한계선	준수시	•기존용적률x (조성면적/대지면적) x a - 간선부 : a=0.4 -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선으로 발생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기존용적률x0.06					
		건축 지점선	준수시	•기존용적률x (조성면적/대지면적) x a - 피로타구조 : a=0.2 - 침상형구조 : a=0.4 - 개방형구조 : a=0.6 •기존용적률 x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a - 간선부 : a=0.4 -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선으로 발생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기존용적률x0.06					
		공공 보행로	준수시	•기존용적률x (조성면적/대지면적) x a - 피로타구조 : a=0.2 - 침상형구조 : a=0.4 - 개방형구조 : a=0.6 •기존용적률 x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a - 간선부 : a=0.4 -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선으로 발생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기존용적률x0.06					
	건축물 용도	전층 용도	준수시	•기존용적률 x (연장용도 면적 / 주차장제외건축면적) x 0.04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함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30% 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기존용적률 x 0.06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1층 면적의 함이 1층 바닥면적의 30% 이상이고 가로변 외벽길이의 1/20이상 접하여 함(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중복면적 불가				
		1층 용도	준수시	•기존용적률 x (연장용도 면적 / 주차장제외건축면적) x 0.04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함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30% 이상이고 가로변 외벽길이의 1/20이상 접하여 함(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중복면적 불가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구분	연계항목	연계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자연지반 보존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존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기존용적률x0.04(20)					
		중수도 시설설치	설치시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례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맞벌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 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함이 건축면적x0.05 또는 대지면적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환경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빗물 이용시설	설치시	•기존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2 - 빗물 저장으로 산업용 면적 제외 •최우주(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x0.06 + 우우(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x0.04 우우(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x0.02 •1+1+1+1등급 : 기존용적률x0.06 •2-4등급 : 기존용적률x0.04 •5-7등급 : 기존용적률x0.02 •1등급 : 기존용적률x0.06 •2-3등급 : 기존용적률x0.04 •4-5등급 : 기존용적률x0.02	•허용 용적률 완화시 건축을 완화 중복불가				
		옥상녹화	설치시	•기존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2 - 빗물 저장으로 산업용 면적 제외 •최우주(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x0.06 + 우우(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x0.04 우우(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x0.02 •1+1+1+1등급 : 기존용적률x0.06 •2-4등급 : 기존용적률x0.04 •5-7등급 : 기존용적률x0.02 •1등급 : 기존용적률x0.06 •2-3등급 : 기존용적률x0.04 •4-5등급 : 기존용적률x0.02	•허용 용적률 완화시 건축을 완화 중복불가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준수시	•기존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2 - 빗물 저장으로 산업용 면적 제외 •최우주(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x0.06 + 우우(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x0.04 우우(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x0.02 •1+1+1+1등급 : 기존용적률x0.06 •2-4등급 : 기존용적률x0.04 •5-7등급 : 기존용적률x0.02 •1등급 : 기존용적률x0.06 •2-3등급 : 기존용적률x0.04 •4-5등급 : 기존용적률x0.02	•허용 용적률 완화시 건축을 완화 중복불가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준수시	•기존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2 - 빗물 저장으로 산업용 면적 제외 •최우주(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x0.06 + 우우(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x0.04 우우(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x0.02 •1+1+1+1등급 : 기존용적률x0.06 •2-4등급 : 기존용적률x0.04 •5-7등급 : 기존용적률x0.02 •1등급 : 기존용적률x0.06 •2-3등급 : 기존용적률x0.04 •4-5등급 : 기존용적률x0.02	•허용 용적률 완화시 건축을 완화 중복불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준수시	•기존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2 - 빗물 저장으로 산업용 면적 제외 •최우주(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x0.06 + 우우(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x0.04 우우(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x0.02 •1+1+1+1등급 : 기존용적률x0.06 •2-4등급 : 기존용적률x0.04 •5-7등급 : 기존용적률x0.02 •1등급 : 기존용적률x0.06 •2-3등급 : 기존용적률x0.04 •4-5등급 : 기존용적률x0.02	•허용 용적률 완화시 건축을 완화 중복불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준수시	•기존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2 - 빗물 저장으로 산업용 면적 제외 •최우주(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x0.06 + 우우(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x0.04 우우(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x0.02 •1+1+1+1등급 : 기존용적률x0.06 •2-4등급 : 기존용적률x0.04 •5-7등급 : 기존용적률x0.02 •1등급 : 기존용적률x0.06 •2-3등급 : 기존용적률x0.04 •4-5등급 : 기존용적률x0.02	•허용 용적률 완화시 건축을 완화 중복불가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									

의 30 이상으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면적 1만㎡ 초과 건축물(특별계획구역) 및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건축계획 시 총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충족하여야 함 3)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에 대하여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면적 1,000㎡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 4)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시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5) 각 항목별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시 중복 산정되는 항목은 1개의 항목만 선택하여 적용 6) 공동개발(특별지정)에 의하여 필지수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공동개발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불가 7) 둘 이상의 필지에 기공동건축된 대지는 하나의 필지로 산정, 단 기공동개발 대지의 판단시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열람공고일 (2013.11.20)을 기준으로 함	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면적 1만㎡ 초과 건축물(특별계획구역) 및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건축계획 시 총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충족하여야 함 3)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에 대하여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면적 1,000㎡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 4)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시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5) 각 항목별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시 중복 산정되는 항목은 1개의 항목만 선택하여 적용 6) 공동개발(특별지정)에 의하여 필지수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공동개발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불가 7) 둘 이상의 필지에 기공동건축된 대지는 하나의 필지로 산정, 단 기공동개발 대지의 판단시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열람공고일 (2013.11.20)을 기준으로 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다)허용용적률 : 이면부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table><tr><th>항목</th><th>부분</th><th>완화조건</th><th>계산방식(기준)</th><th>비고</th></tr><tr><td rowspan="4">특지 계획</td><td>특지계획, 공동개발(지정)</td><td>준수시</td><td>• 기준용적률$\times a$ • 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 n=2일 때, a=0.1 : n=3일 때, a=0.15</td><td></td></tr><tr><td>공동개발(관정), 자율적 공동개발(관정)</td><td>준수시</td><td>• 기준용적률$\times a$ • 자율적 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 n=2일 때, a=0.05 : n=3일 때, a=0.08</td><td></td></tr><tr><td>맞배건축</td><td>준수시</td><td>• 연면적 면적 • 기준용적률$\times 0.05$</td><td></td></tr><tr><td rowspan="4">대지 내 공지</td><td>썬지형 공지</td><td>설치시</td><td>• 기준용적률$\times$(조정면적/대지면적)$\times a$ – 피로티 구조 : a=0.4 – 침상형 구조 : a=0.8 – 개방형 구조 : a=1.0 – 대지면적의 10%선지시</td><td></td></tr><tr><td>건축 관계선</td><td>준수시</td><td>• 기준용적률$\times$(조정면적/대지면적) $\times 1.2$ –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선으로 발생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td><td></td></tr><tr><td>건축 자립선</td><td>준수시</td><td>• 기준용적률$\times 0.1$</td><td></td></tr><tr><td>공동 보행도로</td><td>준수시</td><td>• 기준용적률$\times$(조정면적/대지면적)$\times 0.5$</td><td></td></tr><tr><td rowspan="4">건축물의 외관</td><td>건축설비의 노출</td><td>준수시</td><td>• 기준용적률$\times 0.05$ – 옥외설비(상하수도, 보일러연통, 가스배관등)를 도로면에 노출금지</td><td></td></tr><tr><td>건축물의 외장재료</td><td>준수시</td><td>• 기준용적률$\times 0.05$ – 석재, 벽돌, 목재 등 친환경재료 사용 – 샌드위치패널 등 조합식 재료 사용금지 – 민사상 재질 마감금지</td><td></td></tr><tr><td rowspan="2">관장 용도</td><td>전층</td><td>• 기준용적률 $\times$(전용용도 면적 / 주차장제외건축면적) $\times 0.04$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3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td><td rowspan="2">• 중복면적 불가</td></tr><tr><td>1층</td><td>• 기준용적률 $\times 0.06$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1층 면적의 합이 1층 바닥면적의 30% 이상이고 가로면 외벽길이의 1/2이상 접하여 함(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td></tr><tr><td>건축물 개발</td><td>개발 화장실</td><td>설치시</td><td>• 기준용적률 $\times$(제고면적 / 대지면적) $\times 1.0$</td><td>• 하형 용적률 완화시 간벽을 포함 중복불가</td></tr><tr><td colspan="5">무장애 건축물</td></tr></table>	항목	부분	완화조건	계산방식(기준)	비고	특지 계획	특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a$ • 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 n=2일 때, a=0.1 : n=3일 때, a=0.15		공동개발(관정), 자율적 공동개발(관정)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a$ • 자율적 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 n=2일 때, a=0.05 : n=3일 때, a=0.08		맞배건축	준수시	• 연면적 면적 • 기준용적률 $\times 0.05$		대지 내 공지	썬지형 공지	설치시	• 기준용적률 $\times$ (조정면적/대지면적) $\times a$ – 피로티 구조 : a=0.4 – 침상형 구조 : a=0.8 – 개방형 구조 : a=1.0 – 대지면적의 10%선지시		건축 관계선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조정면적/대지면적) $\times 1.2$ –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선으로 발생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건축 자립선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0.1$		공동 보행도로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조정면적/대지면적) $\times 0.5$		건축물의 외관	건축설비의 노출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0.05$ – 옥외설비(상하수도, 보일러연통, 가스배관등)를 도로면에 노출금지		건축물의 외장재료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0.05$ – 석재, 벽돌, 목재 등 친환경재료 사용 – 샌드위치패널 등 조합식 재료 사용금지 – 민사상 재질 마감금지		관장 용도	전층	• 기준용적률 $\times$ (전용용도 면적 / 주차장제외건축면적) $\times 0.04$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3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 중복면적 불가	1층	• 기준용적률 $\times 0.06$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1층 면적의 합이 1층 바닥면적의 30% 이상이고 가로면 외벽길이의 1/2이상 접하여 함(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물 개발	개발 화장실	설치시	• 기준용적률 $\times$ (제고면적 / 대지면적) $\times 1.0$	• 하형 용적률 완화시 간벽을 포함 중복불가	무장애 건축물					(다)허용용적률 : 이면부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table><tr><th>항목</th><th>부분</th><th>완화조건</th><th>계산방식(기준)</th><th>비고</th></tr><tr><td rowspan="4">특지 계획</td><td>특지계획, 공동개발(지정)</td><td>준수시</td><td>• 기준용적률$\times a$ • 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 n=2일 때, a=0.1 : n=3일 때, a=0.15</td><td></td></tr><tr><td>공동개발(관정), 자율적 공동개발(관정)</td><td>준수시</td><td>• 기준용적률$\times a$ • 자율적 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 n=2일 때, a=0.05 : n=3일 때, a=0.08</td><td></td></tr><tr><td>맞배건축</td><td>준수시</td><td>• 연면적 면적 • 기준용적률$\times 0.05$</td><td></td></tr><tr><td rowspan="4">대지 내 공지</td><td>썬지형 공지</td><td>설치시</td><td>• 기준용적률$\times$(조정면적/대지면적)$\times a$ – 피로티 구조 : a=0.4 – 침상형 구조 : a=0.8 – 개방형 구조 : a=1.0 – 대지면적의 10%선지시</td><td></td></tr><tr><td>건축 관계선</td><td>준수시</td><td>• 기준용적률$\times$(조정면적/대지면적) $\times 1.2$ –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선으로 발생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td><td></td></tr><tr><td>건축 자립선</td><td>준수시</td><td>• 기준용적률$\times 0.1$</td><td></td></tr><tr><td>공동 보행도로</td><td>준수시</td><td>• 기준용적률$\times$(조정면적/대지면적)$\times 0.5$</td><td></td></tr><tr><td rowspan="4">건축물의 외관</td><td>건축설비의 노출</td><td>준수시</td><td>• 기준용적률$\times 0.05$ – 옥외설비(상하수도, 보일러연통, 가스배관등)를 도로면에 노출금지</td><td></td></tr><tr><td>건축물의 외장재료</td><td>준수시</td><td>• 기준용적률$\times 0.05$ – 석재, 벽돌, 목재 등 친환경재료 사용 – 샌드위치패널 등 조합식 재료 사용금지 – 민사상 재질 마감금지</td><td></td></tr><tr><td rowspan="2">관장 용도</td><td>전층</td><td>• 기준용적률 $\times$(전용용도 면적 / 주차장제외건축면적) $\times 0.04$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3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td><td rowspan="2">• 중복면적 불가</td></tr><tr><td>1층</td><td>• 기준용적률 $\times 0.06$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1층 면적의 합이 1층 바닥면적의 30% 이상이고 가로면 외벽길이의 1/2이상 접하여 함(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td></tr><tr><td>건축물 개발</td><td>개발 화장실</td><td>설치시</td><td>• 기준용적률 $\times$(제고면적 / 대지면적) $\times 1.0$</td><td>• 하형 용적률 완화시 간벽을 포함 중복불가</td></tr><tr><td colspan="5">무장애 건축물</td></tr></table>	항목	부분	완화조건	계산방식(기준)	비고	특지 계획	특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a$ • 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 n=2일 때, a=0.1 : n=3일 때, a=0.15		공동개발(관정), 자율적 공동개발(관정)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a$ • 자율적 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 n=2일 때, a=0.05 : n=3일 때, a=0.08		맞배건축	준수시	• 연면적 면적 • 기준용적률 $\times 0.05$		대지 내 공지	썬지형 공지	설치시	• 기준용적률 $\times$ (조정면적/대지면적) $\times a$ – 피로티 구조 : a=0.4 – 침상형 구조 : a=0.8 – 개방형 구조 : a=1.0 – 대지면적의 10%선지시		건축 관계선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조정면적/대지면적) $\times 1.2$ –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선으로 발생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건축 자립선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0.1$		공동 보행도로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조정면적/대지면적) $\times 0.5$		건축물의 외관	건축설비의 노출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0.05$ – 옥외설비(상하수도, 보일러연통, 가스배관등)를 도로면에 노출금지		건축물의 외장재료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0.05$ – 석재, 벽돌, 목재 등 친환경재료 사용 – 샌드위치패널 등 조합식 재료 사용금지 – 민사상 재질 마감금지		관장 용도	전층	• 기준용적률 $\times$ (전용용도 면적 / 주차장제외건축면적) $\times 0.04$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3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 중복면적 불가	1층	• 기준용적률 $\times 0.06$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1층 면적의 합이 1층 바닥면적의 30% 이상이고 가로면 외벽길이의 1/2이상 접하여 함(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물 개발	개발 화장실	설치시	• 기준용적률 $\times$ (제고면적 / 대지면적) $\times 1.0$	• 하형 용적률 완화시 간벽을 포함 중복불가	무장애 건축물				
항목	부분	완화조건	계산방식(기준)	비고																																																																																																																					
특지 계획	특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a$ • 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 n=2일 때, a=0.1 : n=3일 때, a=0.15																																																																																																																						
	공동개발(관정), 자율적 공동개발(관정)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a$ • 자율적 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 n=2일 때, a=0.05 : n=3일 때, a=0.08																																																																																																																						
	맞배건축	준수시	• 연면적 면적 • 기준용적률 $\times 0.05$																																																																																																																						
	대지 내 공지	썬지형 공지	설치시	• 기준용적률 $\times$ (조정면적/대지면적) $\times a$ – 피로티 구조 : a=0.4 – 침상형 구조 : a=0.8 – 개방형 구조 : a=1.0 – 대지면적의 10%선지시																																																																																																																					
건축 관계선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조정면적/대지면적) $\times 1.2$ –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선으로 발생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건축 자립선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0.1$																																																																																																																						
공동 보행도로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조정면적/대지면적) $\times 0.5$																																																																																																																						
건축물의 외관	건축설비의 노출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0.05$ – 옥외설비(상하수도, 보일러연통, 가스배관등)를 도로면에 노출금지																																																																																																																						
	건축물의 외장재료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0.05$ – 석재, 벽돌, 목재 등 친환경재료 사용 – 샌드위치패널 등 조합식 재료 사용금지 – 민사상 재질 마감금지																																																																																																																						
	관장 용도	전층	• 기준용적률 $\times$ (전용용도 면적 / 주차장제외건축면적) $\times 0.04$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3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 중복면적 불가																																																																																																																					
		1층	• 기준용적률 $\times 0.06$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1층 면적의 합이 1층 바닥면적의 30% 이상이고 가로면 외벽길이의 1/2이상 접하여 함(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물 개발	개발 화장실	설치시	• 기준용적률 $\times$ (제고면적 / 대지면적) $\times 1.0$	• 하형 용적률 완화시 간벽을 포함 중복불가																																																																																																																					
무장애 건축물																																																																																																																									
항목	부분	완화조건	계산방식(기준)	비고																																																																																																																					
특지 계획	특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a$ • 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 n=2일 때, a=0.1 : n=3일 때, a=0.15																																																																																																																						
	공동개발(관정), 자율적 공동개발(관정)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a$ • 자율적 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 적용 : n=2일 때, a=0.05 : n=3일 때, a=0.08																																																																																																																						
	맞배건축	준수시	• 연면적 면적 • 기준용적률 $\times 0.05$																																																																																																																						
	대지 내 공지	썬지형 공지	설치시	• 기준용적률 $\times$ (조정면적/대지면적) $\times a$ – 피로티 구조 : a=0.4 – 침상형 구조 : a=0.8 – 개방형 구조 : a=1.0 – 대지면적의 10%선지시																																																																																																																					
건축 관계선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조정면적/대지면적) $\times 1.2$ –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선으로 발생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건축 자립선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0.1$																																																																																																																						
공동 보행도로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조정면적/대지면적) $\times 0.5$																																																																																																																						
건축물의 외관	건축설비의 노출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0.05$ – 옥외설비(상하수도, 보일러연통, 가스배관등)를 도로면에 노출금지																																																																																																																						
	건축물의 외장재료	준수시	• 기준용적률 $\times 0.05$ – 석재, 벽돌, 목재 등 친환경재료 사용 – 샌드위치패널 등 조합식 재료 사용금지 – 민사상 재질 마감금지																																																																																																																						
	관장 용도	전층	• 기준용적률 $\times$ (전용용도 면적 / 주차장제외건축면적) $\times 0.04$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3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 중복면적 불가																																																																																																																					
		1층	• 기준용적률 $\times 0.06$ –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1층 면적의 합이 1층 바닥면적의 30% 이상이고 가로면 외벽길이의 1/2이상 접하여 함(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물 개발	개발 화장실	설치시	• 기준용적률 $\times$ (제고면적 / 대지면적) $\times 1.0$	• 하형 용적률 완화시 간벽을 포함 중복불가																																																																																																																					
무장애 건축물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구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구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환경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존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0.5		환경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존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0.5	
	중수도 시설설치	설치시	•기존용적률×0.05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중수도 시설설치	설치시	•기존용적률×0.05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 이용시설	설치시	•기존용적률×0.05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 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빗물 이용시설	설치시	•기존용적률×0.05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 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설치시	•기존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0.4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허용 용적률 완화시 건폐율 완화 중복불가		옥상녹화	설치시	•기존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0.4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허용 용적률 완화시 건폐율 완화 중복불가
	녹색건축 인증	준수시	•최우수(2등급) : 기존용적률×0.1 •우수(3등급) : 기존용적률×0.08 •우량(4등급) : 기존용적률×0.05			녹색건축 인증	준수시	•최우수(2등급) : 기존용적률×0.1 •우수(3등급) : 기존용적률×0.08 •우량(4등급) : 기존용적률×0.05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준수시	•1+++~1등급 : 기존용적률×0.1 •2~4등급 : 기존용적률×0.08 •5~7등급 : 기존용적률×0.05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준수시	•1+++~1등급 : 기존용적률×0.1 •2~4등급 : 기존용적률×0.08 •5~7등급 : 기존용적률×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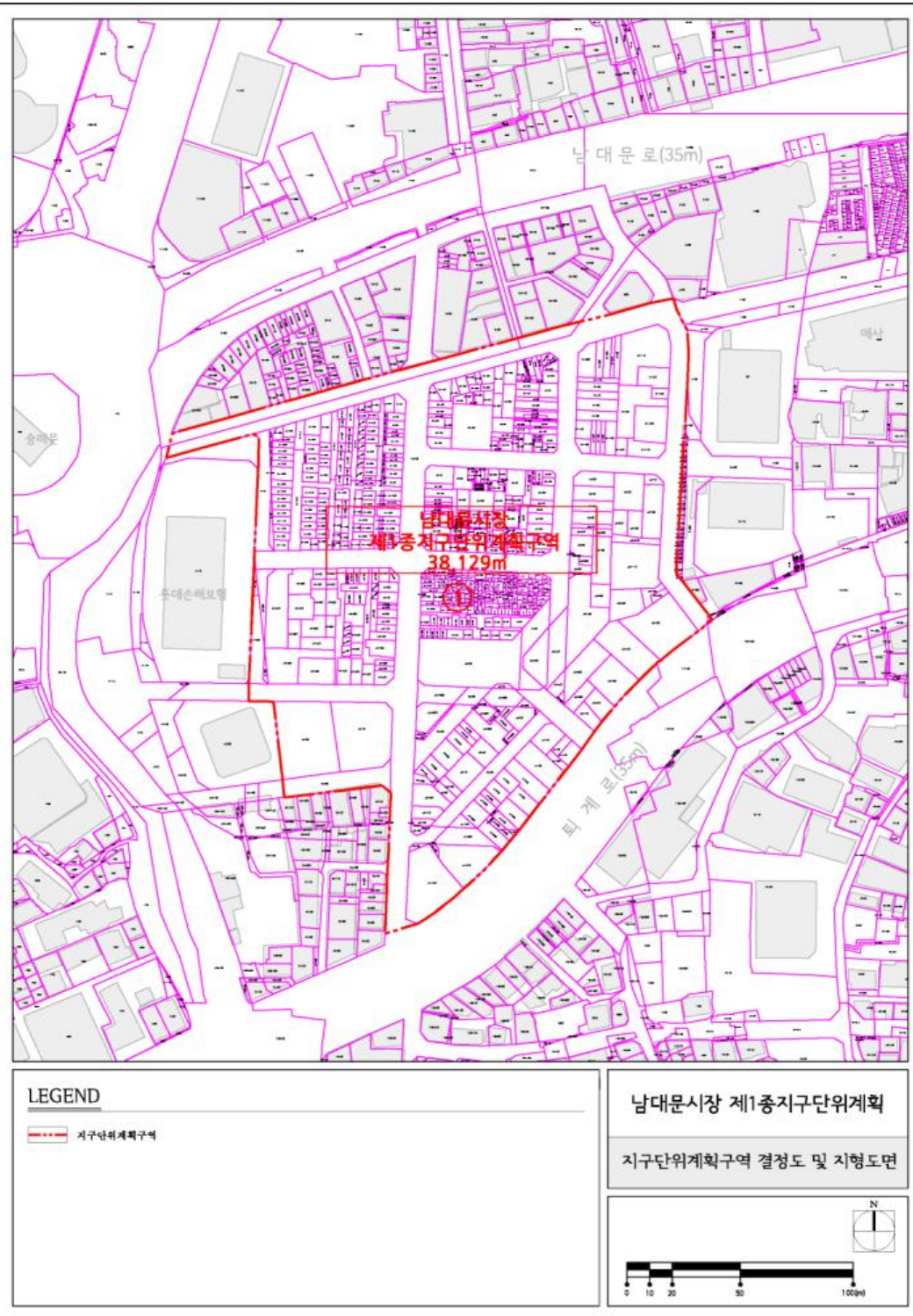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98. 남대문시장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계획 결정조서 2) 용적률 계획	■ 용적률 계획				■ 용적률 계획					
	적용구역	용적률			비 고	적용구역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전 구역	500%	600%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전 구역	500%	600%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99.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③ 학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다. 건축물의 용적률	(1) 용적률 <table><tr><th>적용지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h>비고</th></tr><tr><td>전지역</td><td>500% 이하</td><td>600% 이하</td><td>법적 2배 이하</td><td rowspan="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td></tr><tr><td>학교 이적지</td><td>400% 이하</td><td>500% 이하</td><td>법적 2배 이하</td></tr><tr><td>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td><td>500% 이하</td><td>690% 이하</td><td>법적 2배 이하</td><td>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 이하 적용</td></tr></table>	적용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전지역	5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	학교 이적지	400% 이하	500% 이하	법적 2배 이하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500% 이하	690% 이하	법적 2배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 이하 적용	(1) 용적률 <table><tr><th>적용지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h>비고</th></tr><tr><td>전지역</td><td>500% 이하</td><td>600% 이하</td><td>법적 2배 이하</td><td rowspan="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td></tr><tr><td>학교 이적지</td><td>400% 이하</td><td>500% 이하</td><td>법적 2배 이하</td></tr><tr><td>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td><td>500% 이하</td><td>690% 이하</td><td>법적 2배 이하</td><td>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 이하 적용</td></tr></table>	적용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전지역	5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	학교 이적지	400% 이하	500% 이하	법적 2배 이하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500% 이하	690% 이하	법적 2배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 이하 적용
	적용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전지역	5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																																			
	학교 이적지	400% 이하	500% 이하	법적 2배 이하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500% 이하	690% 이하	법적 2배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 이하 적용																																				
적용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전지역	5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																																				
학교 이적지	400% 이하	500% 이하	법적 2배 이하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500% 이하	690% 이하	법적 2배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 이하 적용																																				
	주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주2)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주3) 을지로5가 275-3일대 (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주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주2)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주3) 을지로5가 275-3일대 (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학교이적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용적률의 완화
(가) 허용용적률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분	완화 조항	간선부	이면부	
계획유도 인센티브	공개공지	설치시	기존용적률 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a - 개방형구조 : a=1.0 피로티구조 : a=0.5		
	합지합공지, 협상합공지	설치시	기존용적률 x ((조정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a - 개방형구조 : a=1.0 피로티구조 : a=0.5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존용적률 x ((조정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0.45 -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 시 제외		
	관장용도	준수시	기존용적률 x (관장용도면적/대지면적) x 0.15 - 관장용도면적(전체면적) 인센티브 산정 시 저층부 가로용도면적(전체면적)은 제외하여 산정		
건축물내 용도	특정층 (적대기층) 개방	개방	기존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 x 0.4 - 일반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해당층 바닥면적 50%이상 설치시)		
	저층부 0가 로 활용 화 용도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계획 상 1층 건물용도에 한함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시)		
	가로지장물 지 중화 도 는 이면 설치 지 하연결통로 설치	설치시	기존용적률 x 0.01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설치시	기존용적률 x (해당면적/면적) x 0.2 - 공원장, 박물관, 도서관, 도서관 등		
역사 문화 유산 등 복원 및 재개발	역사 문화 유산 등 복원 및 재개발	설치시	기존용적률 x 0.06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시설물 포함)		
	역사 문화 유산 등 복원 및 재개발	설치시	기존용적률 x 0.04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시설물 포함)		
	역사 문화 유산 등 복원 및 재개발	설치시	기존용적률 x 0.04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시설물 포함)		
	역사 문화 유산 등 복원 및 재개발	설치시	기존용적률 x 0.04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시설물 포함)		
공동개발 (시정+민정)	공동개발 (시정+민정)	준수시	기존용적률 x a (공동개발 지정 : 2a, 민정 : a) * 공동개발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물 이상의 필지에 기중동건축된 대지는 하나의 필지로 산정) - 2필지 : a=0.005 0- 3필지 : a=0.01 0- 4필지 이상 : a=0.02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분	완화 조항	간선부	이면부	
계획유도 인센티브	공개공지	설치시	기존용적률 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a - 개방형구조 : a=1.0 피로티구조 : a=0.5		
	합지합공지, 협상합공지	설치시	기존용적률 x ((조정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a - 개방형구조 : a=1.0 피로티구조 : a=0.5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존용적률 x ((조정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0.45 -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 시 제외		
	관장용도	준수시	기존용적률 x (관장용도면적/대지면적) x 0.15 - 관장용도면적(전체면적) 인센티브 산정 시 저층부 가로용도면적(전체면적)은 제외하여 산정		
건축물내 용도	특정층 (적대기층) 개방	개방	기존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 x 0.4 - 일반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해당층 바닥면적 50%이상 설치시)		
	저층부 0가 로 활용 화 용도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계획 상 1층 건물용도에 한함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시)		
	가로지장물 지 중화 도 는 이면 설치 지 하연결통로 설치	설치시	기존용적률 x 0.01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설치시	기존용적률 x (해당면적/면적) x 0.2 - 공원장, 박물관, 도서관, 도서관 등		
역사 문화 유산 등 복원 및 재개발	역사 문화 유산 등 복원 및 재개발	설치시	기존용적률 x 0.06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시설물 포함)		
	역사 문화 유산 등 복원 및 재개발	설치시	기존용적률 x 0.04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시설물 포함)		
	역사 문화 유산 등 복원 및 재개발	설치시	기존용적률 x 0.04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시설물 포함)		
	역사 문화 유산 등 복원 및 재개발	설치시	기존용적률 x 0.04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시설물 포함)		
공동개발 (시정+민정)	공동개발 (시정+민정)	준수시	기존용적률 x a (공동개발 지정 : 2a, 민정 : a) * 공동개발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물 이상의 필지에 기중동건축된 대지는 하나의 필지로 산정) - 2필지 : a=0.005 0- 3필지 : a=0.01 0- 4필지 이상 : a=0.02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구분	완화 조항	간선부	이면부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 보전	준수시	기존용적률 x (보전면적 / 대지면적) x 0.1 - 기중용적률 x 0.02 (20) - 중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 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물 자원	설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 시설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인 경우 제외		
	국 상 화	설치시	기존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 x 0.1 - 법정 조경으로 산림원 면적 제외		
	에너지 효율화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우수(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 x 0.04 - 우량(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 x 0.02		
친환경 건축	친환경 건축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우수(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 x 0.04 - 우량(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 x 0.02		
	에너지 효율화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존용적률 x 0.04 -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존용적률 x 0.02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2-3등급 : 기존용적률 x 0.05 - 4-5등급 : 기존용적률 x 0.03		
	친환경 건축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우수(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 x 0.04 - 우량(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 x 0.02		
친환경 건축	친환경 건축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우수(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 x 0.04 - 우량(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 x 0.02		
	에너지 효율화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존용적률 x 0.04 -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존용적률 x 0.02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2-3등급 : 기존용적률 x 0.05 - 4-5등급 : 기존용적률 x 0.03		
	친환경 건축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우수(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 x 0.04 - 우량(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 x 0.02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구분	완화 조항	간선부	이면부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 보전	준수시	기존용적률 x (보전면적 / 대지면적) x 0.1 - 기중용적률 x 0.02 (20) - 중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 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물 자원	설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 시설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인 경우 제외		
	국 상 화	설치시	기존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 x 0.1 - 법정 조경으로 산림원 면적 제외		
	에너지 효율화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우수(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 x 0.04 - 우량(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 x 0.02		
친환경 건축	친환경 건축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우수(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 x 0.04 - 우량(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 x 0.02		
	에너지 효율화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존용적률 x 0.04 -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존용적률 x 0.02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2-3등급 : 기존용적률 x 0.05 - 4-5등급 : 기존용적률 x 0.03		
	친환경 건축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우수(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 x 0.04 - 우량(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 x 0.02		
친환경 건축	친환경 건축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우수(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 x 0.04 - 우량(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 x 0.02		
	에너지 효율화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존용적률 x 0.04 -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존용적률 x 0.02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2-3등급 : 기존용적률 x 0.05 - 4-5등급 : 기존용적률 x 0.03		
	친환경 건축	준수시	기존용적률 x 0.04 (20)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존용적률 x 0.06 - 우수(그린2등급) : 기존용적률 x 0.04 - 우량(그린3등급) : 기존용적률 x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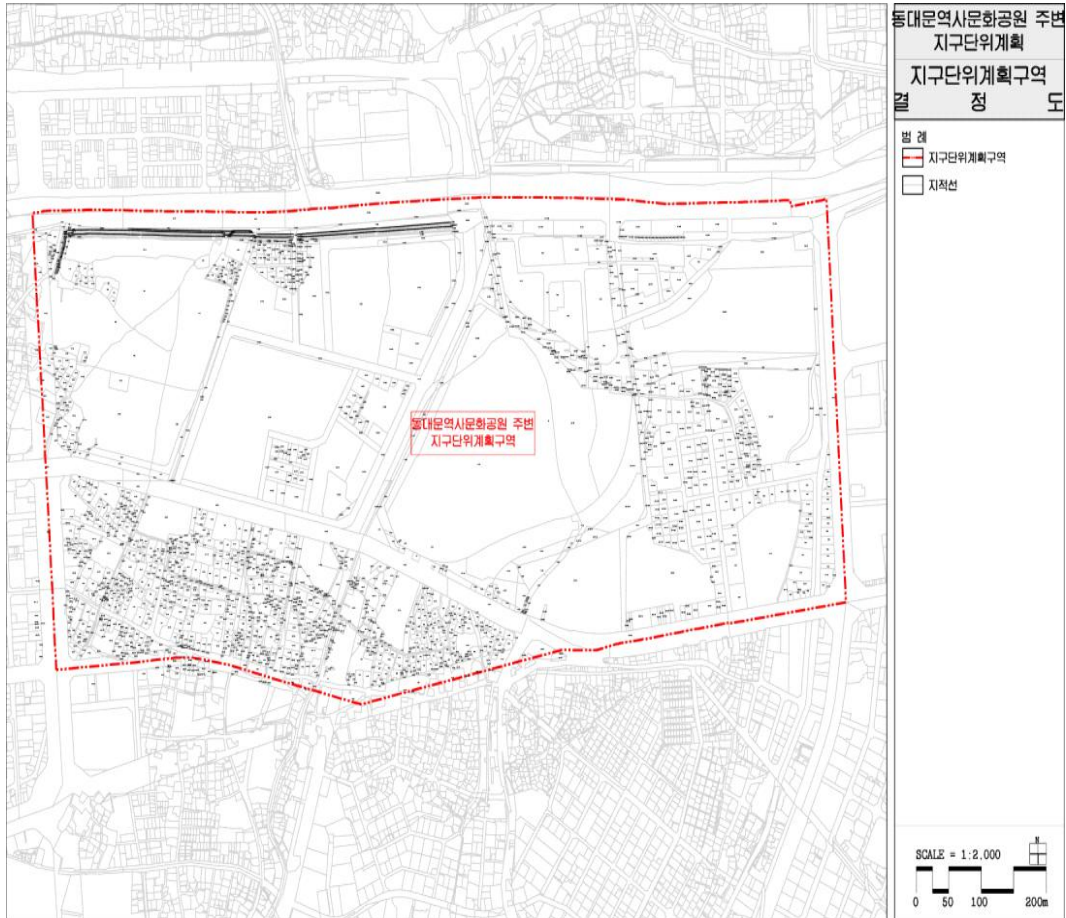
- 주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함은 100분의 70 이내,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기존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주2)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특별계획구역) 및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계획 시 중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충족하여야 함
- 주3)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에 대하여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적용이 어려운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900㎡ 이하)에 대해서는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
- 주4)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시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 주5) 각 항목별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시 중복 산정되는 항목은 1개의 항목만 선택하여 적용
- 주6)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 주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함은 100분의 70 이내,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기존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주2)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특별계획구역) 및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계획 시 중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충족하여야 함
- 주3)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에 대하여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적용이 어려운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900㎡ 이하)에 대해서는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
- 주4)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시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 주5) 각 항목별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시 중복 산정되는 항목은 1개의 항목만 선택하여 적용
- 주6)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활용하여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추가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제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100.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용적률계획 결정조서

□용적률계획 결정조서

구분

용적률 (%)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간선부
(가구31 획지2, 가구 12 획지11 제외)

가구31 획지2

가구12 획지11

6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960% 이하

96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관광 숙박 시설에 한하여 적용

이면

이면부

600% 이하

8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구분

용적률 (%)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간선부
(가구31 획지2, 가구 12 획지11 제외)

가구31 획지2

가구12 획지11

6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960% 이하

96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관광 숙박 시설에 한하여 적용

이면

이면부

600% 이하

8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금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전 변경결정된 사항 중 관련규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규정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舊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내용 적용여부 결정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다.

5.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다. 용적률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101. 목동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결정조서

나. 결정(변경)조서

구분		용적률 (%)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A1	중랑구 목동 162-1 162-2 162-5 162-8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62-7	250% 이하	500% 이하	
	중랑구 목동 162-9 162-10 162-11	250% 이하	500% 이하	
	중랑구 목동 162-4 162-17	300% 이하	600% 이하	
A2	중랑구 목동 162-3 162-6 162-14	250% 이하	500% 이하	
	중랑구 목동 162-13 162-15 162-16	250% 이하	500% 이하	
	중랑구 목동 163-1 163-2 163-3 163-11 163-13 163-19 163-31	300% 이하	600% 이하	
A3	중랑구 목동 163-4 163-16 163-17 163-18	250% 이하	500% 이하	
	중랑구 목동 163-7 163-8 163-9 163-29 163-24 163-25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63-5 163-21	250% 이하	500% 이하	
	중랑구 목동 163-22 163-23 163-26 163-28 163-30	250% 이하	500% 이하	
A5	중랑구 목동 165	300% 이하	600% 이하	
A6	중랑구 목동 164-4,5,6,7 164-10,11,13 164-15,16,17 164-18,19,20 164-21,22,23 164-29	A6 일부필지와 함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중랑구 목동 169-1 169-20 169-21	300% 이하	600% 이하	
A7	중랑구 목동 169-2 169-12 169-19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69-10 169-14 169-17 169-18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69-11 169-15 169-24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70-1,2,3,7,8 170-9,10,11 170-12,13,14 170-15,16,17 170-18,19,20 170-21,22,23 170-28,44	A6 필지와 함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A8	중랑구 목동 170-24,25,26 170-29,30,31 170-32,33,34 170-35,36,41 170-42,43	A6 필지와 함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중랑구 목동 170-27 170-37 170-38 170-39	300% 이하	600% 이하	
A9	중랑구 목동 175-1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75-2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75-5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75-6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75-7	300% 이하	600% 이하	

나. 결정(변경)조서

구분		용적률 (%)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A1	중랑구 목동 162-1 162-2 162-5 162-8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62-7	250% 이하	500% 이하	
	중랑구 목동 162-9 162-10 162-11	250% 이하	500% 이하	
	중랑구 목동 162-4 162-17	300% 이하	600% 이하	
A2	중랑구 목동 162-3 162-6 162-14	250% 이하	500% 이하	
	중랑구 목동 162-13 162-15 162-16	250% 이하	500% 이하	
	중랑구 목동 163-1 163-2 163-3 163-11 163-13 163-19 163-31	300% 이하	600% 이하	
A3	중랑구 목동 163-4 163-16 163-17 163-18	250% 이하	500% 이하	
	중랑구 목동 163-7 163-8 163-9 163-29 163-24 163-25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63-5 163-21	250% 이하	500% 이하	
	중랑구 목동 163-22 163-23 163-26 163-28 163-30	250% 이하	500% 이하	
A5	중랑구 목동 165	300% 이하	600% 이하	
A6	중랑구 목동 164-4,5,6,7 164-10,11,13 164-15,16,17 164-18,19,20 164-21,22,23 164-29	A6 일부필지와 함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중랑구 목동 169-1 169-20 169-21	300% 이하	600% 이하	
A7	중랑구 목동 169-2 169-12 169-19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69-10 169-14 169-17 169-18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69-11 169-15 169-24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70-1,2,3,7,8 170-9,10,11 170-12,13,14 170-15,16,17 170-18,19,20 170-21,22,23 170-28,44	A6 필지와 함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A8	중랑구 목동 170-24,25,26 170-29,30,31 170-32,33,34 170-35,36,41 170-42,43	A6 필지와 함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중랑구 목동 170-27 170-37 170-38 170-39	300% 이하	600% 이하	
A9	중랑구 목동 175-1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75-2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75-5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75-6	300% 이하	600% 이하	
	중랑구 목동 175-7	300% 이하	60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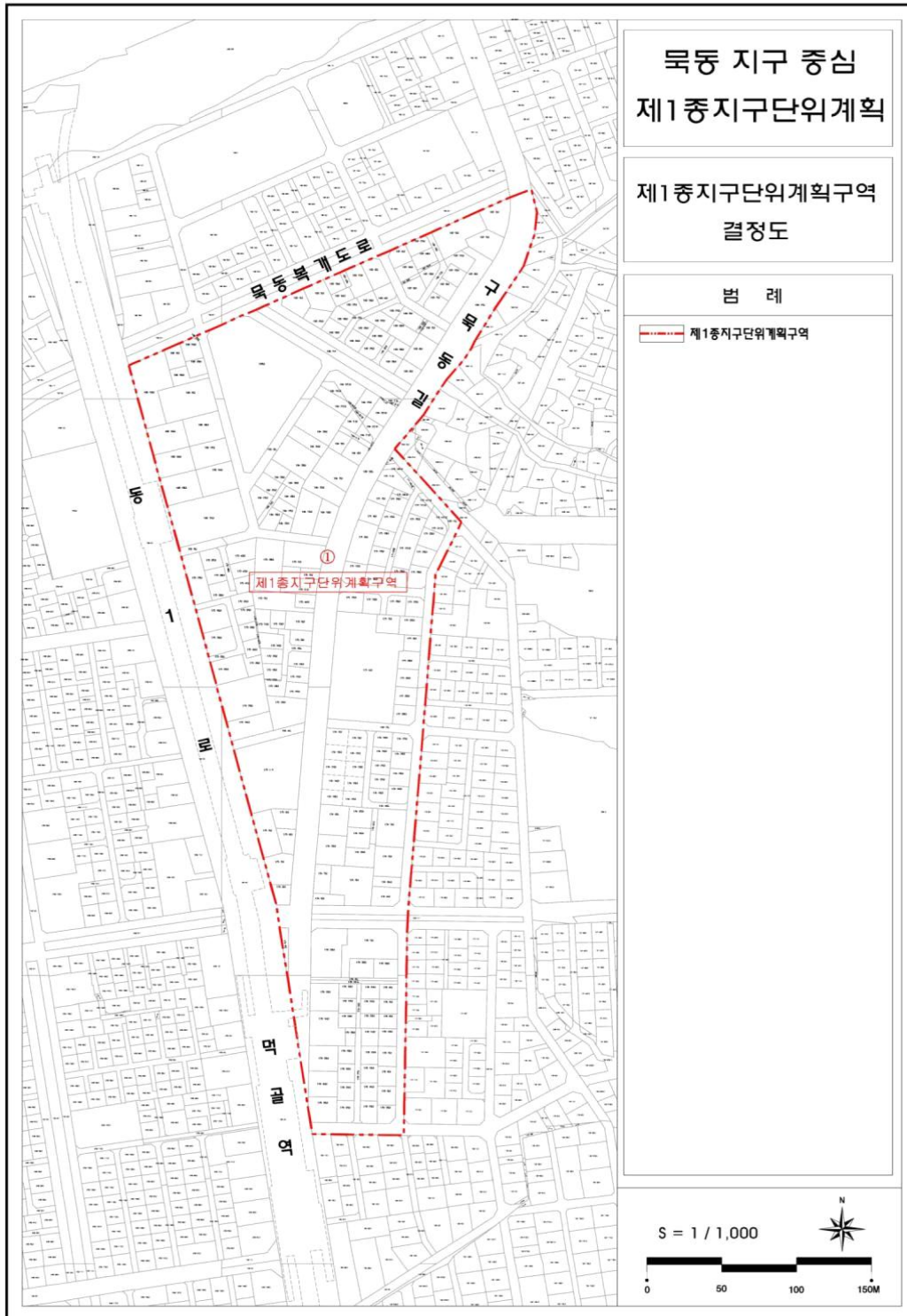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높이·배치·형
태·색채·건축
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상암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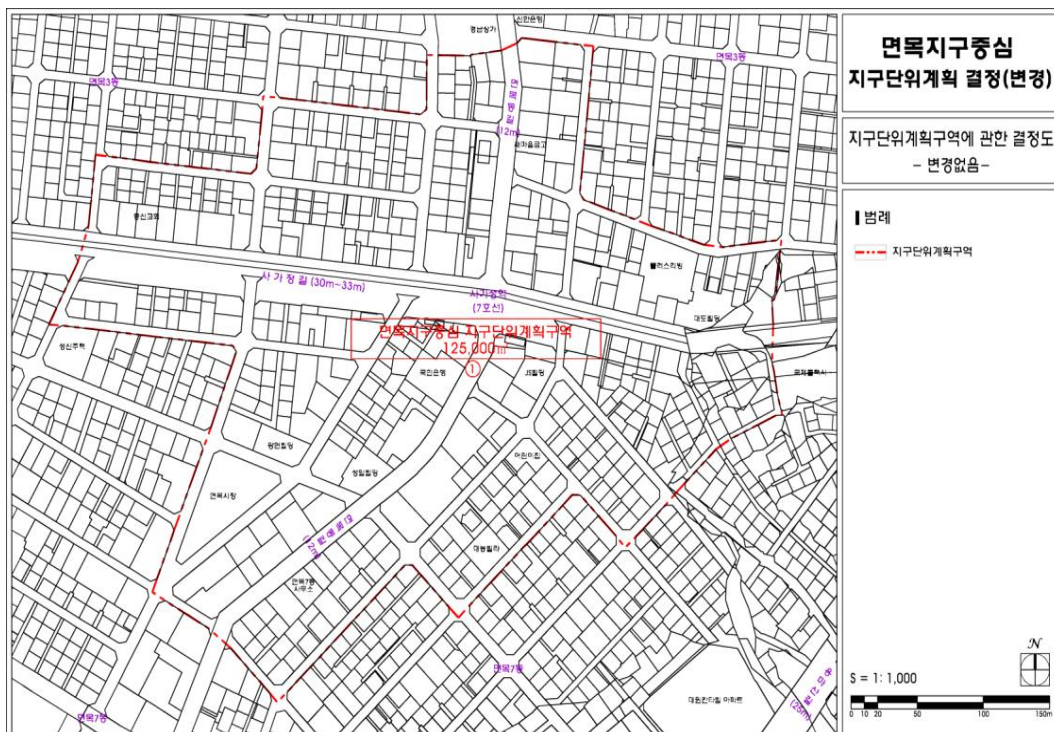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 600% 경우 [별표 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 500% 경우 [별표 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허용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별표 3」의 기준과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2010. 6.)」 1부 4-4-1(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기준)에서 용적률 적용기준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며, 기준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2010. 6.)」 1부 4-4-1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기준의 기준/허용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별표 3」에 따른 용적률로 정함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table> <tr> <th>주택 연면적 비율(%)</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r> <tr> <td>60 이상 ~ 70 미만</td><td>240% 이하</td><td>600% 이하</td><td rowspan="2">800% 이하</td></tr> <tr> <td>60 미만</td><td>250% 이하</td><td>610% 이하</td></tr> </table> ③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비율 적용기준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함. 다만,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 이상 등)를 감안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가능 ※ 기존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 용적률의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상기기준은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과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과는 별도로 비주거 용도비율을 만족하여야 함.	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24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60 미만	250% 이하	610% 이하	※ 상기기준은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과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과는 별도로 비주거 용도비율을 만족하여야 함.
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24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60 미만	250% 이하	610%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2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

1.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2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9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8.14.)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I.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기 위해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2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의 용적률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29개 구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을 따름

번호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개포동 157번지 일대, 도곡동 410번지 일대, 일원동 619,663번지 일대	5,268,557	-	5,268,557	2016.8.25. 서고시 제2016-261호
2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1,663,652	-	1,663,652	2019.6.27. 서고시 제2019-208호
3	강남구	논현지구	강남구 논현동 58번지 일대	76,430	-	76,430	2016.9.22. 서고시 제2016-295호
4	강남구	대치지구	강남구 대치동 922번지 일대	58,440	-	58,440	2006.8.10. 서고시 제2006-271호
5	강남구	청담지구	강남구 청담동 46번지 일대 강남구 삼성동 52번지 일대	46,592	-	46,592	2006.8.10. 서고시 제2006-272호

번호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6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강남구 역삼동 635-2,3,4번지	7,972.2	-	7,972.2	2016.1.7. 서고시 제2016-2호
7	강동구	고덕택지	강동구 고덕1동·2동, 명일2동, 상일동 일대	3,883,394	-	3,883,394	2018.7.19. 서고시 제2018-231호
8	강동구	암사지구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	108,900	-	108,900	2015.11.12. 서고시 제2015-357호
9	강동구	천호지구	강동구 천호동, 길동, 둔촌동, 성내동 일원	656,383.6	-	656,383.6	2019.1.10. 서고시 제2019-22호
10	강북구	4.19사거리	강북구 수유동 277번지 일대	53,315	-	53,315	2006.4.6. 서고시 제2006-119호
11	강북구	삼양사거리	미아동 688번지 일대	74,670	-	74,670	2016.11.10. 서고시 제2016-353호
12	강북구	수유변동	수유동 192번지 일대 변동 416번지 일대	434,704	-	434,704	2009.6.18. 서고시 제2009-243호
13	강서구	공항지구중심	강서구 공항동 45, 72, 방화동 612, 620일대	121,419.4	-	121,419.4	2009.2.26. 강서구고시 제2000-12호
14	강서구	공항로	강서구 가양동, 공항동, 내발산동, 등촌동, 염창동, 화곡동 일대	440,474	-	440,474	2018.6.14. 강서구고시 제2018-64호
15	강서구	등촌택지개발지구	강서구 등촌동, 가양동 일원	762,759.2	-	762,759.2	2018.3.8. 서고시 제2018-63호
16	강서구	목동사거리	강서구 화곡동 776번지 일대	50,444	-	50,444	2006.12.14. 서고시 제2006-423호
17	강서구	방화1택지개발지구	강서구 방화동 855번지 일원	636,497.3	-	636,497.3	2014.12.26. 서고시 제2014-452호
18	강서구	방화2택지개발지구	강서구 방화동 844번지 일원	88,691.8	-	88,691.8	2011.1.20. 서고시 제2011-26호
19	강서구	발산택지개발지구	강서구 내발산동 일원	600,321.7	-	600,321.7	2016.8.4. 서고시 제2016-231호
20	강서구	우장산역지구	강서구 내발산동 723, 화곡동 1006번지 일대	15,686	-	15,686	2006.5.4. 서고시 제2006-156호
21	관악구	낙성대지구	관악구 봉천동 1627-1번지 일대	108,240	-	108,240	2014.10.23. 관악구고시 제2014-84호
22	관악구	난곡생활권중심	관악구 난곡동 607번지, 635번지, 미성동 725번지 일대	75,535	-	75,535	2014.1.16. 서고시 제2014-20호
23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499,580.0	-	499,580.0	2017.9.28. 서고시 제2017-353호

번호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4	관악구	은천생활권중심	관악구 봉천동 502, 464번지 일대	12,062	-	12,062	2011.6.16. 서고시 제2011-158호
25	관악구	봉천지역중심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	573,347	-	573,347	2019.3.28. 서고시 제2019-114호
26	광진구	건대입구역지구	광진구 화양동 6-1호 일대	171,352	-	171,352	2017.7.6. 서고시 제2017-242호
27	광진구	구의사거리	광진구 구의동 254 일대	45,156	-	45,156	2015.10.1. 서고시 제2015-307호
28	광진구	군자역지구	중곡동 157-1호 일대	114,030	-	114,030	2017.7.20. 서고시 제2017-270호
29	광진구	자양지구	광진구 자양동 510-5호 일대	121,264	-	121,264	2014.3.13. 서고시 제2014-93호
30	광진구	화양1지구	화양동 18-1호 일대	306,559	-	306,559	2019.7.18. 서고시 제2019-233호
31	광진구	화양2지구	화양동 3-1호 일대	76,255	-	76,255	2011.1.20. 서고시 제2011-21호
32	구로구	개봉역	구로구 개봉동 170번지 일대	134,212	-	134,212	2012.9.27. 서고시 제2012-256호
33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지역	구로동 1124-1번지 일대	58,045	-	58,045	2009.6.11. 서고시 제2009-237호
34	구로구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구로구 구로동 602-5일대	1,060,676.7	-	1,060,676.7	2016.12.1. 서고시 제2016-390호
35	금천구	가산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일대	74,678.2	-	74,678.2	2015.8.20 서고시 제2015-242호
36	금천구	문성생활권중심	금천구 독산동 974번지 일대	81,299	-	81,299	2014.3.27 서고시 제2014-116호
37	금천구	정심생활권중심	금천구 시흥동 789-1번지 일대	35,691	-	35,691	2014.3.27 서고시 제2014-118호
38	금천구	금천구심	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	748,563	-	748,563	2018.8.2 서고시 제2018-240호
39	금천구	시흥생활권중심	시흥동 831번지 일대	8,687	-	8,687	2014.3.27 서고시 제2014-117호
40	금천구	시흥생활권	시흥동 828번지 일대	25,680	-	25,680	2017.11.16 서고시 제2017-406호
41	노원구	노원구역	노원구 상계동 332-1호 일원	49,574	-	49,574	2012.7.12 서고시 제2012-181호

번호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2	노원구	상계 1,2단계 택지개발지구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및 마들역 주변	2,663,453	-	2,663,453	2010.8.5 서고시 제2010-293호
43	노원구	수락지구	노원구 상계동 1132-9 일대	70,083	-	70,083	2013.3.14 서고시 제2013-70호
44	노원구	월계5지구 (택지개발지구)	노원구 월계동 772번지 일원	135,665.3	-	135,665.3	2000.1.6 서고시 제1999-435호
45	노원구	월계 생활권중심	노원구 월계동 380-1일대	26,414	-	26,414	2017.11.16 서고시 제2017-416호
46	노원구	중계택지	노원구 중계, 하계, 공릉동 일원	1,556,949.5	-	1,556,949.5	2017.12.21 서고시 제2017-465호
47	도봉구	도봉생활권중심	도봉동 600번지 일대	33,620	-	33,620	2006.4.27 서고시 제2006-138호
48	도봉구	도봉역세권	도봉구 도봉동 626번지 일원	168,700	-	168,700	2010.12.30 서고시 제2010-487호
49	도봉구	방학역세권	방학동 720 일대	259,250	-	259,250	2017.11.2 서고시 제2017-387호
50	도봉구	쌍문 생활권중심	쌍문동 589번지 일대	198,068	-	198,068	2006.5.4 서고시 제2006-161호
51	도봉구	쌍문지구중심	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	184,840	-	184,840	2017.9.28 서고시 제2017-350호
52	동대문구	배봉 생활권중심	장안동 286번지 일대	33,325	-	33,325	2007.3.2 서고시 제2007-54호
53	동대문구	신설	동대문구 신설동 117-23, 109-5번지 일대	145,615.0	-	145,615.0	2018.8.23 서고시 제2018-261호
54	동대문구	장한평 일대 (동대문/성동구)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답십리동 일대	523,805	-	523,805	2018.8.16 서고시 제2018-259호
55	동대문구	전농지구중심	동대문구 전농동 295번지 일대	68,763	-	68,763	2007.7.5 서고시 제2007-215호
56	동작구	대림지구	동작구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	70,954	-	70,954	2017.5.18 서고시 제2017-171호
57	동작구	신대방지구	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	57,025	-	57,025	2014.10.30 서고시 제2014-372호
58	동작구	사당·이수 (사당/동작/관악)	서초구 방배동 444번지 일대	475,540	-	475,540	2017.12.28 서고시 제2017-487호
59	동작구	상도지구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82,985	-	82,985	2017.7.13 서고시 제2017-259호

번호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60	마포구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마포구 도화동 25-13번지 일원	16,576	-	16,576	2013.10.10 서고시 제2013-334호
61	마포구	경의선 홍대입구역	마포구 동교동 190-1번지 일대	20,844	-	20,844	2014.4.3 서고시 제2014-134호
62	마포구	대흥지구	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일대	29,790	-	29,790	2017.6.15 서고시 제2017-212호
63	마포구	마포지구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270,547.6	-	29,790	2018.10.4 서고시 제2018-317호
64	마포구	신촌지구일대	마포구,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일대	546,263.3	-	546,263.3	2019.7.4. 마포구고시 제2019-91호
65	마포구	아현1지구	마포구 염리동 8-31일대	39,965	-	39,965	2017.6.15 서고시 제2017-210호
66	마포구	아현2지구	아현동 331번지 일대	41,230	-	41,230	2017.6.15 서고시 제2017-211호
67	마포구	합정지구	합정동 419일대	298,000	-	298,000	2008.12.4 서고시 제2008-432호
68	서대문구	서대문구청주변	홍은동274번지, 연희동 169번지 일대	44,459	-	44,459	2012.7.5. 서고시 제2012-175호
69	서대문구	천연지구	영천동69-20번지 일대	11,154.2	-	11,154.2	2010.7.22 서고시 제2010-282호
70	서대문구	충정지구	서대문구 미근동 21번지 일원	24,230	-	24,230	2010.1.7. 서고시 제2010-1호
71	서초구	서초구역 (꽃마을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98 일대	42,761.7	-	42,761.7	2017.6.15 서초구고시 제2017-60호
72	서초구	양재택지개발지구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	3,067,090	-	3,067,090	2016.4.14. 서고시 제2016-118호
73	서초구	우면택지개발사업	서초구 우면동 일원	153,972.8	-	153,972.8	1996.12.20. 서고시 제1996-338호
74	성동구	금호지구중심	성동구 금호동3가 332, 금호동4가 541번지 일대	25,106	-	25,106	2011.12.8. 서고시 제2011-369호
75	성동구	독섬주변지역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148,400	-	148,400	2017.5.18. 서고시 제2017-169호
76	성동구	왕십리광역중심	성동구 행당동, 도선동, 홍익동, 하왕십리동 일대(왕십리역주변)	218,000	-	218,000	2016.7.28. 서고시 제2016-220호
77	성북구	동선지구중심	동선동1가 71번지 일대	189,529	-	189,529	2013.7.11. 서고시 제2013-224호
78	성북구	동소문동2가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52,908	-	52,908	2010.7.8. 서고시 제2010-253호

번호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79	성북구	보문생활권중심	성북구 보문동5가 10번지 일대	56,207	-	56,207	2009.2.26. 서고시 제2009-70호
80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성북구 석관동 242-1번지 일대	132,352	-	132,352	2014.6.26. 서고시 제2014-234호
81	성북구	월곡	성북구 하월곡동 46-1번지 일대	56,880	-	56,880	2012.5.24. 서고시 제2012-132호
82	성북구	정릉생활권중심	성북구 정릉동 465-1번지 일대	63,100	-	63,100	2013.6.13. 서고시 제2013-180호
83	송파구	개롱	송파구 가락동 166번지 일대	21,900	-	21,900	2009.7.23. 서고시 제2009-284호
84	송파구	거여지구	송파구 거여동 22번지 일대	50,843	-	50,843	2012.1.12. 서고시 제2012-7호
85	송파구	방이1지구	송파구 방이동 205번지 일대	106,000	-	106,000	2009.7.23. 서고시 제2009-283호
86	송파구	삼전	삼전동 7번지 일대	136,002	-	6,788,331	2018.10.25. 서고시 제2018-347호
87	송파구	석촌역주변지구	송파구 석촌동 174,286 송파동 18,84 일대	50,660	-	50,660	1996.12.16 서고시 제1996-328호
88	송파구	송파대로	가락동, 송파대로 주변	198,442	-	198,442	2015.11.5. 서고시 제2015-350호
89	송파구	올림픽로(잠실광역 중심제1,제2지구)	(제1지구)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858,791	-	858,791	2015.9.24. 서고시 제2015-296호
			(제2지구) 잠실동, 올림픽로 주변	367,687	-	367,687	2015.9.24. 서고시 제2015-296호
90	송파구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일원	6,797,608.7	-	6,797,608.7	2010.11.3. 서고시 2010-754호
91	양천구	김포가도(양천)지구	양천구 김포가도 주변(목동514-5번지 일대)	140,223	-	140,223	2016.5.19. 서고시 제2016-144호
92	양천구	목동지구중심	양천구 목동 909번지~신정동 324번지 일대	714,871.4	-	714,871.4	2019.8.16. 서고시 제2019-271호
93	양천구	목동오거리	신정동 888-47번지 일대	192,743	-	192,743	2016.10.20 서고시 제2016-335호
94	양천구	신월생활권중심	신월동 166-4번지 일대	97,408	-	97,408	2007.3.33 서고시 제2007-72호
95	양천구	신정생활권중심	신월동 1001-2번지 일대	91,470	-	91,470	2009.7.23. 서고시 제2009-299호

번호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96	양천구	신정네거리	양천구 신정동1031-1호 일대	182,150	-	182,150	2010.9.2. 서고시 제2010-313호
97	영등포구	당산지구중심	영등포구 당산동 338-1일대	128,987	-	128,987	2019.5.9. 서고시 제2019-141호
98	영등포구	대림지구중심	영등포구 대림동 994-2번지 일대	45,000	-	45,000	2000.11.6. 서고시 제2000-310호
99	영등포구	대림2생활권	영등포구 대림동 706번지 일원	80,000	-	80,000	2016.10.20. 서고시 제2002-149호
100	영등포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	801,860	-	801,860	2019.8.1. 서고시 제2019-250호
101	영등포구	신길동	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	110,825	-	110,825	2011.8.18. 서고시 제2011-235호
102	영등포구	신봉지구	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	69,350	-	69,350	1997.12.8. 서고시 제1997-392호
103	영등포구	신길6생활권	영등포구 신길동 506 일대	23,000	-	23,000	1998.4.30. 서고시 제1998-146호
104	영등포구	신길1생활권중심	영등포구 신길동 115-1 일대	54,600	-	54,600	2006.8.31. 서고시 제2006-299호
105	용산구	용산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248,137	-	3,248,137	2017.7.13. 서고시 제2017-252호
106	용산구	이태원로주변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일대	220,459	-	220,459	2018.3.29. 용산구고시 제2018-30호
107	용산구	한남	용산구 한남동 일원	307,592	-	307,592	2013.11.28. 서고시 제2013-402호
108	은평구	구산생활권중심	구산동 2번지 일대	108,400	-	108,400	2006.8.17. 서고시 제2006-280호
109	은평구	구청생활권중심	녹번동 185번지 일대	125,300	-	125,300	2012.10.25. 서고시 제2012-283호
110	은평구	독바위	불광동 221-13번지 일대	31,010	-	31,010	2011.4.28. 서고시 제2011-105호
111	은평구	불광	불광동 272-5번지 일대	160,531	-	160,531	2015.2.5. 서고시 제2015-32호
112	은평구	수색지구	은평구 수색동 72번지 증산동 222번지 일원	217,900	-	217,900	2010.3.25. 서고시 제2010-104호
113	은평구	연신내	불광동 311번지 일대 대조동 185번지 일대 갈현동 396번지 일대	166,010	-	166,010	2011.4.28. 서고시 제2011-104호

번호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14	은평구	신사생활권중심	은평구 신사동 19번지 일대	88,000	-	88,000	2019.7.18. 서고시 제2019-234호
115	은평구	역촌역세권	은평구 역촌동 17-1일원	109,269	-	109,269	2018.3.29. 서고시 제2018-90호
116	은평구	응암역생활권중심	은평구 신사동 23-1번지 일대	30,000	-	30,000	2019.7.18. 서고시 제2019-235호
117	은평구	응암로	은평구 응암동 739번지 일대	222,000	-	222,000	2013.7.25. 서고시 제2013-246호
118	종로구	대학로	대학로 일대	438,593	-	438,593	2017.3.30. 서고시 제2017-110호
119	종로구	동대문	종로구 창신동, 송인동 일대	39,154.0	-	39,154.0	2017.7.27. 서고시 제2017-276호
120	종로구	북촌	종로구 북촌 (가화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	1,128,372.7	-	1,128,372.7	2017.4.20. 서고시 제2017-134호
121	종로구	송인2	종로구 송인동 1150일대	119,450	-	119,450	2016.1.14. 서고시 제2016-17호
122	중구	약수	중구 신당동 360번지 일대	169,609	-	169,609	2014.10.23. 서고시 제2014-365호
123	중구	퇴계로변	중구 충무로2가 ~ 충무로5가 일대	93,575	-	93,575	2015.10.29 서고시 제2015-340호
124	중구	회현	중구 남창동 187, 회현동1가 194번지 일대	38,600	-	38,600	2009.7.23. 서고시 제2009-293호
125	중랑구	면목생활권중심	중랑구 면목동 102번지 일대	113,000	-	113,000	2008.8.28. 서고시 제2008-290호
126	중랑구	면목지구중심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	125,000	-	125,000	2016.7.7. 서고시 제2016-196호
127	중랑구	목동지구중심	중랑구 목동 165, 171번지 일원	82,500	-	82,500	2018.3.22. 서고시 제2018-79호
128	중랑구	상봉생활권중심	중랑구 상봉동 129번지 일대	150,000	-	150,000	2000.7.31. 서고시 제2000-216호
129	중랑구	신내택지개발지구	중랑구 신내동 일원	217,394.8	-	217,394.8	2011.12.8. 서고시 제2011-366호
130	중랑구	중화생활권중심	중랑구 중화동 286-41 일대	16,454	-	16,454	2010.11.4. 서고시 제2010-395호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변경)

(신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

(단, 비주거용도 비율에 대해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내용을 준수한다.)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을 적용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II.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시청 도시관리과(☎02-2133-8380) 및 자치구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에서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5호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05.19.)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변경 지정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마포구 신공덕동 27-8일대	2,315.00	증) 1,487.86	3,802.86	

※ 제28·29지구는 사업시행인가(2010.09.16.)이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상태로 미집행 정비
기반시설 필지를 제48지구에 포함하여 조성코자 함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315.00	증) 1,487.86	3,802.86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1,272.92	1,272.92	33.5	
	도 로	-	증) 355.42	355.42	9.4	
	공공공지	-	증) 917.50	917.50	24.1	
획 지		2,315.00	감) 214.94	2,529.94	66.5	

2) 용도지역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802.86	-	3,802.86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800.41	-	3,800.41	99.9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45	-	2.45	0.1	

3)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50	신공덕동 23-7	신공덕동 167-1(도)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146호(80.5. 19)	

※ ()는 구역내 포함되는 연장임

나) 공원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감)	변경후		
폐지	공덕공원	근린공원	공덕동 255-6일대	1,606.20	1,606.20	-	서고시제882호 (85.12.28)	-

다) 공공공지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증)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공덕동 255-6일대	-	1,606.20 (증 917.50)	1,606.20 (917.50)	-	-

※ ()는 구역내 포함되는 면적임

※ 제28·29지구는 사업시행인가(2010.09.16.)이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상태로 미집행 정비
기반시설 필지를 제48지구에 포함하여 조성코자 함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3,802.86	획지	2,529.94	신공덕동 27-8일대	16	-	-	16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마포로1구 역	2,315.00	획지	2,315.00	신공덕동 27-8일대	업무 시설	35.8	610	37	미시행
변경	마포로1구 역	3,802.86	획지	2,529.94	신공덕동 27-8일대	업무	60 이하	984 이하	11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건설비율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36형	28	36.90
	49형	56	49.90
	59형	56	59.90
	소계	140	7,182.00
●건설예정세대수 : 140세대			

용적률 계획	용적률	●① + ② + ③ = 984.0% 이하		
	① 기준용적률	●600% (일반상업지역)		
	② 허용용적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준수 : 200%		
		구분	인센티브 대상	완화량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인증, 에너지절약계획, 신재생에너지	100%
		도시경제활성화	업무전용빌딩 설치 시, 창업지원센터 도입	61%
		보행가로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무장애도시조성	5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③ 상한용적률	●정비기반시설 제공 : 184.13% - 허용용적률 $\times 1.3 \times \alpha$ = $800\% \times [1.3 \times (447.92\text{m}^2 / 2,529.94\text{m}^2)] = 184.13\%$		
		●안전·방재		
기타사항에 관한계획		●공공보행통로(폭 3m이상)		

※ 본 용적률 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후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140세대	-

6)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2.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로1구역 제48지구에 대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지정하는 사항임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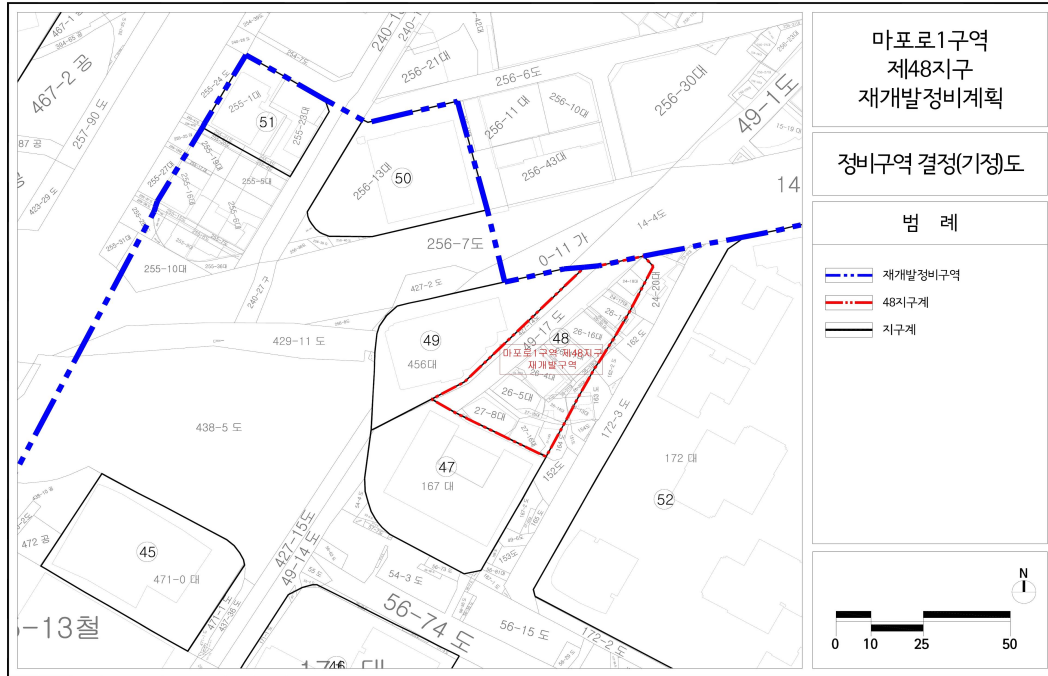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및 정비계획결정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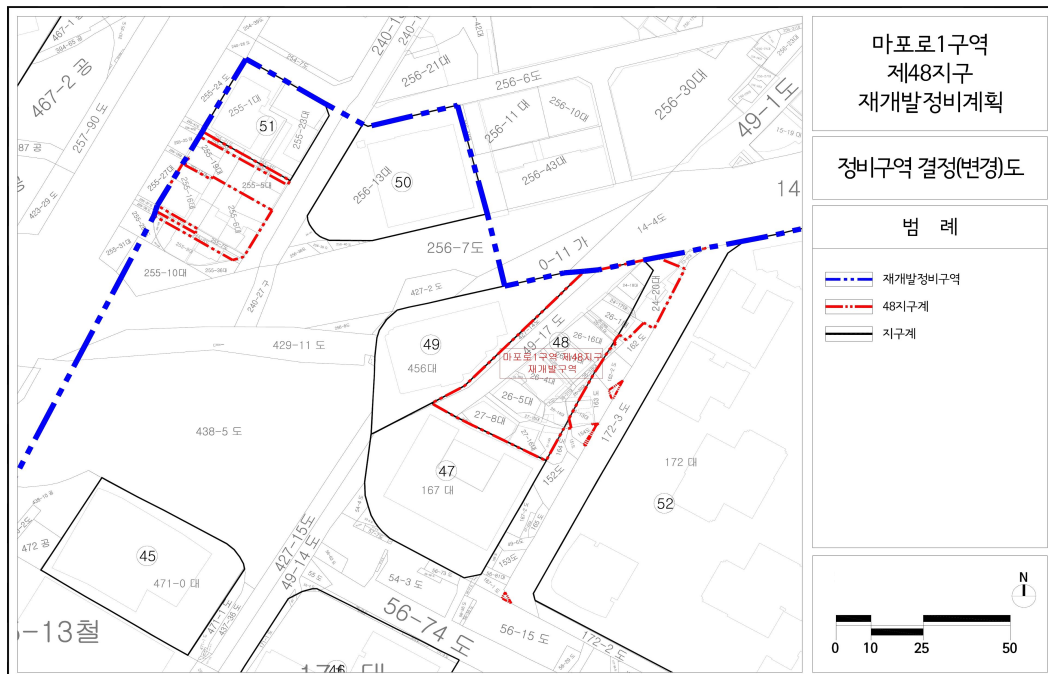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02-2133-4646)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6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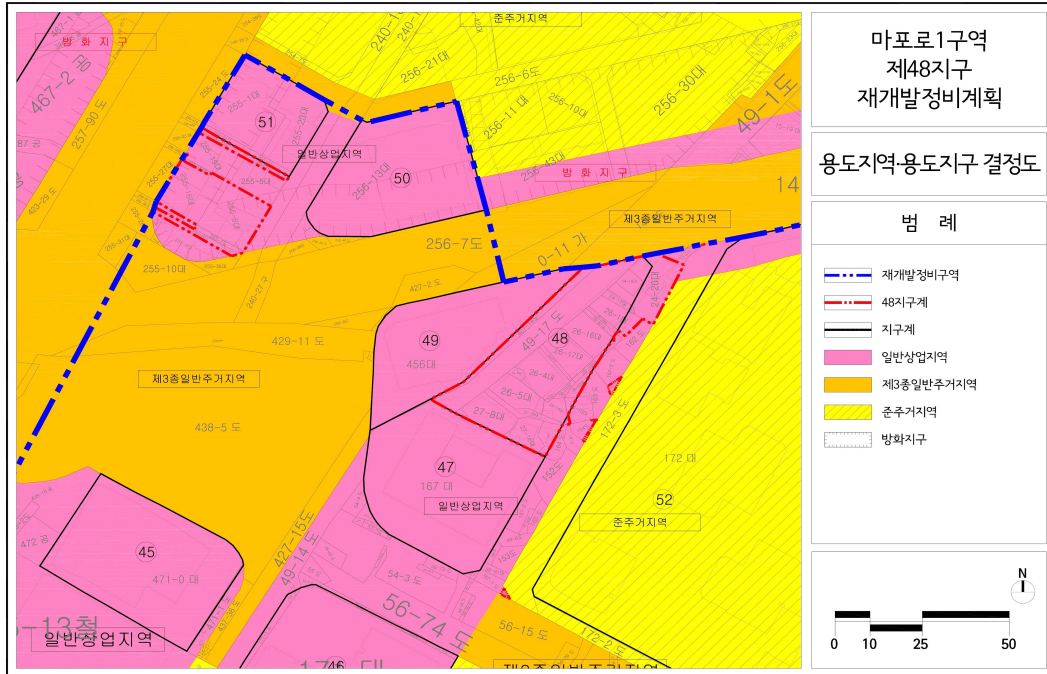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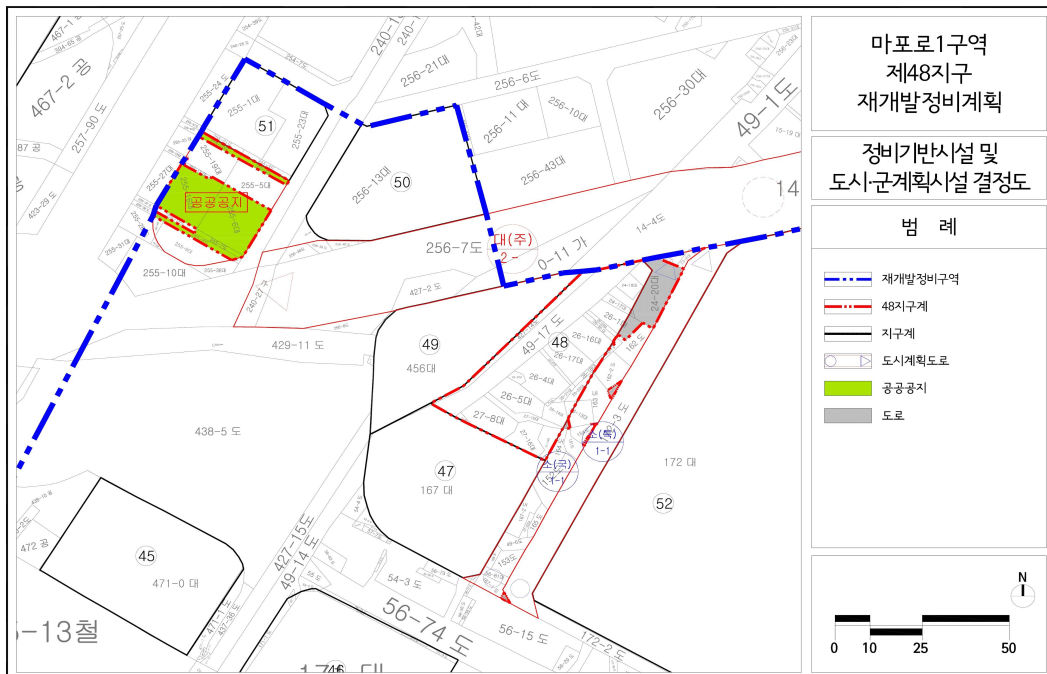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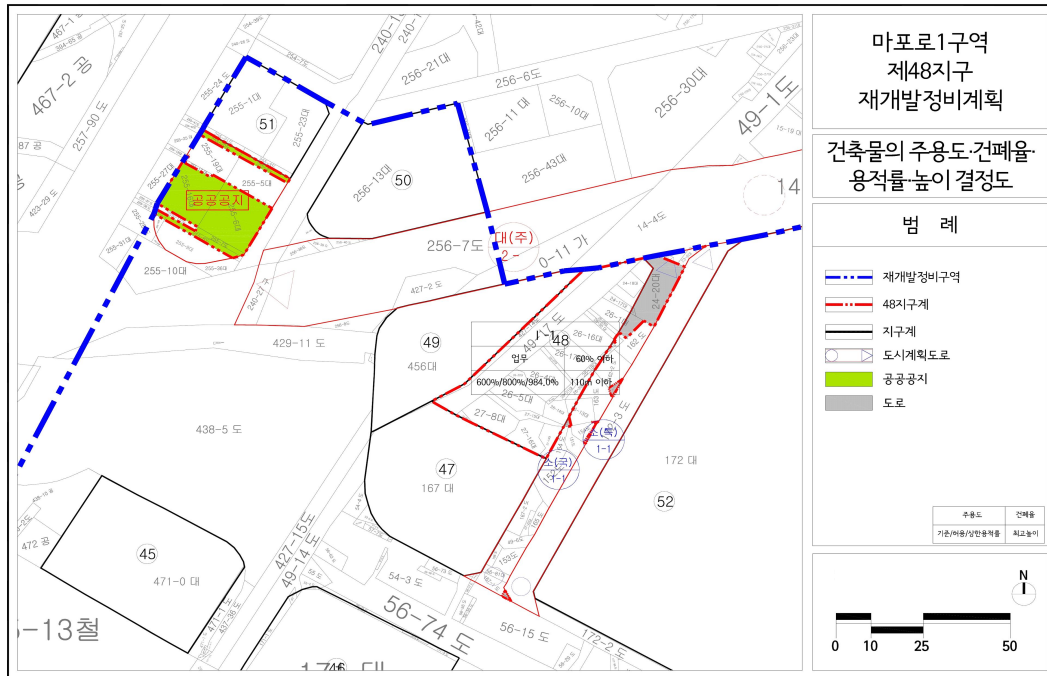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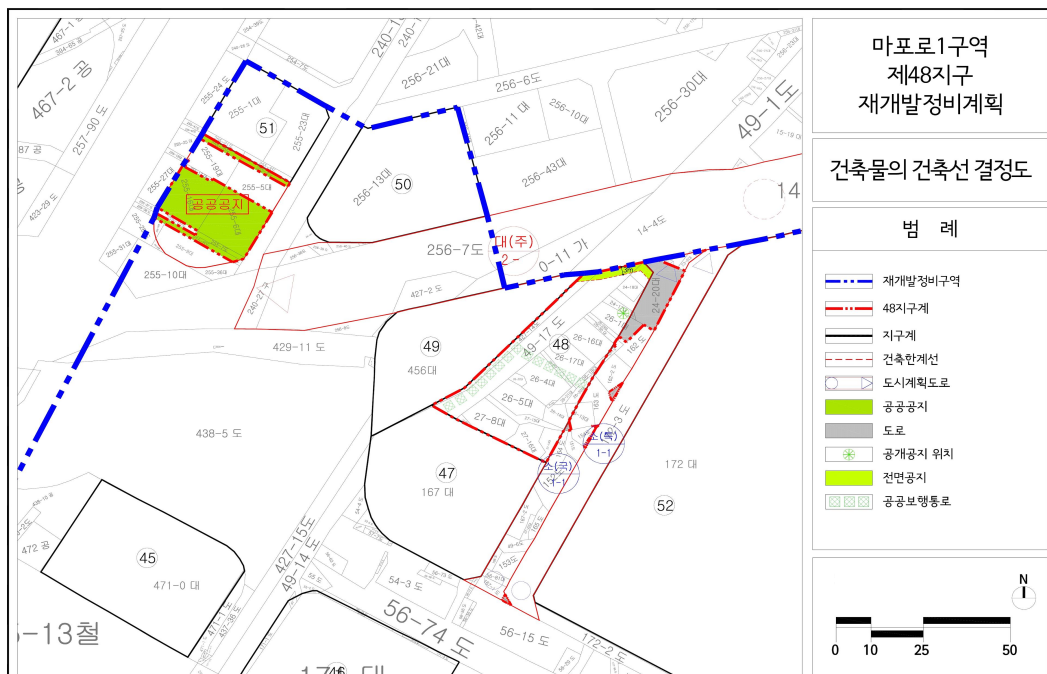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



■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37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후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9. 9. 19.~2019. 10. 3.(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최초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파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 번호	차량 번호	차종	주차장	입차일자	입차 시간	출차일자	출차 시간	부과 금액	가산금	주차요금	소유자	주소	우편 번호	반송 사유
	2건														
1	20209108	02보7359	SM520 LPG	구로디지털 단지역	2019-06-24	12:26	2019-06-24	19:35	12,900	0	12,900	진봉기	경기도 시흥시 신천천동로51번길 8, 508호(신천동, 동경3차아파트)	14949	폐문부재
2	20209129	14다8609	쏘나타 (SONATA)	수서역	2019-06-25	15:07	2019-06-25	16:32	2,100	0	2,100	서동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46-26, C동 102호(미래타운)	12772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38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 철도안전법 제47조, 철도안전법 제49조, 철도안전법 제8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9. 9. 19. ~ 2019. 10. 8.(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당사자의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k0099@seoul.go.kr
팩스: 02-768-8897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19. 10. 22.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공시 송달 요청 명단(사전통지 반송분)

납세자명	생년월일	위반내용	부과예정금액 (감정전금액)	위반장소	위반일자	도로명 우편번호	도로명 우편주소	도로명상세주소 (동,층,호)	반송이유
윤종화	570412	물품판매(직무지시위반)	250,000	신도림	201903021209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88-1	영등포동3가	반송합투함
문서원	620816	물품판매	50,000	1호선 열차	201903041459	024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로6길 3	회경동	수취인불명
문서원	620816	물품판매	50,000	1호선 열차	201903051446	024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로6길 3	회경동	수취인불명
문서원	620816	물품판매	50,000	1호선 열차	201903211218	024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로6길 3	회경동	수취인불명
문서원	620816	물품판매	50,000	1호선 열차	201903251609	024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로6길 3	회경동	수취인불명
윤종화	570412	물품판매(직무지시위반)	250,000	신도림	201903041235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88-1	영등포동3가	장기방치
박정민	671023	물품판매(직무지시위반)	250,000	고속터미널	201903191137	073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여의도동	반송합투함
정기수	751018	기부 요청	50,000	6호선 열차	201903201639	08383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35	가리봉동	반송합투함
정기수	751018	기부 요청	50,000	6호선 열차	201903211522	08383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35	가리봉동	반송합투함
정기수	751018	물품판매	50,000	6호선	201901091540	05744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35	가리봉동	반송합투함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1095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141012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171123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01044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11007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21007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61015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71000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8100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81402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91123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301300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30105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121011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1135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21015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31002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51404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61054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151041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21407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31006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7130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71406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납세자명	생년월일	위반내용	부과예정금액 (강정전금액)	위반장소	위반날짜	도로명 우편번호	도로명 우편주소	도로명상세주소 (동·층·호)	반송이유
윤종화	570412	물품판매(직무지시위반)	250,000	신도림	201903021209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68-1	영등포동3가	반송함투함
문서원	620816	물품판매	50,000	1호선 열차	201903041459	024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회경동	수취인불명
문서원	620816	물품판매	50,000	1호선 열차	201903051446	024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회경동	수취인불명
문서원	620816	물품판매	50,000	1호선 열차	201903211218	024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회경동	수취인불명
문서원	620816	물품판매	50,000	1호선 열차	201903251609	024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회경동	수취인불명
윤종화	570412	물품판매(직무지시위반)	250,000	신도림	201903041235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68-1	영등포동3가	장기반치
박정민	671023	물품판매(직무지시위반)	250,000	고속터미널	201903191137	073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여의도동	반송함투함
정기수	751018	기부요청	50,000	6호선 열차	201903201639	08383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35	가리봉동	반송함투함
정기수	751018	기부요청	50,000	6호선 열차	201903211522	08383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35	가리봉동	반송함투함
정기수	751018	물품판매	50,000	6호선	201901091540	05744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35	가리봉동	반송함투함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1095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141012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171123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01044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11007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21007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61015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71000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8100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81402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91123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301300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30105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121011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1135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21015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31002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51404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61054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151041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21407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31006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7130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71406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91055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91225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31103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납세자명	생년월일	위반내용	부과예정금액 (강정전금액)	위반장소	위반날짜	도로명 우편번호	도로명 우편주소	도로명상세주소 (동·층·호)	반송이유
윤종화	570412	물품판매(직무지시위반)	250,000	신도림	201903021209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68-1	영등포동3가	반송함투합
문서원	620816	물품판매	50,000	1호선 열차	201903041459	024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회경동	수취인불명
문서원	620816	물품판매	50,000	1호선 열차	201903051446	024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회경동	수취인불명
문서원	620816	물품판매	50,000	1호선 열차	201903211218	024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회경동	수취인불명
문서원	620816	물품판매	50,000	1호선 열차	201903251609	024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회경동	수취인불명
윤종화	570412	물품판매(직무지시위반)	250,000	신도림	201903041235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68-1	영등포동3가	장기반지
박정민	671023	물품판매(직무지시위반)	250,000	고속터미널	201903191137	073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여의도동	반송함투합
정기수	751018	기부요청	50,000	6호선 열차	201903201639	08383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35	가리봉동	반송함투합
정기수	751018	기부요청	50,000	6호선 열차	201903211522	08383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35	가리봉동	반송함투합
정기수	751018	물품판매	50,000	6호선	201901091540	05744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35	가리봉동	반송함투합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1095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141012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171123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01044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11007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21007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61015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71000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8100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81402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91123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301300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30105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121011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1135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21015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31002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51404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61054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151041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21407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31006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71309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황석순	600623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271406	0574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11	장위동	재개발재건축 철거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7호선	201903011137	0574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5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021440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5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열차내	201903101529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5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납세자명	생년월일	위반내용	부과예정금액 (감정전금액)	위반장소	위반날짜	도로명 우편번호	도로명 우편주소	도로명상세주소 (동, 호)	반송이유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131048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131338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171147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171605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181142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181449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221200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221413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231053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231506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241445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261136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281157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301119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301436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배종오	610505	물품판매	50,000	영치내	201903311631	069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다길 19	노량진동	수취인불명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금액의 50%가 감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마. 미성년자

※ **자진납부감면 20%와 기초생활감면 50%를 동시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면된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46호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지선정계획 결정을 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명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

2. 공고기간 : 2019. 9.19. ~ 12.17.(90일간)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가.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 1) 종 류 : 생활폐기물
- 2) 발 생 량 : 3,037톤/일 (2017년 기준)

나.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다.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와 규모 : 소각시설 500톤/일

※ 상기 사항은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변동될 수 있음

4.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가. 입지선정 기준

- 1) 해당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공개모집)
- 2) 부지면적 17,000㎡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
- 3) 주거지와 격리정도를 고려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 4)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한 지역
- 5)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
- 6) 토지이용계획(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 7) 소각열 활용이 용이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
- 8) 공개모집 신청이 없을 경우 서울시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지역 검토

나. 입지선정 방법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
- 2)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

5.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가. 기간 : 2019. 9.19. ~ 12.17.(90일간)

나.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다. 응모자격 :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과반수의 주민동의를 얻은 개인, 단체, 문중대표 등

※ 단, 신청지역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라. 후보지 조건

1) 부지면적 17,000㎡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

2)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은 제외)

마. 신청서류

1)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 응모신청서

2) 신청지역 주민동의서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 신청서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접수기한 : 2019. 12. 17.(화) 18:00까지 방문 접수한 건에 한함

6.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각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공사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지원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함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이외의 자치구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의 100분의 10 가산금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함

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2조 별표 1.에 따라 주민 난방비 지원

※ 별표 1.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에 따라 지역 난방비 차등지원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65%초과	65%~50% 초과	50%이하	0%
지원금 출연율	70%	60%	50%	0%

라. 입지주민 및 자치구 특별지원(정책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자치구 외의 자치구의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24,000원 내·외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영향권 지역내 주민에게 특별출연금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의 10% 입지 자치구 발전기금 지원

7.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당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지선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자원순환과(☎ 02-2133-3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 응모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응모지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동의	동	세대수	동의세대수	동의율(%)	비고	
응모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후보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입지 응모 주민동의서

2019. . .

신청인(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장 귀하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 지 응 모 주 민 동 의 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원에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설치 신청을
동의하며, 최종 선정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
하겠음을 연대하여 서명(날인)합니다.

연번	성 명 (세대주)	주 소	생년월일	서명(인)

※ 필히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49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 등록 직인(등록사유 : 서울시립대학교 조직 회계관직 신설)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9. 8. 12.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9. 8. 1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62호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567-1 일원
 다. 면적 : 266,304m²
 라.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 사업기간 : 구역지정일 ~ 2020년 12월 31일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도첨부

3. 공개기간 : 2019년 9월 19일 ~ 2019년 10월 4일(14일간)

4. 공개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2)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환경부(02-3410-7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63호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198호(2000.07.25)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7호(2015.07.16.)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01호(2002.05.29.)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89호(2018.12.06.)로 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된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월드컵근린공원
2.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3. 면적 : 2,284,085m²
4. 주요 변경개요(노을,하늘,난지천공원)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기 반 시 설	도 로	226,632.4	224,587.4	감 2,045㎡
조 경	시 설	254,918	252,153	감 2,765㎡ 증)5기
휴 양	시 설	77,253	71,282	감 5,971㎡ 증)75기
운 동	시 설	45,799	44,942	감 857㎡
교 양	시 설	20,868	33,368	증 12,500㎡ 증)17기
편 익	시 설	69,273.53	69,378.23	증 104.7㎡ 증)11기
관 리	시 설	5,668	5,668	증)15기
녹 지 및 기 타	녹 지	1,515,736.07	1,514,769.37	감 966.7㎡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300-5534)

8.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조서

가. 총괄표(위치: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284,085	770,848.93	69	7,729.40	11,196.11	4,255	2,284,085	771,815.63	69	7,729.40	11,196.11	4,378
기 반 시 설	소 계	288,743.4					286,698.4	286,698.4				
	도 로	226,632.4					224,587.4	224,587.4				
	광 장	62,111					62,111	62,111				
조 경 시 설	254,918	254,918				361	252,153	252,153				366
휴 양 시 설	77,253	77,253				1,266	71,282	71,282				1,341
유 희 시 설	5,826	5,826				154	5,826	5,826				154
운 동 시 설	45,799	45,799				13	44,942	44,942				13
교 양 시 설	20,868	20,868	2	2,098	3,794	22	33,368	33,368	2	2,098	3,794	39
편 의 시 설	69,273.53	69,273.53	26	2,273.66	2,354.37	101	69,378.23	69,378.23	26	2,273.66	2,354.37	112
관 리 시 설	5,668	5,668	41	3,357.74	5,047.74	2,338	5,668	5,668	41	3,357.74	5,047.74	2,353
녹 지 및 기 타	1,515,736.07	2,500					1,514,769.37	2,500				
시 설 륜 (법정 40%)	(770,848.93㎡/2,284,085㎡)×100=33.74%						(771,815.63㎡/2,284,085㎡)×100=33.79%					
건 폐 율 (법정 10%)	(7,729.4㎡/2,284,085㎡)×100=0.338%						(7,729.4㎡/2,284,085㎡)×100=0.338%					

○ 노을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구	본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911,859	287,188.04	19	1,296.75	1,377.46	240	911,859	287,188.04	19	1,296.75	1,377.46	263	증	23기	
	소	67,205	67,205					67,205	67,205							
	도	66,079	66,079					66,079	66,079							
기	반	1,126	1,126					1,126	1,126							
	시															
	설															
조	경	156,942	156,942				75	156,942	156,942					78	증	3기
	시	30,300	30,300				15	30,300	30,300					25	증	10기
	설						2						2			
휴	양	30,500	30,500					30,500	30,500							
	시	32	32	1	32	32		32	32	1	32	32	4			
	설	1,579.04	1,579.04	8	661.75	742.46	5	1,579.04	1,579.04	8	661.75	742.46	11			
관	리	630	630	10	603	603	143	630	630	10	603	603	143			
	소	624,670.96						624,670.96								
	지	624,670.96						624,670.96								

○ 하늘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478-72번지 일대)

구	본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면		시설면적(㎡)	축		공작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면	공작물 (기)					
		부지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732,829.00	103,949.89	16	981.23	981.23	1,162		732,829.00	104,054.59	16	981.23	981.23	1,200	시설면적 증 104.7㎡ 증)38기			
		소	94,813.40	94,813.40						94,813.40	94,813.40								
		도	94,233.40	94,233.40						94,233.40	94,233.40								
		광	580	580						580	580								
조	경	시	614	614				186		614	614				188	증)2기			
		양	1,175	1,175				436		1,175	1,175				469		증)33기		
		유																	
		운																	
교	양	시														증)3기			
		의																	
		편	5,243.49	5,243.49	5	259.49	259.49	72		5,348.19	5,348.19	5	259.49	259.49	75				
		리	2,104	2,104	11	721.74	721.74	468		2,104	2,104	11	721.74	721.74	468				
녹	지	및	628,879.11						628,774.41						감 104.7㎡				
		타																	

○ 난지천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1538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긴		공작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긴		공작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긴		공작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긴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70,887	131,496	14	609.94	609.94	754	270,887	132,358	14	609.94	609.94	814	시설면적 증)862㎡ 증)60기									
		소	33,006	33,006					30,961	30,961					시설면적 감)2,045㎡								
	로	30,344	30,344					28,299	28,299					시설면적 감)2,045㎡									
	광	2,662	2,662					2,662	2,662														
조	경	38,692	38,692				41	35,927	35,927				41	시설면적 감)2,765㎡									
	시																						
휴	양	14,800	14,800				254	8,829	8,829				286	시설면적 감)5,971㎡ 증)32기									
	시																						
유	회	2,606	2,606				15	2,606	2,606				15										
	시																						
운	동	13,038	13,038				13	12,181	12,181				13	시설면적 감)857㎡									
	시																						
교	양	13,731	13,731				22	26,231	26,231				35	시설면적 증)12,500㎡ 증)13기									
	시																						
편	익	15,356	15,356	6	342.94	342.94	13	15,356	15,356	6	342.94	342.94	15	증)2기									
	시																						
관	리	267	267	8	267	267	396	267	267	8	267	267	411	증)15기									
	소	139,391						138,529						감)862㎡									
녹	지	129,123						128,261						녹지면적 감)862㎡									
	기타	10,268						10,268															

○ 평화의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1535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바닥면적 (㎡)	연면적(㎡)	공작물 (기)							
				동수(동)	면적(㎡)						동수(동)	면적(㎡)										
합	계	368,510	248,215	20	4,841.48	8,227.48	2,099	368,510	248,215	20	4,841.48	8,227.48	2,099	변동없음								
기 반 시 설	소 계	93,719	93,719					93,719	93,719													
	도 로	35,976	35,976					35,976	35,976													
	광 장	57,743	57,743					57,743	57,743													
조 경 시 설		58,670	58,670				59	58,670	58,670					59								
휴 양 시 설		30,978	30,978				561	30,978	30,978					561								
유 희 시 설		3,220	3,220				137	3,220	3,220					137								
운 동 시 설		2,261	2,261					2,261	2,261													
교 양 시 설		7,105	7,105	1	2,066	3,762		7,105	7,105	1	2,066	3,762										
편 의 시 설		47,095	47,095	7	1,009.48	1,009.48	11	47,095	47,095	7	1,009.48	1,009.48	11									
관 리 시 설		2,667	2,667	12	1,766	3,456	1,331	2,667	2,667	12	1,766	3,456	1,331									
녹지 및 기타	소 계	122,795	2,500					122,795	2,500													
	녹 지	120,295						120,295														
	반려견 놀이터	2,500	2,500					2,500	2,500													

○ 시설조서(노을공원)

구 분	변 경										변 경										비 고																																																																																																																																																																																																																																																																																																																																																																																																																																																																																																																																																																																																																																																																																																																																																																																																							
	부 호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구 조					공 작 물 (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분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투자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투자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시 설	화강질	차-3 상암478-1	(153)	(153)						차-3 상암478-1	(153)	(153)							
		차-4 상암478-1	(190)	(190)						차-4 상암478-1	(190)	(190)							
		2 전지역	504.32	504.32		7		504.32	504.32	2 전지역	504.32	504.32		7		504.32	504.32		
		2-1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1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2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2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3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3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4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4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5 전지역	16.8	16.8	목조	1		16.8	16.8	2-5 전지역	16.8	16.8	목조	1		16.8	16.8		
		2-6 전지역	40	40	목조	1		40	40	2-6 전지역	40	40	목조	1		40	40		
		2-7 전지역	110.28	110.28	목조	1		110.28	110.28	2-7 전지역	110.28	110.28	목조	1		110.28	110.28		
관 리 시 설	매점	3 상암481-6	429.72	429.72	경량패널	1		157.43	238.14	3 상암481-6	429.72	429.72	경량패널	1		157.43	238.14		
	응수대	㉑ 전지역								㉑ 전지역								10 증/기	
	목재계단	㉒ 전지역								㉒ 전지역								1	
	소 계			630	630	10		603	603			630	630	10		603	603	143	
	파크골프장 관리소	4 전지역	59	59	목조	1		59	59	4 전지역	59	59	목조	1		59	59		
	인내소	5 전지역	204	204		4		177	177	5 전지역	204	204		4		177	177		
		5-1 전지역	73	73	R.C.	1		73	73	5-1 전지역	73	73	R.C.	1		73	73		
		5-2 전지역	63	63	R.C.	1		36	36	5-2 전지역	63	63	R.C.	1		36	36		
		5-3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5-3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5-4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5-4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누 지 및 기타	창 고	6 전지역	325	325		4		325	325	6 전지역	325	325		4		325	325		
		6-1 전지역	30	30	경량패널	1		30	30	6-1 전지역	30	30	경량패널	1		30	30		
		6-2 전지역	90	90	경량패널	1		90	90	6-2 전지역	90	90	경량패널	1		90	90		
		6-3 전지역	108	108	경량패널	1		108	108	6-3 전지역	108	108	경량패널	1		108	108		
		6-4 전지역	97	97	경량패널	1		97	97	6-4 전지역	97	97	경량패널	1		97	97		
	폼프실	7 전지역	42	42	R.C.	1		42	42	7 전지역	42	42	R.C.	1		42	42		
	목책	㉓ 전지역								㉓ 전지역								1식	
	유지통	㉔ 전지역								㉔ 전지역								10	
	공원등	㉕ 전지역								㉕ 전지역								115	
	인내관	㉖ 전지역								㉖ 전지역								5	
cctv	㉗ 전지역								㉗ 전지역								13		
소 계			624,670.96								624,670.96								
누 지		전지역								전지역									

○ 시설조서(하늘공원)

구 분	면 적				경				전				면 적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비 고	
합 계		전지역	732,829	103,949.89		16	981.23	981.23	1,162		전지역	732,829	104,054.59		16	981.23	981.23	1,200	시설면적 증 104.7㎡ 증387기	
기 소 계			94,813.4	94,813.4								94,813.4	94,813.4							
	도 로	전지역	94,233.4	94,233.4								94,233.4	94,233.4							
	광 장	가	580	580						가		580	580							
	반 시	가-1	상암481-72	201	201						가-1	상암481-72	201	201						
		가-2	상암481-81	153	153						가-2	상암481-81	153	153						
가-3		상암481-72	113	113						가-3	상암481-72	113	113							
설	가-4	상암482-242	113	113						가-4	상암482-242	113	113							
소 계			614	614					188			614	614					188	증2기	
	임 석원	나	상암481-72	585	585					나	상암481-72	585	585							
	화 단	다		29	29					다		29	29							
		다-1	상암481-72	23	23						다-1	상암481-72	23	23						
		다-2	상암481-72	6	6						다-2	상암481-72	6	6						
조	①	전지역						4	①	전지역								5	증1기	
경	②	상암481-72							2	②	상암481-72								3	증1기
	파교라 만구조	③	전지역						3	③	전지역								3	
		④	상암481-72							1	④	상암481-72							1	
		⑤	상암481-72							11	⑤	상암481-72							11	
	시 설	⑥	전지역							19	⑥	전지역								19
대지조형물 조 형물		⑦	상암481-72						1	⑦	상암481-72								1	
		⑧	전지역							2	⑧	전지역							2	
		⑨	암481-72							143	⑨	암481-72							143	
후 소 계				1,175	1,175				438			1,175	1,175					469	증33기	
양	라		1,175	1,175						라		1,175	1,175							
	라-1	상암481-72	545	545						라-1	상암481-72	545	545							
	라-2	상암481-72	571	571						라-2	상암481-72	571	571							
	라-3	상암481-81	59	59						라-3	상암481-81	59	59							
	⑩	전지역							4	⑩	전지역								4	
시 설	⑪	전지역							382	⑪	전지역								33	증33기
	⑫	전지역							50	⑫	전지역								382	
																			50	
소 계			5,243.49	5,243.49		5	259.49	259.49	72			5,348.19	5,348.19		5	259.49	259.49	75	시설면적 증104.7㎡ 증3기	
전망대	마		4,984	4,984						마		4,984	4,984							
	마-1	상암481-81	721	721						마-1	상암481-81	721	721							

구 분	면 적				경 면 적				면 적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면 이 시 설	마-2	상암481-81	132	132	132		마-2	상암481-81	132	132		마-2	상암481-81	132					
	마-3	상암481-81	212	212	212		마-3	상암481-81	212	212		마-3	상암481-81	212					
	마-4	상암482-242	372	372	372		마-4	상암482-242	372	372		마-4	상암482-242	372					
	마-5	상암481-72	351	351	351		마-5	상암481-72	351	351		마-5	상암481-72	351					
	마-6	상암482-242	165	165	165		마-6	상암482-242	165	165		마-6	상암482-242	165					
	마-7	상암482-49	166	166	166		마-7	상암482-49	166	166		마-7	상암482-49	166					
	마-8	상암482-49	173	173	173		마-8	상암482-49	173	173		마-8	상암482-49	173					
	마-9	상암481-72	694	694	694		마-9	상암481-72	694	694		마-9	상암481-72	694					
	마-10	상암481-94	486	486	486		마-10	상암481-94	486	486		마-10	상암481-94	486					
	마-11	상암481-72	108	108	108		마-11	상암481-72	108	108		마-11	상암481-72	108					
	마-12	상암482-49	359	359	359		마-12	상암482-49	359	359		마-12	상암482-49	359					
	마-13	상암481-72	37	37	37		마-13	상암481-72	37	37		마-13	상암481-72	37					
	마-14	상암481-72	110	110	110		마-14	상암481-72	110	110		마-14	상암481-72	110					시설면적 증 56㎡
	마-15	상암481-81	25	25	25		마-15	상암481-81	25	25		마-15	상암481-81	25					시설면적 증 48.7㎡
	마-16	상암481-81	182	182	182		마-16	상암481-81	182	182		마-16	상암481-81	182					
	마-17	상암1535-2	569	569	569		마-17	상암1535-2	569	569		마-17	상암1535-2	569					
	마-18	상암487-3	42	42	42		마-18	상암487-3	42	42		마-18	상암487-3	42					
	마-19	상암487-3	80	80	80		마-19	상암487-3	80	80		마-19	상암487-3	80					
	화장실	1		259.49	259.49	5	5		1	259.49	259.49		1	259.49	259.49	5	5	259.49	259.49
1-1		상암481-81	54.71	54.71	R.C	1	1-1	상암481-81	54.71	54.71		1-1	상암481-81	54.71	R.C	1	54.71	54.71	
1-2		상암481-72	54.71	54.71	R.C	1	1-2	상암481-72	54.71	54.71		1-2	상암481-72	54.71	R.C	1	54.71	54.71	
1-3		상암481-81	55.04	55.04	R.C	1	1-3	상암481-81	55.04	55.04		1-3	상암481-81	55.04	R.C	1	55.04	55.04	
1-4		상암482-49	54.71	54.71	R.C	1	1-4	상암482-49	54.71	54.71		1-4	상암482-49	54.71	R.C	1	54.71	54.71	
1-5		상암481-94	40.32	40.32	R.C	1	1-5	상암481-94	40.32	40.32		1-5	상암481-94	40.32	R.C	1	40.32	40.32	
⑬		전지역					⑬	전지역				⑬	전지역						9 중) 3기
⑭		전지역					⑭	전지역				⑭	전지역						60
⑮		전지역					⑮	전지역				⑮	전지역						1
⑯		상암1535-2					⑯	상암1535-2				⑯	상암1535-2						2
자전거보관 대	⑰	상암1535-2					⑰	상암1535-2				⑰	상암1535-2						3
	소 계		2,104	2,104	11	11	721.74	721.74	468			2,104	2,104		11	721.74	721.74	468	
	탐방객 안내센터	바	상암481-72	922	922	목조	1	103.11	103.11		바	상암481-72	922	922	목조	1	103.11	103.11	

구 분	면				경				전				면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범포실 도 책 유지통 출판 중환안내판 해설판 수업패 공명발전기 전기설 수업본 수업지 조명등 모정반 피로침 틀란드 범용표지판 표식 c c t v 안내소	2	상암481-6	42	42	R.C.	1	42	42	2	상암481-6	42	42	R.C.	1	42	42	
	①	전지역						1식	①	전지역							1식
	②	전지역						28	②	전지역							28
	③	전지역						62	③	전지역							62
	④	전지역						5	④	전지역							5
	⑤	전지역						83	⑤	전지역							83
	⑥	전지역						117	⑥	전지역							117
	⑦	전지역						5	⑦	전지역							5
	3	상암487-31	21	21	목조	1	16.3	16.3	3	상암487-31	21	21	목조	1	16.3	16.3	
	⑧	전지역						109	⑧	전지역							109
리 시 설	⑨	전지역						28	⑨	전지역							28
	⑩	전지역						3	⑩	전지역							3
	⑪	전지역						7	⑪	전지역							7
	⑫	상암487-3						2	⑫	상암487-3							2
	⑬	전지역						11	⑬	전지역							11
	⑭	전지역						2	⑭	전지역							2
	⑮	전지역						6	⑮	전지역							6
	4		98	98	경량 패널	5	86	86	4		98	98	경량 패널	5	86	86	
	4-1	상암1535-2	34	34	목조	1	34	34	4-1	상암1535-2	34	34	목조	1	34	34	
	4-2	상암487-3	10	10	경량 패널	1	6	6	4-2	상암487-3	10	10	경량 패널	1	6	6	
대기실 창고 집하장 및 아적장 주차관리실 소 계 누 지 기타	4-3	상암481-94	10	10	경량 패널	1	6	6	4-3	상암481-94	10	10	경량 패널	1	6	6	
	4-4	상암481-94	34	34	목조	1	34	34	4-4	상암481-94	34	34	목조	1	34	34	
	4-5	상암481-72	10	10	목조	1	6	6	4-5	상암481-72	10	10	목조	1	6	6	
	5	상암481-72	405	405	RC	1	319.56	319.56	5	상암481-72	405	405	RC	1	319.56	319.56	
	6	상암481-72	318	318	경량 패널	1	148.77	148.77	6	상암481-72	318	318	경량 패널	1	148.77	148.77	
	사	상암481-72	292	292					사	상암481-72	292	292					
	7	상암481-94	6	6	경량 패널	1	6	6	7	상암481-94	6	6	경량 패널	1	6	6	
			628,879.11								628,774.4						감104.7㎡
			628,879.11							전지역	628,774.4						특지면적 감104.7㎡
											1						

○ 시설조서(난지천공원)

구 분	면 적				경				면 적				경				면 적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합	계			270,887	131,496		14	609.94	609.94	754				270,887	132,358		14	609.94	609.94	816	시설면적 증1862㎡ 증82기
	소 계			33,006	33,006									30,961	30,961						시설면적 증12,045㎡
	도 로			30,344	30,344									28,299	28,299						시설면적 증2,045㎡
	광 장	가	상암1538	2,662	2,662							가	상암1538	2,662	2,662						증2,045㎡
	소 계			38,692	38,692					41				35,927	35,927						시설면적 증2,765㎡
조 경	야생조화원	나	상암1542	2,012	2,012						나	상암1542	2,012	2,012							
	잔디광장	다	상암1538-1	26,742	26,742						다	상암1538-1	26,742	26,742							
	오리연못	라	상암1538	7,173	7,173						라	상암1538	7,173	7,173							폐지
	초화원	마	상암1538	2,765	2,765																시설면적 증2,765㎡
	파고라	①								13	①										13
	사각정자	②								2	②										2
	막구조파고라(대)	③								4	③										4
시 설	앉음벽	④								14	④										14
	복제데크	⑤								2	⑤										2
	목계단	⑥								1식	⑥										2식
	디딤돌	⑦								6	⑦										6
	소 계			14,800	14,800					254			8,829	8,829							시설면적 증5,971㎡ 증32기
	휴게광장	바	상암1538	7,794	7,794						바	상암1538	7,794	7,794							폐지
	피크닉장	사	상암1538	5,971	5,971																시설면적 증5,971㎡
휴 양 시 설	휴게소	아		1,035	1,035						아		1,035	1,035							
	아-1 상암1478-1		808	808							아-1 상암1478-1	808	808								
	아-2 상암1538		188	188							아-2 상암1538	188	188								
	아-3 상암1538		39	39							아-3 상암1538	39	39								
휴 양 시 설	편의자	⑧	정지면							51	⑧	정지면									51
	응의자	⑨	정지면							54	⑨	정지면									86
	사각의자	⑩	정지면							28	⑩	정지면									28
	원목의자	⑪	상암1538-1							1	⑪	상암1538-1									1
	평상	⑫	상암1538							6	⑫	상암1538									6
	대피소내부	⑬	상암1538							1	⑬	상암1538									1
	의자	⑭	상암1538							5	⑭	상암1538									5
	통나무테이블	⑮	상암1538							1	⑮	상암1538									1
	학습테이블																				

구 분	면				경				전				면				경				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단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단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단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유 회 시 설	통나무의자A	㉑	상암1538						60	㉑	상암1538								60		㉑	상암1538						60		
	통나무의자B	㉒	상암1538						47	㉒	상암1538								47		㉒	상암1538						47		
	소 계								15										15									15		
	중앙놀이터	자	상암1538-1	2,606	2,606																									
	유아놀이터	자	상암1538	1,220	1,220						자	상암1538-1	1,220	1,220																
	조형놀이대	㉑	상암1538	1,386	1,386						자	상암1538	1,386	1,386																
	캐이틀카	㉒	상암1538						2	㉒	상암1538								2		㉒	상암1538							2	
	오름벽조합놀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연미차놀이대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자동차놀이대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그 그 네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주차놀이판넬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OX놀이 판넬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물놀이대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지대시소	㉑	상암1538-1						1	㉑	상암1538-1								1		㉑	상암1538-1							1	
개미진오르기	㉑	상암1538-1						1	㉑	상암1538-1								1		㉑	상암1538-1							1		
하늘과바람의소리	㉑	상암1538-1						1	㉑	상암1538-1								1		㉑	상암1538-1							1		
회전하는소리	㉑	상암1538-1						1	㉑	상암1538-1								1		㉑	상암1538-1							1		
구재																														
쇠뿔구리원판	㉑	상암1538-1						1	㉑	상암1538-1								1		㉑	상암1538-1							1		
소 계			13,731	13,731				22				26,231	26,231					35										35	시설면적 증)12,500㎡ 증)132기	
교 양 시 설	유아숲체험장	카	상암1538	9,013	9,013					카-1	상암1538	21,513	21,513							카-1	상암1538	9,013	9,013						시설면적 증)12,500㎡ 부호변경 시설면적 증)12,500㎡	
										카-2	상암1538	12,500	12,500																	
	아외공영장	타	상암1538-1	4,718	4,718					타	상암1538-1	4,718	4,718																	
	나무왕의진A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나무왕의진B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토끼길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유아센터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숲전망A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숲전망B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숲속새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숲속짐데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숲속그네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출렁다리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뱀줄다리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나무가지집A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나무가지집B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통나무키어오르기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구 분	면 적				면 적				면 적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관 리	통나무건너기	④ 상암1538							1	④ 상암1538						2 증1기
	거미줄놀이	④ 상암1538							1	④ 상암1538						1
	잠자리섬터	④ 상암1538							6	④ 상암1538						6
	가랑말이									④ 상암1538						2 증2기
	통나무오르기									④ 상암1538						1 증1기
	벚꽃오르기									④ 상암1538						5 증5기
	모래놀이대									④ 상암1538						1 증1기
	그물놀이대									④ 상암1538						1 증1기
	그물건너기									④ 상암1538						1 증1기
	대피소	④ 상암1538								④ 상암1538						1 증1기
안 보 시 설	소 계		13,038	13,038					13		12,181					13
	다목적구장	파		4,461						파	3,604					시설면적 감1857㎡
	파-1 상암478-1		1,796	1,796						파-1 상암478-1	(1,796)					시설면적 감1857㎡
	파-2 상암478-1		2,665	2,665						파-2 상암478-1	(662)					시설면적 감2,003㎡
	파-3 상암478-1									파-3 상암478-1	(1,146)					시설면적 증1,146㎡
	풋살장	하 상암1538-1		8,577	8,577					하 상암1538-1	8,577					
	축구장	④ 상암478-1							5	④ 상암478-1						5
	운동기구	⑤ 정지역							8	정지역						8
	소 계		15,356	15,356	6	342.94	342.94		13		15,356	6	342.94	342.94	15	증2기
	주차장	거		14,838						거	14,838					
편 의 시 설	거-1 상암1538		2,686	2,686						거-1 상암1538	2,686					
	거-2 상암1538		6,084	6,084						거-2 상암1538	6,084					
	거-3 상암1538		6,068	6,068						거-3 상암1538	6,068					
	주차장	1		368.31						1	368.31					
	화장실	1-1 상암1538		62	62 R.C.	(1)	263.31	263.31		1-1 상암1538	62	62 R.C.	(1)	263.31	263.31	
		1-2 상암1538		128	128 R.C.	(1)	43.2	43.2		1-2 상암1538	128	128 R.C.	(1)	43.2	43.2	
		1-3 상암1538		50.31	50.31 R.C.	(1)	84.9	84.9		1-3 상암1538	50.31	50.31 R.C.	(1)	84.9	84.9	
		1-4 상암1538		128	128 R.C.	(1)	50.31	50.31		1-4 상암1538	128	128 R.C.	(1)	50.31	50.31	
		2		150	150	2	84.9	84.9		2	150		2	84.9	84.9	
	매 점	2-1 상암1538		75	경광 패널	(1)	79.63	79.63		2-1 상암1538	75	경광패 널	(1)	39.54	39.54	
관 리	목 교	2-2 상암1538		75	경광 패널	(1)	39.54	39.54		2-2 상암1538	75	경광패 널	(1)	40.09	40.09	
	정기관리	⑤ 상암1538							2	⑤ 상암1538						3 증1기
	정기관리	⑥ 상암1538							1	⑥ 상암1538						1
	정기관리	⑦ 정지역							4	정지역						4
	정기관리	⑧ 정지역							6	정지역						7 증1기
	소 계		267	267	8	267	267	267	396		267	8	267	267	411	증15기
	인내소	3		56	4	56	56	56		3	56	4	56	56	56	
	3-1 상암1538		34	34	경광 패널	1	34	34		3-1 상암1538	34	경광패 널	1	34	34	
	3-2 상암1538		6	6	경광 패널	1	6	6		3-2 상암1538	6	경광패 널	1	6	6	
	소 계		267	267	8	267	267	267	396		267	8	267	267	411	증15기

○ 시설조서(병화의공원)

구분	부호	위치	경				면				경				면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면적(㎡)	건축물 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면적(㎡)	건축물 면적(㎡)	공작물 (기)	
합계	소계		368,510	248,215		20	4,841.48	8,227.48	2,099			368,510	248,215		20	4,841.48	8,227.48	2,099	면동없음
	도로		93,719	93,719								93,719	93,719						
	광장	가	35,976	35,976								35,976	35,976						
	시	가-1	성산 531	57,743						가	성산 531	57,743	57,743						
		가-2	성암1535	32,615						가-1	성암1535	32,615	32,615						
		가-3	성산 531	12,293						가-2	성암1535	12,293	12,293						
시설	가-4	성암1568	7,054	7,054						가-3	성산 531	7,054	7,054						
	가-5	성암1569	3,561	3,561						가-4	성암1568	3,561	3,561						
	소계		2,220	2,220						가-5	성암1569	2,220	2,220						
	소계		58,670	58,670					59			58,670	58,670					59	
조경	나	성산 531	29,511	29,511						나	성산 531	29,511	29,511						
	다	성암1536	11,959	11,959						다	성암1536	11,959	11,959						
	라	성암1536	15,000	15,000						라	성암1536	15,000	15,000						
	마	성암1536	2,200	2,200						마	성암1536	2,200	2,200						
	①	전지역			철재				10	①	전지역							10	
시	②	성암1569			목재				2	②	성암1569							2	
	③	성산390-1			철재				6	③	성산390-1							6	
	④	성암1535			목재				1	④	성암1535							1	
	⑤	전지역			목재				4	⑤	전지역							4	
	⑥	전지역			석재				12	⑥	전지역							12	
시설	⑦	전지역			석재				4	⑦	전지역							4	
	⑧	성산390-1			목재				20	⑧	성산390-1							20	
	소계		30,978	30,978					561			30,978	30,978					561	
	휴게소	바	4,126	4,126						바		4,126	4,126						
휴양시설	바-1	성암1535	2,738	2,738						바-1	성암1535	2,738	2,738						
	바-2	성암1531	1,388	1,388						바-2	성암1531	1,388	1,388						
	사	성암1563	26,852	26,852						사	성암1563	26,852	26,852						
	⑨	전지역			목재				26	⑨	전지역							26	
	⑩	전지역			목재				222	⑩	전지역							222	
휴양시설	⑪	전지역			석재				165	⑪	전지역							165	
	⑫	전지역			석재				130	⑫	전지역							130	
	⑬	전지역			목재				18	⑬	전지역							18	
	소계		3,220	3,220					137			3,220	3,220					137	
유	아	성산565-6	3,220	3,220						아	성산565-6	3,220	3,220						
	스카이데크	⑭	성산565-6						1	⑭	성산565-6							1	
	사면돌이대	⑮	성산565-6						1	⑮	성산565-6							1	
	목재계단	⑯	성산565-6						1	⑯	성산565-6							1	
	거울돌이대	⑰	성산565-6						1	⑰	성산565-6							1	
유	네트돌이대	⑱	성산565-6						1	⑱	성산565-6							1	
	미끄럼틀A	⑲	성산565-6						1	⑲	성산565-6							1	
	미끄럼틀B	⑳	성산565-6						2	㉑	성산565-6							2	
	그네	㉒	성산565-6						2	㉒	성산565-6							2	

구분		면적					면적					면적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공공시설	공공청사로 기동발고건너 기	㉔	성산565-6							1	㉔	성산565-6							1
	네트건너기	㉔	성산565-6							1	㉔	성산565-6							1
	두중건너기	㉔	성산565-6							1	㉔	성산565-6							1
	세울건너기	㉔	성산565-6							1	㉔	성산565-6							1
	승마공원	㉔	성산565-6							70	㉔	성산565-6							70
	정경다관	㉔	성산565-6							1	㉔	성산565-6							1
	통나무포럼 이대	㉔	성산565-6							1	㉔	성산565-6							1
	통나무발고건 너기	㉔	성산565-6							1	㉔	성산565-6							1
	흔들놀이	㉔	성산565-6							2	㉔	성산565-6							2
	로프사면놀이 대	㉔	성산565-6							4	㉔	성산565-6							4
문화·체육·관광	홀터사면놀이 대	㉔	성산565-6							30	㉔	성산565-6							30
	폴 사면놀이대	㉔	성산565-6							10	㉔	성산565-6							10
	모래놀이대	㉔	성산565-6							3	㉔	성산565-6							3
	소 계			2,261	2,261							2,261	2,261						
	테니스장	자	산390-1								자	산390-1							
	소 계			7,105	7,105							7,105	7,105						
	에너지드림센 터	차	상암1536	7,105	7,105	R.C.	1	2,066	3,762		차	상암1536	7,105	7,105	R.C.	1	2,066	3,762	
	소 계			47,095	47,095		7	1,009.48	1,009.48	11			47,095	47,095		7	1,009.48	1,009.48	11
	주차장	카		45,324	45,324						카		45,324	45,324					
	편의시설	카-1	상암1569	11,153	11,153							카-1	상암1569	11,153	11,153				
카-2		정산 531	18,107	18,107							카-2	정산 531	18,107	18,107					
카-3		정산 531	9,825	9,825							카-3	정산 531	9,825	9,825					
카-4		정산 531	5,721	5,721							카-4	정산 531	5,721	5,721					
카-5		정산390-1	518	518							카-5	정산390-1	518	518					
매점		1		675	675		2	579.74	579.74		1		675	675		2	579.74	579.74	
		1-1	상암1569	215	215	R.C.	(1)	143.66	143.66		1-1	상암1569	215	215	R.C.	(1)	143.66	143.66	
		1-2	정산390-1	460	460	R.C.	(1)	436.08	436.08		1-2	정산390-1	460	460	R.C.	(1)	436.08	436.08	
화장실		2		1,096	1,096		5	429.74	429.74		2		1,096	1,096		5	429.74	429.74	
		2-1	상암1535	279	279	R.C.	(1)	57.6	57.6		2-1	상암1535	279	279	R.C.	(1)	57.6	57.6	
향토·민속·자연사	화장실	2-2	정산565-6	171	171	R.C.	1	43.2	43.2		2-2	정산565-6	171	171	R.C.	1	43.2	43.2	
		2-3	정산390-1	391	391	R.C.	1	73.94	73.94		2-3	정산390-1	391	391	R.C.	1	73.94	73.94	
		2-4	상암1535	85	85	R.C.	1	85	85		2-4	상암1535	85	85	R.C.	1	85	85	
		2-5	상암1569	170	170	R.C.	1	170	170		2-5	상암1569	170	170	R.C.	1	170	170	
	음수대	㉔								6	㉔	전지역							6
	자연기념관대	㉔								4	㉔	전지역							4
	모형육교	㉔								1	㉔	상암1531-1							1
	소 계			2,667	2,667		12	1,766	3,456	1,331			2,667	2,667		12	1,766	3,456	1,331

구 분	면 적					경 면					면 적					경 면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공원관리사업소	3	성산390-1	2,074	2,074	R.C.	1	1,181	2,871			3	성산390-1	2,074	2,074	R.C.	1	1,181	2,871			
	4		66	66		4	58	58			4		66	66		4	58	58			
	4-1	성산531	10	10	경량패널	1	6	6			4-1	성산531	10	10	경량패널	1	6	6			
	4-2	성산531	10	10	경량패널	1	6	6			4-2	성산531	10	10	경량패널	1	6	6			
	4-3	상암1535	34	34	경량패널	1	34	34			4-3	상암1535	34	34	경량패널	1	34	34			
	4-4	상암1535	12	12	경량패널	1	12	12			4-4	상암1535	12	12	경량패널	1	12	12			
	③	성산390-1			목재					1식	③	성산390-1			목재					1식	
	④	전지역	465	465		4	465	465		4	④	전지역	465	465		4	465	465		4	
	5-1	성산390-1	21	21	목조	1	21	21			5-1	성산390-1	21	21	목조	1	21	21			
	5-2	성산390-1	242	242	경량패널	1	242	242			5-2	성산390-1	242	242	경량패널	1	242	242			
	5-3	성산390-1	140	140	경량패널	1	140	140			5-3	성산390-1	140	140	경량패널	1	140	140			
	5-4	성산390-1	62	62	경량패널	1	62	62			5-4	성산390-1	62	62	경량패널	1	62	62			
	6	상암1563	30	30	목조	1	30	30			6	상암1563	30	30	목조	1	30	30			
	7	성산390-1	24	24	경량패널	1	24	24			7	성산390-1	24	24	경량패널	1	24	24			
	8	상암1563	8	8		1	8	8			8	상암1563	8	8		1	8	8			
관 리 시 설	④1	전지역							5		④1	전지역								5	
	④2	전지역							24		④2	전지역								24	
	④3	전지역							23		④3	전지역								23	
	④4	전지역							1		④4	전지역								1	
	④5	전지역							2		④5	전지역								2	
	④6	전지역							12		④6	전지역								12	
	④7	전지역							123		④7	전지역								123	
	④8	전지역							1,040		④8	전지역								1,040	
	④9	전지역							73		④9	전지역								73	
	⑤0	전지역							24		⑤0	전지역								24	
	⑤1	전지역							1식		⑤1	전지역								1식	
	소 계	전지역	122,795	2,500								전지역	122,795	2,500							
	누 지	전지역	120,295									전지역	120,295								
	기타	성산531	2,500	2,500								성산531	2,500	2,500							

○ 도로조서(노을공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1,111	66,079				
당초	소로	소 계			7,717	56,855				
당초		1	1	11	1,830	20,14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1	7	643	4,501	내부도	소로 1-1	경기도경계	
당초			2	7	829	5,803	내부도	경기도경계	공원동측경계	
당초			3	7	1,419	9,933	내부도	공원동측경계	소로 1-1	
당초			4	5.5	1,834	10,087	내부도	소로 1-1	공원경계	
당초			5	5.5	1,162	6,391	내부도	소로 1-1	공원경계	
당초	산책로	소 계			3,394	9,224				
당초			1	3	1,358	4,074	산책로	광장 가-3	광장 가-1	황토포장
당초			3	3	252	756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황토포장
당초			4	2	48	96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2	황토포장
당초			7	2	120	240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9	황토포장
당초			8	2	21	42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0	황토포장
당초			9	2	154	308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1	황토포장
당초			10	2	92	184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9	황토포장
당초			11	2	147	294	산책로	운동장	운동장	황토포장
당초			12	2	306	612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13	황토포장
당초			13	3	211	633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2	황토포장
당초			2	3	572	1,716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황토포장
당초			5	2	29	58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3	황토포장
당초			6	2	41	82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3	황토포장
당초			14	3	43	129	산책로	산책로2	방공진지	황토포장

○ 도로조서(하늘공원)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5,656.4	94,233.4				
당초	중 로	소 계			804	14,472				
당초		2	1	18.0	804	14,472	진입로	공원북측경계	공원남측경계	
당초	소 로	소 계			4,070	34,360				
당초		2	1	9.0	1,534	13,806	내부도	중로 2-1	소로 2-3	
당초			2	8.5	532	4,522	내부도	소로 2-1	소로 2-1	
당초			3	8.0	2,004	16,032	내부도	중로 2-1	공원 북측경계	
당초	소 로	소 계			3,898	30,859				
당초		3	1	8	1,582	12,656	내부도	소로 3-4	소로 3-4	폐기물시설 관리도로
당초			2	8	100	800	내부도	소로 3-3	소로 3-1	폐기물시설 관리도로
당초			3	8	550	4,400	내부도	소로 3-1	소로 3-1	폐기물시설 관리도로
당초			4	8	235	1,880	관리도로	중로 2-1	소로 3-3	폐기물시설 관리도로
당초			5	8	1,366	10,928	내부도	소로 2-1	소로 2-1	
당초			6	3	65	195	관리도로	소로 3-1	산책로 22	투수콘
당초	산책로	소 계			6,884.4	14,542.9				
당초			1	3	148	444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3	쇄석,마사토 포장
당초			3	3	168	504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3	쇄석,마사토 포장
당초			5	3	171	513	산책로	소로 3-4	광장 가-2	쇄석,마사토 포장
당초			7	3	141	423	산책로	광장 가-2	소로 3-3	쇄석,마사토 포장
당초			9	3	151	453	산책로	소로 3-3	광장 가-3	쇄석,마사토 포장
당초			11	3	144	432	산책로	광장 가-3	소로 3-3	쇄석,마사토 포장
당초			14	3	113	339	산책로	광장 가-4	소로 3-3	쇄석,마사토 포장
당초			15	3	111	333	산책로	광장 가-4	소로 3-3	쇄석,마사토 포장
당초			46	1.5	143.9	215.9	산책로	전망대마-1	소로3-1	
당초	산책로		44	1.5	61	91.5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45	1.5	29	43.5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32	0.9	155	139.5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31	침목 깔기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3	0.9	25	22.5	산책로	산책로32	산책로31	침목깎기
당초			39	0.9	40	36	산책로	산책로34	산책로10	침목깎기
당초			40	0.9	20	18	산책로	산책로34	산책로39	침목깎기
당초			2	3	12	36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4	3	46	138	산책로	산책로3	소로 3-4	
당초			6	3	57	171	산책로	광장 가-2	소로 3-3	
당초			8	2.5	74	185	산책로	산책로7	소로 3-4	
당초			10	2.5	84	210	산책로	광장 가-3	소로 3-1	
당초			12	3	54	162	산책로	산책로11	소로 3-2	
당초			13	2.5	74	185	산책로	소로 3-1	광장 가-4	
당초			16	2.5	85	212.5	산책로	산책로15	소로 3-2	
당초			23	2.5	184	460	산책로	산책로19	산책로21	
당초			24	3	43	129	산책로	광장 가-1	암석원 나	
당초			25	3	73	219	산책로	휴게소 라-2	산책로5	
당초			47	2.5	222	555	산책로	산책로46	전망대 마-2	
당초			51	3.5	332	1,162	산책로	산책로50	소로 3-1	
당초			57	2.5	85	212.5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58	
당초			58	2.5	184	460	산책로	소로 3-1	휴게소 라-3	
당초			59	3	43	129	산책로	전망대 마-17	전망대 마-18	
당초			60	3	73	219	산책로	전망대 마-18	전망대 마-20	

○ 도로조서(난지천공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5,632	30,344				
변경					5,228	28,299				감)2,045㎡
당초	중 로	소 계			526	7,890				
당초		2	1	15.0	526	7,890	주진입로	공원북측경계	공원남측경계	
당초		2	1	-	-	-				
당초	소 로	소 계			2,044	13,693				
당초		1	1	10.0	172	1,720	진입로	공원북측경계	소로 2-1	
당초		2	1	8.0	46	368	내부로	산책로25	소로 3-1	
당초		3	1	6.5	1,170	7,605	내부로	중로 2-1	공원동측경계	
당초			2	6.0	158	948	내부로	소로 3-1	휴게광장 바	
당초			3	6.0	159	954	내부로	휴게광장 바	소로 3-1	
당초			4	6.0	169	1,014	내부로	소로 3-1	소로 1-1	
당초			5	6.0	42	252	내부로	소로 1-1	소로 3-1	
당초			6	6.5	128	832	내부로	소로 1-1	소로 3-1	
당초	산책로	소 계			3,062	8,761				
변경					2,658	6,716				감)2,045㎡
당초			3	3.0	609	1,827	산책로	중로 2-1	소로 3-2	
당초			1	2.5	447	1,117.5	진입로	공원서측경계	중로 2-1	
당초			2	1.5	198	297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당초			4	3~5	153	563	산책로	산책로3	중로 2-1	
당초			5	3.0	23	69	산책로	산책로3	농구장 타	
당초			6	3.0	11	33	산책로	산책로3	축구장 하	
당초			7	3.0	22	66	산책로	산책로3	놀이터 자	
당초			8	3.0	88	264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1	
당초			9	3.0	98	294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당초			10	3.0	12	36	산책로	놀이터 자	소로 3-2	
당초			11	3.0	46	138	산책로	놀이터 자	휴게광장 바	
당초			12	3.0	43	130	산책로	휴게광장 바	공원북측경계	
당초			13	2.5	74	185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2	
당초			14	3.0	40	120	산책로	휴게광장 바	공원북측경계	
당초			15	2.5	74	185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6	2.5	30	75	산책로	산책로15	공원북측경계	
당초			17	2.5	184	460	산책로	휴게광장 바	소로 3-1	
당초			18	3.0	43	129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18	
당초			19	3.0	73	219	산책로	소로 3-3	소로 3-1	
당초			20	2.5	210	555	산책로	산책로17	소로 3-1	
변경			20	2.5	92	230	산책로	산책로16	유아숲체험장	감)325㎡
당초			21	3.5	332	1,162	산책로	산책로21	산책로24	
폐지										감)1,162㎡
당초			22	3.0	172	516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22	
폐지										감)516㎡
당초			23	4.0	80	320	산책로	소로 3-1	소로 2-1	
폐지										감)320㎡
신설			24	3.0	5	15	산책로	산책로3	풋살장	
신설			25	1.5	54	81	산책로	풋살장	다목적구장	
신설			26	1.5	120	180	산책로	유아숲체장	산책로27	
신설			27	2.0	1	2	산책로	산책로27	유아숲체장	

○ 도로조서(평화의공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6,037	35,976				
당초	중로	소 계			877	12,110				
당초		2	1	15.0	668	10,020	진입로	공원동측경계	광로2류(24)	
당초		3	1	10.0	209	2,090	진입로	공원북측경계	중로2-1	
당초	소로	소 계			2,712	17,177				
당초		1	1	10.0	163	1,630	보도	진입광장라-1	진입광장 라-2	
당초		2	1	8.0	47	376	진입로	광로2-24 (증산로)	주차장 타-1	
당초		2	2	8.0	308	2,772	진입로	광로2-24 (증산로)	공원남동측경 계	
당초		2	3	8.0	150	1,200	보도	유니세프 광장 가	소로 3-14	
당초		3	1	7.0	113	791	진입로	공원동측경계	유니세프광장 가	
당초		3	2	3.0	57	171	보도	진입광장 라-1	주차장 타-2	
당초		3	3	6.0	365	2,190	보도	중로 2-1	소로 2-2	
당초		3	4	5.0	18	90	보도	소로 3-3	소로3-7	
당초		3	5	6.0	145	870	보도	소로3-6	소로 2-2	
당초		3	6	5.0	106	530	보도	소로3-3	염원의장 나	
당초		3	7	7.5	150	1,125	보도	소로 3-6	소로 2-2	
당초		3	8	5.0	24	120	보도	산책로1	휴게소 1-1	
당초		3	9	3.0	111	333	보도	휴게소 1-1	소로 3-3	
당초		3	10	4.0	110	440	보도	소로 3-3	브릿지	
당초		3	11	5.0	44	220	보도	염원의 장 나	소로 2-3	
당초		3	12	6.0	85	510	보도	펌프장	소로 2-2	
당초		3	13	6.0	66	396	보도	소로 2-2	펌프장	
당초		3	14	5.0	532	2,660	보도	소로 2-2	유니세프 광장 가	
당초		3	15	6.0	88	528	보도	소로 3-1	휴게소 1-2	
당초		3	16	7.5	30	225	보도	주차장 타-6	소로 3-15	
당초		소 계			2,448	6,689				
당초	산책 로		1	3.5	180	630	산책로	중로 2-1	소로 3-9	
당초			2	3.0	32	96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	

난지천공원 조성계획도(변경)

SCALE=1/3,000

월드컵공원



■ 병례

[illegible]

난지천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3,000

월드컵공원



■ 별 례

[illegible]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64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가온다울 등 1,242명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19. 09. 19 ~ '19. 10. 03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19. 10. 04 ~ 2019. 10. 14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50%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장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6, 팩스번호 : 02-2133-4904
 - ※ 인터넷(<http://cartax.seoul.go.kr>)통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공시충당(사전통지서)명단

구분	차량 소유주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1	62호8783	(주)가온다울	2019-07-26 17:59	인천광역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	55호9908	(주)강남렌트카	2019-08-09 18:33	충청남도 금산군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	51호7847	(주)골드웍스앤노란거북선	2019-07-27 13:58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4	25호8558	(주)공간에너지에스엠	2019-08-14 15: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	16호9142	(주)글로벌유시스템	2019-08-09 09: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	58호6746	(주)대성자동차	2019-08-11 08:57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7	37호6325	(주)레베상사	2019-07-29 20:3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	28구7648	(주)문도비노	2019-08-08 19:30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	09호8422	(주)미디어프론트	2019-07-26 13:4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	88구4486	(주)민커뮤니케이션	2019-08-18 19:52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	88구4486	(주)민커뮤니케이션	2019-08-18 19:50	경기도 안산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	15저1165	(주)보다	2019-08-09 19: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3	39호7331	(주)빔모빌리티코리아	2019-07-17 18: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4	68호1797	(주)센주리네트웍스	2019-07-17 17:35	서울특별시	해군회관앞-보라매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5	29호4340	(주)쏘카	2019-08-12 17:26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중앙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6	62호2910	(주)씨에스테크놀로지	2019-08-08 17:16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	82호6605	(주)아이캔아이디자인	2019-08-13 07:36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8	24구9399	(주)에플집	2019-08-14 17:40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9	42호4383	(주)에듀피아	2019-08-10 18:26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20	36다5841	(주)에스씨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	2019-08-14 18:0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1	69나5980	(주)엔에이에스씨	2019-08-12 15:07	경기도 성남시	영등포구 새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	84호0472	(주)엘케이리더스	2019-08-16 13:37	경기도 광명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3	17투1442	(주)원주팜시	2019-08-14 07:39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	45호6696	(주)이피피에셋	2019-07-17 17:3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	61가8670	(주)제니스코트레이딩	2019-08-08 16:1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	81호8597	(주)진솔이엔지	2019-08-12 08:10	전라북도 군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7	43나3772	(주)초코텍	2019-08-12 16:35	경기도 광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	89다7041	(주)플로어테크	2019-08-14 09:33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	63호7136	국방전직교육원	2019-07-04 18:20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0	52호3712	놀자몽(임여진)	2019-07-25 12:55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1	40주8851	돈라리사	2019-08-14 19:15	경기도 의왕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2	33호8121	드림독서실(조정은)	2019-07-01 13:4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3	52호2363	캡터소프트	2019-07-05 18:07	경기도 파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4	21가0904	렉스글로벌(주)	2019-08-08 20:09	서울특별시	중각역 10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5	55호8181	멘션에스(홍성혁)	2019-07-26 19:5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6	38호1527	산엔들영농조합법인	2019-08-09 08:54	전라북도 정읍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7	65호6577	서울동산중기(안승철)	2019-07-22 14:5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8	55호5857	신명수학교습소(원지숙)	2019-07-17 17:54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	66호6698	아이뷰코리아	2019-07-19 20:0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0	60보6463	에스씨건설산업(주)	2019-08-12 09:3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	60보6463	에스씨건설산업(주)	2019-08-12 09:29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2	69호8513	엘라(김아은)	2019-07-16 15:3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3	01하5511	엘지화학/마곡1	2019-07-06 15: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4	94라0121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2019-08-12 19:38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5	39하7817	유한회사빛그린홀딩스	2019-07-22 13:11	광주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6	36가0342	조은렌터카(주)	2019-08-15 19:51	경기도 안산시	무악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47	35가7305	주식회사사단	2019-08-09 07:13	경기도 안산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8	14우5973	주식회사사들블유엔홀딩스	2019-08-07 16:2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9	40여2004	주식회사동성종합매관	2019-08-13 18:32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	04구5277	주식회사두원에스에이에스	2019-08-07 20:41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삼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51	50마3857	주식회사사지터썬썬엔	2019-08-13 13:0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2	39하6079	주식회사사들글로벌컴퍼니	2019-07-21 12:27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53	28주7350	주식회사사이엇	2019-08-09 18:2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4	40호0275	주식회사라인엔터테인먼트	2019-07-10 15:49	서울특별시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5	04호2720	주식회사마더	2019-07-22 16:5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6	21하7057	주식회사미래저널	2019-07-18 14:35	울산광역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7	22노6065	주식회사신상	2019-08-14 15:3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8	22노6065	주식회사신상	2019-08-14 15:29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9	40하9957	주식회사쏘카	2019-08-12 14:14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0	52호2409	주식회사쏘카	2019-08-16 14:38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1	14하4404	주식회사쏘카	2019-08-11 13:15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	14하4404	주식회사쏘카	2019-08-11 13:14	경기도 용인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3	49나2804	주식회사엘로힐프로덕션	2019-08-09 08:27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4	21보6901	주식회사에주무역	2019-08-14 20:21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5	18다7233	주식회사위드이앤오	2019-08-16 13:20	강원도 원주시	영등포구 갯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6	65하2931	주식회사지티스트	2019-07-04 13: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갯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7	02서6539	주식회사퓨리데일스	2019-08-07 19:01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68	06나0630	주식회사픽셀라인	2019-08-11 21:13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69	10호8445	주식회사하이렌터카	2019-08-05 20:59	경기도 성남시	잠실동 33 산천역	전용차로위반	50,000
70	67하7935	준트레이딩인터내셔널	2019-07-04 14:41	대전광역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1	10나5252	카드렉스(주)	2019-08-18 07:50	경기도 화성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72	09하0660	팔성동탄점	2019-07-23 12:3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3	82호8685	한성아이디얼오공(주)	2019-08-12 18:4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4	17나0939	화이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2019-08-17 14:14	경상남도 의령군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5	17나0939	화이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2019-08-17 16:35	경상남도 의령군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6	17나0939	화이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2019-08-17 14:16	경상남도 의령군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7	17나0939	화이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2019-08-17 16:32	경상남도 의령군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8	39서4568	A**	2019-08-09 15:24	경기도 부천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9	85라8200	A**	2019-08-16 08:08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0	37루7815	A**	2019-08-18 19:21	충청남도 아산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1	37루7815	A**	2019-08-18 19:20	충청남도 아산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2	31마8348	B**	2019-08-18 16:45	대구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3	31마8348	B**	2019-08-18 16:46	대구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4	67구3560	C**	2019-08-11 04:57	경기도 수원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삼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85	23부0351	C**	2019-08-12 16:07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6	62부3029	C**	2019-08-07 05:01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삼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87	09호0963	C**	2019-07-15 19:1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8	62가7599	G**	2019-08-14 16:48	경기도 안산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9	62가7599	G**	2019-08-14 16:50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0	75고9855	H**	2019-08-14 14: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60,000
91	41저9435	H**	2019-08-10 11:04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2	24다4761	J**	2019-08-07 09:25	강원도 횡성군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3	29마1423	J**	2019-08-14 14:52	충청남도 천안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4	09호2620	J**	2019-06-27 18:48	충청남도 천안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5	56버7532	J**	2019-08-09 14:0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6	30조1730	J**	2019-08-17 16:5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7	30조1730	J**	2019-08-17 16:55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8	24하7696	J**	2019-07-18 22:58	경기도 부천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삼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99	26마1163	J**	2019-08-07 09:34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0	24소3262	J**	2019-08-08 18:14	경기도 시흥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1	65노9033	J**	2019-08-18 14:44	경기도 평택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삼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02	86우0840	J**	2019-08-16 17:21	경기도 시흥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03	67하3731	J**	2019-07-14 20:43	경기도 안산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4	69다3498	K**	2019-08-14 09:25	경기도 구리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5	54우7176	L**	2019-08-13 10:56	경기도 시흥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6	18다8105	L**	2019-08-13 12:53	경기도 시흥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07	49누6009	L**	2019-08-09 18:56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8	48무7805	L**	2019-08-09 13:17	경기도 김포시	종각역 10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9	63주5742	L**	2019-08-13 17:07	경기도 고양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0	63주5742	L**	2019-08-13 17:09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1	75라3616	L**	2019-08-17 1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60,000
112	50조4449	L**	2019-08-10 19:5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3	46호1888	L**	2019-06-19 18:02	서울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4	46호1888	L**	2019-06-20 16:54	서울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5	46호1888	L**	2019-07-09 09:09	서울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6	46호1888	L**	2019-07-10 07:46	서울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7	46호1888	L**	2019-06-20 16:56	서울시	서초동 양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8	46호1888	L**	2019-07-18 07:43	서울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9	46호1888	L**	2019-07-08 08:28	서울시	서초동 양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0	46호1888	L**	2019-07-05 08:16	서울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1	46호1888	L**	2019-07-05 08:17	서울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2	46호1888	L**	2019-07-10 07:45	서울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3	46호1888	L**	2019-07-08 08:26	서울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4	46호1888	L**	2019-07-09 18:10	서울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5	46호1888	L**	2019-07-01 07:29	서울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6	16조8602	L**	2019-08-14 11:54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7	10머6458	M**	2019-08-09 07:38	전라북도 군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8	10머6458	M**	2019-08-09 07:36	전라북도 군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9	45호5074	M**	2019-06-11 11:3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30	57려2728	N**	2019-08-07 14: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1	57려2728	N**	2019-08-07 14: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2	67버9406	P**	2019-08-09 14:09	울산광역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3	20호6559	P**	2019-07-22 11:38	부산광역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4	20호6559	P**	2019-07-22 11:42	부산광역시	서초동 양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5	58버3002	P**	2019-08-14 18:12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6	58버3002	P**	2019-08-14 18:13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7	05마0980	P**	2019-08-17 14: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티아이	전용차로위반	50,000
138	08나3583	P**	2019-08-08 12:23	전라북도 군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39	05모7051	Q**	2019-08-18 14:29	충청남도 예산군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0	05모7051	Q**	2019-08-18 14:28	충청남도 예산군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1	50서2237	R**	2019-08-16 18:24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2	52라3868	S**	2019-08-13 08:27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43	29저6939	S**	2019-08-13 18:32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44	50머8236	S**	2019-08-14 11:58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45	38모9807	T**	2019-08-11 12:13	충청북도 청주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6	38모9807	T**	2019-08-11 12:12	충청북도 청주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7	64두1698	T**	2019-08-14 10:4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8	43다3133	W**	2019-08-08 15:57	강원도 원주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9	43다3133	W**	2019-08-08 15:56	강원도 원주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0	19버0518	X**	2019-08-07 16:03	경기도 시흥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1	42라4296	Y**	2019-08-08 18:25	경기도 부천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52	20호5115	Y**	2019-06-05 18:50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53	45누7871	Y**	2019-08-07 17:37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54	45수9416	Z**	2019-08-09 09:4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55	32려4556	Z**	2019-08-08 17:32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서초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6	49머7741	Z**	2019-08-10 09:29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7	49머7741	Z**	2019-08-10 09:3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8	49호3501	Z**	2019-08-01 08:33	경기도 안산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59	56버7341	강**	2019-07-11 09:14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60	50부5337	강**	2019-08-10 16:05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61	04하4721	강**	2019-07-17 17: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162	38다5620	강**	2019-08-08 12:31	경기도 시흥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63	66무8743	강**	2019-08-12 10: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64	12주3845	강**	2019-08-18 13:25	경기도 파주시	여의도동 13	전용차로위반 50,000
	165	51수7136	강**	2019-08-07 08:08	경기도 과천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6	02바4482	강**	2019-08-14 13:54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67	29호4379	강**	2019-07-09 18:22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8	63라9473	강**	2019-08-16 11:2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69	59보8329	강**	2019-08-07 17:22	대전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0	57노6576	강**	2019-08-12 10:45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1	25아6394	강**	2019-08-07 20:4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2	02다2701	강**	2019-08-10 08:05	경기도 시흥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73	21보3199	강**	2019-08-12 17:27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4	서울31사5031	강**	2019-08-08 17:35	서울특별시	동작역-흑석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5	41마3445	강**	2019-08-07 09:31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6	34저6117	강**	2019-08-12 12:47	경기도 광주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77	68마4476	강**	2019-08-16 19:44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78	서울32바8234	강**	2019-08-17 19:28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79	38호4450	강**	2019-06-13 14:22	충청남도 아산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80	35다4719	강**	2019-08-08 11:2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81	57라3820	강**	2019-08-12 18:21	울산광역시	상계동 마들르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82	62고5162	고**	2019-08-12 20:09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83	서울31바5278	고**	2019-08-08 12:2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84	42여6443	고**	2019-08-16 09:54	전라북도 군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85	서울31사7517	고**	2019-08-08 19:08	경기도 고양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86	21보6149	고**	2019-08-07 18:11	경기도 성남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87	59다9578	고**	2019-08-08 19:18	충청북도 청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8	02호5954	고**	2019-06-26 17:39	부산광역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89	서울32자1599	고**	2019-08-12 17:48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90	27무5734	고**	2019-08-16 09:00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91	41라9120	고**	2019-08-08 11:50	경기도 과천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92	22부9278	공**	2019-08-13 17:05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93	45호2877	공**	2019-07-08 08:44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94	54가9999	곽**	2019-08-07 17: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95	92모8952	곽**	2019-08-16 16:53	경기도 부천시	중로4가 신한은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6	39마0984	곽**	2019-08-12 08:41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97	85도2081	곽**	2019-08-09 14:46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98	85도2081	곽**	2019-08-14 17:01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99	14라3238	곽**	2019-08-09 11:46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00	40다1484	곽**	2019-08-09 19:4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1	54모7136	곽**	2019-08-16 11:06	광주광역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2	54모7136	곽**	2019-08-16 11:04	광주광역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3	08라0296	구**	2019-08-14 16:58	충청북도 청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4	57서8388	구**	2019-08-08 12:23	강원도 평창군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5	60마6698	구**	2019-08-14 11:0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6	54마8777	구**	2019-08-07 18:4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07	50구9039	구**	2019-08-13 16:32	경기도 수원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삼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08	서울31자5431	국**	2019-08-09 17:16	인천광역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9	08다8092	권**	2019-08-09 17:22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0	경기88사2078	권**	2019-08-09 17:48	경기도 남양주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11	60허1186	권**	2019-07-12 09:01	경기도 평택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2	42머2642	권**	2019-08-08 16:1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13	51노9262	권**	2019-08-12 17:31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214	42머7401	권**	2019-08-09 20:26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15	21소3870	권**	2019-08-09 17:49	경기도 남양주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16	경기31바4171	권**	2019-08-09 15:45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17	16나7712	권**	2019-08-17 19:44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218	69나5163	권**	2019-08-08 18:11	서울특별시	상일C-길동생대공원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9	68서2774	권**	2019-08-10 11:33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0	43우7680	권**	2019-08-07 20:34	경기도 과천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21	24부6345	권**	2019-08-14 14:35	광주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2	92라1867	권**	2019-08-12 19:51	울산광역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23	57오3846	길**	2019-08-16 18:19	경기도 고양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24	45아0816	길**	2019-08-07 20:13	경기도 안산시	성산동 성산고-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25	24보8590	김**	2019-08-12 16: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6	15로6421	김**	2019-08-07 14:11	충청북도 청주시	잠실동 엘시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7	48기7166	김**	2019-08-16 14:3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8	20여1942	김**	2019-08-07 11:5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9	29호9829	김**	2019-08-02 15:21	대구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30	28오6608	김**	2019-08-14 20:15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고-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31	35다5532	김**	2019-08-09 20:43	경기도 고양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32	55보6959	김**	2019-08-13 20:48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3	28고6044	김**	2019-08-07 14:29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34	19수7504	김**	2019-08-14 19:5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시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5	13우1163	김**	2019-08-07 14:21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36	46라6384	김**	2019-08-08 18:16	경기도 파주시	잠실동 엘시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7	56보9529	김**	2019-08-13 19: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38	97서3029	김**	2019-08-09 18:04	인천광역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9	서울89자8327	김**	2019-08-16 13: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40	35라6670	김**	2019-08-08 10:41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시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1	30가6778	김**	2019-08-09 13:39	경상남도 창원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42	03마2781	김**	2019-08-13 14:24	경기도 군포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3	03마2781	김**	2019-08-13 14:22	경기도 군포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4	03마2781	김**	2019-08-07 11:25	경기도 군포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5	59가8467	김**	2019-08-12 09:1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46	65나5131	김**	2019-08-13 16:2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47	28우8219	김**	2019-08-16 19:38	경기도 평택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48	서울31사3392	김**	2019-08-14 20:31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49	30도3671	김**	2019-08-12 10:24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50	16노9621	김**	2019-08-14 19:51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51	31누0145	김**	2019-08-08 17: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52	01수3331	김**	2019-08-09 18:20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53	서울31아7662	김**	2019-08-07 17:3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54	90누8932	김**	2019-08-14 17:33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5	48소1228	김**	2019-08-10 16:1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6	69호9331	김**	2019-07-04 08:3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57	62우5734	김**	2019-08-11 15:16	경기도 파주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8	62우5734	김**	2019-08-11 15:17	경기도 파주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9	16구9316	김**	2019-08-14 19:47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60	11루2746	김**	2019-08-12 18:07	경기도 군포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1	42주4644	김**	2019-08-13 15:1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2	45다8405	김**	2019-08-07 18:40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63	10두2161	김**	2019-08-07 18:27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4	서울31아6370	김**	2019-08-07 22:16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65	34부6410	김**	2019-08-16 20:01	경기도 의정부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6	60저9729	김**	2019-08-14 16:44	인천광역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267	41가4592	김**	2019-08-12 18:49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68	31마1706	김**	2019-08-09 08:36	인천광역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9	29로1929	김**	2019-08-09 18:3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70	34호5282	김**	2019-07-26 17:1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시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71	66도5725	김**	2019-08-16 19:32	경기도 남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72	30보5800	김**	2019-08-10 16:13	울산광역시	서초동 양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용	금 액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273	21여0231	김**	2019-08-16 13:0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74	46호3102	김**	2019-07-10 19:35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75	46허6285	김**	2019-07-10 09:44	경기도 포천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76	51조2931	김**	2019-08-16 09:4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7	61두2782	김**	2019-08-07 20:30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78	27수3042	김**	2019-08-12 00:16	경기도 안양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79	07거3972	김**	2019-08-16 11:3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80	06모7452	김**	2019-08-14 16:45	경기도 광주시	홍은동 산골고개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81	42다0476	김**	2019-08-16 17:19	경기도 수원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282	69투7220	김**	2019-08-12 18:45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83	16투2133	김**	2019-08-13 18:27	경기도 의정부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84	82마7901	김**	2019-08-10 07:2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5	12바1723	김**	2019-08-14 18:18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86	40투6200	김**	2019-08-16 16:49	서울특별시	학여울역 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87	36조7436	김**	2019-08-08 09:35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령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88	67가6767	김**	2019-08-16 14:5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89	37모9970	김**	2019-08-09 07: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90	18우6142	김**	2019-08-09 19:34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상계백령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91	10고3953	김**	2019-08-14 18:59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92	23우8554	김**	2019-08-12 08:04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93	23수4654	김**	2019-08-07 20:24	경상북도 포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94	49하4267	김**	2019-07-16 18:57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95	47여1337	김**	2019-08-13 07:54	경기도 시흥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96	55서8946	김**	2019-08-18 13:34	인천광역시	여의도동 10-5	전용차로위반	50,000
297	29우0452	김**	2019-08-13 17:21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8	45마5575	김**	2019-08-13 14:57	부산광역시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99	57하6517	김**	2019-06-11 18:07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00	57조8684	김**	2019-08-16 19:59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01	52마0509	김**	2019-08-14 09:10	경기도 시흥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02	52마7837	김**	2019-08-08 09:10	경기도 안양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3	52마7837	김**	2019-08-14 09:20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4	52마7837	김**	2019-08-08 09:11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5	53우3204	김**	2019-08-09 20:4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06	41바6847	김**	2019-08-13 15:5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07	45저5559	김**	2019-08-07 17:17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08	20다9057	김**	2019-08-14 19:31	충청남도 서산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09	18우2971	김**	2019-08-16 09:01	경기도 파주시	상계동 상계백령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10	82바7672	김**	2019-08-08 18:1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1	48거3233	김**	2019-08-16 19:14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12	87보0221	김**	2019-08-07 07:59	경기도 광주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13	01하2756	김**	2019-08-02 18:31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14	63가8506	김**	2019-08-16 11:35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15	22여7874	김**	2019-08-14 13:4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16	31다5530	김**	2019-08-08 13:29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17	18다5494	김**	2019-08-09 11:26	광주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18	67바4281	김**	2019-08-14 15:20	서울특별시	잠실동 웰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19	46호7546	김**	2019-06-27 19:44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20	61여3902	김**	2019-08-12 14:27	인천광역시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321	41우7254	김**	2019-08-14 19:56	경기도 수원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22	03바1282	김**	2019-08-14 20:16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23	13려9903	김**	2019-08-09 19:5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24	서울31자2778	김**	2019-08-14 19:4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25	14여2675	김**	2019-08-10 12: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26	01가3618	김**	2019-08-13 19:42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27	43허4386	김**	2019-06-28 19:47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28	47너7869	김**	2019-08-16 17:1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329	55라4557	김**	2019-08-13 18:37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30	60저0999	김**	2019-08-18 07:57	경상북도 포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31	60저0999	김**	2019-08-18 07:56	경상북도 포항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32	65도8017	김**	2019-08-07 20:35	경기도 포천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33	23주3606	김**	2019-08-17 21:48	경기도 안양시	종각역 10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34	57여6247	김**	2019-08-09 20:17	대구광역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35	18다8865	김**	2019-08-13 08:41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36	55가5697	김**	2019-08-09 09:43	경기도 수원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37	55호4315	김**	2019-06-14 19:0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38	19라3005	김**	2019-08-09 10:17	서울특별시	홍은동 산골고개 중앙정류소 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339	92로6156	김**	2019-08-12 13:24	충청남도 아산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0	25고8482	김**	2019-08-14 14:15	경기도 시흥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41	58호9506	김**	2019-07-12 18:41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42	17라7365	김**	2019-08-09 1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43	05나5857	김**	2019-08-07 13:3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44	13로8045	김**	2019-08-11 16:04	경기도 광주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5	61서9134	김**	2019-08-08 18:36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IC-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46	40라8483	김**	2019-07-16 18:55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47	84무7032	김**	2019-08-13 17:11	경상북도 경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48	13버7371	김**	2019-08-14 19: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49	13버7371	김**	2019-08-13 19: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50	65노8748	김**	2019-08-08 17:16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51	65도0431	김**	2019-08-14 20:18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52	62호8942	김**	2019-08-16 17:51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53	34호8554	김**	2019-07-30 17:27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54	35마9140	김**	2019-08-13 17:27	경기도 안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55	57호6852	김**	2019-06-24 19:36	경기도 수원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56	43가4173	김**	2019-08-07 09:54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7	09마4409	김**	2019-08-12 13:2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58	29다7680	김**	2019-08-14 18:42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59	64구4122	김**	2019-08-14 13:53	경기도 구리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0	64구4122	김**	2019-08-14 13:55	경기도 구리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1	서울31사2883	김**	2019-08-16 20: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62	11여9502	김**	2019-08-16 16:46	경기도 화성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63	서울32라3463	김**	2019-08-08 21: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한국국립공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64	52가3893	김**	2019-08-12 19:25	경기도 부천시	성산동 성산IC-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65	55나3922	김**	2019-08-16 09:4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66	14우2860	김**	2019-08-13 14:03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7	30려0546	김**	2019-08-12 09:34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8	64나4101	김**	2019-08-18 00:56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369	60마4248	김**	2019-08-07 19:49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70	16오6963	김**	2019-08-16 15:03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71	83버9785	김**	2019-08-12 11:36	전라북도 전주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72	15부2624	김**	2019-08-13 18:3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73	10노2196	김**	2019-08-16 16:52	서울특별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74	06마7213	김**	2019-08-17 11:51	경기도 수원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75	06마7213	김**	2019-08-17 11:53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76	34마1935	김**	2019-08-13 19:31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77	15나6377	김**	2019-08-08 18:22	경기도 구리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78	11려4031	김**	2019-08-13 18:02	충청남도 천안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79	45하3227	김**	2019-06-19 14:15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80	45하3227	김**	2019-06-19 14:14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81	11소6017	김**	2019-08-16 16:03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82	21부6660	김**	2019-08-09 16:37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83	03부7682	김**	2019-08-13 18:22	충청남도 공주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84	42우2827	김**	2019-08-14 20:07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IC-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385	23라0739	김**	2019-08-08 18:40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6	68구9888	김**	2019-08-08 15:49	경상남도 진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87	15도5807	김**	2019-08-09 18:2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학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88	06라7751	김**	2019-08-12 17:33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학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89	서울83마4371	김**	2019-08-07 18:0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0	23두3690	김**	2019-08-13 20:30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91	39저3238	김**	2019-06-18 09:27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392	63고2623	김**	2019-08-10 10:40	경상북도 안동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93	45부1656	김**	2019-08-07 20:14	충청북도 제천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94	53수1020	김**	2019-08-14 20:44	광주광역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95	29다9947	김**	2019-08-12 15:36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96	04고2490	김**	2019-08-16 11: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97	18호4041	김**	2019-06-10 14:29	경기도 화성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398	서울31자1319	김**	2019-08-07 17:55	경기도 의정부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99	14여0309	김**	2019-08-08 21:43	경기도 고양시	중화동 메디칼노 신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400	04고1891	김**	2019-08-09 22:20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401	36나1703	김**	2019-08-09 21:20	경상남도 김해시	잠실동 잠실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402	61보7284	김**	2019-08-07 13:42	강원도 정선군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03	61보7284	김**	2019-08-07 11:55	강원도 정선군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04	61보7284	김**	2019-08-12 18:56	강원도 정선군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5	61보7284	김**	2019-08-14 11:35	강원도 정선군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06	61보7284	김**	2019-08-07 13:41	강원도 정선군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07	61보7284	김**	2019-08-07 11:56	강원도 정선군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08	60머2880	김**	2019-08-13 10:03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09	서울31바4726	김**	2019-08-14 20:41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10	55저5789	김**	2019-08-13 18:35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11	77더6224	김**	2019-08-11 11:34	경기도 고양시	LG에클라트 평관정 앞 이영표	전용차로위반	60,000
412	61노1366	김**	2019-08-13 17:49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413	82서5912	김**	2019-08-15 10:06	경기도 고양시	39-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414	36서6403	김**	2019-08-13 14:3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15	45나1978	김**	2019-08-16 19:30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16	49호2571	김**	2019-07-17 18:08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대학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17	49호2571	김**	2019-07-19 14:57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8	49호2571	김**	2019-07-24 18:37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대학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19	49호2571	김**	2019-07-19 14:54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20	33하8662	김**	2019-06-23 10:30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21	서울32사6054	김**	2019-08-09 20:02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22	29고5936	김**	2019-08-07 20:20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23	55라4284	김**	2019-08-13 11:37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24	67노3858	김**	2019-08-14 09: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25	서울31러2714	김**	2019-08-14 20:4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26	83마0450	김**	2019-08-13 09:42	경기도 부천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27	69하9850	김**	2019-07-02 20:05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28	44호2916	김**	2019-07-16 18:0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29	23노8733	김**	2019-08-09 20: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갯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30	64두7386	김**	2019-08-07 10:0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31	60구1262	김**	2019-08-14 16:32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32	52두3250	김**	2019-08-10 16:24	인천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3	42보9434	김**	2019-08-08 17:22	경기도 부천시	압구정로대오역-성수대교남단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34	41두1683	김**	2019-08-07 09:52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35	13가0355	김**	2019-08-09 19:06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6	21바1398	김**	2019-08-08 09:28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37	64누7259	김**	2019-08-07 19:37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38	10고3160	김**	2019-08-08 18:02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39	67너7155	김**	2019-08-16 19:59	경기도 파주시	성산동 SK성산대학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40	52하4579	김**	2019-07-12 20: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441	09나3050	김**	2019-08-09 16:22	경상북도 구미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42	13마7568	김**	2019-08-16 17:51	경기도 구리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3	35고0635	김**	2019-08-16 09:22	경기도 수원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44	41오3834	김**	2019-08-13 11:37	경상북도 포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45	36보0326	김**	2019-08-12 18:00	경기도 수원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46	83무7799	김**	2019-08-09 07:1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7	95도0420	김**	2019-08-14 18:34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48	87보9870	김**	2019-08-17 09:00	경기도 성남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용차로위반	50,000
449	07구0549	김**	2019-08-07 17:19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50	11두6280	나**	2019-08-11 20:29	경기도 과천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1	04라6739	나**	2019-08-12 09:33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52	67고1062	나**	2019-08-16 20:27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53	82오6785	나**	2019-08-09 19:45	경기도 파주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54	17노7915	남**	2019-08-07 17:46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5	19구3931	남**	2019-08-14 18:34	경기도 고양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56	22노1831	남**	2019-08-11 19:3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7	32여0281	남**	2019-08-15 13: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458	33우0246	남**	2019-08-07 08:47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59	04가5546	남**	2019-08-10 18:50	충청남도 당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60	40서3380	노**	2019-08-07 19:5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영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61	03가4352	노**	2019-08-16 18:0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62	16주6544	노**	2019-08-07 17:11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63	68주5899	도**	2019-08-08 17:48	서울특별시	상원C-길동생대공원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64	서울89자5688	두**	2019-08-16 17:50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65	56부2695	라**	2019-08-12 17:49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66	39저7860	류**	2019-08-07 11:52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67	16사5211	류**	2019-08-14 12:1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68	01마6329	류**	2019-08-12 12:14	경기도 포천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69	01마6329	류**	2019-08-12 12:15	경기도 포천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0	36마6014	류**	2019-08-10 18:16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471	58오3116	류**	2019-08-08 16:55	전라남도 나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72	52누5515	마**	2019-08-08 18:1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73	61두7279	맹**	2019-08-07 15:55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74	49버3338	명**	2019-08-09 19:09	경기도 남양주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75	서울32사9894	모**	2019-08-12 14:24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476	46무3390	문**	2019-08-16 08:58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77	27부5727	문**	2019-08-09 19:34	충청남도 천안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78	59나0152	문**	2019-08-11 16: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79	08하7264	문**	2019-07-08 19: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80	19가6539	문**	2019-08-08 18:46	인천광역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81	55로3566	문**	2019-08-15 15:34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82	52루3986	민**	2019-08-08 17:50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83	35소0128	민**	2019-08-10 11: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84	32호5963	민**	2019-07-02 20:26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85	32호5963	민**	2019-07-04 20:01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86	62저3562	민**	2019-08-08 07:2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87	62저3562	민**	2019-08-08 07:2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88	96고5056	민**	2019-08-16 17:27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89	25노1416	민**	2019-08-14 20: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90	03조4255	박**	2019-08-12 15:2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91	14다9696	박**	2019-08-15 19:23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92	49라0584	박**	2019-08-08 18:5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93	48도2120	박**	2019-08-07 18:37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94	69너5650	박**	2019-08-14 20:3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95	66고4930	박**	2019-08-13 18:13	경상북도 포항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496	06러9352	박**	2019-08-12 17:25	충청북도 청주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97	01여0571	박**	2019-08-08 14: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498	41부0438	박**	2019-08-07 08:25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99	59로5400	박**	2019-08-14 17:33	경상남도 김해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00	서울84자5716	박**	2019-07-25 10:57	서울특별시	영등포동3가 31 영등포시장지하도상가	전용차로위반	50,000
501	58라2609	박**	2019-08-16 17:13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2	53우1016	박**	2019-08-17 09:05	인천광역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03	05부4344	박**	2019-08-10 15:59	서울특별시	종로4가 신한은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04	39고6782	박**	2019-08-16 19:59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05	07부7905	박**	2019-08-13 17:56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06	40하9369	박**	2019-07-10 15:53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07	32아1655	박**	2019-08-13 17:46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08	32아1655	박**	2019-08-13 17:49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509	57루9605	박**	2019-08-08 20:29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10	39호8838	박**	2019-07-04 20:10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11	39호8838	박**	2019-07-29 18:1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12	39호8838	박**	2019-08-02 20:15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13	39호8838	박**	2019-07-09 19:53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14	43다9481	박**	2019-08-13 08:36	경기도 구리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15	10호8202	박**	2019-07-25 11:36	대전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16	54마1582	박**	2019-08-07 08:10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17	37주8361	박**	2019-08-16 14:4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18	18하4406	박**	2019-07-10 11:32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9	06고3720	박**	2019-08-07 20:50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20	68부3900	박**	2019-08-14 07:54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21	62저9692	박**	2019-08-08 18:16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22	57우8409	박**	2019-08-16 17:23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23	05호0715	박**	2019-07-04 18:53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24	13부2576	박**	2019-08-11 16: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한국곡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25	90마4218	박**	2019-08-13 09: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526	05부0227	박**	2019-08-12 09:20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27	90라0921	박**	2019-08-12 19:21	경기도 군포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28	15저8376	박**	2019-08-12 18:37	경상북도 구미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29	56부5148	박**	2019-08-16 15:45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0	01라9789	박**	2019-08-16 18:33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1	02도8628	박**	2019-08-13 14:27	인천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2	19라0820	박**	2019-08-11 16:27	대구광역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33	59오5073	박**	2019-08-14 13:58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34	65다6708	박**	2019-07-04 10:32	경기도 성남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5	69라1738	박**	2019-08-14 13: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36	29부9452	박**	2019-08-08 11:27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7	서울36바1658	박**	2019-08-09 09:44	경기도 의정부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8	29조4560	박**	2019-08-08 09:29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령원	전용차로위반	50,000
539	36주5482	박**	2019-08-09 14:2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40	80부8788	박**	2019-08-12 16:03	경기도 고양시	무악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 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541	45가9237	박**	2019-08-13 13:0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42	51보1879	박**	2019-08-07 07:41	인천광역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43	22라7389	박**	2019-08-18 12:39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44	40수5407	박**	2019-08-13 18:51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45	64부3838	박**	2019-08-10 16:43	인천광역시	중화동 메디칼- 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546	28조6009	박**	2019-08-16 16:34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47	41소1988	박**	2019-08-11 12:19	경기도 파주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48	23로3517	박**	2019-08-14 14:4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49	03가7373	박**	2019-08-14 10:1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50	85저1836	박**	2019-08-12 17:44	충청남도 천안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51	85저1836	박**	2019-08-12 17:46	충청남도 천안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52	29가9577	박**	2019-08-13 12:56	광주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3	49아2097	박**	2019-08-02 20:0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54	59나0214	박**	2019-08-13 18:11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연번	차량 소유주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555	17하3186	박**	2019-06-28 20:17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6	41수8472	박**	2019-08-13 09:16	경기도 김 포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57	28오3407	박**	2019-08-09 16:1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58	52다8391	박**	2019-08-10 17:34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559	86바5890	박**	2019-08-11 18:34	전라남도 영암군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60	86바5890	박**	2019-08-15 12:16	전라남도 영암군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61	86바5890	박**	2019-08-15 12:13	전라남도 영암군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62	33나4970	박**	2019-08-11 22:54	강원도 원주시	무악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563	07주4234	박**	2019-08-14 20:21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64	42무8898	박**	2019-08-14 19: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65	49서1676	박**	2019-08-09 18:07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66	62마9514	박**	2019-08-12 08:21	경기도 하남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67	63로3111	박**	2019-08-09 07:34	경기도 양주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568	05도1493	박**	2019-08-07 09:33	경기도 남양주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569	65마9501	박**	2019-08-13 19:46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70	15바2157	박**	2019-08-08 19:4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71	93소0779	박**	2019-08-07 19:47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72	17다2966	박**	2019-08-09 18:15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73	24오9541	박**	2019-08-07 09:50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574	32다7130	박**	2019-08-16 16:50	서울특별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75	25조7272	박**	2019-08-16 18:00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576	53저5065	박**	2019-08-13 09:24	경기도 남양주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77	36다2815	박**	2019-08-18 08:59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78	40루8285	박**	2019-08-16 18:07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79	34무1018	박**	2019-08-08 17:51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고-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80	서울91자2572	박**	2019-08-14 13:2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81	24여7719	박**	2019-08-18 12:15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82	24여7719	박**	2019-08-18 12:1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83	39하6438	박**	2019-06-24 08:55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84	20나6226	박**	2019-08-07 09:11	경기도 성남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85	70가5278	박**	2019-08-16 16:44	서울특별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60,000
586	64라0443	방**	2019-08-16 13:11	경기도 성남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87	45호8824	방**	2019-07-16 18:37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88	18여6660	방**	2019-08-13 20:34	경기도 시흥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89	08가8341	배**	2019-08-14 20:4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90	15고7685	배**	2019-08-16 17:43	인천광역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1	14마0347	배**	2019-08-09 09:35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92	서울80배1679	배**	2019-08-09 18:1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93	35나4219	배**	2019-08-18 15:50	충청남도 천안시	서초동 양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94	07구4380	배**	2019-08-09 19:36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95	25아3928	배**	2019-08-14 15: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96	36로4077	배**	2019-08-14 07:24	경기도 시흥시	한남C-잠원C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97	경기86044657	백**	2019-08-07 20:07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98	09무4740	백**	2019-08-14 19:5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99	43노1005	백**	2019-08-09 08:57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00	13마1322	백**	2019-08-16 12:14	경상북도 안동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01	58다9305	백**	2019-08-14 18:48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고-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02	11누9340	백**	2019-08-12 08: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03	24다5990	변**	2019-08-14 09:49	경기도 성남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04	53다1436	변**	2019-08-11 11:39	인천광역시	남태령-사당C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05	서울81루7291	변**	2019-08-09 11:56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06	34호8043	변**	2019-07-15 19:04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607	서울32사8726	변**	2019-08-09 09:4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08	63바7629	사**	2019-08-15 20:3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09	서울31바4676	사**	2019-08-16 17:14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10	15하8640	서**	2019-07-06 16:48	대전광역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611	94서3182	서**	2019-08-14 19:59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12	45호0640	서**	2019-07-04 18:15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613	20도0903	서**	2019-08-09 09:59	경상북도 포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14	33하4582	서**	2019-06-12 13:48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경표	전용차로위반	50,000
615	40라9696	서**	2019-08-13 20:42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616	33노0536	서**	2019-08-14 12:09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17	30고7037	서**	2019-08-14 17:37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18	29호4974	서**	2019-07-25 09:36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19	20여9695	서**	2019-08-08 08:51	부산광역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20	24노9204	서**	2019-08-12 19: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21	경기06조7600	석**	2019-08-09 08:11	경기도 부천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60,000
622	43도8464	선**	2019-08-14 08: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23	27하9413	선**	2019-06-18 17:3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24	03부1495	성**	2019-08-05 18:18	대구광역시	소방서-종합운동장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25	57거3399	성**	2019-08-13 17:42	전라북도 군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26	09다8620	성**	2019-08-07 19:46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27	49구1884	소**	2019-08-12 17:17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28	서울85저3129	소**	2019-08-09 09:4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29	51여0691	손**	2019-08-09 17:10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30	20고4436	손**	2019-08-13 11:10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31	45조7579	손**	2019-08-13 17:34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32	45조7579	손**	2019-08-13 17:35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33	24여1978	손**	2019-08-09 10: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34	60바8746	송**	2019-08-09 19:5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35	28저5160	송**	2019-08-09 14:0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36	52투4864	송**	2019-08-09 20: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37	57저9174	송**	2019-08-16 09:24	경기도 양주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38	10고6700	송**	2019-08-08 18:52	경기도 성남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39	26호2161	송**	2019-07-15 09:04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40	59로0575	송**	2019-08-09 12:11	경기도 김포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41	41도1020	송**	2019-08-08 08:15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42	60나9125	송**	2019-08-18 04:18	경기도 수원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643	35수4012	송**	2019-08-13 13:0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44	23너0713	송**	2019-08-12 15:51	전라북도 군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45	30모1041	송**	2019-08-14 14:04	경기도 안양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46	46누9967	송**	2019-08-16 12:1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47	48오4831	송**	2019-08-09 18:56	경기도 화성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48	85주6699	송**	2019-08-13 07:39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49	05소1655	송**	2019-08-10 17:00	인천광역시	중화동 메디렌스 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650	32호9174	송**	2019-07-25 11:35	경기도 파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51	66저0409	송**	2019-08-08 18:04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52	45노0299	신**	2019-08-14 22:57	서울특별시	중화동 메디렌스 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653	10고0425	신**	2019-08-14 17:43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4	05로4536	신**	2019-08-14 19:5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55	18거0248	신**	2019-08-13 19:29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56	65호9295	신**	2019-07-07 07:53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양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7	02구2191	신**	2019-07-29 17:34	서울특별시	남대문로4가 18-1	전용차로위반	50,000
658	16서6238	신**	2019-08-12 17:28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9	17마5383	신**	2019-08-16 14:3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60	서울31바4245	신**	2019-08-16 18:13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61	19혀0365	신**	2019-07-15 11:35	서울특별시	옥천동 영천시장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662	53라3268	신**	2019-08-10 17:04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서초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3	24호1712	신**	2019-08-02 20:22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64	25더2264	신**	2019-08-13 10:19	인천광역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5	25더2264	신**	2019-08-13 10:21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6	05오1152	신**	2019-08-14 08:1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연번	차량 소유주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667	경기92바1364	신**	2019-08-08 16:23	경기도 광주시	영등포구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68	55소5773	신**	2019-08-07 08:31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69	11서2769	신**	2019-08-07 18:1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70	69저6546	신**	2019-08-13 09: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71	25로1781	심**	2019-08-09 19:34	서울특별시	태릉-회랑대사거리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72	12가5741	심**	2019-08-17 08:16	강원도 영월군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73	39저2339	심**	2019-08-12 09:11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74	51마5805	심**	2019-08-17 09:4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75	28가5002	심**	2019-08-14 18:21	경기도 용인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76	37라5591	심**	2019-08-14 13:55	경기도 남양주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77	57라9378	안**	2019-08-14 20:14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78	49조8670	안**	2019-08-08 20:4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79	14나9820	안**	2019-08-16 17:33	인천광역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80	38조9213	안**	2019-08-14 20:31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81	66로0865	안**	2019-08-17 14:40	전라남도 장흥군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2	66로0865	안**	2019-08-17 14:41	전라남도 장흥군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3	39소6266	안**	2019-08-13 18:15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84	09나5570	안**	2019-08-14 12:37	경기도 파주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5	57노4791	안**	2019-08-16 17:19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86	40고2379	안**	2019-06-12 19:57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87	42노7392	안**	2019-08-16 18:56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88	61가6573	안**	2019-08-14 17:16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89	65무5834	안**	2019-08-08 19:33	경기도 시흥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90	64가9237	안**	2019-08-09 20:04	경기도 수원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91	13고3777	안**	2019-08-12 13:50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92	21노4845	안**	2019-08-16 17:3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중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693	63라5513	안**	2019-08-16 18:0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94	34바5508	안**	2019-08-09 21:46	서울특별시	중화동 메디펜스 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695	65라9473	안**	2019-07-01 16:05	경기도 군포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6	52하6055	안**	2019-07-14 13:18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7	52하6055	안**	2019-07-14 13:17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8	01보0535	안**	2019-08-13 19:44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99	56나0376	양**	2019-08-14 13:41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00	87노0684	양**	2019-08-08 17:16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01	67로9368	양**	2019-08-13 18:19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02	49로8041	양**	2019-08-09 08:3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03	42노3730	양**	2019-08-12 12:59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04	97부3537	엄**	2019-08-07 12:27	경기도 부천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5	97부3537	엄**	2019-08-07 12:30	경기도 부천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6	66도3202	엄**	2019-08-13 19:45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07	서울31자8924	엄**	2019-08-16 10:09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08	27바3727	엄**	2019-08-14 18:22	경기도 하남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709	30주5071	엄**	2019-08-12 17:39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0	25조0333	엄**	2019-08-12 19:58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1	서울31사2032	여**	2019-08-09 13:42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2	09구2440	연**	2019-08-12 18:24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13	09구2440	연**	2019-08-13 18:29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14	09구2440	연**	2019-08-08 18:28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15	48보1610	연**	2019-07-31 20:3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16	55라5423	엄**	2019-08-07 20:19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17	09나8559	오**	2019-08-08 20:25	경기도 남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18	61하8769	오**	2019-07-08 17:29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19	24무8003	오**	2019-08-08 18:06	경기도 의정부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720	61고8566	오**	2019-08-12 08:3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21	68두1127	오**	2019-08-08 16:55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22	90도0852	오**	2019-08-15 08:35	서울특별시	무악동 독립문역 중앙영리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723	21나1476	오**	2019-08-14 19:24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724	12노8312	오**	2019-08-18 14:38	경기도 의정부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25	43나3176	오**	2019-08-16 09:11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26	충남80아3218	오**	2019-08-14 13:30	충청남도 천안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27	54루9935	오**	2019-08-14 18:44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28	22무4446	오**	2019-08-08 13:22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29	61로6404	오**	2019-08-07 19:02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30	03다8735	오**	2019-07-14 10:26	강원도 춘천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31	03다8735	오**	2019-07-14 10:27	강원도 춘천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32	07루2148	오**	2019-08-12 09:14	광주광역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33	63가4052	오**	2019-08-09 20:27	경기도 시흥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734	63가4052	오**	2019-08-09 20:34	경기도 시흥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35	31두5144	오**	2019-08-13 17:52	경기도 하남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36	31서4460	윤**	2019-08-09 17:27	인천광역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37	65호0285	우**	2019-08-09 07: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38	서울32사3166	우**	2019-08-16 09:41	경기도 남양주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39	43버1647	우**	2019-08-14 11:1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40	45호3034	우**	2019-08-14 17:28	강원도 춘천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41	서울31바4951	우**	2019-08-18 11:08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42	65호2650	원**	2019-08-13 19:47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43	40마0695	원**	2019-08-08 11:23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44	18허2069	원**	2019-06-23 11:23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서초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45	40다9843	원**	2019-08-14 08: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46	28루0915	유**	2019-08-14 08:44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747	66호9846	유**	2019-06-11 17:51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48	22로5708	유**	2019-08-14 09:25	인천광역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49	06저3572	유**	2019-08-16 17:33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50	06저3572	유**	2019-08-16 17:36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51	20무6281	유**	2019-08-14 16:0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52	서울31자7166	유**	2019-08-09 09:36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753	서울31자5385	유**	2019-08-16 09:48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54	02다7857	유**	2019-08-13 08:29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55	28로0996	유**	2019-08-07 20:0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56	08무1707	유**	2019-08-13 20:3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57	46로4466	유**	2019-08-10 07:2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58	24보7052	유**	2019-08-09 17:43	충청남도 천안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759	61호5144	유**	2019-08-13 20:16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60	67주4354	유**	2019-08-15 17:46	경기도 안산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61	67주4354	유**	2019-08-15 17:48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62	69가2199	유**	2019-08-18 13:34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0-5	전용차로위반	50,000
763	81바6952	유**	2019-08-12 09:36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64	서울31사5225	유**	2019-08-12 10:4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65	61호3205	유**	2019-08-09 19:56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66	08가5087	유**	2019-08-12 18:13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67	13구5775	유**	2019-08-07 16:50	경기도 양평군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68	32호0414	유**	2019-08-16 17:45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69	서울31사5488	유**	2019-08-16 18:45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70	48마4049	유**	2019-08-09 19:49	경기도 안산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71	59호4551	유**	2019-06-27 07: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72	86로1486	유**	2019-08-11 17:09	경기도 하남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73	29저5451	유**	2019-08-14 08:29	경기도 하남시	길동생태공원-생태공원앞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74	04우4866	윤**	2019-07-26 17:29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75	55호2554	윤**	2019-06-17 18:21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76	60가1290	윤**	2019-08-14 17:3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77	17구4773	윤**	2019-08-09 17:3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78	29라5899	윤**	2019-08-12 17:31	경기도 수원시	영동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79	85나3575	윤**	2019-08-14 17:45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0	49하4267	윤**	2019-07-12 17:30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781	04로9070	윤**	2019-08-12 17:41	전라북도 전주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2	85버5427	윤**	2019-08-16 17:30	경기도 파주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783	41노6140	윤**	2019-08-13 07:20	서울특별시	한남C-잠원C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84	46나2235	윤**	2019-08-18 12:47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785	50고3537	윤**	2019-08-18 11:11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786	22나0352	윤**	2019-08-09 18:5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87	서울31아8021	윤**	2019-08-13 19:59	경기도 광명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88	29버7157	윤**	2019-08-14 09:41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령원	전용차로위반	50,000
789	20도8951	윤**	2019-08-13 17:03	울산광역시	서초동 양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90	20도8951	윤**	2019-08-13 17:01	울산광역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91	20도8951	윤**	2019-08-10 16:27	울산광역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92	서울32자2283	윤**	2019-08-16 17:55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93	15로6733	윤**	2019-08-16 18:2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94	17구6929	윤**	2019-08-13 10:2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95	40조4299	윤**	2019-08-13 18:14	인천광역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96	46구8584	윤**	2019-08-13 19:16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97	서울31사2806	윤**	2019-08-08 21:26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798	36가5935	윤**	2019-08-08 18:54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99	34아1290	이**	2019-08-16 19:18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00	46아9492	이**	2019-08-07 10:47	경기도 오산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01	69보5022	이**	2019-08-14 08:40	경기도 화성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02	69머3021	이**	2019-08-07 17:0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03	13도5978	이**	2019-08-16 09:41	대전광역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04	18구8820	이**	2019-08-12 08:07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05	36조3290	이**	2019-08-07 20:14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06	47나2268	이**	2019-08-07 10:5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07	57자7626	이**	2019-08-09 19:15	경기도 하남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08	38아5492	이**	2019-08-14 19:36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09	25소10667	이**	2019-08-09 12:10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10	37구7942	이**	2019-08-09 08:4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811	53머2166	이**	2019-08-09 08:20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12	23머6537	이**	2019-08-13 19:44	경기도 안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13	83부6665	이**	2019-08-07 09:13	경기도 고양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14	21나9725	이**	2019-08-08 13:59	서울특별시	강남역-신논현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15	10조4367	이**	2019-08-07 19:27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16	34조4253	이**	2019-08-02 18:29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17	서울32사6247	이**	2019-08-13 15:3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18	23소2944	이**	2019-08-09 18:3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819	서울87자5871	이**	2019-08-10 08:0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20	65하8690	이**	2019-07-16 18:19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21	24노4561	이**	2019-08-16 16:3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22	59호3291	이**	2019-06-27 19:33	서울특별시	잠실동 184	전용차로위반	50,000
823	28너9695	이**	2019-08-12 07:23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24	38노2386	이**	2019-08-13 09:2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25	41라9250	이**	2019-08-07 17:57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26	40서1147	이**	2019-08-07 20:4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27	52소0133	이**	2019-08-16 17:50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28	55구6995	이**	2019-08-10 10:31	부산광역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29	37서8552	이**	2019-08-07 12:10	경기도 하남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830	56수7475	이**	2019-08-08 19:33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31	66서1671	이**	2019-08-16 19:51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32	14노9840	이**	2019-08-12 07:02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833	50노0873	이**	2019-08-11 23:23	서울특별시	잠실동 잠실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834	24저9293	이**	2019-08-14 09:19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835	78노9492	이**	2019-08-15 16:39	경기도 수원시	사당C-사당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60,000
836	45부2950	이**	2019-08-09 19:44	경기도 남양주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37	48보7526	이**	2019-08-17 13:45	경기도 성남시	잠실동 잠실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838	50노6233	이**	2019-08-09 18:1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39	50노6233	이**	2019-08-13 19:0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40	28모0640	이**	2019-08-12 09:24	경기도 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41	34저7727	이**	2019-08-09 09:33	경기도 수원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42	09서1792	이**	2019-08-12 16:3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43	52다0592	이**	2019-08-07 17:3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44	32여7239	이**	2019-08-14 08:10	인천광역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845	07구0534	이**	2019-08-08 10:41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46	39무0171	이**	2019-08-16 13:28	세종특별자치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47	41서0118	이**	2019-08-13 10:33	대구광역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848	67구3065	이**	2019-08-14 12:1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49	65오3829	이**	2019-08-12 09:43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50	05나9391	이**	2019-08-08 18:34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51	30수8602	이**	2019-08-12 16:19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52	41누4171	이**	2019-08-08 09: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53	33보2252	이**	2019-08-13 09:42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54	29다6714	이**	2019-08-07 17:4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55	33로7345	이**	2019-08-07 22:43	경기도 부천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856	32보4526	이**	2019-08-13 18:38	경기도 하남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57	16우4889	이**	2019-08-08 19:42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58	49루1718	이**	2019-08-07 17:30	경기도 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59	22로0890	이**	2019-08-09 08:59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60	07나3680	이**	2019-08-13 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861	63구0566	이**	2019-08-07 10: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62	22라2087	이**	2019-08-08 14:5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63	41버9097	이**	2019-08-15 19:52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64	03가0231	이**	2019-08-16 19:22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65	92노6421	이**	2019-08-09 18:3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66	39모1798	이**	2019-08-08 19:49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67	09가4249	이**	2019-08-16 16:02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68	18가2285	이**	2019-08-09 10:2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69	28가5203	이**	2019-08-14 08:36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70	경기32나4675	이**	2019-08-15 10:08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71	17두1996	이**	2019-08-13 11:59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72	54무1422	이**	2019-08-12 17:12	경기도 등 두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73	20보1020	이**	2019-08-14 18:14	서울특별시	태릉주택-화랑대 사거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74	08로0567	이**	2019-08-13 09:17	경기도 수원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75	12보2803	이**	2019-08-07 18:0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76	서울32나4405	이**	2019-08-07 18:07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77	01가9076	이**	2019-08-16 13:03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668 숏고집	전용차로위반	50,000
878	68소3255	이**	2019-08-16 09:0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영원	전용차로위반	50,000
879	57우7580	이**	2019-08-12 19:3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80	42부0698	이**	2019-08-16 14:4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81	84보3573	이**	2019-08-08 12:07	경기도 남양주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82	32도5560	이**	2019-08-09 17:21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883	68보3386	이**	2019-08-14 20:02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84	61노1192	이**	2019-08-12 14:54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885	37라0643	이**	2019-08-13 18:44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86	11가0998	이**	2019-08-09 10:0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87	11가0998	이**	2019-08-09 10:02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88	12구5991	이**	2019-08-14 20:13	경기도 남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89	51라7320	이**	2019-08-16 08:55	경상남도 창원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90	55호7644	이**	2019-06-18 18:38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91	24모3683	이**	2019-08-14 11:2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92	서울31바5538	이**	2019-08-18 14:21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93	16루5076	이**	2019-08-13 20:30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894	05누1959	이**	2019-08-07 19:23	울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95	55도7535	이**	2019-08-09 17:34	경기도 수원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96	05너4322	이**	2019-08-14 19:45	경기도 파주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97	서울43라7094	이**	2019-08-12 17:59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98	서울31아5739	이**	2019-08-09 15:25	경기도 시흥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99	30라7161	이**	2019-08-13 09:3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00	93라8053	이**	2019-08-13 17:03	강원도 인제군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01	55호1399	이**	2019-06-28 20:28	광주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02	13라0267	이**	2019-08-16 09:25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03	06나5725	이**	2019-08-14 09:30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904	65로6993	이**	2019-08-14 09:57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05	48고2366	이**	2019-08-16 18:1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06	11로9306	이**	2019-08-12 16:38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07	65다5284	이**	2019-08-07 07:19	경기도 광주시	양재IC-서초IC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08	서울86재1922	이**	2019-08-07 14:31	경기도 안산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909	47거7880	이**	2019-08-14 19:46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10	69호4491	이**	2019-08-02 20:42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11	68가6897	이**	2019-08-12 09:45	충청북도 충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12	27가8952	이**	2019-08-12 20:15	인천광역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13	04노0188	이**	2019-08-13 16:16	경기도 평택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14	13아9923	이**	2019-08-14 18:17	서울특별시	육사삼거리-화랑대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15	52노3292	이**	2019-08-07 14:19	인천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16	서울80내7737	이**	2019-08-08 18:2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17	36더9091	이**	2019-08-09 09:15	울산광역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18	14머3653	이**	2019-07-05 10:3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19	67모7757	이**	2019-08-16 14:00	경상북도 포항시	무악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920	23구0795	이**	2019-08-17 12: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21	21노6725	이**	2019-08-12 18:44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22	29호7824	이**	2019-07-12 20:15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23	서울31자1349	이**	2019-08-16 20:42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24	30우5686	이**	2019-08-14 19: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25	10호7932	이**	2019-08-05 08:01	경기도 성남시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26	01여2649	이**	2019-08-09 19:29	경기도 의정부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27	17고4946	이**	2019-08-12 08:34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28	29호9762	이**	2019-07-29 20:42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29	15고1056	이**	2019-08-14 11:20	경기도 시흥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30	20아1966	이**	2019-06-10 09:58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31	08오6409	이**	2019-08-13 12:03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932	15노2905	이**	2019-08-14 13:5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33	33마0991	이**	2019-08-08 19: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34	52노1670	이**	2019-08-14 21:36	경기도 군포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935	92조0331	이**	2019-08-09 18:27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36	34라4806	이**	2019-08-14 18:54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37	31라0616	이**	2019-08-09 19:4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38	20투0152	이**	2019-08-09 15:02	경기도 군포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39	46저6493	이**	2019-08-09 19:28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40	18하6151	이**	2019-07-28 05:09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941	43고4734	이**	2019-08-14 17:39	강원도 영월군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42	서울31사2900	이**	2019-08-16 18:45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43	09우7430	이**	2019-08-14 18:42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44	06구8717	이**	2019-08-17 14:43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945	46서2255	이**	2019-08-14 19:18	경기도 동두천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46	서울32사8385	이**	2019-08-15 20:3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47	21무0326	임**	2019-08-17 21:21	인천광역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948	37서6392	임**	2019-08-16 19:19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949	52노3659	임**	2019-08-12 19:38	인천광역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50	37호6129	임**	2019-07-26 07:26	광주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51	27머2451	임**	2019-08-16 19:19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52	27보9394	임**	2019-08-09 20:16	경기도 김포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53	41서9471	임**	2019-08-14 18:25	광주광역시	진관동 구파벌역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954	28수8360	임**	2019-08-13 14:0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55	28수8360	임**	2019-08-13 14:04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56	34다2993	임**	2019-08-16 18:06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57	54다5337	임**	2019-08-18 18:36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958	30노5171	임**	2019-08-07 13: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59	24서5617	임**	2019-08-08 19:07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60	15나5656	임**	2019-08-14 19:28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61	20고9534	임**	2019-08-14 12:42	충청남도 논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62	40호5773	임**	2019-07-16 18:55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63	26조3125	임**	2019-08-15 20:29	경기도 시흥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64	59두4022	임**	2019-08-12 10:16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65	38려3541	장**	2019-08-14 18:53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66	92로4580	장**	2019-08-16 15: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967	92로4580	장**	2019-08-07 11: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968	11보8777	장**	2019-08-09 20:11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69	19투8374	장**	2019-08-13 20:0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70	51주5178	장**	2019-08-09 14:3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71	51주5178	장**	2019-08-09 14:38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72	55저2097	장**	2019-08-09 20:0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73	31다1651	장**	2019-08-16 17:59	서울특별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74	서울36바527	장**	2019-08-18 16:24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75	49우4491	장**	2019-08-14 09:09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76	54서0414	장**	2019-08-17 10:55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77	01하7194	장**	2019-06-19 17:14	경기도 시흥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78	36로9458	장**	2019-08-08 16:3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79	02오7135	장**	2019-08-09 20:00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80	27나3133	장**	2019-08-16 17:46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81	43너3464	장**	2019-08-12 12:18	서울특별시	양재IC-서초IC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82	서울31아3080	장**	2019-08-16 17:25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83	33서7408	장**	2019-08-10 16:10	경기도 부천시	영등포동월-대림2차상가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84	65도1218	장**	2019-08-14 12:23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85	92서7038	장**	2019-08-09 17:18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86	09소4959	전**	2019-08-09 14:35	경기도 구리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87	35소3134	전**	2019-08-09 20:1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88	경기83바2513	전**	2019-08-09 20:49	경기도 의정부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60,000
989	03누6227	전**	2019-08-07 12:42	경기도 남양주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90	58려9401	전**	2019-08-08 01:40	서울특별시	중화동 메디칼-신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991	37호7426	전**	2019-07-30 19:08	경기도 부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92	24주0855	전**	2019-08-07 08:08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93	서울31사4595	전**	2019-08-13 10:0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94	31보2657	전**	2019-08-14 20:38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95	46루6773	전**	2019-08-13 11:38	경기도 구리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96	서울31자6591	전**	2019-08-08 19:27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997	서울32사6189	전**	2019-08-07 08:00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98	19노1099	전**	2019-08-09 13:33	경기도 파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99	59구4801	전**	2019-08-14 18:50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00	68나7608	전**	2019-08-09 19:14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01	38다9903	전**	2019-08-07 08:28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02	서울32자2009	전**	2019-08-13 07:45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03	95조2449	전**	2019-08-09 18:01	경기도 안산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04	57여3409	정**	2019-08-09 19: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05	28나5326	정**	2019-08-09 19:40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위반내용	금 액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1,006	31거0687	정**	2019-08-08 18:38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07	55호1176	정**	2019-07-02 10:0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08	02다5109	정**	2019-08-09 17:4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09	24마7828	정**	2019-08-07 19:30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10	45라0212	정**	2019-08-13 08:1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11	37서6092	정**	2019-08-09 17:26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12	45부1722	정**	2019-08-11 23:46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013	65로0682	정**	2019-08-08 07:57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14	14나1023	정**	2019-08-14 20:15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15	54노7209	정**	2019-08-07 16:53	경상남도 김해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16	서울32자5563	정**	2019-08-12 11:08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17	42라0490	정**	2019-08-14 20:04	충청남도 천안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18	60로5852	정**	2019-07-16 15:08	경기도 과천시	남현동 남대영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019	68로2057	정**	2019-08-14 20:47	경기도 구리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20	15도6722	정**	2019-08-07 20:36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21	47마7249	정**	2019-08-12 19:04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선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22	서울31자7264	정**	2019-08-12 20:3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23	63라1131	정**	2019-08-09 19:02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24	46고7032	정**	2019-08-08 19:0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25	48로4713	정**	2019-08-07 17:43	전라북도 전주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26	50려9972	정**	2019-08-14 18:23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27	22누3135	정**	2019-08-16 18:57	전라북도 완주군	성산동 성선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28	42로0376	정**	2019-08-09 12:06	경기도 수원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29	30고1337	정**	2019-08-09 19:06	경기도 성남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30	02보7265	정**	2019-08-16 08:5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31	12오0740	정**	2019-08-08 23:26	경기도 부천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032	서울86자1351	정**	2019-08-12 10: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33	19저0534	정**	2019-08-07 17:1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34	54구0123	정**	2019-08-10 15:51	경상남도 양산시	서초동 양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35	54구0123	정**	2019-08-10 15:48	경상남도 양산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36	54로6377	정**	2019-08-13 12:03	경상남도 통영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37	89주4715	정**	2019-08-14 18:2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38	49루0819	정**	2019-08-09 20:17	경기도 남양주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39	서울32사8472	정**	2019-08-14 09:47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40	28소7729	정**	2019-08-13 15:3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41	45비6854	정**	2019-08-09 19:10	세종특별자치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42	61라0318	정**	2019-08-12 18:11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성선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43	54주3358	정**	2019-08-16 18:03	경기도 군포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44	01우4945	정**	2019-08-16 08:01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45	서울32자3088	정**	2019-08-12 14: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한국곡직원공제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046	60주3334	정**	2019-08-16 16:1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47	49마0361	정**	2019-08-16 17:55	충청남도 아산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48	06나0686	정**	2019-08-18 08:47	인천광역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049	서울31자3929	정**	2019-08-11 15:39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50	08우7869	정**	2019-08-08 08: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비	전용차로위반	50,000
1,051	06주0884	정**	2019-08-16 19:49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52	서울31자6921	정**	2019-08-13 12:1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53	60서7565	정**	2019-08-14 20:46	경기도 평택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54	38누3786	정**	2019-08-08 19:28	경기도 광주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55	13비9583	조**	2019-08-12 14:57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056	62우4285	조**	2019-08-16 12:1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57	11루1467	조**	2019-08-15 09: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58	69루8776	조**	2019-08-09 15:33	충청남도 아산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59	01로9059	조**	2019-08-16 12:42	부산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60	23오4274	조**	2019-08-16 09:45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061	11무9704	조**	2019-08-14 15:1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62	32우8280	조**	2019-08-16 08:09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63	35오2691	조**	2019-08-13 19:4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64	27우6003	조**	2019-08-12 16:24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65	27우6003	조**	2019-08-12 16:25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66	15수2871	조**	2019-08-16 12:12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67	서울80매8370	조**	2019-08-09 17:24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68	49도5191	조**	2019-08-16 16:4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69	49도5191	조**	2019-08-16 18:19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70	41보2347	조**	2019-08-10 15:22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71	68서4804	조**	2019-08-12 19:18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72	10구6059	조**	2019-08-14 02:17	경기도 화성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073	02오5020	조**	2019-08-14 09: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74	10무7759	조**	2019-08-16 17:2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075	38투2815	조**	2019-08-07 11:53	경상북도 구미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76	87나0792	조**	2019-08-13 0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버	전용차로위반	50,000
1,077	33마8686	조**	2019-08-08 08:52	경상남도 양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78	12호1682	조**	2019-07-10 20:31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79	35가2124	조**	2019-08-08 11:2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80	서울32사9607	조**	2019-08-16 17:55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81	51가9119	조**	2019-08-09 12:41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82	08마9350	조**	2019-08-13 17: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83	68다6452	조**	2019-08-09 17:30	서울특별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84	53구6753	조**	2019-08-17 14:19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경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085	13가8002	조**	2019-08-13 17:22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86	06여9562	조**	2019-08-08 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87	38나0488	조**	2019-08-09 18:07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88	32다9743	조**	2019-08-13 07: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89	32다9743	조**	2019-08-07 07: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90	59배8804	조**	2019-08-09 19:53	경기도 시흥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91	21조3336	조**	2019-08-09 09:21	경기도 양주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92	25가3817	조**	2019-08-14 20:17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93	55무6631	주**	2019-08-08 17:55	울산광역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94	39나4117	주**	2019-08-09 18:5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95	28가9007	주**	2019-08-16 16:50	서울특별시	학여울역-대우성아파트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96	16라3286	주**	2019-08-09 09:16	인천광역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97	34호6049	주**	2019-07-16 09:29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098	16소9678	주**	2019-08-13 18: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99	23여1450	지**	2019-08-07 20:29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00	15주0637	지**	2019-08-08 18:3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01	24고0660	지**	2019-08-16 15:37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02	56다2637	진**	2019-08-16 16:51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03	10여0937	진**	2019-08-12 18: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04	서울31아7148	진**	2019-08-13 20:46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05	68무8083	진**	2019-08-08 17:2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06	37가2435	차**	2019-08-18 13:50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07	37가2435	차**	2019-08-18 13:49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08	17비0175	차**	2019-08-16 09:39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109	서울35비2834	차**	2019-08-12 17:53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110	25소7599	차**	2019-08-15 17:07	경기도 시흥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11	25소7599	차**	2019-08-15 17:05	경기도 시흥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12	63하5182	채**	2019-07-11 11:19	경기도 부천시	봉천동 884-44	전용차로위반	50,000
1,113	65루7644	채**	2019-08-14 17:39	경기도 남양주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14	41구5156	채**	2019-08-08 19:09	경기도 수원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15	62누8118	채**	2019-08-13 17:43	강원도 동해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16	27도0963	천**	2019-08-10 14:35	경상남도 거제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1,117	26주7696	최**	2019-08-12 08:46	대구광역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18	56마9762	최**	2019-08-12 19:49	충청남도 천안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19	60노4833	최**	2019-08-13 11:37	경기도 시흥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20	07서4488	최**	2019-08-09 08:29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121	21투6450	최**	2019-08-16 09:5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22	40저5060	최**	2019-08-14 19:50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23	36서4806	최**	2019-08-12 16: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24	63부9637	최**	2019-08-13 20:14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25	19거3495	최**	2019-08-07 18:46	강원도 강릉시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26	서울31사2020	최**	2019-08-10 10:26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127	12우4735	최**	2019-08-16 11:37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양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28	55모9395	최**	2019-08-13 16:1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29	46도5937	최**	2019-08-07 09:21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30	60다8215	최**	2019-08-12 15:06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31	80주4498	최**	2019-08-12 09:35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32	52하1562	최**	2019-07-04 10: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33	43고1389	최**	2019-08-13 10: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갯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34	서울14다7646	최**	2019-08-16 09:29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60,000
1,135	서울31자704	최**	2019-08-13 09:39	경기도 양주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36	12마0744	최**	2019-08-07 20:47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37	11누4203	최**	2019-08-16 13:17	인천광역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38	62가0254	최**	2019-08-09 17:21	경기도 성남시	무악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139	34거0657	최**	2019-08-16 08:36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140	10호8166	최**	2019-02-21 10:27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41	34로2337	최**	2019-08-13 17:34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42	40초1767	최**	2019-08-08 11:32	전라남도 여수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43	55도7071	최**	2019-08-07 17:3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44	49루7160	최**	2019-08-12 09:42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45	01하1089	최**	2019-06-23 20:0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46	36다1517	최**	2019-08-16 19:3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47	31나5143	최**	2019-08-10 11: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1,148	19노0402	최**	2019-08-15 15:12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49	51나4155	최**	2019-08-13 19:56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150	30소8783	최**	2019-08-05 18:19	서울특별시	소방서-종합운동장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51	57하7830	최**	2019-06-07 21:46	경기도 고양시	흥은동 산골고개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152	서울32와4257	최**	2019-08-11 13:29	서울특별시	중화동 메디칼스 신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1,153	서울35바6332	최**	2019-08-09 19:5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54	23가3199	최**	2019-08-17 18:43	인천광역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155	01마6269	최**	2019-08-17 10:45	서울특별시	박문각빌딩~노량진역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56	인천84배1859	최**	2019-08-12 11:01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전용차로위반	50,000
1,157	61주7273	최**	2019-08-09 17:43	경기도 안산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158	13서0254	최**	2019-08-14 15:35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59	37주5972	최**	2019-08-06 17:10	경기도 의정부시	천호대교 남단~북단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60	26마2345	최**	2019-08-12 08:39	서울특별시	연희동 중앙빌딩~연희C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61	29호7621	최**	2019-06-21 09:5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62	35주4023	최**	2019-08-14 20:0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63	경기86와5538	최**	2019-08-13 07:53	경기도 안산시	39~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164	19수0486	최**	2019-08-16 10:53	경기도 성남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65	46부0857	최**	2019-08-14 19:2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66	10하1343	최**	2019-07-24 14:13	대구광역시	서초동 반포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67	05호2172	최**	2019-07-29 18:0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68	52마5190	최**	2019-08-09 15:29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69	12소9845	최**	2019-08-13 12:54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70	43하0240	최**	2019-07-11 15:0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71	43하0240	최**	2019-07-11 15:03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72	43하0240	최**	2019-07-11 13:00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73	69버7298	최**	2019-08-14 07:40	경기도 구리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1,174	서울31사4631	최**	2019-08-08 17:27	경기도 의정부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75	17조1949	최**	2019-08-08 20:3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76	37고8196	추**	2019-08-18 11:03	경기도 부천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77	18호4905	추**	2019-06-12 09:11	경기도 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78	06주5431	추**	2019-08-16 11:0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79	67호6831	하**	2019-07-04 17:1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80	04다6386	하**	2019-08-07 10:47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81	81누4304	하**	2019-08-14 15:27	경기도 의정부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82	29려8200	하**	2019-08-16 1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83	66다2558	하**	2019-08-13 07:5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84	54서0746	하**	2019-08-14 09:05	경기도 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85	21호6091	한**	2019-07-25 14:35	경기도 시흥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86	45서6158	한**	2019-07-14 11: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피아어	전용차로위반	50,000
1,187	20가4609	한**	2019-08-18 07:38	인천광역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188	25조6747	한**	2019-08-09 12:59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89	20투9903	한**	2019-08-11 00:56	서울특별시	잠실동 잠실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190	66여4609	한**	2019-08-14 12:23	전라남도 영광군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91	35노0984	한**	2019-08-12 09:38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엘시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92	89노0908	한**	2019-08-14 10:50	경기도 광주시	대치동 성지빌딩-대치우성 아파트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93	서울32자5866	한**	2019-08-08 11:0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94	40서2786	한**	2019-08-09 17:43	경기도 평택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195	92도5602	한**	2019-08-13 08:14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96	40수7343	한**	2019-08-15 16: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송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1,197	68서3508	한**	2019-08-17 15:13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198	47누2202	한**	2019-08-14 15:42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99	65사8226	한**	2019-08-07 09:36	충청남도 예산군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00	51무5370	한**	2019-08-13 11:47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01	15서3354	한**	2019-08-16 19:27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02	43고8678	함**	2019-08-16 11:12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03	서울32사6842	함**	2019-08-12 17:46	서울특별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04	서울32사6842	함**	2019-08-12 17:49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05	26도8430	함**	2019-08-09 18:16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06	68다3017	허**	2019-08-09 18:2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07	26서5433	허**	2019-08-14 18:50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08	64가4252	허**	2019-08-08 18:35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09	05투6539	허**	2019-08-08 10:14	경기도 광명시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10	05투6539	허**	2019-08-08 10:15	경기도 광명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11	19무4595	허**	2019-08-12 19:25	경기도 용인시	성산동 성산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212	02여4226	허**	2019-08-08 09:28	경기도 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13	62구1524	허**	2019-08-13 09:43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14	22하1093	허**	2019-06-24 14:5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15	60조9656	현**	2019-08-10 00:17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216	87오4166	홍**	2019-08-10 12:29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17	02구5103	홍**	2019-08-13 10:49	경기도 수원시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218	63투6751	홍**	2019-08-12 08:58	경기도 하남시	잠실동 엘시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19	32호1170	홍**	2019-07-08 20:38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20	48가0297	홍**	2019-08-09 16:22	충청남도 천안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21	64나7787	홍**	2019-08-09 18:30	경기도 시흥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222	31다5238	홍**	2019-08-09 17:34	경기도 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223	01모0309	홍**	2019-08-12 08:47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시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24	25여0406	홍**	2019-08-07 20:37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25	04우9189	홍**	2019-08-07 09:17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26	서울32사8048	홍**	2019-08-13 15:34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27	서울32사7544	홍**	2019-08-14 20:27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28	41소3915	황**	2019-08-12 17:5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1,229	37호5242	황**	2019-06-28 18:51	경기도 의정부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전용차로위반
1,230	11너0793	황**	2019-08-07 19:44	경기도 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1,231	49하4262	황**	2019-07-04 19:3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1,232	서울32라3822	황**	2019-08-14 09:24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1,233	51부7387	황**	2019-08-09 12:0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1,234	58부2806	황**	2019-08-09 15:34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위반
1,235	40부1561	황**	2019-08-12 17:27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1,236	66부3922	황**	2019-08-09 20:21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1,237	40주9220	황**	2019-08-07 17:29	전라북도 전주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1,238	68구8123	황**	2019-08-10 22:55	서울특별시	잠실동 잠실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1,239	39누8399	황**	2019-08-09 20:3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1,240	40보6165	황**	2019-08-09 12:19	경기도 광명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1,241	21가7105	황**	2019-08-09 07:56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1,242	49가2663	황**	2019-08-16 17:53	경기도 파주시	삼육대학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65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에 의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공시송달 대상 : <불임>
- 의견제출 안내
 -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나. 3인 탑승차량, 장애인 차량, 공무(보도용)차량, 저공해/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차량 등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면제 혹은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 의견제출 방법
 - 인터넷 : www.sisul.or.kr 접속 후 교통사업 → 기타교통업무 → 혼잡통행료 징수 → 혼잡통행료 의견제출 클릭·작성
 - 팩스 : 02-756-1398 ※ 성명, 차량번호, 일자, 사유, 탑승자 연락처 등 필요
 -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불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사전통지 공시송달 의뢰('19.06.01 ~ '19.06.15)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	남산1호터널	2019-06-04	13:45:09	01노0467	중재호	4,0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잠매미길
2	남산1호터널	2019-06-04	20:21:49	01우2731	DAVIS, ROD TYLER	8,0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	남산3호터널	2019-06-07	20:18:21	01초6396	김준학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랑로
4	남산3호터널	2019-06-07	20:37:59	02루5851	정지훈	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중로118번길
5	남산1호터널	2019-06-04	13:10:48	02우7417	승일미디어그룹 주식회사	8,0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326번길
6	남산3호터널	2019-06-07	19:52:57	02부6027	강해숙	4,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다길
7	남산3호터널	2019-06-07	15:48:35	03구9743	강희철(강필규)	4,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8	남산1호터널	2019-06-05	10:41:57	03다0525	정영자	8,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	남산1호터널	2019-06-07	7:58:43	05부9062	정찬훈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	남산1호터널	2019-06-05	20:11:16	05대4916	윤여국	8,000	경기도 의왕시 갈매로
11	남산1호터널	2019-06-04	17:01:27	07라3801	이시은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2	남산1호터널	2019-06-07	17:33:15	07저0626	윤기석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13길
13	남산1호터널	2019-06-05	10:48:19	09호0620	SK네트웍스(주)	8,000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장년리
14	남산3호터널	2019-06-05	17:07:16	11부1314	정재갑	8,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754번길
15	남산3호터널	2019-06-04	19:16:29	11수7299	이건호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16	남산3호터널	2019-06-04	16:27:31	11저8131	주식회사 에스와이소프트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	남산3호터널	2019-06-03	16:23:01	14대6163	김성호	8,000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07번길
18	남산1호터널	2019-06-04	8:10:40	15노8546	김영욱	8,000	경기도 남양주시 회도읍 뱃들로
19	남산1호터널	2019-06-05	14:00:07	15보4409	이정복	8,00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향강로
20	남산1호터널	2019-06-07	15:32:48	15수3406	김영일	4,000	충청남도 아산시 여의정로183번길
21	남산1호터널	2019-06-03	15:31:18	16부7463	이명훈	4,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2	남산3호터널	2019-06-07	20:38:32	16여9113	정다운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3	남산1호터널	2019-06-04	16:06:35	16조2850	백동기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24	남산1호터널	2019-06-03	19:13:14	17수8483	박수희	4,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14번길
25	남산1호터널	2019-06-07	7:42:01	18가5048	송윤선	8,000	경기도 화성시 10중사로
26	남산3호터널	2019-06-03	18:15:20	18타3121	조아라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1길
27	남산1호터널	2019-06-03	10:30:20	18라0356	김정희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릉로
28	남산1호터널	2019-06-04	15:28:53	20고0158	서구원	8,000	경기도 오산시 청정로
29	남산1호터널	2019-06-05	15:28:43	20매6545	정이수	8,000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30	남산3호터널	2019-06-03	16:41:23	21저6121	최철호	8,000	전라남도 강진군 울천면 개산길
31	남산1호터널	2019-06-05	13:57:45	22다6370	최동성	8,000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물정로
32	남산1호터널	2019-06-07	15:32:40	23노5130	주식회사 성진마린	8,000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33	남산1호터널	2019-06-05	19:52:07	23루7704	정윤종	8,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12번길
34	남산1호터널	2019-06-03	16:42:52	24보2059	김정민	8,0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175번나길
35	남산1호터널	2019-06-03	17:17:46	25로7899	이안나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6	남산1호터널	2019-06-05	15:57:58	25서6468	김영희	8,00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석사로
37	남산1호터널	2019-06-05	14:31:29	27거1270	남정현	4,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38	남산1호터널	2019-06-07	17:57:21	27매9118	신해원	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26길
39	남산1호터널	2019-06-04	20:00:14	27동0108	황성하	4,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충4로길
40	남산1호터널	2019-06-05	7:22:37	28부0237	하지원	4,00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41	남산1호터널	2019-06-03	19:39:03	28호8592	김민철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9길
42	남산1호터널	2019-06-07	20:22:39	28조6441	민병천	8,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월산로74번길
43	남산1호터널	2019-06-07	9:24:57	29라6689	(주)대주기계	8,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44	남산3호터널	2019-06-03	11:51:10	29부5183	이경주	8,000	전라남도 곡성군 옥괴면 주산길
45	남산1호터널	2019-06-07	11:16:49	29라3085	정진석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6	남산1호터널	2019-06-05	16:16:55	29부0700	(주)에프에피이엔지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
47	남산1호터널	2019-06-03	11:55:39	30구9391	(주)머티리데이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계천로
48	남산1호터널	2019-06-05	19:23:43	31가3619	이은선	8,000	강원도 강릉시 정월로
49	남산1호터널	2019-06-05	19:46:34	32다3919	문창식	8,0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50	남산1호터널	2019-06-03	11:06:24	33부0995	이상호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	남산1호터널	2019-06-05	9:23:46	34노8508	최건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
52	남산3호터널	2019-06-05	16:03:51	34부2870	김성현	8,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
53	남산1호터널	2019-06-07	19:20:25	35조0726	주식회사원진니트	8,0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읍생중앙로
54	남산1호터널	2019-06-05	9:38:37	36부3229	유한회사 오디엠메이에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5	남산3호터널	2019-06-05	7:19:14	36저2496	정규석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3길
56	남산3호터널	2019-06-03	19:15:41	37가2733	송만주	8,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57	남산3호터널	2019-06-07	19:59:16	37조6711	박용은	4,000	경기도 화성시 직현길24번길
58	남산3호터널	2019-06-07	17:27:44	38해9417	(주)금성	8,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해로
59	남산1호터널	2019-06-05	7:18:06	39구0435	RHEE JAMES CHUNGBOK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남산3호터널	2019-06-05	12:17:14	39구5967	주식회사 오성하이퍼리밍	8,000	경기도 군포시 중앙대로27번길
61	남산1호터널	2019-06-04	11:37:19	40타6423	장성태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번길
62	남산3호터널	2019-06-07	9:49:06	40여8071	권오성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63	남산3호터널	2019-06-05	11:14:39	41수0618	주식회사 이수유통	4,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1로8번길
64	남산3호터널	2019-06-07	20:03:17	43보6309	김소룡	8,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서서로
65	남산1호터널	2019-06-04	10:12:02	45노1365	권진희	4,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66	남산1호터널	2019-06-07	12:02:12	46타1449	이호림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8길
67	남산3호터널	2019-06-05	12:34:59	46서9557	김영주	8,000	경기도 시흥시 송림상가로
68	남산3호터널	2019-06-07	15:45:47	47부9429	(주)부라다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69	남산3호터널	2019-06-04	17:01:38	47부1852	사)서울오케스트라	4,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70	남산1호터널	2019-06-04	7:04:27	47부2086	주식회사 형지리테일	8,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71	남산1호터널	2019-06-05	16:05:14	49고3183	곽근표	8,000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27번길
72	남산1호터널	2019-06-03	20:26:12	49다2657	주식회사 중문산업	8,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	남산1호터널	2019-06-04	20:56:03	50타7634	조성범	8,000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앙로
74	남산3호터널	2019-06-05	9:21:13	51부0492	문희수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6길
75	남산1호터널	2019-06-04	15:29:26	52로7627	윤준식	8,000	경기도 오산시 수택원로
76	남산1호터널	2019-06-04	16:31:36	52조3605	주식회사 이엔제이파트너스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77	남산3호터널	2019-06-04	17:19:52	52우3757	TU ANH DUC	8,000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82번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78	남산1호터널	2019-06-03	15:27:06	53나4656	(주)이더프	8,000	경기도 군포시 남산로135번길
79	남산1호터널	2019-06-03	16:44:44	53보0164	김미경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1길
80	남산1호터널	2019-06-05	15:31:41	54노9882	김광수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81	남산1호터널	2019-06-04	7:28:32	55나0984	신동섭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7길
82	남산1호터널	2019-06-04	16:04:01	55노0221	이용우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48번길
83	남산1호터널	2019-06-04	19:01:07	55호8984	이삼갑 이정훈	8,000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92번길
84	남산1호터널	2019-06-04	14:34:04	56가0920	진영환	8,000	경상남도 김해시 변호2로
85	남산1호터널	2019-06-05	20:16:49	56나5041	이진원	8,000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1길
86	남산1호터널	2019-06-07	11:03:08	56나5651	김진형	8,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87	남산3호터널	2019-06-04	12:00:33	57구7921	권미영	8,000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683번안길
88	남산1호터널	2019-06-04	10:15:48	57우0759	황영숙	8,000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89	남산1호터널	2019-06-07	15:09:50	58우1300	이현기	8,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화로
90	남산1호터널	2019-06-07	15:44:43	58오3482	백진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62길
91	남산3호터널	2019-06-07	12:51:27	59우4527	조윤진	8,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석로
92	남산1호터널	2019-06-07	18:41:06	60라0366	고빛나	8,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례로54번길
93	남산1호터널	2019-06-04	17:34:39	62부8693	오윤수	8,000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94	남산3호터널	2019-06-03	11:51:42	63보9040	김재덕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11길
95	남산1호터널	2019-06-03	12:18:28	64가4399	김성민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463번길
96	남산1호터널	2019-06-04	17:28:59	64가8673	김경민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화강대로
97	남산1호터널	2019-06-04	16:19:02	64나8344	이영숙	4,000	경상북도 구미시 선성을 서주로9길
98	남산1호터널	2019-06-05	14:37:08	64라8547	김은수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5길
99	남산3호터널	2019-06-05	13:56:15	64스9781	이상현	4,000	경기도 의왕시 내수중앙로
100	남산1호터널	2019-06-03	9:05:22	65다7614	김석현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담로139번길
101	남산3호터널	2019-06-04	17:10:51	66라6799	남현	8,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02	남산3호터널	2019-06-07	12:19:51	66로0899	최귀영	8,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북로
103	남산3호터널	2019-06-07	13:47:22	66소5784	최우규	8,000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104	남산1호터널	2019-06-05	15:14:39	68다5056	(주)티엔티푸드	8,000	경기도 광명시 청결로
105	남산3호터널	2019-06-07	12:55:54	69우0705	배태수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106	남산1호터널	2019-06-14	10:13:15	02조6370	주식회사 엠엔터테인먼트	8,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07	남산3호터널	2019-06-11	20:29:19	02주3564	안은하	8,000	경기도 양주시 교암길
108	남산1호터널	2019-06-10	12:21:37	03호5732	에이치디엑스 주식회사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09	남산3호터널	2019-06-12	14:18:02	03루4456	이현희	8,00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류구지길
110	남산1호터널	2019-06-14	10:12:55	03보1018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39길
111	남산1호터널	2019-06-13	7:57:26	04다2511	한광준	8,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18길
112	남산1호터널	2019-06-10	20:40:07	04노1371	최광희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3	남산3호터널	2019-06-12	14:20:54	05부1876	최수진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가길
114	남산1호터널	2019-06-11	17:48:47	06가4987	정진희	8,000	경기도 남양주시 미곡로57번길
115	남산1호터널	2019-06-10	10:53:01	06도7291	현대자동차(주)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흥로
116	남산3호터널	2019-06-12	16:46:02	06마5460	김덕선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1나길
117	남산1호터널	2019-06-13	10:07:09	06주5658	이태경	8,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8	남산1호터널	2019-06-13	9:33:50	07가5491	신옥정	8,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성지사로
119	남산1호터널	2019-06-12	11:00:16	07부0724	오순재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1번길
120	남산1호터널	2019-06-14	20:13:11	07구6395	서현우	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5길
121	남산1호터널	2019-06-10	15:43:17	08고3288	이연재	4,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
122	남산1호터널	2019-06-14	16:05:52	09가0507	장정영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사로
123	남산1호터널	2019-06-12	10:03:47	09다6399	이세영외1인(홍석민)	8,000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24	남산1호터널	2019-06-13	13:33:51	10보9250	(주)우신특수강	8,000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125	남산1호터널	2019-06-13	19:37:03	11보8856	오성식	8,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30길
126	남산1호터널	2019-06-14	13:52:48	12가1711	이윤문	8,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27	남산3호터널	2019-06-14	8:33:06	12로4073	김희선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28	남산3호터널	2019-06-12	7:12:29	12소7253	(주)디오나인	4,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29	남산3호터널	2019-06-14	16:55:23	13가1318	이윤복	4,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30	남산3호터널	2019-06-13	11:48:24	13다6466	김순단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3사길
131	남산3호터널	2019-06-11	18:30:28	14다1537	안상수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9길
132	남산1호터널	2019-06-13	18:16:14	14부2429	사단법인 한중국제영화제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3	남산1호터널	2019-06-10	16:43:57	14보7434	한양규	8,000	강원도 원주시 평민면 매봉길
134	남산3호터널	2019-06-10	12:14:47	16가0498	안형규	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35	남산3호터널	2019-06-10	15:14:08	17서3339	신승훈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문로
136	남산3호터널	2019-06-11	20:31:49	18서3899	남장우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37	남산1호터널	2019-06-10	14:18:03	20고8538	이준	8,000	강원도 원주시 북화로
138	남산1호터널	2019-06-10	19:49:09	22부1154	정수용	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9	남산3호터널	2019-06-11	14:46:05	22마7391	유하나	8,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40	남산1호터널	2019-06-10	19:31:36	23가0419	이성원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11길
141	남산1호터널	2019-06-10	13:58:31	23부7570	최정용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42	남산1호터널	2019-06-11	9:02:07	24구7450	최혜진	8,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43	남산1호터널	2019-06-11	11:06:46	25로3271	송양호	4,00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17길
144	남산3호터널	2019-06-12	16:41:14	26보4361	인재희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7길
145	남산1호터널	2019-06-14	11:04:25	27가5023	최연미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46	남산1호터널	2019-06-14	17:34:58	27나8842	전현옥	8,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영로
147	남산1호터널	2019-06-14	16:57:18	27부2872	김재현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48	남산1호터널	2019-06-12	19:58:43	27소5978	전석철	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49	남산1호터널	2019-06-10	13:26:08	28라5178	보건복지부	8,000	세종특별자치시 도안로
150	남산1호터널	2019-06-13	8:30:12	29부3001	명성훈	8,000	강원도 속초시 교동로
151	남산1호터널	2019-06-14	11:42:54	30보1865	이종연	8,000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152	남산3호터널	2019-06-11	12:39:58	30오2520	인승호	8,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153	남산1호터널	2019-06-10	20:18:46	32부0782	서진권	8,000	경기도 김포시 중앙로
154	남산1호터널	2019-06-12	20:20:59	33부2858	XUAN DAOZHE	8,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공도2로
155	남산1호터널	2019-06-12	20:23:53	34부0807	최영아	8,0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1번길
156	남산3호터널	2019-06-11	16:26:06	34호5341	(주)위너스엔터프라이즈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6길
157	남산1호터널	2019-06-10	10:18:36	35나3472	김병기	4,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158	남산1호터널	2019-06-14	12:39:39	35다8593	MA CHUNFENG	8,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호로
159	남산1호터널	2019-06-10	17:50:25	36부9735	주진호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60	남산3호터널	2019-06-14	14:01:22	3704837	한중섭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61	남산1호터널	2019-06-14	17:24:26	37부6203	곽지민	8,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복천길
162	남산1호터널	2019-06-10	15:26:55	38가8965	(주)뿌리메로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63	남산1호터널	2019-06-13	17:03:16	38우5094	권성수	8,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49번길
164	남산1호터널	2019-06-14	11:41:19	38다4647	민철기	8,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직로8길
165	남산3호터널	2019-06-12	16:36:47	38부0587	김미숙	8,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리임로
166	남산1호터널	2019-06-11	20:01:45	38수0132	김득영	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등대로718번길
167	남산3호터널	2019-06-10	12:48:49	39구9947	문희진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68	남산3호터널	2019-06-10	11:40:32	39라8277	GUTIERREZ ERASMO III	8,0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69	남산1호터널	2019-06-10	14:32:04	39부7441	강동우	8,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41길
170	남산1호터널	2019-06-10	12:49:24	39아8046	김보환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171	남산1호터널	2019-06-12	19:14:44	40무0692	홍원서	8,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대명대길11번길
172	남산1호터널	2019-06-12	20:52:40	42나3608	김영환	8,000	경기도 평택시 오창동길
173	남산1호터널	2019-06-13	13:12:26	42무8701	김준정	8,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제로946번길
174	남산3호터널	2019-06-14	17:06:50	42모8351	조성호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28바길
175	남산3호터널	2019-06-12	14:27:17	43구8644	이봉순	8,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4길
176	남산1호터널	2019-06-12	20:49:54	43도4727	조원아	8,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96길
177	남산1호터널	2019-06-11	9:40:56	43구3228	이아름	8,000	경기도 양주시 참성면 일영로
178	남산1호터널	2019-06-10	14:03:12	45가4683	이태선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통파교로52번길
179	남산1호터널	2019-06-11	19:37:04	45부3919	이문화	8,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경신로143번길
180	남산1호터널	2019-06-14	18:15:42	45부3201	박미애	4,00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5길
181	남산1호터널	2019-06-13	9:21:21	45우7937	최현숙	8,000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182	남산3호터널	2019-06-12	20:58:48	46누9255	알파생채-주	4,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강정로
183	남산1호터널	2019-06-14	14:10:09	46부3838	이미래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8길
184	남산1호터널	2019-06-14	18:29:19	46초9094	권영철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30길
185	남산1호터널	2019-06-11	13:15:23	47우0594	서호원	8,000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구암북16길
186	남산3호터널	2019-06-13	12:06:48	47부0171	김인아	8,000	경기도 양주시 철동산로
187	남산3호터널	2019-06-13	11:02:24	48소2422	(주)신하에프에이	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88	남산1호터널	2019-06-12	12:41:28	50도8789	김성주	8,000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재점길
189	남산1호터널	2019-06-14	19:41:06	50아4164	최수한	8,00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물3길
190	남산3호터널	2019-06-10	17:01:08	52나0453	(주)임신밸브	8,000	경기도 시흥시 옥곡서로237번길
191	남산1호터널	2019-06-14	20:56:02	53나5534	양태욱	8,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192	남산1호터널	2019-06-12	12:58:05	53부7821	김종배	8,000	울산광역시 남구 신북로
193	남산1호터널	2019-06-13	20:04:23	54부6977	박준민	8,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7길
194	남산3호터널	2019-06-10	12:17:17	55부1229	최시은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195	남산3호터널	2019-06-13	9:31:56	56다9656	이창현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6	남산1호터널	2019-06-11	15:56:19	56라4004	김혜영	8,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독주길
197	남산3호터널	2019-06-14	12:26:14	56부5580	김종희	8,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11길
198	남산1호터널	2019-06-14	15:38:32	57부1754	안재선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99	남산1호터널	2019-06-10	8:17:41	57우2557	조희정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00	남산3호터널	2019-06-10	18:31:12	57저5487	정해숙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01	남산3호터널	2019-06-11	16:36:09	57저9086	김나성	8,000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202	남산3호터널	2019-06-11	11:52:27	58우7036	류기석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193번길
203	남산1호터널	2019-06-10	9:02:25	60도0316	홍진권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3길
204	남산1호터널	2019-06-12	12:03:04	60부4146	권병찬	8,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205	남산1호터널	2019-06-12	17:41:22	61도6262	이명수	8,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설발로
206	남산1호터널	2019-06-11	19:57:59	62부1476	주식회사 한국마케팅포럼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레스트로91번길
207	남산1호터널	2019-06-11	19:00:37	62서2378	조미령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08	남산1호터널	2019-06-10	10:21:45	64부2279	차해수	8,000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585번길
209	남산3호터널	2019-06-13	13:06:25	64서1432	고경수	8,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4길
210	남산3호터널	2019-06-12	8:18:46	66부1402	전강호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12가길
211	남산1호터널	2019-06-12	16:37:00	67다8689	장정은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4길
212	남산1호터널	2019-06-14	14:59:16	68부8533	주식회사 큰소나무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릉로
213	남산1호터널	2019-06-03	14:24:50	02가1762	김나영	8,0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14	남산3호터널	2019-06-04	13:50:12	02다3344	안전한택시(주)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215	남산1호터널	2019-06-04	16:58:29	02부1331	황경옥	8,00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30번길
216	남산3호터널	2019-06-07	15:37:22	02무2085	이형문	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217	남산1호터널	2019-06-07	10:30:17	02우9251	KAINAROV KAMALDIN	8,000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창녕대로
218	남산1호터널	2019-06-05	14:54:33	04부2934	방정식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19	남산1호터널	2019-06-05	10:15:11	07다0738	권오현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0	남산1호터널	2019-06-03	14:33:29	07저3845	전다영	8,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동중앙본로7길
221	남산1호터널	2019-06-04	18:58:12	10모3596	양양금	8,000	경기도 광주시 용성길
222	남산3호터널	2019-06-07	12:19:26	11소9147	김동환	8,000	경기도 무천시 정발로
223	남산1호터널	2019-06-05	19:26:41	11부9480	박기훈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224	남산3호터널	2019-06-04	17:47:54	11조1813	(주)서진이노베이션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81길
225	남산1호터널	2019-06-05	8:46:31	12가0742	이영우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26	남산1호터널	2019-06-07	15:53:40	13우2273	홍희민	4,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18길
227	남산3호터널	2019-06-03	20:34:53	13부3629	BENTON JESSE	8,000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228	남산3호터널	2019-06-03	19:01:55	15가0492	엄익덕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통곡로
229	남산1호터널	2019-06-03	15:52:15	15다0910	(주)미소참	8,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0	남산3호터널	2019-06-04	20:42:18	15소7223	임준미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231	남산1호터널	2019-06-03	10:53:52	16부1410	정서옥	8,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88번길
232	남산3호터널	2019-06-07	19:13:13	17부2720	이두현	8,000	경기도 평택시 팽성로
233	남산1호터널	2019-06-04	11:57:20	17부6778	BAO YUXI	8,000	경기도 시흥시 죽월로
234	남산1호터널	2019-06-05	13:57:51	18고1933	김의수	8,000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235	남산3호터널	2019-06-04	18:42:55	18다3121	조아라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1길
236	남산1호터널	2019-06-04	17:34:56	18부0223	이유석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237	남산1호터널	2019-06-07	10:23:57	18소0461	김행익	4,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38	남산1호터널	2019-06-03	8:41:23	20가3582	박상재	8,000	경기도 가평군 상면 물골길
239	남산1호터널	2019-06-03	13:43:34	21부1654	법무법인(유한) 광장	8,0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40	남산3호터널	2019-06-07	13:25:00	22가8158	박현승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4길
241	남산1호터널	2019-06-03	20:53:00	22부9036	이홍희	8,000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42	남산3호터널	2019-06-03	13:37:26	23부7648	홍순정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43	남산1호터널	2019-06-05	19:50:27	23부0393	김도훈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5길
244	남산3호터널	2019-06-05	20:35:02	23부2385	이주형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사로1길
245	남산3호터널	2019-06-04	9:06:02	24나8917	심기보	8,000	경기도 시흥시 범안로
246	남산3호터널	2019-06-04	13:51:05	25우4897	지엘헤운(주)	8,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7	남산1호터널	2019-06-03	16:42:48	26더1552	신혜영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48	남산1호터널	2019-06-04	20:16:39	26모2050	노민해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9	남산1호터널	2019-06-07	13:15:15	27노7818	권민주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5길
250	남산3호터널	2019-06-07	16:54:00	27부9118	장혜원	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26길
251	남산3호터널	2019-06-05	14:08:08	28도6507	LI YONGQUAN	8,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포로78길
252	남산3호터널	2019-06-03	19:21:31	28마6930	이동성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253	남산1호터널	2019-06-07	13:37:24	28우5892	이재명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254	남산1호터널	2019-06-07	19:26:43	29모5740	이창호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255	남산1호터널	2019-06-05	13:56:30	29주1540	심명석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당로23사길
256	남산1호터널	2019-06-07	12:54:48	30거3630	김기연	8,000	강원도 강릉시 여의면 염진3길
257	남산3호터널	2019-06-07	17:47:41	30더7407	윤대영	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258	남산1호터널	2019-06-04	17:27:20	32사4715	이금성	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3길
259	남산1호터널	2019-06-07	17:17:32	34로9586	안현수	8,000	전라북도 익산시 군동로
260	남산3호터널	2019-06-04	20:07:07	34부7469	김 경란	8,0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외우로34번길
261	남산1호터널	2019-06-07	20:19:18	35부5950	김혁	4,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62	남산3호터널	2019-06-07	10:51:47	36부7270	법원행정처	4,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3	남산3호터널	2019-06-07	8:55:59	36주3599	이향연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길
264	남산3호터널	2019-06-05	11:51:09	37라9296	윤정숙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길
265	남산3호터널	2019-06-07	8:14:08	37부2654	김준영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66	남산1호터널	2019-06-07	12:07:36	38다3640	플라시보(주)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67	남산3호터널	2019-06-05	7:58:12	38도4464	이남형	8,000	경기도 군포시 주리산로
268	남산1호터널	2019-06-05	17:30:01	38조2116	노국희	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개로68번길
269	남산3호터널	2019-06-05	16:24:20	39우5967	주식회사 오성하이퍼리밍	8,000	경기도 군포시 출안로27번길
270	남산1호터널	2019-06-05	17:32:47	39도6159	도모세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4길
271	남산3호터널	2019-06-07	12:54:48	41다7117	(주)미래도시건설	8,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장골고개길
272	남산1호터널	2019-06-04	18:32:29	42우5018	강수정	8,000	경기도 남양주시 외무읍 덕소로
273	남산1호터널	2019-06-07	14:12:19	42오7411	정효섭	8,000	강원도 원주시 치정면 신지정로
274	남산3호터널	2019-06-03	20:37:49	43로0567	황기상	8,00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17길
275	남산3호터널	2019-06-03	14:15:23	46우8657	LI YONGSHOU	8,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329번길
276	남산1호터널	2019-06-07	13:41:54	46소0113	김동윤	8,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장길9번길
277	남산3호터널	2019-06-05	7:35:09	47누6608	최지수	4,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3길
278	남산1호터널	2019-06-07	8:39:38	47부6815	TOYAMA RANDOLFH	8,000	경기도 평택시 남산로26번길
279	남산1호터널	2019-06-05	13:12:31	48주3344	NGUYEN HUU TUYEN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문로30라길
280	남산3호터널	2019-06-04	16:56:55	50부3488	김광우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81	남산1호터널	2019-06-04	7:39:31	50서7359	조기호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6번길
282	남산3호터널	2019-06-07	10:51:49	51부0692	한인섭	8,000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5길
283	남산3호터널	2019-06-03	16:41:14	52도8019	김동남	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84	남산1호터널	2019-06-05	20:11:49	54부1697	차은정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촌로
285	남산1호터널	2019-06-03	11:01:41	55더7305	정재영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4길
286	남산1호터널	2019-06-07	15:18:26	55부0229	김열환	8,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287	남산1호터널	2019-06-04	10:57:26	55보3123	벽사파워(주)	8,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88	남산3호터널	2019-06-03	19:34:35	56조6539	조은희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3길
289	남산1호터널	2019-06-07	19:40:44	58우0303	양은희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90	남산1호터널	2019-06-04	19:53:52	59부0692	김준현	8,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리시범길
291	남산3호터널	2019-06-05	13:33:38	60우8209	김용재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1길
292	남산1호터널	2019-06-05	20:39:22	62보3710	김대건	8,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93	남산1호터널	2019-06-05	19:23:09	63부1743	백상진	8,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곡로
294	남산1호터널	2019-06-03	9:50:33	63부8340	이주원	8,000	경기도 안성시 금도읍 뱃골길
295	남산1호터널	2019-06-05	11:05:06	65우8839	장재연	8,000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256번길
296	남산3호터널	2019-06-05	18:52:49	66더8728	신기성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33길
297	남산1호터널	2019-06-04	12:09:06	67거3772	홍성준	8,000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298	남산3호터널	2019-06-05	20:43:02	67보3456	김훈	8,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3로
299	남산3호터널	2019-06-04	13:19:07	67더1324	이성희	8,00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300	남산1호터널	2019-06-07	11:06:05	68모2184	김은경	8,000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강정길
301	남산1호터널	2019-06-03	7:11:33	68주3137	김대성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망우로
302	남산1호터널	2019-06-05	11:39:02	69도0261	전계영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22번길
303	남산3호터널	2019-06-11	10:53:50	04노8672	신재안	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69번길
304	남산1호터널	2019-06-11	11:09:50	04다3806	임종길	4,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5	남산1호터널	2019-06-11	7:51:20	04부3694	전순숙	8,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사로
306	남산3호터널	2019-06-10	10:13:47	04우3607	이준석	4,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11길
307	남산1호터널	2019-06-11	17:09:40	05거8449	임홍주	8,000	경기도 의왕시 내소중앙2길
308	남산1호터널	2019-06-10	12:11:18	05소1745	박준영	8,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3길
309	남산1호터널	2019-06-14	13:01:50	05라4734	차정순	8,000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534번안길
310	남산3호터널	2019-06-12	7:22:09	06거7916	KHAJID ODBAATAR	8,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로
311	남산1호터널	2019-06-14	12:28:33	06라1546	LIGAI IURII	8,000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109번길
312	남산1호터널	2019-06-11	8:30:25	06서1754	이우람	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52길
313	남산1호터널	2019-06-11	12:08:38	06호4119	(주)재움씨앤씨	8,000	광주광역시 서구 봉암시흥로62번길
314	남산1호터널	2019-06-14	18:55:15	07나8274	최영현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315	남산1호터널	2019-06-12	12:57:23	08라5047	유형철	8,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316	남산3호터널	2019-06-11	17:52:39	08저2219	강영수	8,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주대로
317	남산3호터널	2019-06-13	20:55:03	11거5259	(주)지엘바이오펜드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318	남산1호터널	2019-06-13	20:50:06	11조4575	조현우	8,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서로122번길
319	남산3호터널	2019-06-11	14:17:42	12라6825	고현우	8,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양로5길
320	남산1호터널	2019-06-13	13:37:26	13부1317	크레던스인베스트먼트(주)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동로
321	남산1호터널	2019-06-14	20:40:55	14우6056	김민우	8,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322	남산1호터널	2019-06-13	9:19:48	15고7118	이효우	8,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5로
323	남산3호터널	2019-06-14	14:14:38	15라5890	최계영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324	남산3호터널	2019-06-11	13:19:41	1594705	ZHANG XIAOYU	8,000	강원도 원주시 흥안면 새동길
325	남산3호터널	2019-06-13	14:42:20	16다0750	김원태	8,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0길
326	남산1호터널	2019-06-13	10:34:04	18가2019	조부경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통전로
327	남산3호터널	2019-06-10	13:52:09	18라1387	박영석	8,000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원로서7길
328	남산3호터널	2019-06-10	9:54:58	18초7243	김현학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329	남산1호터널	2019-06-11	15:44:33	19저7069	양해원	4,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30	남산3호터널	2019-06-12	20:44:06	23다1049	안승재	4,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주길
331	남산1호터널	2019-06-12	7:45:10	23부0462	이종원	4,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3길
332	남산1호터널	2019-06-14	16:19:06	24구3293	김희진	8,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음성대로592번길
333	남산1호터널	2019-06-12	12:45:42	27도5883	최송이	8,00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517번길
334	남산1호터널	2019-06-14	20:17:28	27호5775	이병선	8,000	경상북도 김천시 노성고개3길
335	남산3호터널	2019-06-13	16:22:51	27저9035	박은수	4,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336	남산1호터널	2019-06-10	16:43:25	28라5178	보건복지부	8,0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337	남산3호터널	2019-06-14	16:37:29	29라9449	이준영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3길
338	남산3호터널	2019-06-11	12:16:36	30소6925	백수원	8,000	강원도 원주시 유문1길
339	남산3호터널	2019-06-10	20:57:32	31부3157	이순영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340	남산1호터널	2019-06-14	20:50:57	34다4395	정태인	8,000	경기도 수원시 연동구 도정로17번길
341	남산1호터널	2019-06-11	11:50:10	34로2416	김희운	8,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7길
342	남산1호터널	2019-06-13	19:44:34	34부2879	김도훈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8길
343	남산3호터널	2019-06-12	17:58:41	35다5228	BERARD CHRISTOPHE	4,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7길
344	남산3호터널	2019-06-11	20:54:52	35다8675	강지영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마로
345	남산3호터널	2019-06-11	20:42:52	35부5156	황재욱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46	남산1호터널	2019-06-14	18:39:30	35초8668	김지현	8,000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원로서6길
347	남산1호터널	2019-06-11	7:06:03	36가7037	박도연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34번길
348	남산3호터널	2019-06-10	13:33:56	36라6442	신형철	8,000	경기도 시흥시 목감남사로
349	남산3호터널	2019-06-10	10:47:13	37가0275	신진희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5길
350	남산3호터널	2019-06-12	17:18:23	37부1799	김기수	8,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59번길
351	남산1호터널	2019-06-10	16:12:01	37소3100	(주)청산물산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52	남산3호터널	2019-06-13	12:06:57	39다6954	김기환	8,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정로
353	남산1호터널	2019-06-11	7:20:22	39부6199	YIN DASHUN	8,000	경기도 시흥시 중성삼가로
354	남산1호터널	2019-06-14	19:34:35	39초3390	전세원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들터로4길
355	남산1호터널	2019-06-11	18:37:34	39주8653	배정필	8,000	경기도 광주시 조월읍 무갑길141번길
356	남산3호터널	2019-06-10	8:06:49	40다9358	YIN DONGXU	8,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대리로46번길
357	남산1호터널	2019-06-14	11:05:12	40아5325	이은숙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라길
358	남산1호터널	2019-06-11	11:28:02	41구1886	김지석	8,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59	남산1호터널	2019-06-11	17:35:25	42구3707	이신우	8,00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223번길
360	남산1호터널	2019-06-12	7:18:41	42로5631	민영남	8,000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361	남산3호터널	2019-06-12	10:47:24	43부0565	박정호	8,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6번길
362	남산3호터널	2019-06-10	7:01:24	43부9706	유진열씨(주)	4,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원로
363	남산3호터널	2019-06-10	15:43:34	45호2220	김철길	8,00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364	남산1호터널	2019-06-12	19:13:04	46가1888	채민규	8,000	전라북도 군산시 경주3길
365	남산1호터널	2019-06-13	15:37:59	47호4646	주식회사 알렉스필러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66	남산3호터널	2019-06-14	20:11:21	48라9983	정기택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67	남산1호터널	2019-06-13	19:45:17	49다2875	박진호	8,000	경기도 평택시 현충5길
368	남산3호터널	2019-06-14	15:07:29	50부2383	김용배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석고분로48나길
369	남산1호터널	2019-06-11	18:27:21	52고2375	김종관	8,000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370	남산1호터널	2019-06-10	18:31:23	52부8979	조남공	8,000	대전광역시 중구 테미로
371	남산1호터널	2019-06-10	12:01:50	52초4908	최준원	8,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로
372	남산1호터널	2019-06-10	20:31:41	53저8306	안은재	4,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통백5로
373	남산1호터널	2019-06-12	19:22:05	55부3539	김진희	4,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성로8길
374	남산3호터널	2019-06-14	12:21:52	55부3175	배은자	8,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75	남산3호터널	2019-06-12	11:05:39	56가6902	이승리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376	남산3호터널	2019-06-11	17:31:52	56도4811	원순덕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377	남산3호터널	2019-06-11	17:27:54	56호0774	박정은	8,000	경기도 부천시 성지로
378	남산3호터널	2019-06-14	17:09:23	56저9383	최영호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379	남산1호터널	2019-06-14	18:31:20	58가6339	김우환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380	남산1호터널	2019-06-12	8:44:03	58저4484	KIM VASILYI	8,00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사8길
381	남산1호터널	2019-06-13	10:40:37	59부1837	김미덕	4,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8길
382	남산1호터널	2019-06-12	9:50:01	60부0673	최창류	8,00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대하로
383	남산1호터널	2019-06-13	12:59:48	60도5035	(주)브이이엔비스트먼트	8,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4	남산3호터널	2019-06-12	18:46:26	60도5035	(주)브이이엔비스트먼트	8,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5	남산3호터널	2019-06-11	20:19:42	60초5837	황현아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6	남산3호터널	2019-06-12	18:08:28	61가1214	이동규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7	남산1호터널	2019-06-13	13:18:07	62부7616	김용우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문로
388	남산1호터널	2019-06-13	12:40:22	62고7305	박인영	8,000	경기도 시흥시 합송로29번길
389	남산3호터널	2019-06-11	9:09:02	63부5963	정창호	4,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
390	남산1호터널	2019-06-12	9:47:36	63부7987	전찬호	8,000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391	남산3호터널	2019-06-13	11:06:02	64부4396	박인수	8,0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392	남산1호터널	2019-06-10	18:57:07	64호8754	김광덕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길
393	남산3호터널	2019-06-10	7:14:14	65호2817	고영우	8,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81번길
394	남산1호터널	2019-06-14	19:21:10	65부2632	조은덕	8,000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11번길
395	남산1호터널	2019-06-10	20:25:02	66가3276	PUREVSUREN MUNKHTOGOO	8,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396	남산1호터널	2019-06-11	10:57:40	66도9018	배명희	8,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397	남산1호터널	2019-06-11	16:28:20	66부1461	임다연	8,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9길
398	남산1호터널	2019-06-10	7:18:24	67라1281	권진희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5길
399	남산1호터널	2019-06-14	13:47:45	68부6040	(주)오솔파이오	8,00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북로
400	남산1호터널	2019-06-10	15:12:16	68부2224	이미경	4,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석고분로27길
401	남산1호터널	2019-06-11	11:06:18	68부3435	오경서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청동길
402	남산1호터널	2019-06-07	20:43:59	32구1072	권영득	4,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병암3길
403	남산1호터널	2019-06-14	12:35:11	31로0926	김기양	4,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04	남산1호터널	2019-06-04	18:19:19	30라0815	최영실	8,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405	남산1호터널	2019-06-05	20:00:24	05가4577	이명란	8,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정로
406	남산1호터널	2019-06-07	7:28:10	05도1095	신미정외인(박동현)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88번길
407	남산1호터널	2019-06-07	16:26:33	49보4799	주식회사 서희씨앤씨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408	남산1호터널	2019-06-11	11:38:02	15도5143	유희준	8,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창로
409	남산3호터널	2019-06-04	18:34:23	67보5818	정아름	8,000	인천광역시 서구 김수로142번길
410	남산3호터널	2019-06-10	19:16:46	19여4287	주식회사 신성컴퍼니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초길
411	남산3호터널	2019-06-12	14:12:33	40소3120	케이이티솔루션 주식회사	8,00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노유1로
412	남산1호터널	2019-06-14	10:44:57	04가8625	문규석	8,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13	남산1호터널	2019-06-14	14:20:37	31오8165	이주원	8,000	대전광역시 중구 당기로36번길
414	남산1호터널	2019-06-07	17:06:37	47저7495	정현중	8,000	경기도 부천시 부광로15번길
415	남산1호터널	2019-06-11	17:18:41	62고2089	이준	8,00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4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71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납부통지서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에 의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납부통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불임>
4. 이의제기 안내
 -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이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나.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다. 이의 제기 방법
 - 인터넷 : www.sisul.or.kr 접속 후 교통사업 → 기타교통업무 → 혼잡통행료 징수 → 혼잡통행료 이의제기 클릭·작성
 -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불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대상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	남산3호터널	2019-01-03	18:17:15	14소3924	맘스(서지영)	10,300	서울 서초구 효령로31길
2	남산1호터널	2019-01-02	16:07:47	29하1126	이선호	10,300	경기 파주시 평화로348번길
3	남산1호터널	2019-01-09	13:18:27	49호2215	방준형	10,300	서울 마포구 연리동
4	남산3호터널	2019-01-09	7:18:02	68가8513	추희영	10,3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	남산3호터널	2019-01-02	18:15:33	64호2424	김미미	10,300	부산시 금사동 추곡진로
6	남산1호터널	2019-01-07	17:21:55	68호3219	주식회사 픽업	10,300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남산3호터널	2019-01-09	16:17:39	52하3930	김규남	10,3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8	남산3호터널	2019-01-14	9:35:00	58하6416	폴코스(민재민)	10,300	서울 정동구 동일로
9	남산1호터널	2019-01-22	9:39:03	16부8812	(주)서우	10,3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10	남산1호터널	2019-01-22	15:29:13	64하7288	홍두표	10,300	강원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317번길
11	남산3호터널	2019-01-18	14:15:33	66호2515	김기훈	10,300	서울시 관악구 봉암2길
12	남산3호터널	2019-01-24	20:05:23	21호8860	김경호(복수외나무)	10,3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13	남산1호터널	2019-01-31	8:12:29	50도0611	(주)에서빌	10,3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	남산3호터널	2019-01-29	17:23:47	63하4808	HAN JENNY	10,300	서울 중구 삼인대로
15	남산3호터널	2019-01-25	15:54:37	65호1079	YIN YI	10,3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2길
16	남산1호터널	2019-01-29	20:30:15	67하7898	대한저선(주)(최진용)	10,300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17	남산3호터널	2019-01-17	10:24:34	04호1032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	10,300	경기 부천시 신흥로

연번	요급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8	남산3호터널	2019-01-22	10:05:47	14하8978	양석봉	10,300	서울시 중구 후암로
19	남산3호터널	2019-01-17	20:05:10	18하0128	웜지컬디자인스튜디오(박정환)	10,300	서울시 중구 다산로32길
20	남산3호터널	2019-01-16	16:06:07	20하8155	박진성	10,30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1	남산3호터널	2019-01-21	15:34:33	33나0248	티 플레이트(서준영)	10,300	서울시 중구 소공로
22	남산3호터널	2019-01-22	20:14:05	52하3887	SHIOZUKA YOSHIHIRO	10,300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3	남산3호터널	2019-01-23	12:51:22	52하8504	송하솔	10,300	서울시 마포구 소계정로12길
24	남산3호터널	2019-01-18	14:22:38	56하9155	조명호	10,300	서울시 중구 평창동 평창36길
25	남산3호터널	2019-01-23	18:55:34	67호3053	(주)퀵즈	10,300	제주 제주시 죽천사길
26	남산3호터널	2019-01-22	20:57:43	68호9677	이원성	10,300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시월로
27	남산3호터널	2019-01-28	17:01:56	44호4602	이일주	5,150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8	남산3호터널	2019-01-24	20:53:31	46하9680	대성건설(주)	10,3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중학교길
29	남산3호터널	2019-01-24	10:31:10	58투2018	임형준	10,3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	남산3호터널	2019-01-31	20:45:01	63하6105	송인서	10,300	인천 남동구 예고중앙로
31	남산3호터널	2019-01-24	17:43:28	66하8108	화답디자인(이한주)	10,300	경기 광주시 중앙로346번길
32	남산3호터널	2019-01-21	10:50:15	54하9708	주식회사 더에스와이지연구원(이성운)	10,3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	남산3호터널	2019-01-21	15:55:31	02하5545	신연서	10,30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34	남산3호터널	2019-01-21	20:16:54	04호8416	(주)디앤씨팩토리	10,3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정정동원4길
35	남산3호터널	2019-02-12	12:42:04	04호4793	주식회사 네오랩	10,300	서울 강서구 양천로67길
36	남산3호터널	2019-02-08	15:08:45	09하9126	ZHANG ZHE	10,30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15길
37	남산3호터널	2019-02-08	18:14:25	34하9137	우성인	10,300	서울 강남구 자곡로3길
38	남산3호터널	2019-02-11	19:11:53	37호8207	CAI XINNAN	10,30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974길
39	남산3호터널	2019-02-15	10:44:17	39호2494	에이스하우스 주식회사	10,300	서울 중랑구 망우로
40	남산3호터널	2019-02-14	13:49:02	45호4454	최수진	10,300	서울 강북구 숲메트로41길
41	남산3호터널	2019-02-14	12:13:06	63호3896	(주)엘케이토탈공조	10,3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2	남산3호터널	2019-02-12	20:38:09	69하3740	세훈(이준재)	10,300	서울 동대문구 전동로29길
43	남산3호터널	2019-02-13	15:39:31	01하1144	우인경	10,300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4	남산3호터널	2019-02-15	13:51:29	04하5809	성은주	10,300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45	남산3호터널	2019-02-14	10:35:05	12호4777	이현정	10,300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4길
46	남산3호터널	2019-02-11	17:57:50	18하8000	ROGERS PAUL JAMES	10,300	서울 서초구 심판대로
47	남산3호터널	2019-02-14	7:04:17	20호6781	최미미	10,30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48	남산3호터널	2019-02-11	18:15:34	29호5565	(주)엘에이지알티미디어션즈	10,300	서울 중문구 장경대로
49	남산3호터널	2019-02-13	18:02:00	37호1489	(주)클라우드게이트	10,300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	남산3호터널	2019-02-01	17:50:20	39호2061	주식회사 디자인스틸	10,300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51	남산3호터널	2019-02-14	20:13:24	39호2494	에이스하우스 주식회사	10,300	서울 중랑구 망우로
52	남산3호터널	2019-02-08	15:37:34	45호8271	LIU JUN	10,300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41길
53	남산3호터널	2019-02-13	7:11:08	51호9823	(주)밸리브	10,300	서울 중구 세종대로18길
54	남산3호터널	2019-02-15	16:11:11	56호2045	주식회사 우리기술미래	5,150	서울 금천구 독산로
55	남산3호터널	2019-02-13	15:54:20	57호3008	(주)제이알인더스트리	10,300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56	남산3호터널	2019-02-15	10:20:12	63호3896	(주)엘케이토탈공조	10,3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7	남산3호터널	2019-02-13	20:53:10	51호2579	주식회사 동해인터내셔널	10,300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80호

공인중개사법 위반 자격정지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 위반한 자에게 자격취소 처분을 알렸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인중개사법 위반 자격정지 처분 알림
2. 공고기간 : 2019.9.18. ~ 2019.10.2.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4.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5.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서울행정법원
6. 공고대상

연번	성명	주 소	처분내용 (취부일)
1	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11, 105-705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2019.6.18.)
2	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36, 110-708	(2019.6.19.)
3	김○○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2안길39	(2019.7.26.)
4	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808	(2019.7.26.)
5	황○○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2길63, 101-1202	(2019.8.22.)

7.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 2133-4676

구 고 시

◆ 성동구고시 제2019-8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성 동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가.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	15.7~ 18.0	집산 도로	97	금호동4가 1389-1	금호동4가 1440-1	일반 도로	-	-	장터길

나. 결정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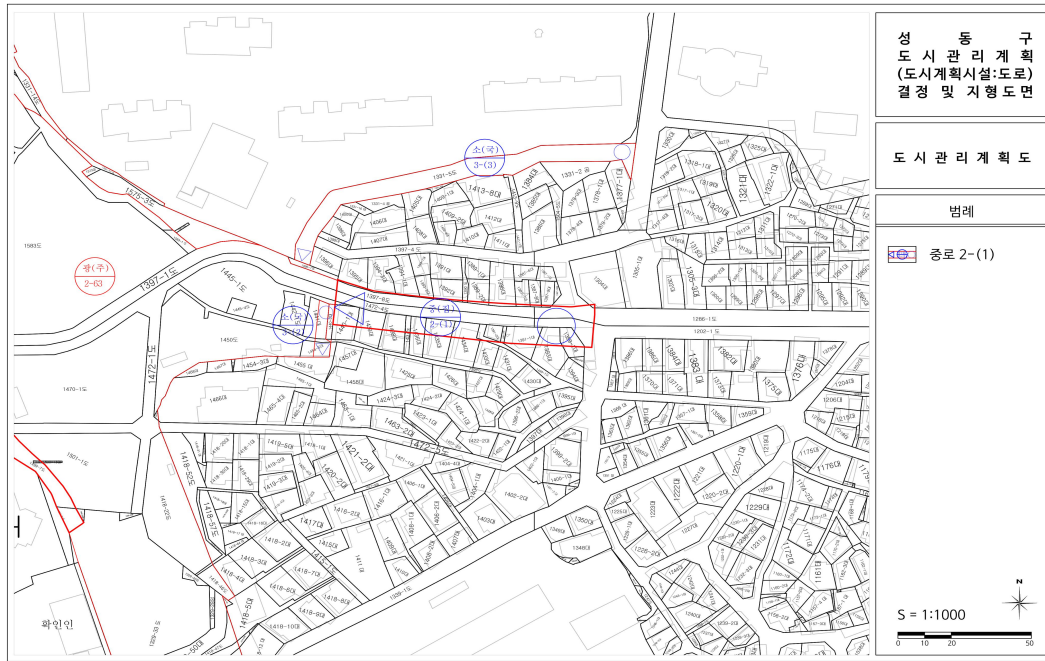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2-(1)	- 도로 신설 - 연장 : 97m - 폭원 : 15.7~18.0m	교통혼잡 및 보행환경 열악한 장터길 도로폭을 확장하여 교통불편 해소

2. 결정도 및 지형도: 별첨

※ 게재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2286-555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합니다.



※ 게재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서대문구고시 제2019-13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2181호(1966.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8호(2016.6.9.)로 최종 변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78호(2015.3.19.)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백련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19-594호(2019.5.30.)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며,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9월 19일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2 등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보상사업

다. 사업의 면적 : 10,482㎡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10,482㎡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 2021. 12. 3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별도첨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02-330-1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사업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보상사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3필지	47,187	10,482							
홍은동 산11-2	임야	44,237	8,509	1	재단법인*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	-	-	-	-
홍은동 311	대지	473	473	1	재단법인*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	-	-	-	-
홍은동 산26-134	임야	2,477	1,500	1	학교법인*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	중부 세무서	서울시 중구 소공로 **	압류	-

◆ 마포구고시 제2019-136호

**도시관리계획(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1호(2017.6.15.)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마포구 아현동 275-2번지의 8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마 포 구 청 장

1. 변경 결정 취지

- 아현동 275-2번지 일대 블록단위의 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275-10번지를 추가로 공동 개발(권장)로 계획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중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구분	위치		대지면적(㎡)	세부사항		비고
SR-5	기정	아현동	275-4	152.1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 권장	-
		아현동	275-2	3,205.0			
		아현동	275-7	9.9			
		아현동	275-8	82.6			
		아현동	275-3	79.3			
		아현동	275-6	109.4			
		아현동	275-1	175.5	-		
		아현동	275-10	119.0	개별필지		

가구번호	구분	위치		대지면적(㎡)	세부사항		비고
SR-5	변경	아현동	275-4	152.1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 권장	기존 275-7(9.9㎡) 변경(토지분할) 275-7(1.0㎡), 275-11(8.9㎡)
		아현동	275-2	3,205.0			
		아현동	275-7	1.0			
		아현동	275-11	8.9			
		아현동	275-8	82.6			
		아현동	275-3	79.3			
		아현동	275-6	109.4			
		아현동	275-1	175.5	공동개발 권장		
		아현동	275-10	1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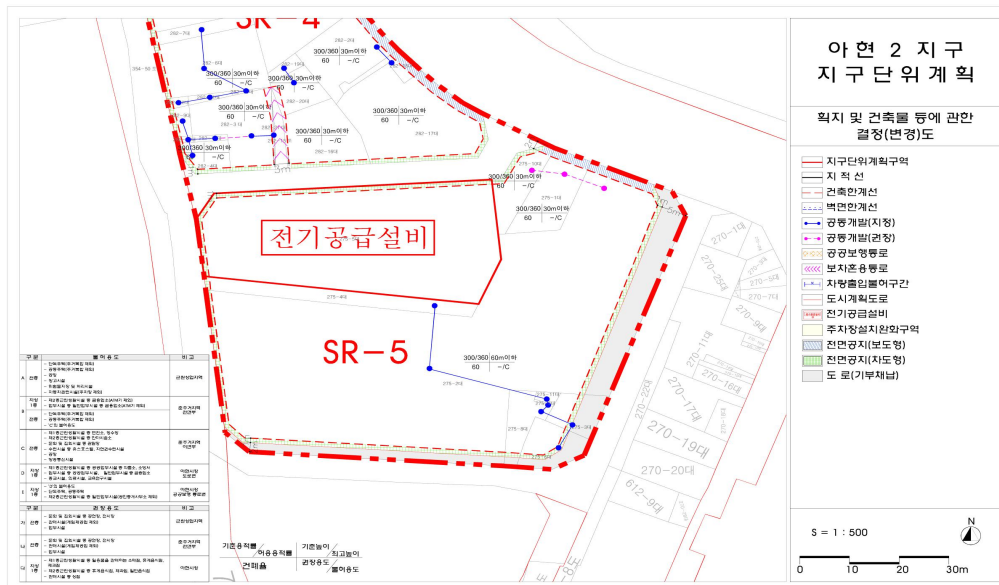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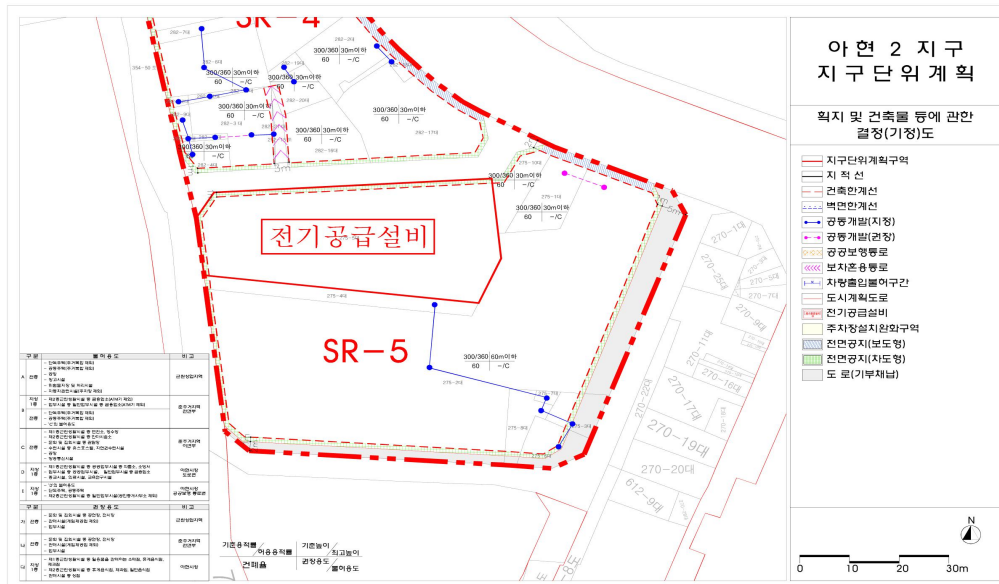
-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3. 관계도면 : 첨부 지형도면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임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7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 마포구고시 제2019-137호

도시관리계획(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8호(2010.07.15.)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소로1-12)에 대한 결정내용과 결정도가 상이하여 결정도를 정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마 포 구 청 장

1. 변경결정 사유

- 도시기반시설(소로1-12)에 대한 결정내용과 결정도가 상이하여 결정도 정정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고시 제2010-268호(2010. 7. 15.)] 당시 “남측 진입부측 보도 신설로 2m 도로 확장(남측진입부 일부 확장)”을 위하여 도로를 8m ⇒ 10m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변경결정하였으나 결정도에는 각각부분이 약 0.7m로 표시되어 있어 결정내용과 일치하게 2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를 수정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조서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중 “도로 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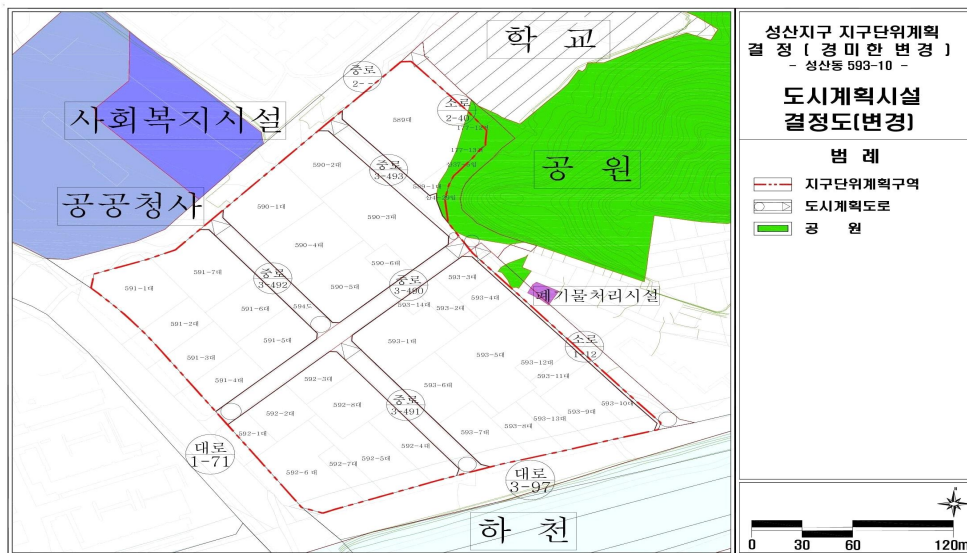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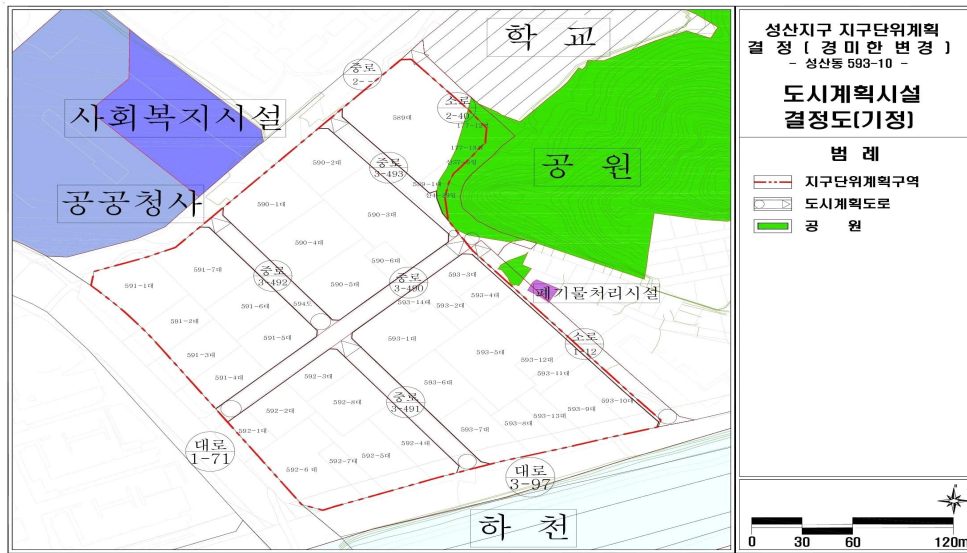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3	490	12	집산 도로	194	마포구 성산동 592-1	마포구 성산동 593-3	일반 도로			
중로	3	491	12	집산 도로	124	마포구 성산동 593-7	마포구 성산동 593-1	일반 도로			
중로	3	492	12	집산 도로	109	마포구 성산동 591-5	마포구 성산동 591-7	일반 도로			
중로	3	493	12	집산 도로	117	마포구 성산동 590-3	마포구 성산동 590-2	일반 도로			
소로	2	40	8	집산 도로	166	마포구 성산동 364-1	마포구 성산동 365-7	일반 도로			
소로	1	12	10	집산 도로	175	마포구 성산동 198-4	마포구 성산동 364-1	일반 도로			결정도 수정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3. 관계도면은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변경)결정도



◆ 강서구고시 제2019-114호

도시계획시설(개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2차)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59호(2004.11.15.)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개화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개화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산34번지

다. 사업의규모 : 7,000㎡(분묘 9기 등)

라.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 및 물건보상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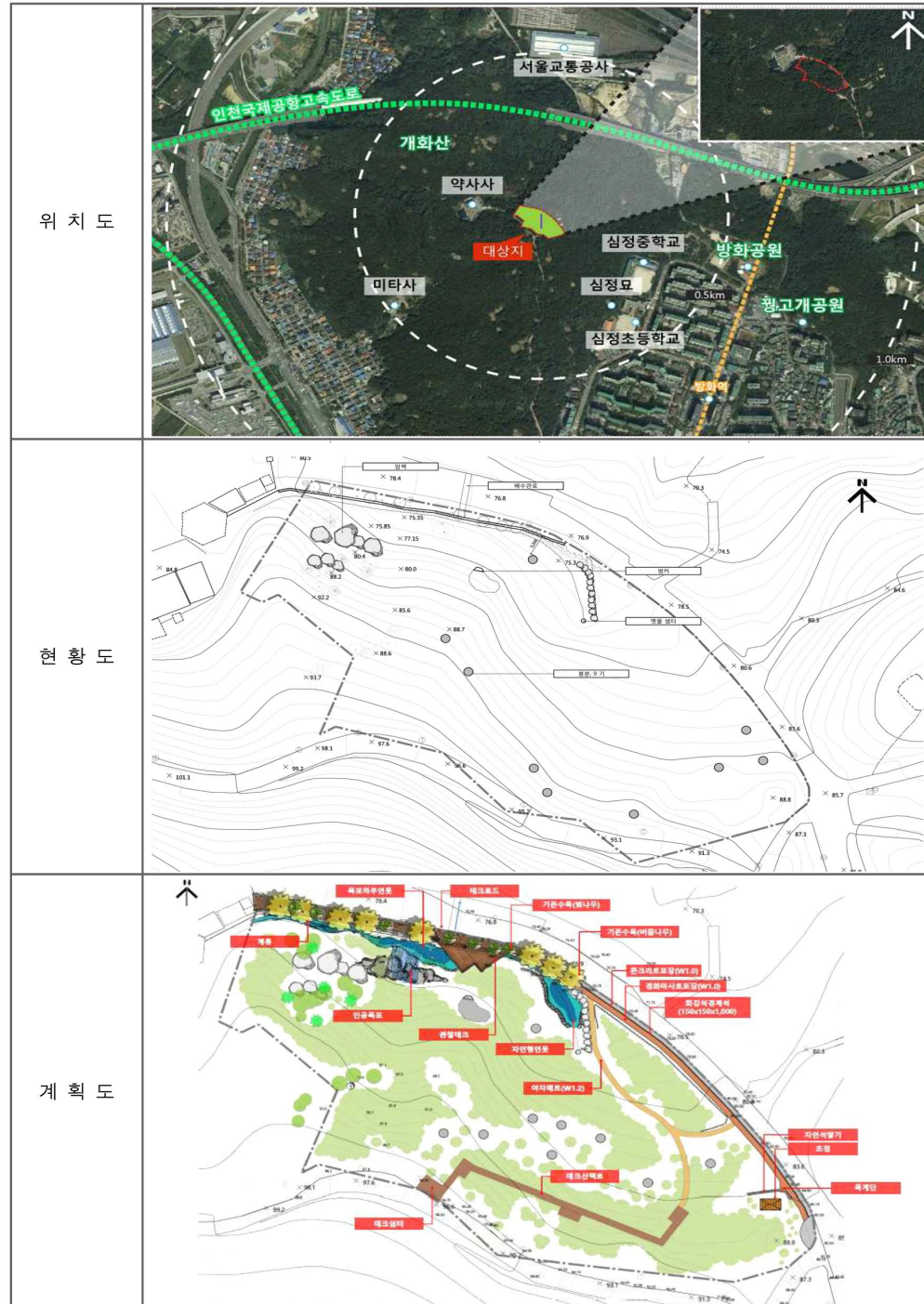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도첨부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사 업 명 : 개화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및 구조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계		분묘9							
1	강서구 개화동 산34	분묘	1기	서인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금곡로 149				
2	강서구 개화동 산34	분묘	1기	김창옥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 8길 88, 504호				
3	강서구 개화동 산34	분묘	1기	노희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7길 15-15, 다동 502호				
4	강서구 개화동 산34	분묘	1기	노희열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478번길 14, 103동 202호				
5	강서구 개화동 산34	분묘	1기	윤호중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76번길 90, 210호				
6	강서구 개화동 산34	분묘	1기	김병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 25길 34, D동 101호				
7	강서구 개화동 산34	분묘	1기	경돈섭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18, 4113동 1202호				
8	강서구 개화동 산34	분묘	2기	고종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천수로24번길 5				

□ 위치도 및 계획도



※ 상기 계획도는 기본계획(안)으로 공원조성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구로구고시 제2019-16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구로구고시 제2019-46호(2019.3.7)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마길 19-3 일대 『가리봉 구(舊) 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을 시행하고자,
2. 구로구공고 제2019-1089호(2019.7.11.)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19-3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가리봉 구(舊)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다. 사업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3,708.2㎡, 지하 1층 ~ 지하3층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재생과(☎860-3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계			3,708.2					
1	가리봉동 126-20	대	207.9	207.9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 5동 1602호(신대방동, 우성아파트)	박○옥	1/2		
2					인천 강화군 내기면 해안서로918번길 9-21	박○옥	1/2		
3	가리봉동 126-21	대	56.9	56.9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30길 12, 102동 601호(불천 우성아파트)	윤○석	1/1		
4	가리봉동 126-22	도	89.6	89.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53번길 6, 1409동	김○철	1/1		
5	가리봉동 126-23	대	175.9	175.9	1003호(한빛마을레미안아파트4단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391, 101동 1604호(대림동문영컨터빌아파트)	박○의	1/1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7, 1107동 1702호(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김○경	6.610 /139.2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119, 105동 2006호(인천계양교아루센트럴파크)	방○경	6.610 /139.2		
8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528번길 7-2, 4동 402호(삼성출타운)	김○옥	6.610 /139.2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77, 1802동 203호(햇빛마을)	백○자	6.610 /139.2		
10	가리봉동 126-24	대	139.2	139.2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로 16, 201동 103호(이편한세상대전2차)	정○봉	6.610 /139.2		
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1로 7, 503동 403호(위시티일산블루밍5단지)	정○양	6.610 /139.2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27, 101동 1201호(대림역대성스카이렉스)	김○식	6.610 /139.2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185, 803호(로즈그린타운)	고○숙	6.610 /139.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4	가리봉동 126-24	대	139.2	139.2	제○○임주○ ○사	남양주시 별내3로 115, 2807동 901호(더샵아파트)	46.660 /139.2	김○희 김○철 이○진 백○현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도봉구	근저당	
15					김○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B동 1408호(수정아파트)	6.610 /139.2				
16					이○옥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90-11(필동 27가)	6.610 /139.2	김 ○	경기도 남양주시	근저당	
17					박○창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동로 40, 101동 1007호(한국아파트)	6.610 /139.2				
18					오○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54	6.610 /139.2				
19					한○훈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영화6길 1	6.610 /139.2				
20					심○자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64번길 36, 302호(현대드림타운)	6.610 /139.2				
21					김○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2길 13	100.833 /126.9				
22					제○○염 주○○사	남양주시 별내3로 115, 2807동 901호(더샵아파트)	26.067 /126.9	김○희 김○철 이○진 백○현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도봉구	근저당	
23	가리봉동 126-26	도	68.1	68.1	주○○사 헤○○임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 146, 202호(마전동, 리더스빌)	1/2				
24	가리봉동 126-29	도	82.0	82.0	황○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25, 116동 304호(신리마을상록아파트)	1/2				
					주○○사 헤○○임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 146, 202호(마전동, 리더스빌)	1/2				
					황○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25, 116동 304호(신리마을상록아파트)	1/2				
25	가리봉동 126-30	도	30.7	30.7	김○석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용은길23	1/1				
26	가리봉동 126-31	대	216.2	216.2	김○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9길 26, 109동 1002호(고덕 아이파크)	1/1				
27	가리봉동 126-32	대	114.7	114.7	박○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39번길 34, 214동 802호(송곡노타움)	1/1	중○○업은행	서울시 중구	근저당 지상권	
28	가리봉동 126-33	도	32.1	32.1	김○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9길 26, 109동 1002호(고덕 아이파크)	1/1				
29	가리봉동 126-34	도	62.8	62.8	강○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70, 219동 102호(송도웰카운티2단지 아파트)	1/1	주식회사신○ ○행	서울시 중구	근저당 지상권	

입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30	가리봉동 126-35	대	87.3	87.3	박○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영로 38번길 34, 214동 802호(조공뉴타운)	1/1	중○○업은행	서울시 중구	근저당 지상권	
31	가리봉동 126-37	대	274.0	274.0	강○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70, 219동 102호(송도힐카운티2단지 아파트)	1/1	주식회사신○○ 병	서울시 중구	근저당 지상권	
32					류○옥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40, 809동 1302호(신분동, 수리아파트)	66.116 /1773.3				
33					류○숙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94번길 12, 203동 901호(부영아파트)	66.116 /1773.3				
34					류○희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16번길 27-1(우두동)	66.116 /1773.3				
35					이○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백성길 49-2	2.310 /591.1				
36					이○희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 362, B01호(동심빌라)	2.310 /591.1				
37					장○형	경기도 광명시 철산4동 464-24	2.310 /591.1				
38					정○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3길 28	2.310 /591.1				
39					박○숙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탑골길 86-22	2.310 /591.1				
40					김○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전진오남로580번길 5-12, 102동1109호(대하아파트)	6.930 /591.1				
41	가리봉동 126-38	대	591.1	591.1	전○웅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로 80, 611동 1204호(해들마을6단지)	3.305 /591.1				
42					전○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1길 27	13.225 /591.1				
43					이○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70-8, 201동 401호(범양대아파트)	15.372 /591.1				
44					최○실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759, 백련산 힐스테이트 1차 114동 1103호	8.920 /591.1				
45					이○숙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457번길 77	3.305 /591.1				
46					도○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36길 73, 에프동 104호(시흥동, 대흥빌라)	6.610 /591.1				
47					이○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15	3.305 /591.1				
48					이○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22-20	3.305 /591.1				
49					김○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19길 23	2.310 /591.1				
50					이○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8길 24	3.305 /591.1				
51					김○수	서울 성동구 군자동 45-13	4.140 /59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표면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및내용	
52	가리봉동 126-38	대	591.1	591.1	박○영	경기도 양주시 교양길 354, 516동 201호(범우마을)	2.040 /591.1				
53					조○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4길 19	6.610 /591.1				
54					유○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24-10, 2동 410호(반도아파트)	16.525 /591.1				
55					조○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길 6-83, 2동 707호(삼환도봉아파트)	2.100 /591.1	김○화	경기도 의정부시	근저당	
56					고○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185, 803호(로즈그린타운)	3.300 /591.1				
57					한○숙	강원도 춘천시 도화길 11-3	16.500 /591.1	홍○일	서울시 영등포구	근저당	
58					이○우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가평로 109-19	3.305 /591.1				
59					윤○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48, 410동 802호(엑스포 아파트)	6.610 /591.1				
60					한○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26길 69-10, 202호(네오벨리)	6.610 /591.1				
61					최○학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392번가길 30, 302호(엘지드림타운)	6.610 /591.1				
62					박○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23-12, 302호	6.610 /591.1				
63					채○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73, 2004동 2005호(삼송2차아파트)	2.997 /591.1				
64					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13길 38	2.040 /591.1				
65					음○경	경기도 광주시 태불로 86, 106동 1501호(광주태전동우림플류)	6.610 /591.1				
66					전○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93, 107동 1106호(신도림태영타운)	6.610 /591.1				
67					안○원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202동 1603호(참이슬아파트)	3.300 /591.1				
68					조○예	경기도 광명시 서원로 25, 204동 1206호(광명역세권 휴먼시아)	3.305 /591.1				
69					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7, 1107동 1702호(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6.610 /591.1				
70					박○숙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166, 1702동 1305호(복사골)	3.305 /591.1				
71					박○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64	3.305 /59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72	가리봉동 126-38	대	591.1	591.1	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69길 41, 101동 1202호 (동구해살아파트)	2.100 /591.1				
73					고○석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60, 104동 501호(미사강변2차 푸르지오)	4.620 /591.1				
74					김○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16, 102동 1002호(테헤란아이파크)	137 /591.1				
75					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16, 102동 1002호(테헤란아이파크)	123.520 /591.1				
76					김○열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620번길 1, 1동 303호(금강맨션)	2.470 /591.1				
77					김○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10, 104동 1707호(독립문삼아파트)	2.070 /591.1				
78					김○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월인제로 59, 31동 507호(월인2차아파트)	2.070 /591.1				
79					강○석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10번길 4-1	0.835 /591.1	권○경	경기도 부천시	근저당	
80					김○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55길 62, 804동 901호(주공아파트)	1.155 /591.1				
81					김○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76, 6107동 901호(광교현대해살아파트)	1.155 /591.1				
82	가리봉동 126-39	대	549.8	549.8	김○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통천로 153번길 6, 1409동 1003호(한빛마을래미안아파트4단지)	27.670 /591.1				
83					민○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6길 21-6	3.305 /591.1				
84					이○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사로 147, 5동 606호(미주아파트)	16.530 /591.1				
85					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3길 81	3.305 /549.8				
86					이○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웃말2안길 37, 402호	3.305 /549.8				
87					나○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632번길 39-1	3.305 /549.8				
88					오○순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214번길 32, 1동 206호(삼성아파트)	3.305 /549.8				
89					이○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54, 706동 1303호(강남마을계룡리슈빌)	3.305 /549.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90	가리봉동 126-39	대	549.8	549.8	전○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1길 27	6.600 /549.8				
91					이○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중무로 170-8, 201동 401호(범양마더빌아파트)	3.655 /549.8				
92					김○섭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곡1길 17-9	3.305 /549.8				
93					이○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51길 13	6.610 /549.8				
94					김○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5, 404동 1701호(위시티일산자이4단지)	305.880 /549.8				
95					조○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537다길 15, 301호	203.920 /549.8				
96					원○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9길 56, 101동 1402호(가산동, 삼익아파트)	3.305 /549.8				
97					소○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진로 183, 102동 606호(당산 SH VILLE)	0.005 /621.5				
98					정○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6가길 7, 302호(노보빌)	390 /621.5				
99					이○숙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457번길 77	2.150 /621.5				
100	가리봉동 126-40	대	621.5	621.5	최○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8길 27	2.310 /621.5				
101					정○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5길 10-7 2층	2.640 /621.5				
102					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76, 1604호(썬티월드)	3.305 /621.5				
103					한○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6-40 시정아파트 비동 309호	9.920 /621.5				
104					윤○택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2길 74, 4층	2.640 /621.5				
105					박○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588번길 34, 50동 505호(주공아파트)	2.640 /621.5				
106					유○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24-10, 2동 410호(반도아파트)	6.610 /621.5				
107					이○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65, 701호(서강주상복합아파트)	3.305 /621.5				
108					이○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8길 24	2.150 /621.5				
109					고○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35, 126동 1401호(비산섬생래미안아파트)	6.610 /621.5				
110					서○호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143,, 301동1109호(대림레한세상)	3.305 /621.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11					윤○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60번길 30-23, 101호(조아그린빌라)	3.305 /621.5				
112					박○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촌5길 22	2.640 /621.5				
113					이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 17, 105동 1403호(용인보정꿈에그린)	2.640 /621.5				
114					이○순	서울특별시 중로구 장경궁로33길 45-15, A동 301호	2.640 /621.5				
115					이○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4번길 19-23, 103동 1301호(신원당마을)	2.640 /621.5				
116					선○정	서울특별시 중파구 중이로34길 27-1, 201호	2.640 /621.5				
117					최○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물안산길 115	9.240 /621.5				
118					박○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10, 15동 501호(동성아파트)	17.530 /621.5				
119	가리봉동 126-40	대	621.5	621.5	채○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73, 2004동 2005호(삼송2차아파트)	9.915 /621.5				
120					유○순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3길 15	5.280 /621.5				
121					최○금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3길 244	6.610 /621.5				
122					안○원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202동 1603호(참이슬아파트)	6.610 /621.5	오류○동세○ ○금고	서울시 구로구	근저당	
123					한○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진로39번길 44-20, 114동 202호 (다인메가타운)	2.640 /621.5				
124					박○선	경기도 의왕시 덕장로 22, 107동 903호(출민시아 청계마을)	2.640 /621.5				
125					김○옥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527번길 24, 1동 202호	9.240 /621.5				
126					김○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53번길 6, 1409동	87.790 /621.5				
127					이○석	1003호(한빛마을레미안아파트플러스4단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사로 147, 5동 606호(미주아파트)	9.910 /621.5				
128	가리봉동 126-64	대	181.5	181.5	황○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34, 205동 1501호(명춘동, 꿈마을아파트)	1/1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용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점포(1층)	철근콘크리트조	141.0㎡	박○옥	서울 동작구 여의대반로 22 5동 1602호(신대방동, 우성아파트)				지분 1/2
2		사무실(2층)	철근콘크리트조	141.0㎡	박○옥	인천 강화군 내가면 해인서로918번길 9-21				지분 1/2
3		점포(1층)	연외조, 철근콘크리트조	137.9㎡	고○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6-4 금호아파트 나동 412호				지분 1/2
4	가리봉동 126-20	점포(2층)	연외조, 철근콘크리트조	137.9㎡	김○녀 제○○합 주○○사	서울 중랑구 신내동 455-1 남양주시 별내3로 115, 2807동 901호(더샵아파트)	김○희	서울시 노원구	근저당	제1층제32호 889㎡/469.97㎡ 제1층제36호 889㎡/469.97㎡ 제2층제1호 10.63㎡/469.97㎡ 제2층제2호 14.27㎡/469.97㎡ 제2층제3호 14.27㎡/469.97㎡ 제3층제307호 35.29㎡/372.93㎡ 제3층제308호 35.29㎡/372.93㎡ 제3층제309호 54.07㎡/372.93㎡ 내제3층제307호 10평/100평4홀 내제3층제308호 11평/100평4홀 내제3층제309호 10평/100평4홀
5		주택(3층)	연외조, 철근콘크리트조	113.0㎡	김○수 전○순 한○우 김○수 박○원 한○우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8 마정아파트 2동 610호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67 신도림태영타운 107-1106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6-40 시정아파트 비동 309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8 마정아파트 2동 610호 인천 계양구 박촌동 21-25 하트그린빌라 11동 101호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6-40 시정아파트 비동 309호				
6	가리봉동 126-23	천막창고	조립식건물	28.0㎡	이 ○	가리봉동 126-23				
7	가리봉동 126-24	갈릴리 고물상사무실	조립식건물	22.8㎡	이○남	가리봉동 126-24				
8	가리봉동 126-29	계중기	1식	16.9㎡						
9	가리봉동 126-31	점포(1층, 본건물)	철근콘크리트조	137.3㎡	김○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9길 26, 109동 1002호(고덕 아이파크)				
10		점포(1층, 가건물)	조립식건물	46.8㎡						
11	가리봉동 126-38	주차장사무실	조립식건물	57.8㎡	원○섭	서울 금천구 두산로9길 56, 101동 1402호(가산동, 삼익아파트)				
12	가리봉동 126-40	전진고물상 사무실	조립식건물	18.0㎡	박○호	가리봉동 126-49, 중앙하이츠 302호				
13		계중기	1식	16.5㎡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현황사진



계획평면도



◆ 동작구고시 제2019-75호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48호(2012.9.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된 사당3구역 소공원1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41-17번지 일대

3. 면 적 : 1,137.00㎡

4.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원녹지과(☎820-984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동작구 사당동 41번지 일대)

구	본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비단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비단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1,249.00	186.74				23	1,137.00	205.50				30	시설면적 증 18.76㎡				
기 반 시 설	소 계	175.44	175.44					113.38	113.38					감 62.06㎡				
	도 로	97.05	97.05					82.83	82.83					감 14.22㎡				
	광 장	78.39	78.39					30.55	30.55					감 47.84㎡				
조 경 시 설		3.21	3.21				1	17.64	17.64				1	감 수목보호대 1개소 증 그늘시령 1개소				
휴 양 시 설		8.09	8.09				5						10	증 평의자 10개소 감 앞음벽 9.2m				
유 회 시 설								49.08	49.08				2	증 징검다리1개소 증 꼬꼬마집 1개소				
온 통 시 설								25.40	25.40				5	체력단련시설A 1개소 체력단련시설B 1개소 체력단련시설C 1개소 체력단련시설D 1개소 체력단련시설E 1개소				
편 의 시 설														증강압음				
관 리 시 설							17						12	감 공원등 2개소 감 볼라드 3개소 감 벤스A 45.2m 감 벤스B 72.3m				
녹지 및 기타 시설물 (법정 20%)		1,062.26						931.50						녹지면적 감 130. 76㎡				
		(186.74㎡ /1,249.00㎡)×100% = 14.95%						(205.50㎡ /1,137.00㎡)×100% = 18.07%						증 3.12%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공작물 (기)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사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위 치	부지면적 (㎡)			사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기 단 시 설	계		사당동 41-17번지	1,249.00	186.74				23		사당동 41번지	1,137.00	205.50		30	시원면적 증 18.76㎡
	소 계		사당동 41-17번지	175.44	175.44						사당동 41번지	113.38	113.38			
	잔벽로 1	1	"	97.05	97.05						"	57.45	57.45			감 39.6㎡
	잔벽로 2	2	"								"	25.38	25.38			증 25.38㎡
	광장 가	가	"	78.39	78.39						"	30.55	30.55			감 47.84㎡
조 경 시 설	소 계		사당동 41-17번지	3.21	3.21				1		사당동 41번지	17.64	17.64		1	
	수목 보호대 ①	①	"	3.21	3.21				1		"					감 3.21㎡
	그늘시렁										17.64	17.64			1	증 17.64㎡
휴 양 시 설	소 계		사당동 41-17번지	8.09	8.09				5		사당동 41번지				10	
	등의자 ②	②	"						5		"					감 5개소
	편의자 안음벽 ③	③	"	8.09	8.09						"				10	증 10개소
유 원 시 설	소 계		사당동 41-17번지								사당동 41번지	49.08	49.08		2	
	유원공간									나	"	49.08	49.08			증 49.08㎡
	정원목 건너지		"							③	"				1	증 1개소
	포코마진									④	"				1	증 1개소
	소 계										사당동 41번지	25.40	25.40		5	
	운동구간1									다	"	14.64	14.64			증 14.64㎡
	운동구간2									라	"	10.76	10.76			증 10.76㎡
	체육단원									⑤	"				1	증 1개소
	시설A									⑥	"				1	증 1개소
	시설B									⑦	"				1	증 1개소
안 보 시 설	체육단원									⑧	"				1	증 1개소
	시설C									⑨	"				1	증 1개소
	체육단원															
	시설D															
	체육단원															
관 리 시 설	시설E															
	소 계		사당동 41-17번지						17		사당동 41번지				12	
	공원이용 안내판 ④	④	"						1	⑩	"				1	증 1개소
	공원명표지판 ⑤	⑤	"						1	⑪	"				1	증 1개소
	공원등 ⑥	⑥	"						8	⑫	"				6	감 2개소
	CCTV ⑦	⑦	"						2	⑬	"				2	증 2개소
	문진함 ⑧	⑧	"						1	⑭	"				1	증 1개소
	물라드 ⑨	⑨	"						3							감 45.2㎡
	시설A ⑩	⑩	"													감 72.3㎡
	시설B ⑪	⑪	"													증 1개소
	수정 ⑫	⑫	"						1	⑮	"				1	증 1개소
	소 계		사당동 41-17번지	1,062.28							사당동 41번지	931.50				증 1개소
	잔디															증 1개소
	잔디															증 1개소
	잔디															증 1개소
잔디															증 1개소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36.30	97.05	산책로			
변경					68.50	82.83	산책로			
당초	산책로	3	1	1.5	36.30	97.05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변경				1.2	46.20	57.45	산책로	동측진입부	가.광장	
				2	1.2	22.30	25.38	산책로	서측진입부	가.광장

조성계획도(변경전)

사당3구역 재건축 소공원 정비계획



조성계획도(변경후)

사당3구역 재건축 소공원 정비계획

[illegible]

구 공 고

◆ 노원구공고 제2019-91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8.2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노원구공고 제2019-712호(2019.7.25.)로 실시계획 인가(변경) 공고된 노원구 상계동 138-235번지 일대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서류는 노원구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9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8-23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면적 : 17,303㎡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간

사. 공고방법 : 시보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66)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붙임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면적 면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면적 면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상계동 138-235	도로	도로	109	109 (365238)	김건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1길 29, 102동 302호 (논현동)			1							좌 동		
2	상계동 138-172	잔존지	잔존지	149	149	김건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1길 29, 102동 302호 (논현동)	노원구	압류	2							좌 동		
3	상계동 138-173	잔존지	잔존지	149	149	김건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1길 29, 102동 302호 (논현동)			3							좌 동		
4	상계동 138-174	잔존지	잔존지	149	149	김건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1길 29, 102동 302호 (논현동)			4							좌 동		
5	상계동 산150-18	임야	임야	1,843	윤옥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51동 1302호(광정동, 위커월아파트)			1,756 (1/3)	상계동 산150-18	임야	임야	1,843	윤옥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51동 1302호(광정동, 위커월아파트)	상계동 산150-18	좌 동		
					미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62	1,756 (1/3)	미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62										
					원희안	위커월아파트 51동 1302호	1,756 (1/3)	원희안	위커월아파트 51동 1302호										
6	상계동 산150-5	임야	임야	2,583	경희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62			1,756 (1/3)	상계동 산150-5	임야	임야		경희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62	상계동 산150-5	좌 동		
					배운순	인원역시 남동구 산수촌로 75, 102동 1403호 (구월동, 구월오승내들퍼스티지)			배운순					인원역시 남동구 산수촌로 75, 102동 1403호 (구월동, 구월오승내들퍼스티지)					
					지경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주로30길 13, B동 1301호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지경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주로30길 13, B동 1301호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7	상계동 산149-7	임야	임야	5,124	김동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곡로 201, 88동 1002호 (인곡정동, 현대아파트)				상계동 산149-7	임야	임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곡로 201, 88동 1002호 (인곡정동, 현대아파트)	상계동 산149-7	좌 동		
					김동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5길100동 1203호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김동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5길100동 1203호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김동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1길 23B동 201호 (논현동, 롯데빌리지)			김동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1길 23B동 201호 (논현동, 롯데빌리지)					
8	상계동 산145-14	임야	임야	7,258	김동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 3동 1006호 (서빙고동, 신동아파트)				상계동 산145-14	임야	임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 3동 1006호 (서빙고동, 신동아파트)	상계동 산145-14	좌 동		
					김영우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리947번길 34-1 (우산리)			김영우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리947번길 34-1 (우산리)					
					김영섭	경기도 여주시 세 종로 254-6 101동 103호 (교동, 강남아파트)			김영섭					경기도 여주시 세 종로 254-6 101동 103호 (교동, 강남아파트)					
9	상계동 112-93	임야	임야	26	강석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61번길 15 109동 170호(퇴계원리, 퇴계광양예가)			9							좌 동			

◆ 서대문구공고 제2019-9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호(1972.01.0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홍제1동 156-358 ~ 산33-54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14일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9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56-358 ~ 156-33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홍제1동 156-358 ~ 산33-54 간 도로개설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폭 8m, 연장 155m)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아.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전화 : 330-1764)

위치도 및 현황

○ 홍제1동 156-358 ~ 산33-54 간 도로개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홍제1동 156-358 ~ 산33-54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홍제동	156-313	대지	17	17	한숙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247길 7(홍제동)			
2	홍제동	156-319	대지	10	10	한숙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247길 7(홍제동)			
3	홍제동	156-350	대지	198	3		총면적 156-350 대지대 101,201,301,401호 등기			
4	홍제동	156-352	대지	185	1	소영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용제동 156-352			
5	홍제동	156-280	대지	30	25	서원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	홍제동	156-284	대지	66	13	서원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	홍제동	156-285	대지	79	51	서원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	홍제동	156-286	대지	51	7	서원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사업명 : 홍제1동 156-358 ~ 산33-54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	홍제동	156-287	대지	43	43	서원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	홍제동	156-288	대지	13	13	서원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	홍제동	156-290	대지	17	17	서원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2	홍제동	156-296	대지	33	33	서원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3	홍제동	156-297	대지	89	89	서원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4	홍제동	156-315	대지	26	26	서원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5	홍제동	156-316	대지	17	17	서원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6	홍제동	156-318	대지	23	23	서원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7	홍제동	156-329	대지	43	20	서원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사업명 : 홍제1동 156-358 ~ 산33-54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8	홍제동	156-360	도로	1,379	1,30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9	홍제동	156-279	도로	53	40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20	홍제동	156-289	도로	56	56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21	홍제동	156-332	도로	185	185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22	홍제동	156-336	도로	231	230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23	홍제동	156-401	도로	23	2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24	홍제동	156-410	도로	53	50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 서대문구공고 제2019-9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90호(1978.11.0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연희동 산66-61 ~ 200-115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14일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9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66-61 ~ 200-115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연희동 산66-61 ~ 200-115 간 도로개설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폭 6m, 연장 240m)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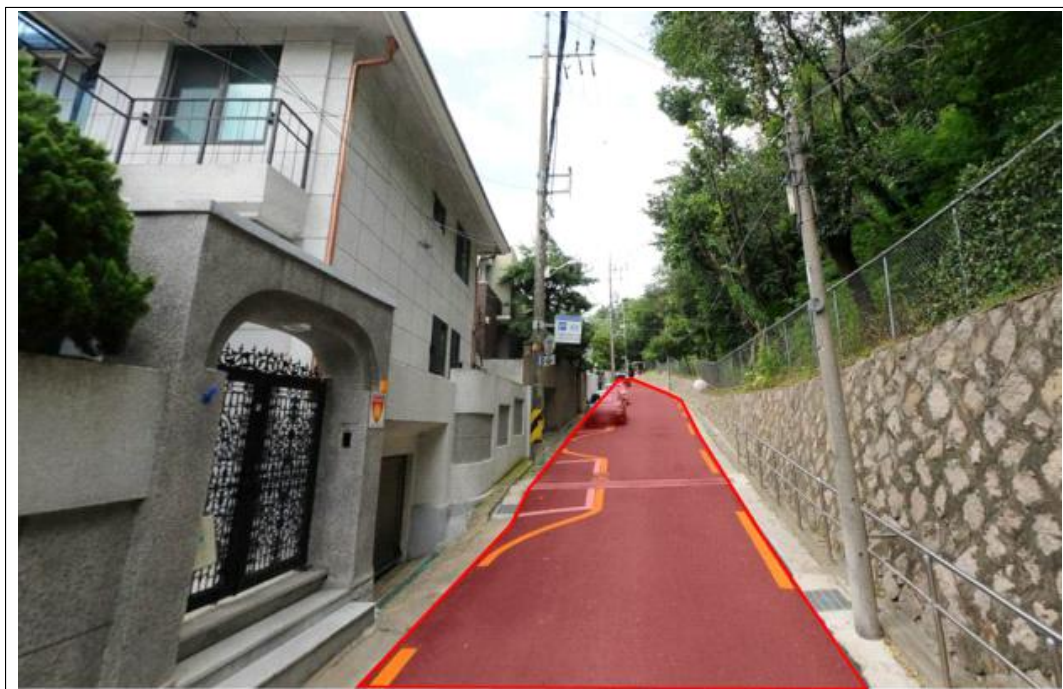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아.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전화 : 330-1764)

위치도 및 현황

○ 연희동 산66-61~200-115 간 도로개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연희동 산66-61 ~ 200-115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1	연희동	132-55	도로	235	235	배승근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537-22		파주시청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임류	
						김기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산10-23		파주 세무서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62	임류	
						김양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0-19					
2	연희동	132-56	도로	126	126	김숙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29길 19(연희동)					
						김도연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 45 103-1403(남가좌현대아파트)					
3	연희동	산66-95	임야	23	5	이진웅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31길 48-8(연희동)					
4	연희동	산66-15	임야	53,864	901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사업명 : 연희동 산66-61 ~ 200-115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5	연희동	산66-2	임야	1,425	175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	연희동	산66-40	임야	1,669	2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	연희동	138-66	대지	224	31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구로구청고 제2019-1402호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1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 7. 17.) 심의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안) 내용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9일

구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9. 9. 19.(목) ~ 10. 21.(월)(32일간)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3249)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 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남구로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	-	증) 10,832.4	10,832.4	-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 현황세대수 : 153세대 • 계획세대수 : 299세대 • 증가세대수 : 146세대	-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0,832.4	100.0	
획 지	획지1	9,953.5	91.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878.9	8.1	공공청사

3)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832.4	-	10,832.4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0,832.4	감) 9,953.5	878.9	8.1	획지2 (공공청사)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9,953.5	9,953.5	91.9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용도지구는 해당사항 없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자치회관	구로구 구로동 808-29번지 일대	-	증)878.9	878.9	-	구로2동 자치회관 (어린이집 복합설치)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동이용 시설	경로당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	-	증)140.0	140.0	
	어린이놀이터		-	증)817.0	817.0	
	소 계		-	-	957.0	
커뮤니티 지원시설	문화센터		-	증)810.0	810.0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준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남구로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10,832.4	획지1	9,953.5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일대	97	-	-	97	-	
			획지2	878.9	구로구 구로동 808-29번지일대	11	-	-	11	-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연면적)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남구로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10,832.4	획지1	9,953.5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기준 200 허용 270 상한 300이하	58m이하 19층이하	-
			획지2	878.9	구로구 구로동 808-29번지 일대	공공청사	60이하	200 이하	21m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 공동주택 299세대(일반분양 214세대, 공공임대주택 47세대, 임대주택 38세대)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							
			구분(전용면적)		합 계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합 계		299 (100.0%)	214	47	38		
			공동 주택	60㎡이하	216 (70.6%)	131	47	38		
				60㎡~85㎡이하	83 (29.4%)	83	-	-		
				85㎡초과	-	-	-	-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획지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획지2 : 서측변 2m, 동측변 3m								
	전면공지	· 획지1 : 구로동로13길(북측), 구로동로7길(서측) : 차도형 1m, 보도형 2m 구로동로(동측) : 보도형 3m · 획지2 : 구로동로(동측) : 보도형 3m, 구로동로7길(서측) : 보도형 2m ※ 획지1 전면공지(차도형1m, 보도형 2m)는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6m) 1개소 설치								
	교통처리	· 구로동로(20m) 도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공공시설 부담기준

구 분	면적(㎡)	공공시설 부담기준	공공시설 확보면적(㎡)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878.9	용도지역 변경없음	-	획지2 (공공청사)
제2종일반 → 제3종일반	9,953.5	1단계 상향시(15%)	$9,953.5 \times 0.15 = 1,493.0\text{㎡}$	획지1 (공동주택 등)
합 계	10,832.4	-	1,493.0㎡(총상향 면적대비 15.0%)	총상향 면적 : 9,953.5㎡

※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은 공공시설 설치·제공 비율의 1/2한도까지 공공시설 부담기준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상한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 등)	획지2 (공공청사)	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공공청사)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10,832.4㎡	9,953.5㎡	878.9㎡	541.9㎡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878.9㎡(획지2_공공청사) + 541.9㎡(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 1,420.8㎡(총상향면적 대비 14.2%) ※ 총상향 면적 : 9,953.5㎡(획지1),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면적은 매입토지임					
패키지 허용용적률 계획	■ 허용용적률 270%					
	구분		건축계획(안)			
	공공임대주택공급		· 완화되는 용적률의 50/100 이상(35%이상) ⇒ 기준 3,483.7(35.0%) < 계획 3,491.8㎡(35.1%)			
	필수 항목 (4개)	리모델링이쉬운구조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 제7호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할 것			
		커뮤니티지원시설	·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의 2%이상(300세대 미만) ⇒ 기준 문화센터 계획(기준:527.6㎡이상 < 계획:810.0㎡)			
		에너지효율건축물	·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친환경건축물	·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인증			
	선택 항목 (1개)	신재생에너지사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1%(공동주택)이상, 3%(일반건축물)이상			
공공기여방안		-				
	역사문화보전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270%, 공공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35%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주) × (1 + 1.3 × 가중치 × α + 0.7β)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 235% × (1 + 1.3 × 0.7407 × 0.0883 + 0.7 × 0.0544) = 263.9% = 263.9% + 35%(공공임대주택 용적률) = 298.9% → 300%이하 적용(계획:298.69%)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200% ÷ 270% = 0.7407					
α토지	■ α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878.9㎡ ÷ (10,832.4㎡-878.9㎡) = 0.0883					
β건축물	■ β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541.9㎡ ÷ (10,832.4㎡-878.9㎡) = 0.0544					

주) 허용용적률은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용적률 제외 : 235% = 270% - 35%

8)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 건설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연면적)
획지1	—	—	38	40㎡이하	2,360.6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_18.02.29) 및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2호_2018.08.02) 적용

※ 임대주택 산출식 : 주택 전체 세대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1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총 세대수(공공임대주택 제외) 252세대 × 15% = 37.8세대 이상 확보해야함

■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건립 위치	연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45㎡이하	45~60㎡이하	합계	
획지1	기준	완화된 용적률의 1/2 3,483.7㎡이상 (35.0%이상)	사회혼합 (Social Mix)	47	60~80% 이상	20~40% 이하	100%	—
	계획	3,491.8㎡ (35.1%)			33세대 (70.2%)	14세대 (29.8%)	47대 (100.0%)	총 대지지분 1,115.3㎡

※ 공공임대주택 건립면적 : 9,953.5㎡ × 35.0% = 3,483.7㎡이상 확보해야함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바. 관련도서 : 생략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 영등포구공고 제2019-14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간적범위)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63-6호(1969.1.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4-32호(2014.4.10.)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공간적범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등포구공고 제2015-206호(2015.2.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간적범위)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대림동 964-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간적범위)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시 행 지	사 업 규 모	공 사 기 간
대림동 964-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대림동 964-9번지 일대	소로 2류 L=105m, B=8.0m	2015.4.1. ~ 2019.7.31.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간적범위)사업

다.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학교법인 일송학원 대표이사 윤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5(영등포동7가)

라. 준공도서: 생략

마. 관련서류는 영등포구청(도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2670-3813)

◆ 영등포구공고 제2019-1516호

양화폭포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 서울시고시 제82호(1997.3.3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382호(1997.1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후, 서울시고시 제344호(1999.11.6.)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영등포구 양화동 153번지 일대 양화폭포근린공원에 대하여
-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변경) 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공 원 명 : 양화폭포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53번지 일대

다. 면 적 : 13,000㎡

라. 조성계획변경(안)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계		13,000.0	4,901.2	4	481.0	481.0	36	13,000.0	4,608.2	1	30.0	30.0	19	시설면적 감소 293.0㎡
기 반 사 설	소계	3,769.2	3,769.2				8	2,911.4	2,911.4					감 857.8㎡
	도로	500.5	500.5				3	2,637.8	2,637.8					증 2,137.3㎡
	광장	3,268.7	3,268.7				5	273.6	273.6					감 2,995.1㎡
조경시설		651.0	651.0					1,304.9	1,304.9				1	증 653.9㎡
유흥시설		0.0	0.0											
휴양시설		0.0	0.0				15	129.4	129.4				10	증 129.4㎡
교양시설		0.0	0.0											
운동시설		0.0	0.0					27.9	27.9				3	증 27.9㎡
편익시설		353.5	353.5	2	353.5	353.5	3	234.6	234.6	1	30.0	30.0	1	감118.9㎡
관리시설		127.5	127.5	2	127.5	127.5	10						4	감 127.5㎡
녹지 및 기타		8,098.8						8,391.8						증 293.0㎡
시설율 (법정40%)		(4,901.2 / 13,000.0) × 100 = 37.70%					(4,608.2 / 13,000.0) × 100 = 35.45%							
건폐율 (법정10%)		(481.0 / 13,000.0) × 100 = 3.70%					(30.0 / 13,000.0) × 100 = 0.23%							

마.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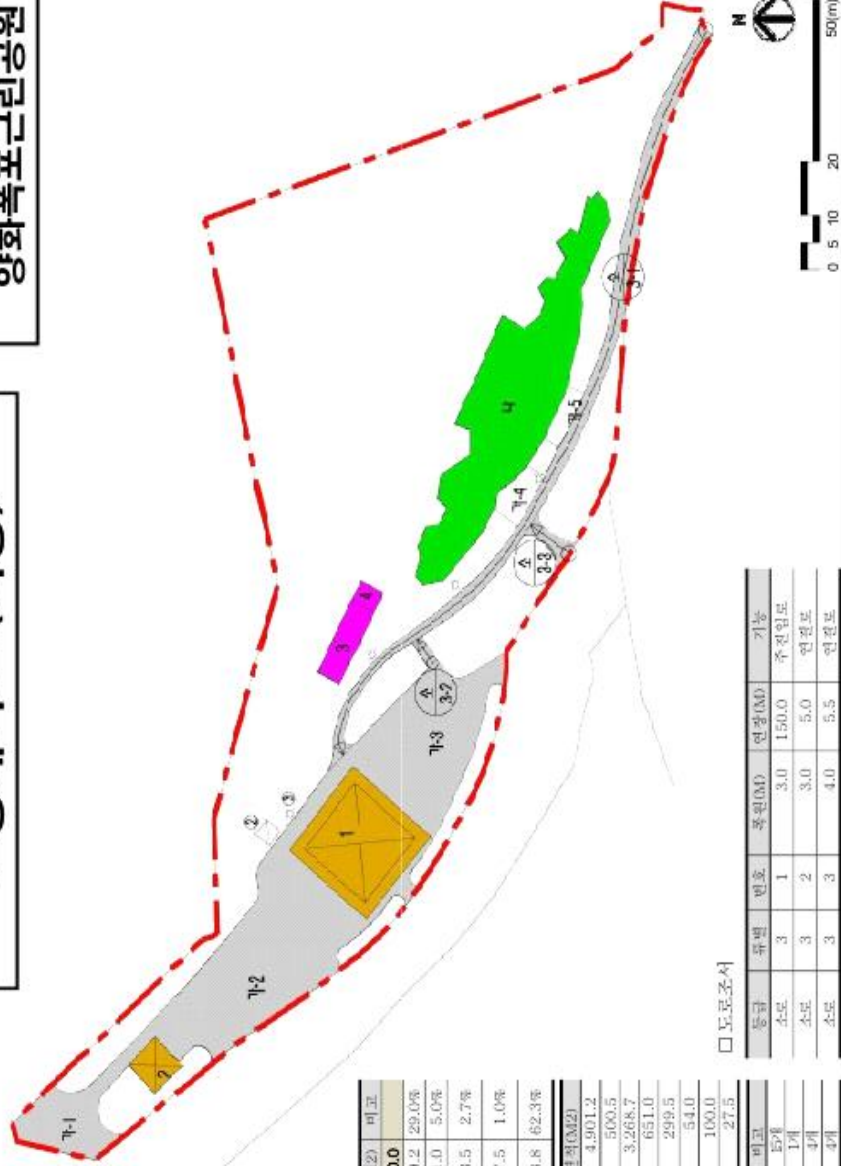
바.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02-2670-3758)

아.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계획도 (기정)

양화록포근린공원



■ 범
예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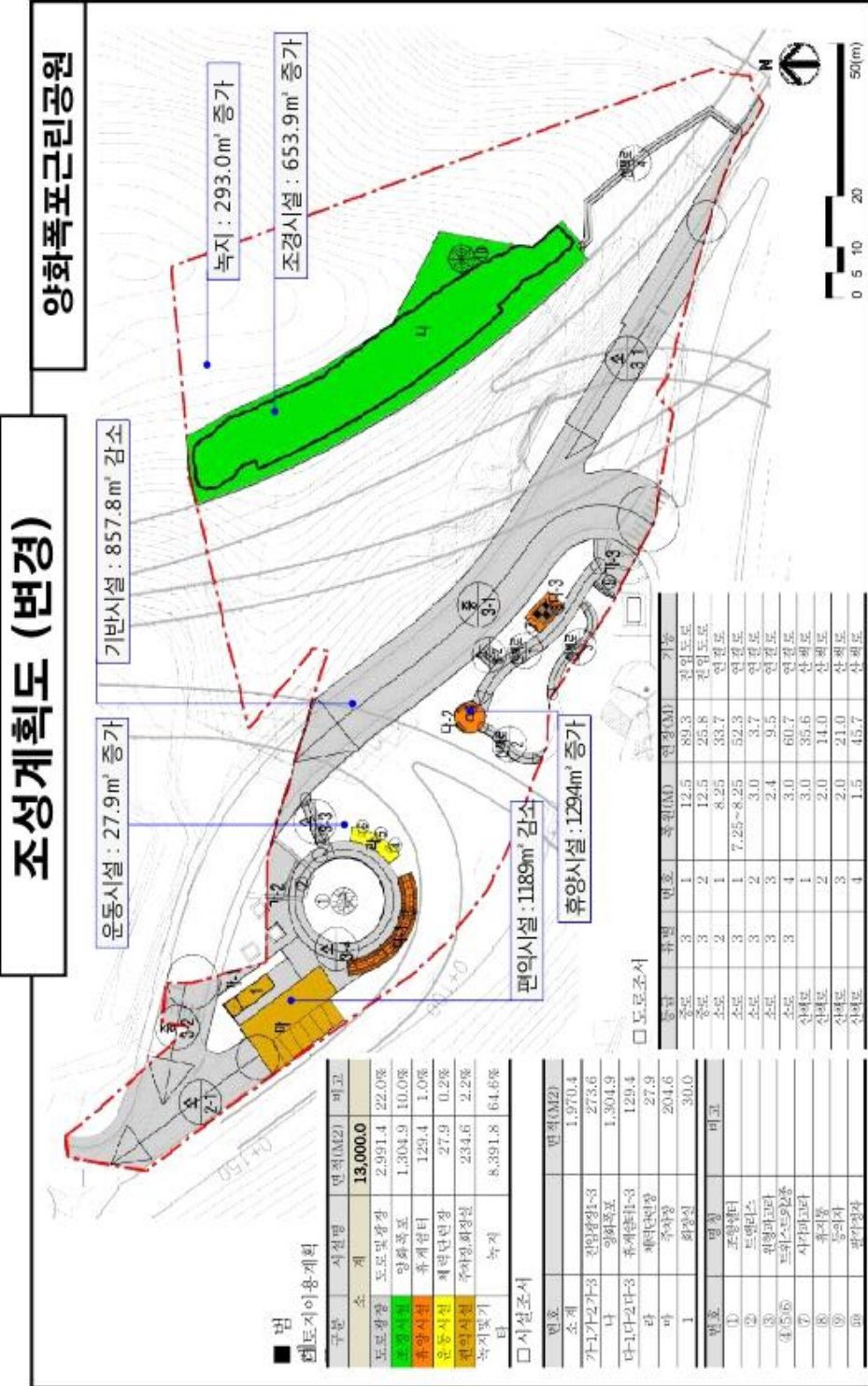
구분	지원명	면적(M ²)	비고
소계	도도포경정	13,000.0	
도도포경정	도도포경정	3,769.2	29.0%
양화록포	양화록포	651.0	5.0%
유계음식점	유계음식점	353.5	2.7%
기재전, 관리	기재전, 관리	127.5	1.0%
녹지	녹지	8,098.8	62.3%

면적	면적(M ²)	비고
소계	4,901.2	
도도	500.5	
경관1~5	3,268.7	
양화록포	651.0	
유계음식점	299.5	
화장실	54.0	
계개식	100.0	
관리실	27.5	

면적	면적	비고
경관1	150.0	주권임로
경관2	3.0	주권임로
경관3	3.0	주권임로
경관4	4.0	주권임로
경관5	5.5	주권임로

□ 도로조서

등급	구분	면적	면적(M ²)	면적(M ²)	기능
소도	3	1	3.0	150.0	주권임로
소도	3	2	3.0	5.0	주권임로
소도	3	3	4.0	5.5	주권임로



양화록포근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영등포구 양화동153번지 일대)

구	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13,000.0	4,901.2	4	481.0	481.0	36	13,000.00	4,608.2	1	30.0	30.0	19							시설면적 감소 293.0㎡ (감 17기)			
	기반 시설	소 계	3,769.2	3,769.2			8	2,911.4	2,911.4											감 857.8㎡ (감 8기)			
		도 로	500.5	500.5			3	2,637.8	2,637.8											증 2,137.3㎡ (감 3기)			
		광 장	3,268.7	3,268.7			5	273.6	273.6											감 2,995.1㎡ (감 5기)			
	조 경 시 설	651.0	651.0					1,304.9	1,304.9				1							증 653.9㎡ (증 1기)			
	유 회 시 설	0.0	0.0																				
	휴 양 시 설	0.0	0.0				15	129.4	129.4				10							증 129.4㎡ (감 5기)			
	교 양 시 설	0.0	0.0																				
	운 동 시 설	0.0	0.0					27.9	27.9				3							증 27.9㎡ (증 3)			
	편 의 시 설	353.5	353.5	2	353.5	353.5	3	234.6	234.6	1	30.0	30.0	1							감 118.9㎡ (감 2기)			
	관 리 시 설	127.5	127.5	2	127.5	127.5	10						4							감 127.5㎡ (감 6기)			
	녹 지 및 기타	8,098.8						8,391.8												증 293.0㎡			
	시 설 율 (법정 40%)	(4,901.2 / 13,000.0) × 100 = 37.70%						(4,608.2 / 13,000.0) × 100 = 35.45%															
	건 폐 율 (법정 10%)	(481.0 / 13,000.0) × 100 = 3.70%						(30.0 / 13,000.0) × 100 = 0.23%															

2. 시설조서

구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경			구조	규모	후			비고
					바닥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합계			13,000.0	4,901.2	10,494.96	42,237.38	36			13,000.00	4,608.2	1	30.0	19			1	30.0	19	감293.0㎡ (감17)
소계			3,769.2	3,769.2			8			2,866.4	2,866.4									감902.8㎡ (감8)
도로		전지역	500.5	500.5			3		전지역	2,637.8	2,637.8									증2,137.3㎡
기 반 시 설	가		3,268.7	3,268.7			5		3개소	273.6	273.6									감2,995.1㎡
	가-1	양화동153-5	(568.2)	(568.2)			(5)		양화동153-5	(14.8)	(14.8)				투수블럭					감553.4㎡
	가-2	양화동153-152	(1,420.4)	(1,420.4)					양화동153-18	(196.1)	(196.1)				투수블럭					감1,224.3㎡
	가-3	양화동153-8	(1,191.5)	(1,191.5)					양화동153-17	(62.7)	(62.7)				투수블럭					감1,128.8㎡
	가-4	양화동153-21	(52.6)	(52.6)																폐지
	가-5	양화동153-21	(36.0)	(36.0)																폐지
소계			651.0	651.0						1,304.9	1,304.9			1					1	증653.9㎡ (증1)
인공폭포	나	양화동153-21	(651.0)	(651.0)					양화동산4-18	1,304.9	1,304.9				ECO ROCK					증653.9㎡
트램리스									② 가-2광장										1	신설
소계							15			129.4	129.4			10					10	증129.4㎡ (감5)
휴게쉼터									다	129.4	129.4									증129.4㎡
									다-1 양화동산153-8	(71.6)	(71.6)				투수블럭					신설
									다-2 양화동153-11	(28.2)	(28.2)				투수블럭					신설
									다-3 양화동153-11	(29.6)	(29.6)				투수블럭					신설
							15													폐지
장의자	①	전지역							녹지						목재				1	신설
조형파고라									다-1.휴게쉼터						목재				3	신설
원형파고라									다-2.휴게쉼터						목재				4	신설
등의자									다-3.휴게쉼터						목재				1	신설
사각파고라									나. 인공폭포						목재				1	신설
팔각장자															목재				1	신설

구 분	면										후									
	경					면					경					면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비 고	
안도방 시설	소 계											27.9	27.9					3	증27.9㎡ (증3)	
	체력단련장									라	양화동153-8	27.9	27.9						신설	
	트위스트									④	라. 체력단련장			철재				1	신설	
	레크프레스									⑤	라. 체력단련장			철재				1	신설	
	위임암									⑥	라. 체력단련장			철재				1	신설	
반이 시설	소 계		353.5	353.5			353.5	353.5	3			234.6	234.6			30	30	1	감118.9㎡ (감2)	
	휴게음식점 1	양화동153-8	299.5	299.5	철근콘크리트		299.5	299.5	1(동)										폐지	
	화장실 2	양화동153-6	54.0	54.0	철근콘크리트		54.0	54.0	1(동)	1	양화동153-5	30.0	30.0	철근콘크리트		30	30	1(동)	감24.0㎡	
	음수대 ②	양화동153-18							1(개)										폐지	
	주차장									마	양화동153-15	204.6	204.6						신설	
관리 시설	소 계		127.5	127.5			127.5	127.5	10									4	감127.5㎡ (감6)	
	기계실 3	양화동153-21	100.0	100.0	철근콘크리트		100.0	100.0	1										폐지	
	관리실 4	양화동153-21	27.5	27.5	철근콘크리트		27.5	27.5	1										폐지	
	공원등 ③	전지역							4										폐지	
	휴지통 ④	전지역							4	⑧	전지역			목재				4		
복지 및 기타	소 계		8,098.8									8,391.8							증293.0㎡	
	복지 및 기타		8,098.8									8,391.8							증293.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60.5	500.5				
변경					391.3	2,637.8				
당초	중로	소 계			0	0				
변경					115.1	1,470.2				
신설		3	1	12.5	89.3	1,169.3	주진입로	남측경계부	북측경계부	
신설		3	2	12.5	25.8	300.9	주진입로	북측경계부	서측경계부	
당초	소로	소 계			160.5	500.5				
변경					159.9	923.1				
당초		3	1	3.0	150.0	450.0	시설간 연결로	휴게소	부지경계	
폐지		3	1							
당초		3	2	3.0	5.0	15.0	시설간 연결로	광장-3	소로3-1	
폐지		3	2							
당초		3	3	4.0	5.5	35.5	시설간 연결로	도로	소로3-1	
폐지		3	3							
신설		2	1	8.25	33.7	263.1	시설간 연결로	마.주차장	서측경계부	
신설		3	1	7.25	52.3	441.3	시설간 연결로	가-2.진입광장	산책로5	
신설		3	2	3.0	3.7	11.1	시설간 연결로	산책로1	중로3-1	
신설		3	3	2.4	9.5	22.8	시설간 연결로	중로3-1	소로3-4	
신설		3	4	3.0	60.7	184.8	시설간 연결로	소로3-3	소로3-3	
당초	산책로	소 계			0	0				
변경					116.3	244.5				
신설		-	1	3.0	35.6	108.0	산책로	가-3.광장	중로3-1	
신설		-	2	2.0	14.0	28.3	산책로	다-2.휴게쉼터	남측경계부	
신설		-	3	2.0	21.0	39.8	산책로	남측경계부	산책로1	
신설		-	4	1.5	45.7	68.4	산책로	소로3-1	나.양화폭포	

◆ 관악구공고 제2019-120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34호(1968.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8-56호(2018.3.2.)」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관악구고시 제2019-46호(2019.5.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2019년 9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신림동 산114-1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5)]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 4) 면 적 : 1,145㎡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기간 : 2019. 5. 9. ~ 2019. 9. 10.

바. 관계도서 : 생략(관악구청 공원녹지과 비치 ☎02-879-6526)

◆ 관악구공고 제2019-12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8-114호(2018.12.27)로 관악구 봉천동 457 주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로관리과(☎879-6753)에 비치하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서는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7-285~봉천동 457-125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은천로24길 주변 도로개설(2차 구간)
- 다. 총사업규모 : 폭원 6m, 연장 83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4개월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함.

위 치 도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7-285~봉천동 457-125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은천로24길 주변 도로개설(2차 구간)
- 총사업규모 : 폭원 6m, 연장 83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권리		
1	봉천	457-285	대	47	47	주택	정*진	광진구 용마산로3길**	대림동 새마을금고	영등포구 디지털로**	근저당권	-	노선1
2	봉천	457-266	대	47	47	주택	오*한	용산구 청파로85길**	대림동 새마을금고	영등포구 디지털로**	근저당권	-	노선1
									이*원	송파구 중대로**	근저당권	-	
3	봉천	457-234	대	73	73	주택	오*임	관악구 양녕로6가길**	-	-	-	-	노선1
4	봉천	457-348	대	86	86	주택	김*자	강남구 도산대로68길**	-	-	-	-	노선1
5	봉천동	457-347	대	13	13	주택	김*길	송파구 충민로**	풍납동 새마을금고	송파구 풍성로**	근저당권	-	노선1
6	봉천동	457-130	대	18	18	주택	김*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서울축산업협동조합	강서구 양천로**	근저당권	-	노선1
7	봉천동	457-345	대	56	56	주택	장*숙	관악구 양녕로6가길**	-	-	-	-	노선1
8	봉천동	457-297	대	78	78	주택	김*호	강남구 개포로109길9**	-	-	-	-	노선1
9	봉천동	457-128	대	90	90	주택	조*래	관악구 중앙길**	-	-	-	-	노선1
10	봉천동	466-26	도	31	31	주택상가	유*례	전라북도 완주군 산레읍 버드리2길**	-	-	-	-	노선1
11	봉천동	457-125	도	169	11	도로	서울시 관악구	관악구 관악로 145	-	-	-	-	노선1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7-285~봉천동 457-125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은천로24길 주변 도로개설(2차 구간)
- 총사업규모 : 폭원 6m, 연장 83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봉천동)	물건 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내 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봉천동 457-285 , 390	주건물	연와조세멘외즙	50.38	주택	정*진	광진구 용마산로3길 **	대림동새 마을금고	영등포구 디지털로 **	근저당권	
		창고	연와조세멘외즙	9.42							
		화장실	연와조세멘외즙	3.39							
		담장	세멘블럭	4m							
		출입문	철제	1개							
2	봉천동 457-266 389	주건물	연와조세멘외즙	48.1	주택	오*한	용산구 청파로85길 **	대림동새 마을금고	영등포구 디지털로 **	근저 당권	
		창고 (화장실)	연와조세멘외즙	4.5				이*원	송파구 중대로 **	근저 당권	
		담장	세멘블럭	12m							
		출입문	철제	1개							
3	봉천동 457-234 388	주건물	연와조세멘외즙	43.2	주택	오*임	관악구 양녕로6가길 **	-	-	-	
		창고	조립식샌드위치판넬	2.56							
		화장실	연와조슬라브즙	2.875							
		담장	세멘블럭	6m							
		출입문	철제	1개							
		정화조		1개							
		계단	철근콘크리트B=0.5 m	1.5m							
4	봉천동 457-387 347 348	주건물	연와조세멘외즙	57.52	주택	김*길	송파구 충민로 **	풍납동새 마을금고	송파구 풍성로 **	근저 당권	
		창고	연와조세멘외즙	11.8							
		화장실	연와조세멘외즙	2.9							
		담장	세멘블럭	4m							
		출입문	철제	1개							
		정화조		1개							
		수목	장미	1주							
5	봉천동 457-386 130 348	주건물	연와조세멘외즙	62.9	주택	김*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	서울축산 업 협동조합	강서구 양천로 **	근저 당권	
		창고	연와조세멘외즙	11.1							
		담장	세멘블럭	6m							
		출입문	철제	1개							
		정화조		1개							
		수목	감나무20	1주							
		수목	포도나무R5	1주							

연번	소재지 지 번 (봉천동)	물건 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내 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6	봉천동 457-345 385	주건물	연와조세멘와즙	49.4	주택	장*숙	관악구 양녕로6가길 **	-	-	-	
		화장실	연와조세멘와즙	2.0							
		담장	세멘블럭	4m							
		출입문	철제	1개							
		정화조		1개							
		수목	보리수 R15	1주							
		수목	라일락 R10	1주							
7	봉천동 457-297 384	주건물	연와조세멘와즙	49.5	주택	김*호	강남구 개포로109길**	-	-	-	
		창고	연와조스라브즙	2.2							
		출입문	철제	1개							
8	봉천동 457-128 381	주건물	연와조스라브즙	67.66	주택 상가	조*래	관악구 중앙길 115	-	-	-	
		음식점	연와조스라브즙	12.77							
		창고	조립식샌드위치판넬	16.9							
		화장실		4.21							
		창고		10							
		담장	세멘블럭	17							
		출입문	철제	1개							
		정화조		1개							
		수목	감나무 R5	2주							
9	봉천동 466-26 87	주건물 (1층)	연와조스라브즙(주택)	5.98	주택 상가	유*래	전라북도 완주군 산례읍 버드리2길 **	-	-	-	
			연와조스라브즙 (사무소)	18.96							
			연와조스라브즙(점포)	5.54							
		주건물 (2층)	연와조스라브즙(주택)	30.48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7-285~봉천동 457-125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은천로24길 주변 도로개설(2차 구간)
- 총사업규모 : 폭원 6m, 연장 83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봉천동)	물건 의 종류	상호	수량 (㎡)	영업권의 종류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봉천동 466-26 87	건물1층	강남효재가장기요양센터	18.96	요양업	서*숙	관악구 중앙길 **	
2	봉천동 466-26 87	건물1층	양푸드	5.98	음식점	정*한	관악구 중앙길 **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2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 내 한강 (잠실수중보상류~강북취수장)	선박4척	퇴적물 정비공사	'19.9.9.~ '19.12.10.	'19. 9.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2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보은이엔지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A동 1110호	서울시계 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1척 (기선1)	정박대기	'19.9.9. ~ '19.12.31.	'19. 9.1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222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 내 한강 (구리암사대교)	선박 2척	하자 점검	'19.9.16.~ '19.9.20.	'19. 9.1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225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환경공단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서울시계 내 한강 (천호대교~구리암사대교)	고무보트 1척	국가수질자동측정 소 유지관리	'19.9.23.~ '19.10.25.	'19. 9.17.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29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6-1번지
 - 면 적: 일시점용 1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상수도관(D600, D200) 정비 및 상수도 맨홀 보수
 - 내 역: 상수도관 정비를 위한 굴착공사(H=2m)
5. 점용기간: (당초) 2019.05.08.~2019.06.17.
(변경) 2019.05.08.~2019.11.30.(점용기간, 공사기간 동일)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